

韓國經營理念의 愛國的 傳統과 21世紀 企業家의 價值觀

金炳夏*

目次

- | | |
|---------------------|--------------------------|
| I. 序論 | III. 21世紀 企業家의 價值觀 |
| II. 愛國·愛族的 經營理念의 事例 | 1. 新로 保寧의 爲官精神과 爲商精神의 確立 |
| 1. 「許生傳」에서 본 救貧的 理想 | 2. 共同體的 意識構造의 現代化와 |
| 鄉建設의 精神 | 經營理念 |
| 2. 李昇薰의 愛國·愛族的 經營理念 | IV. 謂 詞 |
| 3. 李秉喆의 事業報國的 經營理念과 | |
| 韓國財團의 形成 | |

I. 序論

기업경영의 成敗는 경영자의 經營理念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거시적으로 보면 한국의 經營哲學의 確立은 경쟁력의 提高와 복지사회의 건설에 있어서 필수적 전제조건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아직도 우리나라 기업가 중에는 국가나 사회가 어떻게 되든 돈만 벌면 된다는 賤民資本主義的思想이 청산되지 못하고 있다.

천민자본주의 사상은 베버(M. Weber) 이후 前近代社會에 있어서 지배적인 企業家精神처럼 이해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반드시 그렇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기업가 정신은 물지각 한 「市井輩」에서나 찾아 볼 수 있고, 일반적으로 보면 愛國·愛族的 기업가 정신이 상당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傳統化한 愛國·愛族的 商人思想은 예컨대 新羅 張保寧의 貿易活動에서도 찾아 볼 수 있고, 조선시대의 褙負商에 있어서도 찾아 볼 수 있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장보고와 보부상의 애국사상은 당시의 사회를 반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經營理念이 確立된 조선후기 이후 더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심지어는 「許生傳」과 같은 小說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정신이 부각되어 있다. 즉, 애국·애족 전통은 「許生傳」의主人公 許生이라든가 李鍾一·李昇薰·安熙濟·柳一韓·金性洙·金成坤·李秉喆 등으로 이어져 왔다.

* 本學會 顧問·經濟學博士

그러나 韓國經營理念의 愛國的 傳統과 21世紀 企業家의 價値觀에 관하여 논하는 논문에서 위의 모든 사람을 열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며, 우선 그 흐름을 약술한 다음 대표적 事例로 「許生傳」의 主人公과 李昇薰·李秉燦에 대해서 보기로 한다.

신라의 張保卓는 愛國·愛族精神이 투철하였으나 그것은 순연한 專業的 商人精神이라기보다 조정에서 임명한 「濟海鐵大使 겸 海商」으로서의 精神이었다. 그리고 愛國心이 투철한 複負商의 경우는 專業的 성격은 있었으나 개개의 경영자의 이념이라기 보다 政權에 종속된 複負商 단체의 정신으로 파악할 수 있다¹⁾. 그들의 愛國精神이 후세에 미친 영향이 커던 것은 사실이지만, 경영이념은 경영자의 이념이므로 보부상 단체가 국가의 보호를 받은데 대한 代償의 성격이 포함된 鑑忠報國精神이 모든 보부상 개개인의 정신으로 규정하려면 실증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經營理念이 확립된 것은 鑄貨가 지속적으로 유통되고 貨幣經濟段階에 접어든 조선후기이므로²⁾ 조선후기의 事例로서 許生을 들게 되었다. 架空人物 許生의 경영이념은 저자인 燕嚴 朴趾源의 경영사상임과 동시에 당시 상인들의 경영이념을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가공인물로서는 비교적 무거운 비중을 두게 되었다.

半殖民地·殖民地 시대에는 李鍾一과 같이 私財로 「帝國新聞」을 찰성하여 애국·애족사상과 근대화 사상의 보급에 노력한 사람이 있었고, 安熙濟와 같이 白山貿易株式會社를 경영하면서 독립운동자금 조달에 평생을 바친 愛國志士型 기업가도 있었다. 이 두 사람은 경영에 성공하지 못하였음에 대하여 李昇薰은 애국·애족적 경영이념이 투철한 개항기의 성공적 기업가였다. 따라서 이 시기의 사례로서 이승훈을 들게 되었다. 일제하에 성공적으로 기업을 창설하여 경영한 민족주의 기업가로서 그 밖에 柳一韓과 金性洙 등을 들 수 있다. 柳韓洋行의 창업자이며, 애국자, 육영사업가인 柳一韓은 철저하게 富의 사회적 환원에 시범을 보였으며³⁾ 京城紡織과 동아일보의 창업자이며, 육영사업가요 정치가인 金性洙는 價値의 기준을 국가와 민족에 두고, 애국·애족적 奉公精神으로 사업을 경영하였다. 그러나 이승훈은 대선배이고 혼신적으로 독립운동을 하였으므로 대표적 事例로서 그를 들지 아니할 수 없었다.

8·15해방 이후 1980년대까지는 애국적 경영이념이 절정에 달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많은 기업이 신설되었고, 개중에는 천민자본주의적 기업가가 없지 아니하였으나, 한편 확고한 애국적 이념으로 사업을 경영하여 크게 성공한 기업가도 적지 아니하였다. 예컨대, 쌍용 그룹의 창설자이며, 정치가인 金成坤은 철저한 國益主義者였고, 국의적 가치기준에서 事業轉換을 하였으며, 富의 사회적 환원에도 시범을 보였다. 그러나 事業報國의 이념으로 기업을 경영하

1) 金柄夏, 「複負商關係史料에 대하여」, 『韓國經濟史文獻資料』, 第2輯, 慶熙大 韓國經濟經營史研究所, 참조.

2) 金柄夏, 『韓國經營理念史』, 啓明大 出版部, 1994年 123~130쪽 참조.

3) 柳一韓에 관한 최신(1995년)의 문헌으로 「나라사람의 창 企業人 柳一韓」(유한양행, 柳一韓傳記 编 華委員會 편)이 있고, 그 중에서 필자는 제10장, 제11장을 짐작하였다.

여 크게 성공한 대표적 기업가는 삼성 그룹의 창업자 李秉喆이므로 이 시기의 사례로서 후자를 들게 되었다.

國益主義를 표방하던 金成坤이 세상을 떠난 것은 1975년(63세)이었고, 사업보국 이념으로 일관하던 李秉喆이 작고한 것은 1987년(78세)이었다. 그런데, 이 시기를 계기로 하여 우리나라의 애국적 경영이념의 전통은 퇴조기에 접어들었다. 기업가에 있어서 세계화는 기업가의 無國籍化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개방화를 전제로 하는 세계화시대에 있어서도 국익적 경영이념은 요청된다. 그리고, 경영이념은 또한 기업가의 價値觀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고찰하게 되었고, 특히 공동체적 의식구조의 현대화와 小集團利己主義의 大集團利益主義로의 지향의 當爲性 문제를 理論的으로 논하려고 노력하였다.

II. 愛國 · 愛族的 經營理念의 事例

1. 「許生傳」에서 본 教貴的 理想鄉 建設의 精神

「許生傳」의 저자 朴趾源(1737~1805)는 실학파에 속하는 학자로서 상업을 직접 경영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소설의 주인공인 許生의 商業活動을 통하여 그 상업사상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 소설이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애독되고 공명을 얻었으므로 許生의 경영이념은 바로 당시 상인의 경영이념과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소설의 내용을 요약하면, 서울의 가난한 선비 許生은 과거시험 준비를 중단하고 고리대부업자 변(卞)씨한테 1만냥을 꾸어 매점매석을 하는 都賈商業을 경영하였고, 5년간에 백만금을 벌어 빈민구제 사업을 하였다는 것이다. 許生은 예컨대, 안성에서 각종 과일을 매점매석하여 돈을 벌었고, 칼, 호미, 布木 등을 가지고 제주도에 들어가서 말총(말꼬리 털)을 매점매석하여 거부가 되었는데, 이것은 당시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고 도고상업의 경영양식이었다. 안성은 당시에 있어서 서울 근교의 과일 주산지였고, 제주도에서는 칼, 호미 같은 철제품과 포목의 수요가 큰 반면, 말총의 독점적 공급지였으므로 전혀 사실과 다른 가공적 이야기만은 아니었던 것이다. 갑부가 된 許生은 제주도 동남쪽에 있는 무인도에 가난한 도둑 수천명을 모아 理想鄉을 건설하였고, 전국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극빈자를 구제하였다. 이 부분은 架空의지만 여기에는 그의 愛族的 경영이념이 내포되어 있다.

許生의 당면한 상업거래의 동기는 이윤추구였지만, 그의 궁극적 목표는 빈민구제였고, 그러한 목표 때문에 만난을 극복하고 거금을 모을 수 있었다고 본다. 그는 부자로서 안일한 생활을 영위하려 하지 아니하였고, 가난을 편안하게 여기고 선비로서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였다. 許生에게 상업자본을 대어 준 변씨는 卞承業의 조부로서 실존인물이었다. 변씨 집안도 고리대부업으로 거부가 되었으나 뒤에 축적한 富를 사회에 환원하고 말았다. 利를 보면 義를 먼

저 생각해야 한다는 사상이 깔려 있는 것이다⁴⁾.

당시의 상인은 사회적으로 비록 賤視되기는 했으나 儒教의 見利思義的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되며, 더구나 가난한 선비였던 許生의 경영이념이 이와 같은 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한편 이 소설의 저자인 朴趾源은 愛國·愛族的 利他思想이 투철한 실학자였으므로 그의 이와 같은 사상을 許生의 理想鄉 건설과 貧民救濟로 집약시켰다고 볼 수 있다. 즉, 당시는 빈민구제가 정책의 초미의 문제로 되고 있었으므로 그의 愛國·愛族的 利他思想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표현하였다고 생각된다.

2. 李昇薰의 愛國·愛族的 經營理念

南閭 李昇薰은 1864년 평안북도 정주에서 출생하였다. 생후 8개월만에 모친이 별세하였고, 다섯살 되던 해에 부친 李頑柱는 생활고로 온 가족을 데리고 納淸亭⁵⁾으로 이사하였다. 남청정은 경기도의 안성과 더불어 유기제조업의 중심지였다. 이승훈은 남청정으로 이사한지 1년 후에 서당에 입학하여 4·5년간 한학을 배웠다. 이승훈이 9세가 되던 해에 집안에 큰 불행이 닥쳐와서 할머니와 아버지가 2개월 간격으로 별세하여 이승훈 형제는 고아 신세가 되었다. 형 李昇模는 닥치는대로 남의 심부름도 하고 놋그릇을 남의 공장에서 받아 내어 행상을 하였으나 이승훈은 난감하였다. 이승훈의 딱한 사정을 본 어떤 사람의 소개로 이승훈은 林逸權이라는 큰 부잣집에 사환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임일권은 남청정 계일의 부자로서 유기공장을 몇개나 가지고 있었고, 사방방에서는 제품을 도산매하고 있었다. 그는 관후한 어른으로 알려질 정도로 성품이 너그러웠고, 종업원들은 그의 인격에 감복하여 성실히 일하였다. 이승훈은 틈만 있으면 글씨 공부를 하고, 성실하게 임일권의 경영을 보조하였다. 그러다가 14세가 되던 해에 그는 중매로 결혼하게 되었다. 결혼을 계기로 그는 자립계획을 세워서 숟가락 행상을 시작하였다. 임씨로부터 숟가락을 외상으로 구매하여 시장을 순회하면서 판매하는 장돌림, 즉 보부상이 되었던 것이다.

이승훈은 어른 행상들과 매를 지어 약 1년 동안 정주 일대의 장터를 누비다가 점차 황해도의 안악·재령·신천 등지로 활동범위를 넓혔으며 취급하는 유기의 종류도 다양해졌다. 그리고 거래량도 점차 많아져서 등집장수에서 馬販商이 되었다가 牛車를 이용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23세가 되던 해에 그는 유기공장을 차리기 위하여 행상을 그만 두고 남청정으로 돌아왔다. 약간의 상업자본을 축적하였다고는 하나 유기공장과 가게를 차리는데는 자금이 부족하였으

4) 이것은 儒教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예컨대, 「論語」에서 “君子喻於義, 小人喻於利”라 하여 군자는 義에 밝고, 소인은 利益에 밝다고 했다.

5) 納淸亭은 일명 淸亭이라고 불렸다.

므로 그는 부족한 자금을 철산의 부호 吳期州에게서 차입하기로 하였다. 오씨 집안은 吳龍川 · 吳碧瞻과 더불어 중국과의 무역에서 큰 돈을 벌었다. 즉 청나라로 가는 사신을 따라 다니면서 무역으로 부를 축적, 신용이 있고 성실한 젊은이들에게 사업자금을 대어 주고 있었던 것이다⁶⁾. 신의가 있는 이승훈은 오삭주의 인정을 받게 되었고, 납청정에 대규모 유기공장과 가게를 여는데 성공하였다.

그의 기업가능력이 십분 발휘되어 납청정 유기공장의 경영이 순조로웠다. 그런데 1894년 청일전쟁의 발발로 청병들의 횡포가 심하였다. 이승훈은 이 때 가족을 데리고 덕천의 산골로 피난하였다. 청병이 철수한 후인 이듬해 5월 그는 납청정으로 돌아왔다. 납청정 거리는 잡초만 무성하였고, 공장과 상점은 폐허가 되어 있었다. 남은 것은 빚 뿐이었다. 신용을 철칙으로 여기던 그는 모든 재산목록과 부채에 관한 명세서를 자세히 작성하여 오씨택을 찾아갔다. 오씨는 난리 중에 수십명의 채무자가 자취를 감추었는데, 이승훈이 직접 찾아와서 정중히 사과하는 것을 보고 부채를 탕감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금을 더 대어 주면서 대기업가가 되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승훈은 납청정에 돌아와서 공장과 상점을 재건하였다. 그 뒤 사업은 크게 번창하였다. 자본을 축적한 그는 서울과 인천 등지를 출입하면서 수입품인 석유와 洋藥 총대리점을 맡았다. 그의 취급 상품은 그 뒤에 면직물 · 도자기 · 건축재료 등 다양하여졌고, 사세가 크게 확장되었다. 이 시기에는 수입품 뿐 아니라 국내 생산물인 꼬물과 牛皮 등도 취급하게 되었고, 운수업에도 손을 대어 경영을 다각화하였다. 몇해 뒤에는 자본금이 70만냥이 넘을 정도로 유명한 신흥기업가가 되었다.

당대 제일의 신흥기업가이며, 전국 굴지의 무역업자로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경영의 최고 목표를 여기에 두지 아니하였다. 지향한 바는 개인의 안일보다도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보람된 일을 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이승훈은 42세가 되던 1906년 기업경영에서 일단 은퇴하게 되었다. 그가 경영하던 일부 사업을 정리하여 書塾을 설립하고 독서를 하면서 궁리하던 중에 1907년 평양에서 도산 안창호의 강연을 듣고 국권회복을 위하여 헌신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서숙 자리에 서도 지방 최초의 사립 초등학교인 講和義塾을 세우고, 안창호의 동지들과 함께 비밀결사인 新民會를 조직하여 평북 총관으로 맹활동하였고, 五山學校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안창호의 영향으로 1908년에는 평양에 자본금 6만원의 도자기 제조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사장에 취임하였다. 이 회사의 제품은 도처에서 환영받았고, 경영은 성공적이었으나 그의 항일운동 때문에 운영이 어려워져 일본인에게 넘어가고 말았다. 즉, 이승훈은 만주군관학교 사건으로 연좌되어 제주도에 유배되었다가 105인 사건으로 서울에 이송되는 바람에 도자기제조회사 경영이 탄

6) 南岡文化財團編, 「南岡 李昇薰과 民族運動」, 1988년, 22쪽 참조.

격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이승훈은 1910년 기독교 신자가 되어 五山學校의 教育理念을 기독교정신으로 바꾸었다. 그는 1915년에 평양신학교에 입학하여 1년반 동안 신학 공부를 하다가 중퇴하여 교회도 세우고 교육사업에 전념하면서 독립운동을 꾸준히 지속하여 3·1운동 때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 활약하였으며, 3년간 징역언도를 받았다. 오산학교는 1926년에 五山高等普通學校로 승격되었고, 그는 노년기에 이 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다가 66세를 일기로 별세하였다.

이상과 같이 1906년 이전의 이승훈의 의식구조는 대기업가가 되어 여주 아씨 가문을 빛내려는 修身齊家的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였으나, 도산 안창호의 강연을 들은 1907년 이후는 육영사업과 구국운동의 자금조달, 민족자본의 형성을 경영신조로 삼게 되었다.

이승훈의 經營觀 중에서 특이한 것은 關西賚門論이라 하겠는데, 이 관서자문론도 구국이념의 일환으로 제의 되었다고 생각된다. 관서자문론이란 외국자본에 대항하기 위하여 관서지방 부호들이 합동으로 주장을 주창한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지역별로 합자하여 철도와 항만 · 광산 · 공장 등을 건설하여야 외국의 침략을 저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구국하는 길은 육영사업과 더불어 殖產興業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였다. 산업을 일으키려면 무엇보다도 자본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지역적으로 합자하면 이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였으며 구국의 수단으로서 초미의 문제로 간주하였던 것이다.

그는 고매한 인격의 소유자였으며, 기업가적 능력이 뛰어나서 경영에 성공할 수 있었지만, 기업의 이윤추구는 어디까지나 최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아니하였다. 즉, 자기 개인의 명예나 출세를 위해서가 아니라 애국애족적 爰他精神으로 기업을 경영하고, 사회적 환원에 모범을 보인 애국자였다.

3. 李秉喆의 事業報國的 經營理念과 韓國財閥의 形成

삼성그룹의 창업주 湖巖 李秉喆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완전한 植民地로 전락한 1910년에 출생하여 1987년 7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민족적 시련기를 거쳐 고도경제성장기에 활약한 대표적 창업가형 기업가이다.

삼성그룹의 지도원리로 되어 있는 事業報國 · 人材第一 · 合理追求는 바로 창업주 이병철의 경영이념이었는데, 그는 그 중에서도 事業報國의 최고목표가 매우 강하였다. 인재제일과 합리추구는 그 자체로써는 최고목적이 될 수 없고, 궁극적으로 보면 사업보국이 최고목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즉, 인재제일과 합리추구는 기업을 성공적으로 경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신

7) 「만주군관학교 사건」이란 무력으로 나라를 찾기 위하여 남만주에 군관학교를 세우자는 계획이 탄생되어 일본 경찰이 용의자들을 체포하여 처형한 사건이며, 105인 사건은 일제가 꾸며낸 寺內總督 암살음모사건을 가리킨다.

조였지만, 그토록 기업육성에 집념하게 한 것은 사업보국 사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사업보국이란 사업의 창설과 성공적 경영으로 나라의 은혜를 갚는다는 뜻이다. 나라의 은혜를 갚는다는 것은 나라를 위하여 충성을 바친다는 뜻이므로 사업보국은 결국 애국적 경영 이념과 같은 것이다. 이병철이 사업에 투신한 것은 26세가 되던 1936년이었으므로 초기부터 사업보국적 경영이념이 확립되었던 것은 아니다. 일제하에서는 사업에 성공하여 우리 민족이 일본인에게 멸시 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일념으로 協同精米所와 日出自動車會社·三星商會·朝鮮鐵造株式會社 등을 경영하였으나 해방 후에는 사업보국 이념이 형성되었다⁸⁾.

8·15해방은 그에게 있어서 사업보국의 신념을 고취시킨 계기가 되었다. 조선양조주식회사 경영이 순조로워지자 이병철은 새로운 야심적인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는데, 이 시기에 대구를 방문한 이승만 박사를 만나게 되어 사업보국의 의지가 더욱 굳어졌다. 그의 부친 이찬우(李贊雨)는 독립협회 회원들과 어울려 다닐 때 이 박사와 교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병철은 애국자인 이승만 박사를 들어서 잘 알게 되었고, 늘 존경하고 있었는데 이 박사를 만난 뒤로는 사업으로 애국하려는 마음이 더욱 굳어졌다.

이와 같은 굳은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병철은 곧 상경하게 되었고, 1948년 11월에는 서울에서 三星物產公司를 설립하여 무역업에 종사하였다. 당시로서는 무역업이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업종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이 분야로 사업전환을 하였던 것이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존이 국가를 떠나서 있을 수 없듯이 사업 또한 마찬가지다. 사업을 통해서 국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 그것 없이는 나의 인생은 뜻이 없다”⁹⁾고 술회할 정도로 사업보국의 집념이 강하였고, 그 결과 삼성물산공사의 창립을 보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이박사와의 만남을 계기로 이병철은 새로운 인생관이 확립되었고, 한 평생동안 이박사의 애국사상을 행동 지표로 삼으려고 노력하였다. 그는 안일한 방법으로 귀속 기업체를 불하받거나 투기업에 종사함으로써 일화천금을 노리지 아니하였다. 사업보국의 차원에서 그 시대가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국익적 사업을 찾아서 투자하고 합리적으로 경영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하였다.

6·25동란이 발발한 이듬해에 삼성물산공사는 삼성물산주식회사로 새 출발하게 되었고, 그 뒤 第一製糖·第一毛織·三星電子·三星重工業 등 국가와 사회에 필요하고 이익이 되는 업종을 순차적으로 선택하여 투자하고 경영에 성공하였다. 이병철의 多角的 經營은 결국 한국 최초의 財閥의 형성으로 이어졌는데, 이에 대하여 부연하면 다음과 같다.

8) 사업보국이 三星의 지도원리로서 成文化한 것은 1973년에 나온 「三星經營 5個年計劃書」가 처음이지만, (『三星五十年史』 635쪽 참조) 창업주에게 있어서는 그 이전에 이미 사업보국적 경영이념이 형성되어 있었다.

9) 『湖巖自傳』, 46쪽 참조.

6·25동란 초기에 조선양조주식회사는 호황을 맞이하여 단기간에 3억원의 재산을 모았고, 1951년 1월 이것을 자본으로 부산에서 三星物產株式會社를 설립, 무역업으로 크게 성공하였다. 특히 6·25동란 전에 三星物產公司가 홍콩에 紡織柏을 수출한 미수금 3만달러를 받게 되어 삼성물산은 업계의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당시는 물자가 귀하여 수입 품이 날개 돋힌듯이 팔렸다. 그 결과 三星은 무역을 재개한지 불과 6개월만에 10억원의 순이익을 올릴 수 있었다¹⁰⁾.

이병철은 이와 같이 상업자본을 축적하고 1953년 제일제당을 설립하여 產業資本化하는데 앞장 섰다. 이 무렵에는 三義社에서도 제당공장 건설을 서두르고 있었지만, 제일제당이 한 발 앞서 완공되었기 때문에 市場的 機會의 先占者로서 空前의 호황을 누릴 수 있었다. 1953년은 삼성재벌의 형성에 있어서 토대를 구축한 해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아직도 재벌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지나지 아니하였으며 그룹으로 조직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1957년에는 사정이 달라졌다. 삼성물산과 제일제당에서 축적한 자본을 투하하여 第一毛鐵을 창설하고, 대구공장이 가동됨으로써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본격적인 다각적 經營期에 접어든 것도 이 시기이며, 대규모 비료공장의 건설을 구상하여 소비재산업으로부터 重化學工業을 지향하게 된 것도 이 때부터이다. 그리고 이 해에는 曙星物產을 설립하였고¹¹⁾, 興業銀行과 天一證券·東洋製糖을 인수하였다. 그리고 그룹을 총괄하는 비서실이 조직되었고, 사회에서도 三星財團이라고 불렸다¹²⁾.

그리하여 한국재벌의 제1호로서 삼성재벌이 탄생된 셈이다.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財團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즉, 경제력 집중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國際競爭力 차원에서의 긍정론이 그것이다. 이병철의 財團觀은 두 말할 것도 없이 후자에 속한다. 그는 우리나라 재벌의 규모가 외국의 그것에 비하여 너무나 작다고 생각하였다. 재벌형성 30년 후인 1987년의 재벌관을 보면, 미국의 GM사와 연간 매출액은 우리나라 100대기업 매출액의 3배가 넘고, 일본의 豊田·三菱 두 회사의 그것은 우리나라 100대 기업의 매상과 같다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현실에 만족하여 주저앉지 말아야 하며, 기업가의 피나는 노력과 僉念, 그리고 뜨거운 愛國心이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¹³⁾. 그리고 분배문제에 대해서는 종업원의 굽여나 상여의 형태로 자급되는 직접분배와 납세하는 형태의 간접분배를 고려해야 되고, 기업활동에서 얻은 이익을 계속 새로운 사업과 생산확충에 투자하여 국민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은 기업

10) 「三星五十年史」, 111쪽 참조.

11) 뒤에 효성 그룹이 母企業이 되었다. 「東洋나일론十年史」, 74쪽 참조.

12) 金柄夏, 「財團의 形成과 企業家活動」, 한국농협협회, 34쪽 참조.

13) 李秉喆, 「富國論」2. 中央日報 1987년 1월 6일자 참조.

이 국민에게 제공하는 최대의 간접분배라고 생각하였다¹⁴⁾.

재벌의 「문어발式」 다각적 경영이 중소기업의 영역을 침범한다는 비판에 대하여, 이병철은 대기업은 대기업의 특성이 있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의 특성이 있어서 상호보완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대기업은 기술과 경영기법의 전수, 제품의 구입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유형무형으로 지원해야 하고, 중소기업은 독자적으로 기술과 기능을 연마하면서 대기업과의 보완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¹⁵⁾.

이병철의 財閥觀이 그의 事業報國的 경영이념과 부합하는지의 여부는 앞으로 검토되어야 할 과제라 하겠지만, 그는 국익적 차원에서 재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고 생각된다.

III. 21世紀 企業家의 價値觀

1. 새로운 價値觀과 國益的 · 愛他的 經營理念의 確立

溫故知新이란 말이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現在는 過去의 종착점임과 동시에 未來의 출발점이란 관점에서 보더라도 21세기 기업가의 바람직한 가치관에 관하여 고찰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다.

21세기에는 인구폭발과 기근·환경오염 등 비관적 요소가 도사리고 있기는 하나,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고, 보다 부유해지며, 보다 평등한 세상이 된다는 것이 낙관적 미래학자들의 견해이다. 우리는 이제 2000년대를 눈앞에 두고 있고, 高度情報化社會로 급격하게 변화·발전하는 시대적 조류안에 있다. 급변하는 주변 상황 속에서 企業이 勝者가 되기 위해서는 끝없는 革新을 계속하지 않으면 아니되고, 기업가는 과거 어느 때 보다도 확고한 價値觀으로 새로 태어나야 한다. 세계화·개방화·정보화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사회적 패러다임(paradigm)이 형성되면 사상이 달라지게 마련인데, 이런 때일수록 기업가의 확고한 가치관과 그것을 토대로 한 국익적·애타적 경영이념이 요청된다. 즉, 후술하는 바와 같이 기업가는 家門(族閥)이나 출신지역과 같은 小集團을 위한 小集團利己主義보다도 국익적·애타적 大集團利益主義 지향적이어야 하는데, 이것은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의 목적과 모순되지 않는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는 共同善 지향적 기업가 중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이 많이 나왔다. 李秉喆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는 사업보국적 집념이 확고하였기 때문에 대표적 대기업가가 될 수 있었다. 이병철이 늘 강조한 것은 기업은 자선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윤을

14) 위와 같음.

15) 위와 같음. 1월 10일자 참조.

을려야 사회적 책임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이 이윤을 올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 자체가 사업보국일 수 있겠지만, 시장적 기회를 포착하고 국가와 사회가 절실히 요구하는 업종을 택하여 事業擴張과 事業轉換을 하고, 모범적으로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업보국이라는 집념을 가졌기 때문에¹⁶⁾ 작은 成就에 만족하지 않고 만난을 극복하여 大成할 수 있었다고 본다.

善이란 利他的인 것이며, 이타는 즉 愛他이다. 남 또는 어떤 집단에 해를 입히는 利己的 행위가 惡임에 대하여 善은 利他的이기 때문에 애타정신에서 빚어지는 여러가지 仁愛心은 기계화와 자동화가 극치를 이루는 고도정보화사회의 윤활유와 같은 작용을 한다. 이것은 기업가에게도 해당되는 명제이다. 합리주의가 팽배하고 상대적으로 정서가 예마르기 쉬운 사회가 있어서 仁愛心은 리더십의 발휘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愛他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즉, 기업가가 善을 좁은 범위에 미칠 때에는 단순한 善行에 지나지 않으나 그 범위가 크게 확대되면 위대한 행동이 되고 보람도 그만큼 커지는 것이다.

애타의 범위는 점차 汎人類的 차원으로 확대될 수 있으면 이상적이지만, 우선은 國益的 경영이념의 확립이 급선무이다. 우리나라의 애국적 경영이념의 전통을 토대로 급변하는 시대에 있어서 우리 체질에 맞는 국익적 경영이념을 개발하고, 경영의 신조로 삼아야 한다.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그리고 고도정보화사회에 있어서 선진국들이 기술민족주의와 기술패권주의 경향을 띠는 것만 보더라도 국익적 경영이념의 확립은 세계적 조류로 되어 있으며, 그만큼 이 문제는 시급한 것이다. 물론 국익사상은 國粹主義와 다르다. 국수주의는 제나라의 국민적 특수성만을 가장 우수한 것으로 믿고 유지·보존하며, 남의 나라의 것을 배척하는 주의이므로 세계화에 역행할 수도 있으나, 국익사상은 다른 나라의 이익도 인정하며, 共存共榮이 전제되므로 세계화 시대에도 국익적 경영이념의 확립이 필요한 것이다.

2. 共同体的 意識構造의 現代化와 經營理念

21세기 기업가의 가치관 확립에 있어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集團利己主義와 공동체적 의식구조의 관계를 해명하는 것이다. 필자는 오늘날 우리사회에 팽배해 있는 지나친 집단이기주의적 思考의 源源(연원)이 공동체적 의식구조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중심으로 그 현대화와 경영이념에 대해서 논하고, 국익적·애타적 경영이념의 철학적 배경으로서 小集團利己主義의 大集團利益主義로의 전환문제를 이론적으로 구명하려고 한다.

우리나라는 오랜 共同體的 전통을 가지고 있다. 역사적 개념으로서의 공동체란 血緣과 地緣에 의하여 형성되었고, 宗中田과 같은 물질적 기초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族長이라든가 洞

16) 예컨대, 三星電子工業株式會社의 창설은 이와 같은 理念에서 이루어졌다.

中·門中契 동은 공동체가 존속하였기 때문에 생겨난 말들이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사용하기 좋아하는 「우리」란 말만 보더라도 공동체적 전통이 개인함을 알 수 있다. 「내 나라」·「내 마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도 「우리나라」·「우리마을」로 표현한다. 이것은 개인인 「나」가 「우리」라는 공동체에 완전히 매몰되었던 역사적 흔적으로 볼 수 있다. 즉,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나」요, 독립된 「나」가 아닌 것이다.

몇십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기 고향인 농촌을 떠나서 외지로 이주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共同體意識 때문이다. 도시가 발달하고 인구이동이 심해진 오늘날에 있어서는 전통적 공동체의식이 많이 퇴색하였지만 아직도 의식구조에 있어서 그 「遺制」를 흔히 찾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공동체의식은 愛鄉心과 愛族心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인간적인 情을 느끼게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다. 즉,合理化가 저해되고 우물안 개구리 격이 되어 배타적일 수 있다. 그리고 공동체적 유제의 배타적 封鎖的 속성은¹⁷⁾ 集團利己主義로 발전하기 쉽다. 집단이기주의는 개인적 이기주의의 공동체적 연장으로서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우리」가 아니면 「남」이라는 의식구조에서 발생한 것이다. 오랜 공동체 생활을 하는 동안에 人間關係의 遠近觀念이 발달하였고, 그 결과 「우리나라」보다도 「우리마을」이, 그리고 「우리마을」보다도 「우리집안」이 우선이라는 小集團利己主義가 발달하게 되었다.

오늘날 의식구조의 개혁에 있어서 초미의 문제는 바로 이와 같은 소집단이기주의의 극복이다. 소집단이기주의는 혈연이나 지연 등, 여러 인연에 의하여 형성되는데, 이것은 국가 人類 등으로 外延을 넓혀 大集團을 위한 利益主義로 승화시켜야 한다.

소집단이기주의와 대집단이익주의는 규모와 指標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소집단이기주의에 비하여 대집단이익주의는 집단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減私奉公의 대상이 될만하다. 대집단이익주의란 상대적이므로 그 대상은 기업일 수도 있고, 국가 또는 일반사회일 수도 있다. 예컨대, 族閥主義로부터 탈피하고, 기업의 이윤추구에 앞서 국가와 사회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 대집단 이익주의의 정신이다¹⁸⁾.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역사적 개념의 공동체는 사라지게 마련이지만, 類型的概念으로서의 공동체는 어떠한 시대에도 존재할 수 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공동체적 의식구조를 혁신할 시기에 와 있다. 공동체적 의식구조의 혁신문제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지만, 당면한 과제로서 필자는 소집단이기주의를 대집단이익주의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17) 예컨대, 어떤 同姓마을에 他姓의 입장을 與端視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18) 仁材 金性洙는 「公先私後」를 강조하였는데, 公務을 먼저하고 私事을 뒤로 미루는 것은 하나의 대집단이익주의 정신이다(仁材記念會, 「仁材金性洙傳」8쪽 참조).

기업가의 대집단이익주의 지향은 공동체적 의식구조의 현대화를 의미하며, 이와 같은 사상적 배경 하에 國益的 · 愛他的 경영이념이 확립될 수 있는 것이다. 기업가는 급변하는 고도정보화 사회의 와중에서 살아 남으려면 지속적으로 혁신해야 되고, 확고한 국익적 · 애타적 경영이념으로 대집단이익주의를 지향하여야 한다. 즉, 현대적 멸사봉공정신이 절실히 요구되며, 국가가 잘 되어야 그 이익이 기업과 자신을 포함한 여러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신념을 가지고 노력하는 기업가가 승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두 말할 것도 없이 기업은 이윤을 올려야 사회적 책임을 다 할 수 있으므로 기업가는 이윤추구를 소홀히 해서는 아니되지만, 최고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행동양식이 달라지는 것이다. 최고목적으로서 국익적 · 애타적 경영이념이 확립되었을 때, 그리고 價值觀으로서 애타적 대집단이익주의가 확립되었을 때 기업가의 인격이 변화될 수 있고, 리더십을 발휘하여 구성원의 존경하에 계획하고, 조직 · 지휘 · 통제하는 경영활동을 경영자의 지향하는 방향 즉 경영이념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事業擴張과 轉換도 성공적으로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 기업가의 바람직한 가치관으로서의 애타적 대집단이익주의는 실천이 그리 용이하지 않다. 나라가 어떻게 되든 간에 돈만 벌면 된다는 천민자본주의사상에 젖어 있는 기업가일 경우 새 類型의 인간으로 거듭나야 하는데,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리하여 過渡的 형태인 大集團利己主義를 想定하게 되는데, 대집단이기(利己)주의는 애타적 대집단이익주의보다 국익적 성격이 강하여 호소력은 있으나, 조만간에 이것은 애타적 대집단이익주의로 발전하여야 한다.

IV. 맷 음 말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애국 · 애족적 경영이념의 전통이 있다. 그런데 1970~1980년대를 고비로 이와 같은 전통은 퇴조기에 들어갔다.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필자는 21세기의 바람직한 기업가의 가치관을 국익적 · 애타적 대집단이익주의로 본다. 기업가는 이와 같은 가치관을 토대로 시대에 걸맞는 국익적 · 애타적 경영이념을 가질 필요가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공동체적 의식구조의 현대화를 전제로 한 것이라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集團利己主義는 전통화한 공동체적의식구조의 산물이며, 집단이기주의는 小集團利己主義의 경향에서 탈피하고 대집단이익주의로 발전하여야 한다. 과도적으로 존재하는 대집단이기(利己)주의는 대집단이익주의 보다 호소력은 있으나,

이것은 조만간에 국익적이며, 공존공영적인 애타적 대집단이익주의로 발전하여야 하고, 기업가에게는 이와 같은 가치관의 확립이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小集團과 大集團의 의미는 상대적이지만, 愛他도 상대적인 표현이다. 즉, 자기 자신 이외의 다른 사람이나 어떤 집단을 이름처럼 하는 利他가 곧 愛他이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대집단이기주의도 애타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대집단이익(利益)주의가 대집단이기주의보다 外廷이 크고 포용성이 있으므로 21세기 기업가의 바람직한 가치관은 국익적·애타적 대집단이익주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그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다.

英美퓨리턴(基督教)의 企業倫理와 韓國 基督教 企業人의 倫理

黃 明 水*

目 次

- | | |
|------------------|---------------------|
| I. 머리말 | (2) 퓨리턴의 기업윤리 |
| II. 英美퓨리턴의 企業倫理 | III. 韓國 基督教 企業人의 倫理 |
| 1. 英國의 퓨리턴과 企業倫理 | 1. 한국 기독교 기업인의 현황 |
| (1) 퓨리턴의 기업진출 | 2. 한국 기독교 기업인의 윤리 |
| (2) 퓨리턴의 기업윤리 | (설문조사) |
| 2. 美國의 퓨리턴과 企業倫理 | 3. 한국의 유교적 기독교 정신 |
| (1) 퓨리턴의 기업진출 | IV. 맷는 말 |

I. 머리말

本稿에서는 막스 웨버(Marx Weber)가 지적하고 있는 英美的 產業革命期에 있어서의 퓨리턴(puritan : 청교도 : 기독교)의 企業倫理와 韓國의 工業化에 있어서의 기독교(개신교) 기업인의 倫理를 비교·검토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本稿는 時代와 地域이 전혀 다른 英美的 工業화와 韓國의 工業화의 比較研究이지만, 그러한 시대와 지역(時間과 空間)을 초월하여, 기독교(개신교)라는 동일종교를 통해서 東西洋地域의 經濟倫理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그 연구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다시 말해서 영국보다 200년, 미국보다 100년 뒤떨어져서 공업화를 추진하게 된 한국의 경우에는, 그 시대적 배경이나 사회 및 경제환경이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와는 전혀 다르지만, 양쪽 다 공업화 과정에 있어서 기독교(개신교) 기업인의 역할이 크다는 점에서, 영국이나 미국의 퓨리턴(개신교)의 기업윤리와 한국 기독교(개신교)의 기업윤리를 비교하는 것은 그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막스 웨버가 말하는 禁慾的 職業倫理의 소유자인 퓨리턴(청교도)들이 영국이나 미국의 공업화 과정에 있어서 경제성장의 주요한 주진자(Träger)로서 역할하였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에 의해 입증되고 있다.

한편 한국에 있어서는 1960년대에 들어서 추진된 한국의 공업화(소위 고도경제성장)에 있

* 韓國大學校 經濟學科 教授(經博), 本 學會 顧問.

어서 기독교인의 역할도 크게 평가할 수 있다.

영국에서는 國教會(Anglican)나 舊教의 탄압 속에서 비국교도(Non Anglican)인 퓨리언(프로테스탄트; protestants)들이 공업화의 추진력으로서 활동하였으며, 미국의 경우에도 국교회의 탄압을 피해 美대륙으로 이주한 비국교도(퓨리언)들에 의해 북부 뉴잉글랜드(New England)를 중심으로 미국의 공업화가 추진되었던 것이다.

한국에서는 전통적인 儒敎的 文化 속에서 종교적 갈등을 겪으면서 기독교인(개신교)들이 전개한 기업활동이 한국의 공업화에 공헌한 점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서구의 기독교문화 속에서 성장한 퓨리언(개신교)정신과 유교문화 속에서 싹튼 한국 기독교정신은 유사점도 있으나 동일한 것은 아니다. 한국의 기독교정신은 儒敎的 基督敎精神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퓨리언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기독교(개신교, 청교주의)를 탄생시킨 宗敎改革은 루터(Martin Luther; 1483~1546)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新敎(개신교)가 모두 직접 루터의 系統을 승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루터派는 독일에서 지배적이었으나, 독일 이외의 諸國에서의 新敎는 루터보다 오히려 캘빈(Jean Calvin; 1509~1563)의 계통을 승계하고 있다. 캘빈은 루터의 가르침으로부터 출발하였으나, 캘빈 나름의 체계를 구축하였다. 루터의 가르침이 神秘的인 경향을 갖고 있는데 비해 캘빈의 가르침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것이었다. 그러기 때문에 스위스, 프랑스, 네델란드, 영국, 미국 등 독일 이외의 新敎國은 거의가 캘빈의 가르침(캘빈계통)에 따르게 되었다. 清敎主義(puritanism)라는 것은 네델란드, 영국, 미국에 있어서의 퓨리언을 말한다. 그것은 獨立派(Independents), 組合派(Congregationalists), �апти스트派(Baptist 침례교파), 멘노파(Mennonists), 메소디스트파(Methodists 감리교파), 퀼커파(Quakers) 등이다. 청교주의자들은 의롭고 근면한 생활방식(righteous and industrious way of life)에 의해 개인의 영혼과 신과의 직접적 접촉을 강력하게 추구한 것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청교주의자들은 영국에서는 16세기부터 나타났으며, 그 일부는 국교회의 탄압에 못견디어 1620년에 메이플라워(May Flower)호를 몰고 간 것을 위시하여 북미에 건너가 뉴잉글랜드(New England)를 개척하였다. 그리하여 이 신대륙(미대륙)에 청교주의의 정신적 기초를 구축했다. 17세기 중엽 영국에서 크롬웰(Oliver Cromwell; 1599~1658)을 지도자로 하는 청교도혁명도 청교주의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기독교가 한국에 도입된 것은 한말의 1860년 이후이지만, 한국의 기독교는 일제식민지시대의 기독교 탄압기에는 정착하지 못하고, 1945년의 8·15광복 후에 기독교의 교세의 비약적인 확장과 더불어 정착하게 되었다. 즉 한국은 동아시아 유일의 기독교 정착국이 되었으며, 1996년 말 현재 한국종교 인구(2,251만1천명)의 약 38.9%인 876만명이 기독교 신자인 것이

다.

韓國, 日本, 中國 등 東洋諸國에서는 佛教나 儒教精神이 經濟發展 내지 企業發展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비해 한국의 기독교정신이 경제발전 내지 기업발전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한국경제 발전 특히 한국기업 발전에 영향을 미친 기독교정신에 대하여 연구하려 한다.

본고에서는 영미의 연구는 기존의 研究物을 주요자료로 사용하였고, 한국의 경우에는 기독교관계의 통계와 「설문조사」를 주요자료로 사용하였다. 특히 설문조사에서는 기독교인 교수들과 신자들의 많은 도움을 받았다.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II. 英美퓨리턴의 企業倫理

1. 英國의 퓨리턴과 企業倫理

1) 퓨리턴의 기업진출

1760년경부터 시작되는 영국의 산업혁명기에 있어서는 기업가가 여러 계층, 여러 지방에서 배출되었으며, 특히 非國教徒(Non-Anglican), 즉 프로테스탄트(protestant)라고 불리는 퓨리턴(puritan)이 중산층에서 다수 배출되었다.

19세기의 英國企業家 30명의 傳記를 게재한 「實業에 의해 얻은 富」(1884~1887)라는 책자에 의하면 이들 30명의 영국기업인의 출신은 요맨出身 6명, 小職匠出身 6명, 小製造業者 3명, 農業勞動者 2명, 牧師 2명으로 되어 있다. 이를 종교적 측면에서 보면 쿼이커 5명, 메소디스트(감리교) 4명, 유니테리안 4명, 장로교 3명, 조합파 2명, 국교회 2명으로 되어 있다. 國教會를 제외하면 이들 모두가 퓨리턴(개신교) 출신인 것이다(표 1 참조)¹¹⁾.

〈표 1〉

英國 產業革命期 企業家의 宗教

宗 教	人 名(25名)
퀘이커	W. E. Foster, J. Bright, J. Horrocks, J. G. Richardson, E. Pease
메소디스트 (감 리 교)	J. Fielden, I. Holden, H. Mitchell, J. Mason
유니테리안	J. Dawson, Kitsons, J. Fielden, W. Fairbain
長 老 派	A. & E. Henry, P. Fairbain, J. Gladstone
組 合 派	T. Salt, J. Crossley
國 教 會	J. Foster, J. Brown

또한 스마일즈의 「產業家列傳」에 의하면 28명의 기업가 및 발명가 중 14명이 요맨·小職匠·牧師 출신이며, 6명은 부유한 중산계층 출신이며, 8명은 노동계층의 출신이다¹⁾. 이들도 대부분이 퓨리턴家系의出身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영국 산업혁명기의 기업가는 여러 계층, 여러 종교(종파)에서 배출되었으나 그들의 다수는 중산층 출신의 퓨리턴인 것이다.

영국의 산업혁명기에 비국교도 특히 퓨리턴에서 많은 기업가가 배출된 이유로서 다음 점이 지적되기도 한다.

첫째, 中世길드의 지배력이 비교적으로 약한 농촌에서 先貸制度의 발달과 함께 농촌공업이 일어났으며, 길드의 엄격한 규제로 匠人(master)이 되지 못한 遷歷職工(journey man)이나 小匠人(small master)이 도시로부터 농촌으로 이전하여 농촌공업을 일으켰으며, 또한 요맨(yeoman)들이 회사를 창업하여 농촌공업의 추진세력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농촌공업을 중심으로 산업혁명이 일어났다²⁾. 편역직공, 소장인, 요맨 등에서 기업가가 된 사람 중에는 퓨리턴출신이 많았다.

둘째, 비국교도(퓨리턴)들은 官職과 軍의 要職에서 배제됨으로써 그들의 능력은 상공업에서 발휘될 수 밖에 없었으며, 또한 당시에 있어서 신앙을 통한 그들의 가족적인 강한 유대는 그들 상호간의 자본조달과 기업운영을 용이하게 하였다³⁾.

당시의 영국의 공업화는 「自己金融」에 의한 것이었다. 처음에는 자신의 저금이나, 가족, 친지 등의 얼마되지 않는 자금으로 소규모의 공장을 경영하기 시작하였으며, 또한 그들은 「禁慾」의 정신에 의해서 이윤을 축적하고 소위 「利潤의 再投資」에 의해 기업을 눈사람式으로 成長(大規模化)시켜 나갔던 것이다.

셋째 당시 기업에 진출한 퓨리턴은 知的水準이 비교적 높아 기업경영 능력이 비교적 뛰어났다. 애슈턴(Ashton)은 「非國教徒가 대체적으로 중산계급 중에서 비교적 교육의 높은 층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야말로 그들로부터 기업가가 다수 배출된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지적하고 있다⁴⁾.

2) 퓨리턴의 기업윤리

막스 웨버는 영국의 산업혁명을 추진시킨 주체적인 힘이 「資本主義精神」이며, 이 정신은

1) 角山榮, 「新版西洋經濟史」, 學文社, 1986, p. 80.

2) 角山榮, p. 80.

3) 黃明水, 「英美的 產業革命과 Max Weber의 企業家精神」, 「商經論叢」第 8輯, 1969年 11月, p. 72.

4) 金宗炫, 「工業化와 企業家活動-比較史的研究」, 比峰出版社, 1992, pp. 31~32.

5) T. S. Ashton, The Industrial Revolution, 1760~1830,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4, p. 19.

퓨리턴 정신에만 볼 수 있는 금욕적 윤리정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막스 웨버가 말하는 자본주의 정신은 다음과 같다⁶⁾.

자본주의 정신은 勤勉(industry), 節約(frugality), 慎重(prudence) 등의 德性을 실천에 옮기는 금욕적 윤리태도와 이러한 태도 아래에서 영리를 추구하는 이론 바 職業倫理에 관한 정신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퓨리턴의 엄격한 종교생활에서 오는 금욕적 윤리가 信仰(信仰)의 목적이며, 영리의 추구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으며, 직업은 이러한 수단(영리추구)을 실천에 옮기는데 필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금욕적 윤리적 태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영리의 추구는 시인될 뿐 아니라 장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영리의 추구는 「神의 영광을 증가하기 위하여」(in majorem gloriam Dei) 필요한 것이며, 그 수단인 직업은 神으로부터 주어진 使命(召命)으로서 신성한 것이다. 즉 신성한 직업에는 誠意와 誠心을 다하여 종사하며, 勤勉의 정신으로 영리를 추구하고, 영리추구의 결과 얻어진 이익은 절약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절약하여 축적된 이윤은 기업확장을 위해 재투자되는 것이다.

쥘빈(Jean Calvin; 1509~1563)이나 루터(Martin Luther; 1483~1546)의 종교개혁에 근원을 둔 퓨리턴은 세속적인 직업을 神聖한 天職으로 인식하고, 근면과 절약 등 금욕적인 생활이 직업을 매개로 실천되는 것이 그들의 윤리였다. 영리의 추구에서 얻어지는 이익은 그 소가 근면과 절약을 나타내는 바로미터(尺度)가 되는 것이었다. 이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근면과 절약 및 금욕적인 생활을 해 온 증거가 되고, 그것은 바로 신의 영광을 증가하는 것이며, 신에 충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퓨리턴(청교도)의 금욕적 윤리의 실천자가 영국이나 미국에서 산업혁명기에 나타난 일군의 퓨리턴이라고 막스 웨버는 말하고 있다.

막스 웨버가 말하는 자본주의 정신은 요컨대 역사적으로 독립적인 에토스(Ethos)(倫理的性格, 倫理的雰圍氣)를 말하며, 이 에토스의 추진자(Träger)는 부유한 商人이나 地主가 아니고 소규모의 산업기업가(Unternehmer, Entrepreneur)와 임금노동자(Lohnarbeiter)층으로 구성되는 產業的中產階(Gewerblicher Mittelstand)이었다는 것이다.

이들이 영국 산업혁명의 추진력이었다는 것은 앞절에서 논한 바와 같다.

2. 美國의 퓨리턴과 企業倫理

1) 퓨리턴의 기업진출

6) Max Weber, 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 in Gesammelte Augstze zur Religionssoziologie, 1920, Bd. I. SS. 17~206 ; 黃明水, 『企業家史研究』, 檢國大學校 出版部, 1982, pp. 66~69.

영국의 非國教徒(퓨리턴)들이 종교적 박해를 받아 신대륙(미대륙)으로 이주한 것은 17세기초였다. 미국 청교주의의 선구자 The Pilgrim Fathers(영국 청교도단)들이 1620년에 플리머드(Plymouth) 植民地를 건설한 후 1629년에는 매사추세츠(Massachusetts), 1636년에는 로드아일랜드(Rhode Island), 1636년에는 코네티컷(Conneticut) 등의 뉴잉글랜드(New England)의 식민지가 건설되었다⁷⁾.

이 뉴잉글랜드는 막스 웨버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資本主義精神」의 발상지로 되어 있는 곳이다⁸⁾.

미국에 있어서의 근대적인 산업은 1820년 이후 뉴잉글랜드를 중심으로 점차 발달되어 오다가 1840~1860년대에 들어서 도약기(take-off)를 맞이 하였고, 이어서 南北戰爭을 경험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한 것이다.

이러한 미국 산업혁명의 주체적 추진력이 된 것은 農村工業을 기반으로 성장한 「中產的 生產者層」(產業的 中產者層)이었다. 자유로운 뉴잉글랜드의 Town에서 수공업자, 우수한 기술을 가진 직공, 토착소자본가 등이 결합하여 소규모이지만 견실하고 신축성 있는 근대적인 기업을 건설하게 된 것이다⁹⁾.

미국의 산업혁명은, 영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목면공업으로부터 시작하여 선박, 공작기계 등으로 발달하여 갔다. 그러나 19세기의 철도의 발달은 중공업부문의 발달에 큰 자극을 주었을 뿐더러 철도는 미국공업화의 중심적 산업이 되었다. 미국의 근대적 기업가는 이 때는, 木棉工業部門에서 보다도 南北戰爭 이후의 미국산업의 기축이 된 重工業—鐵鋼業 등에서 활동하였다. 19세기에 중공업부문에 있어서 지도적 역할을 한 기업가는 그 대부분이 부유한 상인 계급 출신이 아니고 자영농민의 자제, 中·小職工 및 工場主의 자제들이며 퓨리턴家系의 출신자들이었다¹⁰⁾.

미국에 있어서의 퓨리턴의 정신은 뉴잉글랜드에 이주하여온 퓨리턴으로부터 전파된 것은 앞서 논한 바와 같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벤자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이라고 막스 웨버는 말하고 있다¹¹⁾.

즉 막스 웨버에 의하면 勤勉(industry), 節約(frugality), 慎重(prudence) 등의 德性을 실천에 옮긴 禁慾的倫理精神을 가진 대표적인 거업가의 하나가 프랭클린이라는 것이다¹²⁾.

7) G. L. Beer, *The Origin of British Colonial System, 1578~1600*, 1908.

8) M. Weber, *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 SS. 17~206.

9) 田村光三, 「アメリカにおける經營思想の歴史的考察」, 「新企業原理の研究」, 清明叢書叢書, 1965, pp. 169~170.

10) Frederick L. Allen, *The Big Change, American Transforms Itself, 1900~1950*, 1952, pp. 64~65.

11) M. Weber, SS. 31~34.

12) *The Writing of Benjamin Franklin, I. Autobiography*, pp. 321~339(Weber, ebenda).

프랭클린에 대표되는 퓨리턴정신은 新大陸(美國)에서는 전통적 정신으로서 계승되어 왔던 것이다. 사튼(F. X. Sutton)은 미국의 정신적 유산은 「개인주의」와 「직업노동의 존중」이며, 이것이 퓨리턴의 전통적 정신이라고 말하고 있다¹³⁾.

이러한 전통적인 청교도정신이 점차 產業的 中產層에 침투하여 미국의 공업화=산업혁명의 추진력이 된 것이다.

2) 퓨리턴의 기업윤리

막스 웨버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自敍傳」(Autobiography)을 인용하면서 그의 德性을 칭찬하고 그를 자본주의 정신의 순수한 保有者이며, 그 정신의 실천자이며 產業的 中產層의 대표자라고 하였다. 프랭클린은 節制(Temperance), 沈默(Silence), 規律(Order), 決斷(Resolution), 節約(Frugality), 勤勉(Industry), 誠實(Sincerity), 正義(Justice), 中庸(Moderation), 清潔(Cleanliness), 安靜(Tranquillity), 純潔(Chastity), 謙遜(Humility)의 13가지의 德性을 그의 禁慾的 修練의 日課標에 넣었다(표 2 참조)¹⁴⁾.

위의 13德性에 관한 禁慾的 修練의 日課標를 실현하는 방법으로서는 한 번에 全 德性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고 一定期間내에 한 德性을 습득하면 이어서 두번째 德性을 습득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끝나면 세번째 德性을 습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지막에는 13德性을 모두 습득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처음 1주일간은 節制(temperance)에 대한 德을 습득하고, 다음 주에는 沈默의 德을 습득하고, 세번째 주는 規律을 습득하는 式으로 번호의 순서에 따라 일주일에 한 덕씩 습득하고 마지막 13주로서 전 과정을 마치게 된다. 1년에 4번이 되풀이 되는 것이다.

위의 日課表에서 보듯이 프랭클린은 매일 해당 주의 德性이 실천되었는지 점검할 만큼 치밀하고 엄격한 생활태도를 유지하는데 노력하였던 것이다.

또한 프랭클린은 「An Advice to a Young Trademen」이라는 그 자신의 저작에서 勤勉(industry)과 節約(frugality)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 두 가지의 德性을 지키는 한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프랭클린은 「富裕에 이르는 길」(The Way to Wealth)이라는 책자에서 많은 警句와 格言을 인용하고 있다. 이들 중 그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勤勉과 節約에 관하여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¹⁵⁾.

13) F. X. Sutton, *The American Business Creed*, Harvard University Press, 1956.

14) *The Writing of Benjamin Franklin*, I, *Autobiography*, p. 321, p. 339 : L. Jesse Lemisch, *BENJAMIN FRANKLIN—The Autobiography and Other Writings*, New York, The New American Library, Inc. 1961, p. 95.

15) *The Writing of Benjamin Franklin*, III, pp. 409~418 : 松本慎一・西川正身 譯, 「フランクリン自傳」,

〈표 2〉

프랭클린의 13德性과 戒律

德性(Virtues)		戒律(Precepts)
1 節制 (Temperance)		먹기 싫어질 때까지 먹지 말라. 취할 때까지 마시지 말라.
2 沈默 (Silence)		自他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말은 하지 말라. 함부로 지껄이지 말라.
3 規律 (Order)		事物은 모두 그 위치를 정하여 그 정해진 자리에 두어라. 일은 모두 시간을 정하여 행하라.
4 決斷 (Resolution)		해야 할 일은 행하여야 한다고 결심하라. 결심한 일은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
5 節約 (Frugality)		自他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것에 돈을 쓰지 말라. 즉 낭비하지 말라.
6 勤勉 (Industry)		시간은 浪費하지 말라. 항상 무언가 이익이 되는 일에 종사하라. 필요없는 행동은 모두 삼가하라.
7 誠實 (Sincerity)		거짓으로 남을 해치지 말라. 마음은 순수하고 공정하게 가져라. 말을 할 때도 이와 같이 하라.
8 正義 (Justice)		남의 일을 손상하거나 혹은 주어야 하는 것을 주지 않고 남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9 中庸 (Moderation)		極端을 피하라. 가령 불법을 당하여도, 분노할 일이라고 생각하여도 분노를 삼가하라.
10 清潔 (Cleanliness)		身體, 衣服, 住居에 대한 불결을 묵인해서는 안 된다.
11 安靜 (Tranquillity)		사소한 일, 일상적인 일, 또는 피하기 어려운 일에 대해 安靜을 잊지 말라.
12 純潔 (Chastity)		性生活은 오직 건강 내지 자손을 위해서만이 행하고 이에 몰두하여 두뇌를 둔하게 하거나, 신체를 약하게 하거나 혹은 自他的平安 내지信用을 상하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13 謙遜 (Humility)		예수님 및 소크라테스를 모방하라.

자료 : L. Jesse Lemisch, ed., VENJAMIN FRANKLIN-The Autobiography and Other Writings, New York, The New American Library, Inc., 1961, p. 95.

岩波文庫, (1992年 9月 5日 第 48刷), pp. 273~291; 大槻久雄・安藤英治・内田芳明・住友一彦 著, 「マクス: ウエーバー研究」, 岩波書店, 1969年 8月 10日 第6刷, pp. 134~135 参照。

(1) 勤勉

실천해야 할 덕목으로서 첫째의 德目은 勤勉이다. 저 유명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早寢早起), 건강하고, 부유하고, 혁명하게 된다.」라는 格言이 여기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그것은 머리속만의 勤勉尊重으로서는 안된다. 「希望으로 먹고 살고 있는 사람은 굶어 죽을 것이다.」「오늘 중에 일하라.」「시간은 돈이다.」라는 것은 이러한 뜻이다. 「오늘의 하나는 내일에는 두 개의 가치가 된다.」「장갑을 끼자 말고 道具를 사용하라.」「餘暇란 무언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시간이다.」「여가와 태만은 별개의 것이다.」「잠을 자고 있는 여우는 닭 한 마리라도 잡을 수가 없다.」「잠을 자고 싶으면 묘지에 들어가고 난 뒤에라도 조금도 늦지 않는다.」「아침 늦잠을 자는 사람은 하루 종일 달려도, 밤이 되어도 일에 따라 갈 수 없다.」이 세상에서 시간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시간의 낭비야 말로 제일 가는 사치」임에 틀림없다. 「아직 시간이 충분하다는 것은 항상 틀림없이 시간부족으로 끝난다.」

그런데 「勤勉」도 「慎重」이나 「細心」에 의해서 충분히 뒷받침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노력을 하여도 「勤勉」은 현실적으로 富裕를 초래하지 않게 될 것이다. 「작은 不注意가 큰 실패를 낳는다.」 그리고 「못 한 개가 모자라서 말굽(馬蹄)이 못쓰게 되고, 말굽 한 개가 모자라서 말(馬)이 못쓰게 되고, 말 한 마리가 모자라서 기수(騎手)가 쓸모없게 된다.」

위와 같이 프랭클린은 근면의 중요성과 더불어 근면을 성공에 이르게 하기 위한 신중, 세심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 節約

「우리들이 한층 더 확실히 勤勉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이들(근면과 세심)에 節約을 추가해야 한다.」「裕福하게 되고 싶으면 (돈을) 버는 것 뿐만 아니라 절약하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어리석은 낭비는 그만 두어라.」「화폐(돈) 가치를 알고 싶거든 돈을 빌려(차입)보아라. 돈을 빌리러 가는 것은 술품을 느끼러 가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요없는 것을 위해 돈을 빌린다는 것은 미친 짓이다.」 그것은 「너의 자유를 타인에게 주는 것과 같은 것이다.」「借金者는 貸金者의, 債務者는 債權者의 奴隸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 쇠사슬을 가볍게 보지 말라. 너의 자유를 잃지 말라. 너의 독립을 유지하라. 근면하고 자유로워라. 겸손하고 자유로워라.」

프랭클린에 의하면, 富裕하게 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警句나 格言에 보이듯이 勤勉·節約·慎重 등의 德性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富裕에 이르는 길은 市場에 가는 길과 같은 정도로 명확한 것이다.」라고 한다.

프랭클린의 말에서 보이는 倫理的 德目的 실천의 결과는 반드시 「貨幣利得」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貨幣利得은 사람들이 倫理的 諸德目을 현실적으로 실천한 결과이며, 그 증명인 것이다.

즉, 「時間」은 貨幣이며, 「勤勉」은 貨幣이며, 「信用」은 貨幣이며, 「節約」은 貨幣이며, 「慎重」은 貨幣라고 생각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倫理的 諸德目的의 실천은 貨幣利得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貨幣利得, 즉 善利가 勤勉, 信用, 節約, 慎重 등의 諸德目과 결합됨으로써 倫理的義務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영리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倫理的意義가 주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다.

끝으로 프랭클린은 「勤勉」, 「節約」, 「慎重」 등의 禁慾的 諸德性을 수련에 의해서 채득하고, 그것을 실천하도록 노력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부유하게 되고, 반대로 그 실천을 소홀히 하면 가난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프랭클린에 있어서는 「富裕에 이르는 길」이란 바로 「道德的 完成에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되어 있는 것이다.

이상의 벤자민 프랭클린의 경구나 격언에서 보이듯이 미국에 있어서의 퓨리턴의 윤리는 미국공업화-자본주의 발달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던 것이다.

III. 韓國基督教 企業人의 倫理

1. 한국기독교 기업인의 현황

1996년도 발간의 「한국의 사회지표」(한국 통계청)에 의하면 한국의 기독교 인구는 876만 명이며, 불교는 1,032만명이다(불교 10,321천명, 개신교(기독교) 8,760천명, 천주교 2,951천명, 유교 211천명, 천도교 28천명, 대종교 등 기타 240천명).

<표 3>에 의하면 1994년 현재 전 인구 중 불교신자 48.8%, 기독교신자 36.4%, 천주교(카톨릭)신자 11.8%의 순으로 되어 있다. 3년 전의 1991년에 비해 불교는 51.2%에서 48.8%로 신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비해 기독교신자 수는 동기간에 34.4%에서 36.4%로 증가하고 있다. 기독교는 주로 市部의 도시에서 불교는 주로 郡部의 농촌지역에서 그 신자 수가 많다.

연령별로는 30세 미만에서는 기독교신자 수가 많은데 비해 40세 이상 특히 5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불교신자 수가 많다.

한국의 불교는 1,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비해 한국 기독교의 역사는 120여년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기독교가 정착하기 시작한 1945년 8·15광복 이후부터 계산하면 50여년의 역사 밖에 되지 않는 한국 기독교의 신장은 비약적인 신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종교단체 수의 변화추이」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즉 종교단체 수의 변화는 기독교의 경우 1986년의 69.9%에서 5년 후의 1991년에는 72.5%로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표 3>

韓國의 宗教 人口 比率

	宗教人口 比率	宗教類型別 宗教人口 構成比							
		佛教	基督教 (改新教)	天主教 (가톨릭)	儒教	圓佛教	天道教	其他	
1991	全國	54.0	51.2	34.4	10.6	1.8	0.6	0.3	1.1
1994	全國	49.9	48.8	36.4	11.8	0.8	0.6	0.2	1.4
	市部	51.3	46.2	38.0	13.1	0.6	0.6	0.2	1.4
	郡部	45.1	59.0	30.5	6.8	1.7	0.7	0.2	1.1
	男	41.9	48.3	36.7	11.5	1.4	0.7	0.2	1.2
	女	57.4	49.1	36.4	11.8	0.3	0.7	0.2	1.1
	15~19歲	40.8	27.9	55.4	15.0	0.2	0.5	0.0	1.0
	20~29歲	38.7	37.1	47.7	12.6	0.5	0.5	0.3	1.3
	30~39歲	51.8	47.2	37.9	12.3	0.2	0.8	0.2	1.4
	40~49歲	57.5	53.2	31.8	12.5	0.5	0.5	0.2	1.2
	50~59歲	58.8	61.1	25.2	9.4	1.5	0.9	0.2	1.7
	60歲以上	57.1	62.2	24.0	9.3	2.1	0.7	0.4	1.4

자료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95, p. 235에서 발췌.

같은 기간에 불교단체 수는 21.9%에서 19.6%로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¹⁶⁾.

기독교는 8·15광복 이후 그 신자 수나 종교단체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그 증가 속도도 해마다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 「東아시아에서 唯一하게 기독교가 정착한」 나라가 한국이며,¹⁷⁾ 한국의 기독교는 해마다 빠른 속도로 그 教勢를 확장해 가고 있는 것이다.

<표 4>는 연도별 종교계 사업체 설립 수를 나타낸 것이다. 同表에 의하면 1960년 이후만 보더라도 신규회사의 설립 수는 기독교계 단체사업의 설립 수가 불교계의 그것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1년 6월 현재 기독교계 단체 사업체 수는 27,804개업체(73.54%)에 비해 불교계 단체 사업체 수는 7,546개업체(19.96%)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기독교계의 교세확장과 더불어 사업화장이 진행되어 온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더욱 1960년에서 1979년까지의 소위 고도경제 성장기에는 불교계와 기독교계의 종교단체 사업체 수는 모두 증가속도가 빠른데 비해 1987년의 「민주화 선언」 이후에는 불교·기독교의 양계 단체 모두 기업체의 증가 수가 감소하고 있다.

16) 한국컴퓨터선교회 편, 「통계로 보는 우리사회」, 도서출판 컴퓨터선교회, 1995, p. 84.

17) 浅羽良昌 編著, 「國際經濟史-歐米とアジア」(第6章, 韓國一分斷國家の光と影), 東京, ミネルウ・ア書房, 1996年 4月, p. 203.

(표 4) 연도별 종교계 사업체 설립 수 (단위 : 개)

	1959년 이전			1960~1969년			1970~1979년			1980~1984년		
	신규	승계	계	신규	승계	계	신규	승계	계	신규	승계	계
종교단체	4,958	506	5,464	3,329	309	3,638	5,982	551	6,533	5,207	479	5,686
불교	1,486	228	1,714	886	110	996	1,418	200	1,618	1,000	141	1,141
기독교	3,011	243	3,254	2,034	117	2,151	4,090	339	4,429	3,866	321	4,187
천주교	324	24	348	295	14	309	284	6	290	177	11	188
천도교	14	2	16	13	—	13	15	—	15	12	—	12
달리 분리 되지 않은 종교단체	123	9	132	101	7	108	175	6	181	152	6	158

1985~1986년			1987~1988년			1989년			1990년		
신규	승계	계	신규	승계	계	신규	승계	계	신규	승계	계
2,953	286	3,239	4,398	426	4,824	3,392	278	3,670	2,768	245	3,013
459	90	549	553	103	656	343	58	401	265	46	311
2,350	188	2,538	3,643	308	3,951	2,909	211	3,120	2,400	196	2,596
63	5	68	88	10	98	46	4	50	24	2	26
6	—	6	3	2	5	6	—	6	3	—	3
75	3	78	111	3	114	88	5	93	76	1	77

1991. 1~1991. 6			총 합 계			
신규	승계	계	(A) 신규	(B) 승계	(C) 합계(A+B)	(C) 의 구성비(%)
1,581	159	1,740	34,568	3,239	37,807	100.00
138	22	160	6,548	998	7,546	19.96
1,385	132	1,517	25,688	2,116	27,804	73.54
12	2	14	1,314	78	1,392	3.68
2	—	2	74	4	78	0.21
43	3	46	944	43	987	2.61

자료 : 통계청, 「총사업체 통계조사 보고서」, 제1권 전국편, 1991년, pp. 640~641에서 작성.

위의 한국 기독교의 발전현황에서 엿볼 수 있듯이 한국의 기독교가 한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공헌은 큰 것이다.

2. 한국 기독교 기업인의 윤리

국민의 약 30%가 기독교(개신교)인 한국에 있어서 기독교 윤리의 기본원리인 「믿음, 사랑, 소망」을 바탕으로 한 勤勉의 윤리 즉, 「일하지 않는 자는 먹어서는 안된다」¹⁸⁾는 勤勉倫理가 한국의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은 큰 것이다. 한국이 소위 기아경제(hungry economy)에서 풍요의 경제(abundant economy)로 성장한 것은 한국인의 勤勉에 의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에 있어서 「경제적 富의 원천은 勤勉이었다고 하는 思考態度의 成立에 크게 역할한 것이 기독교 경제윤리(勤勉倫理)인 것이다. “背景”的 原理(權力者나 有力者와의 특별한 연계가 경제적 성공을 초래한다는 원리)를 타파하여, 경제적 성공은 勤勉, 教育에 의해서만이 실현된다는 意識을 보급시킨 것이 기독교의 경제윤리였던 것이다」¹⁹⁾.

한국경제가 1960년대 초의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 수준에서 1996년 말 1만2천달러 수준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에는 기독교의 경제윤리인 勤勉과 教育의 역할이 크게 기여하였던 것이다.

이하에서 「설문조사」를 통하여 한국 기독교 기업인의 경제윤리에 대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설문조사〉

한국 기독교 기업인의 경제윤리를 살펴보기 위하여 1997년 6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1개월간), 기독교 기업인(실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자 222명 중 무효 11명을 제외한 211명의 회답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宗 派

順位	宗 派	人員數(名)	比率(%)	順位	宗 派	人員數(名)	比率(%)
1	장로교	109	51.7	4	기타	13	6.2
2	감리교	63	29.9	5	침례교	6	2.8
3	가톨릭교	20	9.5	-	무응답	0	0.0

응답자 211명 중 장로교 109명(51.7%), 감리교 63명(29.9%), 침례교 6명(2.8%)으로서

18) 「聖經」,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19) 濟羽良昌, 前揭書, p. 203.

이들 세 종파가 전체의 84.4%를 차지하고 있다. 기타 13명(6.2%)은 순복음교회라고 응답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합하면 90.5%가 기독교(개신교)신자인 것이다.

2. 教會職分

順位	教會職分	人員數(名)	比率(%)	順位	教會職分	人員數(名)	比率(%)
1	집사	72	34.1	5	안수집사	22	10.4
2	권사	37	17.5	6	기타	14	6.6
3	성도	36	17.1	7	목사	3	1.4
4	장로	25	11.8	-	무응답	2	0.9

응답자의 교회 직분은 집사(34.1%), 안수집사(10.4%), 권사(17.5%), 장로(11.8%) 등 73.8%가 집사 이상의 직분을 갖고 있다. 평신도(성도 17.1%+기타(평신도) 6.6%)는 23.7%이다.

3. 會社所在地

順位	會社所在地	人員數(名)	比率(%)	順位	會社所在地	人員數(名)	比率(%)
1	서울특별시	162	76.8	4	기타	4	1.9
2	경기도	38	18.0	-	무응답	0	0.0
3	인천직할시	7	3.3				

응답자의 회사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76.8%, 경기도 18.0%, 인천직할시 3.3%이다. 기타 1.9%는 전북 익산이다.

4. 年 齡

順位	年 齡	人員數(名)	比率(%)	順位	年 齡	人員數(名)	比率(%)
1	50대	92	43.6	4	30대	24	11.4
2	40대	52	24.6	5	20대	10	4.7
3	60대	33	15.6	-	무응답	0	0.0

응답자의 연령은 59.2%가 50대 이상이지만, 30~40대가 24.6%를 차지하고 있다. 즉 폭넓은 연령층에서 응답하고 있다.

5. 信仰年數

順位	信 仰 年 數	人員數(名)	比率(%)	順位	信 仰 年 數	人員數(名)	比率(%)
1	20년 이상	76	36.0	5	5년 이하	19	9.0
2	20년 이하	37	17.5	6	3년 이하	17	8.1
3	10년 이하	32	15.2	-	무용답	3	1.4
4	15년 이하	27	12.8				

신앙연수는 15년~20년 이상이 53.5%이다. 이 중 20년 이상이 36.0%로서 비교적 신앙연수가 긴 편이다. 권사나 장로는 20년 이상의 신앙연수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6. 職場職位

順位	職 場 職 位	人員數(名)	比率(%)	順位	職 場 職 位	人員數(名)	比率(%)
1	대표이사(사장)	118	55.9	4	회장	8	3.8
2	기타	52	24.6	5	명예회장	2	0.9
3	이사(부장)	28	13.3	-	무용답	2	0.9

60.6%가 사장(55.9%), 회장(3.8%), 명예회장(0.9%) 직에 있다. 이사급 13.3%를 합하면 73.9%가 경영권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것이다.

7. 業 種

順位	業 種	人員數(名)	比率(%)	順位	業 種	人員數(名)	比率(%)
1	제조업	61	28.9	4	상업	33	15.6
2	서비스업	56	26.5	5	금융업	10	4.7
3	기타	48	22.7	-	무용답	3	1.4

71.0%가 「제조업」(28.9%), 「서비스업」(26.5%) 및 「상업」(15.6%)의 종사자이다. 기타(22.7%)는 자영업, 교육관계 종사자, 행원 등이다.

8. 經營理念(經營 哲學 等)(內容項目의 出現頻度)

順位	經營理念	比率(%)	順位	經營理念	比率(%)
1	성실	48.8	9	회생	4.3
2	신용	28.4	10	검소	3.3
3	인화	27.0	11	애국	2.9
4	정직	26.6	12	단결	2.4
5	근면	18.5	12	기타	2.4
6	봉사	14.7	14	폐기	0.5
7	협동	11.8	-	무응답	2.8
8	도전	5.6			

주 : 회답인원 211명.

경영이념은 「성실」(48.8%), 「신용」(28.4%), 「인화」(27.0%), 「정직」(26.6%)의 순서로 되어 있으며, 그 다음 단계는 「근면」(18.5%), 「봉사」(14.7%), 「협동」(11.8%)의 순서로 되어 있다.

9. 經營方針(모토)(內容項目의 出現頻度)

順位	經營方針	比率(%)	順位	經營方針	比率(%)
1	인간존중	41.7	7	연구개발	11.4
2	합리경영	36.1	8	생명존중	8.5
3	창조·창의	34.6	9	사업보국	3.3
4	품질향상	22.3	10	과학제일	1.8
5	기술개발	19.9	11	기타	1.9
6	인재제일	12.8	-	무응답	5.6

주 : 회답인원 211명.

경영방침은 「인간존중」(41.7%), 「합리경영」(36.1%), 「창의 창조」(34.6%)의 순서로 되어 있으며, 그 다음 단계는 「품질향상」(22.3%), 「기술개발」(19.9%)의 순서로 되어 있다.

10. 事業目的(企業動機)(內容項目의 出現頻度)

順位	事業目的	比率(%)
1	내가 하고 싶은 일이기 때문에 사업을 한다.	45.0
2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사업을 한다.	44.1
3	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위해 사업을 한다.	41.2
4	돈을 벌어서 남을 도우기 위해 사업을 한다.	28.4
5	선교활동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사업을 한다.	25.6
6	돈이 제일이다.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	9.0
-	무응답	6.6

주 : 회답인원 211명.

사업목적은 「가족부양」(45.1%), 「내가 하고 싶은 일」(45.0%), 「사회와 국가발전」(41.2%)의 순서로 되어 있으며, 그 다음 단계는 「남을 돋기 위해서」(28.4%), 「선교활동」(25.6%)의 순서로 되어 있다.

11. 企業利潤의 社會還元(內容項目의 出現頻度)

順位	企業利潤의 社會還元	比率(%)
1	사회에서 소외된 자(장애인, 무의탁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를 위해 회사한다.	45.0
2	교회(선교)를 위해 회사한다.	44.6
3	가족 및 친척의 안전과 장래를 위해 저축한다.	33.6
4	교육기관(장학금, 학교건축 등)에 회사한다.	26.0
5	환경사업, 지역사회사업 등을 위해 회사한다.	22.8
6	국가적인 사업을 위해 회사한다.	13.8
7	기타	2.8
-	무응답	11.4

주 : 회답인원 211명.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은 「사회에서 소외된 자」(45.0%), 「교회(선교)」(44.6%), 「가족 및 친척을 위한 저축」(33.6%)의 순서로 되어 있으며, 그 다음 단계는 「교육기관」(26.0%), 「환경사업 및 지역사회사업」(22.8%)의 순서로 되어 있다.

12. 正直性

順位	正 直 性	人員數(名)	比率(%)
1	정직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킨다.	98	46.4
2	정직하게 신고한다.	82	38.9
3	정직하면 손해를 본다.	15	7.1
4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정직하지 않아도 된다.	12	5.7
-	무응답	4	1.9

「정직」을 준수하는 정신이 85.3%('정직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킨다')(46.4%), 「정직하게 신고한다」(38.9%)를 차지하고 있다. 정직은 기업인이 지켜야 할 중요한 윤리가 되어 있다.

13. 信用性

順位	信 用 性	人員數(名)	比率(%)
1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193	91.5
2	약속은 필요에 따라 지킨다.	12	5.7
3	약속은 피해를 안주면 안지켜도 된다.	2	0.9
4	상대가 약속을 안지키면 나도 안 지킨다.	1	0.5
-	무응답	3	1.4

91.5%가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라고 응답하고 있다. 이는 신용을 중시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14. 從業員觀

順位	從 業 員 觀	人員數(名)	比率(%)
1	사장과 종업원은 가족관계와 같다.	100	47.4
1	사장과 종업원은 서로 상대의 인격을 존경해야 한다.	100	47.4
3	사장과 종업원은 군신관계와 같다.	4	1.9
4	사장과 종업원은 그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존경할 필요가 없다.	2	0.9
5	기타	2	0.9
-	무응답	3	1.4

「사장과 종업원은 가족관계와 같다」와 「사장과 종업원은 서로 연격을 존중해야 한다」가 각각 47.4%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家族主義經營에서 勢使平等主義經營으로 점차 옮겨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위의 설문조사를 종합하면 응답자의 90.5%가 기독교(개신교)이며, 교회 직분은 집사 이상이 73.8%이며, 59.2%가 50대 여성의 연령층이다. 또한 신앙연수 15년 이상이 53.5%, 이 중 20년 이상이 36.0%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은 다년간 기독교 선자로서 활동하여 온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응답자의 직장 직위를 보면 73.9%가 경영권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으며, 이들이 종사하고 있는 업종은 71.0%가 제조업, 서비스업 및 상업이다.

이상에서 보이듯이 본 설문조사에 응답한 기독교 기업인은 설문조사의 대상자로서 그 여건을 충분히 갖춘 책임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응답자의 경제윤리관에 대하여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경영이념에서 「성실」, 「신용」, 「인화」, 「정직」을 중요시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윤리의식이 진전함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성실, 신용 및 정직은 商道나 企業倫理의 正道를 나타내는 것이며, 또한 그것은 合理經營의 기본윤리이기도 한 것이다. 인화는 구성원의 결속, 단결 및 협력을 나타내는 것이며, 가족경영의 경우에는 가족 내자 친인척의 결속을 나타내는 것이다.

둘째, 경영방침 또는 경영모토로서 「인간존중」, 「합리경영」, 「창의 창조」가 중요시 되어 있다. 한국경제가 성숙단계에 있는 현단계에서 「인간존중」, 「합리경영」, 「창의 창조」가 경영 방침으로서 제시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응답자들은 시대의 흐름을 적절히 파악하고 있는 셈이다.

셋째, 사업목적(기업동기)을 보면, 「가족부양」,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주요사업 목적이 되어 있어, 우리나라 기업풍토 전반에 보이는 家族中心思考 즉, 血緣的 家族經營思考와 自己中心思考가 강함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事業報國思想에 해당하는 「사회와 국가발전」도 일부에서는 그 사업목적으로 주장되고 있다.

넷째,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에 관하여 보면, 「사회에서 소외된 자(장애인, 무의탁노인, 소년소녀가장 등)」와 「교회선교」를 위해 기업이윤을 사회에 환원(회사)하겠다는 정신은 기독교의 사회봉사와 선교활동정신을 직선적으로 표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웃에 대한 사회봉사와 선교활동(복음전파)은 기독교인이 실천해야 하는 중요한 의무 중의 하나이다. 한편 기업이윤을 「가족 및 친척을 위해 저축한다」는 사고가 33.6%나 된다는 것은 한국사회의 家族主義思考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기독교 실업인(기업인)의 직업윤리를 보다 직선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정직성」

과 「신용성」을 문의하였다. 이미 경영이념의 조사에서 「성실」과 함께 「정직」과 「신용」에 대한 많은 회답을 얻었으나, 「정직성」과 「신용성」에 대한 단도직입적인 문의에 대해서 85.3%가 「정직」을 준수하고, 91.5%가 「약속(신용)」을 지킨다고 응답하고 있어, 높은 직업윤리와 商道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合理主義精神도 엿볼 수 있다.

여섯째, 경영진의 종업원관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가부장적 온정주의(사장은 종업원에게 온정을 배풀고 종업원은 사장에게 충성을 한다), 즉 가족주의경영에서 종업원의 인격을 존중하는 소위 노사인격평등주의경영으로 상당히 옮겨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가족경영관이 47.4%라는 것은 가족지배형 회사운영 형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적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한국의 유교적 기독교정신

宋丙洛 교수는 한국과 일본은 新儒教倫理國家라고 한다. 송교수는 儒教+基督教=新儒教라는 공식을 설정하고 있다²⁰⁾. 儒教는 근본적으로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강조하는 水平的宗教이고, 基督教는 인간과 신의 수직관계와 인간과 인간의 수평관계의 兩關係를 중시하는 종교라고 그는 말하고 있다²¹⁾.

이와 같은 유교와 기독교가 접목된 것이 新儒教라는 것이다.

송교수에 의하면 「한국과 일본은 양쪽 다 신유교 윤리국가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일본은 神道의 영향을, 한국은 샤마니즘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臺灣사람은 道教思想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²²⁾고 한다.

그리고 송교수는 新儒教에서 중요시하는 것은 家庭倫理라는 것이다. 「기독교가 교회종교라면, 유교는 가정종교이다. 신유교윤리가 중시하는 것은 가정이다. 한국, 일본, 대만인의 공동체주의는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서양의 개인주의국가에서는 복지도 국가복지나 사회복지가 되지만, 한국, 일본, 대만에서는 국가복지보다 가정복지가 중시된다」²³⁾고 송교수는 말하고 있다. 요컨대 송교수의 견해에 따르면 한국이나 일본은 유교와 기독교가 접목된 신유교국가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유교윤리가 지배하고 있는 국가는 것이다. 송교수는 「한국사람과 일본사람의 몸에는 유교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할 정도로 유

20) 宋丙洛 著, 李貞美 譯譯, 「韓國は日本を追い越す」, 東京, 株式會社リバティ書房, 1995年 12月, p. 292, p. 293 참조 ; 宋丙洛, 「韓國經濟論」(第3版), 博英社, 1996년 pp. 145~151에 신유교윤리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21) 宋丙洛(日本語 譯), p. 292, p. 294.

22) 同上, p. 294.

23) 同上, p. 298.

교사상이 강하다」²⁴⁾고 말하고 있다.

송교수의 견해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인은 新儒敎主義者이며, 신유교정신의 소유자인 것이다. 즉 우리의 전통적인 유교와 기독교가 접목되어 신유교가 탄생하였지만 그 근본정신은 유교정신이라는 것이다.

송교수는 우리나라를 일본, 대만 등과 같은 기준에서 新儒敎國家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대만과는 달라서 기독교 인구수에 있어서나 기독교의 보급속도면에 있어서 일본이나 대만보다 훨씬 앞서고 있다.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기독교가 정착한 유일한 나라이며, 1996년말 현재 종교인구 2,251만1천명 중 38.9%인 876만명이 기독교인이다²⁵⁾. 기독교 인구는 1991년 34.4%에서 3년 후의 1994년에는 36.4%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반해 불교는 同期間에 51.2%에서 48.8%로 감소하고 있다²⁶⁾.

그러나 일본의 기독교 인구는 전인구의 1.2%(1990년)에 지나지 않는다²⁷⁾.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우리나라를 일본과 같은 「신유교」국가라고 말하기보다는 기독교인에 대해서는 유교적 기독교주의, 그리고 불교나 유교 등 비기독교인에 대해서는 유교주의라고 二分하여 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²⁸⁾.

따라서 본고에서는 「儒敎+基督教 = 儒敎的基督教」라고 규정하여 한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한국의 기독교 직업인은 「儒敎的基督教倫理」, 혹은 「儒敎的基督教精神」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기독교인은 「長幼有序」, 「仁義禮智信」, 혹은 「敬老思想」, 「恩情主義」 등이 근원이 되어 있는 전통적인 유교윤리를 고수하면서 이러한 유교윤리에 「合理主義」 및 博愛精神(隣人愛), (合理主義十宗教倫理)로 대표되는 기독교윤리를 접목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基督

24) 同上, p. 292. 「儒敎에 있어서는 인간과 신의 관계를 중시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사람과 일본사람 가운데는 유교를 宗教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儒敎思想에 물들어 있다. 투웨이밍(Tu Wei-Ming) 교수나 에드워 라이샤워(Edwin Reischauer) 교수는, 한국과 일본은 전통적인 유교사상에 기독교사상을 접목하여 新儒敎倫理를 탄생시켜, 자본주의 경제를 끌어내리고 있으나 경제윤리면에서는 基督敎倫理에 젖어 있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宋丙洛, pp. 293~294).

25) 한국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96년 참조.

26) 한국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95년, p. 235 참조.

27) 宋丙洛, p. 291 참조(주 28참조).

28) 한국은 基督敎人口가 全國民의 약 4분의 1이며, 일본의 기독교인구수는 전국민의 1.2%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일본의 기독교인구는 모두 사회지도층이다. 일본에서는 기독교가 사회지도층으로부터 전파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그 영향이 매우 커졌다.」「일본에서 신자수가 많은 종교는 神道이며, 그 다음이 佛敎이다.」「그러나 「에드워 라이샤워(Edwin Reischauer) 교수에 의하면 일본인에게는 사상적으로 유교와 기독교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宋丙洛, pp. 291~292). 이러한 라이샤워 교수의 견해에 따라 宋丙洛 교수도 일본을 新儒敎國家로 규정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일본을 「儒敎+基督教=新儒敎」라고 규정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일본은 기독교인구가 너무 적기 때문이다.

教的合理主義 및 隣人愛의 정신은 유교적 윤리보다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것은 매년 급신장하고 있는 기독교 교세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하에서 傳統的인 儒敎人과 儒敎的 基督敎人の 경영이념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즉 非基
督敎(佛教·儒敎 등)와 基督敎人の 경영이념을 비교하기로 한다.

기업의 目標나 理念이 社訓, 社是, 經營哲學, 座右銘 등에 명시되었을 때 이를 經營理念이라고 한다. 이들 중 社訓에 나타난 한국 기업의 경영이념을 몇몇의 조사자료에 의해 검토하면 아래와 같다.

筆者는 1987년, 당시의 100대 기업 중 84사의 社訓을 조사한 바가 있다. 이를 정리한 것이 〈표 5〉이다.

〈표 5〉 韓國 100大 企業의 社訓(實明水 조사)

순위	사훈 내용	비율(%)	순위	사훈 내용	비율(%)
1	人和	38.0	4	協同	16.8%
2	誠實	25.0	5	責任	
3	創意(創造)	20.2	6	勤勉	
(以上 計)	(83.2)		7	奉仕	

주 : 調査企業은 100大 企業, 1987年(調査可能企業 84社)

자료 : 「韓日100大 會社總攬」, 韓國經濟文化史, 1987년, pp. 147~244에서, 社訓이 기록되어 있는 84社(韓國企業)의 社訓을 摘出하여 筆者が 정리한 것임.

〈표 5〉에 의하면 84社의 경영이념은 「人和」(38.0%), 「誠實」(25.0%), 「創意(創造)」(20.2%)의 순서로 되어 있으며, 이 세 항목이 전체의 83.2%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은 「協同」, 「責任」, 「勤勉」, 「奉仕」의 순서로 되어 있다.

「人和」가 1위에 있는 것은 가족주의적 전통사상, 즉 유교적 전통사상이 강한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유교적인 전통사상이 강한 기업에 있어서는 家族 내지 親族간의 결속을 나타내는 인화가 무엇보다도 강조되어 있는 것이다.

李學鍾 교수의 조사에 있어서도 筆者の 조사와 거의 같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표 6〉에서 보듯이 李교수의 조사에 있어서도 「人和·團結·協同」이 1위를 차지하여 전체의 46.4%를 점하고 있다. 이와 같이 李교수의 조사에 있어서도 家族主義의 傳統思想 즉, 儒敎的 傳統思想이 한국 기업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위의 두 조사에 있어서는 경영자의 종교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이들 회사의 경영자는 불교나 유교의 경우가 많은 것이다²⁹⁾.

29) 한국종합무역상사 10사 중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은 기독교인이며, 종합무역상사 외의 재벌그룹에 있어

〈표 6〉 韓國企業의 社訓(李學鍾 교수 조사) (내용項目의 出現頻度)

順位	社訓內容	比率(%)	順位	社訓內容	比率(%)
1	人和·團結·協同	46.4	5	財政	16.9
2	誠實·勤勉	44.2	7	進就性	14.3
3	創意·創造·開發	41.6	7	事業報國	14.3
4	正直·信用	20.8	9	合理性·科學性	10.4
5	生產性·品質·技術	16.9	10	犧牲·奉仕· 기타	6.9

주 :回答企業數 77社(1989年)

자료 : 李學鍾, 「企業文化論」, 法文社, 1989年, p. 114 ; 金正錫, 「韓國の企業(經營)文化」, 佐藤聰・韓義泳 编著, 「企業經營と労使關係の日韓比較」, 泉文堂, 1991年 12月 P. 101에서 再引用함.

한편 본고의 설문조사(문항 8)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기독교 실업인의 經營哲學(經營哲學)에 있어서는 1위는 誠實(48.8%), 2위 信用(28.4%), 3위 人和(27.0%)의 순으로 되어 있다. 즉 가족주의적 전통 내지 유교적 전통사상을 대표하는 「人和」는 3위로 떨어지고 「誠實」이 1위에 오르고 「信用」이 2위에 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가족주의적 전통보다 합리경영의 이념이 우세함을 나타내는 것이다³⁰⁾.

즉 성실과 신용으로 기업을 운영하여 경쟁에서 승리하자는 것이며, 그것은 합리경영(합리주의)의 이념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설문조사 18항목에서 보이듯이 「사장과 종업원」의 관계에 있어서 「가족관계」의 유지를 원하고 있는 것이 47.4%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가족주의적 전통(忠誠과 恩情思想)사상이 뿌리가 깊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설문조사 10항목(사업목적)에서 「家族扶養」이 44.1%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가족중심사고가 강함을 나타내는 것이며, 또한 「내가 하고 싶은 일」이기 때문에 사업을 한다는 것이 45.0%를 차지하는 것은 自己中心思考가 강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외에 설문조사항목 11에서 기업이 윤을 사회에서 소외된 자(장애인·무의탁노인·소년소녀가장)에게 회사하겠다는 것은 기독교의 博愛(隣人愛)思想을 나타내는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한국의 家族主義的 傳統, 즉 儒教的 傳統思想과 基督教的 合理主義思想 및 博愛思想(이웃사랑사상)이 접목되어 있는 것이 한국의 기독교 기업인(실업인)의 직업

서도 벽산그룹의 김인호회장(작고), 한국유리의 최태섭 회장 등이 기독교인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교나 유교의 경영주가 많다.

30) 小谷内徹也 교수에 의하면 일본에서는 회사의 社訓 중 「和」은 1961년에는 11위, 「協同」은 21위였으나 1986년도의 조사에서는 「和」라는 항목은 社訓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시기에는 이미 「和」를 강조하는 시기가 지나갔다는 것이다(水谷内徹也, 「韓國企業の經營理念—理念構築と變革へ向けて—」(報告書), 富山大學日本海經濟研究所, 1994年 3月, pp. 48~49 참조).

윤리정신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유교+기독교=유교적 기독교라는 공식이 한국 기독교인과 기독교 기업인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공식인 것 같다. 바꾸어 말해서 기독교적 유교는「長幼有序」, 「恩情主義」혹은「敬老思想」등의 유교사상과「合理主義」, 「博愛(隣人愛)」등의 기독교사상이 접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기독교 기업인은 유교적 기독교 윤리 내지 유교적 기독교 정신의 소유자인 것이다.

서양의 기독교인의 직업윤리와 한국기독교인의 직업윤리는 동일한 것이 아닌 것이다.

IV. 맷는 말

英美의 산업혁명기에 보였던 퓨리턴(프로테스탄트, 清教徒, 基督教, 改新教)과 한국의 工業化(經濟成長)期에 보였던 기독교 기업인을 비교하여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英美的 퓨리턴이 國敎會나 舊敎의 암박과 차별속에서 企業人으로서 성장하여 온 것과 같이 한국의 기독교 기업인도 전통적인 불교와 유교문화의 갈등속에서 기업인으로서 성장해온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전통적인 유교정신이 기독교인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英美的 퓨리턴 중에서 自營農民(요멘) 등이 자생적으로 기업인으로 성장한 경우와 같이 한국에서도 1945년 8·15해방 이후에는 기독교의 급속한 보급에 따라 종교적인 갈등이나 억압을 받지 않고 자생적으로 성장한 기업인도 적지 않다.

3. 英美的 非國敎徒인 퓨리턴이 생산적 중산층에서 많이 배출된것과 같이 한국의 기독교 기업인도 중산층 내지 서민층에서 많이 배출되었으며, 또한 퓨리턴의 教育水準이 비교적 높았던 것과 같이 한국기독교 기업인도 비교적 높은 교육수준의 출신이 많다. 한국기독교인의 교육열이 높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 되어 있다.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퓨리턴들이 직접『聖經』(The Bible)을 읽게 된 것과 같이 한국에서도 『聖經』을 통한 기독교인의 교육이 일찍부터 시작되었다. 성경은 기독교인의 교육보급에 크게 역할해온 것이다.

4. 영국이나 미국에서 퓨리턴이 근면과 절약의 금욕적 윤리정신으로 기업을 일으키고, 축적된 이윤을 재투자하여 기업의 확대를 이루어 놓은 것과 같이 한국의 기독교 기업인도 근면과 교육으로 기업확대에 이바지하였다.

英美的 퓨리턴의 기업이 家族企業에서 시작한 것과 같이 한국 기독교 기업인의 기업도 家

族企業에서 시작하고 있다. 영미의 기업이 家族支配에서 일찍 벗어난데 비해 한국의 기독교 기업인은, 경제의 성숙단계에 이르러, 父長的 家族支配經營에서 벗어나기 시작하고 있으나, 아직 家族支配經營下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것은 가족지배형 회사운영 형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적 현실과 부합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 한국의 기독교 기업인은 구미의 퓨리턴(改新教)과는 달라서 유교와 기독교가 접목된 소위 유교적 기독교정신이 직업윤리가 되어 있다. 즉 전통적인 가족주의정신(전통적인 유교윤리)과 합리적인 기독교정신이 접목되어 유교적 기독교정신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기독교 기업인은 「長幼有序」, 「恩情主義」 등의 유교정신을 기업내에서도 지키고 있다. 기업내에 있어서의 위계질서와 창업자에 대한 절대복종 등이 그 좋은 예이다. 한편 기독교정신인 憐人愛(博愛)精神이 유교정신과 접목되어 그것이 회사운영에 반영되어 있기도 한다.

6. 벤자민 프랭클린의 13개의 德性은 한국 기독교 기업인의 誠實, 正直, 信用 등의 윤리와相通하는 점이 많다.

끝으로 英美에서 산업혁명기에 보였던 퓨리턴의 금욕적 직업윤리정신은 독점자본주의로 경제가 이해해 갈에 따라 그 윤리성이 점차 쇠퇴하여 갔다. 東아시아 唯一의 基督教 定着國인 한국에서도 경제의 성숙과 기업규모의 확대에 따라 기독교 기업인의 기업윤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후자는 한국기독교 기업인의 앞으로의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金宗炫, 「工業化와 企業家活動－比較史的研究」, 比峰出版社, 1992年。
2. 金日坤, 「儒教文化圈の秩序と經濟」, 名古屋大學出版會, 1984年。
3. 金柄夏, 「財閥의 形成과 企業家活動－韓國財閥經營史研究」, 韓國能률협회, 1991년。
4. 權世元・姜命圭 共譯, 「프로테스탄티즘의 倫理와 資本主義의 精神」, 1958年。
5. 宋丙洛, 「韓國經濟論」(第3版), 博英社, 1996年。
6. 宋丙洛 著, 李貞美 譯, 「韓國は日本を追い越す」, リベティ書房, 1995年。
7. 黃明水 編著, 「韓國 企業經營의 歷史的 性格」, 新陽社, 1993年。
8.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95년, 1996년판。
9. 基督教大年鑑, 基督教文庫, 1993년, 1995년。
10. 滝羽良昌 編著, 「國際經濟史－歐米とアジア」(第6章, 韓國一分斷國家の光と影), 東京ミネルウア書房, 1996年 4月。

11. 松本慎一・西川正身 譯, 「フランクリン自傳」, 岩波文庫, (1992年9月5日第48刷).
12. 角山榮, 「新版西洋經濟史」, 學文社, 1986.
13. 田村光三, 「わが國における會社の經營信條とその特質」, 「新企業の原理」所收, pp. 291~405.
14. 大塚久雄・安藤英治・内田芳明・住友一彦 著, 「マックス・ウェーバー研究」, 岩波書店, 1969年.
15. 哀青山秀夫, 「マックス・ウェーバー:基督教的ヒューマニズムと現代」, 岩波新書, 1970年(第31刷).
16. 今井宏, 「クロムウエルとピューリタン革命」, 清水書院, 1988年(第2刷).
17. クルト・サムエルソン 著, 田村光三・浦上雄次・金子光男 共譯, 「經濟と宗教」, ミネルヴァ書房, 1971年.
18. 佐護譽・韓義泳, 「企業經營の勞使關係と日韓比較」, 泉文堂, 1991年.
19. Ashton, T. S., *The Industrial Revolution, 1760~1830*,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4.
20. Haile, H. G., *Luther-An Experiment in Biograph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0.
21. Lemisch, L. Jesse, *VENJAMIM FRANKLIN-The Autobiography and Other Writings*, New York, The New American Library, Inc., 1961.
22. Max Weber, 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 Archiv für Sozialpolitik, XX-XXI, 이 논문은 훗날 가집되어 Gesammelte Aufsätze zur Religionssoziologie, 1920, Leipzig, Bd. I. SS. 17~206에 수록되어 있다.
23. Pollard, Sidney, *The Genesis of Modern Management : A Study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Great Britain*, London, 1965.
24. Thompson, Stewart, *Management Creeds and Philosophies*, American Management Association, New York, 1958.

바이킹과 북유럽상업권

金光洙*

— 目 次 —

- | | |
|--------------------|-----------------|
| I. 서 언 | V. 바이킹의 경제 및 사회 |
| II. 바이킹형성 전의 프랑크왕국 | VI. 바이킹의 침략과 정복 |
| III. 북유럽상업권의 형성 | VII. 교 역 |
| IV. 바이킹의 형성과 그 어원 | VIII. 결언 |

I. 서 언

독립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던 수많은 소(小)부족들이 9세기에 들어와 서서히 덴마크 노르웨이 그리고 스웨덴의 왕 밑으로 통합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러한 왕들이 안으로 질서를 다져 가기 시작하자 왕의 통치를 감내하지 못한 부족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다는 설도 제시되어 왔다. 이러한 설명 가운데 그 어느 것도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못하다. 여러 상황이 결합되어 수많은 스칸디나비아 사람들로 하여금 귀족이건 농민이건 배를 타고 약탈물 획득을 위해 항해하도록 하였다고 서술되고 있다.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은 이들을 해족을 바이킹이라고 일컬었고 기독교 유럽의 사람들은 이들을 북방인이라고 불렀다. 스칸디나비아의 세 종족이 모두 이러한 이동에 참여하고 있다.

바이킹은 8세기 말로부터 11세기에 걸쳐 해상으로부터 유럽의 각지로 침입하여 약탈, 정복, 식민, 교역, 탐험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북게르만족의 총칭이다. 일반적으로 바이킹을 침략, 약탈, 살인 등을 자행하였던 무법적인 무뢰한으로 표현되고 있으나 바이킹은 바다에 친숙하고 항해에 능숙했으며 빈틈없는 장사꾼이었다. 뛰어난 공예가이며 조선기술자이었다.

외국에서는 바이킹에 관한 우수한 많은 작품이 발표되었다. 그 대표적인 것을 약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Bertil Almgren, ed., *The Viking*, C. A. Watts, 1966.

Johannes Brønsted, *The Vikings*, Trans! Kalle Skov. Penguin Books, 1965.

* 崇實大學校 經商大學 教授(經濟學 博士) · 本 學會 顧問

- T. D. Kendrick, *A History of the Vikings*, Methuen, 1930.
- P. H. Sawyer, *The Age of the Vikings*, Arnold, 1962.
- P. h. Sawyer, *The Age of the Vikings*, Arnold, 1962.
- K. Larsen, *A History of Norway*, Princeton, 1948.
- Schultz Demarks Historie, I – II, Copenhagen, 1941.
- Gwgn Jones, *A History of the Vikings*, New York & Toronto, 1968.

한국의 학계에서는 바이킹에 관한 논저가 전무하며 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학자도 전무한 상태에 있음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 이제 한국경영사학회에서 북유럽제국으로 학술탐방하는 것을 계기로 처음 바이킹에 관한 습작을 시작하는 마음으로 시도했기 때문에 분석 심도도 낮을 뿐만 아니라 그 제계도 만족스럽게 파악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다만 서구 학자들의 연구·소개된 것을 정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분석은 먼저 북유럽인의 건국과 항해, 침략, 약탈과 깊은 관계가 있는 프랑크 및 게르만족의 움직임부터 시작했다. 이어 북유럽 상업권의 흥성, 바이킹의 형성, 바이킹의 경제 및 사회 바이킹의 침략과 정복 그리고 교역이라는 순서로 연구를 진행한 후 결론을 도출했다.

II. 바이킹형성 전의 프랑크왕국

프랑크(Franc)족은 옛게르만족(Altgermanen), 바타비(Batawi), 하마비(Chamavi), 찻티(Chatti), 스감브리(Sugambri)로 이루어져 두 지족(支族)으로 나누어졌다. 사리프랑크(Sariflanc)는 3세기에는 하(下)라인(Rhein)지방에 거주하고 리프아리프랑크(Ripuariflanc)는 약간 남부에 거주하고 있었다. 3세기에 프랑크는 라인을 넘어 가리아(Gallia)에 침입하기 시작했다. 4세기 중엽부터 5세기 초에 그들은 동(東)가리아지역으로 이주하였다. 즉, 사리프랑크는 솜무(Somme)강변에 거주하고 리프아리프랑크는 그 동쪽 즉, 라인강과 마스(Mass)강 사이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어 프랑크는 로마제국과 동맹관계에 들어가 5세기 초에는 크게 로마제국에 지원군을 파송하였고 5세기 말에 제국의 쇠퇴가 시작하자 프랑크는 재침입하므로 가리아상부의 정복에 착수했다.

프랑크는 제왕국으로의 분립상태를 극복하여 서유럽 중세세계의 공통의 모태인 프랑크왕국을 형성하고 메로빙거(Merovinger) 왕조를 시작했는 바 사리족 출신의 크로도벳히(Chlodowech Clovis)가 창립자이다. 그의 통치아래 프랑크왕국은 일약 라인강변 베저(Weser), 도나우(Donau) 두 강의 상류지방으로부터 남(南)은 피레네(Pyrenees)산맥에 도달하는 광대한 판도를 장악했다. 이 사이에 그는 496년 로마 가톨릭에 개종했는 바 이 사실

은 단순히 신앙문제 이상의 중요한 정치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즉 그에 의하여 가톨릭교회 및 로마귀족의 지지를 얻어 앞의 동게르만제국의 비극을 회피했을 뿐만 아니라 가톨릭 포교라는 이름아래 아리우스(Arius)파 게르만제국을 정복하고 영토확대의 의도를 실현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의 사망 후 751년 카로링거(Karolinger) 왕조의 개시에 이르기까지 분열과 내란을 반복하였고, 일시 통일하기도 했으나 영속되지 못했다. 이것은 통상 프랑크왕위 계승, 분할상속제, 공동세습제의 관철문제와 프랑크왕국의 권력구조 자체에서 구하여야 한다¹⁾.

613년 네우스트리아(Neustria)의 왕 크로타르(Chrotar) 2세는 통일 프랑크왕국의 왕이 되었으나 대토지 소유자인 귀족계급의 원조 때문에 승리하고 국왕이 되었기에 칙령을 발하여 그의 전임자가 대토지 소유자에게 부여한 토지의 사여(賜與)와 재판과 행정상의 특권을 확인하고 왕은 각 소령의 대토지 소유자 중에서만 백(伯=Graf)을 임명케 되었다. 그리하여 대토지 소유자의 정치적 권력을 강화하였기 때문에 7세기 반경에는 국가의 실제상의 권력은 궁재(官宰=major domus)의 수중에 귀속케 되었다. 이것은 왕의 측근으로 처음에는 왕의 궁정관리를 주재하는 관리인 즉 major domus였기에 대토지 소유자로 되었다. 왕은 칭호만 유지하였기 때문에 메로빙거의 제왕은 당시의 사람으로부터 「나태한 왕」이라는 경멸적인 별칭이 있었다. 모든 지배가 궁재의 수중으로 집중되었다. 세 왕국 즉 네우스트리아(Neustria), 아우스트라시아(Austrasia), 불군도(Burgunder)²⁾에는 각각 보통의 궁체가 있어서 지방의 토지귀족의 지도자 및 군사대표자로 등장하여 그들의 특권을 자켰다. 궁재의 수중으로 조세수입이 모이게 되었다. 모든 실제상의 권력을 상실한 메로빙거가의 왕들은 궁체들의 뜻으로 임명되고 또 개송되었다. 세 왕국의 궁체들은 주권을 위해 상호전투를 일으켰다. 프랑크국가의 새로운 통일이 아우스트라시아(Austrasia)의 궁재의 주권아래 이루어졌다. 아우스트라시아의 궁재는 자기의 권력 아래 프랑크국가를 통일하고 새로운 왕조 카로링거의 기초를 구축했다³⁾.

해리스타(Philishta)의 파령(Pipin)의 아들 칼·마르텔(Karl Martel)은 715년부터 741년까지 통치했다. 작센(Sachsen), 프리이젠(Friesen) 아루만(Alaman) 및 바이에른(Byern)족이 라인족을 향해 위협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아랍(Arab)인은 스페인 정복 전 720년에 아키텐(Aquitaine)과 불군도(Burgunder)의 귀족들의 지지를 얻어 남 가리아에 침입했다. 칼 마르텔은 봉기한 에우스트라인을 분쇄하고 다시 라인지방을 향하는 제종족에게 공물을 부과하였다. 특히 프리이젠 종족을 예속시켜 그의 세력아래 두었다. 732년에 아랍

1) 秀村欣二, 西洋史概説, 6刷, 東京, 1964, p. 90.

2) E. A. KOCHMHCKNH コスミンスキ, 阿部玄治譯, 世界中世史研究, 第1卷, 第1分冊, 第2版, 東京, 1985, p. 146.

3) Ibid., p. 146.

족을 패배시켜 그들의 유럽에의 침입을 종식시켰다. 드디어 칼 마르텔은 봉기한 아키텐(Aquitaine)과 프로반스(Provance)의 영주를 공격하여 그들을 마르텔의 세력아래 종속시켰다. 칼 마르텔은 메로빙거의 왕들을 무시하고 국가를 건설했다. 737년부터 메로빙거의 왕이 사망한 후 그는 왕을 임명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통치했다⁴⁾.

카로링거 왕조는 751년 빠팽(Pipin 재위 751~768년)이 교황 자가리아스(Zacharias)의 동의와 정당화아래 메로빙거왕권을 찬탈한 것으로부터 시작하였다. 빠팽은 755년 그 반예(返禮)로서 이태리(랑고발트, Langobard)로 원정하여 최초의 교황령기진(敎皇領寄進)을 행했다. 여기에 로마교회와 프랑크의 상호원조는 분명하지만 이것은 빠팽의 아들로 중세사상 가장 위대한 지배자인 국왕 칼대제(Karl大帝, 재위 769~814년)에 있어서 한층 적극적으로 표현되었다⁵⁾.

칼 마르텔은 자기 권력을 강화하고 반란을 일으킨 계급들을 굽종시켰기 때문에 중요한 개혁을 행하여야만 했다. 한편에서 칼 마르텔은 반란을 일으킨 대토지 소유자들을 왕권에 연결시키려 했고 다른 한편 농민계급의 몰락과 관련하여 자유스런 프랑크의 보병국민병이 쇠퇴했기 때문에 전투력있는 기병이 필요했다. 이 때에 기병은 전쟁에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칼 마르텔의 개혁에 의하여 중요한 사회적 결과가 발생했다. 첫째 중토지 소유자층을 강화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직업군인으로서 기병국민군의 기초로 되었고 장차 기병의 선구자가 되었다. 이와 동시에 전에 프랑크 보병국민군의 기초였던 농민계급은 이전의 기본적 군사력으로서의 의의를 상실했으며 나아가 농민계급의 상태는 악화되었다. 둘째 농토사여(賜與)의 확대는 봉건적 토지소유권의 강화와 농민의 농노화를 가져왔다. 배네휘키움(Beneficium) 수령자는 토지를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같이 수령했으나 이미 이사람들은 예속민이었고 배네휘키움 수령자를 위해 부역을 행하거나 낸공(年貢)을 지불하고 있으므로 배네휘키움 수령자의 대부분은 예속농민계급에 대한 완전한 착취에 의하여 생활하고 있었다. 셋째 배네휘키움의 사여는 사여자와 배네휘키움 수령자간에 토지에 관한 연계가 형성되어 그들 사이에는 가신관계(家臣關係)를 창출하는 원인으로 되었다.

봉건국가에 의하여 형성된 배네휘키움의 개혁은 농업변혁과 프랑크사회의 봉건화의 결과였지만 동시에 봉건관계의 강화와 형성을 촉진했다. 처음 칼 마르텔의 개혁은 실체적으로 중앙정부의 일시적 강화를 촉진했으며 그로 인해 강화된 중토지 소유자 즉 배네휘키움 수령자층은 카로링거 왕조의 지주로 되었다⁶⁾.

4) Ibid., pp. 148~149.

5) 秀村欣二, op. cit., p. 93

6) E. A. KOCHNCKHNH, 阿都玄治譯, op. cit., pp. 149~151.

빠팽은 여러 차례 귀족들의 봉기를 진압하고 칼 마르텔 시기에 있어서 교회령의 국유화에 의하여 침예화된 교회와의 관계를 조정하는데 전력을 다했다. 그리하여 베네치아 키움에 의하여 분할된 모든 교회의 토지는 교회의 재산으로 인정하고 베네치아 키움의 수령자는 일정의 지불을 교회에 하여여야만 하게 했다. 그러나 그들은 군사봉사를 국가를 위해서 해야만 했다. 왕의 허가없이는 교회는 그들의 토지를 회수할 권력을 갖지 못했다. 이러한 보유를 「왕의 명령에 의한 프레카리아」(Pecunia verbo regis)라고 불렀다. 이러한 탐욕은 교회와 국가간의 일시적 불일치를 제거해 카로링거가의 권력을 다시 한층 강화시켰다. 빠팽은 두 차례 즉 754년과 757년에 랑고발트에 원정하여 중부 이태리에 법왕(法王)의 세속적 국가가 발생했다⁷⁾.

빠팽은 가리아의 지중해 연안을 아랍인들로부터 탈취하여 아키텐(Aquitaine)를 예속하고 작센(Sachsen)이나 바이에른(Byern)과의 전쟁 결과 라인(Rhein)지방에 대한 프랑크의 세력을 강화했다. 그 결과 빠팽의 권력과 세력은 크게 확대되었다. 랑고발트왕은 빠팽의 가신(家臣)으로 되고 법왕은 빠팽의 충실한 동맹자가 되었다. 비잔틴(Byzantin)의 황제는 프랑크왕과 가족간의 결혼을 교섭하게 되고 멀리 바그dad(Baghdad)의 가리흐(Kaliph)조차 스페인의 아랍인과의 전투 때문에 프랑크와의 동맹을 요구했다.

프랑크가 가장 강력한 시기는 빠팽의 아들로 후계자인 칼대제의 치대(治代)가 도래해서다. 몇 차례의 침략전쟁의 결과 그는 현저히 국경을 확대하고 경제적으로 상호관련이 없는 「자신의 생활에 따라 살며 자기의 언어를 소유하는」⁸⁾ 많은 종족과 민족을 권력아래 종속시켰다.

칼대제는 774년 이태리에의 원정을 통해 랑고발트를 점령 병합하여 「프랑크 및 랑고발트왕」이라고 칭했다. 778년 스페인 원정은 실패했으나 조직적으로 남하하여 801년에는 아랍인으로부터 발체로나(Barcelona)를 탈취하고 북스페인지역에는 스페인 마르크(국경의 요쇄자)가 건설되었다. 이리하여 프랑크의 세력은 9세기 초의 10년대 말에는 에브로(Ebro)강까지 확대되었다. 칼대제 때 작센은 점령되어 프랑크에 합병되었다. 작센의 정복은 772년부터 804년까지 계속하였다. 칼대제의 영토의 북동으로의 확대가 작센 정복으로 끝났다면 남동에 있어서 같은 의의를 갖는 것은 바이에른의 병합이었다. 많은 전쟁결과 영토는 크게 확대하였다. 그 국경은 남서는 에브로강에 도달하고 동방은 엘베(Elbe) · 자아레(Zaalai)강, 보헤미아(Bohemia)의 산과 뷔(Wien)의 숲까지 도달하고 남방으로는 이태리의 대부분은 합병했다. 그 국경은 그 규모에 있어서 옛 서로마에 접근하고 그것에 같았으며 여러 종족이나 민족을 그 속에 포함하고 있었다. 법왕 레오(Leo) 3세는 성 베드로성당에서 칼대제에게 제관을 수여하므로 서방에 새로운 제국이 수립되었다. 이것은 서방세계에 있어서 로마제국의 부활이

7) Ibid., pp. 152~153.

8) E. A. KOCMNHCKNH, 阿都玄治譯, op. cit., p. 154 제인용

었다. 이것은 단순한 부활이 아니라 황제지배 권력의 중심을 알프스(Alps) 북방으로 옮긴 것이다. 게르만인에 의한 로마 게르만풍의 기독교적 세계이며 이런 의미에서 칼대제의 재관은 중세 서구세계의 성립을 상징하는 것이다.

북과 남부터 프랑크는 바다에 포위되어 있었다. 그곳에는 9세기 초부터 새로운 적이 나타났다. 즉 노르만(Norman)과 아랍(Arab)의 해적이다. 노르만은 9세기 초의 10년간 프리이젠과 만슈(Manche) 해안을 황폐시켰고 아프리카의 아랍인은 이태리연안과 그 부근의 섬들을 황폐시켰다. 칼대제는 적극적으로 해적과 싸웠다. 지중해의 프랑크함대는 역습을 하여 단기간 아랍으로부터 콜시카(Corsica), 사르테니아(Sardegna), 바레아레스(Baleares)섬을 탈취했다. 프리이젠과 북해에 쏟는 강구지대 및 라만슈는 특별의 요새로서 놀만의 침공으로부터 방호되었다. 단기간 강력한 프랑크는 놀만이나 아랍인들을 격퇴할 수 있었다⁹⁾.

III. 북유럽 상업권의 융성

북유럽 상업권은 중세 중기에 지중해상업권과 나란히 존재했으나 이곳이 흥성한 때는 중세 후기였으며 이 시대에는 오히려 지중해 상업권을 능가하는 듯이 보였다. 이 상업권은 중세 전기의 북해 발틱해의 상업교통에서 발했다. 프랑크왕국의 북부에서 발생한 원지상업(遠地商業)은 쭈이다(Zuyder)호의 프리이젠인에 의하여 담당되었다. 이 원지상업은 일찍부터 북해의 동해안에 달하고 슈레스비히(Schleswig)지방의 아이다(Eider)강 트레네(Trene)강 슈라이(Schlei)강구를 거쳐 발틱해(Baltic) 중부 스웨덴(Sweden)으로 전진하고 있다.

발틱해 상업권이 유럽의 대서양안 라인강구에 확대하는데 큰 지장이 되었던 것은 유트란트(Jutland)반도가 들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덴마아크(Denmark)의 북단을 우회하는 항해는 중세중기까지 위험하다고 생각되고 있었다. 여기서 서유럽의 상업과의 연락을 육로를 통해 이용되고 행하여졌다. 11세기 말까지의 독일은 엘베(Elbe)강 서쪽의 여러 지방으로 이루어졌고 라인강을 주축으로 하는 하나의 교통범역을 주도하고 있었다. 따라서 라인지역의 생산물과 지중해 상품과의 교통을 매개한 것은 라인강이었고 그 중심은 쾤론(Köln)이었다. 이 라인경제범역으로부터 발틱해 상업에의 연락을 시작한 것은 프리이젠인였다. 스칸디나비아인에 의하여 건설되고 이름부쳐진 것은 하이타브(Haithabu) 즉 오늘의 슈레스비히 부근의 땅은 프리이젠인의 가장 중요한 적환장소이었다. 이 지역은 9세기에는 덴인, 10세기에는 오랜동안 스웨덴인에 지배되다가 다시 덴인의 손으로 돌아갔으며 약 250년간 발틱해 주변지방과 서유럽과의 중계무역지였다¹⁰⁾.

9) Ibid, pp. 160~161.

아이다(Eider)강구를 이용하여 발틱해 상업이 발했다. 하이타브로부터는 북방으로 하나의 항로가 있었다. 이것은 노르웨이 로포텐(Lofoten)에 도달했다. 또 하나의 보다 중요한 해상 상업로는 스웨덴의 비루카(Birka)에 도달하는 것이었다. 스톡홀름(Stockholm)으로부터 약간 육지로 들어간 메라렌(Malaren) 호반의 비루카는 스웨덴의 가장 중요한 사업교역지였다. 여기서부터 다시 하나는 발틱해역의 중앙에 위치하는 고트란트(Gothand)섬을 경유하여 리프란드(Lippland)의 둘나(Duna)강구에 도달하고 기타는 이 섬으로부터 북방으로 항해하여 오란트(Aland)섬 및 핀란드(Finland)의 남서안의 코이비스토(Koivisto)에 따라 물로 나누어졌다. 하나는 북방으로 타뷔스트란드(Tavastland)의 상업교역지 피루카라(Pirkhala)에 도달하고 또 하나는 동방으로 남핀란드의 해안을 따라 다시 와루고강을 올라가 이르만(Ilman)호반의 호롭가르드(노브고롯드 Holmgard = Novgorod)에 달했다¹⁰⁾.

이 교통은 이르만인의 서유럽으로의 습래에 이르기까지 존재하고 있었다. 그들 즉 소위 바이킹(Viking)은 고향의 좁은 계곡에 과잉한 인구를 확보하고 있었으며 또한 강력한 국가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사회적·정치적으로 자유가 구속되고 있었던 시기이다. 프랑크국이 통과하는 기회에 맞춰 서유럽에 비하여 우수한 조선술과 항해술을 이용하고 외지의 연안을 항해하면서 약탈도 하고 또 동시에 상업도 행하였다. 스웨덴의 바이킹은 발틱해로 항하여 부유한 미크라가나(Miklagna = Constantinople)에 도달하고자 느브고롯드로부터 켄가아드(Kengard = Kiev)를 경유하는 도니에풀(Dnieper) 상업통로를 확보하고 슬라브 비잔틴(Slav Byzantin)의 문화권에 들어갔다. 노르웨이의 바이킹은 대서양 및 서유럽으로 항했다. 덴마아크의 바이킹은 발틱해로부터 추방되어 잉글랜드(England) 동해안으로 항했다가 급속히 통과하고 그 후 곧 발틱해에 세력을 확대하고 11세기에는 잠스란드(Samsland)로부터 비루카 및 이에 대신하는 지그트나(Sigtuna)와 교역을 행했다. 하이타브는 11세기 중엽에 파괴되었다. 엘베 연안에 바르독크(Bardowick)라는 새로운 상업교역지가 발전하여 여기서 라인경제권의 상품과 발틱해상업 및 원시적 슬라브경제적 문화의 생산품을 교환하는 국경시장이 성립했다¹¹⁾.

북해 및 발틱해를 중심으로 한 해양적 상업활동도 9세기 중엽에서 11세기 말에 걸쳐 전개되었다. 9세기 아래 바이킹이라고 불리우는 노르만(Norman) 민족의 서유럽 침략은 광범한 약탈을 수반하고 약탈품은 덴마아크나 노르웨이로 수송되었다. 9세기 말이래 그들의 침략이 종식되었을 때 그들은 순수한 상인이 되었다. 한편 스웨덴인은 9세기 중엽이래 도니에풀강과 그 지류를 따라 그 지방의 사람들을 지배하고 착취하는 항구적 성자가 된 위벽(圍壁)

10) Ibid., pp. 144~145.

11) Ibid., p. 145.

12) Ibid., pp. 145~146.

enceintes, 슬라브어로 gorods)을 건설하여 피지베민들로부터 각종 공물과 노예, 꿀, 모피류를 획득하였으며 그들은 후에 교역에 종사하게 되었다.

스칸디나비아인은 10세기에는 도니에폴강을 경유해서 북해에 진출하여 콘스탄티노폴과 접촉하고 볼가(Volga)강을 경유하여 카스피해(Caspian Sea)에 진출하여 연안 제항구에서 유대상인 및 아랍상인과 거래를 하였다. 뿐만 아니라 스칸디나비아인은 자국의 생산물인 꿀, 모피, 노예와 교환한 향료, 포도주, 견직물, 금속제품 등 동양 및 서유럽상품을 가지고 러시아를 종단하여 드비나(Dvina)강 및 보스니아만(Bosina bay)과 접촉하는 제 호수에 이르는 교역로를 통해서 러시아 각지와 교역하였다.

발틱해의 고트란드섬은 이러한 무역의 대집산지였으며 북유럽과의 접촉점이기도 했다. 러시아와 발틱해 연안 이외에 교역지는 스웨덴 연안에서 덴마아크 남부연안, 아직 슬라브(Slav)영토였던 엘베강 비스툴라(Vistula)강 중간지역의 연안 테임스(Thames)강 및 라인강구에 이르는 북해연안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북유럽 상업권에서의 스칸디나비아인의 주도권은 후에 한자(Hansa)상인에게 넘어가게 되었다¹³⁾. 8세기 말 9세기로부터 11세기에 걸쳐 일반적으로 노르만이라고 불리워지는 스칸디나비아의 북게르만(Nord-Germanen)제국의 활동은 본질적으로 동서게르만제국과 동일 성격의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선수(船首), 선미(船尾)가 높게 쳐올라가 대양의 풍랑에 견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흘수(吃水)가 얕고 깊지 않은 강도 쳐올라가며 강안 정박이 가능한 경고한 바이킹 선박을 사용하던 그들은 프랑크에 있어서 로로(Rollo)를 수장(首長)으로 국왕 샤르르(Charles)로부터 노르만디 공령(公領)을 획득하고 1011년 상 그레르 샤르 에프트조약 잉글랜드에 들어와서는 알프레드(Alfred)대왕시대에 동북 해안지방을 898년에 취하고 또 덴마아크의 왕자 크노트(Knut)는 11세기 전반 한때 잉글랜드 덴마아크 노르웨이의 왕을 겸하였다. 그리하여 북해에 일대세력을 확보했다. 남하하여 그들은 남부이태리 시칠리(Sicily)를 정복하여 양시칠리아 왕국을 건설하고 동지방의 비잔틴 및 사라센(Saracen)문화에 동화하여 11, 12세기에 특이한 아랍 노르만문화를 산출했다.

동방에 있어서는 동슬라브민족을 정복하여 루릭(Rurik)을 수장으로 하는 노브고롯드공국을 건설하여 로시아의 기원을 이르렀고, 또 대서양 널리 서방으로 신장하여 아이슬랜드(Iceland), 그린랜드(Greenland)에로도 이주하였고 1,000년경에는 북미해안에도 도달하기에 이르렀다. 그들의 활동은 프랑크에 있어서 봉건제의 성립을 결과적으로 촉진시킨 점에 있어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이다¹⁴⁾. 카로링거 왕조 후기의 북방에 열린 새로운 국제상업은 바로 메로빙거 왕조기의 그것이 시리아(Syria)인 유대(Judah)인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노르만

13) 김종현, 경제사, 서울, 1985, p. 92.

14) 秀村欣二, op. cit., pp. 70~71.

민족의 이니시아팀 아래 수행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고전고대의 잔재인 성격을 완전히 버린 신천지의 교역이었다. 떨지 아니하여 노르만의 기독교화와 더불어 서유럽인을 위해 다행한 북유럽 상업의 기반으로 된 것이다. 10세기 이후 주로 라인강 하류지구의 주민 프란들(Flandre), 프리스랜드(Friesland), 작센 등의 상인들이 북해로부터 발티해로 진출하고 후세의 한자(Hansa) 상업권의 소지를 구축한 것은 이러한 전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북유럽 상업권의 형성에서 바이킹의 역사적 의의는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¹⁵⁾.

IV. 바이킹의 형성과 그 어원

800년경의 샤를마뉴(Charlemagne, r. 768~814) 황제는 프랑크 및 롬바르드(Lombardy)의 왕이었다. 그는 피레네산맥 아래의 스페인 변경으로부터 덴마아크반도 기슭까지 대서양과 북해의 연안지대를 지배하였다. 영국에서는 앵글로 색슨(Anglo Saxon)족이 웨סקס의 에그베르트(Egbert)가 미약하나마 종주권을 장악하여 북으로는 포드(Forth) 만까지의 동해안 지역과 콘월(Corn wall)과 웨일즈(Wales)를 제외한 솔웨이(Solway) 만까지의 서해안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다. 로마 이남의 이태리지역과 시칠리아(Sicilia)는 여전히 명목상으로 나마 비잔틴황제의 지배하에 있었다. 이러한 서유럽의 기독교지역을 비기독교도들이 에워싸고 있었다. 스칸디나비아에는 이교도 게르만족이 살고 있었다. 엘베강과 보헤미아의 삼림이동에는 슬라브족이 있었고 잔류한 일부 아바르(Avar)족은 헝가리(Hungary) 평원을 차지하고 있었다. 스페인과 북아프리카를 장악하고 있던 이슬람(Islam)은 강력한 함대로 지중해를 지배하고 있었다¹⁶⁾.

샤를마뉴 황제의 사망 후 제국은 언어와 법과 전통이 각기 다른 잡다한 종족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곧 해체되기 시작했다. 왕위를 계승한 루이 경건왕(Louis the Pious, r. 814~840)은 거친 프랑크 귀족들은 차치하고 자기의 아들조차 통제하지 못했다. 풍뜨느와(Fontenoy) 전투 후 843년에 루이 경건왕의 아들 3형제는 제국을 3분했다. 샤를르(Charles the Bald)는 뒷날 프랑스왕국으로 발전할 서부 프랑크 영토를 루이 독일왕(Louis the German)은 동쪽의 독일지역을 차지하였다. 로타르(Lothar I)는 황제 칭호와 함께 북해에서 이태리에 이르는 길쭉한 땅으로 이루어진 「중부왕국」(Middle kingdom)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분할이 민족주의적인 이유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뒷날 유럽의 가장 중요한 몇몇 민족이 항구적으로 구분될 상황을 미리 점치게 해주는 것이었다. 최초로 로망스어를

15) 増田四郎外 4人, 西洋經濟史, 上卷, 15刷, 東京, 1973, p. 87.

16) Brian Tierney & Sidney Painter, Western Europe in the Middle Ages 300~1475, 3rd ed., 1978, 이연규 역 西洋中世史, 서울, 1986, p. 142.

사용하는 서프랑크왕국이 류본어를 말하는 동프랑크왕국과 별개의 정치체로 등장하였다. 카로링그 왕조는 독일에서는 911년까지 프랑스에서는 887년까지 죽 이어져 내려오다가 그 뒤 1세기 동안은 카로링그 왕조와 까페 왕조(Capetians)가 번갈아 가며 프랑스 왕위에 올랐다¹⁷⁾.

「중부왕국」은 855년 로타르가 사망하자 왕국은 그의 세아들에게 분할되었다. 로타링기아(Lotharingia)는 로타르 2세(Lothar 2)에게 프로방스(Provence)는 찰스(Charles)에게 그리고 이태리는 루이(Louis)에게 돌아갔다. 샤를마뉴의 후손들이 상쟁하고 있는 동안 그들의 왕국은 옛 카로링 제국의 영토를 들러싸고 있던 비기독교도들의 파괴적인 침략에 직면하게 되었다. 895년에는 알타이(Altai)계통의 마자르(Magyar)족이 헝가리평원에 도래하여 잔류해 있던 아바르족과 합류했다. 그들은 독일전역을 비롯하여 알자스(Alsace)와 라인강 계곡의 변경지방까지 약탈했다. 그들의 야만스러운 약탈 행위는 955년에 독일왕 오토1세(Otto 1)가 레히펠트(Lechfeld)에서 그들을 궤멸시킬 때까지 계속되었다.

9세기는 또한 이슬람이 지중해 세계를 재침략한 시대였다. 827년에 이슬람은 시칠리아를 공격하기 시작하여 시칠리아, 풀시카, 사르디니아(Sardinia), 그리고 남부 프랑스의 론(Rhone)강의 삼각지역도 장악하였다. 이슬람군은 이태리 본토에 영구적으로 정착하진 않았으나 이태리에 거점을 두고 전시기를 통해 이태리를 침략하게 약탈하였다. 그러나 새로이 침입해온 외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결과를 놓은 사람들은 스칸디나비아에서 도래하였다. 8세기 말 그 지역으로부터 게르만족 이동의 마지막 큰 물결이 일기 시작하였다. 이 이동의 원인은 전혀 분명치 않다. 이동시대는 스칸디나비아에 정부라 할 만한 것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던 시대와 일치하였다. 독립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었던 수많은 소부족들이 9세기에 들어와 서서히 덴마아크와 노로웨이 그리고 스웨덴의 왕밀으로 통합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러한 왕들이 안으로 질서를 다져가기 시작하자 왕의 통치를 감내하지 못한 부족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다는 주장도 있다. 여러 상황이 결합되어 수많은 스칸디나비아인들로 하여금 귀족이건 농민이건 배를 타고 약탈물을 획득하기 위해 항해한 사람들을 스카디나비아인들은 바이킹(Viking)이라 일컬었다¹⁸⁾. 바이킹은 8세기 말로부터 11세기에 걸쳐 해상으로부터 유럽의 각지로 침입하여 약탈, 정복, 식민, 교역, 탐험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북게르만족의 총칭이다¹⁹⁾. 그들을 북쪽사람(Northman) 스카디나비아인(Scandnavians)이라고 불르기도 하나 스칸디나비아인들은 세 그룹으로 갈라져 있었는데 그것은 덴인(Danes), 스웨덴인(Swedes), 그리고 노르웨이인(Noregians)이었다. 이 그룹은 점진적으로 통일된 왕국으로 형성되기 전에는 즉 바이킹 세력이 확대되는 초기의 스칸디나비아는 소국가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

17) Ibid., pp. 143~144.

18) Ibid., pp. 144~146.

19) ブリタニカ 國際大百科辭典, 16, 東京, 1974, p. 82.

주민들은 토지를 소유한 귀족, 자유농민 그리고 노예들로 구성되어 있었다²⁰⁾. 바이킹은 단순히 북쪽으로부터 온 거친 야만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빈틈없는 장사꾼이고 우수한 항해사이며 뛰어난 공예가이자 선박기술자들이었다. 그들에게는 구전되는 민담이 풍부한 전통이 있었으며 당시로서는 아주 개방된 민주적인 사회에 살고 있었다²¹⁾.

바이킹은 덴마아크계, 노르웨이계, 스웨덴계로 대별되는 바 전자는 주로 서유럽에서 후자는 주로 동유럽에서 활동했다. 서유럽에서는 Northman, Nordman, Norman, 아일란드(Ireland)에서는 Ostman 등으로 불리워지며 해적민족으로서 두려워했다. 특히 그들에게 습격받은 교회나 수도원의 기록이나 연대기에는 야만스럽고 잔인한 이민족의 해적으로 중伤하는 기술이 많으며 이것이 후세 유럽인의 바이킹관으로서 정착했다. 그러나 최근의 바이킹의 유적이나 유물의 발견 고고학 인류학 언어학 다시 중세북유럽 전설, 신화, 시가(詩歌)의 비교연구와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파괴적 바이킹관은 현저히 수정되어 유럽의 정치, 경제, 군사, 종교 등 각 방면에 영향을 미친 장대한 운동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활동과 내용을 일체적인 것으로 그 성격을 불변적인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며 시기, 단계, 활동영역에 따라 다종다양했었음이 해명되고 있다²²⁾.

바이킹은 바다에 친숙하고 항해에 능했다. 스스로 전쟁과 모험 그리고 전리품에의 갈망 등이 원정의 추진력이었다고 본다. 또 봉건사회 형성기에 있어서 유럽제국은 내부에 있어서 영주, 제왕간의 정치적 항쟁이 있었고 침입자에 대한 유효한 저항이 곤난했다는 것, 특히 귀금속 등을 소유하고 있었던 교회나 수도원이 무방비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은 바이킹의 원정을 활발하게 했던 외적 요인이다.

이 원정의 형태를 대별하면 초기는 농한기의 여름을 이용하여 침입 약탈을 시도하고 동계에 바다가 거칠어지기 전에 인양했다. 전리품의 약취를 목적으로 한 원정이 많았기 때문에 매년 정기적인 파상공격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부족의 수장 코눙그(Konung, 王의 뜻)나 지도자 헤르시르(Hersir, 가장의 뜻)에 인솔되는 전사가 중심이었다. 그러나 조선기술, 항해술의 발달에 따라 9세기 중엽으로부터 행동반경이 넓어짐에 따라 강구나 입강에 숙영하여 월동하고 이곳을 거점으로 하여 다시 오지에로 침입하는 정복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이리하여 일정한 토지를 점거하여 정착하는 단계가 되자 처자들을 대동하고 농민이나 직인, 상인들도 참가케 되었으며 원주민과의 교류, 그 수장의 용병적 존재, 기독교에로의 개종 등 다양한 국면이 전개되어 갔다.

바이킹의 어원(語源)에 관해서는 결정적 정설이 없다. 그러나 유력한 주장을 들면 ①

20) Henri Pirenne, *Economic and Social History of Medieval Europe*, New York, p. 108.

21) 원저자, 수산 M. 매거선, *Eyewitness Viking*, 번역감수, 민석홍, 바이킹, 서울, 1996, p. 6.

22) ブリタニカ 國際大百科辭典, 16, op. cit., p. 82c.

Vik-강구에 숨어드는 것 ② vig-전사, 병사 ③ wik-요쇄화된 숙영지 또는 시장 ④ vikja-후퇴하는 장소 ⑤ vikingn-해적 등에 유래한다. 고대 영어의 wicing도 베타기라는 뜻이 있었으나 스칸디나비아어의 영향으로 해적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 해적이라는 의미는 후리이스란드(Friesland)어에서도 퍼져 witsing이라는 말은 그 뜻을 내포하고 있다. 앵그로색슨연대기 등 제연대기 중 바이킹은 북방인(Northmanni)라든가 덴인(Dani)이라고 불리워지고 있으나 이것은 스칸디나비아의 제민족을 특히 구별하려 했던 것은 아니다. 덴인은 잉글랜드에 정주한 식민자를 지칭하며 북방인은 뒤에 아일랜드로부터 노오산브리아(Northumbria)로 유입한 자들을 지칭한다. 아일랜드인이 검은 머리의 외국인과 금발의 외국인으로 구별하는 의미는 불확실하나 금발의 외국인과 덴인을 구별하고 있으며 로크란(Lochlann)의 사람들은 금발의 외국인의 다른 표현으로 생각되나 뒤에는 금발의 외국인은 노르웨이인이고 흑발의 외국인은 덴인이라고 말하여졌다. 이스람교도 무아인(=Berber족)은 바이킹을 마호스(Madjudus)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본래 마법을 사용한다는 의미였다.

787년경의 바이킹 최초의 침략자들은 헤에레오란드(Haereoaland), 즉 노르웨이와 호드란드(Hordaland)에서 왔다고 말하여지며 흐르다란드는 스칸디나비아인의 고향 뿐만 아니라 그들이 식민한 곳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843년 로아르강의 노아르무띠에(Noirmoutier)섬을 공략한 해적은 웨스트휘일르도(Westfaldingi)인이라고 불렀다. 또 회랑의 문헌을 보면 루스(Rus)라는 말은 편랜드어의 Ruotsi(스웨덴인이라는 뜻)으로부터 나왔다고 해석되고 있다. 바이킹시대의 스칸디나비아인은 아주 활동적이고 고향에서는 우수한 법률에 의하여 잘 조직된 국가를 건설하는 한편 평화적인 통상에 의하여 스웨덴인의 비루카(Birka) 및 쉬레스비히(Schleswig)나 발틱해 연안지역에 있는 덴인의 하이타브(Haithabu)와 같은 상업중심지를 구축하고 발전시켰다. 노르웨이와 그들의 식민지 아이스란드에는 기독교의 침투가 늦어 비교적 개르만세계의 문화적 잔존이 머물러 있었다²³⁾.

V. 바이킹의 경제 및 사회

1. 바이킹의 전함

바이킹은 훌륭한 항해사들이었다. 그들은 나무로 만든 롱쉽(Longship)이라는 커다란 배를 조정하여 파도를 넘고 암초와 빙산을 피하며 폭풍우를 헤치면서 거친 바다를 가로질러 전진했다. 광활한 바다에서는 바이킹은 직사각형의 큰 돛에 의존해 항해했고, 연안해역이나 강에서는 돛을 내리고 대신에 노를 저었다. 가능한한 육지가 보이는 곳에 항해를 했으며, 해안

23) Ibid., p. 83.

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태양과 별들에 의존하여 항해했다. 또한 바다와 물고기, 바람 그리고 과도의 형태에 대한 풍부한 지식도 그들의 항로를 찾는데 도움을 주었다. 나무는 빨리 썩기 때문에 바이킹의 배는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부유한 사람들을 배마다 매장하는 바이킹의 풍습덕분에 몇 척의 통함을 오늘날 볼 수 있다. 가장 잘 보존된 것은 노르웨이에서 발굴된 오세베르(Oseberg)선과 고크스타(Gokstad)선이다. 이것들은 둘 다 모양이 길쭉하고 우아한 배로 가볍지만 놀라울 정도로 강하다²⁴⁾.

덴마크의 스클데레브(Skuldelev)에서 수중 발굴된 바이킹시대의 선박은 두 척의 전함 두 척의 수송선 그리고 한 척의 작은 해안선이다. 소위 바이킹의 통함은 원거리 항해 특히 북대서양을 횡단했다. 이러한 선박 중 잘 알려진 선박은 고크스타(Gokstad)선이며, 아마 9세기의 2/4분기 때 것으로 추정된다. 고크스타의 길이는 23.33m, 너비는 5.25m이었다. 그리고 거의 참나무로 조선되었고, 용골은 적어도 25m 높이의 참나무에서 베어낸 하나로 된 두꺼운 판이었다. 배의 무게는 18톤으로 3피트(feet)로 물위를 달릴 수 있었다. 고크스타선의 양쪽에는 노랑과 검정을 번갈아 칠한 모두 32개의 방배가 있었다. 배의 양측에는 각각 16개의 노를 사용케 되어 있었다²⁵⁾.

가볍고 날씬한 바이킹의 전함은 대양을 가로 질러 멀리까지 전사들을 실어 날랐다. 그들은 바이킹선 중에서도 가장 길고 날렵하며 속도가 빨랐다. 다른 통함과 마찬가지로 전함은 돛과 돛대가 있었지만 또한 노를 저을 수도 있었다. 크기에 따라 24~50개의 노가 필요했다. 항해가 길어지면 바이킹 전사들은 교대로 노를 저었다. 그들은 좁은 강어귀를 미끄러져 들어갈 수 있었다. 그리고 어떤 얕은 해안이라도 상륙할 수 있었다. 배가 가득 차울 때에도 전함을 부두나 잔교가 필요없을 만큼 얕은 용골을 가지고 있어 해변에서 바로 짐을 내릴 수가 있었다. 바이유(Bayeux)의 태프스트리(Tapestry, 색실로 짠 주단)에 나타나 있는 몇몇 배들은 전사뿐만 아니라 말들도 운반하고 있다. 배가 해변에 가까워지면 동물도 사람도 배에서 뛰어내려 여울로 진격했다. 보존상태가 좋은 2척의 전함이 덴마크의 로스킬레(Roskildefjord)협만에서 발견되었다. 이들은 돌로 가득 차 있었던 것으로 보아 1,000년 경에 고의로 침몰시켰던 것 같다. 큰 쪽은 이물에서 고물까지 길이가 28m나 되는 데 지금까지 발견된 바이킹선 중에서 가장 길다²⁶⁾.

2. 신분계급

바이킹 사회에는 세 개의 계급 즉 노예, 자유인, 그리고 귀족이 있었다. 힘든 노동은 대부

24) 수산 M. 매거선, 번역감수 민석홍, op. cit., p. 8.

25) Joseph R. Strayer ed., Dictionary of the Middle Ages, Volume 12, New York, 1989, p. 424.

26) 수산 M. 매거선, 번역감수 민석홍, op. cit., p. 10.

분 스랄(Slave)이라고 하는 노예들에 의하여 행하여졌다. 노예들 중 많은 수가 전쟁 포로였다. 부유한 사람이 사망하여 그들의 노예를 죽여 함께 매장하는 일도 흔히 있었다. 노예들은 이따금 자유의 몸이 되기도 했다. 자유인에는 농민, 상인, 공예인, 전사 그리고 지주가 포함된다.

바이킹시대 초기에는 많은 지방의 수장(귀족)들이 작은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다. 그들은 싱(thing)이라는 지방 민회(民會)의 규칙을 따르는 데 싱에서는 모든 자유인이 그들의 의견을 말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불평을 건의할 수 있었다²⁷⁾. 아이슬란드에서는 36명의 지도자 즉 명확히 그리고 필연적으로 Godar의 콘트를 아래 알싱(Alsing)이 조직되었는 바 오늘날의 국회이며 통치자와 법관을 선출하였다. 그들의 임기는 3년이며 매년 회집하여 법의 3분의 1을 낭송했다²⁸⁾. 그러나 수장과 왕들은 점진적으로 외국의 땅을 침략하고 정복함으로써 그들의 부와 권력을 증대시켰다. 1060년경 바이킹시대 말기에 이르러서는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은 한 명의 강력한 왕이 통치하게 되고 민회의 역할은 축소되었다²⁹⁾.

바이킹 여자들은 독립적이었다. 남자들이 원정으로 집을 떠나 있을 때는 여자들이 가정을 돌보고 농장을 경영했다. 여자들은 자신의 남편을 선택할 수 있었고 만약 남편이 구타하거나 성실하지 않을 경우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바이킹 어린이들은 학교에 가지 않았으며 대신에 둘이나 작업장에서 일을 하고 요리, 실っぱ기, 옷감짜기 등을 도왔다. 여자들과 어린이들이 모두 고향에 머무른 것은 아니었다. 많은 여자와 어린이들이 잉글랜드와 같은 식민지에 남편이나 아버지를 따라가기도 했다. 그들은 전투를 할 때는 안전하게 어디엔가 숨어 있다가 후에 새로운 마을을 세울 때 일을 거둘었다. 바이킹 소년들은 나무로 만든 장난감 무기를 가지고 놀았다. 아마 10대 초반부터 무기사용법을 본격적으로 배웠던 것으로 보이며 16살에 약탈에 참가한 청년도 있었다³⁰⁾.

3. 주거 및 식생활

아이스랜드나 다른 북대서양의 섬에서는 좋은 목재가 부족했기 때문에 집을 지을 때는 대개 돌로 기초를 세웠으며 벽과 지붕은 잔디로 만들었다. 땅을 파서 만든 집은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했다. 벽에는 추위와 습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나무 판자로 안을 대었다. 노르웨이에서는 벽은 통나무를 수평으로 쌓아 만들었으며 통나무 끝에 흙을 파서 고정시켰다. 뾰족한 지붕에는 자작나무 껍질을 깔고 그 위를 잔디로 덮었다. 나무껍질은 물을 막아주

27) Gwyn Jones, *A history of the Viking*, New York & Toronto, 1968, pp. 50~51.

28) Ibid., pp. 282~283.

29) 수산 M. 메거선, 번역김수 민석홍, op. cit., p. 28.

30) Ibid., p. 30.

고 흙과 풀은 단열재 작용을 했다. 집은 그 지방의 전통이나 손에 넣을 수 있는 재료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세웠다. 나무 벽은 기둥을 똑바로 세워 만들고 나뭇가지를 엮어서 벽을 만들고 방수를 위해 전흙이나 쇠똥을 바른 집도 있었다. 지붕은 나무판자, 짚, 잔디, 매트 형태로 쌓 갈대 등으로 덮었다.

바이킹의 가정생활은 중앙에 있는 넓은 공간 즉 거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집 내부의 배치는 모든 바이킹 세계가 아주 비슷했다. 길고 커다란 난로가 거실 중앙에서 타고 있었고 그 위로 천정에는 굴뚝이 있었다. 집의 바닥은 흙을 밟아 다져서 만들었다. 구부러진 벽을 따라 높직하게 만든 단에 앉거나 잠을 잤는데 오리털이나 닭털로 채운 베개나 방석을 깔면 더욱 안락했다.

거실 중앙의 난로에서는 요리와 난방을 위하여 하루 종일 불이 타올랐으며 난로 위의 지붕에 난 구멍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집안에는 항상 연기가 가득했다. 부유한 집에는 별도의 방에 조리용 화덕이 있었는데 이들은 그 안에 뜨거운 돌들을 놓아서 가열하였다. 어둠이 오면 사람들은 농장이나 작업장에서의 일을 멈추고 방에 모여 저녁밥을 먹었다.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은 내용과 조리법도 서로 다른 식사를 했다.

바다에는 물고기가 많아 해안 근처에 살던 바이킹에게 물고기는 주요한 식량이었다. 겨울을 나려면 음식을 저장해야 했다. 물고기와 육류는 바람에 말리거나 소금물에 절였다. 소금은 바닷물을 끓여서 만들었는데 힘들고 지겨운 일이어서 대개 노예들이 했다. 또한 물고기와 육류는 훈제되기도 했던 것 같다. 가난한 바이킹은 눈에 띄는 모든 것으로 빵을 만들었다. 스웨덴에서 발견된 빵에는 말린 완두콩과 소나무 껍질이 들어 있었다. 양배추와 완두콩은 가장 흔한 채소였다. 바이킹은 대개 자신이 먹을 야채를 직접 재배했다. 대서양의 섬에 이주한 바이킹은 갈매기 알을 모아서 먹었다. 그들은 갈매기를 구워먹기도 했다. 그리고 바이킹은 고기 스튜나 수프에 마늘과 양파를 추가했다. 바이킹은 덫이나 활로 산토끼도 잡았다. 그 밖에도 사슴, 곱, 야생멧돼지, 순록, 물범, 고래 등을 사냥했으며 양, 소, 돼지, 염소, 거위, 닭, 칠면조 심지어 말까지 식용으로 길렀다³¹⁾.

VI. 바이킹의 침략과 정복

1. 잉글랜드

바이킹 침략의 첫 기록은 Anglo-Saxon Chronicie에 나타나 있다. 이 침략은 영국의 남해안 도아세트(Dorset)에 있는 포트랜드(Fortland)에 대한 것으로 북방인(Northmen)의 세

31) Ibid., p. 32, 34 & 35.

척의 배로 이루어졌다³²⁾. 영국에서의 이 기록은 793년 6월 8일 린디스파른(Lindisfarne)의 수도원 공격으로 시작되고 있다³³⁾. 794년 바이킹은 제로우(Jarrow)를 침략하였고, 노오삼브리아(Northumbria)의 다른 주요한 수도원을 약탈했다. 그때 앵글로색슨 왕국은 끊임없는 바이킹의 침입에 의하여 괴로움을 받았다. 842년 덴인은 런던(London)을 약탈했다. 이 때부터 몇년 후 그들은 영국에서 영구적인 거울기지를 건설했다. 습격계절 뒤 스칸디나비아로 돌아가야 할 필요에서 그들은 자유케 되었다. 800년부터 그들은 해적행위로부터 대규모적인 점령과 영구적 거주로부터 전환했다. 한편 앵글로색슨왕국은 전반에 걸쳐 퍼지게 되었다³⁴⁾.

영국인이 이 북방민족에 대한 저항은 라그나르 · 로도브로그(Ragnar Lodbrok)의 세 아들 즉 할프단(Halfdan), 이바르(Ivar), 그리고 암베(Ubbi) 등에 인솔되는 군이 865년에 도착하여 동 앙그리아(East Anglia)와 노삼브리아(Northumbria)를 정복하고 마아샤(Mercia)의 대부분을 진정시킴으로써 비로소 수습되었다. 그러나 웨סקס(Wessex)의 알프레드(Alfred)대왕의 저항은 계속하여 가끔 덴인(Dane)과 전투하다가 878년에 휴전이 실현되고 886년경 잉글랜드 북동부의 태반이 덴인의 지배를 인정하는 조약이 체결되었다. 892~897년 간에 걸쳐 전투가 재발하여 알프레드대왕은 바이킹을 격파했다. 에드워드왕은 924년까지 바이킹으로부터 마아샤와 동 앙그리아를 탈취했다. 노산브리아에 있어서 스칸디나비아인의 세력은 954년 에델렛드(Etheired)왕에 의하여 배제되었다. 그러나 980년 이후 뒤에 노르웨이왕이 된 오라프(Olaf)와 뒤에 덴마크왕이 된 스웨인(Swein)이 인솔하는 바이킹의 침략이 재개되어 잉글랜드는 덴마크왕 가누트(Canute)제국의 일부로 되었다. 그 후 1042년 에드워드(Edward)왕의 즉위로 잉글랜드의 왕가가 평화적으로 부흥했다. 그러나 에드워드왕의 사망 후 바이킹의 피를 계승하고 이미 프랑스화하고 있던 놀만디공(公), 윌리암(William)이 잉글랜드의 왕위에 올라 놀만 왕조가 개시되므로 바이킹의 위력은 사라졌다. 그러나 스칸디나비아인에 의한 침입은 잉글랜드에 대하여 큰 영향을 미쳐 사회기구, 방언, 지명, 인명 등에 있어서 발견되고 있다³⁵⁾.

2. 서방해역과 아일랜드

프랑스, 잉글랜드 그리고 독일은 9세기 및 10세기에 있어서 광대한 바이킹세계의 한 부분을 형성했다. 800년대 중엽 노르웨이인과 덴인은 아일랜드의 대부분을 정복했다. 그리고 875년과 930년간에 그들은 먼 그리고 황폐한 아이스랜드를 식민했다. 그곳에는 독특한 고대 스

32) Joseph R. Strayer ed., *Dictionary of the middle Ages*, Volume 12, New York, 1989, p. 418.

33) プリタニカ 國際大百科辭典, 16, op. cit., p. 83.

34) C. Warren Hollister, *Medieval Europe*, 7th ed., McGraw-Hill Inc., 1994, pp. 109~110.

35) Ibid., p. 83.

칸디나비아문화가 수세기간 잔류했고 오직 서구문명의 주된 풍조에 의하여 가볍게 영향받았을 뿐이다. 아이스랜드에 있어서 고대 스칸디나비아의 장려한 구전 전통이 번영하고 있었다. 그리고 결국은 긴 어두운 아이스랜드의 겨울동안 기록하고 서사적 여홍을 준비하도록 허락되었다.

아이스랜드의 고대 스칸디나비아인들은 아마 가장 훌륭한 항해인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늦은 900년대에 있어서 그린랜드(Greenland)의 해안에 정주했고 11세기에 그들은 북아메리카 즉 뉴фаون드랜드(Newfoundland)의 북쪽 해안가에 임시적인 정주지를 설립했다. 그린랜드의 정주지는 콜럼버스(Columbus)의 항해시까지 잔존했다³⁶⁾. 900년경부터 스칸디나비아인의 신장은 서방해역에서는 아이스랜드로부터 그린랜드에 미쳤고 다시 북아메리카까지의 진출이 시도되었다. 바이킹이 북아메리카의 해안에 상륙한 것은 약 1000년대이다. 덴마크왕 스웨인(Swein, 1047~1074)은 대양에서 새로운 섬이 발견되었는 데, 그것은 빈랜드(Vinland)라고 불렸는 데 그곳에는 술을 생산하는 야생의 포도나무가 자라고 있었다³⁷⁾라고 말하고 있다. 한편 그들은 헬루섬(Helluland)과 오크니(Orkney)섬에 식민하고 여기서부터 스코트랜드(Scotland) 본토 슈드랜드섬(Shetland), 헤브리테스(Hebrides)섬들을 침략했으나 때로는 획득하고 있던 토지를 상실하기도 했다³⁸⁾.

헤브리테스섬과 만(Man)섬에는 많은 스칸디나비아인이 살며 바이킹의 수령들은 이 지역의 왕이라고 주장했다. 만섬에 있어서 강력한 왕가의 확립은 스칸디나비아인의 구드리드(Gudrid)에 의한 것이지만 이것은 1079년부터 시작한 제2 바이킹시대에 속한다.

바이킹이 아일랜드에 최초로 나타난 것은 기록상 795년 당시 레제르(Lejre)라고 불리웠던 섬이라고 생각되나 그 위치는 명확하지 않다. 그 후 원주민과의 전투가 계속했으나 그들은 더부린(Dublin), 리마릿그(Limerick), 워터포오드(Waterford), 웨스포오드(Wesford), 코오크(Cork) 등지에 바이킹의 소왕국을 창건했다. 10세기초 더부린왕국의 왕들은 더부린과 노삼바란드(Northumbaland)를 통치했다. 아일랜드의 스칸디나비아인의 오크니(Orkney) 백과 일부 케일(Keel)의 족장들의 지지를 받았으며, 1014년의 클론타아프(Clontarf)의 전투에서 켈족의 유력한 부족왕 브라이안 보루(Brian Boru)에게 큰 패배를 가하여 아일랜드 통일의 희망은 분쇄되었다. 그러나 12세기에 영국인이 아일랜드를 침략했을 때 바이킹(이때는 이미 기독교화 되어 있었다)이 더부린 워터포오드, 리마릿그, 웨스포오드, 코오크에서 우연히 지배적인 세력을 확보하고 있었음이 발견되었다³⁹⁾.

36) C. Warren Hollister, op. cit., p. 111.

37) Joseph R. Strayen ed., op. cit., p. 428.

38) ブリタニカ 國際大百科辭典, 16, op. cit., p. 83

39) Ibid., p. 83.

3. 프랑스

프랑스의 카로링 왕조(프랑크)는 잭슨족 정복에 수반하여 덴마아크를 위협하여 북방으로의 영토확장을 행하였다. 810년에 덴마아크왕 곳드프래드(Gotfred)가 프리이스란드연안에의 침략을 지휘했을 때 비로소 카로링구 왕조와 스칸디나비아인간에 충돌이 일어났다. 그러나 이것도 곳드프래드가 부하에게 암살됨으로서 동결했다. 칼(Karl)대제와 후계자인 루이 1세(Louis)는 해안의 방비태세를 확고히 하였기 때문에 이 제국은 바이킹에 있어서 음식문제를 해결할 만한 것은 획득할 수 없었다.

바이킹에게 영국의 찬넬(Channel)제도는 장벽이 아니라 큰 길로 되었고 그들의 침입단은 영국과 프랑스의 해안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했다. 그들은 큰 강구에 영구적인 기지를 건설하였고 침략당한 왕국과 약탈된 마을로 항해해 올라갔다. 안트워프(Antwerp)는 837년 루昂(Rouen)은 841년 함부르크(Hamburg)와 파리(Paris)는 845년에 샤를마뉴(Charlemagne)의 옛수도 아헨(Aachen)은 845년에 황폐화 되었다. 그러나 많은 유럽의 왕자들은 그들의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완강하게 싸웠다. 웨סקס의 알프레드(Alfred)왕은 그의 왕국을 덴마인의 정복으로부터 870년대 후에 구하였다. 그리고 영국에 있어서 덴마아크군에 대한 반격을 시작했다.

동프랑크(East Franc)의 아늘프(Arnulf)왕은 891년 딜에(Dyle)전투에서 북방인에게 결정적인 승리를 얻었다. 그리하여 바이킹의 독일에 대한 압력은 감축되었다. 그러나 이때 헝가리인의 습격이 시작했다. 서프랑크(West Franc)는 잠시 고통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911년 칼대제는 북방인의 족장 롤프(Rolf)와 조약을 체결하여 북프랑스(Northern France)에 우정적인 바이킹의 완충국을 창건했다. 롤프집단의 바이킹은 세느강가의 그들의 정주지로부터 약탈을 지도했다. 칼은 롤프를 그의 동맹으로 만들 것이며 더한 침략에 대한 유효한 방벽을 증명하는 세느강가의 정주지라는 것이 그의 이름에 함축되어 있다. 롤프는 기독교인이 되었고 칼의 딸과 결혼했다. 그리고 최소한 프랑스왕국의 군주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의 국가는 서방 기독교도의 눈으로 합법적인 지위를 인정케 되었다. 롤프와 그의 후계자들 아래 점진적인 확장은 북방인의 나라 또는 노르만디(Normandy)로 알려지게 되었다⁴⁰⁾.

프랑크제국은 덴마아크의 제후들에 대하여 덴마아크왕에게 반항하기 위하여 제국영토내에 정주할 것을 허가까지 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와르헤렌(Walcheren) 루스트링겐(Rustringen) 도레스레트(Dorestad)에는 덴마아크인의 수령들이 있었다. 루이 1세가 죽음으로서 제국이 분열한 뒤로 프랑크는 자주 바이킹의 맹공에 시달리어야 했다. 881년에 소오글

40) C. Warren Hollister, op. cit., pp. 110~111.

891년에는 테르(Ter) 강에서 그들을 격파했다. 한편 바이킹은 885년부터 다음해에 걸쳐서의 파리공략에서도 실패했다. 10세기에는 겨우 바이킹은 로아르(Loire) 강과 세느(Seine) 강에 최초의 발판을 확보하고 세느강을 거점으로 해서 노르만디(Normandy) 공국을 창설했다. 이것이 칼대제의 영토내에서의 바이킹의 유일한 항시적인 것으로 끝났다. 프랑스에서는 바이킹은 영국에서 경험한 것과 같은 성공을 겉을 수는 없었다. 문화적으로 대륙의 언어와 제도에서 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⁴¹⁾.

4. 스페인과 지중해

프랑스부터 남방에서 바이킹은 이렇다 할 만한 업적을 남기지 못하였다. 844년 그들은 리사본(Lisbon), 가디아즈(Cadiz), 세비리아(Seville) 기타 지역을 침략하고 다시 모로코(Morocco)의 연안까지 달하였으나 이슬람 세력의 격렬한 저항으로 말미암아 후퇴했다. 그 직후에 무어(Moor)인의 사절단이 어떤 바이킹 왕국에 과연되었으나 그들은 바이킹 여성들의 풍기가 문란했던 것과 남자들의 질투심이 없었다는데 놀랐다고 전해지고 있다.

859년부터 862년에 걸쳐 바이킹의 대선단이 지중해로 원정하고 이태리의 마그라강만의 루나(Luna)를 로마(Roma)와 결탁 멸망시켰다. 그러나 이 원정에 관한 자료는 애매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 시기에 스페인의 침략이 재개되고 있으나 그 후는 964년까지 침략의 기록은 없으며 970년 이후는 완전히 끊어졌다⁴²⁾.

5. 동방에의 침략과 침투

동방에서 바이킹은 무력으로 왕국을 건설한 일은 없었다. 교역기지를 건설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그곳에서 그들 자신의 습관에 따라 생활하였다. 안스갈(Ansgar)의 전기에는 덴인과 스웨덴인의 쿠어란드(Kurland)에의 원정과 바이킹의 식민지였던 제란드(Seeland) 시의 침략(851~854년)에 관한 기록이 있다.

스웨덴의 바이킹들은 핀란드쪽으로 침투해 갔고 그리고 유럽 러시아의 강을 따라 콘스탄티노플과 바그닷드와 교역하기 위하여 스며들어 갔다. 스웨덴인은 860년과 907년에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했다. 그리고 그들의 노력은 비잔틴황제로부터 귀중한 교역특권을 획득했다⁴³⁾.

동방에로의 최대의 움직임으로는 스칸디나비아인의 러시아의 오지에로 진출이다. 1100년 경 기술된 러시아의 원초연대기(原初年代記)에는 이 진출이 원주민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41) Ibid., pp. 83~84.

42) Ibid., p. 84.

43) C. Warren Hollister, op. cit., pp. 111~112.

연대는 862이었다고 기술되어 있으나 러시아로부터 돌아가는 도중의 스웨덴인이 839년에 루이1세를 방문한 비잔틴의 사절단에 참가하고 있었던 것은 이 동방으로의 발전이 862년 보다 앞섰던 것으로 시사되고 있다. 스칸디나비아인은 키예프(Kiev)와 노보고로드(Novgorod)에서 한 때는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슬라브(Slav)인 속으로 융합해 버렸다. 루스(Rus)인 즉, 스칸디나비아인은 주로 교역상인이었다. 원초연대기에는 그들과 그리스(Greec)인간에 체결된 두 개의 통상조약(912, 945년)에 관한 기록이 있으나 그중 루스인의 서명은 분명히 스칸디나비아인의 이름이었다. 그러나 루스인은 단독의 민족으로는 1050년경까지 존속하지 아니했다⁴⁴⁾.

동방의 스칸디나비아인 중에는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비잔틴제국의 용병 특히 와르아기호위대의 이름으로 알려지고 있는 근무에 복무하던 사람도 있었고 그 대장이었던 하라르도와 같이 뒤에 놀웨이의 왕위에 오른자도 있었다⁴⁵⁾.

VII. 교 역

바이킹은 8세기 말로부터 11세기 중엽에 걸쳐 해상으로부터 유럽의 각지에 침입하여 약탈, 정복, 식민, 교역, 탐험 등 각양의 활동을 전개했던 북게르만족의 총칭이다. 바이킹들을 매우 활동적이며 그들의 고국에 있어서는 우수한 법률에 의하여 잘 조직된 국가를 건설하고 한편 평화적인 통상에 의하여 스웨덴인의 비루카, 쉬레스비히, 그리고 발트연안지역에 있는 덴마크의 하이타브와 같은 상업의 중심지를 구축하고 이것을 발전시켰다. 한편 노르웨이와 그 식민지 아이슬란드에는 기독교의 침투가 늦었기 때문에 어디보다도 비교적 게르만세계의 전통이 남아 있었다.

바이킹시대의 경제는 농업을 근본으로 했으며 농민은 3포제(三圃制 = Dreifelder system)의 농업경작을 영위하며 다수의 가축을 치고 있었고 촌락은 아직 공동체적 색채가 강했었다. 수공업도 점차로 일어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상업도 성하게 되고 이 상업의 중심지로서 시(市)나 읍(邑)이 성립하기 시작했다. 그와 같은 시나 읍들(주로 스웨덴)은 중앙에 성이 있고 둘레에는 토벽을 들려졌으며 그 바깥쪽에는 묘지를 갖추고 있었다. 거래에는 아직 은괴(銀塊)가 쓰여졌지만 북유럽에서는 8세기 말에 영성한 은화가 주조되기 시작했으며 화폐의 주조는 11세기 이후 본격화했다. 그 때까지는 아라비아나 영국 등의 화폐가 대량으로 수입되어 유통했었다⁴⁶⁾. 동전(銅錢)은 바이킹시대의 말기부터 널리 사용되었다. 그 전에는 물품

44) Ibid., p. 84.

45) Ibid., p. 84.

46) 教育書館, 教育世界百科大辭典, 8, 서울, 1986, pp. 402~403

은 대개 온으로 사거나 같은 가치가 있는 물품과 물을 교환되었다. 덴마아크에서 처음 동전을 만든 것은 9세기의 일이며 하랄(Haralld)왕이 통치하던 975년 이후에 가서야 많은 동전들이 만들어졌다⁴⁷⁾.

바이킹은 스칸디나비아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까지 다니며 상품을 매매했던 뛰어난 장사꾼들이기도 했다. 북유럽에는 배를 만들기 위한 목재 도구나 무기를 만들기 위한 철, 모피, 배의 로프를 만드는 고래나 물범의 가죽, 조각용의 고래뼈나 바다코끼리의 상아 등이 풍부했다. 바이킹은 이러한 물건들을 먼 지역까지 운반하여 그 지방의 물품들과 교환했다. 영국에서는 밀은 옷감 등을 지중해에서는 포도주, 소금, 도기류, 금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들은 발트해를 건너 러시아의 강 상류까지 항해한 다음 겉거나 낙타를 타고 콘스탄티노플과 예루살렘까지 진출했다. 가는 길에 있던 시장에서 바이킹은 유리제품, 진귀한 향료, 비단 그리고 노예들을 흥정했으며 이런 시장과 도시는 무역중심지로 성장했다. 바이킹의 대표적인 교역 도시에는 스웨덴의 비르카(Birka), 노르웨이의 카우팡(Kaupang), 덴마크의 헤데디(Hededy), 잉글랜드의 요크(York), 아일랜드의 더블린 그리고 우크라이나(Ukraina)의 키에프(Kiev)등이 있다. 노예무역으로 돈을 많이 번 바이킹도 있었다. 노예는 9세기의 프랑스 수도사 같은 그리스도교도가 많았다. 농장일이나 건설작업을 위하여 고향으로 데리고 간 노예도 있었고 온을 받고 아립인에게 판 노예도 있었다⁴⁸⁾.

바이킹은 용감한 탐험가들이었다. 새로운 땅을 찾아서 북대서양의 얼어붙은 미지의 바다를 항해했다. 대부분의 탐험가들은 노르웨이 사람이었는데 그 나라는 살만한 계곡에는 인구가 밀집해 있고 농지가 적은 곳이었다. 그들은 파로(Faroes)제도와 아이슬란드 그리고 그린란드와 빙랜드를 발견했다.

아이슬란드는 870년에 발견되었는데 날씨가 좋을 때 노르웨이부터 아이슬란드까지는 7일이 소요되었다. 첫 이주자는 노르웨이 손피오르드(Sogne Fiord) 출신의 인골프(Ingolf Arnarson)⁴⁹⁾였다. 그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만에다 넓은 농장을 건설했는데 이곳이 뒤에 수도인 레이캬비크(Reykjavik)가 되었다. 이주자들은 양을 길렀고 그 지방의 특유의 철과 동광석으로 무기와 요리 단지를 제작했다. 그들은 곧 이러한 천연자원을 양털과 아마포와 함께 수출했다.

850년경 스웨덴인은 볼가(Volga)강과 도니에퍼(Dnieper)강을 동방시장으로의 노예길(Slave routes)로 개통하였고 노예교역은 바이킹상업에 있어서 필수적이었다고 서술되고 있다⁵⁰⁾. 바이킹시대에 스칸디나비아에서 발달한 것이 교역이었다. 북부는 남부의 그리고 남부

47) 수산 M. 매거선, 번역감수 민석홍, op. cit., p. 26.

48) Ibid., p. 26.

49) Gwyn Jones, A History of the Vikings, New York & Toronto, 1968, p. 274.

는 북부의 상품을 원하였기 때문이다. 예컨대 동(銅)과 석(錫)은 중앙 그리고 남·동부유럽으로부터 강길(River routes)를 통하여 이동하였다. 그때 정확한 교역상품인지 또는 교전, 약탈행위 또는 정상적교역의 결과 북부에 외국으로부터의 주권이 축적되었는지 정확이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주장된다. 아일랜드 청동제 그리고 서유럽 즉, 오세베르크(Oseberg)의 부처, 물통, 올린(Wollin)의 스칸디나비아 슬로바니아제 도자기 고트란드(Gotland)의 아랍 독일 그리고 앵글로·색슨의 주전 비루카(Birka)의 은, 아랍 및 라인제 유리제품, 프리지엔 웃, 그리고 프랑크제 무기 헤데비(Hedeby)의 스웨덴산 철광석 및 슬래그, 이것들은 무역에 관하여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교역되었던 상품으로는 노예, 무기, 모피, 엿기름, 포도주, 과일, 바다상어, 철선, 장식품, 비단, 모직물, 생선, 수산물, 목재, 견과(堅果), 순록, 사슴의 가지친 뺨, 소금, 맷돌, 가죽, 벳, 항아리, 지방, 주전, 마구 등이 지적되고 있다⁵⁰⁾.

교역내용을 보면 노르웨이는 아이스랜드에게 재목을 아이스랜드는 그리랜드로 식량과 곡식을 그리고 그린랜드는 미국주민에게 채색된 옷감을 공급했다. 미국으로부터는 흠이 없는 모피와 목재를 그린랜드와 아이스랜드로, 그리고 이런 국가로부터는 모직물, 물개기름, 바다상어 지방, 매 그리고 휜곰 등을 스칸디나비아의 상업중심지로 보내졌다. 아일랜드해를 건너 스칸디나비아 상인들은 웨일즈에서 노예, 말, 꿀, 엿기름과 밀 등의 활발한 무역을 행하였다. 아일랜드는 포도주, 가죽, 텁, 고래기름, 버터, 그리고 조악한 모직옷 등을 수입했다⁵¹⁾.

991년 오라프 트리그바손(Olaf Tryggvason)과 에텔레드(Ethelred)왕간에 체결된 조약은 외국상선의 안정과 영국강구에서 선원과 화물 그리고 바이킹과 해외에서 조우했을 때 충분히 중시하는 것을 보증하였다. 덴인과 노르웨인들은 런던으로의 빈번한 상인이었고 크뉴트(Knut) 그리고 에드워드(Edward, 1042~60)왕의 통치기간 중의 조건들을 조회하기 위해 나타난 시의 관습을 12세기에 추론되었다⁵²⁾. 그동안 교회는 노예교역에 있어서 박애와 종교를 갖도록 노력했다. 키에프상인은 비잔티움에서 비단을 뢰겐스부르크(Rögensburg)에서는 말과 노예를 구매했다⁵³⁾.

바이킹은 서유럽에 비하여 우수한 조선기술과 항해술을 이용하고 외지의 연안을 항해하여 약탈하면서 동시에 상업을 행하였다. 스웨덴의 바이킹은 발틱해를 향하여 부유한 미크라가나(Miklagna = Konstantinofle)에 달하였고 노브고롯드로부터 켄카아드(Kenngard = Kiev)를 경유하는 도니애플상업 통로를 확보하고 슬라브, 비잔틴의 문화권에 들어갔다. 노르웨

50) Ibid., p. 148.

51) Ibid., p. 157.

52) A. H. Williams, *An Introduction to the History of Wales*, cardiff, 1941, I, p. 157.

53) Stenton, *Anglo-Saxon England*, p. 533. Gwyn Jones, op. cit., pp. 163~164 제인용.

54) Gwyn Jones, op. cit., p. 164.

이의 바이킹은 대서양 및 서유럽으로 향하였다. 덴마아크의 바이킹은 발티해로부터 쓰거나 잉글랜드 동해안으로 향하였으나 급속히 불과하여 그뒤 곧 발티해로 세력을 확대하고 11세기 초에는 살란드(Samland)로부터 비루카(Birka) 및 이에 대신하는 시구트나(Sigtuna)와 교역을 행하였다⁵⁵⁾.

이와같이 바이킹들은 아이스랜드, 그린랜드, 고트랜드를 거쳐 빈랜드까지 항해했을 뿐만 아니라 남부로는 영국, 프랑스해안을 거쳐 지브랄탈해협을 지나 콜시카 이태리까지 그리고 비잔티움으로 항해했다. 육로로는 코레쯤(Chorezm), 이틸(Itil), 가울간(Gurgan), 바그dad(Baghdad), 키예프(Kiev)를 거쳐 베레짜니(Berezany)까지 방문하므로 그 여행판도가 전유럽과 아랍세계 및 빈랜드북부로가는 북부전역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 거래한 물품의 종류도 다양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⁵⁶⁾.

결론적으로 노르만인이라고 불리워졌던 것은 유트란트와 그 인접 제도와 스칸디나비아에 거주하고 있던 북방종족이었다. 그들은 세 주요한 계통 즉 덴마아크인, 스웨덴인, 그리고 노르웨이인으로 나누어진다. 노르만인은 그 씨족발전에 있어서 타유럽인에 비하여 뒤늦었으며 주민은 주로 수렵, 어로산업에 종속하였고 씨족제도나 종족별 분열이 오래 존속하고 있다.

그러나 8~9세기에는 노르만에서도 이미 사회적 분화가 시작되었고 씨족적 귀족 및 군사귀족이 분화하고 왕권 아래 종족동맹이 발생했다. 불모지는 중대하는 주민을 양육할 수 없었다. 노르만인은 용감한 항해자였다. 바다는 그들에게 친밀한 자연이었다. 귀족이나 종사(從士)의 군사원정은 군사적 민주주의의 발달과 더불어 해족적 침입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약간의 바이킹의 수령과 그의 종사는 뱃머리에 용을 그려 장식했고 100명까지의 전사를 수용할 수 있는 무개(無蓋)의 갑판이 없는 배로 원정을 행했다. 그들은 해족행위와 무역에 종사했다.

서(西)노르만-노르웨이인과 덴마아크인은 북해연안 대서양연안 및 지중해연안으로까지 침입했다. 노르웨이인은 멀리 북방 및 서방으로 나아갔다. 그들은 아일랜드나 스코트랜드로 침입하고 스페인과 그린랜드에 식민지를 구축했다. 1000년경에는 북아메리카연안으로까지 도달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확보할 수가 없어 미국에로의 길은 잊어버렸다. 덴마아크인은 서방으로는 그렇게 멀리까지는 행하지 못했다. 그들은 독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태리의 연안에 침입했다. 큰 강의 강구에 숙영지를 구축하면서 그들은 그 강의 호름에 따라 훨씬 상류로 향하였으며 그 노상의 모든 곳을 약탈하고 불태워 버렸다.

정치적으로 분열했던 봉건적인 서유럽제국의 종대하는 차취의 무거운 압력을 받았던 농민은 가끔 노르만을 지지하고 노르만부대에 합류까지 하기도 했다. 귀족들은 무서운 바이킹에

55) 増田四郎 外 4人, op. cit., p. 146.

56) Gwyn Jones, op. cit., pp. 160~161 Map 3. 참조.

반대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점차 약탈적 침입으로부터 노르만인은 이주를 위해 토지획득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북동잉글랜드에 있어서 그들은 이미 9세기 전반에 이주하기 시작하여 급속히 그 주변의 주민과 융합했다. 10세기 초 프랑스왕 샤를는 노르만의 수령의 한 사람인 롤로(Rollo)에게 세느강구의 지역을 양도했다. 노르만인은 기독교를 채용하였고 프랑스왕의 가신으로서의 종속을 인정했다. 이리하여 놀만디공국이 형성되었다. 놀만디공국을 건설한 노르만인은 스스로의 언어를 잊었고 프랑스어를 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급속히 봉건조직으로서 프랑스의 정치제도를 받아들였다. 놀만디로부터의 이민은 9세기에 시작하여 지바랄탈(Gibraltar) 해협을 통하여 지중해로 들어와 시칠리아와 남부이태리의 일부를 정복했다. 여기에서 시칠리아공국이 형성되었고 뒤에 왕국으로 되었다.

동(東)노르만-스웨덴인은 침입을 동방으로 향하였다. 스웨덴 해족대는 페란드만과 서(西)드비나(Dvina)강을 통하여 러시아의 하천에 따라 반약탈적 반상업적 원정을 조직했다. 불가강에 따라 그들은 카스피해에 들어가 그곳에서 아랍상인과 교역했다. 드니에프강에 따라 그들은 흑해와 비잔틴에 도달했다. 루쓰(Rus)는 스웨덴 해족단의 생각으로는 비옥한 토지 또는 도시국가(Gaardariki)였다. 슬라브공(公)들은 여러차례 스웨덴 해족단의 침입을 격퇴하여 바다 저쪽으로 격퇴시키지 않으면 안되었다. 동슬라브인족의 확고한 저항 때문에 노르만인은 영국이나 프랑스에 있어서와 같이 루쓰(Rus)의 영역을 이주를 위하여 점령할 수가 없었다. 스웨덴 해족단은 가끔 키에프(Kiev)공의 종사의 성원으로 될 때는 전부대로 공적으로 고용되었다. 그러나 루쓰에 있어서 스웨덴 해족단의 수는 적지 않았다 그들 중의 약간의 사람들은 그곳에 정주하는데 불과했다. 그 대부분은 루쓰를 다시 남방으로 전진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숙명으로 보고 있었는데 불과했다. 키에프공(公)은 대략 862년경에 노브고롯드인에 의하여 불리워졌던 스웨덴 해족단의 종사들의 수령 루릭(Rurik)으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주장되고 있다⁵⁷⁾.

Thing은 중세 스칸디나비아에 있어서 지방, 영토, 그리고 아이스랜드에 있었던 통치적 및 법적 주요사항을 담당했던 자유인으로 조직된 기초적 단위이었다. 확정된 시기에 회집된 Thing은 순수히 민주적 그리고 이론적으로 기능했으며 모든 수준에서 입법하고 왕의 입후보자를 선출했으며 모든 법률상의 문제들을 조정했다. 그들은 지방의 지도자 혹은 법적 대변인들을 통괄했다. 그들은 공동생활체의 가장 영향력 있는 구성원들에 의하여 지배를 받았다. 아이스랜드에 있어서는 결국 아이스랜드의 의회인 Althing의 구성으로 인도되었다. 13~14세기에 있어서 다른 국가들의 Thing은 점진적으로 그들의 특권은 관료주의적 왕실과 귀족 성직자들의 의회로 넘겨지게 되었다. Althing은 아이스랜드의 Thingvellier에 있었다.

57) 이 결언부분은 E. A. KOCHNHCKNH, 阿部玄治譯, op. cit., pp. 184~186을 인용한 것임.

북방인은 다신론자였으나 대표적인 세 신(神) 즉 오딘, 트로, 프라이를 숭배하고 있었다. 오딘(Odin)신은 Wodan, Woden, 또는 Wotan이라고도 불리워졌다. 북방인의 신화 중 가장 중요한 신 중의 하나인 오딘은 전쟁의 신이었다. 문헌에는 영웅들의 보호자로 나타나고 있다. 전사한 무사들은 밸헬러(Valhalla = 북유럽 신화에서 오딘의 전당)에서 오딘에게 합류했다. 그리고 늑대와 큰까마귀를 오딘에게 헌납했다. 그의 마법의 말 Sleipnir는 여덟 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빨에 룬(Rune)문자가 쓰여져 있었다. 그리고 하늘과 바다 위를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오딘은 신 중에서 가장 위대한 마법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한 시(詩)의 신이었다. 외형상 그는 늘어진 수염과 오직 하나의 눈만을 가지고 있는 키가 크고 늙은 신이었다. 그는 통상적으로 외투를 입었고 넓은 양테가 있는 모자를 썼으며 창을 휴대하고 있었다고 묘사되고 있다.

토르(Thor)신은 고대 게르만족의 신으로 특히 북유럽에서 옛부터 숭배되었다. 토르는 뇌신(雷神)으로서 오딘(Odin)의 아들 또는 동생이라고 전하여지고 있다. 아스가르드(Asgard)에다 540층의 거대한 집 비로스키루를 짓고 거기에서 거주했다. 미요루니-루(Mjollnir)라는 함머를 가지고 아무리 거대한 사람이라도 일격으로 눕혔다. 이 은으로 만든 함머는 한 번 던지면 스스로 다시 그에게 돌아오는 것이었다.

토르신이 이 함머를 격렬하게 흔들면 번뇌가 일어난다고 했다. 숫양이 끄는 차를 타고 거인족을 정복했으나 역으로 거인족의 책략에 말려드는 일도 있었다. 세계 멸망시 맷도가르도(Midgard)뱀과 격투한다. 오딘이 귀족이나 무인들의 신이였는데 대하여 토르신은 농민수호신이었다. 결혼을 축복하고 대지를 비옥케 하는 신이기도 하다. 라틴어의 목요일 ovisdies에 대한 영어는 Thursday 즉 토르의 날이다. 로마인들은 토르신이 헤라크拉斯(Heracles) 뒤의 유히테르에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프라이(Frey)는 북유럽 신화 속의 신이다. 원래 바다의 신족(神族) 바니루(Vanir)의 신이었으나 바니루가 아사(Asa)와 싸운 끝에 인질을 교환했을 때 프라이도 아버지 니요루드(Njord)와 누이 프라이야(Freyja)와 같이 아스가르드(Asgard)에 인질로 가서 아사신족의 벗으로 되었다. 풍요신인 아버지 니요루드와 마찬가지로 풍작과 생식 그리고 평화의 신이며 또 비와 태양의 신이기도 하다. 사랑과 다산(多產)의 신인 누이 프라이야와 같이 난장이 불럭으로부터 받은 금색의 맷돼지가 끄는 차를 타고 하늘을 달리면서 과실들을 지상으로 던졌다. 세계 멸망 때 스르토르와 싸워 사망했다.

VII. 결 언

북유럽 상업권이 융성한 때는 중세후기였으나 중세중기에 지중해 상업권과 병존하고 있었다. 이 상업권은 중세전기의 북해 발틱해의 상업교통에서 발했다. 이 교통은 아르만인의 서유럽으로의 습해에 이르기까지 존재하고 있다. 프랑크왕국이 붕괴되는 기회에 맞춰 서유럽에 비하여 우수한 조선술과 항해술을 이용하고 외지의 연안을 항해하면서 약탈도 하고 또 동시에 상업도 행하였다. 바이킹은 8세기 말로부터 11세기에 걸쳐 해상으로부터 유럽의 각지로 침입하여 약탈, 정복, 식민, 교역, 탐험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북게르만족의 총칭이기에 프랑크왕국과 북유럽상업권과의 관계는 아주 밀접했음이 분명하다.

바이킹은 덴마아크계, 노르웨이계, 그리고 스웨덴계로 크게 3대별 된다. 그들은 노예, 자유인 및 귀족 세계의 사회계급으로 이루어졌다. 바이킹은 법적인 규제를 받으며 민회 즉 Thing 또는 Althing으로 중요한 일이 주민들의 의견에 의하여 결정되었던 민주적인 집단이기도 했다. 바이킹의 주거 및 식생활은 당시의 상황을 적절히 이용하는 방안과 수준에서 해결되었다. 그들은 화폐를 사용하였으며 오딘, 트로, 브라이를 숭배하는 다신론자였다.

바이킹은 서유럽에 비하여 우수했던 조선기술과 항해술을 이용하고 외지의 연안을 항해하여 약탈하면서 동시에 교역도 행하였다. 스웨덴의 바이킹은 발틱해를 향하여 부유한 콘스탄티노플에 도달하였고 노보고롯드로부터 키에프를 경유하는 도니에풀 상업 통로를 확보하고 슬라브 비잔틴의 문화권에 들어갔다. 노르웨이의 바이킹은 대서양 및 서유럽으로 향하였다. 덴마아크의 바이킹은 발틱해로부터 콧거나 잉글랜드 동해안으로 향하였으나 급속히 붕괴하여 그 뒤 곧 발틱해로 세력을 확대하고 11세기 초에는 임란드로부터 비루카 및 이에 대신하는 시구트나와 교역을 행하였다. 바이킹의 분석은 우리의 경우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이해에 머물렀으나 앞으로의 연구는 편향적이 아니고 광범한 심층분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부언한다.

유럽聯合(EU)의 會計標準化 過程

高 承 福*

目 次

I. 프롤로그	3. 指針 第8號의 監查人資格規程
II. 유럽의 市場統合과 會計標準化運動	IV. 유럽의 職業會計士制度와 EU의 會計指針
1. 유럽의 市場統合	1. 유럽의 職業會計士 制度
2. 유럽연합의 會計標準化 運動	2. 유럽연합의 會計制度 國聯規程
III. EU의 會計標準化를 위한 會計規程	V. 考慮해야 할 會計問題
1. 指針 第4號의 會計規程	VI. 애플로그
2. 指針 第7號의 聯結合計規程	

I. 프롤로그

유럽연합(European Union : EU)은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 : EC)를 모체로 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세계 최대의 단일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 4차례에 걸친 회원국 확대와 동구권 국가와의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므로써, EU를 軸으로 하는 광역 유럽경제권의 형성은 더욱 가시화되고 있어서, 세계경제에서의 EU의 위상은 계속 증대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1995년 1월에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의 EU가입으로 종래의 12개국에서 15개국¹⁾으로 회원국의 수가 늘었으며 경제규모 뿐만 아니라, 지리적 영역도 확대되었다. 따라서, EU는 인구 3억7,500만명으로 미국과 일본의 인구 합계와 맞먹고 GDP규모에 있어서도 6조7,000억달러로서 미국을 능가하고 있으며, 수입은 1조3,500억달러로 미국의 3.5배, 일본의 7배 수준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시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수출 의존도가 높고 시장다변화 등의 정책적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EU시장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정부와 기업은 EU와의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통상마찰과 수입규제의 요인을 제거해야 하며, 시장확대의 거점 및 현지 유통망 확보를 위한對EU투

* 植國大學校 商經大 教授

1) 「유럽연합」(European Union : EU)의 회원국은 1997년 1월 1일 현재 벨지움,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델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등 15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진출과 기업의 현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리고 유럽의 소비자들 수요변화에 부응하는 고품질·고부가가치의 제품을 개발하고 EU의 제도 및 정책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위한 효율적인 정보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EU의 제도적인 변화와 통합시장정책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일환으로 EU의 회계표준화정책에 관한 내용을 정리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의 EU투자 진출에 유용한 정보로 작용할 수 있게 하려는데 근본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II. 유럽의 시장통합과 會計標準化運動

1. 유럽의 市場統合

유럽의 시장통합을 위한 발상은 1950년대부터 있었다. 1957년 3월 25일의 로마條約을 통하여 재화·용역·사람·자본의 이동에 대한 규제가 없는 자유로운 시장의 설립을 계창했다. 그것이 지금 유럽 여러 나라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인 바, 처음에는 6개국이 공동시장 형성을 위한 합의에 서명하고 시작하였으나, 1986년에는 12개국의 회원국을 거느린 유럽공동체로 발전하였고, 1995년에 이르러 15개국으로 확대되어 명실공히 유럽연합(EU)라는 市場統合을 완성하고 거대한 세계시장으로 부상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유럽연합(EU)이 형성되어지기 전까지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되었다. 유럽공동체(EC)라는 이름으로 유럽시장을 통합하던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 경제적인 침체상태가 심화되자, 유럽의 공동시장을 완성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985년에 域內市場白書가 공표되고 시장통합의 완성을 위한 행동지침도 제시되었던 것이다. 1992년을 시장통합의 목표년도로 삼고 각종 지침이 마련되었음은 물론, 각 회원국으로 하여금 국내적인 수용과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촉진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유럽공동체(EC)의 위원회가 유럽의 시장통합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1992년말에 완성시킴으로써 通貨의 단일화 뿐만 아니라 정치통합까지도 달성하려고 했던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유럽공동체(EC)의 위원회는 시장통합을 이룩하고 통화의 단일화를 추진한다는 목표를 정하고 유럽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 EFTA)이나 東유럽 여러 나라에 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유럽공동체(EC)는 서둘러서 1991년 10월 21일 「록셈브르크」에서 EFTA와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두 시장을 통합한 유럽경제지역(The European Economic Area : EEA)을 1993년 1월 1일자로 창설하기로 합의했다²⁾. 당시의 유

2) 北川道男, 「英國會計制度の國際化」(東京, 高文堂出版社, 1992), pp. 125~126.

럽공동체(EC)의 가맹국이 12개국이었고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의 가맹국은 7개국³⁾으로서, 이 두 기구가 합쳐지면 19개국이 되고 총인구 4억인에 가까운 세계 최대규모의 공동시장이 형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유럽공동체」(EC)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은 원래부터 밀접한 경제협력관계에 있었고, 그 관계를 더욱 심화시키기 위하여 「유럽경제지역」(EEA)라는 협력단체를 만들려고 합의한 것은 1984년의 일이었다.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은 「유럽공동체」(EC)에 대하여 전수출량의 60%를 수출하였고, 그리고 「유럽공동체」(EC)로부터의 수입도 전체의 60%에 이르고 있었다⁴⁾. 이러한 경제적 설정을 고려해 보면, 「유럽공동체」(EC)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의 쌍방 모두가 새로운 경제권역을 창설함으로써 가입회원국들의 경제적 활성화를 위하여 유익하다는 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그 이후 자유무역에 관한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공산품의 관세나 무역수량의 제한을 폐지하게 되었다. 「유럽경제지역」(EEA)이라는 기구는 원칙적으로 「유럽공동체」(EC)의 규정을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에 적용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① 「유럽공동체」(EC)의 제품의 표준화 및 규격의 통일화, ② 製品의 이동에 대한 관세업무의 폐지, ③ 서비스業務의 자유화, ④ 은행 및 다른 금융기관의 域內 1국에서 인가 가능, ⑤ 노동자의 자유이동, ⑥ 주식 시장의 자유화, ⑦ 회사법 및 회계규정의 적용 등이 19개국으로 확대되기에 이르렀다⁵⁾. 이러한 내용은 150개조로 이루어진 협정서에 정리되어 조인식만 남겨놓고 있었다. 이로 인해 「유럽공동체」(EC)의 역할과 구심력이 갑자기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유럽공동체」(EC)는 경제분야에만 한정되어 있던 시장통합의 가치를 정치·사회·통화 등의 분야에까지 확대시켜 국가의 범위를 초월한 통합체를 구성하려는 의욕을 나타내었다. 1991년말에 「마스리하트」에서 개최된 「유럽공동체」(EC)의 수뇌회의에서는 「유럽공동체」(EC)의 기본법인 「로마」조약을 개정하기로 결의되었다. 새로이 마련된 조약(개정안)에서는 「유럽공동체」(EC)를 발전시킨 「유럽연합」(European Union : EU)의 창설을 선언하고 정치·경제·통화의 통합방침을 즉, 종래의 EC체제에서 새로운 EU체제로 탈바꿈하는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정치통합의 주요사항은 공통외교와 안보정책이었다. 이 때까지도 「유럽공동체」(EC) 여러 나라는 서로 협조하면서 외교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유럽연합」

3)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의 회원국은, 1991년 10월 21일 현재 오스트리아, 페네드,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웨덴 및 스위스의 7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4) R. Owen and M. Dyness, "The Times Guide to 1992", (1991), p. 184.

5) 石渡利康・佐伯富樹・曾我英雄, 「ECの擴大と深化」(東京, 高文堂出版社, 1990), p. 36.

6) 小島秀雄, 「最近のヨーロッパ各國の投資状況」(『企業會計』Vol. 44 No. 3, 中央經濟社, 1992), pp. 14~15.

7) 「유럽공동체」(EC)에 의하여 이루어진 협조외교로서 대표적인 것은 「걸프戰 당시 공동보조를 취했던 사실을 그 하나의 예로 들 수 있다.

(EU)의 창설을 전제로 한 새로운 조약에서는 그것이 제도화되었던 것이다. 그 외에도 이민, 난민정책, 경찰분야의 협력, 유럽시민권의 도입, 및 유럽의회의 권한, 확대 등이 결정되었다. 그리고 통화의 통합에서는 일정한 경제적 조건이 충족된 나라가 7개국 이상이 되면 「유럽연합」(EU)은 1997년에 유럽중앙은행을 설립하여 단일통화(Euro)를 발행하는 것도 결정되었다⁸⁾.

그러나 유럽연합(EU)에 의한 유럽 단일통화체제의 출범은 결국 1999년 1월로 수정되었다. 아직도 「유럽연합」(EU)의 통화단일화를 위한 順序는 여전하지만, 유럽 중앙은행이 출범하고 유럽의 단일통화체제가 이루어지면 「유럽연합」(EU)의 경제통합은 완성단계에 도달하게 된다⁹⁾.

2. 「유럽연합」(EU)의 會計標準化運動

유럽통합의 최대목표는 공동시장의 형성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 회원국에 소재하는 기업이 城內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 장벽이 되는 나라마다 서로 다른 제도를 제거하는 노력이 경주되어 왔다. 동시에 城內企業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지지하고 미국 및 일본 등의 다국적기업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城內企業의 다국적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¹⁰⁾.

그 결과로 기업의 활동영역은 확대되고 城內間의 거래나 자금조달, 기술제휴나 투자 등, 기업을 둘러싼 환경은 현저하게 변화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활동에 관한 회계책임이 기업의 소재지에서 문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초월한 공동시장에서의 회계책임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하였다¹¹⁾. 그래서 종래의 회계책임에 대한 절차가 맞지 않게 되었고, 될 수 있는 한 각 회원국 기업의 회계적 보고행위를 규제하는 회계기준 및 감사에 관한 법령의 통일화를 기하려고 하였으며, 비교가능성을 높이는 회계책임의 합리적인 이행절차가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와 동시에, 城內企業의 경영자는 유럽공동체에 확대된 회계책임의 인식하에 기업을 이끌어 가야하는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회계책임을 내용적으로 보면, 공동시장에 있어서의 사회경제적 질서의 유지를 목표로 하여, 공동시장내에서 자원의 공평한 분배,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이르기까지 확대되었다¹²⁾.

8) 『日本經濟新聞』(1991年 12月 15日字 機構面).

9) 『東亞日報』(1997年 4月 25일자), 12면(국제경제).

10) 林満男, 「ECにおける 多国籍企業規制政策」(加藤恭彦編, 「多国籍企業經營とEC會社 法規令」, 同文館, 1988), pp. 88~89.

11) P. Bird, "Accountability Standards in Financial Reporting, (1973), p. 34.

12) S. J. Gray, L. B. McSeeney and J. C. Shaw, "Information Disclosure and Multinational Corporation, (1984), pp. 10~12.

「유럽공동체」(EC)에서는 기본적으로 주주·채권자·투자자·노동자 및 제3자에 대한 회계책임을 합리적으로 이행할 것을 목표로 하여, 1978년에 第4號指針(the 4th Directive)을 제정·공표하고, 1983년에는 第7號指針(the 7th Directive)을 제정하여 각 회원국에 통보하였던 것이다. 이 지침에 의하면 회계절차의 통일화를 위한 기본원칙으로서 「진실하고 공정한 견해」(true and fair view)의 원칙을 채택하고 적어도 유럽공동체의 城內에서는 개별기업뿐만 아니라, 다국적기업의 활동을 공통적인 척도로 파악하여 경영활동을 통제하는 공통적인 기반을 구축하려고 하였다. 「진실하고 공정한 견해」의 원칙은¹³⁾ 회계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영국의 회계제도에서 전통적으로 이용되어온 기본개념이다. 이러한 회계이론적 개념을 제4호지침과 제7호지침에서도 반영하여 회계책임의 사회적인 의미를 나타내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제7호지침에 의하면 「유럽공동체」(EC)의 城內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국적기업은 개별기업과 똑같이 그 기업집단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관한 진실성 및 공정성을 연결재무제표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¹⁴⁾. 이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종속회사는 「유럽공동체」(EC) 내에서 활동하는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城外에서 활동하는 종속회사도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多國籍企業의 활동에 대하여 어떤 형태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다국적기업의 경영활동은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회계책임은 소재국에 한정되지 않고 세계적인 규모로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 회계책임의 이행을 위한 회계표준화 정책이 표면화하게 된 사회경제적 배경이 있는 것이다.

원래 회계제도는 그 나라의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인 여러 가지 요인과 밀접한 의존관계를 가지고 生成·發展해온 것이기 때문에 나라마다 다종다양한 상태이다.

더욱이 기업활동의 국제화 자본투자의 국제화는 기업의 이해관계자도 다종다양하게 확대되어 회계보고의 표준화를 요구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정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회계기준의 세계적인 표준화운동은 재무제표의 국제적인 이해가능성을 기대하였던 데서 비롯되었음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이다.

III. EU의 會計標準化를 위한 會計規程

1. 指針第4號의 會計規程

13) J. G. Chanstney, "True and Fair View-History, Meaning and the 4th Directive, ICAEW (1975), Passim.

14) D. Flint, "A True and Fair View in Consolidated Accounts, in S. J. Gray and A. G. Coenenberg ed. International Group Accounting, (1984), pp. 17~18.

「유럽연합」(EU)의 회계표준화운동은 1960년대의 후반부터 시작되었다.

「유럽연합」(EU)의 전신인 「유럽공동체」(EC)의 창설을 위한 6개국조약(즉, 로마조약 : Trait de Rome)은 제54조 제3항 g호에서 指針에 의하여 회원국 회사법의 본질적인 내용을 조정하기로 함과 동시에, 제220조에서 국체성이 있는 제도를 통일화(표준화)하기로 규정하였다.

이들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회사의 年度決算書에 관한 제4호 지침안」이며, 그것이 여러 차례의 수정을 거쳐 1978년에 「특정기업의 年度決算書」(The Annual Accounts of Certain Types of Companies)로 확정되어 각 회원국에 통보되었다.

이에 따라 각 회원국은 통보를 받은 때부터 2년 이내에 필요한 관계법령의 개정이나 제정을 실천하고 그 때부터 18개월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어 실시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¹⁵⁾.

指針 第4號에 의한 「특정기업의 年度決算書」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¹⁶⁾.

전문(적용회사 : 제1조)

① 총칙(제2조)

②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관한 총칙(제3조~제7조)

③ 대차대조표의 양식(제8조~제14조)

④ 대차대조표의 특정항목(제15조~제21조)

⑤ 손익계산서의 양식(제22조~제27조)

⑥ 손익계산서의 특정항목(제28조~제30조)

⑦ 평가기준(제31조~제42조)

⑧ 부속명세서의 내용(제43조~제45조)

⑨ 영업보고서의 내용(제46조)

⑩ 재무제표의 공시(제47조~제50조)

⑪ 감사(제51조)

⑫ 기타규정(제52조~제62조)

여기서는 이 지침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의 개요만을 제시하려고 한다.

1) 適用會社

이 지침서에 의하여 적용되는 회사의 범위는 각 회원국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으나, 영

15) 北川道男, 前掲書, p. 95; 中村宣一朗, 「會計統一化政策」(東京, ミネル・ア書房, 1976), pp. 269~271.

16) 北川道男, 前掲書, pp. 95~96.

국의 경우는 주식 또는 보증에 의한 公會社(public company limited by shares or by guarantee)와 같은 조건의 私會社(private company limited by shares or guarantee)이며, 독일의 경우는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 등이며, 각 회원국의 유한책임을 갖는 회사에 적용된다. 다만, 은행과 기타의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이 지침을 적용함에 있어서 별도의 지침서¹⁷⁾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제1조).

2) 年度決算書類

지침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받는 회사가 작성해야 하는 年度決算書類(annual accounts)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年度決算書는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관한 진실하고 적정한 입장에서 명료하게 작성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이 지침의 규정만으로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되어 있다.

3) 貸借對照表와 損益計算書에 관한 總則

지침 제4호의 규정 제2절에서는 年度決算書의 작성원칙이 규정되어 있다.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이 지침이 규정하는 항목에 따라 구분표시하지 않으면 안되며(제4조 제1항), 그 구분과 표시는 원칙적으로 매기 계속하여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제3조). 특히,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각 항목에는 전년도의 수치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제4조 제4항). 그리고 자산과 부채 및 수익과 비용의 항목은 상쇄계산을 통하여 생략되어서는 안된다는 총액주의 원칙이 채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 貸借對照表의 樣式과 項目

대차대조표의 양식은 계정식과 보고식의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각 회원국이 대차대조표의 양식을 국내화하는 경우에 그 양식의 선택을 기업의 판단에 따라 양자택일 할 수 있는 유통성을 부여하고 있다(제8조). 그리고 계정식과 보고식 모두가 고정성배열법에 따라 각 항목의 배열순서를 정해놓고 있음을 찾아 볼 수가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유동성배열의 원칙과 비교할 때 상반되는 내용이다.

자산의 배열순서는 창업비, 고정자산, 유동자산 및 경과자산 계정으로 구분·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자본과 부채에 대해서는 자기자본, 부채성충당금, 매입채무, 선수금, 당기이익으로 구분·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들 중에서 채권은 회계기간이 일년 이내에 도래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출채권, 용역제공에 의한 채권, 결합기업에 대한 채권, 관계회사에 대한 대

17) 여기서 말하는 별도의 지침서라 함은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의 年度決算書 및 연결 결산서」 그리고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보험회사의 年度決算書 및 연결결산서」 등을 일컬는다.

여금, 기타의 채권 및 미납입자본금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으면 안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재무에 대해서는 유동부채를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선수금, 매입채무 및 용역수급에 의한 채무, 결합기업에 대한 채무, 관계회사에 대한 채무, 납세와 사회보장에 관련되는 채무 등으로 구분·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기업이 진실성과 적정성의 기본개념을 기초로 하는 회계정보가 공시될 수 있도록 하는 회계사상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⁸⁾.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자기자본 중에는 재평가적립금이라는 항목이 기재되어 있으며, 최근 각국에서 논의되어온 인프레션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응책이 표시되어 있다. 이 항목은 원칙적으로 취득원가주의에 의한 평가액과 현재가치를 나타내는 방법에 의한 평가액과의 사이에 발생하는 평가차액을 표시하는 항목이다(제10조).

5) 損益計算書의 樣式과 項目

손익계산서의 양식은 외형적인 형식으로서 계정식과 보고식이 있으며, 수익과 비용의 처리 방법에 의한 형식으로서 매출원가법과 충원가법의 두 종류가 있다. 모두 4가지 양식에 따라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제23조~26조).

매출원가법은 영국이나 미국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는 회계관습인 바, 비용을 목적별로 구분하여 제품매출액에 대응하는 비용(매출원가)을 표시하고 매출총이익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에서 채용하고 있는 손익계산서의 양식과 유사한 것이다. 그런데 충원가법은 독일과 블란서 등의 나라에서 볼 수 있는 회계관습으로서 종류별로 분류된 충비용을 매출액에 당기의 제조완료된 제품액을 더하고, 그것으로부터 당해기간에 판매된 전기제품제조액을 공제한 것을 대응표시하는 방법이다. 「유럽연합」의 각 회원국은 이중 하나 내지는 두개 이상을 국내법에 규정할 수 있으나, 여러 개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에 선택권이 주어지고 있다.

6) 評價原則

指針 第4號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평가원칙이라 할 수 있다.

指針(제31조)에서는 평가의 일반원칙으로서 다음의 여섯 가지를 規定해 놓았다.

- ① 회사는 계속기업으로서 영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가정하지 않으면 안된다(계속기업의 전제).
- ② 평가방법은 매기 계속하여 적용되지 않으면 안된다(계속성의 원칙).
- ③ 평가는 항상 신증성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신증성의 원칙).
- ④ 수익과 비용은 발생한 사실에 입각하여 그와 관련되는 회계기간의 것으로 기재되지 않으면 안된다(발생주의 원칙).

18) 黒田全紀, 「ECにおける會社會計報告」(『企業會計』第31卷 第4號, 中央經濟社, 1980), p. 82.

- ⑤ 자산항목과 부채항목의 구성요소는 개별적으로 평가되지 않으면 안된다(총액주의 원칙).
- ⑥ 각 회계년도의 개시대차대조표와 전년도의 결산대차대조표는 상호일치하지 않으면 안된다(대차대조표일치의 원칙).

이상의 원칙들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평가기준으로는 취득원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며 年度決算書에 표시되는 각 항목은 취득원가 또는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하여 표시되는 것이지만(제32조), 각 회원국은 장래조정되가까지는 엄격한 취득원가주의에서 이탈하여 모든 회사는 다음에 제시하는 대체적인 평가기준을 사용 할 수가 있다(제32조 제1항).

① 내용년수가 남아있는 유형자산 및 재고자산에 대하여 대체가치회계(replacement value accounting).

② 인프레션을 고려하여 설정되어 있는 다른 방법에 의한 評價.

③ 고정자산의 재평가.

이러한 평가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32조에 규정된 취득원가주의에 따라 이루어진 평가액과의 사이에 차액이 발생하는 일이 있다. 이 차액은 대차대조표의 자본의 부에 재평가적립금으로 기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사실상 두 가지의 재무제표가 작성되는 일이 있게 되며 취득원가주의회계로부터 완전히 이탈하여 인프레션회계 또는 대체가치회계를 국내법으로 제정하는 일은 없게 된다.

취득원가주의에 의한 평가액과 기타의 대체가치법에 의한 평가액과의 사이에 발생하는 차액은 재평가적립금으로 표시되는 것이지만, 이것은 항상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 채용된 평가방법의 적용으로 산출된 미실현이익은 어떠한 경우에도 분배할 수가 없다(제33조 제2항).

평가방법은 매기 계속하여 적용되지 않으면 안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변경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재무적인 영향과 그 이유를 공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입가격 또는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하여 경제적인 내용년수에 걸쳐 조직적으로 상각하기 위하여 계산된 가치수정액을 감액한다. 그리고 가치의 감소가 영속적이라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작성일의 낮은 값으로 표시한다. 이는 저기주의 평가의 단면을 보여준 것이며 가치변동에 대응하려는 신중한 회계처리라고 할 수 있다. 영업권, 연구개발비, 창업비 등을 자산의 부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5년 이내에 상각해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유동자산은 구입가격 혹은 제조원가로 평가하지 않으면 안되지만, 대차대조표 작성일의 낮은 값으로 평가하여 가치수정액을 계상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규정되어 있다(제39조). 역시

제가주의 평가가 인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가중평균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및 그에 준하는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취득원가나 제조원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제40조). 재고자산의 평가기준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도 우리나라의 그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부채성충당금 및 비용성충당금(provision for liability and charge)은 필요한 범위를 초월하여 무제한으로 설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것이 설정된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기타 충당금의 부에 표시하고 또 중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부속명세서를 통하여 그 사실을 공시하지 않으면 안된다(제42조).

이상에서 대차대조표의 주요항목에 대한 평가규정을 살펴보았는데, 유럽공동체의 회계지침의 특징은 취득원가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면서도 대체가치에 의한 평가액, 재평가 및 기타의 인프레션회계에 의한 평가액을 표시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영국이나 네덜란드에서의 회계실무가 회계지침을 마련할 때 반영된 것이라고 한다.

7) 附屬明細書

부속명세서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와 함께 年度決算에 즈음하여 작성되는 것으로서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진실하고 적정한 사실을 표시하는 재무제표의 한 가지이다. 부속명세서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진실성 및 적정성을 밝히는데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각 항목의 비교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거기에 표시된 정보는 회계지침의 규정에서 정해진 기재사항 이외에 최소한 표시되지 않으면 안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그 주된 것으로는 각 항목의 평가방법, 감가상각방법, 외화표시금액의 환산방법, 관계회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주소와 명칭, 자본보유비율 및 자본과 적립금, 손익, 주식의 수와 주당액면금액, 전환사채, 5년 이상의 채무, 세금 등이 있다(제43조 제1항).

8) 営業報告書

영업보고서(annual report)에는 적어도 회사의 영업과 그 전개상황에 대한 내용이 보고되도록 표시되지 않으면 안된다. 더욱이 회사의 年度末 이후에 발생한 중요사항, 회사의 장래 연구개발에 관한 여러 가지 활동사항 및 자기주식의 취득에 관한 정보가 표시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제46조).

9) 公示 및 監查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규정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는 국내법이 인정하는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으로 구성된 감사인에 의하여 감사를 받지 않으면 안되며(제51조), 그 감사보고서에 준하여 국내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公示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유럽공동

체」의 회계지침은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영업보고서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와 같은 방법으로 공시할 필요는 없고, 각 회원국의 선택에 맡겨놓고 있다. 中小企業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도록 되어 있다.

10) 會計指針 第4號의 特徵

이상에서 「유럽공동체」위원회에 의하여 성안되고 각료회의에서 확정된 會計指針의 내용을概觀하였는 바, 이 규정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특징 몇가지를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이는 「유럽연합」(EU)의 회계표준화를 위한 최고규범으로서 진실하고 적정한 견해(true and fair view)의 원칙을 채용하고 있다는 것이다¹⁹⁾. 이 원칙은 영국과 아일랜드 등의 나라에서 생성·발전해온 것이고, 이 원칙에 그리 친숙해 있지 않은 대륙계통의 회계사들에게는 상당한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각 회원국에서는 각각 서로 다른 해석이 내려질 수 있는 예지를 제공하였던 것이다²⁰⁾.

각 회원국의 회계제도는 사회경제적인 전통에 깊은 관계를 갖고있는 것이지만, 회계원칙의 변경이 반드시 전통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獨逸에 있어서는 재무제표(년도결산서)는 채권자보호를 위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영국에서는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정보가 제공되어 왔다. 그리고 벤지움에서는 종업원을 위하여 정보제공이 이루어져 왔던 것이다. 이러한 사정 속에서 「진실하고 적정한 견해」(true and fair view)의 개념적인 원칙을 어떻게 해석하여 적용해갈 것인가의 문제가 앞으로의 과제라고 할 것이다.

② 부속명세서를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와 나란히 재무제표(년도결산서)로 취급했다는 점이다. 부속명세서에서 제공되는 정보에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항목의 상세한 내용을 나타내야 하는 보충설명에 속하는 정보와 회계지침에 제시된 규정의 선택적용에 관한 보충설명 및 「진실하고 적정한 견해」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회계지침의 규정을 벗어나는 경우에 관한 보충설명을 행하는 정보가 포함된다. 전자는 종래부터 부속명세서의 고유한 기능이지만, 후자는 「진실하고 적정한 견해」의 원칙의 하나인 실질우선의 요청과 「유럽연합」會社法規程의 완전입법주의라는 양립할 수 없는 요청을 조정하는 기능을 이행하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이 기능을 자금계산서가 담당하고 있으며 회계지침의 재무제표(년도결산서)로서 채용되기를 바라고 있었으나 결국 거기에는 채용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자금흐름계산서를 재무제표로 표준화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19) ICAEW, Professional Briefing EEC, (Accountancy, March 1983), p. 6.

20) W. S. Turley, "International Harmonization of Accounting : The Contribution of the 4th Directive on Company Law.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ccounting, Vol. 18, No. 2, 1983 Spring), p. 21.

이다²¹⁾.

그 때문에 프랑스會計制度의 개정에서는 자금회류계산서가 임의적인 것으로 되어 있다.

③ 「진실하고 적정한 견해」의 원칙은 「유럽연합」의 회계지침 규정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하게 되며, 그리고 예외적으로 개별적인 규정적용이 「진실하고 적정한 견해」의 원칙과 양립될 수 없는 경우에는 개별규정을 이탈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연합」의 회계지침은 상세한 규정을 두고 각 회원국의 국내법에 적용함에 있어서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특히 각국내의 기업에 대해서도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이탈승인규정과 회계법규의 탄력성에서 두 가지 문제점이 존재함을 발견하게 된다. 첫째로 각국의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서 법률규정의 준수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업무가 기본이었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회계지침은 감사인에게 「진실하고 적정한 견해」에 관한 판단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감사인으로서의 적격성과 능력을 요구함과 동시에 「진실하고 적정한 견해」의 최종적인 판단자로서 엄격한 책임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²²⁾.

둘째로, 실제 회계지침이 아니고 그 지침에 따라 제정되거나 개정된 국내법이다. 회계지침의 탄력성은 각 회원국이 선택권을 다양하게 채택하고, 또 각 회원국내의 기업이 선택권을 다양하게 채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유럽연합」의 회계지침 본래의 목적인 각 회원국간에 있어서 회계의 표준화 내지는 통일화에 의한 재무제표의 동질성이나 비교가능성의 확보가 가능한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④ 「유럽연합」의 회계지침에서는 취득원가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면서 대체원가 및 그외의 인프레션會計에 의한 평가도 그 내용을 공시한다는 조건으로 인정되고 있다. 프린트(D. Flint)가 지적한 바와 같이 취득원가주의회계가 단독으로 「진실하고 적정한 견해」를 제시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아주 흥미있는 문제로서 아직도 유럽에서는 조화로운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²³⁾.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다양한 평가원칙이 채택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2. 指針 第7號의 聯結會計規程

21) 野村建太郎, 「フランス會計制度改訂の諸問題—ヨーロッパ第4次 指令の 論議の もとに」(『企業會計』第30卷 第13號, 中央經濟社, 1978), p. 131.

22) K. Michael Oldham, "Accounting Systems and practice in Europe", 2nd ed., 1986, pp. 81~82.

23) ICAEW, op. cit., p. 6.

「유럽공동체」(EU)의 이사회는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會計指針第4號를 기초로 하여 거기에서 미정되어 있던 항목을 보완한 것이다. 이 회계지침을 받아서 각 회원국은 1988년 1월 1일까지 국내법으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 회계지침이 초안에서 확정되어 지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린 것은 각 회원국의 연결회계제도가 크게 다르고 그 조정을 위하여 장기간의 검토가 필요했던 것이다. 특히,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이 요구되는 기업과 연결범위 및 그 작성방법에 있어서는 각 회원국에서 관습상 현저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회계지침 제7호의 채택은 각 회원국의 서로 다른 실무 또는 규정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타협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²⁴⁾.

「유럽연합」의 회계지침 제7호에 의한 연결회계규정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① 前文
- ② 연결재무제표 작성의 조건(제1조~제15조)
- ③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제16조~제35조)
- ④ 연결영업보고서(제36조)
- ⑤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제37조)
- ⑥ 연결재무제표의 공시(제38조)
- ⑦ 경과규정(제39조~제51조)

위의 연결회계지침의 내용을 개괄하여 다음에 설명하기로 한다.

1) 會計指針 第7號의 目的

특정형태의 개별기업에 대해서는 회계지침 제4호에 의하여 조정된 각 회원국의 국내법에 따라 기업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의 진실성과 적정성이 공시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들 기업 중에는 법적으로 독립해 있으면서도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되지 않고 기업집단을 구성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 중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기업의 영업활동은 기업활동의 경영방침에 연동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별기업의 재무제표만으로는 그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가 진실하고 적정한 정보로서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업집단을 구성하는 모든 개별기업의 재무제표를 연결시킨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이 의무화되었고, 기업집단과 그 집단을 구성하는 개별기업의 상황에 대한 「진실하고 적정한 견해」임을 나타낼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회원국 중에서 어떤 나라의 경우는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는 나라도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인 규정을 두지 않은 회원국도 있다.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은 의무화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그 내용은 여러 가지이다.

24) Sharon M. McKion ed. by Alan D. H. Newbarn, "The Seventh Directive - Consolidated Accounts in EEC", (Kluwer Publishing Limited, Author Young International, 1984), p. 11.

지침 제7호의 연결회계규정에서는 각 회원국의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국내법을 조정하고 유럽공동체내에 있어서의 연결정보에 대한 비교가능성과 통일성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前文)。「유럽연합」의 회계지침 제7호는 모두 51조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이들 중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만을 대략 검토하기로 한다.

2) 聯結財務諸表의 作成條件

유럽연합(EU)의 경우, 기업집단의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법적규제에 있어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기업집단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의 문제이다. 기업집단에 대한 규정여하에 따라 어떤 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가, 또 연결범위는 어떤가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유럽공동체의 시장통합을 시도하면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며, 그 원안을 마련하던 초기 단계에서도 상세한 검토를 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²⁵⁾.

기업집단을 이해하는 방법에는 경제적 개념에 의하는 것과 법적 개념에 의하는 것의 두 가지가 있다. 경제적 개념에 의할 경우에는 기업집단은 어떤 기업에 의한 통일적인 지배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기업(a series of undertaking :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으로 구성되는 것이라고 이해된다. 이것은 사실상의 지배관계를 강조하는 것이며, 법적으로는 독립하고 있으나, 경제적으로는 단일체로서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기업집단의 실태를 파악하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이 정의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업집단의 법적규제에 있어서는 무엇이 통일적인 지배인가에 대한 법적인 추정을 수반하게 되어 사실상의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²⁶⁾. 그리고 법적 개념에 따라 이해하는 경우에는 법적 적합성을 강조하며, 어떤 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에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보다도 지배력을 행사하기 위한 조건을 구비하고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기업집단을 규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지배력을 행사하기 위한 조건(예컨대, 주식의 과반수 소유 등)이 구체적으로 구비되어 있음으로써, 앞에서 말한 주관적인 판단이나 법적추정이 개재할 여지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형식적인 규제에 따르게 되기 때문에 규정 이외의 조건에 의하여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하고 있는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이론적인 보충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결점을 가지고 있다²⁷⁾. 제7호 지침(안)의 단계에서는 경제적 개념이 채택되어 있었으나, 확정된 지침에서는 역으로 법적 개념을 기본으로 하여 경제적 개념에 의한 기업집단도 포함하면서, 각 회원국의 의견을 가미한 예외적인 내용을 함께 규정하고 있어서 한층 복잡하게 되어 있다.

25) 黑田全紀, 「EC會計制度 調和論」(東京, 有斐閣, 1989), p. 172, *passim*.

26) 山口賢, 「ECにおける會計 法的規制」(加藤恭彦編, 「多国籍企業 經營と EC會社法指令」, 同文館, 1988), p. 234.

27) 上揭書, p. 234.

이 지침에서는 맨 처음에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이 요구되는 기업과 연결범위에 대한 규정이 설정되어 있다.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는 것은 유럽연합(EU) 회원국의 국내 법에 따라 영업활동을 전개하는 자회사(parent company)이다(제1조의 규정). 이 경우에 어떤 기업이 지배회사(母企業)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 ① 종속회사(子企業)의 의결권을 갖는 주식의 과반수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② 종속회사를 관리하거나 감독하는 기관의 구성원 과반수 이상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동시에 출자자인 경우.
- ③ 계약이나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배적인 영향(dominant influence)을 미치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경우.
- ④ 전년도와 당해연도에 종속회사를 관리하거나 감독하는 기관의 구성원 과반수 이상을 의결권 행사만으로 선임했거나, 또는 다른 주주의 동의를 얻어 단독으로 의결권 행사를 한 경우.

이상의 네 가지 규정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은 지배회사로 간주되며 법률상의 등기가 유럽연합(EU)의 城內에서 이루어졌는가, 아니면 城外에서 이루어졌는가에 관계없이, 모든 종속회사를 연결하지 않으면 안된다(제2조의 규정).

그리고 지분(participating interest)을 갖고,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거나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회원국은 지배회사로 하여금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제1조 제1항). 다만, 지배회사가 주식회사, 주식합자회사, 유한회사 이외의 기업인 경우와 제4호 지침에서 규정하는 중소규모의 기업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이 면제된다. 그리고 연결되어야 할 종속회사에 있어서도 연결목적상 중요성을 갖는 경우,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을 위한 정보수집에 비용과 시간이 걸리는 경우, 그 기업의 주식이 투기목적으로 보유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결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다. 특히, 기업활동내용이 이질적인 것이고 연결함으로써 연결재무제표가 기업집단의 진실성과 적정성을 확보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연결범위에서 제외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제13조 · 제14조).

여기서 규정되는 지배종속 관계는 두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종속회사를 가진 지배회사가 다른 기업의 종속회사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기업의 上位支配會社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上位支配會社가 지침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의 외국기업이거나, 지침의 적용이 예외인 기업일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종속회사에 해당되면서도 지배회사로 간주되어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의무가 부여되어 있다²⁸⁾.

유럽연합 지침 제7호의 연결회계규정(제12조)은 지배종속 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각각 대

28) 黑田全紀, 前揭書, p. 202.

등한 관계에 있는 경우의 기업집단에 대한 규정도 설정하였다. 기업과 기업과의 사이에 지배 종속 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들 기업이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으면, 각 회원국은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경영권을 행사한다고 함은 결합하고 있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의무도 부여되어 있다. 각 기업에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연결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다(제1조 제1항·제3항)

3) 聯結財務諸表의 作成

연결재무제표는 연결대차대조표, 연결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침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연결재무제표는 기업집단의 재무상태와 경영 성과에 대한 진실성과 적정성이 반영되지 않으면 안된다(제16조). 진실성과 적정성의 개념에 대해서는 지침 제4호의 일반원칙과 동일하게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이며, 특히 실무상의 판단을 함께 있어서는 깊이 고려해야 되는 것이다.

연결결산일은 원칙적으로 지배회사의 年度決算日로 하게되어 있으나, 각 회원국은 연결에 포함되는 기업의 대차대조표일을 채택하는 것도 허용되어 있다(제27조의 규정). 연결범위에 포함되는 기업의 자산·부채, 수익 및 비용은 그 모두가 연결되며(전부연결), 소수주주지분은 연결대차대조표 및 연결손익계산서에서 적당한 항목으로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제18조, 제21조~제23조).

연결에 포함되는 기업이 연결되지 않은 기업과 공동으로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경우(합작 사업 : joint venture)에는 각 회원국은 연결기업이 자본유지의 비율에 따라 다른 기업을 부분적으로 연결하도록 요구 할 수 있게 되어 있다(제32조).

여기에 표시되는 자산 및 부채에 관하여서는 지침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기준인 원가주의에 따라 통일된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제29조). 그리고 지배회사의 종속회사에 대한 투자계정은 종속회사의 이에 대응하는 자본계정 및 적립금계정과 상쇄·제거되는 것이지만, 이 장부가치는 종속회사가 처음으로 연결에 포함되는 시점의 장부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제19조 제1항). 종래의 英美法系에서는 주식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해왔고, 대륙 법계에서는 결산시점이 기준으로 되어 있었으나, 지침 제7호의 규정에서는 연결차액을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주식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아 그것을 채택하였다²⁹⁾.

이상에서 말한 상쇄제거에 의해서 발생하는 연결제거 차액은 될 수 있는 한 연결대차대조

29) 山口幸五郎・山口賢・清原泰治, 「コンツエルン計算書類に關するEC指令について」(1)~(6), 『坂大法學』 제136號, p. 272.

표에서 장부가액보다도 높거나 낮게 평가된 항목에 적절 가감되어야 한다. 그 결과, 연결제거 차액 계정에 잔액이 있는 때는 적당한 계정명칭으로 독립항목을 설정하여 연결대차대조표에서 표시되지 않으면 안된다. 차변의 독립항목으로 표시된 연결제거 차액은 지침 제4호에서 규정된 著業權과 동일하게 5년 이내에 상각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제19조·제30조).

지침 제7호의 연결회계규정에서는 지분법에 관한 규정이 설정되어 있다. 연결기업이 의결권주식 20% 이상 보유하고 있는 비연결기업(관련회사)의 경영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에는 연결대차대조표에서 그 투자액을 적당한 명칭으로 표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경우에 지침 제4호에 규정된 평가원칙에 따라 계산된 장부가치가 이용되는 것이지만, 자본적 참가관계(의결권 주식 20% 이상 보유관계)에 의하여 표시된 자본지분과의 차액은 독립된 항목으로 연결대차대조표에 표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연결기업은 관련회사의 손익지분을 연결손익계산서에서 독립된 항목으로 적절히 표시하지 않으면 안된다(제33조).

4) 附屬明細書의 作成

부속명세서(notes on the accounts)는 연결대차대조표 및 연결손익계산서와 일체가 되어 기업집단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관한 진실성 및 적정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중요한 연결재무제표를 구성하는 것이라 일컬어진다. 이 부속명세서에 표시되는 항목은 제34조 제1항부터 제13항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그 주요항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연결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각 항목의 평가에 이용된 기준 및 외화환산기준.
- (2) 연결기업의 명칭·주소·지분비율·연결재무제표의 작성조건, 그리고 비연결 기업의 경우도 명칭·주소·지분비율·연결조건 등.
- (3) 연결규정 제33조에 규정된 지분법 적용기업의 명칭·주소·지분비율이 기재되며, 지분법이 적용되지 않은 관련회사에 대해서도 그 기업의 명칭·주소·지분비율이 표시되어야 한다.
- (4) 연결규정 제32조에 규정된 부분연결기업의 명칭·주소·합병기업의 내용·지분비율.
- (5) 자본참가기업의 명칭·주소·지분비율·자본금액·적립금의 금액·당기이익액.
- (6) 연결기업의 기간 평균 종업원수.
- (7) 세금 및 기타사항.

5) 総結營業報告書

연결영업보고서(consolidated annual reports)에는 연결기업집단 전체로서의 영업활동과 그 상황에 대한 적절한 검토결과가 표시되어야 한다. 여기에 표시되는 주요항목은 다음과 같다.

- (1) 회계연도 말 이후에 발생한 사항.
- (2) 연결기업집단 전체로서의 장래 영업활동에 대한 전망.
- (3) 연구개발활동에 관한 사항.
- (4) 자배회사 또는 종속회사에 의한 자기주식 보유현황(제36조의 규정).

이상에서 지침 제7호의 연결회계규정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는 바, 이것은 지침 제4호의 회계규정에 제시된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그것을 보완하면서, 최근 증대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공시하고 이해관계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회원국간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시키려고 설정한 것이다. 이 규정은 유럽연합(EU)의 城內에 주소 등록을 하고 있는 지배회사(母企業)에게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연결 범위로는 EU城内外를 불문하고 모든 기업을 연결한다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다³⁰⁾.

그리고 이 규정에 의한 연결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은 국제회계기준의 규정과 유사한 점이 또 하나의 특징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³¹⁾.

3. 指針 第8號의 監查人資格規程

指針 第8號의 決算監查人에 관한 資格規程은 그 초안이 1978년 유럽공동체(EC)의 위원회로부터 理事會에 제출되어 1979년에 수정안으로 정리되어 제출된 후, 1984년 4월에 이르러 理事會의 승인을 얻어 최종적으로 채택되고 현재의 유럽연합(EU)의 감사인자격규정으로서 그 효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 지침 제8호의 통보를 받은 각 회원국은 1988년까지 이 지침의 시행에 필요한 법률이나 규칙의 제정(또는 수정)을 완료하고 실시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되었다. 1990년까지 이 지침의 적용에 대한 유예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도 설정되어 있다(제30조의 규정).

지침 제4호의 회계규정에서는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가 의무화되어 있고, 지침 제7호의 연결회계규정에서도 기업집단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가 역시 의무규정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지침 제5호의 규정에서는 재무제표의 승인과 감사에 관한 부분에서 감사인의 자격, 감사인의 선임과 해임, 책임과 권한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다. 특히, 지침 제8호의 규정은 개별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의 자격요건을 규정하였다.

지침 제8호의 감사인자격규정은 감사인이 되기 위한 수험자격, 직업전문가로서의 능력판정의 시험제도, 그리고 감사인으로서의 독립성 등에 관한 윤리적인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회사법에 관한 아사회의 지침은 원래 로마條約 제54조 제3항(g)호에 근

30) 北川道男, 前揭書, pp. 110~111.

31) 黑田全紀, 「連結財務諸表に關するEC理事會 第7號指令の基礎」(日本會計學會, 會計, 第1號, 1984), p. 53.

거를 두어 공표된 指針으로서 기업의 종업원과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이는 감사인의 인적 자격수준을 일정하게 확보함으로써, 각 회원국에서 주어진 자격을 가진 전문가는 자격·경험·견습에 관한 최소한의 조건만 갖추면, 그것이 다른 회원국에서도 승인되고 동일한 자격조건으로 개업할 수 있게 하여, 유럽연합(EU)의 城內에서는 직업전문가의 자유로운 이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 指針第8號의 감사인자격 규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① 前文
- ② 總則(제1조)
- ③ 인가규정(제2조~제22조)
- ④ 직업적 협력과 독립성(제23조~제27조)
- ⑤ 공시(제28조)
- ⑥ 부칙(제29조~제31조)

1) 總 則

결산감사인은 재무제표가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관하여 진실성 및 적정성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감사하고 영업보고서와 재무제표의 내용이 일치한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기업집단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해서도 감사하며, 연결영업보고서와 연결재무제표와의 일치여부도 검토하게 되는 것이다(제1조의 규정).

감사인에 의한 감사의 결과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게 된다. 감사보고서의 개요에 대해서는 자침 제5호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에 의하면 감사보고서에는 감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규정, 정관에 대한 위반사항, 회사의 존속과 재무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 및 감사결과의 내용이 기재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제60조).

회계감사인이 감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진실성과 적정성의 유지를 통하여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회계감사인으로서의 적격성(professional competence)이 강력히 요청되어진다. 이 적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 회원국에서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는 결산감사인이 되기 위한 조건, 재무제표감사에 필요한 이론적인 지식과 이 지식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증하기 위한 자격시험의 기본적으로 요청된다. 그리고 人的인 자격기준으로서는 회계감사인으로서의 正當注意義務 및 독립성에 대한 要求가 필수화되어 있는 것이다.

회계감사인은 自然人일 것과 法人形態로 구성될 수도 있으나, 指針 제8호에서 규정하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는 사람에게 한정하고 있다.

2) 認可規程

지침 제8호의 규정에서는 회계감사인이 되기 위한 수험자격과 시험제도가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人的基準으로서의 正當注意義務 및 독립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지침에서는 회계감사인이 될 수 있는 자격조건을 대학교육을 받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를 원칙으로 하며, 예외로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직업적 전문가의 자격조건을 규정해 놓고 있다.

자연인으로서의 회계감사인은 자본회사의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법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자를 일컫는다. 여기에는 개인으로 실시하는 경우와 감사집단으로 실시하는 경우 모두가 인정된다.

① 개인으로서의 회계감사인이 인정되는 것은 동규정 제3조부터 제19조까지의 조건을 갖춘者에 한정하고 있다. 첫째로, 법정감사에 모순되는 행위를 하지않은 훌륭한 자일 것(제3조). 둘째,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이론과목의 과정을 수료하여 최종시험에 합격함으로써 인정된다(제4조). 직업적인 자격시험은 법정감사를 실시할 때 요구되는 이론적인 지식과 그것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증받아야 한다. 시험에 포함되는 이론과목은 감사론, 재무분석, 회계학, 연결재무제표론, 원가계산 및 관리회계, 내부감사, 재무제표 작성기준, 직업법규 및 기준, 그리고 관련과목으로는 회사법, 파산법, 조세법, 민법, 상법, 사회보장법 및 고용법, 정보 및 컴퓨터·시스템, 경영학, 경제학 및 금융론, 수학 및 통계학, 재무관리가 포함되어 있다(제6조). 대학 또는 그와 동등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이론과목에 포함되는 하나 이상의 과목시험이 면제된다. 그리고 대학의 학사학위를 받았거나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가 해당과목의 실무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실무시험이 면제된다(제7조). 실무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에 대한 실무시험을 3년 이상 받지 않으면 안된다. 이 기간의 3분의 2는 각 회원국의 법률에서 인가받은 자의 밑에서 지내지 않으면 안된다(제8조).

② 감사인집단은 법인격을 갖춘 회사형태로 회계감사인이 되지만, 회계감사인으로서 인가 받으려면, 감사인 집단의 구성원 중 과반수가 감사인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③ 이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승인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재무, 법률 및 회계의 분야에서 15년간 충분한 직업적 활동에 종사한 자가 직업적 전문가의 시험에 합격한 경우, 또 직업적인 활동에 7년동안 종사하여 실무훈련을 받은 후 직업적 전문가의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인가하도록 되어 있다(제9조의 규정).

특히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다른 나라의 자격을 가진 자에게 인가된다. 그것은 첫째로, 그 指針에 근거한 각 회원국의 법률이 요구하는 자격조건에 맞을 것, 둘째로, 결산감사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의 법제상 충분한 지식이 있다고 증명되는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이다.

3) 職業上の 獨立性

獨立性은 회계감사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격조건이며 독립성 없는 감사인은 아무리 이론적 지식이 풍부하고 실무경험이 많다고 하여도 감사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독립성은 감사인이 사회의 신뢰를 얻어 감사제도를 유지·발전시키는 필요조건이므로, 지침 제8호에서는 다음과 같은 독립성 확보규정을 두었다. 첫째, 직업적인 협력을 얻어 감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제23조). 이것은 감사인으로서의 正當注意義務를 규정한 것이며, 직업인으로서 독립성의 침해요인을 규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³²⁾. 둘째로,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을 때에는 국가가 요구하는 감사를 실시할 수 없도록 규정을 두게 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제24조·제25조). 그외의 상세한 내용의 규정은 각 회원국의 직업법률에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다³³⁾. 셋째, 이 指針第8號의 규정에서 회계감사인으로서 승인되는 감사인 집단에는 회계감사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은 구성원, 주주 또는 감사인집단의 행정이나 경영에 종사하는 구성원이 참가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³⁴⁾. 따라서 이들 구성원이 감사인의 독립성을 위태롭게 하면서 감사집행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게 하고 있다(제27조).

4) 公示와 附則

유럽연합(EU)의 각 회원국은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법정감사를 실시하게 한 자연인이나 감사인집단의 이름과 주소를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으면 안된다(제28조 1). 그리고 감사인 집단은 ① 회계감사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자연인의 이름과 주소, ② 감사인집단의 구성원과 주주의 이름과 주소, ③ 감사인집단의 행정과 경영에 참가하는자의 이름과 주소를 공개하지 않으면 안된다(제28조 2). 이 지침 제8호는 각 회원국내의 대용법률, 규칙 등을 개정하여 1988년 1월 1일까지 국내화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였다.

IV. 유럽의 職業會計士制度와 EU의 會計指針

1. 유럽의 職業會計士制度

유럽을 대표하는 직업회계사의 국제적인 기관으로서는 유럽會計士聯合(Union Européenne des Experts Comptables Economiques et Financiers : UES)과 유럽공동체 회계사

32) 加藤恭彦, 「決算監査人に關する EC理事會 第8號 指令の 基礎」(『企業會計』第36卷 第11號, 中央經濟社, 1984), p. 134.

33) 森本滋, 「EC會社法の形成と展開」(東京, 商事法務研究會, 1984), p. 297.

34) 加藤恭彦, 「多國籍企業經營とEC會社法指令」(東京, 同文館, 1988), p. 223.

연구단체(Group d'Etudes des Experts Comptables de la Communauté Européenne : Gd'E)의 두 가지 국제기관이 있다.

전자는 유럽의 모든 나라의 회계사단체가 참가하여 1951년에 설립된 조직이며, 유럽의 회계기준 및 회계감사의 개선과 조화를 기하고 직업회계 단체의 연대화를 목표로 하여 활동해 온 것이다. 그 성과로서 1978년 이래 감사보고서, 감사가이드라인을 공표해 왔으며, 그것을 집대성하여 1986년에 유럽 감사기준가이드를 공표하였다. 그 외에도 회계, 직업윤리 및 조세 등의 관련문제에 대해서도 기준서 및 권고서를 공표해 왔다³⁵⁾. 이것은 비교적 좁은 범위의監査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다.

유럽共同體會計士研究團體(Gd'E)의 목적은 1961년에 EEC의 회계標準化의 작성을 지원하는 것과 유럽공동체(EC)의 직업적 전문가의 대표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활동은 유럽공동체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며, 指針의 초안작성도 하지만 공표된 것은 없다. 그 외에도 자체의 과제를 취급하던가, 또는 발표된 제안에 대한 의견서를 공표하기도 한다³⁶⁾. 그리고 채택된 회계指針의 실시나 해석을 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원래 6개국을 회원국으로 하여 유럽공동체(EC)라는 이름으로 출발하였으나, 지금은 15개국의 회원국을 거느린 統合市場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유럽통합시장의 규모가 확대되어감에 따라 위에서 언급한 두 개의 회계士團體도 그 활동범위가 넓어지고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던 것이다. 특히, 개별재무제표의 표준화, 연결재무제표의 표준화, 회계감사인 자격의 통일화, 나아가서는 직업적 전문가로서의 회계감사인의 域內自由移動이라는 문제가 부각되어지고 공동체의 차원에서 指針化의 길을 모색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유럽會計士聯合」과 「유럽共同體會計士研究團體」를 모두 해체하고 통합된 단일조직체로서 유럽의 직업적 전문가를 대표하는 기관이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1986년 10월에 설립된 「유럽專門會計士聯盟」(Federation des Experts Comptable Europeene : FEE)³⁷⁾이라는 기관이 그것이다. 이 「유럽專門會計士聯盟」은 理事會와 두 개의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회계사연구 단체의 활동을 계승하여 각 회원국간 회계사 활동을 指針에 따라 행하게 하려는 EEC위원회이며, 다른 하나는 회의, 세미나, 출판 및 교육을 주요업무로 하는 조정위원회이다. 최근에 이르러 이 「유럽專門會計士聯盟」(FEE)은 유럽연합(EU)의 15개국 441개 회사의 재무제표를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표재무제표의 조사」라는 표제로 정리하여 보고한 바가 있다.

35) P. Taylor and S. Turley, "The Regulation of Accounting : 1986(染谷恭次郎 訳譯・市村巧譯, 「イギリス會計規制論」, 森山書店, 1988), p. 168.

36) 齊柳清・市村一之 共譯, 「ヨーロッパ監査基準ガイド」, 1992, p. 9.

37) P. Taylor and S. Turley, The Regulation of Accounting, 1986; 染谷恭次郎 訳譯・市村巧譯, 「イギリス會計規制論」(東京, 森山書店, 1988), p. 169.

이와 같이 유럽연합(EU)은 15개국으로 구성된 공동시장을 통하여 재화·용역·사람의 이동을 기하고 그에 따른 회계문제도 指針의 형식으로 표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2. 유럽연합의 회계제도 관련규정

유럽연합(EU)은 1957년 로마조약을 근거로 하여 설립된 유럽공동체(EC)의 활동을 이어 받아 1992년부터 유럽통합시장의 완성을 위하여 활동 중에 있다. 이것은 현재 15개의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99년을 목표로 유럽중앙은행의 설립과 통화의 단일화(유로 : Euro)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각 회원국의 회사법을 조화롭게 운영하기 위한 회계표준화 정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이 회계표준화의 특징은 유럽연합 이사회로부터 통달받은 지침(Directive)에 의하여 조화를 이루게 되지만, 그 지침은 법적인 강제력을 가지며, 각 회원국의 법률에 반영되어 국내화가 이루어지도록 작용하게 된다.

유럽연합(EU)이 추진해온 회계표준화의 실적을 정리해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EU 會社法指針

年 度	公 표 사 항
1957	유럽공동체(EC)설립
1976	제1호지침, 「자본회사의 중요문서공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포함), 자본회사 가지는 의무 및 자본회사의 무효」, (EC관보 No. L6518, pp. 41~45)
1976	제2호지침, 「주식회사의 설립, 자본유지 및 자본의 변경」(EC관보 No. L26, pp. 1~13)
1978	제3호지침, 「주식회사의 국내합병」(EC관보 No. L295, pp. 36~43)
1978	① 제4호지침, 「특정회사의 연도재무제표」(EC관보 No. L222, pp. 11~36) ② 1984년 개정, (EC관보 No. L314, p. 28) ③ 1986년 개정, (EC관보 No. C144, pp. 11~14)
1982	제5호지침(案), 「주식회사의 구조 및 그 권리와 의무」(EC관보 No. C240, pp. 2~38)
1982	제6호지침, 「주식회사의 분할」(EC관보 No. L378, pp. 47~54)
1983	제7호지침, 「연결재무제표」(EC관보 No. L193, pp. 1~17)
1984	제8호지침, 「자본회사의 결산감사인의 자격」(EC관보 No. L126, pp. 20~26)
1985	제10호지침(案), 「주식회사의 국제합병」(EC관보 No. C23, pp. 11~15)
1986	제11호지침, 「외국자본회사의 지점에 관한 공시」(EC관보 No. C203, pp. 12~14)
1986	무번호, 「은행기타금융기관의 연도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EC관보 No. L372, pp. 1~17)
1987	무번호(案), 「보험회사의 연도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EC관보 No. C131, pp. 1~21)

그리고 현재 유럽지역에 본부를 두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of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OECD)는 선진국간의 경제개발과 협력을 목표로 하여 1961년에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이 기구도 각 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해온 다국적기업의 재무정보를 공시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방법을 모색해 왔다. 재무정보의 공시내용과 방법의 차이는 다국적기업의 재무체표에 대하여 신뢰성을 손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특히 각 회원국 회계기준의 차이는 국제적인 자본의 자유이동을 저해하게 되어, 회계기준의 국제적인 표준화를 필요로 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OECD는 1976년에 「다국적기업의 행동지침」(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을 공표하였다. 여기서 다국적기업이 공시해야 할 항목일람표가 제시되었고, 그후 회계용어의 설명과 비교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국의 다양한 회계실무를 조화시킴과 동시에 표준화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

그 일환으로 설립된 「회계기준의 작업부회」를 통하여 「OECD회원국의 회계실무」가 공표되었고, 각국 회계기준의 표준화를 위한 회계제도 관련규정이 발표되었다. 그 대표적인 것을 간추리면 앞의 <표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다.

V. 考慮해야 할 會計問題

위에서 살펴본 유럽연합(EU)의 會計指針 第4號, 第7號 및 第8號는 각 회원국의 서로 다른 會計와 監查制度를 표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 會計指針들은 유럽연합(EU)의 법률적 성격을 띠고 있으면서도 각 회원국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공동체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會計原則을 형성하는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³⁸⁾.

이 會計指針의 목적에 따르면, 대부분의 경우 최소한의 법적인 요구만을 규정하고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회원국의 선택권을 용인하는 형태로 구성되었다. 유럽연합(EU)의 전신인 유럽공동체(EC)에서는 계속하여 많은 會計問題와 감사제도의 조정을 해왔으나, 아직도 미해결의 상태로 남겨진 부분이 있다. 예컨대 외화거래의 환산처리, 회계원칙의 변경에 관한 회계처리, 전기손익수정의 회계처리, 後發事項의 회계처리, 관계회사간 내부거래의 회계처리, 리스의 회계처리, 受取債權의 회계처리, 장기건설계약의 회계처리, 유동부채의 회계처리, 장기차입금의 회계처리, 자본 및 적립금에 관한 회계처리,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 이자비용

38) Cooper and Lybrand, International Accounting : A Guide for Interpretation and Comparison, (Wiley, 1991), p. 1.

<표 2>

OECD의 會計標準

年 度	公 표 사 항
1961	經濟協力開發機構(OECD)의 設立
1975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위원회」설치
1976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공표
1979	「회계기준에 관한 작업부회」설립
1980	「OECD회원국의 회계실무」공표
1982	「OECD가이드라인의 회계용어에 관한 해설」
1986	① 「회계기준의 표준화－성과와 전망」 ② 「회계표준화 시리즈 제1호, 「의화환산회계」」 ③ 「워킹·다큐멘트 제1호, 「소프트웨어 회계처리」」
1987	① 「회계표준화 시리즈 제2호, 「OECD각국의 연결회계」」 ② 「회계표준화 시리즈 제3호, 「조세와 재무보고의 관계－법인세의 회계」」 ③ 「워킹·다큐멘트 제2호, 「재무제표의 입수가능성」」 ④ 「워킹·다큐멘트 제3호, 「다국적기업에 의한 정보공시－OECD가이드라인 적용에 관한 조사」」
1988	① 「회계표준화 시리즈 제4호, 「보험회사의 영업성적」」 ② 「회계표준화 시리즈 제5호, 「연결재무제표」」 ③ 「워킹·다큐멘트 제4호, 「리스회계」」 ④ 「워킹·다큐멘트 제5호, 「감사인의 자격」」 ⑤ 「新金融商品－公示와 會計」」 ⑥ 「다국적기업과 정보공시－OECD가이드라인 해설」
1990	「세그먼트별 재무보고」

의 자본화에 관한 회계처리, 연금의 회계처리, 법인세의 회계처리, 1주당 이익의 회계처리 등이 있다³⁹⁾.

指針 第8號의 감사인 자격규정에서도 회계감사인에게 최소한 요구되는 형식적인 조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독립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조건, 감사실시기준 및 보고기준, 직업적 전문가에 관해서도, 그리고 유럽연합(EU)의 城內活動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⁴⁰⁾.

이것은 각 회원국의 감사실무 이외의 업무가 어느 정도 다르고 회계감사인의 독립성과 같은 기초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서로 동의를 일기가 곤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⁴¹⁾.

그리고 그것은 指針 第8號가 회사법상의 회계감사인에 관한 것이지 직업전문가의 자격을

39) Ibid., pp. 5~14.

40) 加藤恭彥編, 「多國籍企業 經營とEC會社法指令」(東京, 同文館, 1988), p. 224.

41) Leslie G. Campbell, International Auditing, (McMillan Publishers, 1985), p. 177.

직접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 감사인의 능력에 대해서는 최저수준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불과하고 실질적인 수준의 조건까지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 직업전문가로 하여금 유럽연합(EU)의 域內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규정을 별도의 指針으로 정하는 문제 등도 유럽연합(EU)의 회계표준화에 앞서 고려해야 할 것들이다.

그렇지만, 재무제표의 법정감사와 관련하여 회계감사인의 독립성 개념을 명확히 하고, 특히 회계감사에 적용되는 감사기준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 指針 第5號의 수정에 의하여 부분적으로는 이러한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는 하지만, 공개된 有限公司에 한정되어 있고, 아직도 그 결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 과제를 남겨놓고 있는 것이다⁴²⁾.

유럽연합(EU)의 회계표준화에 대한 노력은 공동체위원회에 의하여 추진되고 각 회원국이 그것을 받아들여 指針規程의 國內化를 위한 작업을 진행하는 순서로 이루어져 왔다. 그것은 1992년의 시장 통합완성을 기점으로 하는 회계표준화의 작업이었다. 각 회원국들이 노력하여 목표년도까지 표준화된 회계규정이 어느 정도 접근했다고는 볼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 있어서는 相異한 점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⁴³⁾.

① 공표되는 재무제표와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범위는 유럽연합(EU) 회원국의 국내법 규정에서 완전히 통일되지 못하고 아직도 상이한 점이 존재한다. 예컨대, 英國에서는 회계감사가 일반적으로 실시되고 있지만, 獨逸에서는 소수의 大會社에 한정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② 재무제표의 양식과 그 이용되는 전문용어의 다양성은 있게 마련이다. 유럽연합(EU)의 회계지침은 각 회원국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회계지침의 국내화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융통성있는 선택의 폭을 인정하였다. 그 결과, 각 회원국들이 허용할 수 있는 양식의 정도나 실시되는 양식과의 사이에 나타나는 차이가 재무제표의 분석결과를 異質化하게 한다는 점이다. 손익계산서의 두 가지 양식의 경우, 어느 한 양식을 다른 양식의 것으로 전환할 수 없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용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공통적으로 자유롭게 이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 용어의 변환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誤讀을 가져오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용어의 변환이 불가능한 재무제표에 있어서는 재무분석가들로 하여금 곤란한 입장에 처할 수 있게 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42)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The Future of Harmonization of Accounting Standards Within the European Communities, (1990), p. 11.

43) Christopher Nobes, Accounting Harmonization in Europe : Toward 1992, A Financial Times Information, 1990 ; Interpreting European Financial Statement, 1990.

③ 고정자산의 평가방법이 다양하다는 것도 고려해야 할 회계문제 중의 하나이다. 각 회원국들의 고정자산평가 방법에는 많은 차이점이 존재한다. 英國과 프랑스에서는 원가평가와 시가평가가 혼합되어 있는 상태이며, 이태리, 프랑스 및 스페인에서는 가끔 재평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엄격한 원가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④ 회계표준화라는 시대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고정자산평가 외에 일반원칙의 차이점이 발견된다. 예컨대, 英國의 공시주의 회계에 비교되는 獨逸의 보수주의가 그것이다.

⑤ 연결재무제표의 문제가 존재한다. 指針 第7號의 연결회계규정을 통하여 상당한 정도의 표준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나, 아직도 많은 연결실무가 회원국간에 다르게 나타나 있다. 예컨대 영업권(goodwill)은 각각 다른 방법으로 회계처리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연결범위와 종속회사에 대한 규정도 다른 점이 존재한다.

指針 第4號의 會計規程이 1978년에 채택되어 거의 20년 가까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원래의 목적대로 각 회원국이 공표하는 재무제표의 동질성 내지는 비교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1990년 1월에 회의를 개최했었다. 이 회의에는 각 회원국의 관계부처 및 설정조직의 장, 재무제표의 이용자, 감사인 등 1,300명 정도가 참석하였다⁴⁴⁾. 이 회의를 통하여 유럽공동체의 기본적 회계지침을 수정하기 위한 몇가지 제안이 이루어졌다. 제안된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에 열거하는 바와 같다⁴⁵⁾.

- 1) 회계기준의 표준화를 위한 공동체의 계획.
- 2) 회계지침이 각 회원국내의 법률과 조화를 이룬 국내화 정착.
- 3) 指針 第4號를 기준으로 하여 공표된 재무제표의 조사.
- 4) EU域內의 회계기준 표준화와 제3국과의 관계.
- 5) EU와 제3국 재무제표의 상호승인문제.
- 6) 유럽연합(EU)에 있어서 회계기준 표준화의 전망.
- 7) 指針 第4號의 수정안－年次報告書에 포함되는 선택권의 정리.
- 8) 改正節次.
- 9) 1992年的 域內市場－EU에 있어서 재무보고의 새로운 도전.

VI. 에필로그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유럽의 공동시장 형성을 위한 羅馬條約이 1957년 3월 25일 체

44)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op. cit., p. 1.

45) Ibid., contents.

결되면서 출범했던 유럽공동체(EC)는 회계표준화의 방향을 설정하고 EC會社法指針書를 시리즈 형식으로 공표해 왔었다. 그 중 會計指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중요시되는 제4호의 회계규정, 제7호의 연결회계규정 그리고 제8호의 감사인 자격규정이 제안되고 확정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유럽공동체의 지역내에서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들의 회계처리에 동질성을 가져다 주기 위한 것으로 정착되어 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각 회원국 고유의 法制度를 존중하면서 유럽공동체내의 이해관계자를 보호하는 회계규정의 동질성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유럽 공동체理事會에 의하여 제정된 것이다. 거기서도 특히 기본적인 指針書인 第4號의 會計指針은 1978년에 이사회에서 채택된 것이다. 당초의 예비초안은 독일과 프랑스의 상법 및 주식법의 영향을 받았던 것이지만, 1973년에 영국이 EC에 가입하게 되면서, 1974년의 수정안에서는 英國風의 회계적 사고방식이 상당히 도입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指針 第7號의 연결회계규정이 1983년에 채택되었고 指針 第8號의 감사인 자격기준이 1984년에 채택됨으로써 명실공히 유럽공동체의 회계표준화를 향한 본격적인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전통과 관습이 각각 다른 여러 나라의 회계제도를 조화롭게 동질성을 갖는 것으로 표준화시킨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여기에는 기술적, 개념적, 정치·경제적인 관점에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 예컨대 獨逸과 같은 나라에서는 채권자·비밀주의적 회계사고가 일반적인 데 비하여 영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투자자·완전공시주의의 지향의 회계사고가 일반적이라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개념적인 관점에서 보면 국가의 규제에 대한 각 회원국의 이해관계가 다른데서 오는 문제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유럽공동체의 추축이 된 회계표준화를 지향하고 있지만 그 동질성을 기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아진다. 따라서 유럽경제공동체의 會計指針書는 「각 회원국의 타협의 산물」이며 英美風의 회계적인 사고를 基調로 하면서도 大陸風의 보수주의적인 회계처리방법이 고려되었다는 것이 특징으로 지적될 수 있다. 會計指針書가 채권자보호에 중점을 두었던 것은, 그것이 다수의 회원국에서 지배적으로 시인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그것이 유럽경제공동체에서 개발된 최량의 실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각 회원국 대부분이 대륙법계통의 국가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채권자 보호사상에 젖어있을 뿐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렇듯 유럽 여러 나라가 경제적 공동운영체임을 일찍이 인식하고 시장통합을 통한 活路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회계표준화의 방향이 설정되고 그 결정체로 표출된 것이 제4호, 제7호 및 제8호의 회계지침이다. 거대하게 떠오른 유럽市場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경영전략도 중요하겠으나, 그 지역의 會計制度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함으로써 미래지향적 경영에 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여기에 유럽연합(EU)의 회계지침을 터득하지 않으

면 안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1. 高承福, 「會計原則의 理論」, 1982.
2. 李正浩, 「現代會計理論」, 1996.
3. 產業研究院, 「우리나라의 OECD加入과 資本自由化」, 1996.
4. _____, 「對EU主宗輸出商品의 輸出擴大戰略」, 1995.
5. 세계경제연구원, 「유럽연합(EU)의 앞날과 세계경제」, 1996.
6. 新井清光, 「國際會計研究」, 1982.
7. 新井清光・廣瀬義州, 「國際財務會計基準」, 1983.
8. 石渡利康・佐伯富樹・曾我英雄, 「ECの 擴大と 深化」, 1990.
9. 加藤恭彦, 「多國籍企業經營とEC會社法指令」, 1988.
10. 北川道男, 「英國會計制度の國際化」, 1992.
11. 黒田全紀, 「EC會計制度調和論」, 1989.
12. 中央經濟社, 「企業會計」, (1980~1996).
13. 中央經濟社, 「會計基準國際比較 ハンドブック」, 1995.
14. 染谷恭次郎, 監譯・市村巧譯, 「イギリス會計規制論」, 1988.
15. 北川道男, 「英國會計制度の國際化」, 1992.
16. 中村宣一朗, 「會計統一化政策」, 1976.
17. _____, 「フランス會計原則」, 1990.
18. 日本會計學會, 「會計」(1980~1996).
19. 山口幸五郎, 「EC會社法指令」, 1984.
20. 森本滋, 「EC會社法の形成と展開」, 1984.
21. 名東孝二, 「ECにおける企業と會計」, 1977.
22. Bird, P., "Accountability Standards in Financial Reporting", 1973.
23. Campbell, L. G., "International Auditing", 1985.
24. Chastney, G., "True and Fair View—History, Meaning and the 4th Directive", 1975.
25. Cooper and Laybrand, "International Accounting, A Guide for Information and comparison", 1991.

26.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The Future of Harmonization of Accounting Standards within the European Communities", 1990.
27. Gray, S. J., L. B. McSeeney and J. C. Shaw, "Information Disclosure and Multinational Corporation", 1984.
28. Flint, D., A True and Fair View in Consolidated Accounts in S. J. Gray and A. G. Coenenberg ed., "International Group Accounting", 1984.
29. ICAEW, "Accountancy", March 1983.
30. McKion, S. M., "The Seventh Directive—Consolidated Accounts in EEC", 1984.
31. Nobes, C., "Accounting Harmonization in Europe : Toward 1992, A Financial Times Information", 1990.
32. Oldham, K. M., "Accounting Systems and practice in Europe", 1986.
33. Owen, R. and M. Dyness, "The Times Guides to 1992, (1991).
34. Traylor, P. and S. Turley, "The Regulation of Accounting, 1986.
35. Turley, S., International Harmonization of Accounting, (The Journal of Accounting, Spring 1983).

노벨 經濟學賞 受賞者의 財務理論研究

李 建 暉*

目 次

I. 서 론	2. 학문적 업적
II. 모딜리아니(Franco Modigliani, 1918~)의 생애와 재무이론	3. 밀러와 한국경제
1. 생애와 개관	V. 샤프(William F. Sharpe 1934~)의 생 2. 학문적 업적
3. 모딜리아니와 한국경제	3. 밀러와 한국경제
III. 마코위츠(Harry M. Markowitz 1927~)의 생애와 포트폴리오선택이론	VI. 솔즈(Myron S. Scholes, 1941~)와 1. 생애와 개관
2. 학문적 업적	2. 학문적 업적
3. 마코위츠와 한국경제	3. 솔즈와 한국경제
IV. 밀러(Merton H. Miller 1923~)의 생 애와 자본구조이론	VII. 결 론
1. 생애와 개관	

I. 서 론

애덤 스미스, 데이비드 리카도, 프리드리히 리스트, 칼 마르크스, 칼 맹거, 레옹 왈라스 등 경제학의 대혁명을 이룩한 위대한 경제학자들의 뒤를 이어 세계경제를 원리적으로 재해석한 존 M. 케인즈가 사망한 1946년 이후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케인즈 만한 인물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노벨 경제학상은 많은 상들이 주어지는 문학과 자연과학부문과는 달리 사회과학분야에서 주어지는 유일한 상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정치와 외교, 사회와 심리 등 많은 사회과학분야에서 주어지는 평화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평화상은 학문적인 업적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노벨 경제학상이야 말로 사회과학분야에서의 학문적 업적을 평가하는 유일한 사회과학상이라 할 수 있다.

매년 여러 대학이나 연구소의 저명한 교수, 연구가들에게 수상후보자를 추천의뢰하고, 이

*梨花女子大學校 商經大學 經營學科 教授, 韓國經營史學會 副會長

를 바탕으로 비경제학자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의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수상자가 결정되는 노벨 경제학상은 경제학자로선 누구나 한 번은 받아보고 싶어하는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노벨 평화상이나 문학상 등에서 간혹 거절하는 사태가 있긴 하나, 그래도 노벨상은 현재 세계에서 존재하는 어느 상보다 가장 권위 있고 영구적인 상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노벨 경제학상은 케인즈가 사망한 후 23년 뒤에 만들어진 것으로서, 경제학의 2대 지류 즉, 케인즈의 학문적 유산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케인지안과 중농주의, 고전학파, 신고전학파, 역사학파, 제도학파 등의 비케인지안의 흐름을 이어받은 많은 사람들이 같고 닦은 학문적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주어지고 있는 상이다.

라그나르 프리시와 얀 틴베르헨의 계량경제학, 폴 사뮤엘슨의 물리학적 접근, 존 힐스의 순수이론, 케네스 애로우와 제라르 드브루의 수학성, 와실리 레온티예프의 산업연관법, 레오니드 칸트로비치와 찰링 쿠프망의 활동분석, 밀턴 프리드먼의 신화폐이론, 배르탈 올린과 제임스 미드의 무역이론, 허버트 사이먼의 과학적 경영, 로렌스 클라인의 계량경제모델적 분석, 리처드 스톤의 국민계정, 로버트 소로우의 경제성장론, 헤리 마코위치 등의 금융경제론, 존 내쉬 등의 게임이론 등은 크게 보아 전자인 케이지안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사이먼 쿠즈네츠의 역사와 현실의 통계적 분석, 군나르 뮐러달과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철학, 정치, 제도 및 문화적 접근과 시어도어 슬초와 게리베키의 인간자본, 아서 루이스의 계량경제학, 로널드 코僵尸의 법경제, 더글라스 노스와 로버트 포겔의 경제사 등은 대체로 후자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하이에크나 뮐러달과 같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경제학의 과학성, 즉 과학주의 (scientism)를 비판하고 있으나 그래도 경제학의 큰 흐름은 아직까지 경제학이 과학적이어야 하며 그래야만 지금의 현실 경제를 이론적으로 풀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노벨 경제학상은 이러한 주류경제학의 정치한 과학성을 기본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경제 발전이나 공공경제, 경영 및 제도, 법경제, 경제사 등에서 독창적인 이론적 기여를 하면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는지 여부를 수상자 선정기준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의 독창적 기여란 수많은 경제현상 중 극히 작은 일부분이라 하더라도, 거기서 상대적으로 불변적인 어떤 법칙, 패턴 내지는 규칙성 같은 것을 찾아냄을 뜻한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 분석도구로 경제현상을 응용·분석하는 것만으로는 아무리 많은 업적을 쌓는다 해도 노벨 경제학상과는 거리가 멀다 할 수 있다.

재무관리는 경제학의 한 분야인 화폐금융론의 한 분야로 인식되어 오다가 1950년대에 하나의 독립적인 학문분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재무관리의 발전에 있어서 큰 획을 긋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는 마코위츠의 포트폴리오선택이론이다. 마코위츠의 이러한 규범적인 이론을 기초로 하여 샤프, 린트너, 모신이 자본자산가격결정이론을 개발해 냄으로써 자산

가격결정에 있어서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 다른 하나의 큰 획은 기업의 자본구조에 관한 이론에서 나왔는데, 그것은 기업가치와 자본구조는 무관하다는 모딜리아니와 밀러의 정리이다. 이러한 획기적인 연구를 토대로 하여 그 후 많은 자본구조에 대한 이론들이 쏟아져 나왔다. 본고에서는 재무관리 이론의 혁신적인 발전과 이외 실무에의 적용을 통해 재무관리 분야의 혁신적인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이러한 업적을 높이 평가받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마코위츠, 모딜리아니, 밀러, 샤프 그리고 솔즈와 머튼을 중심으로 이들의 생애와 학문적 업적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이들이 현 한국경제 상황에 견주어 볼 때 가지는 의미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모딜리아니(Franco Modigliani, 1918~)의 생애와 재무이론

1. 생애와 개관

모딜리아니는 1918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태어났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미국으로 이주한 많은 유럽인 중 한 사람이었다. 1939년 로마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마치고 곧바로 미국으로 이주하여 1944년 뉴욕의 사회과학대학(New School for Social Research)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미 박사학위 논문에서 케인지언 체계 내에서 화폐이론과 이자율이론을 결합시키는 탁월한 연구를 진척시켰다. 그의 박사학위 논문은 약간의 개작을 거쳐 1944년에 *Econometrica*에 발표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당시 경제학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바 있는 「유동성 선호와 이자·화폐이론」이다.

박사학위를 받은 뒤, 그는 1942년 콜롬비아대학 베나드 칼리지(College of Bernard)에서는 통계학을, 1943년 뉴스쿨에서는 수리경제학을 강의하였다. 1949년에는 일리노이대학 경제학 교수가 되었으며, 1952년에는 그곳을 떠나 카네기 공과대학에서 산업행정학 교수가 되었다. 1962년에는 노스웨스턴대학으로 자리를 옮겼고, 그해 다시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으로 옮겨 경제학, 재정학 교수가 되었다. 그 이후 그는 계속해서 MIT에 재직하고 있다.

MIT로 자리를 옮긴 모딜리아니는 연구의 폭을 이론작업에서 실증작업으로 확대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당시 그는 펜실바니아대학의 안도(A. Ando)와 함께 MPS (MIT-Penn-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모델이라는 미국경제에 대한 대규모 컴퓨터 모델을 고안하였는데, 이는 1960년대를 풍미하던 통화주의 논쟁을 겨냥한 것이었다.

안도와 더불어 재정주의학파(Fiscalist School)를 대표하고 있던 모딜리아니(이들의 약자

를 따서 AM이라고 부르기도 했다)는 화폐 공급이 산출과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추적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들의 모델은 밀턴 프리드먼의 통화주의에 대항하여 광범하게 이용되었다.

그는 1966년 이래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자문위원이며, 1971년 이후 브루킹스 경제활동위원회의 선임고문으로 일하고 있다. 1962년에는 계량경제학회, 1972년에는 미국경제학회, 1981년에는 미국재정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1976년부터 1981년까지의 국제경제학회 부회장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그는 이탈리아인의 따뜻함과 미국인의 소탈함을 모두 갖춘 유쾌한 연설가이자 뛰어난 교사이다. 많은 양의 저작이 미국경제에 관련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조국에 대한 관심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으며, 이탈리아 경제에 대한 다수의 논문을 이탈리아어로 남기기도 하였다.

2. 학문적 업적

무엇보다도 프랑코 모딜리아니는 힉스, 사무엘슨의 뒤를 이었던 케인저언 경제학자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이미 힉스 등에 의해 개발되었던 IS-LM모델을 이용하여 1940년대부터 거시경제학의 각 분야에 걸쳐 연구활동을 지속하였으며 케인저언 경제학의 체계를 완성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의 이러한 연구 활동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될 수 있는 독창적인 분야가 소비이론이었다. 모딜리아니는 1950년대 초에 소비이론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가설(life cycle hypothesis)’을 창안하였는데, 이는 국민저축패턴에 대한 엄격한 관찰에 근거하여 개인행동의 미시적 기초를 포착하고 거시경제학적 소비함수를 최종적으로 도출한 것이었다.

케인즈에 의하면 평균 소비성향은 가계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다고 주장하였지만, 역사적으로 장기적인 시계열 자료를 관찰한 결과는 평균 소비성향이 대략 일정한 것으로 나타나 케인즈의 가설이 잘 맞지 않는다는 논의가 있어 왔다.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연구가 행해졌으며, 밀턴 프리드먼의 ‘항상소득가설’, 즉 저축은 현재소득이 아니라 예상되는 평생소득의 함수라는 가설은 저축에 대한 횡단면자료와 시계열자료의 괴리를 제거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제시된 것이었다.

모딜리아니의 라이프 사이클 가설, 즉 개인은 그들이 돈을 버는 동안에 저축하고 은퇴 후에는 ‘부(負)’의 저축을 한다는 가설은 이 문제에 대한 또 하나의 방식을 제공한다. 라이프 사이클 가설에 따르면 소비는 전 생애에 걸쳐 일정하거나 혹은 서서히 증가하는 형태를 띤다. 하지만 소득은 일반적으로 중년기 때 가장 높고 유년기와 노년기에는 낮다. 따라서 중년기에

는 저축률이 높고 유년기나 노년기에는 저축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음(−)의 저축률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가설에 따라 모딜리아니는 소비가 미래소득흐름의 현재가치의 함수라고 정의하였고, 소득을 자산소득과 근로소득으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남은 생애동안 기대되는 평균 예상 근로소득의 영향을 강하게 받게 된다. 모딜리아니의 소비함수에 따르면 이번 기의 소득증가가 전체 기대 소득의 흐름에 크게 이동시킨다면 기대 소득흐름이 이동되지 않고 소득증가분이 잔여기간에 분산되는 경우에 있어서 보다 금기 소비에 대해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라이프 사이클 가설은 장기소비성향이 대체로 일정하다는 관찰을 훌륭하게 설명해 냈고, 소비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자산을 설명변수로 명백히 포함시킬 수 있다는 이론적 업적을 남기고 있다. 또한 관찰이 용이한 근로소득과 자산가치 등의 측면에서 소득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실증분석면에서도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인구성장과 생애상의 기대에 대한 몇 가지 가정을 전제한다면, 이 주장을 통해 저축과 소득 사이에 일정한 역사적 비율도 얻을 수 있다.

모딜리아니의 독창적 연구업적 중에서 주목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바로 기업재무론이다. 1950년대 말과 1960년대 초에 모딜리아니는 밀러(M. Miller)와 함께 현대 재무이론의 두 개의 기본정리가 된 '모딜리아니-밀러정리'를 정립하였다.

이 정리는 자본시장이론과 기업의 재무를 결합시킨 이론의 공로를 남기고 있으며, 오늘날 기업의 자본구조에 관한 이론들이 출발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 주었다.

자기자본과 장기타인자본의 구성비율로 표시하는 자본구조 중에서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 하는 자본구조를 최적자본구조라고 한다. 재무이론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 중의 하나는 어느 수준의 부채-자기자본비율에서 최적자본구조가 달성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1950년대까지의 견해는 어느 정도까지의 타인자본의 이용은 기업의 가치를 증가시킬 것이지만 일정한 정도를 초과한 타인자본의 이용은 기업의 가치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것 이었다.

모딜리아니와 밀러는 「자본비용, 기업재무 그리고 투자이론」(1958)이라는 논문에서 기업의 법인세가 존재하지 않는 자본시장의 가정 하에서 기업의 가치는 그 자본구조와 무관하며, 따라서 최적자본구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론적인 증명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은 유명한 모딜리아니-밀러의 무관련이론(無關聯理論 : irrelevance theory)으로 체계화되었고 기업재무론의 중요분야로 발전하였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시장가치는 순영업이익의 기대치를 그 기업이 속하는 위험집단의 수준에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할인율로 할인함으로써 계산된다. 따라서 어떤 기업의 가치가 부채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자기자본으로만 구성되었을 경우와 타인자본으로 구성되었을 경우 각각의 순영업이익이 같다면, 기업의 가치는 서로 동일하게 된다. 모딜리아니와 밀러는 각각의

경우 순영업이익이 같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완성된 증명을 제시하였다.

기업재무론의 기초를 확립했다는 점에서 모딜리아니의 업적은 하나의 획을 그었다. 모딜리아니는 최초로 기업이 합리적인 증권시장과 상호작용하면서 기업의 시장가치를 극대화하도록 행동하게 된다는 점을 생각하였으며 기업재무의 분석과 투자가 개인의 포트폴리오 선택을 결합시켰다.

그러나 모딜리아니-밀러의 논문은 그것이 취하고 있는 가정으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특히 조세가 없다는 가정이 비판을 받았으며, 기업재무론에서 조세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법인소득의 경우는 기업과 주식소유자에게 각각 조세가 부과되는 반면 채권의 경우는 비용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조세가 한 번만 부과된다.

물론 모딜리아니와 밀러가 조세가 없는 경우에만 연구를 국한시킨 것은 아니었다. 1963년에 발표된 「조세와 자본비용 : 수정」과 1969년에 발표된 「하인즈와 스프렌클에 대한 답변」의 두 논문에서 법인세의 존재를 도입함으로써 더욱 완성된 모딜리아니-밀러정리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후 이 문제에 관한 수많은 연구가 쏟아지고 많은 비판에 직면하면서도 모딜리아니-밀러(MM)정리는 기업재무론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자본구조이론의 출발점으로서 위치를 지니고 있다. 이제는 경제학에서 하나의 완전한 분야가 된 재무분석이라는 분야가 모딜리아니와 밀러에 의해서 탄생된 것이다.

모딜리아니는 정통적인 케인저언 경제학자이다. 그는 이미 초창기 연구활동에서 케인즈의 화폐이론과 이자율이론을 체계화했을 뿐만 아니라 1960년대의 통화주의자(monetarist)와의 논쟁에서는 케인저언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언제나 통화주의 공격에 앞장 섰다.

당시 재정주의자(fiscalist)와 통화주의자로 불려졌던 이 논쟁은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재정정책의 유효성을 통화정책의 유효성에 관한 논쟁이었으며, 이 논쟁에서 모딜리아니는 총수요관리를 통한 완전고용의 추구라는 케인저적 교훈을 언제나 강조하였다.

당시의 논쟁은 1970년대를 거치면서 여과되었고, 다시 한 번 등장한 시카고대학의 전통, 즉 신고전주의(new classical school)와의 논쟁으로 케인저언 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모딜리아니와 프리드먼으로 대표되는 1960년대 논쟁은 지금도 거시경제학의 주요 논점을 이론적으로 명확히 해주었다는 공로를 남기고 있다.

당시 논쟁의 주요산물로 언급될 수 있는 것은 이론적인 문제만이 아니었다. 안도와 함께 고안했던 유명한 MPS모델은 미국경제에 대한 대규모의 실증분석모델로서, 논쟁의 이론적 측면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경제학의 실증적 측면에 더 크게 기여하였던 것이다.

그는 특수한 주제들에 대한 다수 저서들의 공저가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의 최고의 역작은 정기간행물 논문의 형태를 취하였다. 1980년에 MIT의 출판부에서 발간된 「프랑코

모딜리아니 논문선』은 전 3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3. 모딜리아니와 한국경제

모딜리아니는 전후 최고의 케인즈인 경제학자 중의 한 사람이다. 그의 경제학은 일관되게 총수요관리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주요 정책수단으로서 재정정책을 지지하였다. 또한 라이프 사이클가설로 지칭되는 소비이론을 발전시킴으로써 거시경제학의 미시경제학적 기초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재무이론에 관한 그의 정리는 자본시장을 이해할 수 있는 유효 적절한 분석도구이며 규범적인 의의를 지니는 탁월한 업적이다.

그의 연구는 이론적인 분야만이 아니라 실증적인 분야에도 많은 업적을 남겼다. 20세기를 장식했던 대 경제학자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시사점을 주는 인물임에 틀림없다.

오늘날 한국경제의 문제를 생각해 볼 때 모딜리아니가 제시한 케인즈적 결론은 이미 교과서적인 상식이 되어 있지만 아직도 그의 업적이 충분히 용용되고 있는가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특히 그가 집중적으로 연구했던 소비이론의 분야가 그러하다.

어떤 의미에서는 소비이론이 경제학의 한 분야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모딜리아니의 소비이론은 그의 거시경제학 체계 전체의 중요한 구성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그의 케인즈적 결론을 지탱하는 기초였다. 따라서 그의 소비이론 없이 거시경제학적 결론을 간단히 이끌어 낸다는 것은 오히려 어처구니 없는 일일지도 모른다.

그가 밀러와 공동으로 연구했던 모딜리아니-밀러(MM) 정리도 자본시장과 기업의 행위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유용한 분석도구였다. 이러한 그의 연구는 국민경제에서 자본시장의 원리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며 종합적으로 거시적인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이기도 하였다.

이제 거시경제학적 구조의 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는 1990년대 한국경제는 모딜리아니의 연구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리라고 본다. 개별시장의 분석을 통한 국민경제 전체의 이해, 미시경제적 접근과 거시경제적 접근의 종합이 모딜리아니의 경제학이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

예를 들어 각종 조세정책의 시행은 올바른 소비행위 분석에 기초할 때 적절한 효과가 파악될 수 있다. 또한 금융자유화와 같은 정책적 과제도 금융시장에 관한 올바른 연구에 입각할 때만 그것의 거시 경제적 평가가 가능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 소비함수의 연구, 혹은 개별시장으로서의 금융시장에 대한 세밀한 연구를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한국경제의 거시경제학적 이해를 올바르게 진행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접근방법을 모딜리아니로부터 배울 수 있다고 본다.

III. 마코위츠(Harry M. Markowitz 1927~)의 생애와 포트폴리오선택이론

1. 생애와 개관

현대 포트폴리오(portfolio)이론의 아버지로 불리는 마코위츠는 1927년 시카고에서 태어났으며 고교시절 바이올린을 연주하기도 하고 철학을 비롯한 광범위한 분야의 서적을 탐독하는 등 다방면에 걸쳐 지적 활동의 충분한 토양을 쌓아 왔다.

시카고대학에 진학하여 학사, 석사, 박사학위까지 받은 마코위츠는 학창시절 시카고대학의 프리드먼, 사샤, 세비지 그리고 쿠프망에 의해 크게 영향받았다고 술회하고 있다. 당시 프리드먼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던 불확실성하의 행위에 관한 연구는 마코위츠의 포트폴리오이론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특히 쿠프망이 이끌던 카울즈경제연구위원회의 학생회원으로 선발되었던 경험은 그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 주었다.

시카고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마코위츠는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에 참여하면서 평균-분산 경계의 계산방법에 대해서 연구하였고 이후 중재경영회사의 회장, IBM의 웨슨연구센타 연구원을 역임하는 등 실무분야에서의 왕성한 활동을 하였으며 미국금융학회의 회장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이 밖에도 1989년에는 폰 노아면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는데, 그 계기가 된 업적에는 포트폴리오이론 연구 뿐만 아니라 시뮬레이션 기법을 향상시킨 SIMSCRIPT라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개발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현재 뉴욕시립대학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박사학위를 준비하던 기간 중 마코위츠는 존 윌리암스의 「투자가치의 이론」을 읽게 된다. 윌리암스에 따르면 주식의 가치는 미래배당금 합계의 현재 가치였다. 마코위츠는 미래의 주식배당금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예상배당금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투자자가 수익 뿐만 아니라 위험을 고려하면서 포트폴리오 선택을 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했다는 것에 마코위츠의 독창성이 있으며 이 경우의 위험은 예상수익의 분산을 통해 측정된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당시 성장하고 있던 자본시장에 관한 정확한 관찰에서 비롯되었으며 경제학이론과 방법론을 올바르게 적용함으로써 체계화될 수 있었다. 그가 체계화한 포트폴리오이론은 이후 재무이론에 관한 여러 분야의 연구에 영향을 미쳤으며 재무이론의 골격을 이루게 된다.

2. 학문적 업적

마코위츠의 학문적 업적은 포트폴리오이론의 개발과 체계화, 그것을 위한 불확실성하의 선택이론(효용이론), 수학적인 프로그래밍과 그것을 실제로 풀 수 있는 알고리즘의 개발, 그리고 실제적인 투자활동의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그의 관심은 당시 발전을 거듭하고 있던 자본시장의 성장을 포착한 것이었다. 또한 학문적으로는 불확실성에 관한 연구, 폰 노이만의 기대효용이론을 포함한 미시경제학과 계량 경제학의 발전이 밀거름이 되었다.

포트폴리오이론에 관한 마코위츠의 연구는 박사논문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체계를 지시하게 된다. 이 당시의 연구결과는 포트폴리오이론의 새로운 장을 열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1952년에 발표된 「포트폴리오 선택(Portfolio Selection)」이었다.

당시까지만 해도 포트폴리오선택에서 중요한 것은 미래의 예상수익이었다. 즉 투자는 미래의 예상수익이 더 큰 포트폴리오를 선택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미래의 예상수익은 본질적으로 불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위험을 가진다. 따라서 포트폴리오선택에 직면한 투자자에게는 미래의 예상수익만이 아니라 위험도 대단히 중요한 척도가 된다. 미래의 예상수익만이 아니라 위험도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실제 투자자의 행위에 대한 관찰이 마코위츠가 정립한 포트폴리오이론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마코위츠는 투자과정을 두 단계로 구분하였다. 첫째는 증권분석(security analysis)의 단계이고, 둘째는 포트폴리오 선택의 단계이다. 첫번째 단계에서는 자산의 예상수익과 예상수익의 변동, 즉 분산으로 측정되는 위험에 의해 여러 포트폴리오에 대한 분석이 행해진다. 여기서 분산투자(포트폴리오)의 장점이 이론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여러 위험자산 중에서 어떤 하나의 자산에 투자한다는 것은 그 자산이 지니고 있는 예상수익과 위험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산들을 적절히 결합하면 동일한 예상수익을 가져오면서도 분산, 즉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 이것은 몇개의 자산이 결합된 포트폴리오의 분산이 계산될 때 상관계수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즉 자산간의 상관계수가 1보다 작다면 포트폴리오의 분산은 각 자산수익의 분산보다 작아지게 된다.

이렇듯 상관계수가 작은 분산에 투자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은 '효율적인 포트폴리오'의 존재를 말하며, 이러한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는 동일한 예상수익을 가져다 주는 경우 가장 작은 위험을 가져오며, 동일한 예상수익을 가져다 주는 경우 가장 큰 예상수익을 가져다 주는 포트폴리오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이렇게 선택된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는 다른 포트폴리오에 비해 예상수익과 위험의 두 측면

에서 더 우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효율적 포트폴리오는 다른 포트폴리오를 ‘지배한다 (dominate)’고 부른다. 따라서 투자자는 이를 효율적인 포트폴리오의 집합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물론 자산 중에는 위험자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위험자산, 즉 확정적인 수익률을 보장해 주는 자산도 있다. 무위험자산을 통한 대출과 차입이 자유롭다면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는 위험자산의 포트폴리오와 무위험자산의 합을 통해 더 커질 수 있다.

위험자산과의 결합을 통한 포트폴리오의 확대에는 이론적으로 볼 때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요컨대 이는 위험자산간의 포트폴리오 선택이 무위험자산의 결합과는 서로 분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투자자는 우선 위험자산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이후 위험자산 전체와 무위험자산의 구성을 선택하게 된다는 의미이며, 엄밀하게 말하여 포트폴리오 선택은 이러한 두 단계를 거친다는 것이다. 이론 바 ‘분리이론 (separation theory)’으로 알려진 이 이론은 지금도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인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무위험자산과 위험자산 포트폴리오의 결합을 통한 효율적인 포트폴리오의 구성은 마코위츠에 의해 체계화된 중요한 결론의 하나이기도 하지만, 이후 재무이론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개념이기도 하다. 이 결론이 이후 샤프와 린트너 등에 의해 개발된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 (Capital Asset Pricing Model : CAPM)의 근간이 되었던 것에 그 의의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마코위츠의 포트폴리오 이론과 CAPM이야말로 현대재무이론의 교과서적 체계를 구성하는 선구적 업적인 것이다.

이제 투자자의 포트폴리오선택의 단계가 남아 있다. 마코위츠는 투자자의 행위는 불확실성 하에서의 기대효용 극대화라고 생각하였으며, 따라서 투자자는 자산의 예상수익과 위험으로 구성된 효용함수를 가지게 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가 이용한 평균-분산 목적함수는 부(富)의 이차함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투자자의 행위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기대효용의 극 대화를 추구하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해 주었다. 그가 제시하고 연구한 이를 효용함수의 성질은 이론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으며, 이후 또 하나의 중요한 연구분야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제에서 투자자는 효율적인 포트폴리오와 자신의 무차별곡선이 접하는 곳에서 포트폴리오의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마코위츠의 포트폴리오이론은 방법론적으로는 평균-분산 분석에 해당한다. 마코위츠 이래로 평균-분산 분석은 재무이론의 기본 방법론이 되고 있으며 기초적인 이론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의 평균-분산 분석은 당시 또 하나의 재무이론 개척자라고 볼 수 있는 토빈 등의 연구에 의해 강하게 영향을 받았다. 마코위츠는 평균-분산 분석을 포트폴리오이론에 적용함으로써 방법론 자체의 발전 뿐만 아니라 재무이론의 획기적인 진보를 이룩한 것이다.

마코위츠의 포트폴리오이론과 평균-분산 분석은 이론적인 엄밀성과 체계성을 차지하고라도 실용적인 가치가 대단히 높은 이론적 업적이었다. 그 자신이 실무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문적 연구태도에서도 '이론적 적용'과 '실무의 이론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것이다. 그의 이론이 지니는 실용적인 가치는 대수적인 계산의 용이함, 분리의 이점, 경험적 분석의 용이함과 규범적(normative) 적용의 가능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마코위츠는 1956년에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계산하는 방법을 발표하였으며, 1959년에 발표된 저서 「포트폴리오 선택 : 투자의 효율적인 분산화」에서는 방법론적인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이 저서에서는 첫째 효용의 개념을 정교히 하고 문제의 해법과정이 연구, 제시되었으며, 둘째 로그 효용함수의 적용문제와 기하 평균수익을 극대화하는 포트폴리오가 근본적으로 평균-분산 효율적임을 보였다. 셋째로 자산의 숫자가 증대됨에 따라 포트폴리오 분산은 평균 공분산에 접근하게 된다는 것을 보였으며, 넷째로 공분산행렬이 간단해지는 경우를 분석하였다.

이 저서에서 제시된 방법론상의 중요한 결론들은 그 자신의 포트폴리오이론을 더욱 완성하였다는 의미 뿐만 아니라 이후 샤프 등에 의해 연구된 CAPM에 크게 기여하였다라는 점에서도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

「포트폴리오선택 : 투자의 효율적인 분산화」는 마코위츠의 학문적 자세를 정확히 보여준다. 그는 이론적인 엄밀함 뿐만 아니라 항상 실제적인 활용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의 저술은 학자 뿐만 아니라 실무자들을 동시에 겨냥하고 있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마코위츠는 실무분야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한 바 있다. 물론 그의 활동이 이론 연구를 중단시킨 적은 없으나, 그의 실무활동이 포트폴리오이론이 현실과 밀접히 결합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그의 연구활동이 현실과 밀접히 관련되었다는 것은 그의 활동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1989년 폰 노이만상을 수상하였을 때의 업적이다. 당시의 업적으로 지적된 것은 포트폴리오이론과 더불어 SIMSCRIPT라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개발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프로그래밍 언어의 개발은 시뮬레이션 기법을 발전시킨 중요한 업적 이기도 하다.

마코위츠의 연구 태도는 실무자들의 행위를 관찰하고 실무자들에게 적절한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재무이론과 경제학을 보다 더 풍부하게 발전시킨 것이기도 했다. 이처럼 그는 현실을 기술(description)하고 각종 제도에 대한 연구에 머물러 있던 재무이론을 한 차원 끌어 올려 명실상부한 이론체계를 갖추었다. 이러한 작업은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 이론의 도입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 경제학 이론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준 것이기도 했다. 요컨대 경제이론과 재무행위의 결합을 통한 경제학 발전

이야말로 마코위츠의 가장 중요한 업적이라 할 수 있다.

3. 마코위츠와 한국경제

현대 포트폴리오의 아버지라 불리는 마코위츠는 밀러와 샤프 등의 경제학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 금융경제학의 창안자이다. 그의 포트폴리오이론은 샤프에 의하면 규범적인 이론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그 후 많은 연구에 의해 실증적인 태도를 견지하였고, 사실 그가 SIMSCRIPT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개발하였다는 것은 이러한 그의 연구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마코위츠의 연구업적과 그의 학문태도는 오늘날 한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금융자유화의 문제를 검토하는 데에도 꽤 유익하다고 생각된다.

지금 우리 경제에서는 금융제도의 개편이 계속 논의되고 있지만, 기존 금융제도를 유지하면서 운영방법만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저축을 투자로 증개하면서 유통시장에서 최선의 자금흐름을 보장하기 어렵다.

지금 금융제도의 개편은 국제금융시장의 통합과 이론 바 금융의 글로벌리제이션(globalization)에 의해서도 촉발될 수 있다. 하지만 금융자유화의 문제를 거시적인 차원에서만 접근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금융자유화의 문제는 금융시장과 금융산업 자체에 관한 엄밀한 연구에 의해서만 그 발전방향이 정확히 논의될 수 있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다소 경영학적이고 미시경제학적 방식이지만, 금융시장을 국민경제 내에서 자금의 효율적인 흐름을 달성하는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금융산업도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는 산업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뜻이 있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마코위츠의 포트폴리오이론은 금융시장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분석도구이며, 나아가 그것이 지니고 있는 규범적인 의의, 즉 이론이 현실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도 한국경제 분석에 유익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IV. 밀러(Merton H. Miller 1923~)의 생애와 자본구조이론

1. 생애와 개관

밀러는 1923년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보스턴에서 태어났다. 그는 하버드대학 출신의 검사였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하버드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였고, 1944년에는 수석졸업의 영예를 안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관심은 법학이 아니라 경제학에 있었다.

그는 2차대전 기간 중 재무성과 연방주지사회의 조사통계국에서 활동하였으며, 2차대전이 끝난 후 존스 휙킨스대학으로 진학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952년 런던대학의 초빙교수가 되었다. 1953년에는 당시 경영학연구의 신사조(新思潮)의 중심이기도 했던 카네기 공과대학(현재의 카네기 멜론대학)의 교수로 부임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시작된 프랑코 모델리아니와의 공동작업은 1960년대까지 계속되었으며, 이 시기의 작업은 그의 가장 중요한 연구업적이 되었다.

1961년에는 시카고대학 경영대학원으로 자리를 옮겨 기업재무론 연구에 몰두하게 된다. 그가 시카고대학으로 가게 된 것은 그 자신도 언급하고 있듯이 시카고대학의 전통과 이미 노벨상을 수상한 바 있는 프리드먼, 슬츠, 스티글러 등의 자유주의 경제학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다.

1980년대 초 시카고 무역위원회의 의장이 되면서 그의 관심분야는 금융산업, 특히 증권과 옵션거래에 대한 경제적 재문제와 규제의 문제로 확대되었고, 이후에는 시카고 상업거래소의 의장으로 일하게 된다.

기업재무론은 민간기업의 투자와 재무결정에 관한 연구분야이지만 195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실무와 재무제도에 관한 기술에 그치고 있었다. 기업재무론이 자본시장에 관한 이론과 결합된 것은 1950년대 후반의 일이었다. 모델리아니와 밀러에 의해 1958년에 공동으로 발표된 「자본비용, 기업재무 및 투자이론」이 기업재무론의 새로운 체계를 확립해 놓았던 것이다.

이 논문에서 제시된 유명한 모델리아니-밀러정리는 기업의 재무구조는 기업가치와 무관련(無關聯)되어 있다는 것으로서 혼히 ‘파이(pie)’의 가치는 그것을 어떻게 자르든지 상관없다는 말로 표현된다. 그러나 모델리아니-밀러정리가 당시 기업경영의 실무자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 후 많은 연구를 통해 기업재무론은 보다 현실적이고 풍부한 내용을 갖추게 되었으며, 한편으로는 모델리아니-밀러정리에 대해 수정을 가해지기도 하였다.

2. 학문적 업적

밀러와 공동으로 노벨상을 수상한 마코위츠와 샤프는 모두 현대재무론의 개척자들이다. 이들의 연구는 오늘날 재무이론의 기본체계를 이루고 있는데, 마코위츠의 포트폴리오이론과 샤프의 CAPM, 밀러의 자본구조이론이 모두 그려하다.

이 중에서 밀러의 주요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1950년대까지만 해도 실무와 재무제도에 관한 기술에 그치고 있었던 기업재무론을 학문적 체계로서 확립시키고, 특히 이를 자본시장에 관한 이론과 결합시켰다는 것이다.

밀러의 가장 중요한 학문적 공헌은 밀러 이전에 이미 노벨상을 수상한 바 있는 모델리아니

와 공동연구에 의해 확립된 모델리아니-밀러정리로 집약된다. 이 정리는 자본시장이론과 기업의 재무를 결합시킨 이론적 공로를 남기고 있으며 오늘날 기업의 자본구조에 관한 이론들이 이 출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재무이론에서 꼴격을 이루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가 최적자본 구조에 관한 연구이다. 재무이론에서 말하는 기업의 자본구조란 자기자본과 장기타인자본의 구성비율을 의미하는데, 이 때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자본구조를 최적자본구조라고 한다. 따라서 어느 수준의 부채-자기자본 비율에서 최적자본 구조가 달성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 분야에 있어서의 관심사가 된다.

이 문제에 관한 모델리아니와 밀러 이전의 전통적인 견해는 대체로 다음과 같았다. 어느 정도까지의 타인자본의 이용은 기업의 가치를 증가시키지만 그 정도를 초과한 타인자본의 이용은 기업의 가치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1958년에 모델리아니와 밀러에 의해 공동으로 발표된 「자본비용, 기업체무, 그리고 투자이론」은 기업의 법인세가 고려되지 않은 완전자본시장의 가정 하에서 기업의 가치는 그 자본구조와 무관하며, 따라서 최적자본 구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론적인 증명을 제시하였다. 이는 이후 기업체무론의 연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모델리아니-밀러의 무관련이론(無關聯理論)으로 체계화되었다.

무관련이론이라는 명칭은 기업의 가치가 기업의 자본구조와는 독립적이라는 내용에 의해 이해될 수 있는데 이 이론이 취하고 있는 가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완전자본시장 가정이다. 즉, 거래비용이 존재하지 않고 모든 증권들은 무한히 분할될 수 있으며 나아가 투자자들이 정보를 수집하는 데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모든 기업들이 그들의 경험위험에 따라 동질적인 위험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다.

셋째, 모든 투자자들은 동질적인 기대를 가지며 기업의 성장은 없기 때문에 해마다 벌어들이는 기대순영업이익은 동일하며 영속적이라는 가정이다.

넷째, 기업들은 무위험부채와 위험있는 자기자본의 두 가지를 이용한다.

다섯째, 모든 개인은 무위험이자율로 차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시장가치는 순영업이익의 기대치를 그 기업이 속하는 위험집단의 수준에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할인율로 할인함으로써 계산된다. 따라서 기업이 부채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자기자본으로만 구성되었을 경우에나 타인자본으로 구성되었을 경우에나 순영업이익이 같다면 기업의 가치는 서로 동일하다는 것이다.

모델리아니-밀러정리의 첫번째 내용은 “기업의 총시장가치는 기업의 자본구조와는 무관하다”는 것이었다. 즉 기업의 가치는 그 기업이 벌어들이는 순영업이익을 그 기업이 속하는 위험수준에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할인율로 할인함으로써 결정되는 것이지 그 기업의 자본구

조에 따라 결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V = \frac{EBIT}{k_0}$$

V : 기업가치

$EBIT$: 순영업이익

k_0 : 가중평균자본 비용

모딜리아니-밀러정리의 두번째 내용은 “타인자본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의 자기자본 비용은 그 기업과 동일한 위험집단에 속하며 타인자본을 전혀 이용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자기자본 비용과 타인자본의 이용에 따른 위험프리미엄을 합한 것과 같다”는 것이었다. 즉, 기업이 타인자본을 증가시킴에 따라 자기자본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부채-자기자본 비율과 완전히 비례적임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비교적 저렴한 타인자본 사용의 이점은 자기자본 비용의 증대로 인하여 완전히 상쇄됨으로써 기업의 가중평균 자기자본 비용은 일정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가치는 자본구조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k_{SL} = k_{SU} + Risk\ Premium = k_{SU} + (k_{SU} - K_d) \left(\frac{D}{S} \right)$$

k_{SL} : 타인자본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의 자기자본 비용

k_{SU} : 타인자본을 이용하지 않는 기업의 자기자본 비용

k_d : 부채의 자본 비용

D : 채권의 시장가치

S : 보통주의 시장가치

모딜리아니-밀러정리의 세번째 내용은 기업의 자본구조를 투자결정과 연관시키고 있다. 즉 “기업의 새로운 투자안(投資案)에 대한 거부율은 기업의 가중평균 자본비용 혹은 자기자본만을 이용하는 기업의 자기자본 비용과 같아야 하며, 이는 그 기업의 자기자본 구조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는 것이다. 이는 기업의 투자결정이 그 투자안으로부터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률이 그 투자안에 대한 거부율보다 클 때에만 채택되어야 하며 이러한 투자안에 대한 거부율은 기업의 자본구조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IRR \geq k_d = k_{SU}$$

모딜리아니-밀러의 논문은 그것이 취하고 있는 가정과 접근방법 때문에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볼 때 모딜리아니-밀러의 논문이 획기적인 전환점을 이룩해 놓은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들은 기업이 합리적인 증권시장과 상호작용 하면서 기업의 시장가치를 극대화하도록 행동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한 첫번째 인물들이었으며, 기업재무의 분석과 투자자 개인의 포트폴리오선택을 결합시킨 최초의 인물이기도 하였다. 이들의 결론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기업이 시장가치를 극대화하도록 행동할 뿐이며 자금조달에 있어서 주식과 채권에 대한 투자자의 선호 혹은 위험기피도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세가 없다는 가정 등은 모딜리아니-밀러정리의 가장 큰 결함이었으며, 이 문제에 관해 계속 모딜리아니와 밀러의 연구가 발표되었다. 1963년에 발표된 「조세와 자본비용 : 수정」과 1969년에 발표된 「하인즈와 스프렌클에 대한 답변」의 두 논문에서 법인세가 존재하는 경우 모딜리아니-밀러정리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보였다.

미국의 경우 법인소득은 두 번에 걸쳐 부과된다. 우선 기업에 부과되며 다시 주식소유자에 부과된다. 그러나 채권을 발행한 경우 기업이 지급하는 이자는 비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 번만 부과될 뿐이다. 따라서 모딜리아니-밀러정리는 조세가 존재하거나 혹은 자본시장이 불완전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밀러 그 자신이 표현한 대로 “무엇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는 것은 무엇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밝힐 수 있도록 해준다”는 말은 모딜리아니-밀러정리의 진정한 가치를 명확히 표현해 주고 있다.

밀러의 연구는 완전한 자본시장과 상호작용하는 기업이 시장가치를 극대화하도록 행동한다는 점에 입각해서 기업의 자금조달과 실물투자 행위를 분석한 개척적인 것으로서 이후 많은 기업재무이론이 발전될 수 있는 출발점을 제공하였다.

1976년에 발표된 「부채와 조세」라는 논문에서 밀러는 개인소득세가 고려될 경우 기업의 자본구조가 기업가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사채시장 균형이론을 제시함으로써 다시 한번 기업의 자본구조와 기업의 가치가 관련이 없다는 것을 보였다. 밀러의 이러한 결론은 기업이 타인자본을 이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법인세 감세효과(tax shield effect)가 개인소득세의 구조에 의해 완전히 상쇄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V_L = V_U + \left[1 - \frac{(1-T_c)(1-T_d)}{(1-T_s)} \right] \cdot D$$

V_L : 타인자본을 이용하는 기업의 시장가치

V_U : 타인자본을 이용하는 않는 기업의 시장가치

T_c : 법인세율

T_d : 주식투자와 관련된 개인소득세율

T_s : 채권투자와 관련된 개인소득세율

이와 같은 자본구조의 무관련이론은 밀러가 제시한 지렛대 고객효과(leveraged clientele effect)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요컨대 각기 다른 세율구조를 가진 투자자들은 그들의 선호와 일치하는 부채수준을 가진 기업을 선택한다는 것이었다. 즉 낮은 부채비율을 가진 기업들은 낮은 세율구조를 가진 투자자들에 의하여 선호되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는 기업의 자본구조와 독립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밀러의 이 논문에 대해서도 그것이 취하고 있는 가정 때문에 많은 논쟁들이 전개되었다. 이후의 연구는 조세가 존재하고 각종 비용이 존재하는 불완전한 시장의 경우 자본구조가 실제로 문제가 된다는 점을 설명하려는 것이었지만, 밀러는 이미 기업재무의 결정에서 자본구조의 관련성을 어디에서 고려하고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를 이미 밝히고 있다. 밀러와 모딜리아니의 연구 이후 기업재무론에서의 초점은 조세와 각종 비용의 도입, 정보의 비대칭성, 제도의 문제로 확장되어 갔다.

밀러의 관심은 기업재무에 국한되었던 것만은 아니었다. 그 자신이 시카고 무역위원회의 의장을 역임하기도 했던 경력이 말해주듯이 그는 금융산업, 특히 증권과 옵션거래에 대해서도 연구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이러한 그의 관심은 리스산업에 관한 연구, 자연자원 평가와 기업의 화폐수요, 자산가격의 활성도(volatility), 시장의 미시적 구조 등에 관한 다수의 연구로 발표되었다.

3. 밀러와 한국경제

밀러와 함께 노벨상을 수상한 마코위츠, 샤프는 모두 재무이론과 금융경제학의 개척자들이다. 이들이 노벨상을 수상하였다는 것은 그들의 학문적 업적이 탁월하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금융시장과 금융경제학이 경제전체와 학문분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국의 금융시장은 지금도 크게 낙후되어 있다. 금융부문이란 본래 실물부문과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한국의 경우에는 과거 수십년 동안 실물부문에서는 급속한 성장을 이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부문이 낙후되어 있다는 것은 경제구조의 효율성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장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지난 10여년간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금융자유화의 시각에서 볼 때 밀러 등의 학문적 업적은 비상한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물론 밀러의 학문적 업적은 경영학의 한 분야인 재무이론에 집중되어 있고 따라서 미시경제학의 태두리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거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어느 정도의 용용이 가능할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밀러의 재무이론은 기업의 재무행위를 자본시장과의 관련 속에서 분석함으로서 규범적인

의의와 실증적인 의의를 모두 지니고 있는 것으로 윌리엄 샤프는 평가하였다. 따라서 그의 연구는 기업의 실물활동과 금융시장의 상호작용을 분석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역으로 금융산업의 올바른 방향도 제시하여 줄 수 있다고 본다.

이제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을 보다 면밀하게 연구하여 그 발전방향을 미시적으로 검토하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종합함으로써 금융자유화의 올바른 방향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밀러의 연구는 단순히 학문적 가치를 넘어 한국경제의 실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V. 샤프(William F. Sharpe 1934~)의 생애와 자본자산가격결정이론

1. 생애와 개관

윌리엄 샤프는 1934년 메사추세츠주의 보스턴에서 태어났지만 고교시절 캘리포니아에서 보냈으며 대학시절도 처음에는 버클리대학에서 의학을 전공할 계획이었다. 1학년의 교양과정 동안 샤프는 자신의 길이 다른 곳에 있음을 알게 되었고 곧바로 UCLA의 경영대학으로 옮겼다. UCLA의 첫 학기동안 배웠던 미시경제학이 그에게는 마치 환희와 같았다고 훗날 그는 술회하고 있다. 석사학위까지 UCLA에서 마친 샤프는 군복무를 거쳐 1956년에는 RAND 연구소에서 경제학자로 활동하였고 1961년에는 역시 UCLA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RAND 시절 샤프는 당시 RAND에서 활동하고 있던 해리 마코위츠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의 박사학위 주제는 '중권간 관계의 단순모델에 의한 포트폴리오 분석'이었고, 샤프는 이미 이 논문에서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과 유사한 결론을 제시하기도 했다.

1961년에는 워싱턴대학의 교수가 되었으며 몇 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1964년에는 CAPM에 대한 최초 논문이었던 「자본자산가격－위험조건하에서의 시장균형의 이론」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1976~1977년에는 NBER에서 연구하였으며 1980년에는 미국금융학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1983년에는 스텐포드대학에 자리를 옮겼으며, 이 시기에 제네바의 국제경영연구소, 런던대학원에서의 활동도 병행하였고, 특히 일본의 노무라 고급경영대학에서 강의하기도 하였다. 1986년에는 연구와 실무를 목표로 '샤프－러셀 연구'라는 회사를 설립·운영하였고 1989년에는 스텐포드로 돌아와 명예교수로 재직하게 된다.

샤프의 가장 중요한 연구업적은 현대재무이론의 교과서라 할 수 있는 CAPM과 자산선택 이론, 자산운용의 평가와 측정에 관한 것이다. 이는 그가 CAPM 연구에서 밝히고 있듯이 현

대 포트폴리오이론의 아버지라 불리는 해리 마코위츠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이며, 이후 린트너, 모신 등의 연구에 의해서 더욱더 발전되어 오늘날 하나의 방대한 분야를 이루게 되었다. 특히 그의 연구업적은 이론적인 영역에만 머물지 않고 투자와 자산운용에 대한 실무적인 적용의 수준에까지 이르렀으며 오히려 현실을 관찰하는 실무자들에게 행위의 지침을 제시하는 선도적 역할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다.

그의 이론적 업적은 이외에도 1970년대 이래 중요한 금융상품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옵션(option)에 대한 연구로 이항적 옵션가격결정모델(binomial option pricing model) 등이 있으며 현대재무이론에 관한 다수의 연구 업적을 남기고 있다.

2. 학문적 업적

노벨상을 공동 수상한 마코위츠, 밀러, 샤프는 1950년대 이후 금융시장의 발달이라는 역사적 상황과 결부되어 현대재무론을 창안하고 개척한 개척자들이다.

이들의 연구는 오늘날 현대재무론의 체계화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CAPM의地位는 엄청나다. 마치 현대재무론이 CAPM인 듯한 인상을 줄 정도이다. 따라서 이들의 연구는 세부적인 재무이론에 관한 언급만으로는 부족하고 오히려 재무이론, 금융경제학 전체에 관한 업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샤프는 금융경제학이 두 가지 이론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한다. 규범적(normative) 이론과 실증적(positive) 이론이 그것이다. 샤프에 따르면 마코위츠의 평균-분산 포트폴리오이론은 최적포트폴리오의 선택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규범적인 이론에 속한다고 보았다.

한편 CAPM은 경쟁시장에서 자산가격이 결정되는 원리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실증적인 이론이라고 보았다. 샤프에 의해서 규범적이면서 실증적인 이론으로 간주되었던 것은 모딜리아니-밀러의 이론이었다. 모딜리아니-밀러정리는 증권가격이 결정되는 자본시장에 직면하고 있는 법인의 최적행위를 다루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현대재무이론의 교과서로 지칭되는 CAPM이 처음 발표된 것은 1964년의 일이다. 샤프에 의해서 「자본자산가격-위험조건하에서의 시장균형의 이론」이 발표되면서 곧이어 린트너(J. Lintner)와 모신(J. Mossin) 등이 CAPM에 관한 논문들을 발표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CAPM 연구는 방법론적으로 더욱 세련되고 이론적으로 더욱 더 풍부해졌다.

CAPM은 간단히 말하면 예상수익률과 위험의 균형관계에 관한 이론이라 할 수 있다. 즉 어떤 위험자산의 위험프리미엄(즉 무위험이자율을 초과하는 예상수익률의 크기)은 그 자산의 베타(beta)에 비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험자산의 베타란 개념이 CAPM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어떤 자산의 베타는 시장 전체의 수익률 변화에 대한 자산 수익률의 반응도를 나타내는 측정치이고 실제적으로는 그 자산의 수익률을 분산투자한 시장전체의 수익률에 대해 회귀분석한 계수로서 측정된다.

CAPM의 주요한 결론은 어떤 자산의 위험프리미엄이 그 자산의 베타에 비례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여기에서 위험프리미엄과 베타의 선형관계를 나타내는 방정식이 도출될 수 있는데 이를 증권 시장선(security market line)이라고 한다.

$$R_i = R_F + [R_m - R_F] \cdot \beta$$

R_i : 개별증권 i의 수익률

R_m : 시장수익률

R_F : 무위험자산수익률

β : 개별증권 i의 체계적 위험 ($= \frac{COV(R_i, R_m)}{\sigma_m^2}$)

사프의 CAPM이론은 그 자신도 술회하고 있듯이 마코위츠의 평균-분산 이론과 제임스 토빈의 '유동성 선호이론'을 계승하여 발전시킨 것이다. 그의 이론이 가지는 주요한 이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분리(separation)정리를 들 수 있다. 이 정리는 개인이 위험자산과 무위험자산간의 비율을 선택하는 과정과 위험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는 과정이 분리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어떤 개인이 위험자산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선호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개인의 선호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개인의 부를 위험자산과 무위험자산간에 배분하는 데에만 국한한다.

둘째로 위험프리미엄과 체계적 위험(systematic risk)간의 관계는 시장포트폴리오가 분산에 대해 최고의 보수(return)를 갖도록 하는 조건으로부터 도출된다. 따라서 어떤 자산의 위험프리미엄은 그 자산의 베타(즉 분산투자를 통해서 해소될 수 없는 체계적 위험의 측정치)에 비례하게 된다.

CAPM의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는 테스트가 용이하다는 점과 실증적인 적용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초기의 연구는 미래의 수익과 베타의 관계, 위험프리미엄과 베타의 비례적 관계를 검증하는 데로 집중되었다. 이러한 실증연구는 CAPM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작업이기도 했지만 CAPM의 경험적인 적용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CAPM의 광범위한 용용의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주식투자이다. 즉, 오늘날 주식투자의 유용한 지침으로 특정 주식의 베타가 이용되고 있다. 베타는 그 주식의 미래의 가격을 예측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샤프의 이론이 재무이론의 발전과 더불어 기업금융, 투자, 포트폴리오 운용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로 연구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한 것은 CAPM의 광범위한 응용가능성 때문이다. CAPM의 중요한 적용례 중의 하나는 정부에 의해 규제되는 독점의 서비스가격을 책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CAPM에 의하면 사업의 위험에 따른 자본비용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투자의 적절한 유인을 사전에 계산할 수 있다. 공공투자에 따른 수익이 너무 높으면 과잉 투자가 초래될 것이고 수익이 너무 낮으면 과소투자가 초래될 것이기 때문에 공공투자의 적절한 유인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은 정부정책 수행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이후 샤프의 연구는 CAPM에서 시작된 재무이론의 제문제로 심화되었다. 1966년에 발표된 논문, 「상호기금 운용」에서는 정보(information)의 발표가 주식가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이 논문은 금융시장에서 정보전파의 효율성을 분석하는 길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샤프의 논문, 「상호기금 운용」은 기관투자가들의 행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 논문의 중요한 결정 중의 하나는 포트폴리오운용의 성과가 포트폴리오 거래와 관련된 거래비용과 반비례한다는 점을 보인 것이다. 이러한 샤프의 결론은 연금기금이나 상호기금 등의 기관투자가들이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는 수동적 포트폴리오 원리를 따르도록 만들었다.

샤프의 연구는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실적인 경제활동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었다. 학문과 이론이 응용될 수 있다는 것은 이론의 가치를 한층 더 높여 주는 것이다. 현실용용의 가능성은 경제학의 다른 분야에 비해 금융경제학과 재무이론분야에서 더욱 뚜렷하다.

샤프는 대부분의 과학이 그러하듯이 경제학도 현실을 분석할 뿐만 아니라 현실을 변화시키기도 한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경제학에서 가장 현실변화의 성격을 많이 띠고 있는 영역이 금융경제학이었다. 금융의 실제활동이 금융경제학의 발전에 의해 근본적으로 영향을 받았으며 금융경제학은 금융수단, 시장과 제도의 혁신에 의해 크게 발전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측면은 앞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재무이론이 실증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규범적인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겠다. 재무이론이 현실에 의해서 자극 받았지만 오히려 재무이론이 실제 금융활동을 위한 기초를 제공한 대표적인 예로 주가지수선물거래와 옵션가격 결정모델을 들 수 있다.

1973년 아래 신종 금융상품으로 급부상한 옵션에 관한 최초의 이론적인 연구는 블랙-숄즈에 의해 이루어졌다. 블랙-숄즈의 모델이 옵션가격결정모델(OMP)의 정확한 이론인 것은 틀림없지만, 모델 자체가 복잡한 수학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옵션거래의 경제적 원리가 명확하게 파악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샤프에 의해 제시된 OPM은 이항적 옵션가격결정모델로서 기초적인 수학만을 이용하면서도 옵션가격결정의 기본 아이디어를 명확하게 보여 주었다. 샤프의 이항적 OPM은 이론적으

로 볼 때 복잡한 옵션가격의 효과적인 계산방법을 제시한 것이었으며 실제로도 옵션의 가치평가, 담보부증권, 이자율옵션과 통화스왑 등 금융기관의 종사자들에게 대단히 유용한 분석도구가 되었다.

옵션과 선물은 본래부터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한 유용한 금융상품으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옵션가격결정이론은 재무이론에서 또 하나의 영역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1980년대 이후 금융시장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가 파생금융상품(derivative)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다. 옵션가격결정모델은 파생상품의 분석을 위한 기본적인 분석도구로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가 자본시장의 효율성 증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3. 샤프와 한국경제

학문으로서의 재무이론이 성립된 것은 엄밀히 말하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이다. 전후 자본시장, 자산시장의 급속한 발전은 적절한 자금의 흐름을 유도함으로써 경제성장과 효율성 향상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이러한 현실을 분석하는 학문분야로서 재무이론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샤프도 지적하고 있듯이 재무이론과 금융경제학은 규범적인 측면과 실증적인 측면을 모두 지니고 있는 분야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샤프의 여러 가지 학문적 업적에 우선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그가 금융경제학의 양측면을 모두 강조하면서 결합하려고 했던 점이다.

이제 우리는 한국경제의 금융분야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할 국면에 놓여 있다. 흔히 우리나라 금융부문은 실물부문에 비해서 낙후되어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관치금융, 정책금융으로 인해서 한국의 금융은 자율성을 지니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발전에 상용하는 발전을 이루하지 못했다는 점도 된다.

금융자유화의 필요성이 1970년대 후반부터 제기되어 왔으나 그에 따른 노력이 별다른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고, 지난 10여년간 주장되었던 것과 대동소이한 금융자율화의 필요성이 반복되어 제기될 뿐이다. 이러한 현상은 금융낙후의 구조적 성격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금융자율화의 이론이 아직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샤프의 여러 연구업적들은 일정한 정도의 금융시장의 발달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또한 금융시장의 발달을 선도하기도 하였다. 물론 샤프의 이론은 금융산업이 경쟁시장하에 전개된 이론이기 때문에 한국경제에의 직접적인 적용은 쉬운 일은 아닐지 모른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금융자율화와 자본자유화의 문제를 금융산업의 발달을 촉진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접근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점에서 샤프의 생각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리라

생각된다. 샤프에 의해 연구된 재무이론과 금융경제학은 금융시장에 관한 미시적 연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거시적인 자율화의 논의를 보완하고 완성시킬 수 있으리라고 본다.

VI. 솔즈(Myron S. Scholes, 1941~)와 머튼(Robert C. Merton, 1944~)의 생애와 옵션가격결정모형

1. 생애와 개관

솔즈는 1941년에 캐나다의 온타리오에서 태어났으며, 현재는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그는 1961년에 캐나다에 있는 McMaster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았다. 1964년에는 시카고대학으로부터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1969년에 시카고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 후 그는 1981년에 스텐포드로 옮기기 전에 MIT과 시카고대학에서 강의를 하였다. 1983년부터 1996년까지 스텐포드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1996년에 Long-Term Capital Management, L. P.를 설립한 이후 퇴직하였다.

머튼은 1944년에 뉴욕에서 태어났다. 그는 1966년에 콜럼비아 대학 Engineering Mathematics과에서 학사학위를 받았으며, 1967년에는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로부터 응용수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70년에 MIT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1970년부터 73년까지 MIT의 Sloan경영대학의 조교수, 73년과 74년에는 부교수, 그 후 80년 까지 교수직을 역임하였으며, 198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하바드대학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머튼은 1982년부터 84년까지 그리고 87년과 88년에는 미국재무학회의 이사직을, 86년에는 회장직을 역임하였다. 그는 1989년에 동부재무학회로부터 올해의 학자(Distinguished Scholar Award)로 선정되었며, 83년에는 시카고대학으로부터 Leo Melamed상을 수여받았다. 이 밖에도 1993년에는 듀크대학으로부터 금융혁신과 관련된 공로를 인정받아 FORCE상을 수상하였으며, Financial Engineer협회로부터 올해의 Financial Engineer로 선정되었다. 1993년에는 국립과학협회의 회원으로 선출되었으며, 최근에는 Lausanne대학 및 Paris Dauphine대학으로부터 명예박사학위를 받았다.

머튼과 솔즈는 1995년에 작고한 블랙(Fischer Black)과 함께 옵션가격결정을 위한 공식을 개발하였다. 1973년에 블랙과 솔즈는 블랙-솔즈 공식으로 알려진 논문을 발표하였다. 수천명의 투자자들이나 trader들은 오늘날 전세계 시장에서 옵션을 평가하는데 이 공식을 이용하고 있다. 머튼은 자본시장과 금융기관에 있어서의 재무이론의 개발에 특히 관심이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자본자산가격결정, 옵션가격결정, 회사채 및 보증사채 가격결정, 기타 합성파생 상품들의 가격결정에 대한 논문들을 출판하였다. 이 밖에도 자본예산, 헤징 및 위험관리를 포

함한 금융기관들의 운영 및 규제에 대한 논문들도 기술하였다.

이러한 블랙, 머튼 그리고 솔즈의 연구들은 최근 10년간 파생금융상품 시장의 빠른 성장의 기틀을 구축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방법은 재무관리 학계 뿐만 아니라 그 외에서도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였다. 즉, 그들의 방법론은 많은 분야에서의 경제적 평가를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금융기관의 새로운 형태를 나았으며, 효율적인 위험관리에 보다 많이 활용되었다. 이러한 그들의 연구업적이 높이 평가되어서 1997년에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2. 학문적 업적

옵션의 가치를 평가하려는 시도는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그 최초의 시도는 1900년에 Louis Bachelier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나, 그의 시도는 금리가 0%, 그리고 옴의 주가라는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가정에 기초한 것이었다. 그 후 블랙-솔즈모형에 가까운 것으로 1964년의 Boness모형을 들 수 있으나, 이 모형은 여전히 미지의 금리에 의존하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 밖에도 1973년 이전에 만기일에 있어서의 옵션의 기대가치를 결정하고 그리고 나서 이를 다시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여 할인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옵션의 가치는 평가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주가의 움직임에 의존한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프리미엄은 선형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이는 주가 변화 위험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의 위험에 대한 태도도 반영하기 때문이다. 1973년 이전의 모형들은 이러한 옵션가치의 변화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1973년에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하나의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그것이 블랙·솔즈모형으로 유명한 논문이다. 그들은 같은 해에 모튼의 협력하에서 보다 다양하게 확장된 공식을 포함하고 있는 또 하나의 논문을 발표하게 된다.

블랙과 솔즈는 옵션과 주식으로 결합된 무위험 헤지포트폴리오에서 얻어지는 수익은 균형 상태에서 무위험이자율과 동일할 것인가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블랙과 솔즈는 이러한 개념과 몇 가지 제약식을 결합해 특정한 옵션가격결정모형을 유도하였다.

블랙-솔즈의 기본적인 가정은 다음과 같다.

- ① 거래비용과 세금이 없으며, 공매(short sale)에 제약이 없다.
- ② 무위험이자율은 옵션의 만기일 내에 일정하다.
- ③ 기초자산인 주식은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④ 주식거래는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며, 주가는 연속적인 Ito process를 따른다.
- ⑤ 유러피언 콜옵션을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가정하에서 블랙-솔즈는 다음과 같은 콜옵션의 가격결정식을 유도하였다.

$$C = S \cdot N(d_1) - e^{-r_f T} \cdot N(d_2)$$

$$\text{여기서 } d_1 = \frac{\ln(\frac{S}{E}) + (\gamma_f - \frac{\sigma^2}{2})T}{\sigma\sqrt{T}}$$

$$d_2: d_1 - \sigma\sqrt{T}$$

S : 기초자산의 가격

E : 행사가격

γ_f : 무위험이자율

T : 옵션잔존기간

σ : 기초자산수익률의 표준편차

$N(d)$: d 보다 작을 표준정규분포의 확률값

위 식에서 옵션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인은 γ_f , T , E , S , σ 의 5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변수들과 옵션의 가치를 함수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C = (S, E, T, \gamma_f, \sigma^2)$$

$$+, -, +, +, +$$

즉, 주가가 상승할수록, 행사가격이 낮을수록, 만기까지의 기간이 길수록, 이자율이 높을수록, 주가수익률의 분산이 클수록 옵션의 가치는 증가한다. 그런데, 이 공식을 현실적으로 적용하는데 있어서 이 중 γ_f , T , E , S , σ 에 관한 정보는 쉽게 얻을 수 있으나, σ 는 직접 관찰할 수 없으므로 추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변동성을 추정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첫째, 역사적 변동성이 미래 변동성의 정확한 추정치라고 가정하고 수익률 자연로그의 표준편차, $\hat{\sigma}$ 로서 단순히 미래변동성을 구한다.

둘째, 옵션표를 통해 옵션의 시장가치를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머지 4개 변수로 옵션의 내지된 변동성을 추정한다. 그리고 추정된 옵션의 내재변동성과 이의 추정에 사용된 다른 4개의 변수로 이론적으로 추정된 옵션가치를 구한다.

위에서 살펴 보았듯이 제한적인 가정이 옵션가격결정식을 유도하는데 사용되었으며, 따라서 가정의 완화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다. 그 한 예로 머튼의 1973년 연구가 있다. 옵션소유자는 주식수익률의 자본이득에 대해서만 청구권을 갖게 되므로 옵션기간 종의 높은 배당은 콜옵션의 가치를 하락시키게 된다. 그런데 위의 가정에서는 주식에 대해서 배당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는데 머튼은 배당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배당수익률이 일정할 때의 유러피언 콜옵션가치를 결정하는 공식을 다음과 같이 구하였다.

$$C = e^{-\frac{(\rho-\eta)}{S}T} S * N(d_1) - e^{-\eta \cdot T} \cdot N(d_2)$$

이 밖에도 머튼은 주가의 움직임이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불연속적인 점프형태로 움직일 때 옵션가격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였다. 머튼은 이러한 가격움직임을 갖는 경우 무위험 헤지포트플리오를 형성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점프움직임이 주가 간의 상관성을 갖지 않을 때에는 점프위험은 비체계적인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 경우에 점프위험은 분산가능하며, 주식의 기대수익은 단지 분불능위험에 의해 결정된다. 만약 점프움직임이 로그노말분포를 하면, 그 때 옵션가격은 점프수의 제약을 받는 블랙-숄즈의 모형의 가중평균이 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이처럼 머튼은 블랙-숄즈 모형을 일반화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3. 숀즈·머튼과 한국경제

현대 시장경제에 있어서 위험관리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금융시장은 기업과 가계들로 하여금 위험을 다른 대리인들에게 재분포시킴으로써, 그들의 거래에 있어서 적정한 위험수준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옵션이나 선물 및 기타 파생금융상품들의 시장은 특별한 상황을 가지고 있다. 선물은 대리인들로 하여금 위험을 해징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선물계약은 특정 상품을 특정가격에 인수도할 것을 약정한다. 예컨대, 옥수수가격에 있어서의 미래 변화에 따른 위험을 선물계약의 구매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지금과 같은 금융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볼 때, US 달러로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많은 국내의 수출입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통화옵션시장에서 달러에 대한 콜옵션을 매입함으로써 미래의 원화평가 절상에 따른 손실을 피할 수 있다.

블랙, 머튼 및 숀즈는 파생금융상품의 가치결정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개발함으로써 경제학에 있어서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냈다. 1970년대 초의 혁신적인 그들의 연구 성과는 현재 금융위험들을 다루는데 있어서 이론적으로도 그리고 실무상으로도 전혀 새로운 획기적인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들의 방법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에서 파생금융 상품의 거래를 시작한 후 20여년이 지난 지금 파생금융상품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이들의 성과는 1996년 5월 3일에 주가지수선물시장을, 1997년 7월 7일에는 주가지수옵션시장을 개장한 한국의 파생상품시장의 발전에 그 초석이 될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심각한 금융위기에 처해 있는 현상황을 타개하는데 있어서도 하나의 지침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그들의 연구가 기반이 될 것임이 확실시 된다.

VII. 결 론

재무관리 이론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획기적인 선을 그은 것으로 마코위츠의 포트폴리오선택이론을 출발점으로 한 자본자산가격결정이론의 발전과 자본구조와 관련된 밀러-모딜리아니의 정리를 들 수 있다.

모딜리아니의 학문적 업적들은 다음 2가지의 주요 이론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 첫번째 이론은 개인들은 일생을 통해서 소득이 가장 높을 때 금융증권에 투자하기 위하여 저축을 한다는 개인측면에서의 재무이론이다. 두번째는 기업의 시장가치는 대차대조표를 구성하고 있는 부채, 즉 타인자본과 자기자본이 어떤 비율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상관없이 결정된다는 기업 재무이론이다. 이 이론들은 재무관리 및 금융경제 분야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많은 이 분야의 연구들의 토대를 제공한다. 이러한 그의 학문적 업적이 인정받아 1985년에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게 된 것이다.

마코위츠는 1952년에 발표한 「포트폴리오 선택」이라는 논문을 통하여 각각 다른 정도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자산의 결합, 예컨대 다양한 산업의 주식집합 중에서 효율적인 선택에 관한 이론을 연구하였다. 이후 포트폴리오 선택이론의 개발과 관련된 연구들을 계속 진행해 왔는데, 이와 관련된 많은 논문들 중에서 1971년에 재출판된 「포트폴리오선택」과 1990년의 「포트폴리오선택과 자본시장에 있어서의 평균-분산 분석」이 두 논문이 1990년에 마코위츠가 밀러, 샤프와 함께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수상하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한편 밀러는 모딜리아니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자본구조 무관련이론을 체계화시켰다. 그는 이 밖에도 기업의 절대적인 가치를 파악하는 다른 연구방법을 개발하였다. 즉, 밀러는 기업들이 이 기업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배당이라는 형태로써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것 대신에 수익성이 있는 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기업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밀러의 기업재무이론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기여가 높이 평가받아 1990년에 노벨 경제학을 수상하였다.

마코위츠, 밀러와 함께 1990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샤프 역시 재무관리 분야에 있어서 위대한 학문적 업적을 이루어낸 인물이다. 샤프는 「자본자산가격결정이론」이라고 칭해지고 있는 금융자산에 대한 가격형성 이론에 대해 많은 기여를 하였다. 샤프는 “1964년에 내려진 결론의 근본은 높은 시장위험을 가지고 있는 주식들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이다. 불황기에 항공운항노선이 가지는 위험처럼 금융자산에 내포되어 있는 위험은 위험이 낮은 주식 보다는

장기적인 운영을 통해 보다 많은 수익을 올리려는 투자자들에 의해서 예측되어진다”고 말하였다. 이는 그가 재시한 이론을 적절하게 표현해 주고 있다. 샤프는 또한 주식이 안고 있는 위험요인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배타계수를 제시하였다.

머튼과 솔즈 그리고 고인이 된 블랙의 옵션가격결정에 대한 이론들은 많은 경제문제들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것이 되었다. 파생금융상품들은 소위 조건부청구권 (contingent claim)이라고 불리는 특수한 경우를 구성하며, 그 평가방법은 광범위한 계약들에 이용된다. 주식, 우선주, 대부 및 기타 채권들의 가치는 기초자산인 주식의 가격에 의존하는 옵션가치 평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그들의 업적을 인정받아 머튼과 솔즈는 1997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이들의 재무이론들은 금융시장의 자유화 및 개방화를 추진하고 있는 현 한국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모딜니아니와 마코위츠는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밀러와 샤프는 미시경제적인 측면에서 금융시장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이 밖에도 1997년에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머튼과 솔즈는 옵션가격결정모형을 통해 급성장하고 있는 파생금융상품의 가격결정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현재 한국의 금융시장을 거시적·미시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능케 함으로써 금융자유화 및 금융위기를 타개하는데 있어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Brigham E. F. & L. C. Gapenski, 「Intermediate Financial Management」, 4th edition, The Dryden Press, 1995.
- Ross S. A., R. W. Westerfield & J. Jaffe, 「Corporate Finance」, 4th edition, Irwin, 1996.
- Schlessinger B. & J. H. Schlessinger, 「The who's who of Novel Prize winners, 1901~1995」, The Oryx Press, 1996.
- Sharpe W. F., 「Investments」, 3th edition, Prentice-Hall, 1995.
- Van Horne, J. C. 「Fundamentals of Financial Management」, 3rd edition, Prentice-Hall, 1974.
- Internet
 :<http://nobelprizes.com/nobel/economics/>
 :<http://www.nobel.se/announcemnt-97/economy97/>

- :<http://www.hbs.edu/research/summaries/merton.html>
 :<http://www.n-jcenter.com/97/otc/15/nobel.htm>
 :<http://gsbadg.uchicago.edu/nobels.html>
7. 이건희, 「재무관리」, 학문사, 1996.
8. 이건희, 「현대투자론」, 대왕사, 1989.

〈부록 1〉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일람

연도	수상자	국적	수상 이유
1969	프리시 틴버겐	노르웨이 네덜란드	경제과정 분석을 위한 동태적 모형의 개발·옹용
1970	새뮤얼슨	영국	정태적·동태적 경제 이론의 발전과 경제 분석 수준의 향상
1971	쿠즈네츠	미국(러시아)	경제성장의 실증분석을 통해, 경제·사회 구조와 발전 과정에 대한 새로운 통찰의 길을 개척
1972	헉스 애로우	영국 미국	일반 균형 이론과 후생경제학에 대한 선구적 공헌
1973	레온티에프	미국(러시아)	산업 연관 분석(투입산출분석)의 개발과 경제 문제에 대한 응용
1974	미르달 하이에크	스웨덴 영국(오스트리아)	화폐와 경기변동이론과 경제·사회의 제도분석에 대한 선구적 공헌
1975	칸토로비치 쿠프만스	러시아 영국(네덜란드)	자원의 최적분배 이론에 대한 공헌
1976	프리드만	미국	소비분석, 화폐의 역사, 이론에서의 업적과 안정정책의 복잡성을 입증
1977	올린 미드	스웨덴 영국	국제무역·국제자본 이동 이론에 대한 선구적 공헌
1978	사이먼	미국	경제조직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선구적 연구
1979	슬초 루이스	미국 영국(세인트루시아)	개발도상국 문제의 고찰을 통한 경제발전에 대한 선구적 연구
1980	클라인	미국	계량 경제 모형의 개발과 경제변동, 정책 분석에 응용

연 도	수상자	국 적	수 상 이 유
1981	토빈	미국	금융시장, 그리고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관계를 분석
1982	스티글러	미국	산업구조, 시장기능, 공적 규제의 원인과 효과에 관한 독창적 연구
1983	드브뢰	미국(프랑스)	경제이론에 대한 새로운 수학적 기법의 도입과 일반균형이론의 엄밀한 재구축
1984	스론	영국	새로운 국민경제계산체계(신SNA)개발에 공헌
1985	모델리아니	미국(이탈리아)	저축과 금융시장에 관한 선구적 분석
1986	류개년	미국	민주주의 제도가 경제정책에 끼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는 공공선택 이론을 확립
1987	솔러	미국	경제성장 이론에 공헌
1988	알레	프랑스	시장과 자원의 유효이용에 대한 이론에 대한 선구적 공헌
1989	하멜모	노르웨이	계량 경제학의 확률론적 기초에 대한 해명 등
1990	마코위츠 밀러 샤프	미국 미국 미국	금융·기업금융 이론에 대한 선구적 공헌 기업자본구조이론에 대한 선구적 공헌 및 확장 자본자산가격결정이론에 대한 선구적인 기여
1991	코즈	영국	경제에서 거래비용이나 소유권의 중요성을 해명
1992	베커	미국	미시 경제분석을 인간의 행동양식 등 비시장분야까지 확장
1993	포겔 노스	미국 미국	경제사 분야에 이론·계량 경제학을 응용 경제적 및 기구변동 해결을 위한 경제이론 및 계량방법 적용을 위한 경제사적 연구
1994	Nash Selten & Harsanyi	미국 독일 헝가리	비협동게임이론에서의 균형분석에 관한 선구적 연구
1996	루카스	미국	합리적 기대가설, 거시경제적 분석 전환, 경제정책이해의 심화발전 및 적용
1996	Vickrey & Mirrless	미국 영국	비대칭정보하의 경제적 인센티브이론에 대한 기초적 이론
1997	숄즈 & 머튼	미국	옵션가격결정모형 개발

〈부록 2〉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인적 명세서

1. Franco Modigliani

1) 수상사유

다음 2가지의 주요 이론에 대한 학문적 업적

첫째, 私的 財務論(personal finance)의 측면에서 개인이 생애에 걸쳐서 재무적 안정을 허락할 만큼 수익이 가장 높은 때에 저축을 한다는 이론.

둘째, 기업의 시장가치는 대차대조표에 있는 주식 또는 사채의 분배에 의해서는 변경되지 않는다는 기업재무이론.

2) 주요 저서

(1) *The Collected Papers of Franco Modigliani*. 3 Volumes, Cambridge, MA : MIT Press, 1980

(2) *The Debate over Stabilization Policies, Lectures and Other Macroeconomic Issues*, Cambridge : Cambridge Univ Press, 1986

3) 인적사항

(1) 수상 : 1985년 노벨경제학상

(2) 생년월일 : 1918. 6. 18 출생. Rome, Italy

(3) 부모 : Enrico Modigliani(부), Olga Flaschel Modigliani(모)

(4) 국적 : 이태리, 후에 미국시민권 취득

(5) 종교 : Jewish

(6) 교육 : Univ of Rome, Italy, Law Degree, 1939

New School for Social Research, NY. Ph. D. 1944,

(7) 배우자 : Serena Calabi 1939 결혼

(8) 자녀 : Andre(장남), Sergio(차남)

(9) 경력 : 교수, New Jersey College for Women, 1942

교수, Bard College N. Y., 1942-44

교수, New School for Social Research, N. Y., 1945-48

교수, Univ of Illinois, 1949-52

교수, Carnegie-Mellon Univ. PA, 1952~1960

교수, North western Univ. IL, 1960~62

교수,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1962~1988

2. Harry M. Markowitz

1) 수상사유

“포트폴리오 선택이론”의 발전

2) 주요저서

(1) Portfolio Selection, New Haven CT : Yale Univ. Press, 1971 reprint.

(2) Mean Variance Analysis in Portfolio Choice and Capital Markets New York :
Basil Blackwell, 1990

3) 인적사항

(1) 수상 : 1990 경제학 노벨상 수상

(2) 생년월일 : 1927. 8. 24 출생. Chicago, IL

(3) 부모 : Morris Morkowitz(부), Mildred Gruber Markowitz(모)

(4) 국적 : 미국

(5) 종교 : 기록 없음.

(6) 교육 : Univ. of Chicago, IL. Ph. B., 13, 1947

Univ. of Chicago, IL. MA

Univ. of Chicago IL. Ph. D., 1954

(7) 배우자 : Babara Gay

결혼(기록일자 없음)

(8) 자녀 : 2 자녀

(9) 경력 : 연구원, Rand Corporation CA, 1952~63

연구원, Consolidated Analysis Centers, CA. 1963~68

교수, Univ of California, Los Angeles, 1968~69

회장, Arbitrage Management 1972~74

연구원, IBM, New York, 1974~1983

교수, City Univ. New York, 1983~1993

3. Merton Howard Miller

1) 수상사유

기업재무론의 기본적 공헌. 즉, “기업의 절대적 가치(absolute value)”에 대한 설명을 자본구조와 배당정책 두 가지 상이한 방법으로 발전시킴.

2) 주요 저서

- (1) Theory of Finance, Hinsdale Illinois Dryden, 1972.
- (2) Macroeconomics : A Neoclassical Introduction, Chicago, IL. Univ of Chicago Press, 1986. reprint.

3) 인적사항

- (1) 수상 : 1990년 노벨상
- (2) 생년월일 : 1923. 5. 16. Boston MA
- (3) 부모 : Joel L. Miller(부), Sylvia F. Starr Miller(모)
- (4) 국적 : 미국
- (5) 종교 : Jewish
- (6) 교육 : Harvard Univ. BA., A. B, 1943
Johns Hopkins Univ. MD, Ph. D., 1952
- (7) 배우자 : Eleanor Miller 결혼(일자 불명), 1969 사망
Katherine 결혼(일자 불명)
- (8) 자녀 : 3자매
- (9) 경력 : 연구원, U.S Treasury Department, 1944~47
연구원, U.S Federal Reserve Board, 1947~49
Ph. D. Study 공부, 1949~1952
교수, London School of Economics, 1952
교수, Carnegie Institute of Technology PA, 1958~1961
교수, Univ. of Chicago, IL., 1961~

4. William F. Sharpe

1) 수상사유

자본자산가격결정 모형(Capital Asset Pricing Model)이라고 하는 금융자산을 위한 가

격형성에 대한 공헌

2) 인적사항

- (1) 수상 : 1990년 노벨 경제학
- (2) 생년월일 : 1934. 6. 16. Cambridge, MA
- (3) 부모 : Russel Thornley Sharpe(부), Evelyn Forsyth Jillson Maloy Sharpe(모)
- (4) 국적 : 미국
- (5) 종교 : 기록 없음.
- (6) 교육 : Univ. of California, Los Angeles, Ph. D., 1964
- (7) 배우자 : Roberta Ruth Branton(1954 결혼, 1986 이혼)
- (8) 자녀 : Jonathan Forsyth(아들), Deborah Ann(딸)
- (9) 경력 : 교수, Univ of Washington, 1964~1970
교수, Univ of California, Irvine, 1970
교수, Stanford Univ. CA, 1971~89
- (10) 현재 : William F. Sharpe Associates, 회장

5. Myron S. Scholes

1) 수상사유

파생상품(derivatives)의 가치결정에 대한 새로운 방법론

2) 주요저서

옵션 선물 및 파생상품증권

3) 인적사항

- (1) 수상 : 1997년 노벨 경제학
- (2) 생년월일 : 1941, 미국, California
- (3) 국적 : 미국
- (4) 교육 : 1969년 미국 시카고 대학, Ph. D.
- (5) 현재 :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수
(경영대학원 재무관리교수 및 후버연구소 책임연구원)

6. Robert C Merton

1) 수상사유

파생상품(derivatives)의 가치결정에 대한 새로운 방법론

2) 주요저서

옵션 선물 및 파생상품증권

3) 인적사항

- (1) 수상 : 1997년 노벨 경제학
- (2) 생년월일 : 1944, 미국 뉴욕시
- (3) 국적 : 미국
- (4) 교육 : 1970년 미국 MIT 경제학, Ph. D.
- (5) 현재 : 미국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원

海外進出路의 歷史的 特性에 관한 研究

金 新*

目 次

I. 問題의 提起	6. 십자군의 海外進出路
II. 海外進出의 動機	IV. 大發見時代의 海外進出路
III. 古代의 海外進出路	1. 트네상스時代의 海外進出
1. 古代의 海外進出路	2. 東方進出路
2. 아시리아인의 海外進出路	3. 西方進出路
3. 한노의 海外進出路	4. 世界一周進出路
4. 당대의 海外進出路	5. 北西進出路와 北東進出路
5. 실크로드와 貿易	V. 結 論

I. 問題의 提起

초기민족의 대부분은 필요에 의해서 여행을 했다. 먼 산 저편 자원이 풍부한 토지를, 혹은 수평선 저편에 좀더 기롭진 땅과 섬을 발견하고 싶어했다. 어떤 때는 자신들보다 강한, 근처에 있는 민족의 습격에 위협을 느껴 집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으면 안됐다. 또 어떤 때는 자기 자신들이 정복하기 위해서 먼 곳으로 떠났다¹⁾.

점차로 문명의 발달을 위해서 여행을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생겨났다. 인간은 그냥 살아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게 되었다. 필요한 물건이 집 주위에 없으면 어딘가 다른 곳으로 그 물건을 얻기 위해서 떠나게 되었다²⁾.

초기의 해외진출자들은 주로 물질주의자, 자기보존주의자, 침략자 그리고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이었다.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해외진출자들의 성격 중에 별개의 강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사람들은 모험을 좋아했다. 알지 못하는 땅에 대한 호기심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그들

* 麥熙大 教授

1) Anderson, J. R. L., *The Ulysses Factor: the Exploring Instinct in Man*(London, 1970), pp. 36-41.

2) Badger, G., *The Explorers of the Pacific*(Kenthurst, 1988), pp. 116-118.

의 기회주의와 여러 가지 동기 뒤에는 역사를 통해 해외진출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과 같은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욕망이 있었다. 그들은 새로운 지역에 발을 들여놓은 최초의 인간이 되고 싶었던 것이다³⁾.

고고학적인 증거는 원래 초기해외진출자들의 움직임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 재미있는 단서를 제시해 준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여행에 대해서 쓴 어떠한 기록도 남겨 놓지 않았다. 단지 문명의 발달이라고 쓴 최초의 기록만으로, 최초의 해외진출 여행과 그 여행을 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뒷받침 할 수 있을 뿐이다.

수메르인은 해외진출을 목적으로 바다로 나갔다고 알려진 최초의 민족 중의 하나다. 수메르인의 배는 페르시아만 수역을 항해해, 인도와 무역하기 위해서 아시아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여행을 시작하고 있었다.

이윽고 이집트도 외국에 탐험대를 보내기 시작했다. 이집트의 부(富)는, 수메르의 부와 같이 주로 농업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집트인은 원료의 대부분을 수입하지 않으면 안되었기 때문이었다. 이집트인은 일찍부터 지중해 동부지역에 대한 지리적 지식을 갖고 동쪽은 페르시아만, 남쪽은 나일강 상류지역까지 그들의 활동무대에 포함되어 있어서, 기원전 1320년 경에는 파피루스에 동남아시아집트의 지도가 그려져 있기도 하고, '여행서'라고 불리는 일종의지도 안내서도 나와 있었던 것 같다⁴⁾.

본 연구의 목적은 고대의 해외진출로를 지역별로 검토하고 주요한 해외진출을 시대별로 구분하여 그동기와 형태를 중심으로 분석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본연구는 역사적 해외진출 형태를 현대적 시각에서 재조명하고 체계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분석하고자 한다.

II. 海外進出의 動機

지중해의 모든 민족을 새로운 토지의 발견에 향하게 한 동기로서는 특히 정치적 군사적 혹은 상업적인 팽창을 들 수가 있다. 이 팽창의 주된 단계는 페니키아 그리스 및 카르타고의 식민지 건설과 알렉산더 대왕의 원정과 로마인에 의한 정복이다⁵⁾.

아시아로 향하는 유리한 신무역로를 찾기 위해 콜럼버스가 서쪽으로 항해한 것은 아니다. 그와 유럽의 해외진출자들을 운 좋게 대륙을 나누어 가진 돈만 밟히는 토지개발업자로 묘사하는 것은 너무 단순하다. 그들은 활동력과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3) Beaglehole, J. C., *The Exploration of the Pacific*(London, 1966), pp. 181-184.

4) Biggar, H. P., *The Precursors of Jacques Cartier, 1494-1534*(Ottawa, 1911), pp. 42-45.

5) Bonington, C., *Quest for Adventure*(London, 1981), pp. 206-208.

결국 미지의 세계를 향한 모험은 그리스시대 아래 이어져 온 유럽문화의 일부였다. 이런 원정본능은 종교적인 열정과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갖고 있다. 성배를 찾아 나선 모험과 십자군전쟁의 역사가 좋은 예이다. 좀더 세속적인 차원에서 보면 사회적인 필요성에서 시작된 것이기도 하다⁶⁾.

가족수는 늘어났고 집은 비좁고 토지는 황폐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집을 떠나 출세의 길을 찾으라는 격려를 받았다. 선교사들은 복음을 설파하기 위해, 상인들은 신상품을 찾고 그것을 팔기 위해 새로운 시장을 찾으려고 떠났다. 어떤 때는 군대가 이런 행로에 앞장 섰고 때로는 뒤따랐다. 서구문명은 침입으로 전파되었고, 침입은 삶의 방식과도 같았다. 오늘날 그런 모든 동기를 중요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유행이며 제국주의·식민주의·인종차별주의 등과도 연결짓는다.

그러나 이런 침투적 습성은 매력적인 우리의 몇 가지 특성과도 연관이 있다. 신사고에 대한 열정, 과학적 발견의 비결, 적용하고 변하는 능력 등이 그것이다. 신대륙을 찾아 나선 항해의 이면에 놓인 동기가 그렇게 한결같이 비열한 것만은 아니었다.

III. 古代의 海外進出路

1. 古代의 海外進出路

지중해연안에서 로마제국이 출현하고 중국에서 한(漢)의 대제국이 성립하자 서양과 동양을 연결하는 해외진출로가 열리게 되었다⁷⁾. 중국에서 당(唐)이 성립하고, 중앙아시아를 사라센의 대제국이 지배하고, 동유럽을 동로마가 지배할 무렵에 동서무역은 크게 번영하였다.

고대의 동서간에는 2대 탐험로가 있었다. 첫째는 해상탐험로인데 지중해에서 홍해를 거쳐 인도양으로, 다시 인도양에서 동남아시아를 돌아 중국에 이르는 항로였다. 이것은 바다의 길이라고 불리는데 로마와 한의 통상에서 개척되었다. 아라비아인은 인도양으로 진출하여 당나라시대에 광주, 천주, 양주 등에 상관을 개설했다. 아라비아인은 지중해무역도 지배했기 때문에 해상무역은 한때 아라비아의 독무대였다. 또 그들은 아프리카 대륙을 남하하여 케냐, 마다가스카르섬 부근에까지 항로를 확대하여 세계의 해상무역을 지배했다.

둘째는 실크로드, 즉 비단길이었다. 알렉산더 대왕의 원정으로 그리스로부터 중앙아시아에 이르는 교통로가 열렸는데 로마시대에는 시리아, 페르시아 양 왕국이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

6) Cameron, I., *To the Farthest Ends of the Earth: the history of the Royal Geographical Society*(London, 1970), pp. 117-121.

7) Cameron, I., *Explorers and Exploration*(London, 1991), pp. 81-84.

로 한 교통로를 장악하고 있었다. 중국에서 전한이 성립하자 무제가 흥노를 토벌하여 서역제국을 평정하고 육로의 동서교통로를 열었다.

그후 후한시대에 동서탐험은 점차 발전했다. 이리하여 메소포타미아지방으로부터 중앙아시아의 천산북로, 천산남로를 거쳐 중국의 돈황에 이르는 실크로드가 개발되었고 많은 대상들이 이용하게 되었다.

세계 최초의 무대는 지중해이고, 그 다음 대서양으로 확대되고, 이제는 태평양으로 옮겨오고 있다고 한다. 바야흐로 태평양시대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가들은 그것을 오리엔트 하천(티그리스, 유프라티스, 나일)시대로부터 그리스, 로마, 유럽, 중세까지의 내해(지중해) 시대, 그리고 아메리카의 발견, 태평양시대 등의 3가지로 대별하고 있다.

바다를 무대로 활약하는 데에는 그 나름대로의 조선기술, 항해술, 천체나 해양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손에 넣어야만 한다. 사실 그러한 기술이나 지식을 몸에 익힌 민족이 제해권을 쥐고 역사의 주역으로 떠올랐던 것이다. 그러나 문제시되는 것은 기술과 지식은 물론이거니와 바다를 육지와 동등하게 또는 육지 이상으로 자신의 세계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인간의 자질이다⁸⁾.

2 아시리아人の海外進出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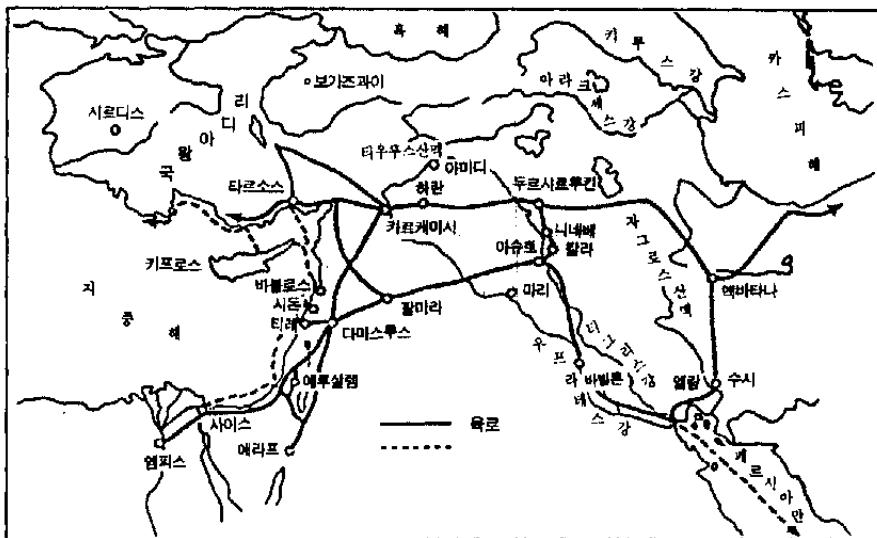
아시리아의 발전이 가능하였던 또 하나의 이유는, 아시리아의 상업적 발전의 토대가 된 지리상 위치의 호조건이다⁹⁾. 아시리아 본토는 메소포타미아 북변의 구릉지대에 위치하여, 바빌로니아에 비하여 일견 변경의 땅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있어서는 바빌로니아·엘람·페르시아와 소아시아, 시리아 패니키아를 연결하는 대 통상로의 중심지 같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무역로의 이점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는 통상로의 확보 뿐만 아니라, 선진지대를 많이 포함하는 만큼 강력한 제국적 통일지배가 필요하였다.

기원전 14세기에는 남서아시아의 여러 나라에도 많은 흥망이 있었다. 그러나 아시리아는 더글라트 필레세르 1세의 시대(B.C. 1100년경)부터 다시 융성으로 향하였다.

왕은 바빌로니아로부터 독립한 그의 부왕의 유업 위에 서서 서방으로 향하여 크게 영토를 확장하였다. 그는 먼저 아시리아 본토의 서방에 침입한 유목민을 무찌르고, 이어서 소아시아 동부의 흑해연안에까지 진군하여 철의 주산지를 그 손에 넣었다. 그는 또 아시리아 왕으로서는 처음으로 지중해에 진출하였으며, 패니키아의 아르와드에서는 이집트 왕으로부터 선물을

8) Cranfield, L., *The Challengers: British and Commonwealth Adventure since 1945*(London, 1976), pp. 93-96.

9) Daniel J. Boorstin, *The Discoverers*(Random House, 1983), pp. 44-46.



〈그림 1〉 아시리아의 해외진출로

받았다.

3. 한노의 海外進出路

한노(Hanno)는 B.C. 5세기에 해외진출 탐험단을 이끌고 아프리카의 서부해안을 탐험해 식민지를 건설한 카르타고인이다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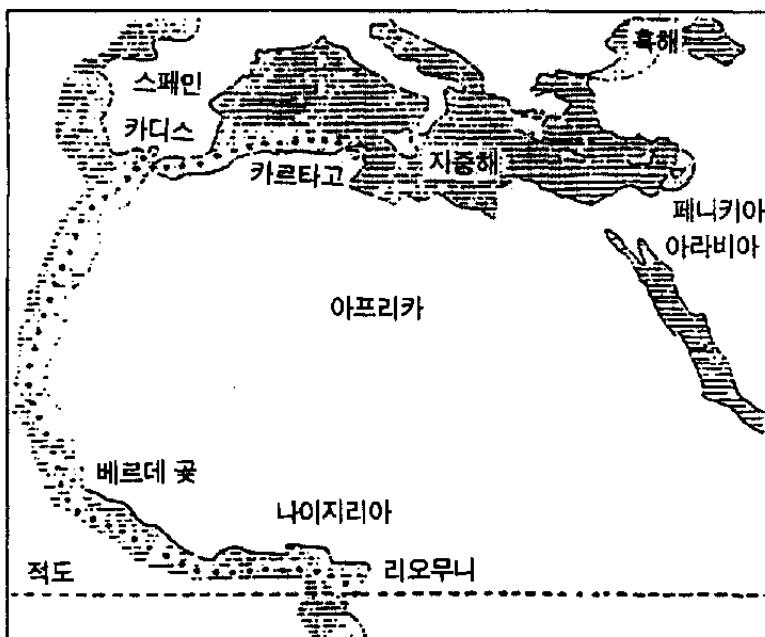
배 60척에 3만명의 남녀를 실고 가 티미아테리온(지금의 모로코에 있는 케니트라)을 건설하고 칸틴 곶(지금의 메도우자 곶)에 신전을 세웠다. 또한 지금의 모로코와 그 주변에 카리콘테이코스(그리스어로 '카리아의 요새'라는 뜻)와 아크라(아가디르)를 포함한 5개 도시를 더 세웠다.

카리콘테이코스는 모로코 해변에 있는 에사쿠이라와 동일한 곳인 듯한데 이곳에서는 페니키아 정착민들의 고고학적 유물이 발견되었다. 더 남쪽으로 내려가 한노는 무역 중심지인 케르네를 리오데오로에 세운 듯하다. 그가 지금의 감비아 또는 시에라네오네의 해변에 도착한 것은 확실하며 카메룬까지 탐험한 것으로 보인다.

그의 여행에 대한 기록은 카르타고의 바할신전에 있었으나 현재는 10세기에 썩어진 그리스어 필사본 「한노의 항해기, Periplus of Hanno」가 남아 있다. 이는 카르타고어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것인 듯 하다.

10) Day, A. E., *Discovery and Exploration: A Reference Handbook. The Old World*(London, 1980), pp. 177-181.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만 해도 아프리카는 암흑의 대륙이라 불리었으나, 용감한 페니키아 사람들은 이미 3000년 전에 벌써 그 무서운 아프리카의 밀림 속에 새 땅을 마련했던 것이다.



〈그림 2〉 한노의 해외진출로

아프리카 동쪽 바닷가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 적도를 지나면 리빙스턴박사가 탐험했던 로디지아지방이 있는데, 여기에 훌륭한 옛날 거리들이 남아 있다고 한다. 아프리카의 토인들이 그렇게 문명생활을 했을 리 없다. 어떤 곳에는 큰 성터가 있고, 첫덩어리를 녹이던 용광로의 자리도 남아 있다고 한다. 이처럼 로디지아에서 찾아낸 글자와 그림 등으로 보아 페니키아 사람들이 남겨 놓은 것들이 틀림없다고 믿고 있다.

4. 당대의 海外進出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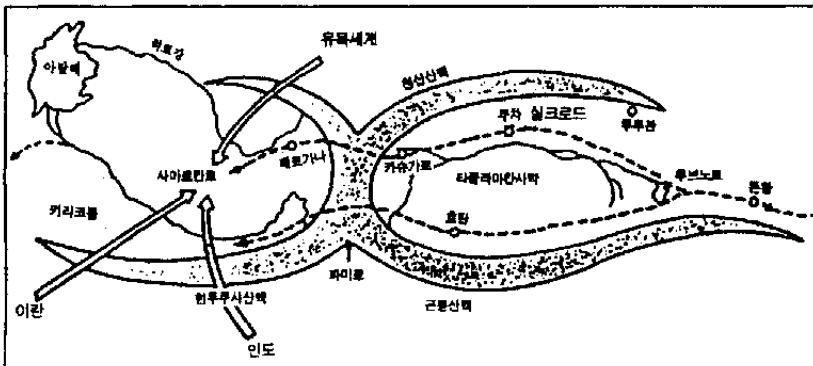
당의 영토 확장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지만, 남방 해안지방의 항구와 양자강 하류 지역의 하항에 세관을 설치한 것은 송·원 등 후세 제도의 선구로서 주목할 만한 일이라 하겠다. 당왕조는 이들 세관을 통하여 아라비아인·페르시아인 등 외래상인의 무역에 관여함으로써 그것이 당왕조의 큰 재원이 되었다. 당시에는 인도인·인도네시아인도 빈번히 내항하였던 것 이므로 이들 외국상인들로부터 징수하는 세금은 상당한 액수에 달하였다.

당대에는 농업기술이 크게 발달하고, 목화·차 등의 재배도 장려되었다. 또 공업부분에서

도 상당한 진보가 있었으며, 영토가 사방으로 확장되고 그 규모가 세계적으로 발전됨에 따라 상업활동이 매우 활발해지고, 특히 외국무역의 신장이 눈부셨다. 외국무역이 활발해짐에 따라 각 해항과 하항 등 개항장에는 외국인의 왕래가 빈번해졌으며, 대외통상로로서는 신라·일본 방면과의 해로도 경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 밖에 주요한 통상로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발달되어 있었다.

- 1) 영주에서 요동을 가로질러 한반도로 가는 길
- 2) 산동반도의 북쪽해안에서 바다를 건너 압록강구에 이르러 강을 거슬러 올라가 발해국의 수도 상경으로 가는 길
- 3) 오르도스로부터 산서성 북부를 거쳐 외몽고로 나가는 길
- 4) 인산 남쪽으로부터 위구르의 영역내로 들어가는 길
- 5) 천산남로의 구자에서 실크로드를 따라 중앙아시아로 가는 길
- 6) 지금의 하노이로부터 육로로 인도로 나가는 길
- 7) 광주로부터 해로로 말라카해협을 거쳐 인도양으로 나가 페르시아 만으로 들어가서 유프라테스·티그리스의 두 강을 거슬러 올라가 바그다드 방면에 이르는 길



〈그림 3〉 아시아의 십자로

5. 실크로드와 貿易

실크로드의 '실크'는 비단이며, '로드'는 길을 말한다. 실크로드는 '비단의 길'이다. 그러나 실크로드는 오로지 실크를 운송하기만 하는 길은 아니었다. 이 길을 통하여 여러 가지 물자가 대량으로 수송되고 있었다. 실크로드라고 이름 붙인 것은 당시 중국에서 밖에 생산되지 않았던 실크가 가장 귀중한 것으로 여겨져 무역의 중심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실크는 낙타에 실려 중국에서 서쪽으로 실려 나갔다. 또, 실크 외에도 중국의 다른 산물이 서쪽으로 운송되

었다¹¹⁾.

한편 서쪽에서도 여러 가지 물자가 낙타에 실려 동쪽으로 운송되어 왔다. 실크로드는 유라시아대륙의 동과 서를 연결하는 대 무역루트였다. 물자가 교류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크로드를 통해 동쪽의 문화가 서쪽으로, 또 서쪽의 문화가 동쪽으로 전해져 실크로드는 문화교류 역할도 한 것이다. 이러한 실크로드는 단순히 동서교역로만이 아니며,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이 몇개의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었다.

첫째로 실크로드는 세계사의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중앙아시아의 동맥이었다. 중앙아시아의 역사가 아시아와 유럽 두 지역과 항상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각각의 시대구분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예컨대 세계사의 고대사에서의 제문제는 지금부터 약 4000여년 전에 아리아인이 분산되기 시작했다고 추정되는 연변지대에서 발생하고 있다. 또 흥노·匈奴 동족론의 여부는 잠시 접어 두더라도 불가·匈奴의 서쪽으로의 진출이 다소는 중앙아시아 유목민의 자국에 의해 발발되고, 그에 따라 야기된 게르만족의 대이동이 유럽에 봉건사회를 형성시키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소위 유럽의 중세는 중앙아시아 세력에 의해 도화선에 불을 당기게 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¹²⁾.

그리고 8세기에 시작된 천산지방의 투르크족의 민족이동은 셀주크투르크와 오스만투르크의 출현을 놓고 이것은 다시 십자군, 이탈리아 여러 도시의 번영, 그리고 르네상스운동의 유발요인이 되고 나아가 근대사회 형성의 단서가 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동아시아에서도 종종 발견되는 것으로 중앙아시아에서의 여러 민족의 동향은 세계사의 이른 바 고대·중세·근세라고 하는 시대구분을 이루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중앙아시아의 동맥인 실크로드가 이러한 동향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새삼스럽게 소리 높여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둘째로 실크로드는 세계문화의 모태이며 육성의 땅이었다. 그러므로 오리엔트와 인도가 세계문명의 발상지였던 사실과 이란문화와 스키타이문화가 그후 세계에 미친 중대한 영향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특히 이 루트가 중세문화에 미친 영향은 참으로 절대적이었다. 기원 1세기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 전역의 정치, 경제, 문호, 모든 면에 걸쳐 심대한 영향을 남긴 불교를 비롯하여 현대에도 여전히 유럽, 아프리카, 그리고 중근동 등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는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도 모두 실크로드의 주변에서 생겨난 종교이다.

11) Delpar, H.(ed.), *The Discoverers: An Encyclopedia of Explorers and Exploration*(New York, 1972), pp. 188~191.

12) Fern Ndez-Armesto, F., *The Times Atlas of World Exploration*(London, 1991), pp. 51~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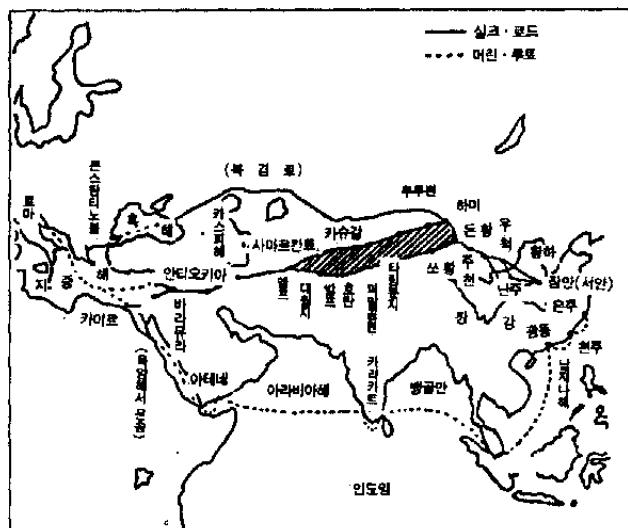
그리고 이제는 지구상에서 그 모습이 사라져 버린 조로아스터교와 마니교 등도 모두 실크로드 위에서 편 문화였다. 중세에서 종교는 참으로 위대한 영향력을 가진 종합문화였다. 이들 여러 종교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직 많은 연구분야를 남기고 있지만, 특히 이것들이 각각 실크로드에 의해 어떻게 세계문화에 공헌했는가, 그리고 아시아와 유럽에 어떻게 발전하고 있었는가 등 수많은 중요한 연구테마를 남기고 있다¹³⁾.

셋째로 실크로드는 이른 바 동서교섭사의 간선도로로서 아시아문화와 유럽문화의 가교이며 세계의 문화발달에 무시할 수 없는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즉 실크로드는 바로 동서양 세계문화의 온상이고 변용의 장이며 동서간의 수송기관이기도 하였다.

유라시아 대륙에서의 동서교통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할 수 있다. 채집경제시대의 고대인들은 정착이란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으므로 자못 기동력이 왕성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기록만으로는 알 수 없지만, 응대한 유라시아 곳곳에서 발견되는 유적과 유물에 의해 추정할 수 있다.

실크로드의 3루트는 다음과 같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교역루트로는 앞에서 개관한 동서 투르케스탄을 가로지르는 실크로드(오아시스 루트, Oasis Route) 외에 북쪽의 초원지대를 통한 스텝루트(Stepperroute, 草原路)와 남쪽의 남해 여려 나라를 통과하는 마린루트(Marine Route, 海上路)가 있다.



〈그림 4〉 실크로드와 마린루트

13) Gavet-Imbert, M. (ed.), *The Guinness Book of Explorers and Exploration* (Enfield, 1991), pp. 86-92.

이 3개의 루트는 각각 시대에 따라 다르지만 텐데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각각 동서문화의 교류의 장으로 활약하여 왔다. 그것도 만약 비단을 운반한 투트란 개념으로 본다면 이들 3개의 루트는 결국 실크로드라고 불릴 자격이 있다. 동서교섭사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특히 그와 같은 견해가 적지 않다.

6. 십자군의 海外進出路

십자군의 수송에서 시작된 지중해의 해상교통은 베니스, 제노바 등 이탈리아의 여러 항구를 중심으로 항해술이나 조선술을 발달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 이 무렵부터 항해에 나침반을 사용하게 됨에 따라 유럽에서는 포틀라노해도, 또는 일반적으로 포틀라노라고 약칭하는 해도의 출현을 보게 되었다¹⁴⁾.

지중해 세계에 침입했던 이슬람 세력은 10세기 아래로 더 확대되지 못하고, 11세기에는 오히려 유럽측으로부터 반격을 받아 수세에 몰리고 있었다. ‘재정복’ 또는 ‘국토회복운동’-레콩 키스타(Reconquista)’이라고 불리는 그 반격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것은 에스파니아반도 북부의 2개 크리스트교 왕국인 아라곤과 카스티야였는데, 반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이슬람세력은 반대로 분열해서 쇠퇴일로에 있었다¹⁵⁾.

이런 것이 대체로 서방의 사정이었다면, 동방은 어떠했는지. 먼저, 동로마제국은 다시 쇠퇴기에 접어든 데다가 무능한 황제들 밑에서 유럽의 봉건사회와 비슷한 권력의 분리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와는 반대로, 동방에서는 바그다드 중심의 동칼리프국가에서 이란의 유목민 셀주크투르크인이 이슬람세력의 새로운 핵심체로 급작스럽게 성장, 1070년대에는 소아시아 전체를 장악하고 동로마제국을 직접 위협했다. 1071년, 비잔틴 황제 로마누스 4세는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서방에 구원을 요청했다. 서방은 이 무렵 카노사사건을 앞둔 혼란기였을 뿐 아니라, 교황청측에서는 1054년 이후 그리스 정교의 반항내지 독립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로마누스 4세의 요청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그러나 셀주크투르크의 세력은 날로 확장되고, 1090년경에는 시리아마저 그들의 손에 들어갔다. 이제 유럽인은 동방의 성지 예루살렘에 갈 길을 잃었다. 이때 동로마제국 콤네노스조의 알렉시우스 1세도, 제국 자체를 위기에서 구하고 또 성지순례의 길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서방에 구원을 요청하는 수 밖에 없게 되었다.

14) Goodman, E., *The Explorers of South America* (New York, 1972), pp. 86-88.

15) Hemming, J. M., *The Conquest of the Incas* (London, 1970), pp. 141-144.

IV. 大發見時代의 海外進出路

1. 르네상스時代의 海外進出

1) 海外進出路의 開拓

13세기애 조반니 테 피아노 카르피니(Giovanni de Piano Carpini), 빌렘 반 루이스브록(Willem van Ruysbroek), 마르코 폴로(Marco Polo) 등은 아시아의 오자까지 발을 들여놓고 있었다. 또 암흑시대에 스칸디나비아인은 콜럼버스보다 앞서 아메리카에 도달했다.

1420년부터 1620년에 걸친 탐험이 종래의 것과 다른 점은 여행이 정부나 상인 단체에 의해 조직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사실이다. 거의가 후원자 없이 개인적인 여행이 산발적으로 행해지던 시대는 지나고, 유럽은 개인적인 세계관여행시대에서 탐험시대로, 즉 목적이 뚜렷한 여행시대로 접어든 것이었다. 또 르네상스시대의 뱃사람만큼 짧은 동안에 멀리까지 항해하여 광범한 발견을 이룩한 예는 다른 시대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

이 시대의 유럽인은 자구의 탐험에 나서게 된 욕구나 기술, 상상력에 특수성이 있었다. 즉, 르네상스의 유럽은 귀금속과 향료를 구하고 있었다. 중세에는 상인들이 금이나 비단, 후추, 청향유를 극동에서 구했으나, 15세기에 접어들자 정부가 이 탐험에 진출했다.

2) 東西交通의 交叉

세계 최초의 무대는 지중해이고, 그 다음 대서양으로 확대되고, 이제는 태평양으로 옮겨오고 있다. 그러나 고대에는 해양의 중심지일수록 위협이 상존하고 있었다.

바다에서의 위협이란 바람, 파도, 폭풍, 표류 등과 같은 어디를 가나 모두 똑같은 것이었으나, 육지에서의 위협이란 산수풍경처럼 다양한 것이었고 여행을 홍미롭고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스릴만점의 것으로 만들었다. 강도들이 이 여관을 노리고 있지 않을까? 낯선 지방의 음식을 잘 삼킬 수 있을까? 내 나라 옷을 입어야 하나, 이 지방의 옷을 입어야 하나? 이 도시의 성문통과가 허락될 것인가? 내가 필요한 것을 설명하고, 내 여행이 해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납득시키게끔 언어의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육로여행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나누어서 하는 모험적인 뛰어넘기가 아니고, 노력을 들여서 개인적으로 하는 지루한 소달구지여행과 같은 것이었다. 영어로 'travel'이라는 말은 이 시대에 나온 말인데—원래는 고통스럽고 숨막힐 듯한 성질의 노고—정확히 말하면, 먼 거리의 길을 가야 하는 노고를 뜻하는 'travail'과 동의어였다. 적은 수의 개척자들이 이 노고를 걸며지고 유럽에서 중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 놓았다.

유럽인들은 아직도 독선적인 자리학의 암흑 속에 빠져서 오랫동안 신비스러운 동양의 전설에 매혹되어 있었다. 소수의 남녀들만이 지구의 다른 끝에서 가져온 이국적인 사치품—중국의 보드라운 비단, 골콘다의 눈부신 다이아몬드—을 즐기고 있었다. 페르시아의 값진 융단을 간 방안에서 그들은 실론산 향료를 친 음식을 먹었고, 삼에서 가져온 흑단의 체스를 두면서 시간을 보냈다¹⁶⁾.

베네치아, 제노바 또는 피사의 상인들은 이들 이국적인 동양상품을 팔아서 번영을 누렸지만, 그들 자신은 물론 한 번도 인도나 중국을 가보지 못하였다. 그들의 동양상품의 접촉지는 동부지중해에 있는 레반트의 항구들이었다. 그들의 귀중한 상품은 두 중요통로를 통하여 공급되었다. 하나는 유명한 실크로드인데 이 통로는 중앙아시아를 거쳐 동부중국에서 오는 상품의 주요공급로였으며, 여기서 오는 상품은 사마르칸트와 바그다드를 경유하여 최종적으로 흑해나 동부지중해의 연안도시로 흘러 들어왔다.

다른 통로의 하나는 남지나해, 인도양 그리고 아라비아해였는데 이들 바다를 통해서 들어온 상품은 페르시아만을 거쳐 바스라로 들어가거나 또는 홍해를 거쳐 수에즈로 들어갔다. 이들 상품이 유럽시장에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다시 페르시아와 시리아 또는 이집트 등의 육로를 거쳐야 했다. 프랑크인과 이탈리아 상인들이 지중해의 여러 항구에서 아시아로 나가려고 했을 때 이들 두 통로가 모두 봉쇄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슬람교도들은 알렉산드리아나 알레포 또는 다마스쿠스에서 이들 상인들과 기꺼이 교역을 했다. 그러나 터키 무슬림들은 유럽인들을 한 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것이 중세후기의 철의 장막이었다.

그러다가 약 1250년부터 1350년까지의 1세기 동안, 철의 장막은 다시 걷히고 유럽과 중국 사이에 직접적인 인적 교류가 있었다. 이 기간 용감하고 사업적인 이탈리아 상인들은 동양상품이 알레포나 다마스쿠스 또는 알렉산드리아에 도착하는 것을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들은 직접 카라반을 만들어 실크로드를 지나 인도나 중국의 여러 도시로 갔다. 그곳에서 그들은 기독교 전도사들, 프랑크인과 이탈리아인의 수도사들이 미사를 올리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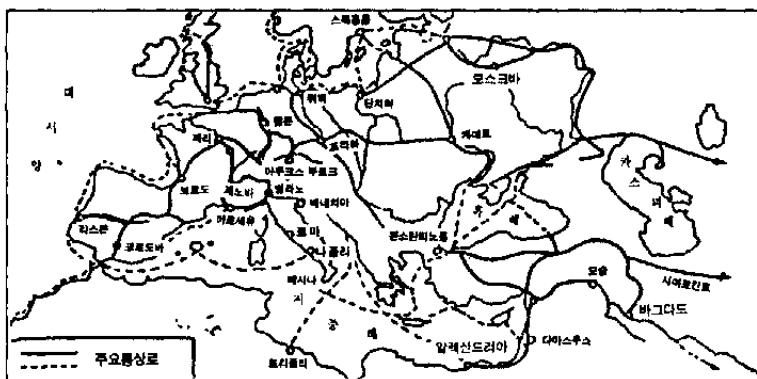
동양과 서양 상호간의 풍요를 가져오고 더욱 넓고 활력있는 교류의 시작이라고 생각되었던 장막의 견힘은 짧은 순간 모험적인 에피소드에 불과하였고, 그후 장막은 다시 쾅하고 내려졌다. 이것은 다른 종교에 대한 저지이며 대부분이 근대 역사를 통하여 동양진출적이고 서양진출적인 비전을 말살하는 암흑에 있어서의 막간의 빛이 되고 말았다.

대양을 이용함으로써, 유럽인들이 다시금 인도와 남동아시아의 해안지대와 접촉하기까지는 수십년이 지나야 했다. 유럽인들이 다시 중국의 항구를 찾는 것이 허용되기까지는 또 몇

16) Hemming, J. M., *Red Gold*(London, 1981), pp. 56-58.

세기가 지나야 했다. 중앙아시아는 오랫동안 문이 닫혀져 있었고, 중국의 내륙은 2세기가 지난 후부터는 유럽인들에게 불친절하거나 또는 유럽인들을 적대시하기까지 하였다.

장막을 다시 걷어올린 것은 기독교 군사들의 힘도 아니고 유럽의 정치가들의 책략도 아니었다. 세상을 각성시킨 많은 기타의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하나의 부산물이었다.



〈그림 5〉 중세후기 유럽의 통상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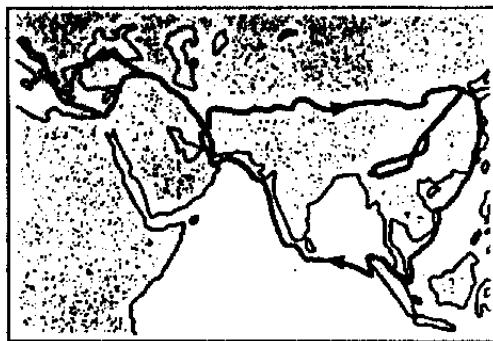
3) 마르코 폴로의 동방진출로

마르코 폴로는 경험, 업적, 영향력에 있어서 다른 모든 기독교 여행자들보다 뛰어났다. 프란체스코 수도사들은 뭉고에 갔지만 모두 3년 내로 돌아왔고, 또 그들은 전도외교가라는 지위에 머물러 있었다. 마르코 폴로의 여행은 24년 동안 계속되었다. 그는 그의 선임자들보다 훨씬 멀리 몽고를 지나 중국의 중앙에까지 진출하였다. 그는 대양에 이르기까지 중국전역을 횡단하였고, 쿠빌라이 칸의 친구가 되고, 중국 대도시의 총독이 되는 등 다양한 역할도 하였다. 그는 중국어에 능통하였고 스스로 중국의 일상생활과 문화에 젖어 있었다. 유럽인들에게 있어서는, 동양에 대한 그의 풍부하고, 생동력 있고, 사실적인 소개가 곧 아시아의 발견이 되었다¹⁷⁾.

4) 中國과의 貿易路

베네치아, 제노바 또는 피사의 상인들은 이를 이국적인 동양상품을 팔아서 번영을 누렸지만, 그들 자신은 물론 한 번도 인도나 중국을 가보지 못하였다. 그들이 동양상품을 접촉한 곳은 동부 지중해에 있는 레반트의 항구들이었다. 그들의 귀중한 상품은 두 통로를 통하여 공급되었다. 하나는 유명한 실크로드인데 이 통로는 중앙아시아를 거쳐 동부 중국에서 오는 상품의 주요공급로였으며, 여기서 오는 상품은 사마르칸트와 바그다드를 경유하여 최종적으로 혹

17) Hemming, J. M., *Amazon Frontier*(London, 1987), pp. 146-151



〈그림 6〉 마르코 폴로의 해외진출로

해나 동부 지중해의 연안도시로 흘러 들어왔다.

다른 통로의 하나는 남지나해, 인도양 그리고 아라비아해였는데 이들 바다를 통해서 들어온 상품은 페르시아만을 거쳐 바스라로 들어가거나 또는 홍해를 거쳐 수에즈로 들어갔다. 이들 상품이 유럽의 시장에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다시 페르시아와 시리아 또는 이집트 등의 육로를 거쳐야 했다.

프랑크인과 이탈리아인 상인들이 지중해의 여러 항구에서 아시아로 나가려고 했을 때 이들 두 통로가 모두 봉쇄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슬람교도들은 알렉산드리아나 알레포 또는 다마스쿠스에서 이들 상인들과 기꺼이 교역을 했다. 그러나 터키의 무슬림들은 유럽인들을 한 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것이 중세 후기의 철의 장막이었다.

그러다가 약 1250년부터 1350년까지의 1세기 동안, 철의 장막은 다시 걷히고 유럽과 중국 사이에 직접적인 인적 교류가 있었다. 이 기간에 보다 용감하고 사업적인 이탈리아 상인들은 동양상품이 알레포나 다마스쿠스 또는 알렉산드리아에 도착하는 것을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들은 직접 카라반을 만들어 실크로드를 지나 인도나 중국의 여러 도시로 갔다. 그 곳에서 그들은 기독교 선도사들, 프랑크인과 이탈리아인의 수도사들이 미사를 올리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¹⁸⁾.

동양과 서양 상호간의 풍요를 가져오고 보다 넓고 활력있는 교류의 시작이라고 생각되었던 장막의 견힘은 짧은 순간 모험적인 에피소드에 불과하였고, 그후 장막은 다시 내려졌다. 이것은 다른 종류의 저지이며 대부분의 근대역사를 통하여 동양진출적이고 서양진출적인 비전을 말살하는 암흑시대의 막간의 빛이 되고 말았다.

동양을 이용함으로써, 유럽인들이 다시금 인도와 남동아시아의 해안지대와 접촉하기까지는 수십 년이 지나야 했다. 중앙아시아는 오랫동안 문이 닫혀져 있었고, 중국의 내륙은 2세기

18) Herbert, W., *The Noose of Laurels: The Discovery of the North Pole*(London, 1987), pp. 87-88.

동안의 막간이 지난 후부터는 유럽인들에게 불친절하거나 또는 유럽인들을 적대시하기까지 하였다.

장막을 다시 걷어올린 것은 기독교 군사들의 힘도 아니고 유럽의 정치기들의 책략도 아니었다. 세상을 각성시킨 많은 기타의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하나의 부산물이었다.

중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 놓는데 공이 있는 자를 듣다면, 그것은 놀랍게도 그렇게도 오랫동안 유럽인의 접근을 봉쇄해 온 터키인과 같은 혈통의 종족, 즉 중앙아시아의 몽고인인 달단인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중세기 때 유럽에 위협을 주었던 달단인들은 매우 포악하였다. 달단인의 명성은 최초로 유럽을 침공한 달단인의 무서움을 알았거나 또는 들은 바 있는 유럽의 문필가들에 의하여 유럽에 전해졌다.

2. 東方進出路

1) 東方進出路

인도항로를 개척한 것은 포르투갈인이다. 포르투갈인이 아라비아인을 물아내고 지브롤터의 맞은편 세우타에 교두보를 구축한 것이 1415년의 일이고, 항해왕자 엔리케는 그 무렵 아프리카 서해안의 탐험을 꾀하였다. 그 목적은 아프리카 서해안의 남쪽에서 대서양으로 흘러 든다고 하는 서나일(이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디오피아에 도달한다고 믿었다)의 하구를 발견하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엔리케 항해왕자의 획기적인 탐험사업은 처음부터 의외의 장애에 부딪히고 말았다. 오늘날에 보자도르곶(Cabo Bojador : 서경 14도 18분, 북위 26도 7분)이라고 불리는 난코스가 바로 그것이었다. 이 부근은 해류가 거세고, 암초가 많고, 풍향이 변덕스럽고, 또 절은 안개가 자주 끼어서 위험하기 짝이 없었다. 그래서 포르투갈인들은 그것을 ‘논 푸루스 우르트라(넘을 수 없는 곳)’라고까지 불렀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 난코스를 아예 우회하지 않았을까?

그곳을 우회하고 싶어도 우회하는 것 자체가 큰 모험이기 때문에 감히 엄두를 못냈던 것 같다. 왜냐하면 컴퍼스가 있긴 해도 역시 육지에서 멀리 떠나 미지의 대해에 나가면 귀로를 알 수 없고 또 언제 어디서 무슨 재난을 당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당시에는 아직도 먼 대서양 한가운데에 지옥의 입구가 있다고 믿었으므로, 스스로 육지를 멀리 떠나 그 지옥 속에 빠지고 싶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¹⁹⁾.

그렇기 때문에 지옥의 입구에 가까이 갈 필요없이 그 난코스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컴퍼스 항법 외의 다른 항법, 즉 ‘원양항법’이란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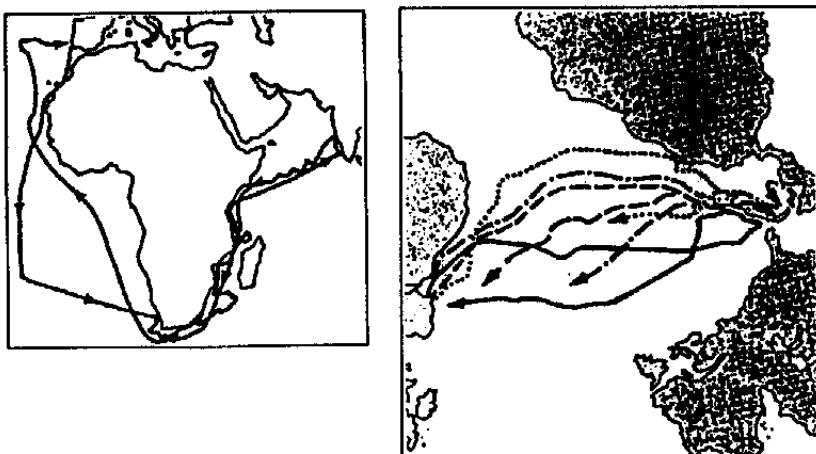
19) Hopkirk, P., *Trespassers on the Roof of the World*(London, 1982), pp. 166-168.

2) 바스코 다 가마의 印度洋進出路

가마는 말린디에 인도인의 취락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인도인들이 기독교도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것이야말로 프레스터 존의 거처가 그다지 멀지 않다는 표시였다. 그리고 더 다행이었던 것은 새로운 뱃길 안내인을 얻은 것이었다. 그는 서부인도의 구자라티인으로서 아라비아해를 가로질러 가마를 안내하겠다고 했는데, 그는 당시에 가장 학식 있고 경험이 많은 뱃길 안내인 중의 한 사람이었다. 이 유능한 사람을 태우고 가마는 선단을 인도양으로 몰았다. 그것은 인도에 최초로 들어간 유럽 배였다.

포르투갈인은 가마의 항로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비밀을 유지했기 때문에 유럽 여러 나라가 알아낼 수 있는 것은 다만 가마가 인도에 도착했다는 것 뿐이었다. 특히 이탈리아인은 철자나 뇌물을 써서 가마의 항해에 대한 비밀을 탐지하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했다. 완전히 새로운 세계무역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한편 종지부를 찍은 것도 있었다. 가마가 말린디에서 인도를 항해 항해할 때쯤에 아프리카 해안에 대한 르네상스시대의 탐험은 사실상 끝나고 있었다²⁰⁾.



〈그림 7〉 바스코 다 가마의 해외진출로와 콜럼버스의 신대륙 진출로

3. 西方進出路

1) 新大陸 進出路

1492년 8월 3일, 3척의 배로 에스파냐의 팔로스를 떠난 콜럼버스 일행은 카나리아군도쪽으

20) Hopkirk, P., *The Great Game*(London, 1990), pp. 126-128.

로 가는 루트를 따르다가 곧 서쪽으로 진로를 바꾸어 10월 12일 처음으로 육지를 발견했다.

이곳은 지금의 와틀링섬에 해당하는데, 그들은 산살바도르란 이름을 붙이고, 에스파냐국기를 걸어 놓고, 종교적 의식을 통해 신에게 감사드렸다. 해안에 달려갔던 원주민들의 눈에 그 것이 어떻게 비쳤을까는 새삼 말할 필요도 없다. 앞서 말한 것처럼 콜럼버스 일행은 산살바도르에서 이틀간 쉰 뒤 바하마제도의 섬들을 돌아보고, 좀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쿠바에 이르러 “여기가 시팡고(일본)다”하였다.

하지만 마르코 폴로의 여행기에 얘기된 일본과는 사정이 너무 다르므로 좀더 탐험을 하다가, 12월 5일에는 산토도밍고를 발견하고 여기에다 조그마한 요새를 구축했다. 유럽인이 아메리카대륙에 진출해서 장악한 최초의 식민지가 바로 이것이다.

이듬해 1493년 3월 4일 포르투갈의 리스본에 돌아간 콜럼버스는 서쪽으로 향해서 ‘인도’에 왔다고 선언했다. 포르투갈인들은 자기네 탐험대가 이 때까지 수십번이나 조직적으로 했어도 실패한 일을 이 사내가 단번에 해치웠다는 데에 놀라서 어안이 벙벙해졌다. 디아스가 회망봉을 발견한 지 5년 뒤의 일이고 바스코 다 가마가 인도항로를 발견하기 4년 전의 일이다.

콜럼버스의 탐험은 좀더 계속되었다. 1493년 제2회 항해에서는, 먼저 소앤틸리스제도에 갔다가 북쪽으로 진로를 바꿔 푸에르토리코에 닿고, 마지막으로 산토도밍고 식민지에 다시 한번 갔다.

그들은 이곳의 요새를 좀더 보강한 뒤 쿠바의 남부연안을 탐험하고, 거기서 다시 남쪽으로 진로를 바꾸어 자메이카로 갔다. 1498년의 제3회 항해에서는 남아메리카의 북부연안을 탐험했다. 그렇다면 콜럼버스는 왜 이렇게 3차에 걸쳐 탐험을 했을까?

그 이유는 마르코 폴로가 말한 황홀한 재보와 콜럼버스 자신이 기대한 ‘동방’의 재보가 영 눈에 띄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초조해졌다. 그리고 중앙아메리카 해안을 탐험한 제4회 항해(1502년) 때에는 유럽에 돌아가서 아무 환영도 못받고, 4년 뒤에는 실의에 빠진 채 죽었다.

이 때에도 콜럼버스는 자기가 발견한 신대륙을 동방항로의 중간쯤에 해당하는 아시아의 일부로 믿었다 한다. 그가 좀더 내륙에 들입해서 마야문명권이나 잉카제국을 발견하였다며 발견자로서의 만년이 그렇게 참혹하진 않았을 텐데, 불행히도 ‘재운’이 그를 따르지 않았던 모양이다.

2) 新大陸 進出러시

확실히 ‘발견자’ 콜럼버스는 재미를 못보고 다른 사람들이 명성도 얻고 돈도 벌었다. 먼저 1497년에 브리스톨의 이탈리아인 캐보트가 영국왕 헨리 7세의 원조로 서쪽으로 항해해 가서, 아메리카대륙의 북동부 해안에 닿았다. 그리고 귀국해서 탐험결과를 보고하고 막대한 상금을

받았다. 캐보트 역시 아시아로 가는 항로를 개척하려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포르투갈 국왕은 아조레스군도의 서쪽 270리그 지점에서 남쪽으로 그은 선에 따라 에스파냐령과 포르투갈령으로 분할하기로 책정한 1494년의 토르데실라스 조약에 의해 캐보트가 발견한 곳은 포르투갈령이라고 주장하며 1500년에는 코르테 레알 형제를 그곳에 보내 확인하기까지 했다.

당시의 포르투갈 국왕은 아메리카대륙의 남부지방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먼저 두아르테 파체로라는 탐험자를 파견해서 콜럼버스가 발견했다는 새로운 땅을 확인하고, 뒤이어 카브랄을 파견했다.

1500년 코르테 레알 형제가 서북쪽으로 항해할 때, 카브랄은 서남쪽으로 항해해서 브라질 해안에 닿았다. 이들 코르테 레알 형제나 카브랄의 탐험에 의해서 포르투갈인들은 이제 새로운 사실을 확인했다. 즉, 콜럼버스가 '아시아의 일부'라고 말한 곳은 아시아와는 다른 새로운 대륙이라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포르투갈인들은 신대륙의 정체를 밝혀 낸 최초의 유럽인이 되었다.

에스파냐인들도 콜럼버스의 진로를 따라가 서인도제도나 북아메리카 본토를 계속 탐험했다. 그리고 '에스파냐령'에 영국이 진출하고 있다는 뉴스가 전해지자 신성로마제국 황제이기도 한 에스파냐 왕 카를 5세는 1520년 루카스 바스케스를, 1525년에는 에스테반 고메스를 파견하여 신대륙의 사정을 조사하게 했다.

프랑스인들도 신대륙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국왕 프랑수아 1세의 명령을 받은 베니스인 베라차노가 북아프리카의 동해안에 갔다가 더 북쪽으로 항해해서 북위 50도 지점까지 갔다. 그 뒤 1534~1535년에는 자크 카르티에가 세인트로렌스만과 강어귀를 탐험하고, 몇년 뒤에는 그곳을 프랑스 식민지로 삼으려 했다.

그동안 에스파냐에서도 1513년 발보아가 태평양을 발견했고, 1519년에는 포르투갈인 마젤란이 카를 5세의 도움을 얻어서 신대륙을 거쳐 항로제도로 가는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려 나섰다.

이와 같이 콜럼버스의 제1회 항해가 행해진 뒤부터는 탐험대가 계속 신대륙에 갔다. 그 사이 신대륙이란 어떤 곳인지가 밝혀지고 탐험대의 발길은 북아메리카의 서북부 해안에만 미치지 않았을 뿐, 아메리카대륙의 해안지방을 거의 다 누볐다.

그리하여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 약 1세기 동안은 유럽 여러 나라가 제각기 신대륙에 세력을 펼치려 애쓴 국제적 경쟁의 제1막이 되었다. 당초에는 오래 전부터 꽤 상세히 알려진 풍요한 아시아시장에 직접 가기 위한 루트를 발견하려는 것과, 황금으로 가득 차 있다는 새로운 세계에 가서 치부해야 한다는 것이 이 국제경쟁의 주요 이유였다.

그리고 유럽인의 지식 속에 지구상의 새로운 익소틱한 영역이 도입되고, 모험가, 과학자,

선교사, 투자가들에 의해 매력이 넘치는 새로운 세계가 밝혀지고, 또 유럽이 세계의 주인 노릇을 하려는 전대미문의 대정복 사업이 전개된 때, 이것이 바로 '지리상의 발견'시대였다.

3) 海外進出者의 危險과 利益

당시의 배(카라벨)는 많이 개량되고 속력이 괜찮은 편이긴 했으나 내파성은 아직 대단하지 못해서 태풍을 만나기만 하면 대부분 거품처럼 깨져서 사라지고 말았다. 그러므로 컴퍼스가 발명되었느니 위도항법이 개척되었느니 하더라도 아직 원양항해는 말 그대로 목숨을 건 모험이었는데, 이 경우 위험적인 것은 변덕이 심한 자연 뿐만은 아니었다.

첫째로, 언제 어디에서 나타날지 모르는 적국의 함대나 해적의 무리 역시 중대한 위협이었다. 그러므로 유럽인의 해외진출은 그 무렵에 발명된 각종 화기에 의한 자기방어 능력에 힘입은 바 많았다고 볼 수도 있다. 이 사실 당시의 유럽인에게 그런 새로운 무기들이 없었더라면 제아무리 난파의 위협이 없다 해도 감히 소수가 먼 바다의 낯선 세계에 도전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런 사정 때문에, 당시의 상선과 군함 사이에는 전투능력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예컨대 1588년 스페인함대를 도버해협에 유인해서 처부순 영국함대는 모두 197척의 함선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 중 군함에 해당하는 것은 1천톤급의 함선 1척을 포함해서, 모두 34척 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모두 상선이었다고 한다.

또한 원양항해자들을 위협한 제3의 적은 기아와 질병이었다. 우선 항해자들의 생활실태를 보면 선장 외에는 모두 선실도 침대도 없었다. 식량은 갑판 위에서 적당히 요리되는 것 외에 대개는 소금에 절인 고기, 비스킷, 말린 완두 따위였고, 마실 것으로는 포도주와 항아리 속의 썩기 잘하는 물 뿐이었다. 그래서 항해자들은 보통 영양부족(특히 비타민 C부족)에 의한 괴혈병에 걸려서 쓰러졌다.

좋은 예가 인도항로를 발견한 바스코 다 가마 때의 일인데, 그 일행의 3분의 2가 도중에서 괴혈병으로 쓰러졌다. 바스코 다 가마의 아우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런 회생을 치른 대가로 바스코 다 가마는 인도에서 가져간 각종 향료와 루비 같은 보석을 처음 구입 가격의 60배라는 비싼 값으로 유럽상인에게 판매하여 목적했던 돈을 벌 수 있었다.

그러나 그가 인도항로를 개척한 뒤 불과 5년도 안돼서(1503년까지) 수십척의 포르투갈상선이 인도에 왕래하여 많은 향료와 보석을 실어 날랐으므로 그 가격은 4, 5년 전에 비해 2분의 1 밖에 안될 만큼 많이 떨어졌으나 그래도 원산지에서 구입한 때의 가격보다 7, 8배나 비쌌다고 한다.

그런데 바스코 다 가마에 관한 에피소드에서 한가지 재미있는 것은, 1498년 5월 20일 기고 만장해서 인도 서남부해안의 켈리컷에 입항했던 그가 오히려 상상 외의 높은 문화수준에 압

도된 데다가 그곳의 토후한테 농간 당했던 사실이다. 그래서 당시에 그가 인도에서 가져간 향료나 보석은, 그곳 토후가 준 견본에 불과했다는 말도 있다.

4. 世界一周 進出路

마젤란은 1519년 9월 말에 에스파냐를 출발하여 불안에 떠는 선단을 속여 가며 대서양을 횡단, 브라질의 북해안에 도달하고 거기에서 남으로 방향을 바꿔 태평양항로를 탐색했다. 한번은 리오데자네이루만에 잘못 들어갔고 또 한 번은 라풀라타강하구에 들어가고 말았다. 그러나 어쨌든 겨울이 될 때까지 선원들을 격려하여 전진했다. 그리고 다음 5개월간은 남쪽 파타고니아만에 피신했다. 그 기간에 그는 한 척의 배를 난파로 잊고 한 척은 탈주로 잊었다. 그리고 반란 때문에 되돌아가야만 할 막다른 고비에 몰린 적도 있었다.

1520년 8월 말에 마젤란은 다시 출발했다. 그는 남위 52도 30분 되는 곳에 도달해 그곳에서 훗날 그의 이름이 붙여진 해협을 발견했다. 그 수로는 바위투성이였고 풍파도 심했다. 마젤란은 자친 선원을 위협도 하고 감언으로 속이기도 하여 벼랑 사이를 누비는 500km 남짓한 해협을 훌륭한 항해기술을 종횡으로 구사하면서 38일만에 빠져 나왔다. 나온 곳은 필라르곶이었다.

여기에서 그의 이론은 실증되었다. 태평양으로 가는 남서항로가 존재했던 것이다. 아메리카대륙에는 분명 남단이 있었고, 많은 지리학자들이 믿은 것처럼 아직 탐험되지 않은 남극대륙 '테라오스트랄리스 인코그니타'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마젤란은 다시 북상하여 해안을 따라 1,600km 가량 전진했다. 그리고 그는 해도제작자가 남아메리카의 폭이나 모양, 넓이를 측정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았다. 이어서 그는 동쪽에서 부는 무역풍을 타고 물이 새는 배를 서쪽으로 몰았다. 이미 식량은 떨어져 가고, 아직도 얼마를 더 가야 목적지에 다다를지도 모르는 상태였다. 그래서 그는 장차의 불안에 대해 말하는 것을 금하고, 이를 어기는 자를 죽음으로 벌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는 불행하게도 망망대해만을 계속해서 항해하고 있었다. 좀더 남쪽으로 갔더라면 타히티섬이나 사모아섬, 피지제도에 부딪혔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3개월 이상이나 굶주림과 병에 시달리는 절망적인 상태를 견뎌야 했다. 그들이 만난 유일한 군도는 완전한 불모지였다. 비관주의를 금했던 스스로의 명령을 깨고 그는 그 섬을 '불행한 섬'이라고 명명했다. 1521년 3월 6일, 곰에 달을 때까지 식량보급은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최후의 파국에 이르렀을 때 겨우 운이 트이는 것 같았다.

3월 16일 필리핀군도에 도착한 마젤란은 원주민이 달고 있는 금장식을 발견하고 사기가 올랐다. 그가 추구해 온 카세이와 부가 손을 뗀다면 달을 곳에 있음이 확실했다. 섬의 자원을 조

사하기 위해 마젤란은 계속 배를 몰아 4월 7일 세부섬에 상륙했다. 거기서 그는 원주민 추장과 우호조약을 맺었으나, 이 조약이 반대로 화를 가져왔다. 예나하면 이 새로운 동맹자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마젤란은 그들과 대립하고 있는 근처의 작은 섬 마크단의 지배자와의 소전투에서 한몫을 맡아 가담했던 것이다. 그리고 4월 27일에 그는 살해되었다.

이리하여 마젤란은 세계일주의 달성을 얻을 수 있었던 영광을 놓치고 말았다. 또한 콜럼버스가 실패한 일, 즉 서방으로부터 인도로 가는 길을 제시하려 했던 그의 온갖 지식도 그와 함께 영원히 사라졌다.

탐험대의 생존자들이 이끌고 고국으로 향하는 남은 항해는 불운이 계속된 쟁쟁한 것이었다. 남은 3척의 배를 움직이는 데는 생존한 인원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한 척을 불사르고 나머지 인원이 트리니다드호와 빅토리아호에 나누어 탔다. 그러나 트리니다드호는 상태가 좋지 않아 도저히 희망봉을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한 선장은 파나마로 가려고 시도했으나, 그것도 바람에 밀려 실패하고 말았다. 그리고 몰루카(현재의 인도네시아)로 되돌아왔을 때, 1512년부터 그곳에 거주하고 있던 포르투갈인에게 모두 사로잡히고 말았다.

세바스티안 엘 카노가 이끄는 마젤란탐험대의 마지막 배인 빅토리아호는 동인도의 정향유와 그 밖의 향료를 가득 실고 희망봉을 돌아 에스파냐로 돌아와 1522년 9월 8일 세비야에 도착했다. 이것으로 간신히 약 3년 전에 시작되었던 놀라운 대여행이 끝났다.

그로부터 3년 후 트리니다드호의 4명의 생존자는 가까스로 포르투갈의 포로생활에서 벗어나 모국으로 돌아왔다. 이들을 포함해 출국 당시의 280명 중 살아서 돌아온 자는 35명 뿐이었다.

5. 北西進出路와 北東進出路

1) 北西進出路

북서항로는 북아메리카대륙의 역사적인 해로를 말한다. 이 항로는 대서양에서 캐나다 영토가 된 북극해 섬들을 거쳐 태평양으로 빠져나오는 길을 찾는데 여러 세기 동안 애쓴 결과를 보여준다.

세계에서 가장 힘든 해양도전의 하나였던 이 항로는 북극권에서 북쪽으로 800km 떨어져 있고, 북극에서 1,930km 정도 떨어져 있다. 캐나다의 북극해 섬들 사이로 이어지는 일련의 깊은 수로들로 이루어지며, 동서길이는 1,450km로 배핀섬 북쪽에서 알래스카 위의 보퍼트해까지 뻗어 있다.

대서양에서 북서항로로 진입하려면, 높이가 최고 90m에 달하는 약 5만개의 거대한 빙산이 그린란드와 배핀섬 사이를 남쪽으로 끊임없이 떠내려 가는 바닷길을 헤치고 나가는 위험한

항해를 해야만 한다. 태평양으로 빠져나가는 쪽 역시 험난하다. 북극의 빙모가 1년 중 많은 동안 알래스카 북쪽의 얕은 해안을 내리누르고 커다란 얼음덩어리를 알래스카와 시베리아 사이의 배랑해협으로 내려보내기 때문이다.

15세기 말부터 서양인들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부딪쳤던 장벽인 아메리카대륙을 북쪽과 서쪽으로 도는 무역항로를 설정하려고 애썼다. 그것이 설정되면, 1497년에 잉글랜드의 왕 헨리 7세가 동양으로 가는 북서항로를 찾도록 존 캐벗을 파견한 이래로 사람들이 좀처럼 이루지 못한 목표가 실현되는 생이었다.

그보다 5년 앞서 콜럼버스는 서쪽으로 해서 동방으로 가는 길을 찾아 출항했는데, 그것은 15세기 중엽 오스만투르크의 중동 **VIII**. 북서진출지역 정복으로 인해 유럽에서 동방으로 가는 육로가 막혔기 때문이다.

1498년에 바스코 다 가마가 아프리카 남쪽을 돌아 인도로 항해했고, 마젤란은 1521년 남아메리카 남서쪽을 돌아 동인도제도로 항해했다. 네덜란드의 탐험가들은 러시아 북동쪽을 돌아 가는 항로를 찾으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그러나 자크 카르티에와 프란시스 드레이크경, 그리고 마틴 프로비셔경과 제임스 쿡 선장을 포함해 세계에서 이름난 탐험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북서항로였다. 이들 모두 실패했고 많은 탐험자들이 큰 변을 당했다. 험프리 길버트 경이 이 항로에 대해 쓴 책은 다른 많은 이들의 항해를 고무시켰고, 1583년 길버트 자신도 항해를 하다가 익사했다. 1611년에 헨리 허드슨과 그의 어린 아들 및 7명은 반란을 일으킨 선원들에 의해 물에 던져졌다(그해 허드슨이 발견한 허드슨만이 그가 찾던 항로가 아니라 얼음 덩이 밝혀졌음).

북극항로는 많은 탐험가들이 항해를 해서 모은 정보들을 통해 몇 백년에 걸쳐 천천히 밝혀졌다. 이들 탐험가로는 존 데이비스, 윌리엄 베펜, 존 로스경, 윌리엄 폐리경, 프레데릭 윌리엄 비치, 조지 백 경을 들 수 있고 헨리 웰시, 새뮤얼 헌, 알렉산더 매켄지경의 내륙탐험 등도 이 항로가 밝혀지는데 한 몫을 했다.

북서항로의 바닷길은 1906년에 노르웨이의 탐험가 아문센에 의해 완전히 정복되었다. 아문센은 탐험을 막으려는 채권자들을 피해 몰래 항해했고 47t짜리 청어잡이배를 개조한 의아호를 타고 3년 동안의 힘겨운 항해를 마쳤다. 1944년 캐나다 기마경찰대의 헨리 A. 라센이 스쿠너(쌍돛대 이상의 범선)를 타고 처음으로 한 계절 안에 이 항로를 통과했다.

북서항로의 정규해상무역로 개통은 천연자원, 교통, 그리고 국제무역 관계에서 경제적으로 세계적인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 미국과 캐나다에 가장 큰 영향이 미치겠지만, 폐르시아만에서 파나마까지, 칠레에서 스칸디나비아까지 그 효과가 과급될 것이다. 경쟁적인 개발과 정부 정책, 많은 복잡한 경제적인 쟁점들에 따라 이 길이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많이 사용될 것인지가 결정될 것이다.

2) 北東進出路

북동항로는 유라시아대륙 북부해안을 따라 나 있는 뱃길로 시베리아 북부에 놓여 있다. 이 곳을 돌아 본 유명한 탐험가로는 밀란 바렌츠와 헨리 허드슨을 꼽을 수 있다.

포트르대제의 후원을 받아 세운 데주노프도 1648년 베링해협을 항해했을 것이라 여겨지며, 1728년에 비투스 베링이 이 해협을 지났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1778년 제임스 쿡선장이 처음으로 이 해협의 양쪽을 항해하고 아시아와 북아메리카가 서로 떨어져 있는 두 개의 대륙이라는 것을 밝혔다.

그 뒤에도 많은 탐험가가 도전했으나 1878~1879년에 스웨덴의 탐험가 아돌프 에리크 노르덴시월드 남작이 이 항로를 처음 지나갔다. 1960년대 후반부터 여름마다 공중관측, 전파탐지기, 수중음파탐지기의 힘을 빌려 러시아의 쇄빙선들이 얼음을 깨고 있으므로 이 항로로 배가 다닐 수 있었다.

특히 허드슨은 매우 위험한 탐험을 4번이나 시도했고, 북극의 겨울 속에서도 선원들을 흥륭히 지휘했으며, 위치도 알 수 없는 해안에서 빙하에 좌초될지도 모르는 배를 끝까지 지켰다. 그는 베라차노, 데이비스, 바렌츠 등의 탐험결과를 실질적으로 발전시켜 새로운 성과를 이룩했다.

그가 지리학적 지식에 기친 영향은 매우 커졌으며, 이후 네덜란드와 영국은 그가 발견한 사실을 토대로 각각 허드슨강 유역과 캐나다지역에 식민지를 세울 수 있었다.

V. 結 論

경쟁적이고 탐욕스러운 국가, 항해에 적합한 배, 활동적인 기독교적 사고방식 등외 여러 요소들 중 어느 하나도 문화가 찬란하던 위대한 르네상스시대와 관련되는 가치기준에서 직접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매우 흥미있는 일이다. 예술적·지적인 르네상스가 16세기 중엽까지 주로 이탈리아에서 꽂을 꾀웠는데도 당시 중요한 탐험을 주재한 나라가 이 미적 부흥의 가장자리에 있었던 포르투갈이나 에스파냐 같은 나라들이었음은 무슨 까닭일까?

14세기 초 이탈리아의 문화부흥활동은 처음에는 실제적인 필요에 직접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정치적·경제적 생활이 활기를 띠고 또 작은 중세국가의 도시거주자의 수가 증대함에 따라 이탈리아에서는 세속적인 교육, 특히 법학교육이 유럽의 다른 국가에서보다도 더 강하게 요구되었다. 그러나 법률교육이 점차 고대 로마법의 연구를 포함하게 됨에 따라 로마의 학문이나 문학의 영역에도 눈을 돌리게 되었다.

또한 르네상스 중엽에는 여러 가지 사상이 태어나 시와 철학, 건축, 의학 등에 영향을 미

쳤다. 이 분야들은 처음에 고전의 부활을 고무시켰던 상업이나 정치의 요구와는 거리가 먼 것들이었다. 이 경향은 차실히 발전을 거듭하여 16세기 서유럽의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전쟁이 예술의 보호자를 줄이고 학문에 대한 사고의 자유로운 교류를 방해했으며, 문화부흥운동에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나라들도 이탈리아에 별로 뒤지지 않았다. 영국, 프랑스, 포르투갈, 에스파냐, 독일에서는 무역이 점점 복잡해져서 정부 재정은 한층 합리적인 체계를 갖추어 나갔다.

르네상스 초기에 포르투갈과 에스파냐는 지도제작과 항해술이라는 실용적인 분야에서 훌륭한 성과를 올렸다. 탐험가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 연구는 이탈리아의 고전적인 학식에 뿌리를 박은 것이 아니라 이베리아반도에서 쉽게 입수할 수 있는 자료에 기초를 둔 것이었다. 즉, 경험 많은 뱃사람들의 지식이나 아라비아의 수학자와 천문지문학자가 만든 지리적인 원리였다.

이들 아라비아인은 동부 지중해의 여러 나라들과 인도, 북아프리카를 포함한 이슬람의 거대한 교역권에서 배운 지식을 에스파냐인이나 포르투갈인에게 전수한 것이었다. 이렇게 준비가 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15세기 초기에 서아프리카 연안의 탐험을 개시한 포르투갈과 15세기 중엽에 그 방면에서 포르투갈과 경합하기 시작한 에스파냐가 유럽제국 중에서 최초로 발전정책을 취한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그들의 배는 지중해와 대서양, 이 두 큰 바다에 맞도록 각각의 장점이 잘 배합된 형이었다. 계다가 두 나라 모두 봄과 초여름에는 배를 대서양 남서쪽으로 보내고 가을에는 방향을 바꾸어 귀환시키는 일정한 바람을 이용하기에 알맞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또 이 나라들에는 유럽의 다른 지역보다 훨씬 오랫동안 십자군정신이 유지되었고, 에스파냐가 마지막 이슬람교도를 그 나라에서 추방한 것은 1492년이 되어서였다.

한편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을 탐험활동의 유능한 손과 발이라고 한다면 르네상스시대의 이탈리아는 그것의 섬세한 두뇌라고 할 수 있다. 이탈리아의 작은 나라들은 탐험대를 계속 내보낼 만큼 유복하지 못했고, 혼자 힘으로 식민을 후원할 수도 없었다. 이탈리아의 상인은 새로운 먼 거리의 시장을 발견하기보다는 기존의 시장을 유지하기에 급급했다. 이탈리아가 개척한 것은 탐험에 필요한 과학인 수학, 천문학, 지리학의 이론이었고, 이렇게 이탈리아의 새 이론과 교육을 받은 뱃사람이 다른 나라의 항해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포르투갈과 에스파냐만이 한창 활동을 하던 탐험시대의 초기에 이베리아반도의 이 두 나라들은 자기들이 발견한 것을 비밀에 불이려고 했다. 그러나 리스본이나 세비야의 외국상인들은 돌아온 배가 향료나 상아, 노예, 염료 등을 하역하는 것을 보기도 하고, 뱃사람들의 잡담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배길 안내인에게 뇌물을 주어 지도를 베끼기도 했다.

그들은 수집한 이러한 정보를 모두 모국으로 보냈다. 정부는 새로운 부나 권력의 획득을 기대

하여 열광했고, 민간인은 부와 모험으로 가는 새로운 길이 거기에 있음을 알아차렸다. 우선 영국이, 이어서 프랑스가, 그리고 16세기 말엽에는 네덜란드가 그 대열에 뛰어들자 드디어 탐험은 유럽 전체의 움직임으로 발전했다.

탐험시대를 통하여 유럽인들은 무엇이든 그들이 하려고 결심한 일을 실행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그들이 지구상을 활보함에 따라, 그들은 마치 우리를 인간이 활동적이고 총명한 화성인에게나 부여할 만한 기묘한 특권을 획득하기에 이르렀다. 그들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은 자연의 힘 뿐이었다. 르네상스문화의 주류에 속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탐험가들은 르네상스 인들의 본질적인 구성요소를 갖추고 있었다. 몇달 혹은 몇년씩이나 미지의 세계와 직면하여 전문가와 모국 정부의 이론이나 지지에 기대지 않고 오로지 자기 자신의 기술과 용기, 또 임기응변의 능력에 의존한 이들 탐험가의 이야기만큼 르네상스의 개인주의를 의미있게 연구할 수 있는 분야는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고대와 중세의 해외진출은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과거의 역사를 현대와 연결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들은 지나간 역사에서 교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한국이 본격적으로 해외로 진출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당국이나 기업체의 해외진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될 것이다.

參 考 文 獻

1. BIGGAR, H. P., *The Precursors of Jacques Cartier, 1494-1534*(Ottawa, 1911).
2. BONINGTON, C., *Quest for Adventure*(London, 1981).
3. CAMERON, I., *To the Farthest Ends of the Earth: the history of the Royal Geographical Society*(London, 1970)
4. _____, *Explorers and Exploration*(London, 1991).
5. DELPAR, H. (ed.), *The Discoverers: An Encyclopedia of Explorers and Exploration* (New York, 1972).
6. FERN NDEZ-ARMESTO, F., *The Times Atlas of World Exploration*(London, 1991).
7. GAVET-IMBERT, M. (ed.), *The Guinness Book of Explorers and Exploration* (Enfield, 1991).
8. GOODMAN, E., *The Explorers of South America*(New York, 1972)
9. HEMMING, J. M., *The Conquest of the Incas*(London, 1970).

10. _____, *Red Gold*(London, 1981).
11. _____, *Amazon Frontier*(London, 1987).
12. HERBERT, W., *The Noose of Laurels: The Discovery of the North Pole*(London, 1987).
13. HOPKIRK, P., *Trespassers on the Roof of the World* (London, 1982).
14. _____, *The Great Game*(London, 1990).
15. KEAY, J., *When Men and Mountains Meet*(London, 1975).
16. MIDDLETON, D., *Victorian Lady Travellers*(London, 1962).
17. MOORHEAD, A., *The White Nile*(London, 1962).
18. _____, *The Blue Nile*(London, 1962).
19. NEWBY, E., *The World Atlas of Exploration*(London, 1975).
20. _____, *A Book of Travellers' Tales*(London, 1985)
21. NOYCE, W. *Springs of Adventure*(London, 1958).
22. PENNINGTON, P., *The Great Explorers*(London, 1979).
23. PENROSE, B., *Travel and Discovery in the Renaissance*(Harvard, 1952).
24. Peter Morter, Neil Grant, *The Great Atlas of Discovery*(London, 1992).
25. QUINN, D. B., *New American World: A Documentary History of North America to 1612*(New York, 1979).

스웨덴 경영참가제의 전환 과정

安 鐘 泰*

目 次

- | | |
|-----------------------|------------------------|
| I. 서 언 | 2. 종업원임원참가제 |
| II. 노동운동의 발전과정과 노사관계 | 3. 공동결정체 |
| III. 경영참가제도의 발전과정과 내용 | IV. 종업원투자기금제의 전개과정과 평가 |
| 1. 기업협의회제 | V. 맷음말 |

I. 서 언

스웨덴은 시장경제의 바탕 위에 사회주의적 요소를 부분적으로 도입한 선구적인 혼합경제 체제에 의해 독특한 「스웨덴 모델」을 정립함으로써 오늘날 전형적인 복지국가를 이룩하였다. 스웨덴 모델은 복지정책, 노동정책, 소득재분배정책 등을 축으로 하여 완전고용과 소득 균등화를 달성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 중에서도 스웨덴 모델로 일컬어지게 된 근본적 배경에는 1930년대 이후 스웨덴의 노사 관계 특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1938년 노사간 살초요바덴 협약 체결에 의해 노사관계에 있어서 협의와 협력의 초석이 되었고, 노조와 사용자는 임금결정과 산업평화에 대해 완전히 책임을 져야 하며 반면에 정부는 완전고용의 달성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철학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노사 양측의 이해관계는 합리화와 생산성 제고 및 산업민주화를 촉진하도록 하면서 정부의 단체교섭 개입을 배제하는 노사자치주의를 실현시키게 하였다. 그 결과 1960년대 고도 경제성장과 더불어 지속적인 산업평화에 힘입어 스웨덴 모델이라는 개념이 전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1970년대 세계경제의 충격(oil shock) · 불안정과 함께 스웨덴 모델은 근로 · 저축 · 투자 및 창업의욕을 감퇴시킨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 시작하였다. 특히 높은 담세율과 정부개입의 증가에 따른 과도한 복지혜택은 외부로부터의 수해에 의존하는 의타심을 야기시키고, 공공부문의 급속한 증대에 따른 관료화, 재정적자 · 파탄 등이 계속 이어지면서 경제 · 사회적인 부작용 내지 스웨덴 경제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문제점으로 표출되게 된

* 강원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교수

것이다.

본 연구는 스웨덴 모델 또는 대표적 북유럽 국가로서의 초석을 이룬 스웨덴의 거시적인 경영참가제도 발전과정과 그 구체적 내용을 고찰하기로 한다. 경영참가제란 원래 사용자의 배타적 경영권을 생산활동에 있어서의 노동자들의 기능적 역할과 조화시켜 노사의 협력관계를 수립하면서 노동자·노조의 기업경영에의 참여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는 산업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한 제도로 나아가 노동의 인간화·경영의 민주화라는 슬로건으로 모색·확충되고 있다. 따라서 스웨덴의 노사관계 현상을 노동운동의 발전과정에서 추출 설명하고, 시대적으로 발전해 온 경영참가제도로서 노사자치에 의한 기업협의회제도, 단체교섭의 확대·그 기능상의 한계로 입법화과정을 통하여 실현한 종업원임원참가제도 및 공동결정제도를 각각 구분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또한 스웨덴 모델이란 명성의 퇴조를 가져오게 한 종업원투자기금제도를 그 구상에서부터 전개과정을 언급하고, 그에 대한 한계점·문제점 및 전망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II. 노동운동의 발전과정과 노사관계

스웨덴은 유럽제국과 비슷하게 자유주의사상의 물결과 신산업의 발달로 19세기 중엽 이후 산업혁명의 기틀이 급속히 진전되었다.

19세기 초기, 수공업자의 길드제도가 붕괴되면서 노동자의 단결금지를 위한 법적조치가 폐지됨에 따라서 기술공의 단체가 자유롭게 조직화하여 1848년에 스웨덴 최초의 조합인 스룩홀름 인쇄공업조합이 결성되었다. 1880년대 및 1890년대에 공제활동과 상호부조적 성격을 갖고 업종 혹은 직능별 원칙에 입각한 초기의 노동조합 형태들이 존재했다. 그 후 노동자단결 및 노동자보호에 관한 노동입법의 발달과 아울러 노동운동은 활성화되어 1886년에 인쇄업에서 최초의 직종별 전국조합이 조직되고, 단체교섭권 확립운동의 전개와 노동조합의 지위가 확고히 되면서 1898년에 “사회민주노동당대회 규약”¹⁾에 의해 “스웨덴 노동조합총동맹(이하 LO라고 함)²⁾”이 노동자의 중앙조직으로 결성된 것이다.

1) 사회민주노동당(Socialdemokratiska Arbetare Partiet : SAP)은 1889년에 조직되어 많은 노조 간부를 그 평의회위원으로, 당 자신이 노조의 협력기관이라함. 그리고 LO의 구성조합은 일괄적·자동적으로 사민당에 참가할 것이 규정되었으나, 1900년 이 조항은 폐지되고, 당에의 집단가맹은 전국조합의 자부(local union)에 자유선택으로 말겠다.

2) LO(Landes organisationen i Sverige, The Swedish Trade Union Confederation)는 결성 당시 16개 전국 조합과 37,523명의 조합원을 가짐. 1997년 현재 25개 전국조합(44개에서 조합), 조합원 200만명으로 블루 칼라 노동자를 조직하고 사민당에 가깝다.

사민당과 자유당의 지지로 영국의 차이티즘운동과 비슷하게 보통선거권 확득을 위한 제네스트가 1902년에 발생했다. 이것에 반대의 입장을 갖고 또한 노동운동의 활성화에 두려움을 갖던 경영자들은 동년에 “스웨덴 사용자 연맹(이하 SAF라함)³⁾”을 사용자의 중앙조직으로 조직하였다.

SAF와 LO는 1906년 12월의 화해(December Compromise)⁴⁾라 불리는 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통일중앙조직력을 바탕으로 교섭과 쟁의·공장폐쇄가 계속되었다. 한편, 당시의 집권당인 보수당은 이 노사투쟁에 불개입의 태도를 취하였던 바 법률이나 정부의 개입없이 노사가 자주적으로 협약을 체결하는 기틀을 마련한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중앙조직간 단체교섭제도의 발전은 1908년까지 2,214개의 단체협약이 체결되고, 12,614명의 사용자와 318,190명의 노동자가 적용받는 단체협약제도가 확립된 것이다⁵⁾. 이러한 점은 노사의 임의적 단체에 의한 스웨덴형 노사관계로 오늘날까지 유형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1907년부터 밀어닥친 불황으로 임금인하의 단행이 행하여져 스트라이크가 빈번했고, 이에 SAF는 LO가 맹조합원 전원에 대하여 통일적 공장폐쇄를 선언했다. 이에 LO는 1909년 8월 제네스트를 실행했으나 동년 12월에 폐배로 끝나, 1917년이 되어서야 같은 수준의 노조원을 유지할 수 있는 큰 손실을 입었다⁶⁾.

제네스트에 참가한 활관인쇄노동조합에 대해 Aftonbadet 신문사는 단체협약 불이행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915년 최고재판의 결과 그 성립은 부정했으며, 이 판결에 의해 단체협약의 법적 규범효력은 승인받게 되었다. 그리고, LO는 정당을 통한 정치활동과 전면적 투쟁방식에서 노동자교육 및 사용자와의 교섭운동으로 그 방향을 전환하여 정당조직에서 독립했다. 그러나 이에 반대한 상디칼리스트가 분열해서 “스웨덴 노동자중앙동맹(SAC)”을 조직했다⁷⁾.

국가는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1920년대 업종내의 분쟁에 관한 법을 비롯하여 노동관계법을 제정하였다. 특히 1928년 단체협약법은 단체협약의 법적 효력을 입법으로 확인하고, 법률상의 쟁의 및 협약상 해석을 위한 쟁의 경우 노사의 적대행위를 강제적으로 금지시켰다. 그리고 노사의 실력투쟁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법적 분쟁이 재판소에서 해결 중

3) SAF(Svenska Arbetsgivareingen, The Swedish Employers' Confederation)는 1988년 현재 43,000 가맹 기업, 36개 산업별단체로 조직되고, 스웨덴 노동인구의 30%인 120만명을 포함한다.

4) 이 협약에서 LO는 단결권을 보장받았으나 1970년대까지 계속 지속해온 SAF규약 제23조(후에 제32조)를 인정했다. 즉, closed shop을 금지하고, 사용자의 고용·해고 및 직무의 결정 등에 관한 경영권을 보장해 준 것이다.

5) 日本商業労動組合聯合會編, 「世界の労動協約と労動法」, 総合労動研究所, 1976. p. 59.

6) L. Forsebäck, *Industrial Relations and Employment in Sweden*, the Swedish Institute, 1980. p. 8.

7) 津田眞徳, 「労動關係の國際比較」, 日本労動協会, 1970. p. 107.

재될 수 있도록 노동재판소법을 제정하였다. 노동법에 의한 분쟁해결과 차리추세에 따라 1933년 하원 조사위원회는 노사분쟁의 해결안을 제출하였고, 모든 노동자(white color 노동조합 및 미조직 노동자)에 대해서 조합활동을 법률상 보호하고,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승인한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관한 법을 1936년 제정하였다. 이와 같이 노동법에 의한 분쟁해결과 하원 조사위원회의 조직화 등 국가개입이 강력해짐에 대한 SAF와 LO의 반대는 1936년 LO와 SAF의 공동기관으로서 노동시장위원회⁸⁾를 설치하여 제안하였고, 이것을 1938년 12월 살츠요바덴(Saltsjöbaden)에서 자주적 기본협약⁹⁾ 기본협약으로 해결하게 되었다.

1906년 협정 아래 단체교섭·협약의 역사는 1938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고 노사에 의한 노동시장의 자주관리라는 스웨덴형 노동운동의 확립기였다. 뿐만 아니라 노사간에 확인된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자의 권리가 법률에 의해 점차 보장받게 된 시기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있어서 사용자의 태도도 강압에서 협조로 바뀌고, 노사쌍방은 책임하의 자유정신으로 실력과 위신을 지키는 노사안정화를 이루었다. 그리고 오늘날 스웨덴은 국제적으로 높은 노동조합조직율¹⁰⁾과 생활에 의한 낮은 노동손실일수를 나타내며 이는 곧 노사의 전국협약이 평화의무를 존중함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다.

국가가 노동시장에 있어서 고용조건을 규제하는 경우는 극히 미세한(예를 들면 휴가 및 노동시간에 관한 법률 등) 부분에 한정하여 입법화한 것도 스웨덴 노사관계를 노사자율주의로 볼 수 있다. 즉 임금 및 노동조건의 대부분은 노사 중앙조직간의 단체교섭에 의하여 협약화하는 것이다. 그 대표적 예로써 단체협약내 임금액의 결정을 위한 단체교섭은 금속산업에서 시작하여 패턴교섭의 성격으로 중앙집권적 단체교섭이 행하여져서 중앙협약임금율은 지역별·기업별로 적용된다. 그리하여 SAF와 LO는 1948년 시간 및 동작연구에 관한 협약에 의해 작업연구조직을 만들고 1955년 이후 직무별임금율을 보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기업별로의 협약임금율은 노동력 부족에 따른 기업의 수요경쟁으로 임금부상(wage drift)이 실질임금율을 높이고, 또한 일종의 최저임금율로서 그 기능을 하고 있다¹¹⁾.

이러한 관행은 기본협약 아래 60년간 그 단체교섭제도의 기초를 확립하고, 더욱이 전산업에 걸쳐 통일교섭에 의한 통일협약을 모델로 하여 계속 각산업·각기업의 협약이 체결되고

8) 이 위원회는 LO와 SAF에서 각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해고·휴직문제·중요공공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경제적 규제제한조항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취급한다.

9) 기본협약은 ① 노동시장위원회의 설치 ② 분쟁의 해결방법 ③ 노동자의 저위보전 ④ 스트라이크·공장폐쇄 등의 직접행동의 제한 ⑤ 일반사회의 이익보호의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0) 일반적으로 서구제국, 미국, 일본은 대부분 약 20%의 조직율을 갖지만, 스웨덴은 blue color의 90%, white color의 70%가 노동조합원이다.

11) 津田真徵, 前掲書, pp. 110~112.

있다. 이러한 노사자율적·자치주의에 입각한 전국산업·기업별 단체교섭의 관행은 오늘날 까지 계속 반영되고 있으나, 1970년대에 그 방향이 노동입법화과정을 통하여 작업장 레벨로 점차 분권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III. 경영참가제도의 발전과정과 내용

1. 기업협의회제

노사간에 협력에 관한 토론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¹²⁾ 적어도 노동자측은 이 문제를 작업장에서 민주주의의 중진이라 하여¹³⁾ 기업경영에의 참가를 요구하고 있다. 2차대전 후 서구에서는 단체협약철위 외의 문제들에 영향을 주고 종업원의 발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률이나 단체교섭을 통해서 기업협의회(Work Council)를 제도화하였다¹⁴⁾.

스웨덴 역시 1920년대 정부주도의 합동협의체(joint consultative bodies)를 기업수준의 법안으로 제시했으나 노사대표는 이를 거부했다. 사용자측은 기업활동의 경영권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고, 행동의 자유를 구속한다는 것이고, 반면 노동조합은 법안의 실질가치가 노동자에게 큰 영향력이 없으며 기업내에 협조적인 범령기관은 현재의 노조기구에 위험한 경쟁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 등에서 이 법안을 반대하였다.

이러한 점은 타국의 토론, 경험에 많은 영향을 받아왔지만, 스웨덴 산업생활의 전형적인 전통·제도 등에의 적용도 필요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노사협의문제는 법률에 의해서가 아닌 교섭을 통한 협약에 의거한 스웨덴의 노사자치·자율적 관행이 반영되어 20여년간 해결되지 않았다.

북유럽 노르웨이(1945년 합동생산위원회), 덴마크(1947년 공장위원회)의 상호영향으로 스웨덴에서는 1946년 7월 LO와 SAF간에 75명 이하 고용기업내 기업협의회(공장위원회, 경영협의회라고도 함)의 설치를 규정했으나¹⁵⁾ 동년 8월 재협정에 의해 적용기업이 확대되어 25명 이하 고용기업에서 어느 한편이 원하면 대표자로 구성되는 기업협의회 설치를 협약화

12) 1891년 프러시아제국시대의 도이치의 개정 영업조례를 법률에 의한 노사협의체의 설치를 정한 최초의 예이며, 1차대전시 서구에서는 전시하 노사관계의 안정·협력을 위한 각국의 제형태가 있었다. 특히 1920년대 기업내 자본과 경영의 분리현상 및 노동자정당정부의 노동자정책 등이 촉진적 역할을 했다.

13) K. O. Faxén & E. Pettersson, *Labour-Management Cooperation at the Level of the Undertaking in Sweden*, *International Labour Review*, Vol. 96, No. 2, 1967. p. 194.

14) T. Mills, "Europe's industrial democracy: an American response," *Harvard Business Review*, Nov-Dec., 1978. p. 149.

15) 池田直視, 「労使協議の制度」, 評論社, 1958. pp. 145~146.

했다.¹⁶⁾

한편 공장별조합(local union : 자부)과 기업협의회간의 갈등을 극소화시키기 위하여 모든 단체교섭은 노조의 채널을 통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노사양측은 정부개입의 정당성을 제거시키도록 노력했다.

이 기업협의회는 최량의 생산달성을 위하여 노사간에 계속적 협조를 유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기업협의회에서의 정보·협의는 경제적·생산상의 문제에 관한 조언 내지 정보연락만의 단순한 자문기관이다. 그리고 그 역할과 임무는 ① 생산성향상·능률증진을 위한 협조, ② 기업경영사정(생산·기술·재무 등)에 관해 종업원에게 정보를 전달, ③ 해고·휴직·고용·재고용 등 고용의 보장에 관해 협의, ④ 안전·보건 및 직업훈련에 관한 각 대표와 협력, ⑤ 기타 기업내의 생산방법, 노동조건의 개선 등에 관해 제안제도의 실시 등이다¹⁷⁾.

그러나 20년간 협약실행기간에 노사쌍방은 많은 비판을 하여 1958년 소규모 개정을 거쳐 1967년 1월 1일 신기업협의회 협약(New Works Councils Agreement)이 발효되었다.

1957년 LO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업협의회에 관한 연구·검토 후 1961년 노동조합운동과 산업민주주의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노동조건에 영향을 주는 기업내의 조건에 관해서 각 레벨에서 협의하고, 정보제공을 하고, 특히 노동자가 공동결정에까지 실질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이 작업장의 민주화척도라고 주장하였다.

LO의 발표 후 SAF는 산업민주주의에 관한 연구단을 구성하여 1965년 2월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기업내 최고경영층에서의 노사협력을 위한 공식기관의 존재는 노동자개개인의 태도와 직무만족에 거의 영향이 없으며, 더욱이 직무만족 외에 협력의 주요목표로 고생산성과 정당한 이해에 대한 존중을 강조했다. 따라서 작업레벨에서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도할 개발위원회를 양측이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LO는 SAF보고서를 기업협의회의 개정토의로 판단하고, 1965년 3월 SAF에 ① 기업협의회는 경영자와 기업내 노조에 의한 종업원간의 정보채널이고 협의기관이다. ② 기업임원회를 보조할 자문적 권한이 있어야 한다. ③ 인사문제를 기업협의회 내에서 협의하고 종업원은 이 것에 영향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④ 보다 구체적인 경제적 사항에 관하여 새로운 정보를 전달할 것. ⑤ 소위원회는 분권화되고, 작업시간 중 실질적 협의 기회가 많아야 한다 등의 20개 항목을 제시했다. 그리고 작업레벨에서 기업협의회의 계속성·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

16) 종업원대표위원의 선출은 무기명투표에 의하고, 종업원 모두가 예외없이 참가하고, 피선거권은 20세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종업원이어야 함. 그리고 규모에 따라 다르나 50명 이상 기업에서는 blue color 7명, white color 5명, 사용자측 7명으로 구성된다(小池和男, 「労動者の經營參加」, 日本評論社, 1978. pp. 84~85.).

17) 日本商業労動組合聯合會篇, 前掲書, p. 91.

별협의회의 구성을 제안했다¹⁸⁾.

이상과 같이 양자는 1965년 6월 기업협의회에 관하여 새로운 고섭이 시작되었을 때 SAF와 LO는 서로 의견을 달리했다. 즉 LO는 기업내 노동자의 지위를 확장시키고, 산업별연합체의 특별합동기구 설치를 요구했다. 반면 SAF는 협력이 실제 적용될 수 있는 개개 특별기업의 시스템을 요구하고, 이것이 미래 전국협약화되면 세부사항은 로칼협약에 의하고, 협력에 관한 중앙조직체의 책임은 합동개발위원회에 의해 수행되어 로칼협의체를 자극시키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로칼레벨에서 협의의 계속성에 대한 공통기본 접근과 양자의 연구위원회의 조직체는 SAF와 LO·TCO¹⁹⁾간에 새로운 기업협의회를 위한 초안이 1966년 4월 원칙으로 채택되는데 큰 기여를 하여 1967년 1월 기업협의회 및 대표권에 관한 협약이 시행되고, 노사간 협조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 협력의 목표·형태에 관해 상세히 규정하였다²⁰⁾. 동협약은 협조를 위한 개발협의회의 공동설립을 규정하고²¹⁾, 그 기능은 기업내의 효율성 제고(생산성과 직무만족)를 위해 계속적 개선과 협력의 발전에 두며, 역시 협력에 관한 조사·연구도 증진시키는데 있다.

새로운 기업협의회는 결정기관이 될 수 없으므로 기술 변화 등에 수반한 고용의 변화에 사전협의를 하고, 더욱이 생산·경제·인사문제 등 기업경영의 결정사항에도 그 협의범위를 확대시켰다²²⁾. 특히 경제정보는 미래지향적이고, 주주총회에서 주주가 받는 것 이상의 것이어야 하고, 인사정책(모집·선발·승진·재훈련·배치 등)에 충분한 정보와 협의가 있어야 한다.

서구의 노조는 직능별·산업별로 조직되고 또한 지역을 조직범위로 하는 기업간 횡단조직이므로, 한 기업내 수개노조의 조합원이 있다. 그러므로 기업내의 종업원 전체를 기업협의회에 구성하기 위하여는 노조원의 성격이 아닌 종업원 자격으로 조직하는 노조배제의 성격을 갖는다²³⁾. 그러나 스웨덴의 새로운 기업협의회에는 종업원 대표를 로칼조합에서 선출하고, 로칼조합장은 자동멤버로 될 것을 규정하고, 그 적용범위도 50인 이하 고용기업으로 확대하였다. 즉 기업협의회는 노조의 정규의 활동영역으로 통합된 것이다²⁴⁾.

18) K. O. Faxén & E. Pettersson, *op. cit.*, pp. 198~199.

19) 스웨덴직원중앙조합(Tjänstemännen Central Organisation, The Central Organization of Salaried Employees in Sweden : TCO)은 1944년 white color 노동자의 중앙조직으로 조직되었고, 1996년 현재 19개 가입조합, 30만 조합원이다.

20) *Ibid.*, pp. 199~200.

21) SAF 5명, LO 3명 및 TCO 2명으로 구성.

22) 隅谷三喜男編著, 「労使關係の國際比較」, 東京大學出版會, 1978, p. 214.

23) 津田真徳, 「労使關係」, 日本經濟新聞社, 1980, pp. 174~175.

이러한 점에서 노사는 단체교섭과 별개의 제도로 기업내 일상노동생활에 전념할 수 있으므로, 노동자의 욕구충족과 능력에 맞는 직무조정을 쟁의가 아닌 상호협력으로 하여 생상성향상·직무만족에 큰 기여를 했다.

그러나 기업협의회의 활동과정에서 경영측이 경영정보를 노조측에 용이하게 제공하지 못하고 노조측이 경영정보를 분석할 능력의 문제가 생겼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1975년 민간부문에서 SAF와 LO·PTK(TCO와 SACO²⁴⁾와의 공동교섭조직)간의 경제위원회협정을 체결했다²⁵⁾. 이 협정에 의하면 기업협의회의 노조측 대표는 ① 경제위원회 ② 종업원의 경제전문가콘설턴트 ③ 공공자격의 외부 경영전문가에 의한 것인가의 어느 하나로 경영상황의 원시데이터에 응하기로 되었다.

그리고 현행 협약과 실태는 차이가 있고, 그 운영실태에 관해서 자료와 문헌의 한계로 확실히 파악할 수는 없으나 대기업의 운영실태²⁶⁾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① 기업레벨에 전체기업협의회가 있다. 경영측 7명, TCO 및 관계조합측 7명, LO측 7명이고, 기업의 경영상황이 설명된다. 그 밑에 인사·생산과 투자·안전·제안제도의 4개 전문위원회가 있다. ② 국내관계공장을 4개의 부문으로 나누어 부문협의회가 설치되어, 생산판매상황, 경영계획을 설명하고, 작업환경의 제문제에 관하여 조합의 요구를 협의한다. ③ 종업원 50명당 1인이 기술직원의 통제범위로 되는 직장협의회가 있다. 기술직원·직장·조합의 직장위원(shop stewards), 안전담당위원이 참가하여, 직장내의 모든 세부사항까지도 협의한다. 특히 이것 이로칼조합 활동의 영역이란 점에서 우리나라의 노사협의제와 비슷한 성격·역할을 보이고 있다.

2. 종업원임원 참가제

앞에서 설명한 기업협의회의 활동에서 종업원은 아무런 결정권이 없다는데 큰 비판을 하기 시작했다. 기업협의회에서 협의·공동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노동조건의 일부(안전위생·복리후생·임금지불방법 등)인 노동자의 고충문제에만 한정되고, 경영의 경제적·생산적·인사적 사항은 설명이나 통보정도에 불과한 것이다.

24) 津田眞徵·岸田尚友, 「歐洲の労働者参加」, 日本生産性本部, 1977, pp. 32~33.

25) 스웨덴전문직원조합연합회(The Central Organization of Swedish Professional Workers : SACO)는 1947년 결성되었고, 1974년 스웨덴 공공종업원전국동맹(The National Federation of Civil Servants : SR)과 통합됨. 주로 중앙·지방행정기관의 직원 및 군대장교로 조직되어 1980년 현재 20만 조합원을 갖고 있다.

26) 경제위원회는 노사동수로 각측이 최고 3명으로 구성되고, 기업협의회의 하부기관으로 설치된다.

27) 津田眞徵·岸田尚友, 前掲書, pp. 33~35 및 小池和男, 前掲書, pp. 77~78과 pp. 86~88.

그리하여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의 범위를 확대함에 의해서 기업경영에 공동의사결정과 일상의 노동생활에 있어서 종업원의 자주적 결정의 실현을 구상하게 되었다.

LO는 1969년 조사를 착수하여 1971년 대회에서 노동자측이 감사임원을 선출할 권리의 입법을 요구하는 산업민주주의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산업민주주의의 측면에 관한 SAF와 LO·TCO간의 단체교섭에서 노사가 합의에 도달할 수 없었다.

스웨덴의 노사관계에 있어서 정부는 가능한 불개입의 전통으로 노사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기초설정 외에는 입법을 극히 제한해 왔다. 그러나 1960년대 말부터 노조는 방침을 전환하여 정부의 입법을 통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하여 종업원임원참가, 고용보장과 작업의 공동결정 및 종업원투자기금안 등이 스웨덴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종업원임원참가제도를 구현하는 주식회사 및 협동조합 조직의 종업원의 임원참가의 법률은 1972년 12월 의회를 통과했고, 1973년 4월 1일에 시행되어 1976년 6월 30일에 기간이 끝나는 시한입법이었다. 그리고 이 법률의 적용에 관한 금후의 방향은 정부 혹은 정부가 정한 기관에서 정하도록 했다(§ 18).

이 법률에 의하면²⁸⁾ 종업원 100인 이상의 주식회사나 소비자협동조합 및 생산조합에 종업원 대표 2명을 감사회 대표로 참가시킬 수 있다(§ 1). 참가의 결정에 있어서는 종업원 과반수 이상의 로칼조합이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고하고(§ 7), 하나의 노조가 종업원의 3/4 이상인 경우에는 이 노조가 대표 2명을 선출하고, 그 이외에는 최다수의 종업원을 조직하는 2개의 조합이 각 1명의 대표를 선출한다(§ 8~9). 다만 1972년 1월 1일 현재 감사회의 임원수가 3명 미만인 주식회사에는 적용 않는다(추가조항). 또한 종업원 대표는 쟁의의 행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의 체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12).

기업 조직내에서 감사회의 위치와 그 구성 및 권한은 다음 <그림 1>에서 볼 수 있다²⁹⁾.

1974년 4월에 산업성은 전국산업위원회(NIB)에 위촉하여 이 법률의 실시상황 및 1976년 7월 이후 개선의 경우 조문개정의 필요상황에 관하여 조사를 하여 1975년 12월에 보고서 발표되었다. 그 내용의 중요한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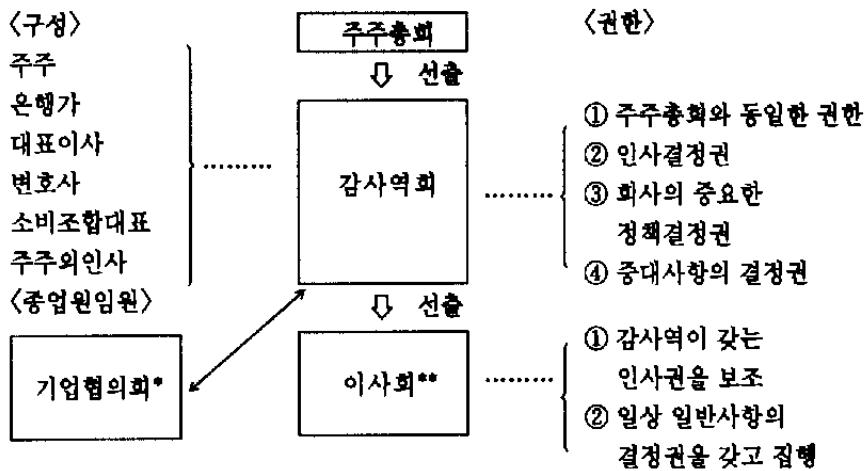
1) 감사회의 활동 형태와 역할

종업원임원참가의 실시율은 82%이었고³⁰⁾, 특히 500명 이상 고용기업에서는 그 실시율이 97%로 높다. 이 법률의 실시로 임원수는 7명에서 9명 정도 증가하여 종업원임원의 비중은

28) 津田眞微·岸田尚友, 前揭書, pp. 33~35. 小池和男, 前揭書, pp. 77~78과 pp. 86~88.

29) 日本商業勢動組合聯合會議, 前揭書, p. 98.

30) 1972년 중앙통계국(CBS) 통계에 의하면, 적용기업수는 2,056기업 중 약 1/4은 본법률상 제외되어 1,556기업이다. 그 중 18%가 임원을 선출하지 않음(3%는 준비 중이고, 6%는 자회사이므로 불필요하고, 6%는 포기함).



- 기업이 큰 경우에는 상호의 커뮤니케이션은 기업협의회를 통해서 조직 활동을 한다.

- 스웨덴의 법률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대기업은 거의 설치됨. 그러나 단위 공장·기업에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림 1> 감사회의 구성과 권한

1/4 정도로 되었다³¹⁾. 동년 개최회수는 거의 5회 정도로 서독의 감사회와 비슷하고, 1회의 시간은 대기업일수록 장시간이고 상장기업은 모두 3시간 이상이다. 감사회 활동에 임원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전정보의 입수 정도에 있다. 대부분 감사회 개최전에 정보를 받고 있지만, 경영결정에 주요내용인 인사·재무·투자정보는 25% 정도 회의석상에서 받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³²⁾.

2) 감사회 활동의 내용

감사회는 기업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지만, 종업원임원의 50%는 기업의 주요결정이 여기서 결정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감사회에서 다루는 의제는 재무·투자에 관한 것이 3/4 이상을 차지하고, 생산·영업이 그 다음이고, 인사·작업환경은 그 빈도가 상당히 낮다³³⁾.

3) 종업원임원의 특징

종업원임원의 소속노조비율은 20%는 LO, 5%는 PTK가 2명의 임원을 독점하고, 나머지

31) 서독 경영조직법하의 감사회에서의 1/3보다 하회하고, 신공동결정법하의 2,000명 이상의 대기업의 등수참 가보다 훨씬 낮다.

32) The National Industrial Board, *Board Representation of Employees in Sweden*, Dec. 1975, p. 26.

33) Ibid., p. 28.

75%는 각각 1명씩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대개의 임원이 로칼노조의 협의회활동을 경험하고, 조합장인 경우도 많다.

4) 종업원임원의 활동상황

40%의 종업원임원이 일반종업원과 커뮤니케이션을 갖지 않고, 기업내의 기업협의회에 보고되는 비율도 상당히 적다. 그리고 종업원임원의 경영비밀의 준수에 있어서 70% 정도가 긍정적이다. 특히 종업원임원의 활동은 활발하고, 주로 인사문제에 관해서 의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³⁴⁾.

5) 노사쌍방의 평가

경영자측은 종업원임원제의 평가에서 10% 정도 부정적 회답을 한다. 그 이유로는 종업원임원의 능력결여로 본인이 무관심하여, 감사회가 종업원임원을 위한 강의 장소로 된다는 것이다.

또한 생산·투자·재무·영업의 제사항에 대한 공헌도는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³⁵⁾. 이것은 경영자측 임원이 사전에 의사결정을 하고 형식적으로 임원회에 협의한다는 점도 지적될 수 있다. 반면 어떤 비즈니스지의 앙케이트 조사에 의하면 경영자와 80%가 종업원임원이 기업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라고 답하고 있다. 그 이유는 노조의 태도가 감사회에서 결정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한다³⁶⁾.

이와 같은 조사결과에 의하여 NIB는 금후의 개정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첫째 1976년 7월 이후 항구입법으로 하고, 50인 이상 고용기업 및 50인 미만인 경우에도 3인 이상의 임원을 갖는 기업으로 그 적용범위를 확대할 것, 둘째 종업원임원은 감사회의 초안기초위원회에 참가할 자격을 부여할 것, 셋째 종업원임원대리도 감사회에의 출석권 및 발언권을 부여할 것 등이다³⁷⁾.

이상과 같이 종업원임원참가제의 효과는 인정받고 있다. 이것은 기업의 현재상황·미래계획 및 모든 정보를 보다 풍부하게 종업원에게 전달되므로 종업원이 경영상태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³⁸⁾. 이러한 점에서 오늘날 이 제도는 기업협의회와 상호의존 내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고, 나아가서는 다음의 공동결정제와 서로 밀접한 관계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34) Ibid., p. 32.

35) Ibid., p. 34.

36) 小池和男, 前揭書, pp. 91~92.

37) 津田真微·岸田尚友, 前揭書, pp. 39~45.

38) 小池和男, 前揭書, pp. 92~93.

3. 공동결정제

오늘날 서구에서는 노동자의 경영참가 혹은 산업민주주의의 실현으로 노사공동결정 및 노동자중역제가 실시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기업협의회의 기능확대를 위한 종업원임원참가제의 입법과 단체교섭의 범위 확대로 협약을 통하여 노동자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한 공동결정제의 입법은 노조의 강력한 힘과 의회의 측면 지원에서 달성되었다. 즉 노동자 대표는 기업경영의 풍부한 정보와 경영권의 공동결정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³⁹⁾.

단체협약에 계속 삽입되어 있던 1905년 SAF규약 23조(후에 32조로 더 보충됨)⁴⁰⁾의 경영권우리는 1974년 고용보장법의 시행으로 경영자의 작업지시·고용·해고권 등에 제한을 가하게 되었다⁴¹⁾. 따라서 기본협약의 제3장 노동협약의 종결, 유급휴직(lay off) 등의 예고라는 조항을 고용보장법으로 대신하고, 특히 경영자의 종업원해고의 제한 및 기존고용 종업원의 고용보장의 명확화를 도모하고, 노동권을 강화한 것이다⁴²⁾.

SAF규약 32조의 경영권 외에 경영관리권에 대한 노조의 권리확대를 위하여 노조는 1971 말 의회에 요청하였고, 1975년 1월 의회위원회는 법률적 행동을 위한 권고를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1976년 비록 사민당이 정권을 잃었지만⁴³⁾ 의회에서 법률로 통과되어, 1977년 1 월 1일 공동결정법이 시행되었다. 이 공동결정법은 1920년 노동쟁의조정법, 1928년 단체협약 법과 1936년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관한 법의 3가지 기본법률을 대신하고, 역시 단결의 자유, 단체교섭의 자유에 원칙적으로 그 기초를 두고 있다. 그리고 노사는 상호관계로 조직·교섭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정부는 양측의 신뢰성을 갖는 효율적 조정체제와 재판절차를 준비하도록 했다⁴⁴⁾.

공동결정법의 주요목적 혹은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공동결정협약

임금 및 노동조건에 있어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당사자간에 노조의 요구가 있으며,

39) A. Bouvin, "New Swedish Legislation on Democracy at the Workplace", *International Labour Review*, Vol. 115, No. 2, 1977, p. 131.

40) SAF규약 32조는 "사용자는 노동자가 조직되어 있던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을 할당하고 지시하고(to direct and allot the work), 노동자를 자유로이 고용·해고·이용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다.

41) 1974년 7월에 이 법을 외에 고용촉진법, 작업장에서 직장위원에 관한 법 및 노동소송법도 그 보조역할을 함.

42) 津田眞樹·岸田尚友, 前掲書, p. 28.

43) 1976년에 이어 1979년에도 중앙당·보수당·자유당의 3당연립내각으로 정부가 구성되어 있다.

44) A. Bouvin, *op. cit.*, pp. 132~133.

고용계약의 체결·파기 및 작업의 감독·분담 또는 그 외의 경영관리문제를 노사의 공동결정으로 협약화해야 한다. 이것은 기업의 모든 사항이 교섭의 대상으로 된 것을 의미하고, SAF 규약 32조의 경영관리·감독권이 노조의 우위방향으로 파기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노조는 소위 잉여권의 쟁의와 같은 산업행동이 발생한다⁴⁵⁾.

2) 교섭의 권리

사용자는 기업활동의 현황 및 변경(생산·판매·작업방법 등), 종업원의 배치전환 등의 주요문제에 있어서 결정 이전에 자발적으로 기업내 노조와 교섭·협상할 의무가 있다. 기업 레벨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전국레벨로 교섭이 전환된다. 즉, 사전교섭의무의 개념이고 노조의 교섭권을 강화시킨 것이다⁴⁶⁾.

3) 정보

공동결정제에 대한 권리의 기본전제는 노동자들이 기업활동에 관한 정보에 있어서 사용자와 동등의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⁴⁷⁾. 즉 사용자는 생산상황·경영수지상황 및 인사방침 등의 경영정보를 노조에 알려야 한다.

4) 협약해석의 우선권

공동결정사항 및 취업의무사항에 관한 모든 규칙의 해석은 노조측의 해석에 따른다. 단체 협약중의 임금·보수조항에 있어서 분쟁이 생기면 사용자는 교섭에 의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10일 이내에 노동재판소에 제소하게 된다⁴⁸⁾.

5) 개별협약 혹은 유사협정에의 노조의 거부

산업 혹은 직업에 관한 일반적 관행과 불일치하는(탈세를 하고, 통상임금율을 무시하고, 작업보호법규를 지키지 않는) 개별협약·유사협정에 노조는 거부하여 미연에 방지하도록 한다⁴⁹⁾.

그리고 공동결정법은 민간기업만이 아니라 공공부문에도 1965년의 법률이 폐지되어 1976년 공무에 있어서 공동결정법이 제정되었다.

노사자치주의에 입각한 스웨덴의 전통적 노사관계관행은 사민당정권의 장기적 유지에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사민당정부하의 LO는 입법수단으로 노조측이 그 관행을 파

45) *Ibid.*, pp. 135~136 및 L. Forsebäck, *op. cit.*, pp. 42~43.

46) *Ibid.*, pp. 136~137 및 L. Forsebäck, *op. cit.*, p. 41.

47) *Ibid.*, p. 137.

48) *Ibid.*, pp. 137~138 및 L. Forsebäck, *op. cit.*, p. 43.

49) *Ibid.*, p. 138.

기한 강력한 조치로서 경영권·경영관리권을 규제하게 된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고용보장법의 시행과 더불어 경영권·경영관리권을 지속적·촉진적으로 규제하고, 둘째 1973년부터 시행된 종업원임원참가제의 도입·실행에 있어서 경영정보의 충실화·노조의 지위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이다⁵⁰⁾.

IV. 종업원투자기금제의 전개과정과 평가

노사대등·협력관계를 기업내에 확립하기 위하여 노동자 혹은 노조의 경영참가는 기업경영권의 노사공동결정과 아울러 기업소유권의 노사공동소유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즉 경영의 노사공동관리라는 의미에서 프랑스의 종업원지주제 실시, 서독에서의 노동자재산형성정책을 더욱 진보시킨 1974년 기업이윤각출에 의한 초기업기금의 입법안 및 미국의 기업이윤분배의 일환인 스캔론플랜·럭커플랜 등은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스웨덴 역시 자본참가·이윤분배제를 1970년대초 소수기업에서 실시했고⁵¹⁾ 이를 경험으로 하여 스웨덴 노사관계에 있어서 일보 비약한 세계적으로 그 유예가 없는 종업원투자기금제(Wagelarners' Investment Funds)를 구상하게 되었다.

스웨덴 노조는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실현하기 위한 임금연대정책을 강조해 왔으나, 실제 상 기업경영내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⁵²⁾. 따라서 현재의 경영제도를 붕괴시키지 않고, 기업의 소유권을 변화시킴에 의해서 그 해결을 모색하려 하였다. 그러나 사민당과 노조의 좌파는 생산수단의 국유화 혹은 협동조합 소유로 하는 방법은 동구제국의 역사적 경험으로 보아 유효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시장경제의 유지, 기업의 이익획득활동은 계속하면서 자본의 사회화의 한 일환인 기업의 소유를 노조소유기업으로 하는 종업원투자기금제의 수단을 선택한 것이다.

이것은 금속노조의 좌파가 중심이 되어 1971년 LO대회에서 결의되었다. 1975년 8월 LO의 고문경제학자이고 노조의 이론적 지도자인 R. Meidner 교수가 그 기본안을 작성하였고 1976년 LO는 최종안을 공표하여, 빠르면 1979년 가을부터 실시할 계획이었다⁵³⁾.

그 내용은 종업원 50인 이상의 기업은 감가상각후의 세입이익액의 20%를 예면발행액주식으로 바꾸어서, 그 주식을 종업원기금에 넣어야 한다. 이 기금은 산업별로 설치되어 LO가입의 당해 산업별조합이 기금운영위원회의 지명권을 갖는다. 그리고 이 주식소유에 의한 배당

50) 津田眞微·岸田尚友, 前揭書, p. 31.

51) 스웨덴상업은행의 종업원이익기금제와 1973년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노동환경기금제가 대표적 예이다.

52) 津田眞微·岸田尚友, 前揭書, p. 47.

53) 遇谷三喜男, 前揭書, pp. 219~220.

금은 별개로 설립한 중앙투자기금에 넣어 노동자교육 및 종업원임원교육 등 전체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총당시킨다.

기금설립의 주목적은 주식취득을 수단으로 해서 기업의 주주총회를 통해서 감사회에 종업원임원을 파견하는 것에 있으며, 아울러 임금연대정책의 보충, 자본증대에 있어서 분배의 참가 및 스웨덴 경제에 노동자의 영향력 행사도 도모한다⁵⁴⁾. 그리고 기금에 있어서 주식모집을 계속함에 의해서 25년 후 스웨덴의 기업은 노동조합 소유기업으로 변화할 것도 목표로 한다.

이와 같은 LO안에 대하여 이 제도의 필요를 인정하는 입장에서 많은 비판을 하고 있다. 스톡홀름대학의 A. Lindbeck 교수의 비판은 다음과 같다. 첫째, LO안의 주장은 소유 및 권력의 집중에 대한 대항이지만 노조에 주식이 집중하는 것은 그 담당자만 변할 뿐이라는 것이다. 즉 오늘날의 다원사회에서의 노조의 존재이유를 망각한 고용주조직화할 우려성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기금의 산업별설치로 경제구조는 일종의 산업카르텔의 집합체화되어, 현재의 분권적 경영제도는 파괴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Lindbeck교수는 다원기금주의에 입각하여 모든 사회계층의 자본참가를 실시하도록 제안했다⁵⁵⁾.

LO안과 대비하여 SAF와 스웨덴 공업연맹(SI)은 공동연구회를 조직하여 Dahlström안을 공표했지만⁵⁶⁾, 이것 역시 노조측의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1976년의 총선거에서 사민당의 패배로 이 기금법안의 입법은 중단되었고, 1979년 총선에서는 LO와 사민당은 이 기금법안을 거의 거론하지 않았지만 집권할 수 없었다. 특히 이 기금법안의 발표 이후 투자활동이 급격히 후퇴되었고, 산업의 자본지출 역시 1977년·1978년 2년간 30% 정도, 동시에 개인저축도 급격히 감소했다. 한편 서독에서도 스웨덴의 영향을 받아, 1976년의 신공동결정법안 성립 직후에 기업이윤 각출에 의한 초기업기금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스웨덴 역시 보수당과 기업가들은 종업원투자기금을 맹렬히 반대했고, 기금법안은 여러 차례 수정을 거치게 되었다.

1982년 보수연립정권의 경제정책 실패로 사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여 집권당으로 되고, 1983년 12월 공산당의 지지를 받아 1984년부터 1990년까지만 운영하기로 하고 기금법안이 겨우 통과되었다. 통과된 종업원투자기금법은 원래 Meidner안과 비교하면 규모는 대폭 축소되고 변질된 상태이었다. 완화·변질된 종업원투자기금제도는 지역별로 5개의 독립적인 지역기금의 설치가 포함되었으며⁵⁷⁾, 기금의 재원으로는 첫째 세전이윤이 일백만SEK를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 세전이윤의 20%를 징수하고, 둘째 모든 기업에 대해서 인건비의 0.2%

54) L. Fordebäck, *op. cit.*, p. 122.

55) 津田眞徳·岸田尚友, 前揭書, pp. 49~50.

56) G. Dahlström, *Introductory Lecture at Workshop*, Oct. 8. 1976, pp. 15~17.

57) 김황조, 「세계각국의 노사관계」, 세계사, 1995, p. 226.

를 정수하여 종업원투자기금 제원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리고 종업원투자기금은 신주 형태로 출자하거나 출자 기업의 주식만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5개의 지역기금 운영을 위한 이사회는 9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그 중 5명은 노조대표로서 LO와 TCO가 임명하였다. 나머지 이사들은 사용자측의 전면적인 거부에 따라 학계, 협동조합, 지역노조, 시민단체 대표, 정치가 등으로 정부가 임명하였다.

종업원투자기금법은 기금운영을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하되, 수익성과 위험을 고려한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고, 투자기금의 전체 조세 수입(인플레이션을 조정한) 중 3%를 ATP기금에 출연하도록 했다. 그리고 각 기금은 특정 기업의 의결권 주식을 8%(1988년에는 6%로 축소됨) 이상 통제할 수 없게 해 노동자가 특정 기업 주식을 50% 이상 지배하지 못하게 했다. 따라서 종업원투자기금이 감소하지 않으려면 투자의 실질수익률이 적어도 3%를 초과해야 했다. 특정 기업의 종업원이나 지역노조가 요구하는 경우 투자기금이 보유한 그 기업 주식의 50%에 대해서는 종업원이나 기업이 속한 지역노조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일 그 기업의 노조가 1개가 아니고 의결권 행사에 대한 주주들간 의견이 불일치한 경우 지역노조들의 의결권은 각 노조 조합원 비율에 따라 행사되도록 했다.

기금의 투자대상은 스톡홀름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반이 확고한 스웨덴 산업의 주식이었고, 주로 기계산업이 관심의 대상이었다. 그리고 보험회사나 연금기금과 동일한 방법으로 운영되었다. 기금법안 구상의 초기단계에 비판론자들이 예상했던 것과 같은 국가사회주의 방향으로의 경제체제의 근본적 변혁을 초래할 정후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1991년 보수연립정권이 재집권하면서 종업원투자기금을 연장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1990년을 끝으로 투자기금의 신규출자는 중단되었다. 5개의 투자기금은 1989년에 스웨덴 총주가의 13.6%에 해당하는 주식과 총의결권 주식의 8.9%를 소유하고 있었다. 결국 종업원투자기금은 노동자의 사회적 소유를 통해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당초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투자기금의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끝났다.

종업원투자기금이 실패하게 된 요인 중의 하나는 사회기금의 형태를 취해 이윤분배가 직접 개별노동자에게 주어지기를 원하는 국민적 감정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LO와 Meidner는 종업원투자기금에 의해서 제대로 흡수되지 않은 이윤은 임금부상을 가속화하여 인플레이션경제를 심화시키거나 아니면 자본유출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예상은 적중했다. 종업원투자기금의 실패로 위험자본의 조달은 자본시장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고 자본시장, 특히 해외자본시장의 영향력은 더욱 증가했다⁵⁸⁾.

58) 조영철, 「스웨덴 모형의 위기와 재편」, 『산업관계연구』 제7권, 한국노사관계학회, 1997, pp. 337~339.

V. 맷 음 말

오늘날 선진제국의 노사관계는 전통적인 대립관계를 지양하고, 노사가 사회·경제적 반려자라는 이념을 구현하고 있는 일대 전환기에 있다. 이것은 노사관계의 변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산업구조·질서는 물론 이를 뒷받침하는 정치·사회·경제 등의 모든 제도에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많은 논란과 쟁점이 제기된다.

스웨덴의 노사관계는 크게 3단계로 그 시대적 구분을 할 수 있다. 제1단계는 노동조합운동이 시작된 1890년대부터 1930년대 중반까지의 시기로 투쟁의 시대이다. 제2단계는 193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초까지의 시기이며 사민당이 집권했던 44년간과 거의 일치하는 기간이다. 스웨덴 모델은 이 기간에 확립되어 노사자치주의에 의한 대등한 교섭의 시대이다. 제3단계는 1970년대 이후 스웨덴 모델의 퇴조에 따라 노사관계에 새로운 변화가 야기되었던 시기이다. 특히 1980년대에는 중앙집권적 교섭구조가 보다 분권적인 교섭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개별기업내 노사간의 긴밀한 상호협력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작업조직, 기술개발 및 숙련형성 등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실업률의 증가와 더불어 노사분규도 다소 증가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스웨덴 노사관계의 일반적 양상과 함께 본고에서 고찰한 대표적인 경영참가제도가 가지는 문제점 내지 한계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첫째, 1938년 기본협약 이후 노사자치에 입각한 단체교섭제도·관행과 1960년대 후반부터 전환된 입법화의 모든 제도들과 어떻게 양존하여 전국·기업레벨에 조화·정착시킬 것인가가 문제이다.

둘째, 경영의 전문화에서 비롯되는 경영측의 비난으로써, 의사결정의 비신속·비능률이 지적된다. 실제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경영전반의 의사결정시에 노동자대표의 능력에 한계가 있으며 경영측으로부터 받는 경영정보가 피상적이고 또한 형식상 사후처리를 위한 기관(제도)으로 전환됨을 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셋째, 노사의 성격은 균원적으로 배타적이나 이를 협력화로 지향시키는 방향인 노동자의 경영참가가 과연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즉 산업별노조 형태에서 지적되고 있는 전국노조와 지역노조와의 유대관계 또한 노동자대표참가에 있어서 대표참가 또는 간접참가는 다른 모든 노동자들의 직무만족·소외감극복을 달성하기에는 한계점을 갖는다. 비록 노동조합의 주도하에 경영에 참가하고는 있지만 단체교섭기능의 약화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

넷째, 감사회에서의 공동결정제는 이사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주주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다. 그러므로 기업투자에 큰 제약으로 나타난다. 또한 노조소유기업화 추진에 있어서 노동자 대표의 고용주화는 다원사회구조를 파괴할 염려가 있다. 더욱이 경영에 참가하는 노동자대표의 노동자의식이나 노동자들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기업풍토의 여부도 중요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과 함께 세계정치·경제질서의 변동속에 스웨덴의 노사관계는 어떠한 변화를 보일 것인가? 사민당 정부는 EU회원국으로 추진하여 1995년 가입하였다. EU회원국으로서 유럽대륙 나아가 전세계적 추세인 교섭구조의 분권화, 정부개입의 증가, 노동조합의 약화로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수정된 형태의 스웨덴 모델로 회귀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참 고 문 헌

1. 김황조, 「세계각국의 노사관계 : 그 변신과 물학」, 세경사, 1995.
2. 신용대·김정홍·손상익, 「스웨덴 복지국가모델에 관한 연구」, 산업연구원, 1994.
3. 안종태, 「스웨덴의 노사협력제도」, 「경영과학연구」 제5집, 강원대학교 경영과학연구소, 1981. 12.
4. 이원덕, 「스웨덴의 임금에 관한 사회적 합의」, 「노동동향분석」, 제23집 제4호, 한국노동연구원, 1989. 12.
5. 조영철, 「스웨덴모형의 위기와 재편」, 「산업관계연구」, 제7권, 한국노사관계학회, 1997. 6.
6. 대한무역진흥공사, 스웨덴 :『해외시장』No. 14, 1981.
7. 국제경제연구원, 「스웨덴의 경제와 사업환경」, 1979.
8. 그레그뱅커·리셀란즈베리 편(이태현외 역), 「국제비교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1993.
9. 池田直視, 「労使關係の制度」, 評論社, 1985.
10. 大橋昭一, 奥田辛助·奥林康司, 「經營參加の思想」, 有斐閣, 1979.
11. 岸田尚友, 「經營參加の社會學的研究」, 同文館.
12. 小池和男, 「労動者の經營參加」, 日本評論社, 1985.
13. 隅谷三喜男編, 「労使關係の國際比較」, 東京大學出版社, 1978.
14. 律田眞徵, 「労使關係の國際比較」, 日本勞動協會, 1970.
15. 律田眞徵·岸田尚友, 「歐洲の労動者參加」, 日本生產性本部, 1977.
16. 日本勞動協會編, 「經營參加の論理と展望」, 日本勞動協會, 1976.
17. 日本商業勞動組合聯合會編, 「世界の労動協約と労動法」, 總合労動研究所, 1976.

18. 勞動省勞政局勞動法規課編, 「諸外國の労使協議と經營參加」, 日本勞動協會, 1976.
19. Forsebäck, L., *Industrial Relations and Employment in Sweden*, The Swedish Institute, 1980.
20. Tabb, J. Y. & A. Goldfarb, *Worker' Participation in Management*, Pergamon Press, 1970.
21. Vinde, P & G. Petri, *Swedish Goverment Adminstration*, The Swedish Institute, 1978.
22. ILO, "Participation Of Workers in Decisions within Undertaking", *Labour Management Relations Series* No. 33, 1969.
23. ILO, "Worker' Participation in Decisions within Undertaking", (Olso Symposium, August 1974), *Labour Management Relations Series* No. 48, 1976.
24. ILO, Collective Bargaining in Industrialized Countries Resent Trends and Problems(Vienna Symposium Nov. 1977) *Labour Management Relations Series* No. 56, 1978.
25. The National Industrial Board, *Board Representation of Employees in Sweden*, 1975.

현지인 노무관리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중국진출 한국기업을 중심으로 -

유병주* · 방진방**

目 次

- | | |
|-------------------|-------------------|
| I. 서 언 | IV. 현지인 노무관리 실태 |
| II. 한국기업의 중국진출 현황 | V. 현지인 노무관리의 개선방향 |
| III. 중국인의 문화적 특성 | VI. 결 어 |

I. 서 언

최근 들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는 글로벌화 전략에 따른 해외투자 확대에 기인된 현상이며, 중소기업의 경우는 국내임금상승, 지가상승에 따른 공장부지 확보의 어려움, 인력난, 물류비용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국내보다 상대적으로 조건이 좋은 해외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데 기인하는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해외진출이 늘어나면서 해외 現地人 노무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각 나라마다 고유의 전통과 문화가 있고 특유의 勞動慣行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와 철저한 관리가 뒤받침되지 않는다면 해외진출의 성과는 보장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해외진출 기업의 노무관리상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현지국의 문화와 現地人的 관습, 행동양식에 대한 마찰과 갈등에서 기인된 것이다.

한국기업의 대중국 진출동기를 보면 가장 중요한 동기가 풍부한 노동력과 낮은 인건비이며 다음으로 거대한 현지시장, 그리고 원자재 조달의 용이함 등을 들고 있다. 따라서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성공적인 기업 운영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현지 근로자의 勞務管理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중국진출 한국기업들의 현지인 勞務管理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기업경영에 심각한 장애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1995년 韓國貿易協會에서 조사한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 現地法人의 노무관리상의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업체의 대부분이 “근

* 충남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과 교수

** 중국인민대학교 전임강사

로자의 安逸한 작업태도”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잦은 임금인상 요구”, “근로자의 잦은 離職”, “언어장벽으로 인한 의사전달 장애” 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변하였다. 풍부한 노동력 확보의 용이함과 저렴한 인건비가 동기가 되어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바로 그 노동력의 관리에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성공적인 기업경영을 위해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現地 勤勞者 勞務管理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勞務管理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를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실태분석을 병행하였다. 즉 중국 北京에 진출한 7개 한국기업을 직접 방문해서 한국인 관리자와 중국인 중간 관리자를 면담하는 한편, 중국인 현지 근로자를 면담 및 설문조사하여 이들 기업의 노무관리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다음으로 중국의 대표적인 國有企業 3개를 선정하여 이들 기업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서로 비교하는 방법을 채택함으로써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勞務管理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러한 실태분석의 결과와 관련문헌의 검토를 통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II. 韓國企業의 中國進出 現況

우리나라 기업들의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1988년에 처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 있다.

최초로 중국에 진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째, 1988년 大宇가 중국 福建省 福州市에 설립한 ‘福州냉장고’ 공장과, 봉제완구회사인 고려무역이 홍콩와이씽토이와 합작으로 深川에 진출한 것이 최초의 중국진출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둘째, 1988년 進雄企業을 시발로 보는 견해이다¹⁾.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중 투자의 시효는 1985년 한스물산이 廣東省에 홍콩을 통하여 우회투자한 것으로 보고 있다.

1988년부터 시작된 한국기업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1992년 8월의 한·중수교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 1990년까지 총 52건, 68백만 달러에 불과하던 대중국투자가 1996년 말 현재 총 3,887건, 46억 1850만 달러(許可基準)로 늘어나 중국은 한국의 최대 해외 직접투자국으로 부상하였다. 전수로서는 대중국 투자가 한국 전체 대외투자의 45.6%를 점하고, 금액으로서는 21.7%를 점한다²⁾.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질과 양 양면에서 모두 큰 변화를 보이 있다. 수교前 중국진출 초기에는 주로 중소기업 위주로 진출했었지만 1993년 상반기부터 三星,

1) 안종석, 한국기업의 대중 투자 실태와 향후 과제, KIEP, 1993, p. 19.

2) 이종일, 〈중국 경제무역 동향 및 진출확대 방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997. 4. p. 8.

大宇, LG 등 대기업들도 활발한 진출을 시작하였다.

그동안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를 지역별로 보면, 山東省을 위시한 渤海灣지역이 전체의 46.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遼寧省, 吉林省, 黑龍江省 등 東北地域이 39.1%를 차지하여, 이들 두 지역이 전체 대중국 직접투자의 86%를 점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가 渤海灣 지역과 東北地域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이들 지역이 한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山東省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내에서 외국인 투자가 집중되어 있는 곳은 廣東省 및 上海市지역인데 이 지역에 대한 한국기업의 투자가 저조한 것은 沿岸地域의 높은 임금 및 임대료 뿐만 아니라 홍콩, 日本, 臺灣 기업들의 선점에 따른 높은 진입장벽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대중국 무역과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동시에 두 나라 정부간의 경제협력도 활발해지고 있다. 1994년 3월 北京會談부터 양국은 產業協力委員會를 설립하고 자동차, 항공기, 전자교환기, 고품질TV 등의 업종에서 협력할 것에 협의였으며, 1995년부터 구체적 실시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표 1>

대중국 직접 투자 현황(허가기준)

(백만달러)

연 도	투 자 금 액	투 자 건 수
1988년	3.4	2
1989년	9.8	12
1990년	54.5	38
1991년	84.7	112
1992년	221.9	269
1993년	622.3	629
1994년	820.2	1,066
1995년	1,231.9	877
1996년(1~3월)	495.7	232
누 계	3,544.5	3,236

자료 : 한국은행, 해외투자통계년보, 1997

한편 한국의 대중국 투자를 산업별로 보면 1996년 말 현재 제조업부문이 3,063건, 333,500만 달러로 件數基準으로 전체의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 중에서도 특히 섬유, 의복,

신발, 가죽 및 기타 제조업 등 노동집약적 경공업에 50%가 집중되어 있는데 조립금속업종도 노동집약적인 생산라인을 갖는 품목이 대부분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전체 대중국 투자의 60% 이상이 노동집약적 업종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처럼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가 제조업 특히 노동집약적 업종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대부분이 중국의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하여 생산, 그 생산물은 제3국 혹은 한국으로 수출하려는 목적에 의해 투자가 결정되었기 때문으로 보여지나 1993년 대중국 투자의 91.1%를 점하던 제조업이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며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 성숙화와 더불어 무역업, 수산업, 기타 업종으로 확대추세를 보임으로서 점차 업종다양화가 가시화 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석유화학제품 공급부족을 배경으로 석유화학 부문의 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최근 한국기업의 대 중국투자의 한 특징으로 보여진다.

III. 중국인의 문화적 특성

중국은 전통적으로는 유교의 나라였으며 그 사회의 전통문화는 한국 사회문화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1949년 10월 1일부터 사회주의로의 변화를 시작으로 중국의 문화와 중국인들의 가치관은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된다. 특히 1966년부터 1976년까지 중국의 문화대혁명은 아직도 유교문화권으로 분류되는 우리나라와는 크게 다른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다. 여기에다가 1978년부터 시작한 개혁개방정책으로 많은 외국기업들이 진출해 들어옴으로 인한 서구 문화의 유입으로 또 한 번 중국문화의 변화와 중국인의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중국사회의 文化的 배경은 다음 몇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중국은 한반도의 약 44배에 달하는 광활한 국토를 가지고 있어 지방별로 기후 및 토양, 자연조건이 매우 다르며 56개 민족으로 구성된 12억 인구 중 92%를 漢族이 차지하고 있지만 방언 및 지역적 특성이 천차만별이어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매우 다양하고 계층적인 차이가 심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 나라, 한민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지역적 특성이 뚜렷하며 서로 배타적인 면이 있다.

둘째, 지난 반세기 동안 사회주의 체제를 채택하여 2~3세대에 걸쳐 마르크스, 레닌주의, 모택동사상을 사상적 배경으로 하여 왔기 때문에 노동자계급 중심 사상, 男女老少를 불문한 신분의 평등사상 등이 기저를 이루고 있다. 즉 毛澤東의 사회주의 도입 아래로 오랫동안 중국인들은 儒家의 불평등정신 즉 長者에 대한 존경, 지식과 지혜있는 자 그리고 상사에 대한 권위에서 기인된 불평등이 없어지고,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정신이 정착해 있다. 이러한 사회주의 평등사상은 個人의 平等, 男女의 平等, 民族의 平等 등으로 확산되었다.

셋째, 중국인 근로자들은 자신들에 대한 복지후생은 기업과 국가가 당연히 해주어야 한다

고 생각하고 있다. 지금은 차츰 변화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거의 모든 중국기업들은 “企業辦社會”라는 개념을 기업의 역할로 생각하고 있다. “企業辦社會”라 함은, 기업은 근로자들에게 노동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만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 대해 일체의 무한책임을 전다는 개념이다. 즉 기업내에 병원, 주택, 학교, 탁아소 등 일체의 복지시설과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근로자들은 비록 기업으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임금은 많지 않더라도, 모든 것을 기업이 책임짐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삶을 보장받게 된다. 이러한 기업의 역할에 오랫동안 젖어 왔고 그것을 당연시 했던 중국인들은 이러한 근로자 복지시설 및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外資企業에 취업할 경우에는 무조건 높은 임금을 요구하고 동시에 外資企業들의 임금이 중국기업에 비해 높은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거의 모든 중국인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부부 모두가 外資企業에 취업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한 사람이 外資企業에 취업하여 높은 보수를 받고 다른 사람은 국유기업이나 관청에 취업하여 각종 복지후생 혜택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넷째, 중국인들은 체면을 중시한다. 중국인들은 식사나 술자리의 모든 비용은 처음 가자고 제의한 사람이나, 最年長者나, 상사, 또는 그 중 형편이 가장 낫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당연히 지불한다. 자신의 부족함을 겉으로 드러내려 하지 않고, 체면의 손상을 극도로 기피하려 하는 중국인의 의식구조는 손님을 대하는 그들의 풍성한 음식문화에서도 엿볼 수 있다. 자기의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버티며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이나 어쩔 수 없는 상황 탓으로 돌리는 면이 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 패배한다는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잘못을 범했어도 인정하지 않고 반항하는 것으로 승리감을 고수하는 의식이다. 역으로 체면을 존중해주면 원칙을 범하면서도 상대를 위해 책임지고 구해주는 경우가 많다. 잘못을 범했다고 해서 그것을 곧바로 처벌하려는 것은 이해롭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섯째, 중국인들은 전통적으로 철저한 가족중심적이다. 자신의 가족 그리고 가문을 대단히 중시한다. 중국인에게 있어 가족은 사회나 국가에 앞서 최우선시 된다. 철저한 가족중심의 사고, 그것은 곧 남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관심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눈이 와도 내 집앞만 쓸지 남의 집앞의 눈은 건드리지도 않는 습성, 그리고 중국인이 집을 지을 때 제일 먼저 집둘레의 경계에 담을 쌓는 일부터 시작한다. 중국의 시골에 아무리 허름한 집도 높은 담장이 쳐져 있는 것에서 중국인들의 가족중심의 문화가 확인된다. 중국인들이 초과근무를 꺼리는 것도 이러한 가족중심문화에 기인한 것이다. 중국인들은 퇴근 후 거의 곧바로 자기집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한다.

여섯째, 중국인들은 愛社心이 부족하다. “공장, 기업을 자기의 집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구호는 최근 중국기업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잘 이행이 되지 않는다. 공과사를 잘 구분하지 않는다. 회사의 물건을 큰 죄의식 없이 자신의 집으로 가져온다. 회사를 위

해서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의식이 별로 없다.

일곱째, 人治를 중요시 한다. 오랜 封建王朝 및 異邦民族에 의한 통치역사로 인해 정치제도에의 무관심, 최근 사회주의 시장경제제도의 도입과정에서 지적되는 법제의 불완전성 등에서 비롯되는 법이나 규정 또는 제도보다는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중국인의 문제해결 방법은 주로 대단히 인간적인 “關係(관시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한국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제해결을 하지만, 이러한 측면에서는 중국인이 한국인보다 한 수 앞선다. 중국인은 자기 집단내의 사람과 집단밖의 사람에 대해서 전혀 다른 잣대를 사용한다. 따라서 중국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을 알아낸 다음,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집단내의 누군가와 선이 달아야 한다. 집단내의 누군가와 선이 달아서 그 집단내의 잣대를 적용받게 되면 문제는 아주 쉽게 풀리게 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집단 밖의 잣대인 대단히 엄격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어 문제해결이 어려워진다. 중국인들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관련된 법 규나 제도를 생각하기보다는 우선 자신이 속한 小集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소집단이란 자신의 가족, 친인척, 친구, 동료 등으로 구성된 집단이며 이를 소위 “관시망”이라고 한다. 따라서 거의 모든 중국인들은 이러한 관시망을 가지고 있고, 이 관시망은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어려운 일이 많아도 해결되지 않은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말은 바로 이 관시망의 위력을 실감케 하는 말이다.

IV. 現地人 務務管理 實態

1. 조사의 시기와 대상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노무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1997년 1월초부터 2월 말까지의 2개월간, 그리고 1997년 2월 16일부터 2월 말까지의 2차례에 걸친 중국현지 방문을 통해서 중국 北京에 진출한 한국기업과 중국의 전통적인 국유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관계자 면접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조사대상은 1988년부터 1997년까지 중국 北京에 진출한 한국기업 160개업체를 母集團으로 하여 이 가운데서 7개 기업체를 선정하고, 북경에 소재하고 있는 3개의 중국 국유기업체를 선정하여 총 10개의 기업체를 본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2. 조사의 방법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노무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는 면접조사와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먼저 면접조사는 한국기업 현지책임자(총경리) 7명과 중국인 중간관리자 35명을 대상으로 직접 면접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먼저 중국인 중간관리자 35명을 대상으로, 한국기업과 한국인 그리고 노무관리 전반에 걸쳐 그들의 지각을 조사하는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에 답하는 것이었으며, 다음으로 한국기업에 근무하는 중국인 근로자 350명과 북경에 소재한 3개의 중국 국유기업에 근무하는 중국인 근로자 600명을 대상으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측정하였다.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결과는 SPSS/WIN을 이용, 빈도분석, T-test 및 ANOVA 등을 통해 국별 직무만족도 및 조직몰입도의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3. 설문지의 작성, 배포 및 회수

중국인 중간관리자를 위한 설문지는 저자들이 직접 작성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인구통계적 항목 9개 문항과 본 문항 2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職務滿足의 측정을 위한 척도는 Brayfield & Rothe(1951)이 개발한 질문지(18문항)를 채택하고, 조직몰입의 측정을 위한 척도는 Porter & Smith(1970)가 개발한 질문지(15문항)을 채택하였으며 이들을 中國語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중국인 중간관리자들에 대한 설문지는 한 개 기업당 5매를 배부하여 7개 기업 총 35매를 배부하였는데 이 중 6개 업체에서 30부가 회수되어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중국인 근로자에

〈표 2〉 설문지 회수 상황

국 별	기 업 체	배 부	회 수
한 국 기 업	K 1	50	35
	K 2	50	50
	K 3	50	45
	K 4	50	50
	K 5	50	30
	K 6	50	40
	K 7	50	1
중 국 기 업	CH 1	200	199
	CH 2	200	186
	CH 3	200	181
계	10	200	817

대한 설문은 총 10개 기업체 950매(중국기업 600매, 한국기업 350매)의 설문지를 배부하였는데 이 가운데 회수된 이용가능한 설문지는 817매였다. 설문지 회수상황은 다음과 같다.

4. 결과 및 논의

1) 한국인 경영자들의 중국 및 중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식

한국인 경영자들이 보는 중국 및 중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식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것이었다. 이를 몇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중국인의 노동생산성

중국인의 노동생산성에 대한 평가는 기업에 따라 약간씩 상이했으나 양적으로는 한국인 근로자의 약 50% 정도라고 답한 기업이 많았고 절은 약 80% 정도라고 답하고 있었다.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창의성이나 출선후보법이 전혀 없으며 시키는 일만 수동적으로 하며 계으로 다는 이유를 들고 있었다.

(2) 중국인의 가치관

대부분의 한국인 관리자들이 보기에서 중국인은 우리와 같은 동양문화권으로 알았으나 막상 와서 보니까 전혀 다른 문화권으로 우리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먼저 관리자나 상사에 대한 예의가 없다는 것은 모든 한국인 관리자의 지적이었다. 대화나 보고 시 상사에 대한 태도나 서로 마주쳤을 때 인사방식은 우리나라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이를 고쳐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쉽지 않다는 답변이었다.

중국인들은 초과근무를 대단히 싫어한다는 것이다. 일이 끝나면 곧바로 집으로 향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한 기업은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기본임금을 낮게 책정하는 대신에 초과근무수당을 파격적으로 높게 책정하여 해결했다고 한다.

중국인들의 도벽을 지적하는 한국인 경영자가 많았다. 회사의 물건을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집으로 가져 간다는 것이다. 화장지나 사무용품은 물론이고 회사의 제품까지 숨겨가지고 가다가 적발되어 징계에 처해도 계속 이런 일이 빈발하고 있어 문제라는 것이다.

(3) 중국인 파트너에 대한 인식

합작으로 진출한 대부분의 한국기업들은 중국측 합작 파트너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처음 계약시 치밀한 검토없이 체결한 계약의 많은 조항이 뒤에 우리측에 대단히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중국측 파트너가 우리측과 같이 기업마인드를 가진 기업인이 아니고 중국정부의 관리이기 때문에 생각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 그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한국 기업들이 중국측 파트너와의 의견 조정에 실패하고 심각한 상태에 도달하여 마침내 합작을 포기하고 직접 투자로 변경했거나 변경을 고려하

고 있었다. 조사대상 기업 가운데 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 한 기업도 없었으며 대부분 적자 경영이거나 이제 겨우 수지의 균형점에 도달해 있는 상태였다.

2) 중국인 중간관리자들의 한국기업과 한국인 관리자에 대한 인식

(1) 중국인 관리자들의 인적사항

중국인 중간관리자들의 성별분포는 40%가 남성이며 60%가 여성으로 나타나 있으며, 연령별 분포는 20대가 전체의 76.7%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30, 40대가 23.3%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의 학력은 고졸 이하가 46.7%, 대졸 이상이 43.3%, 기타 10%로 나타났다. 민족별 분포는 漢族이 73%, 朝鮮族이 23%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한국어 구사 정도는 초급이 70%, 중급이 10%, 고급이 20%인데 중·고급이라고 응답한 모두는 조선족으로 나타났다. 근속년수는 5년 이하가 전체의 76.7%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5년 이상은 16.6%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 진출시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 한국기업에 대한 전반적 인식

“한국기업의 전반적인 인상은 중국기업에 비해서 어떤가?”라는 질문에 좋다가 40%, 보통이다가 30%였으며 기타가 30%로 나타났다. “한국기업이 중국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가 96.7%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중국인 관리자들의 한국기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은 비교적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기업과 외국기업과를 비교하게 한 설문의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기업 중 가장 일하고 싶은 곳은 어디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미국기업이 26.7% 한국기업이 20%, 유럽기업이 16.7%, 일본기업이 13.3%, 그외 대만, 홍콩, 싱가풀기업이 각각 3.3%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로는 한국기업의 경우에는 문화가 비슷할 것 같고 조선족의 경우는 언어가 통한다는 것을 이유로 제시했으며, 미국기업 등에는 임금이 높고 근로환경이 좋으며 능력주의적인 인사관리가 좋아서라는 의견이 많았다.

둘째, 일본기업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영관행 등으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기업과 비교를 하는 경향이 많았다. 따라서 “한국기업과 일본기업 중 어느 기업에 호감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한국기업이 36.7%, 일본기업이 23.3%라고 답했다. 각각의 이유를 보면 한국기업의 경우에는 인간적인 면과 역사적인 면에서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그 주된 이유인 반면 일본기업의 경우에는 고임금과 경영관리방식의 선진화를 주요인으로 꼽았다.

(3) 한국인 관리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중국인들의 한국인 관리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국인 관리자들의 행동이 관료적이며 고압적인가를 물어 본 질문에서는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이 36.7%, 그렇지 않다가 53.3%로 나타났다.

한국인 관리자들은 일과시간 후 주로 무엇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주로 중국어 공부를 한다가 많았고, 다음으로는 술을 마시거나 가라오케에 간다고 답하고 있었다.

(4) 노무관리 전반에 관련된 사항

① 교육훈련

“한국기업에서는 중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교육훈련에 어느 정도나 투자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많이 투자하고 있다”가 13.3%, “보통이다”와 “적게 투자하고 있다”가 각각 43.3%, 30%를 차지하고 있어 현지인 근로자 교육에는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임금

먼저 중국인 중간관리자들의 임금의 액수에 대한 질문에, 500~1000원 사이가 전체의 70%, 1000~1500원 사이가 20%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1500원을 초과하는 임금을 받는 종업원은 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년 중국 북경시의 최저임금 280원에 비하면 높은 액수이나 전체 외국기업의 임금수준에 비하면 높다고 볼 수 없는 액수이다.

중국인 중간관리자들의 보수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와 “보통이다”가 각각 16.7%, 20%를 차지한 반면, “불만족한다”가 63.3%를 차지하고 있어 한국기업의 임금수준에 대해 불만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③ 복리후생

“한국기업의 복리후생의 정도는 어떤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좋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3.3%, “보통이다”는 76.7%, “나쁘다”는 16.7%로 나타나 복리후생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크게 낮음을 알 수 있었다.

④ 승진의 공정성

“기업내의 보수와 승진은 공정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공정하다”고 답한 사람은 16.7%, “보통이다”가 33.3%, “공정하지 못하다”가 46.7%로 나타나 승진 및 보수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았다. 또한 많은 중국인 중간관리자들은 한국기업내 인사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한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였다.

⑤ 노조에 대한 태도

한국인 관리자들이 현지인이 결성한 노조에 대한 시각에 대해 조사를 하였다. 한국인 관리자들이 노조를 보는 시각이 긍정적이다와 보통이다가 각각 20%, 40%를 차지했으며, 노조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시각은 10%를 차지하고 있었다.

⑥ 업무처리 형태

“한국인 경영자들의 업무처리 형태는 어떤가?”라는 질문에 대해 “중국인과 비슷하다”라고 대답한 것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과감하다”, “계급관념이 있다”, “효율성이 있다” 등

의 답변이 있었다.

(5) 중국현지에의 적응 정도

“한국인 관리자들이 중국현지에 어느 정도 적응하고 있는가”라는 적응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의 질문을 해 보았다. 즉 “한국인 관리자들은 중국의 문화나 관습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보통 이하라는 응답이 76.7%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한국인 관리자들은 중국내 법규나 제도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이들 법규를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해하고 있다”는 응답이 50%, “보통이다”가 33.3%,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가 10%로 나타났으며, 그리고 이의 준수여부에 대해서는 “준수하고 있다”가 76%, 준수하지 않는다가 13.3%로 나타나 있었다.

“한국기업은 대학이나 지역사회에 기부금 등을 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내고 있다”가 3.3%, “내지 않는다”가 56.7%로 나타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의지는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6) 한국인 관리자와의 인간관계

“한국인 관리자와의 갈등이 있다면 갈등의 원인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사고방식의 차이”와 “언어의 차이”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한국인 관리자들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가 36.7%, “보통이다”가 13.3%인 반면, 47%의 응답자가 “말할 수 없다”고 응답하였다.

“한국인 관리자들은 중국인 근로자들과의 인간적인 접촉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기피하는가?”라는 질문에, “인간적인 접촉을 하고 있다”가 53.3%, “보통이다”가 26.7%인 반면, 16%의 응답자가 “기피하고 있다”고 응답을 하였다. “한국인 관리자들과 얼마나 자주 회식을 하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자주 한다가 16.7%, 가끔 한다가 43.3% 안한다가 30%로 답하고 있으며 “한국인 경영자와의 관계는 좋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좋다”가 23.3%, “보통이다”가 70%를 나타내고 있었다.

(7) 중국인 근로자와의 관계

“중국인 근로자와의 관계는 좋습니까?”에 대해서는 “좋다”가 66.7%, 보통이다가 30%를 차지하고 있어 한국인 경영자와의 인간관계와 대조를 보이고 있었다.

“중국인 근로자 관리상의 애로점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지시에 대해 복종하려 하지 않는다”, “일에 대한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답변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근로자들이 거리감을 둔다”, “한국인 관리자가 믿고 지지해 주지 않는다”라고 지적하는 답변도 있었다.

조선족 관리자의 경우에는 “민족간의 협조가 떨어진다”라는 응답도 있었다.

“중국인 감독자로써 보는 근로자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임금이

너무 낫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근로자들이 한국인을 잘 모른다”, “노동력의 질이 낫다”, “동기부여가 안된다”, “자신감이 부족하다”, “단결이 잘 안된다” 등의 답변이 있었다.

(8) 중국인 관리자의 중국경제에 대한 인식

“중국의 경제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 같은가? 시장경제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시장경제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고 인식하는 응답이 90%로 나타났다. “외국기업에 대한 중국의 정책은 어떻게 나가야 한다고 보는가? 더욱 개방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다소 제한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76.7%가 더욱 개방되어야 한다고 답하고 있다.

(9) 한국기업에 대한 제언

한국인 관리자들에게 주고 싶은 제언에 대해서는 주로 “중국과 중국인을 잘 알아야 한다”, “근로자들을 동등하게 대우해 주어야 한다”, “그들을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한다”는 제언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고, 그 나머지는 주로 종업원들의 관리시 인간적인 대우에 관련된 사항들이었다.

“한국기업이 중국에서 성공하기 위해 고쳐야 할 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중국의 현실을 잘 이해하고 이에 적용해야 한다”, “기업관리 방식을 선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임금을 개선하여 종업원의 능률을 제고해야 한다” 등의 답변이 70% 이상 차지하고 있었다.

3) 중국인 근로자의 職務滿足度 및 組織沒入度

(1) 職務滿足度 및 組織沒入度의 비교

職務滿足度의 비교에서 한국기업이 중국기업보다 높게 나타나 있다. 이는 한국기업이 인사·노무관리상에서 중국 국유기업보다 좀더 발달된 형태로 관리를 함에 따라 높은 수치를 보인 것으로 생각이 된다. 職務滿足度의 비교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직무만족도의 비교

	한 국		중 국		T값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직무만족	3.5402	0.731	3.3398	0.605	3.47***

***p<0.001

組織沒入度의 비교는 중국기업과 한국기업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 있다. 組織沒入度의

비교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組織沒入度의 비교

	한 국		중 국		T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조직몰입	3.3318	0.621	3.3380	0.524	0.13

(2) 인구통계적 변수별 職務滿足度 및 組織沒入度 비교

다음에 직종별, 직급별, 성별, 근속연수별, 교육수준별의 인구통계학적 변수별로 비교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직종별

직무를 사무직(행정사무직과 전문기술직으로 구분)과 생산직(기술생산직과 일반생산직으로 구분)으로 구분하여 두 집단간의 職務滿足度 및 組織沒入度의 차이분석을 해본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한국기업의 경우는 일반생산직이 기술생산직에 비해 組織沒入度가 높게 나타나 있으며, 중국기업의 경우는 기술생산직이 전문기술직에 비해 職務滿足度가 높게 나타나 있다. 그리고 중국기업의 경우 전문기술직이 일반생산직과 행정사무직에 비해 組織沒入度가 낮게 나타나 있다.

<표 5>

직종별 職務滿足度·組織沒入度의 비교

생산직(1: 기술생산직 2: 일반생산직)

사무직(3: 행정사무직 4: 전문기술직)

	한 국						중 국					
	1	2	3	4	(F값)	집단간 차이	1	2	3	4	F값	집단간 차이
職務滿足	3.6065	3.5479	3.5202	3.5035	0.1195		3.4699	3.3034	3.3319	3.2878	2.2198*	1과 4
組織沒入	3.1642	3.4182	3.3879	3.2190	2.3550	1과 2	3.3351	3.4625	3.3772	3.2383	4.0966**	4와 2,3

*p<0.05, **p<0.01

주 : ANOVA의 집단간 차이 사후검증은 LSD방법을 사용했음(이하 동일).

② 직급별

직급을 일반직과 관리직으로 구분하여 두 집단간의 직무만족도 및 조직몰입도의 차이분석을 해본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즉 한국기업의 경우는 일반직이 관리직에 비해 組織沒入度가 높게 나타나 있으며, 중국기업의 경우는 반대로 관리직이 일반직에 비해 組織沒入度가 높게 나타나 있다.

<표 6> 직급별 職務滿足度 · 組織沒入度의 비교

	한 국			중 국		
	일반직	관리직	T값	일반직	관리직	T값
職務滿足	3.5153	3.3519	0.73	3.3091	3.3822	-1.21
組織沒入	3.3921	3.1212	2.16*	3.2684	3.4229	-3.01**

*p<0.05, **p<0.01

③ 성 별

성별 職務滿足度 및 組織沒入度의 차이분석을 보면 한국기업의 경우는 여성에 비해 組織沒入度가 높게 나타나 있으며, 중국기업의 경우는 반대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職務滿足度가 높게 나타나 있다. 성별 職務滿足度 및 組織沒入度의 차이분석은 <표 7>과 같다.

<표 7> 성별 職務滿足度 · 組織沒入度의 비교

	한 국			중 국		
	일반직	관리직	T값	일반직	관리직	T값
職務滿足	3.4405	3.6072	-1.54	3.3919	3.2537	2.47*
組織沒入	3.1403	3.4567	-3.66***	3.3558	3.3000	1.20

***p<0.001, *p<0.05

④ 근속년수별

근속년수별 職務滿足度 및 組織沒入度의 차이분석을 보면 한국기업의 경우는 5년 미만 집단과 10년 이상 집단에서 현격한 組織沒入度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즉, 근속년수가 높을수록 組織沒入度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기업의 경우는 반대로 근속년수가 높을 수로 組織沒入度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職務滿足度도 근속년수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 있다. 근속년수별 職務滿足度 및 組織沒入度의 차이분석은 <표 8>과 같다.

<표 8>

근속년수별 職務滿足度 · 組織沒入度 차이분석

(1:1년 미만 2:1~5년 미만 3:5~10년 미만 4:10년 이상)

	한 국						중 국					
	1	2	3	4	(F값)	집단간 차이	1	2	3	4	F값	집단간 차이
職務滿足	3.4503	3.5683	3.7185	3.4549	0.5840		2.8687	3.3116	3.2735	3.3730	2.9156*	1과 2,3,4
組織沒入	3.5667	3.3609	3.3294	3.1030	2.4528	4와 1,2	3.0727	3.1760	3.2180	3.3850	4.7295***	1과 4*

*p<0.05, **p<0.01

⑤ 교육수준별

교육수준별(학력) 職務滿足度 및 組織沒入度의 차이분석 결과는 2개국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바 먼저 職務滿足度의 수준에서 한국기업의 경우 1집단과 2집단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기업의 경우도 1집단과 2집단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組織沒入度의 수준에서는 한국기업의 경우 1집단과 2집단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기업의 경우도 1집단과 2집단간에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육수준별(학력) 職務滿足度 및 組織沒入度 차이분석은 <표 9>와 같다.

<표 9>

교육수준별(학력) 職務滿足度 · 組織沒入度의 비교

	한 국			중 국		
	1 (대출 이하)	2 (대출 이상)	T값	1 (대출 이하)	2 (대출 이상)	T값
職務滿足	3.5739	3.1667	2.09*	3.3550	3.1510	2.79**
組織沒入	3.3482	3.0769	1.53	3.3741	3.0262	5.55***

*p<0.05, **p<0.01 ***p<0.001

VI. 현지인 노무관리의 개선방안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중국과 한국은,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볼 때 유사한 점이 많으면서도 대단히 상이한 가치관과 관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때문에 중국에 진출

한 한국기업이 중국인 근로자를 관리할 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체계적인 분석이 따라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문화와는 다른 점이 많은 중국의 문화와 중국인의 가치관에 적합한 노무관리기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1. 파견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의 강화

모든 사회에서는 그 나름대로 문화적 가치체계가 있다.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의 갈등은 주로 상대방의 문화적 코드를 모르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기 쉽다.

“한국인 관리자들은 중국의 문화나 관습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가 겨우 20%에 불과했으며, “한국인 관리자와의 갈등이 있다면 갈등의 원인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사고방식의 차이”와 “언어에서 오는 의사소통의 문제”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중국에 파견되는 한국인 관리자들의 중국문화와 중국인의 가치관에 대한 이해 부족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중국 진출기업에 파견하는 인력에 대한 사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이번 한국인 관리자와의 면담에서 대부분의 관리자들이 중국에 파견되기 전 사전 교육 훈련을 전혀 받지 않았거나 받았다고 해도 형식적인 것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중국에 파견되는 한국인 관리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음과 같아야 할 것이다.

첫째, 중국에 대한 역사와 중국의 현실에 대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둘째, 중국인의 현재의 가치관과 그 가치관 형성의 원인. 셋째, 이문화에 대한 적응훈련. 넷째, 중국어 교육. 이번 조사에서 현지인들과 중국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한국인은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다섯째, 현지인 관리기법 및 관리능력제고를 위한 교육 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현지 파견 전에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2. 현지인 통제 메카니즘의 변화

現地人의 관리나 통제는 그들의 정서에 부합되는 방법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거의 모든 한국기업에서 현지관리를 한국인 경영자가 담당하고 있었으며 그들 한국인 관리인들이 현지인들의 문화나 관습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었다. 따라서 현지인 통제의 새로운 메카니즘이 요구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현지인에 대한 새로운 통제방법은 한국인 관리자에 의한 직접통제 보다는 현지인 중간관리자에 대폭적인 권한을 위양하고 그를 통한 간접통제방식으로서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첫째, 現地人 노무관리 전문가를 고용하는 방법 : 중국 국유기업에서 노무관리 경험이 있는

사람, 또한 정부기관에서 고위 관리직에 있었던 사람을 노무담당 관리자로 채용하고 그를 통하여 현지인을 관리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의 이점은 현지인들은 이런 사람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쉽게 따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고급인력에게는 통상 높은 임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둘째, 朝鮮族을 노무담당 관리자로 채용하는 방법: 중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朝鮮族을 고용하여 현지인을 관리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의 이점은 언어가 통하고 의사소통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먼저, 해당 지역에서 장기간 체재한 사람이어야 한다. 중국은 국토가 광활하기 때문에 타지역에서 생활해온 사람은 이 지역의 상황을 잘 모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朝鮮族과 漢族의 민족모순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번 조사를 위해서 방문한 한국기업 중에 조선족과 한족간의 대립이 심각한 회사가 있었다.

셋째, 華僑企業과의 협력: 중국의 고위인사와 인맥이 튼튼한 東南亞 華僑企業과 협력하여 중국에 진출하는 방식은 큰 장점이 있다. 중국내 판매, 인력관리 및 대정부 관계는 화교기업 즉 파트너가 담당하며, 한국은 지분 참여와 아울러 수출을 담당하는 방식이다. 현지인 관리는 중국문화와 중국인의 가치관에 익숙한 華僑企業이 담당하게 하는 방법이다.

3. 현지인과의 커뮤니케이션 개선 및 채널구축

이번 조사에서 한국인 관리자들이 현지인과의 대화가 부족하고 이로 인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었다. 특히 중국의 문화는 대화를 통한 인간적인 접촉에 의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문화로서 중국기업에서는 경영자와 근로자의 대화는 기업내에서 생활화 되어 있다. 그러나 중국에 진출한 대부분 한국기업 경영자들은 중국 현지인들과의 대화를 꺼리고 있었다.

“한국인 관리자들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60% 이상의 응답자가 “말할 수 없다”고 응답한 것을 보더라도 평상시 대화를 통한 서로의 입장과 처지 등을 알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중국인 근로자와 대화를 통하여 임금문제등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국의 관행에 맞는 방식이다.

“한국인 관리자들은 중국인 근로자들과의 인간적인 접촉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기피하는가?”라는 질문에 반 이상의 응답자가 “기피한다”고 응답을 하였다. “한국인 경영자와의 관계는 좋습니까?”에 대해서는 “좋다”가 23.3%였고, “중국인 근로자와의 관계는 좋습니까?”에 대해서는 “좋다”가 96%였다. “한국인 관리자들과 얼마나 자주 회식을 하는가?”에 대해서 “자주한다”가 16.7%로 나타나 있다.

따라서 모든 문제를 대화로 푸는데 익숙한 중국 현지인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개발하

고 또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구축하여 현지인의 의사와 고충 그리고 그들의 제안을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企業辦社會”에 대한 고려

중국기업은 “企業辦社會”라는 전통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에서 복지후생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비해 중국에 진출한 대부분의 외국기업들은 임금은 중국기업에 비해서 높지만 복지후생은 뒤떨어지는 편이다. 특히 한국기업의 경우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업의 복지후생은 중국기업보다 크게 뒤떨어져 있는 실정이다. 이번 조사에 “한국기업의 복지후생의 정도는 어떤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좋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3.3%밖에 되지 않은 것이 이를 극명하게 표현해 주고 있다고 보여진다.

예컨대 급식지원, 통근지원과 같은 종업원의 생활원조 사업, 근로조건적인 근로복지사업, 상담실, 여가 및 체육실, 기숙사, 휴게실, 샤워장과 같은 복리후생 사업 등은 물론 종업원의 여가선용 및 취미활동, 건강 및 노후 생활안정 등 중국기업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지후생 시설을 참작하여 이를 근로자와 협의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등 복지후생에 관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근로조건에 관해서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즉 “한국기업의 근로조건은 다른 외국기업에 비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좋다”가 20%이고, “보통이다”가 60%, 그리고 “나쁘다”가 13.3%로 나타나 있다. 근로조건의 개선은 근로자의 근무의욕을 높이고 노동의 정착율을 높이게 되고 기업에 대한 귀속의식을 갖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조건에 대한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5. 현지인 능력개발을 위한 투자확대

“한국기업에서는 중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교육훈련에 어느 정도나 투자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많이 투자하고 있다”가 13.3%로 나타나 현지인에 대한 교육투자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현지인의 교육훈련에 투자함은 現地人의 잠재적 효용을 최대한 개발시켜 이것이 기업의 성장과 직결될 수 있다는 목적 이외에 그 자체가 현지인의 동기부여와 직결될 수 있음으로 이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요구된다.

따라서 해외투자기업은 현지화를 위해서도 현지인의 교육훈련이 필요할 것이다. 현지인의 교육훈련을 통해서 현지인 관리자를 양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철학과 문화 그리고 경영이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협조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6. 공동체 의식의 조성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한국인만으로 된 베타적인 관리자집단과 현지인 근로자 집단으로 양분되어 있으며 양그룹은 서로 의사소통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그리고 한국인 관리자 집단과 현지인 근로자 집단 사이의 의사소통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공동체 의식이 조성되기 어렵다는 것은 자명하다.

공동체 의식을 조성하는 방법으로는 한국인, 현지인 구분없이 같이 식사하고 대화하며,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등의 간단한 말은 한국어로 하도록 하는 방법, 현지인의 생일에 축하파티를 열어주고, 애경사에 참석하고 지원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서 편안하고 가족적인 근무 분위기를 만들어 줌으로서 공동체 의식의 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7. 성과급제의 도입

“지금 받고 있는 보수는 만족할 만한 수준인가?”라는 질문에 “만족”이 16%, “보통이다”가 20%, “불만족”이 64%로 나타나 있어 현재 받고 있는 임금에 대해서 만족도가 낮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외자기업에서 일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에 대해서는 “높은 임금”이 가장 많은 이유로 나타나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점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임금에 대한 문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 있는 바 먼저 임금수준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외자기업에 근무하는 중국인들은 서로 만나면 보통 급여가 얼마나고 묻는 경향이 있다. 체면을 중시하고 자존심이 강한 중국인들은 상대방이 자기보다 훨씬 많은 보수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하게 된다. 때문에 항상 다른 외자기업의 보수수준을 조사하여 이와 비슷한 아니면 약간 높게 보수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는 임금지불 방법에 대한 문제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아직도 대부분의 중국 국유 기업에서는 성과에 관계없이 종신고용이 보장된다는 “철밥통”사상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개혁개방의 물결을 타고 중국인의 의식이 많이 바뀌었다. 즉 많은 중국인들은 열심히 일하여 일한 만큼 많이 받을 수 있는 직장을 찾아서 직장을 옮기고 있다. 그 결과로서 그들은 外資企業을 찾아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成果給制의 도입이 요구된다. 成果給制를 철저히 通用함으로서 경쟁심을 유발하여 근로자의 안일한 작업태도를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8. 인력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해외진출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현지인을 고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

러나 현지인이 외국기업에서 경력개발이나 승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능력있는 현지인을 구하는 것은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이번 조사방문에서 현지근로자의 잊은 離職 특히 현지인 중간관리자의 잊은 離職라는 사실을 실감하였다. 한국과 중국기업의 職務滿足 및 組織沒入 비교연구에서도 한국기업의 경우 관리직이 일반직에 비해 職務滿足度 및 組織沒入度가 낮게 나타나 있었다.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신규종업원 모집의 경우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특정학교를 선택하여 취업담당 교사를 통해 졸업생들을 대량으로 신규 채용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중국인들은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와 자신의 출신학교가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그 사람의 組織沒入度를 크게 제고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離職의 경우 그 학교를 통하여 신속히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기존 중국기업 등에서 스카웃할 경우에는 이들의 “人事案”을 넘겨 받는 것이 중요하다. 人事案은 현 중국사회에서 일상을 따라 다니는 개인의 근무·생활기록부, 성분기록표이므로 이를 직접 관리하는 것은 개인의 소속감을 제고 및 노무관리에 매우 중요하다. 현지인의 입장에서는 그 외자기업이 언제 철수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어 人事案은 원래 소속되었던 중국기업에 남겨 놓고자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人事案을 넘겨 받을 때까지 수습사원으로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이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VII. 결 어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노무관리 실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세 가지 부분의 연구를 수행했다. 첫째는 한국기업의 현지경영자들이 느끼는 현지인력에 관한 인식정도였으며, 둘째는 중국인 중간관리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한국기업의 노무관리 및 한국인 관리자의 경영방식에 관한 인식, 그리고 세번째 부분은 현지근로자들이 지각하고 있는 직무만족의 정도와 조직몰입 정도의 조사였다. 이를 통해 나타난 연구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인 경영자들은 현지인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현지인들은 노동생산성이 상당히 낮고 책임의식도 없으며 솔선수범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질이 낮은 노동력에 기인하는 노동생산성의 저하는 저렴한 인건비라는 이점을 상쇄시키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중국인의 가치관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많은 갈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었다.

둘째, 중국인 중간관리자의 경우 한국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좋은 편이었다. 그러나 노무관리와 경영방식 등 세부사항에 있어서는 불만스러운 사항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임금과 승진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이외에도 인간관계, 교육훈련, 복지후생, 업무스타일 등에서도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인식을 보여 주었다.

셋째, 현지 근로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연구에서 한국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조직몰입과 직무만족 모두에서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는 중간관리자들의 경우 많은 부분에서 특히 노무관리부문에서 많은 문제점과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 국유기업에 근무하는 중국인 근로자의 직무만족이나 조직몰입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는 한국기업이 중국 국유기업보다는 고임금, 동기부여 정도 등 노무관리의 여러 부분에서 근로자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중국에서 직접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상대는 중국 국유기업이라기 보다는 중국에 똑같은 조건으로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들이다. 이를 기업과의 비교를 통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중국과 한국은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볼 때 유사한 점이 많으면서도 대단히 상이한 가치관과 관습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중국인 근로자를 관리할 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체계적인 분석이 따라야 할 것이다. 연구의 결과에서 몇가지 노무관리상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바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지인 능력개발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인 경영자들의 대부분이 현지인의 노동생산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이를 그들의 문화나 관습에 원인을 돌리고 있을 뿐 이를 위한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고 있었다. 이의 해결을 위해 기업차원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현지인 교육훈련에 관심을 돌려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둘째, 현지인과의 커뮤니케이션 개선 및 채널구축의 문제이다. 한국과 중국의 서로 유사한 점은 문제해결에 인간적인 방법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관리자와 현지인들과의 대화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다.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오해나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히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개선과 채널구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한국인 관리자를 중국 진출기업에 파견하기 전에 이문화 적용훈련과 중국어 교육 그리고 현지인 관리기법에 대한 철저한 교육훈련이 요망된다.

넷째, 복지후생에 대한 전반적이 재검토가 요망된다. 중국은 과거부터 기업에서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있었다. 그러나 현지의 한국기업들은 임금의 문제에만 집착하고 종업원의 복리후생에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고 현지인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한국인 경영자들은 중국문화의 큰 특징인 企業辦社會라는 개념에 입각하여 복지후생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성과급제도의 도입이다. 중국 현지 근로자들은 최근 개혁개방의 물결을 타고 성과에 따른 공정한 배분을 원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많은 중국인이 외자기업을 택한 이유

로서 이점을 들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들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차원에서 성과급 제의 도입에 대해 검토가 요망된다.

참 고 문 헌

1. 안종석(1993), 한국기업의 대중 투자 실태와 향후 과제, KIEP.
2. 이장우·노장시(1993), 중국문화통론, 종문출판사.
3. 이종일(1997), 중국 경제무역 동향 및 진출확대 방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 한국무역협회(1994), 중국진출을 위한 노무관리 실무가이드.
5. 한국인사관리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1996), 세계화와 인적자원관리전략, 한국인사관리 학회.
6. 魯凡之(1988), 中國發展與文化結構, 香港:集賢社.
7. 常凱(1995), 勞動關係·勞動者·勞權, 中國勞動出版社.
8. 陸國泰(1991), 人事管理學 教程, 紅旗出版社.
9. 日本能率協會マネジメントセンタ(1995), 中國進出企業の人事労務管理マニュアル.
10. 日本能率協會マネジメントセンタ(1995), 中國進出企業のトラブル事例と解決法.
11. 曹 志(1985), 中華人民共和國 人事制度概要, 北京大學出版社.
12. 曹淮煥(1994), 中國的 實體和 政策.

韓國財閥의形成·發展過程과企業家精神에 관한研究

박 유 영*

目 次

I. 序 論	III. 주요 재벌의 형성·발전과 기업가 정신
II. 財閥의 形成·發展과 企業家精神의 理論的 關係	1. 삼성그룹과 이병철회장의 企業家精神
1. 企業成長에 影響을 미치는 主要 要因	2. 현대그룹과 정주영회장의 企業家精神
2. 企業家精神이 企業成長에 미치는 效果	3. 대우그룹과 김우중회장의 企業家精神
	IV. 結 論

I. 序 論

재벌의 개념을 학문적으로 엄밀히 정립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재벌을 가족 지배적인 성격이 강하고 다양한 사업분야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계열기업)의 모임(기업그룹)으로 정의하기로 한다. 다른 한편 재벌(기업그룹)을 경제발전 단계에서 공업화의 주체로써 발생하는 다각적인 기업집단으로 정의하는 견해도 있다¹⁾.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 재벌의 형성발전과정은 해방 이후부터 고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재벌의 형성발전은 신규사업의 전개, 즉 사업의 다각화과정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재벌의 형성발전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 요인중의 하나가 정부정책 및 지원이라는 견해가 많다. 이는 우리의 경제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기업에 대한 영향력이 커다는 것을 의미한다.

1950년대에는 비교적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허용되면서 수입대체산업을 선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형태였으나, 1960~1970년대 들어와서는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1960~1970년대 개발정책하에서 대기업의 육성지원을 통해 대기업이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고 능력있는 기업가를 우선적으로 보호·육성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신규사업의 확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정경유착이란 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즉, 경제개발과정에서 정부와 기업과의 우호적 관계로부터 발생하게 되었다²⁾.

* 숭실대 교수

1) 공병호(1995), pp. 74~76.

우리나라 재벌의 형성발전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은 이러한 정경유착이라는 표현으로 축약되고 있으며 재벌기업의 경영내적 요인인 기업가의 이념 내지 기업가정신이라는 주체적 요인의 역할을 과소평가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해방 이후 우리 기업의 역사를 보면, 많은 기업들이 생성·발전·쇠퇴·몰락의 과정을 거치면서 살아남기도 하고 쇠퇴, 몰락하기도 했는데 현재의 재벌들은 불안정하고 변화가 심한 시대적 상황하에서 이윤이 존재하는 기회를 미리 볼 수 있었던 기업가정신에 의해 성공의 기회를 잡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재벌들은 그들 각각의 성공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창업자(소유경영자)의 경영이념이나 경영사상 등의 영향이 크게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소유경영자나 창업자의 강력한 리더십, 기업경영전략, 그의 개인적인 능력과 가치관, 추진력 내지 성취욕구 등이 기업경영전략에 투영되어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재벌의 형성발전에 있어서 창업자인 경영1세들이 어떠한 그리고 어느 정도 투철한 기업가정신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해 왔느냐에 따라 각 재벌마다의 성공요인 및 특성을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고찰해 봄으로써 재벌의 형성발전이 정부의 각종 지원 및 정경유착이라는 경영외적인 요인에 의해 이루어졌다 는 점 이외에도 창업자의 투철한 기업가정신이라는 경영주체적인 경영내부요인에 의해서도 재벌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재벌의 생성·발전과정에 있어서 기업가 정신을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간주하여 재벌의 형성발전과 기업가정신과의 관계를 논의하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재벌의 형성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을 고찰한 후, 기업가정신의 특성과 재벌의 형성발전과 기업가정신과의 이론적인 관계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재벌의 형성발전과 기업가정신의 사례를 삼성, 현대, 대우 등 주요 재벌의 다각화과정에서 나타난 성공요인과 그 특성을 통해 관찰하여 보기로 한다.

II. 財閥의 形成·發展과 企業家精神의 理論的 關係

1. 企業成長에 影響을 미치는 主要 要因

재벌을 기업들의 모임으로 정의할 때 재벌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일반적으로 기업집단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다.

2) 1980년대 중반 이후 재벌기업의 경제력 집중문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자 재벌에 대한 규제의 강화와 시장개방 등으로 인해 정부가 지원영역을 감소시키자 기업과 정부와의 관계가 점차 비우호적으로 변하게 됐으며 규제에 대한 기업의 반발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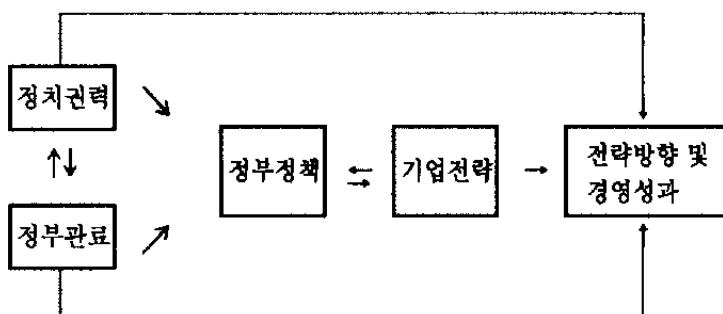
를 제고시키려는 의사결정 패턴 및 기업행동의 패턴을 말한다. 따라서 성과를 제고시키는 방향으로의 의사결정 및 기업행동을 유인하도록 하는 경영전략이 필요하다.

인력관리란 조직내의 인적자원과 관리하여 인사·노무·노사관리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여기서 경영환경의 인식방법, 인사전략, 인사원칙 등의 특성을 찾을 수 있고 또한 임금, 인사고과, 노조조직과 교섭관계, 노사간의 의사소통 및 노사관계시스템 등의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잘 관찰하여 인력관리가 잘 이루어지면 그만큼 전환과정이 원활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져 기업성과가 증대할 것이다.

2) 企業成長과 外部要因의關係

외부요인(경영외적요인)의 대표적인 것으로 정부와의 관계를 들 수 있으며, 정부의 정책은 기업경영 및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즉 현대사회에서 기업과 정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호작용하며 기업의 전략수립 및 성과결정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 및 정책의 성격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부와 기업과의 관계는 <그림 2>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즉 정치권력이 정부관료와 정부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정책담당관료는 정부정책수립에 직접 관여 한다. 그 결과 기업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치권력이나 정부관료의 영향을 받으며 경영성과에 반영된다³⁾.

이때 정부정책은 규제적인 측면과 지원적인 두 측면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 기업과 정부와의 관계는 양자간의 힘의 균형정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⁴⁾.



<그림 2> 기업과 정부와의 관계

한국의 경우 경제개발과정에서 정부가 절대적인 힘의 우위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정부의 정책은 기업활동(기업경영과 성과)이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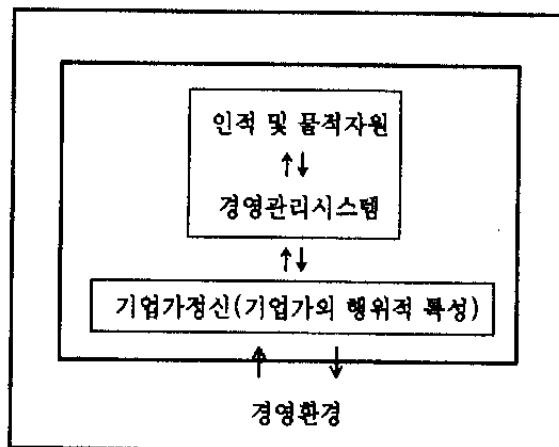
3) 신유근 외(1995), p. 41.

4) 이에 관한 자세한 것은 조동성(1990)과 신유근(1992)을 참조.

다⁵⁾.

3) 企業家精神과企業成長과의關係

기업활동의 근본적인 주체는 생산자(기업가)이므로 기업가 개인의 행위적 특성을 통해 기업가정신과 기업성장과의 중대과정의 관계를 파악해 볼 수 있다. 즉 기업경영의 주체자인 기업가(창업자) 개개인의 가치의식과 행동성향을 나타내는 행위적 특성을 통해 개별기업가의 기업가정신을 특징적으로 파악하여 기업가정신과 개별기업의 성장과의 관계를 파악해 볼 수 있으며, 이를 그림으로 간단히 나타내면 <그림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즉 기업가 정신에 의해 경영관리시스템이 영향받고 또 이것이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피드백과정을 통해 기업가정신이(주어진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기업성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림 3> 기업가정신과 기업성장

2. 企業家精神이企業成長에 미치는效果

1) 企業家精神(Entrepreneurship)의定義와特性

슘페터에 의하면 기업가란 새로운 결합 또는 혁신을 촉진시키는 사람으로 봤다. 즉 기업가는 ① 새로운 상품의 개발, ② 새로운 생산방식의 도입, ③ 새로운 시장의 개척, ④ 원료와 반제품의 새로운 공급원의 정복, ⑤ 독점적 지위의 형성이나 새로운 산업조직의 수행 등 소위 말하는 기술혁신의 기회를 발견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들은 새로운 상품, 새로운 시장, 새로운 자원의 개발, 새로운 조직을 포착하여 새로운 기업을 일으킨

5) 정부가 절대적인 힘의 우위를 가지고 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수직적 권위주의 모형”이라고 한다.

다. 여기서 기업가는 반드시 자본가이어야 하거나 경영자나 발명가가 되어야 한다는 법도 없다. 그는 자본은 자본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경영자를 선택하여 조직을 움직이며 새로운 기술의 도입은 발명가의 기술을 이용·활용하면 된다. 즉 기업가는 자본, 자원, 기술 및 경영자의 경영능력을 새로운 형태로 결합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기업가는 발명 또는 이전에 시도된 적이 없는 기술적 가능성 적용, 원재료의 새로운 공급원과 제품의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거나 더 나아가 산업을 재편성함으로써 생산양식을 혁신하는 자로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이같은 기업가의 역할을 ‘창조적 파괴’라고 보고 창업자 이윤을 바로 이러한 것의 보수라고 봤다. 그리고 기업가의 이러한 끊임없는 창조적 파괴활동에 의해 기술혁신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노동, 자본 및 기술 등 생산요소를 잘 결합하여 새로운 생산방법을 만들어 내는 기술혁신을 이룩하려는 정신을 기업가정신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기업가정신이 투철한 기업가에 의한 기술 혁신이 경제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라는 것이다.⁶⁾

드러커(P. Drucker)는 그의 저서 「이노베이션과 기업가정신」에서 기업가란 변화를 탐구하고 변화에 대응하며 또한 변화를 기회로 이용하는 자로 보았다. 다시 말해서 기업가는 변화를 일으키고 새롭고 이질적인 가치를 창조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것은 기업가의 역할을 변화를 통해서 기회의 확대로 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기업가란 변화를 일으키고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면서 변화를 기회로 이용하면서 이노베이션의 담당자라는 것이다. 즉 이노베이션을 실천해 가는 사람을 기업가로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본다. 즉 경제활동을 수행하여 가는 과정에서 기업가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업가정신을 새로운 문제나 새로운 기회에 대해 적절히 대응해 나가는 경영관리의 적용, 그리고 이노베이션을 경영관리에 실천해 나가는데서 찾아 볼 수 있다”⁷⁾.

Timmons는 “기업가정신은 실질적으로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부터 가치있는 어떤 것을 이루어 내는 인간적이고 창조적인 행동이다. 기업가정신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나 자원의 부족을 고려하지 않고 기회를 추구한다. 기업가정신은 비전과 그 비전을 추구함에 있어 다른 사람들을 이끌 열정과 헌신을 요구한다. 또한 기업가정신은 계산된 위험을 감수하는 의지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미국의 베슨대학(Bapson College)의 Ronstadt는 그의 저서 “기업가정신”에서, “기업가정신이란 빨간 신호등 앞에서도 때로는 이를 무시, 돌진하는 것과 같다. 기업가정신은 스스로 사업을 일으키는 것, 그리고 이를 자기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일로 여기는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⁸⁾.

6) 太田一郎(1996), pp. 42~44.

7) Drucker(1985), pp. 25~29.

8) 정대용(1995), p. 16.

吉森賢 교수에 의하면, 기업가정신이란 기존의 기업, 기간산업 및 주요산업 중의 대기업 최고경영자나 전문경영자도 기업의 장기적 이익과 개인적인 위신, 권력, 이익을 실현시키는 행동, 환경변화에 통찰력을 가지고 있으며 위험을 무릅쓰고 전략적 혁신을 결정, 실시하는 능력과 의욕 결과에 대한 최종적 책임을 지는 용기, 자기책임, 자조노력, 자존심, 그리고 기업경영에 헌신하는 일련의 태도, 신조, 행동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⁹⁾.

이상과 같이 여러 교수들의 견해를 종합해서 정리하여 보면, 리더십과 개척심이 강하고 승부근성 내지 성취욕구가 높으며 혁신적인 면을 지닌 기업가가 새로운 사업을 확대·성장시키고자 하는 실천적인 행위적 특성을 기업가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행위적 특성은 기업가가 기업성과를 얻어내기 위해 정치·경제·사회·환경 등의 경영환경에 얼마나 능동적이고 혁신적으로 대처해 나아가는가 하는 기업인 능력에 의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기업가정신이란 기업가의 행위적 특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써 창조성과 파괴성(창조적 파괴)에 근거하여 경영자에 요구되는 혁신적인 기능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기업가의 역량으로 정의할 수 있다.

투철한 기업가 정신을 지닌 기업가, 또는 기업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기업가는 새로운 사업을 창업하여 급성장을 도모하는 모험심과 승부근성이 강하며 독특한 경영능력을 지닌 사람이라는 면에서 전문경영자나 관리자와 구별한다. 그 예로써 맥도날드를 창업한 Ray Kroc의 경우를 보기로 하자¹⁰⁾.

Ray Kroc는 지금과 같은 서비스개념을 처음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었다. 크고 작은 수많은 창조적인 아이디어들과 결합하여 햄버거의 대규모 판매원리를 만들어 냈다. 새로운 설비, 디자인, 새로운 품질기준, 새로운 종업원 훈련기준, 새로운 건축기준, 유통에서의 새로운 혁신과 대규모 가맹점 체계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고안해 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능력을 개발시키고 그로 인해 새로운 의미의 노사관계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패스트푸드 개념을 개발하고 새로운 경쟁방법을 도입했다. 맥도날드는 저렴한 비용으로 표준화된 음식을 공급하는 방식을 완성했던 것이다. Ray Kroc는 헨리 포드의 자동차 회사에서 부품표준화를 통한 대량생산 시스템에서 아이디어를 얻어냈다. 그는 당시 포드자동차의 대량 생산방법을 음식업계에 가져 음으로써 경영전략을 혁신시킨 것이다. Kroc와 같은 기업가의 혁신적 기능의 수행으로서 창조성과 혁신성에 근거하는 탁월한 기업경영 역량은 기업가정신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2) 企業家精神이 (財閥)企業의 成長에 미치는 效果

9) 吉森賢(1989), p. 15.

10) 정대용(1995), pp. 18~19.

기업가정신이란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볼 때 자원(인적, 물적 자원), 정부 관계, 기술 등에 변화를 가져오게 하여 기업의 성과 및 생산 확대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고, 또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낼 수 있는 기업가의 역량(또는 기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리더십, 승부근성 내지 성취욕구, 통찰력 내지 선견지명, 과감성과 모험심, 독창성(또는 창조성) 등등이 동원된다. 따라서, 기업가 정신을 다음과 같이 함수식으로 간단히 표현 할 수 있다.

$$E = f(x_1, x_2, x_3, x_4) \quad \dots \dots \dots \dots \dots \dots \dots \quad (2)$$

E : 기업가정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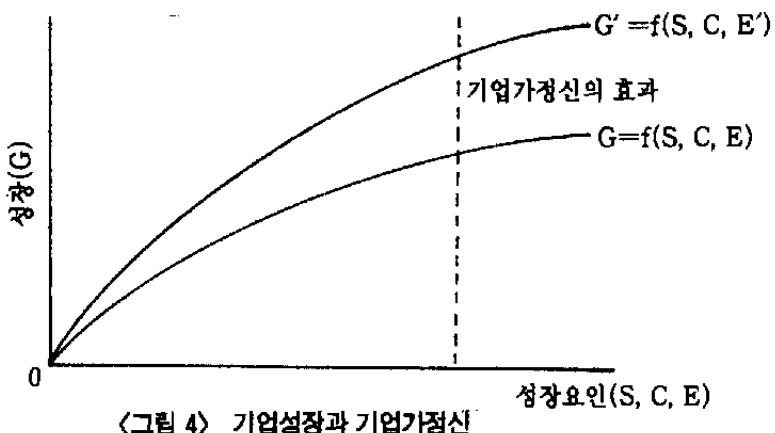
x_1 : 리더십

x_2 : 도전적 · 진취적 · 혁신적 의지(경영마인드)

x_3 : 창조적 기술개발 및 성장산업의 개척 개발

x_4 : 외부환경 적용능력 및 해외시장 개척

식 (2)에서 표현되고 있는 기업가정신은 앞에서 설명된 식(1)의 $G=f(S, C, E)$ 에서 타여건이 일정하다면 기업성장에 대해 정의관계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 <그림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4> 기업성장과 기업가정신

그러면 기업가정신이 기업성장에 어떻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몇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1) 企業文化的創造을 通해서 企業成果를 增大시킨다

회사의 전구성원에게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기업가정신이 요구될 필요는 없다. 계속적으로 혁신적이고 창조적이 되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자(창업경영자)의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아이디

어가 전구성원에게 문화적으로 형성되면 가능하다. 창조성과 혁신성이 높아지면 그것은 생산 성향상으로 연장될 것이다. 또한 창업자(소유경영자)의 강력한 지도력과 독창성들이 동원되는 기업가정신에 의해 신속한 의사결정의 도출, 안정감 부여, 자원동원의 용이, 정부의 지원 및 대정부관계의 용이 등을 기업구성원이 공유하게 되는 기업문화를 주도 창달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사업확장을 촉진시킬 것이다.

2) 開拓的인企業家精神에의한成就動機與

하바드대학의 맥칼란드(D. McClelland)는 성취욕구(need for achievement)라는 개념을 통해 성취유인이론(achievement motivation theory)을 제시했는데 이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¹¹⁾.

성취유인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의 사고과정은 그렇지 않은 사람의 그것보다 더 많은 착상을 이루어 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개인의 사고과정의 생성능력을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면 그 기준에 의하여 소위 성취욕구 득점(achievement score)을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성취욕구가 높은 사람은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빨리 배우고, 또한 동일한 지능지수(I.Q)를 가지고 있더라도 공부를 더 잘한다. 더욱 성취욕구가 높은 사람들은 사회적인 압력에 더 잘 견디어 내며 일 할 때는 친구보다 전문가를 협조자로 선택하고 위험한 직업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1925년과 1938~1950년에 있어서 미국, 캐나다, 유럽 등의 몇몇국의 성취욕구 수준과 경제성장을 비교한 결과, 대체로 성취욕구 수준이 높을수록 성장률이 높아지는 정의관계에 있음을 발견했다. 맥클란드 교수는 이것이 그의 이론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성취욕구 수준이 높은 사회일수록 경제발전을 위한 기업가의 출현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예비가 지적한 바와 같이 청교도적인 기업가들은 칼빈교(Calvinism), 감리교(Methodism), 웨이커교(Qakerism) 등의 교인이었으며, 그들은 금욕적인 생활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운동기보다도 오히려 성취유인에 의하여 그들의 행동이 더 잘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경제발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성취수준을 높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청소년에게 부모가 행사하는 성취와 자립을 지향한 압력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본다.

맥클란드 성취유인 이론에 근거해 볼 때 재벌의 형성발전과정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요인은 기업가 및 구성원의 높은 성취동기 및 적극성 등 기업가 및 구성원의 심리적인 성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개척적인 기업가정신에 의해 고무되는 높은 성취동기, 모험심 및 적극성은 사업다각화 전략 및 문어발식 사업확장, 시장지분 확대를 가져오게 하고 또한 불확실성을 대처하고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

11) 이석륜(1989), pp. 220~223.

3) 環境適應的 企業經營能力提高

정부관계, 해외경제변화 등 외부환경 변화에 적응적인 경영능력제고를 통해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다. 기업의 성장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관계, 해외시장의 변화 등 외부환경 변화에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일을 벌일 수 있는 기업가가 필요하다.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호적이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대정부 로비력이 뛰어난 기업가일수록 사업확장이나 기업성장에 보다 큰 성과를 가져올 것이다. 우리의 경험에서 보았듯이 불균형 성장정책하의 대기업 집중지원 속에서 내수시장 보호, 투자재원 조달, 공해방지대책의 수립, R&D, 투자확대 등에서 대기업들은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대정부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면서 정부정책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한다든지 대정부 로비를 할 수 있는 기업가는 사업확장 및 사업전략의 실행에 있어서 큰 성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또한 세계경제가 무국경화 되어 가고 있으며 세계시장에서 일류기업과 경쟁해야 하는데 이 때 세계경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업가만이 사업을 확대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여러 가지 외부환경의 변화에 끊임없이 대응하는 기업가정신을 소유한 기업가에 의해 주도되는 기업이 성장해 갈 수 있을 것이다.

III. 주요 재벌의 형성 · 발전과 기업가 정신

1. 삼성그룹과 이병철 會長의 企業家精神

삼성그룹은 1936년 26세의 청년 이병철씨에 의해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기반으로 정미소사업을 시작해서 오늘의 삼성모체인 “삼성상회”를 1938년에 대구에서 설립했다. 1948년에는 종로2가에 “삼성물산공사”라는 회사를 설립, 무역업을 시작했으며 이때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등에 해산물과 면실박을 수출하고 면사, 설탕, 강재, 의약품, 비료 등을 수입하였다.

전쟁 중인 1951년 부산에서 삼성물산주식회사가 설립되었고 무역업을 통해 많은 수익을 남겼으며 사업은 탄탄대로를 달렸다. 이 무렵 이병철 회장은 전쟁이 끝나고 경제가 안정되면 무역업은 더 이상 비교우위가 없다고 판단하여 제조업에 진출하기로 결심하였다. 정부의 수입대체산업 육성계획이 그의 그같은 결심을 고무시켰던 계기가 되었다. 그리하여 1953년 설탕제조업체를, 1954년에는 모직업체를 설립하여 제조업에 뛰어들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오늘 날 제일제당과 제일모직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당시 제조업에 대한 이병철 회장의 구상에 대해 삼성물산의 경영진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수차례 회의 끝에 이 회장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고 제조업 진출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이 회장의 결정은 당시 수입대체 산업육성이 라는 한국경제의 여건과 잘맞아 들어갔다. 그리고 이것이 1960년대 이후 삼성그룹을 세우는데 크게 기여했다¹²⁾.

1950년대에 이 회장의 제조업 진출결정은 한국경제 여건에 잘 적응하였으며 이것은 이 회장의 전략적 기업가정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새로운 사업을 진출할 때는 경제의 발전단계에 대응해야 하며, 진출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성립됐을 때 해야 한다」는 이병철 회장의 전략적이고 통찰력있는 기업가 정신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그의 자서전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³⁾.

“경제의 발전에는 반드시 과정과 단계가 있게 마련이다. 아직도 삼성이 소비재 생산에서 출발한 것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있지만, 자본의 축적상황, 기술의 수준, 내외시장의 동향 등, 여건에 상응하여 추진해야 사업은 발전하는 것이다. 만약에 삼성이 제일제당이나 제일모직을 설립했던 당시, 이러한 국민경제상의 조건을 무시하고 중공업에 착수했던들, 印度제직업의 실패처럼 삼성도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이처럼 1960년대 이전에 이미 삼성은 급속한 사업확장을 시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이병철 회장의 경영이념 내지 기업가정신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1960년대에 들어오면서도 삼성은 비료, 전자 등 기간산업으로 사업확장을 시도했다. 당시 비료의 자금자족이 가장 큰 과제였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1965년 울산공업단지에 세계 최대규모의 비료공장인 「한국비료」를 건설하고자 시도하였으나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가서 사카린(OTSA) 밀수 사건으로 준공과 동시에 한국비료를 국가에 헌납하였다. 그 후 1994년 민영화과정에서 공개입찰을 통해 다시 삼성그룹이 인수하였다.

한편, 삼성그룹의 성장에 큰 역할을 한 전자산업의 진출이 1969년에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이병철 회장의 사업수완과 성장산업의 개척개발의 면모를 찾아 볼 수 있다. 삼성이 전자산업에 진출하고자 하자 기존업계의 강한 반발과 여론이 줄지 않았다. 그 이유는 공급과잉 상태인 업계의 상황과 중소기업의 몰락이라는 데에 기인하였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여곡절 끝에 전량수출 조건으로 허가가 났다.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은 당시 박정희 대통령을 직접 만나 전자산업의 장래에 대해 설명하면서 수출산업의 육성이라는 정부의 시책에 호응하여 전자제품을 생산, 수출하는 것이 국가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¹⁴⁾.

1977년 12월에는 한국반도체의 미국 현지법인 ICII의 지분을 인수하여 삼성반도체로 상호를 변경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하게 되었고, 1980년 1월에 전자산업과 합쳐서 삼성전자가 반도

12) 공병호(1995), pp. 112~113.

13) 이병철(1986), p. 247.

14) 공병호(1995), p. 116.

체산업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 무렵 한국기업이 반도체산업에 진출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었다. 즉, 선진국과의 극심한 기술격차, 불부명한 시장전망, 고도의 기술인력 부족, 특수설비공장 건설 등의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러한 난관을 헤치고 반도체 개발에 뛰어들어 반도체의 수출을 시작하였다. 삼성이 84년 3월에 64KD램을 개발하기 시작하여 92년에 64MD램, 94년 256MD램을 최초로 개발함과 동시에 매출실적이 세계반도체 가운데 1위에 올랐고 D램 단일품목에서는 세계 1위가 될 만큼 성공하였다.

제일모직을 중심으로 하여 기존에 이미 수출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군을 가지고 있던 삼성은 75년 종합상사 1호로 지정되었고 80년대까지 우리나라가 경쟁력 우위에 있다고 생각되는 경공업제품의 수출을 통해 성장하였다. 더욱이 전자산업 및 반도체산업에의 진출과 그 성공은 삼성의 성장에 큰 획을 긋는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삼성의 성공은 이병철 회장의 과감한 결단력, 통찰력, 성장산업의 개척, 개발 등으로 나타내는 그의 기업가정신에 의해 주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삼성의 반도체 성공사례는 한국기업의 성장 발전사에 길이 남을 만한 기업가정신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볼 때 기업의 성장 발전은 창조적인 기술개발과 성장 가능산업의 개발을 통해 국제경쟁력에서 이겨야 한다는 이병철 회장의 경영이념 내지 경영전략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즉 이병철 회장은 산업화과정에서 여러 가지 여건변화를 민첩하게 파악하여 시대에 부응하는 성장산업을 개척·개발하여 나아갔으며 또한 해외시장 개척에 힘을 기울였다. 이러한 그의 기업가활동은 곧 그의 기업가정신을 나타내 주고 있다.

요컨대 삼성그룹의 형성, 발전과정을 보면 이병철 회장의 개척적인 기업가정신에 의해 주도되어 온 환경변화에 잘 적응하고 기회를 포착하는 환경적용 능력과 신기술의 개발을 통한 새로운 사업을 개발, 개척하려는 마인드에 의해 삼성그룹이 성장·발전되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창업자의 기업가정신에 의해 주도되고, 또한 대정부관계를 우호적인 관계로 유지하면서 경영환경변화 추세를 잘 예측하고 이에 잘 적응하고 그리고 이러한 외부환경변화를 잘 활용하여 기업내부의 기술개발, 시장개척, 인적자원의 활용 등의 기업역량을 강화시켜 나아감으로써 한국의 대표적 재벌그룹으로 성장·발전하였다고 본다.

2. 현대그룹과 정주영 會長의 企業家精神

1938년 22세인 정주영씨는 그가 일하던 살 도매상인 “경인상회”를 서울 신당동에 설립함으로써 그의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그 후 1940년 “아도서어비스”라는 자동차수리공장을 운영하다가 1942년 일본의 기업정리령에 의해 문을 닫고 말았다.

해방 후 1946년에 “현대자동차공업사”라는 회사를 중구 초동의 적산지대를 불하받아 설립

하였다. 이어 1947년 5월에 조그마한 건설회사인 “현대토건회사”를 설립하고 1950년 1월에는 현대토건과 현대자동차공업사를 합병하여 회사이름을 현대건설이라 정하고 중구 필동에 사옥을 옮겼다.

현대건설은 1959년 9월 한강인도교 공사를 수주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부상하기 시작하였고¹⁵⁾, 현대그룹이 이후 많은 계열기업을 설립하는데 이 건설업이 주축이 되어 크게 기여했다.

1960년대 초 군사정부 출현 이후 정부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개발계획하에 서 이루어지고 있던 소양감ymb 건설, 고속도로 건설, 호남비료 공장 등 SOC 건설공사에 참여하여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였다. 또한 국내 최초로 해외건설공사인 1965년의 태국 파타나나리티왓 고속도로 건설공사도 하여 외화를 벌어드리기도 했다.

1960년대의 현대건설의 약진과 함께 1967년 현대 자동차가 설립되어 현대그룹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설립 당시에는 포드자동차와 조립기술 계약으로 시작하였으나 1975년에는 자체모델인 pony의 양산체제에 들어갈 만큼 성장하게 된다. 197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현대그룹은 중공업 진출에 가장 열심을 보이면서 1973년에 현대중공업을 설립하게 된다. 설립하기까지에는 많은 반대가 있었고, 어려움이 많았지만 정주영 회장 특유의 뚜렷으로 밀고 나아갔다. 그는 건설업에서 습득한 사업플랜트, 기계시공기술을 잘 활용하면 조선공업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뿐만 아니라 현대중공업을 시작으로 하여 중화학공업분야의 사업을 확장해 나아갔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현대자동차서비스(1974), 현대미포조선(1975), 현대종합제철(1977), 현대정공(1977), 현대차량(1978), 인천제철(1978), 현대증기(1978) 등이 설립되었다. 1970년대에는 이와 같은 중공업 진출과 함께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하였다. 1975년의 최초 국산차 모델인 pony의 생산을 개시했고, 중동, 사우디, 이란, 이라크 등으로부터 대규모 건설공사를 수주함으로써 국내 최대의 재벌 중의 하나로 부상하게 되었다.

70년대 중화학공업의 진출이 성공하게 된 것은 1973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중화학공업 촉진정책과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즉 현대는 이 기회를 잘 활용하는 기민성과 강력한 추진력을 보였던 것이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오면서 중동특수의 후퇴와 조선경기 침체로 어려움에 직면하자 현대그룹은 조선 및 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에서 소프트형 산업을 추가하는 산업구조도 과감히 조정해 나아갔다. 그러한 구조조정과정에서 1983년 현대전자를 설립, 반도체 산업으로의 진입이 특기할 만한 사업이었다. 삼성이 반도체산업 진출에 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있었듯이 현대의 반도체산업 진출에 있어서도 많은 비난과 어려움이 있었으며, 특히 삼성에 의해 후발업체로서 고전하기도 했으나 정주영 회장의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받은 현대

15) 당시 건설업에서 6위를 차지할 만큼 성장했음.

특유의 승부근성으로 전자산업의 성공을 가져오게 하였다. 그후 1989년에는 현대석유화학의 설립을 기반으로 하는 석유산업에 진출을 하였다. 이처럼 현대그룹은 경제개발정책이라는 경제환경변화에 잘 적용하고 이를 좋은 기회로 잘 활용하면서 다른 그룹에 비해 중화학공업에 대한 과감한 진출과 자동차 사업, 건설관련 사업으로 그룹의 급성장을 이루었다.

현대그룹의 성장요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겠지만, 특히 정주영 회장의 예측력과 저돌적이고 강력한 추진력으로 나타나는 기업가정신에 의한 부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 한 예로써 현대자동차의 설립당시(1974년)로서는 국내생산 기술이 미비했고 국내내수시장도 취약했는데도 향후경제를 주도할 전략산업으로 예전하여 10만대의 공장을 설립했고 1976년에는 자체모델인 pony의 양산체계에 들입하는 등 과감한 투자를 했다. 그리하여 현재 130만대의 생산능력을 가질 만큼 다른 기업에 비해 무모하리 만큼 과감한 투자설비를 했다. 이 자체가 규모의 경제의 잇점을 통해서 기업경영의 잇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것이 현대그룹의 형성발전에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외부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가는 환경적용 능력이 민첩했다. 즉 미국에서 소형 자동차에 대한 무역규제로 일본기업들이 중대형 자동차로 전략적 전환을 했을 때 소형차 수출의 품새시장이 생겨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였으며, 또한 80년대초 정부의 자동차산업합리화조치화 때에 승용차부문을 선택하였다는 점에서 볼 때 외부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재벌그룹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¹⁶⁾.

이러한 성공적인 사업성장은 사업예측력, 그리고 과감한 의사결정 및 추진력으로 나타나는 정주영 회장의 기업가정신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기업가로서의 혁신적이고 개척적인 기업활동과 결단력, 추진력, 예측 및 판단력을 바탕으로 한 현장진두지휘형의 리더십으로 나타나는 정주영 회장의 기업가정신에 의해 주도되어진 현대의 독특함이 현대정신을 형성시켰으며 이것이 성장·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요컨대, 현대그룹의 형성발전의 원동력이 된 것은 「하면 된다」는 정신에 기초한 과감하고 강력한 추진력에 바탕을 둔 강력한 리더십과 사업예측력 및 개척성으로 나타나는 정주영 회장의 기업가정신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한국의 경제개발과정에서 특성을 나타나는 정부지원과 외부환경 변화와 맞물리면서 그룹이 형성 발전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대우그룹과 김우중會長의 企業家精神

앞에서 본 삼성, 현대그룹이 선발재벌이라면 대우그룹은 상대적으로 후발그룹이다. 대우그룹은 1967년 김우중씨가 설립한 무역상 “대우실업주식회사”가 그 뿌리라고 할 수 있으므로

16) 신유근 외(1995), pp. 413~414.

60년대 중반에 태어난 후발기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5대 재벌권으로 부상할 만큼 급성장했다.

이러한 급성장 요인은 무엇인가? 이는 한 마디로 말해서 김우중 회장의 투철한 기업가정신에 의해 주도되어 선발기업에 비하여 많은 부실기업 인수와 이의 정상화를 통해서, 또한 내 수지향적 성장전략보다 새로운 해외시장을 개척하면서 성장을 추구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대우실업(주)는 트리코트원단을 동남아로부터 주문 받아 수출하는 것을 중심으로 주도하다가 1970년대에 봉제수출로 전환하면서 해외시장 개척에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해외수출 전략은 당시 정부의 수출드라이브정책과 부합되면서 초창기부터 급성장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내수시장보다는 해외시장을 도전과 창조로 개척해 가는 이른 바 “대우정신”이 생겨나게 된다¹⁷⁾.

1970년 미국이 조만간 섬유제품에 대한 수입쿼터제를 실시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게 된 김우중 사장은 수익성에 관계없이 수출 물량의 증대에 주력하였으며 그 결과 대미수출 물량이 5배나 증가했고, 아시아의 섬유류 수출기업 가운데 1위를 차지하고, 70년대 후반에는 이익률을 가장 많이 내는 회사 가운데 하나가 된다. 이같은 섬유류 수출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유럽까지 판매망을 확대해 가는 적극성을 보였으며, 한편으로는 70년대에 메리야스 수출업체인 동남섬유를 사들이면서부터 기업인수를 시작하였다. 창업7년만인 1974년까지 13~14개의 기업을 인수하거나 설립하였다. 그리고 1973년부터 건설업에 진출하기 시작하였으며 해외건설에 진출하기 위해 영진토건을 인수하여 설립한 대우건설은 대우개발(주), (주)대우건설부문으로의 변화를 거쳐 1984년에 (주)대우로 되었다¹⁸⁾.

이러한 기업인수 설립의 결과 1975년에는 대우가 섬유피혁제품, 기타 경공업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이외 은행 및 금융산업으로 다각화를 통해 대재벌로 성장했다. 그리고 같은 해인 1975년에 대우실업이 종합상사로 지정되었으며 이것이 대우그룹으로 하여금 중화학공업으로 까지 사업영역을 확대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1970년대 중반이후부터 대우그룹은 사업구조를 과감하게 개편하기 시작했고, 건설부문에서 중동 및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하였다. 사업구조의 개편은 조선, 기계 등의 중공업분야로의 사업확장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이 분야의 사업확장은 정부의 중화학공업부문의 적극적인 개발정책과 부합하면서 이 분야의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정부의 지원하에 은행으로부터 확보할 수 있었다.

17) 공병호(1995), pp. 182~183.

18) 공병호(1995), pp. 132~134.

대우그룹의 사업화장 중 중화학공업진출과정에서 76년 한국기계의 인수, 77년 제철화학, 78년 새한자동차와 융포조선을 인수하는 등 부실기업들을 인수하여 이를 정상화시킴으로써 김우중 회장은 탁월한 경영자로 평가받기도 했다(물론 특혜시비로 비난받은 점도 있다). 그 예를 한국기계의 인수과정에서 찾아 볼 수 있다. 1976년 정부는 경영난에 허덕이는 적자상태의 한국기계를 인수할 만한 기업을 물색하던 중 한국산업은행을 통해 대우기업의 김우중 회장에게 한국기계(당시 한국최대규모의 디젤엔진 차량 및 산업 기계류 생산업체)의 인수를 요청했다. 산업은행이 대우 김우중 회장에게 인수할 것을 요청한 것은 지금까지 부실기업을 인수하여 정상화시키는데 뛰어난 역량을 보였던 점을 고려했을 것이다. 그러나 대우의 간부들은 한국기계의 인수에 반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우중 회장은 산업은행의 제의를 수락했고 이를 인수하여 대우기계와 합병하여 대우중공업을 설립했다. 그리고 직접 사장직의 책임을 맡아 온 정성을 다해 경영개선에 힘쓴 결과 1년만에 손익분기점에 도달했고 몇 년 되지 않아 이익을 냈다. 이처럼 부실기업을 인수하여 이를 정상화시키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¹⁹⁾.

초창기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는 경공업제품, 특히 섬유류제품의 수출쿼터 확보와 수출금용을 적당히 활용함으로써 대우가 급성장했다면, 1970년 중반이후 80년대에는 부실기업의 인수와 정상화를 통해서 중공업분야로 진출하면서 산업의 구조조정을 실현할 수 있었다. 이에 필요한 자금조달은 부실기업에 대한 반대급부로 가능했던 금융지원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가능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관련, 비관련 분야로의 사업다각화가 이루어지고 외형이 커지면서 대우그룹은 급성장하게 되었다.

최근 90년대 들어오면서 대우가 동구권 및 해외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경우가 폴란드 최대 국영자동차회사인 POS를 인수한 것을 비롯하여, 루마니아, 체코, 인도, 중국, 우즈베키스탄 등의 조립공장과 부품공장을 설립했다. 이러한 해외투자를 통해서 다른 선진국기업은 갖지 못한 부품조달 네트워크를 다양화시키고 생산능력을 창출하려는 김우중 회장의 의지를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해외경영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특정 지역에서 전쟁이나 둘발사태가 발생할 경우 생산입지와 생산량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잇점을 얻게 된다. 이와 함께 현지적응능력을 연마할 수 있는 지역전문가를 배출할 수 있고 해외투자를 통해서 대우상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장점도 갖게 된다. 이는 부실기업을 인수하여 정상화시키면서 성장을 앞당긴 경험과 기술(노하우)을 지구촌을 무대로 한 세계경영에서 다시 한번 시도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 본 대우그룹의 성장과정에서 보면, 김우중 회장은 정부의 정책변화 뿐만 아

19) 공병호(1995), pp. 135~136.

나라 해외시장동향을 빨리 인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대처하는 기업가정신을 보였다. 즉 대우는 김우중 회장의 기업가정신에 주도되어 정부정책의 변화와 해외시장변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이를 잘 활용함으로써 부족한 재원 및 자원의 확충, 진입규제의 활용, 안정적인 시장확보 등의 잇점을 누렸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대우는 의부환경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에서 성장을 하였다. 즉 부실기업을 인수해 정상화시키면서 성장을 앞당긴 기술, 이른바 「시간을 활용하는 기술」을 통해 국내 어느 그룹보다도 빠르게 성장했다. 이러한 경험과 기술이 지금 지구촌을 무대로 한 세계 경영에서도 시도되고 있다. 이같은 「시간을 사는 기술」과 「부실기업의 인수 및 정상화」등은 다른 그룹에 비해 대우그룹의 차별화이며 이는 김우중 회장의 투철한 기업가정신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외국의 한 언론은 김우중 회장의 그러한 능력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²⁰⁾.

“그의 눈에는 보통사람들에게 문제거리 밖에 안되보이는 넓은 공장들이 노다지로 보인다. 무너지는 회사도 그의 손을 거치면 되살아난다. 그는 마이더스의 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조선일보는 김우중 회장을 “타고난 출장재질”的 소유자로 다음과 같이 평하고 있다²¹⁾.

“김우중 회장을 국내에서 만나기는 참 힘들다. 귀국했는가 싶으면 출장중이다. 세계경영 이후에는 사흘중 이를을 해외에서 보낸다. 96년 김회장의 출장일수는 257일, 21회의 출장에 방문국가가 37개국이었다. 폴란드나 베트남 등 주요 거점국가엔 10회 이상 들었다. 비행거리 만도 56만 6천km 지구를 15바퀴 도는 거리다. 1997년에도 7월말까지 212일중 114일을 해외에서 보냈다. 김회장의 출장은 한나라에 머물다가 귀국하는 식의 출장이 아니다. 거의 매일 국경을 넘나드는 강행군이다. 따라서 기내생활 없는 김회장의 하루는 생각할 수 없다. 그에게 기내 1등석은 잠자리요, 식탁이요, 사무실이요, 서재다.”

요컨대 20여년 만에 대우그룹은 한국 5대 재벌권의 하나로 급성장 시켜 대우신화를 만들어 낸 데에는 기업인수와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어지는 금융지원 및 정부지원에 큰 힘을 얻었다는 점도 있지만, 그 원동력은 김우중 회장의 투철한 기업가정신에 기인되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김우중 회장은 세일즈맨으로서 현장을 누비고 다니면서 세계를 상대로 장사하는 열정적인 기업가이며 그의 이러한 정신은 한국의 기업가 정신의 전형(典型)이 된다고 할 수 있다.

IV. 結 論

20) 대우기독(1997) 9월 1일자 신문 박원재 기자의 「세계 경영대마여행」 중에서 인용.

21) 조선일보(1997) 8월 11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재벌형성·발전은 정부의 경제개발정책과 기업가정신의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경제발전 초기 단계에서는 생산요소 및 상품시장이 확립되어 있지 못하므로 기업인은 여러 시장을 대상으로 기업활동을 조정하는 통상적인 경영기능 이외에 시장내에 내재하는 결함을 매꾸고 시장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생산요소 및 경영여건을 획득·이용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기업인 능력, 즉 기업가정신은 기업의 성장·발전에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기업가정신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기본적인 투입물이면서도 마도되지 않는 요소이므로 경제발전에 따라 어느 시점까지는 기업가정신이 강한 기업인에게 사업확장 및 기업성장의 기회가 집중되기 마련이다. 또한 원초적인 기업가정신의 차이로 인한 자연발생적인 다변화를 통한 재벌의 형성이 정부주도하의 고도성장정책으로 다시 촉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부실기업 내지 도산기업의 처리에 관한 정부의 시책도 재벌형성에 기여하였다. 도산위기에 처한 기업을 파산 또는 소멸시키면 채무불이행과 실업 등의 경제·사회·정치적 파급 효과가 크므로 정부는 흔히 재벌로 하여금 이러한 기업들을 인수하도록 권유하고 그 반대 급부로 소위 구제금융이나 다른 특혜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

요컨대 정부의 개발정책하에서 정부의 지원과 보호를 받으면서 재벌이 형성·발전되어 왔다는 점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급속한 사업확장을 통한 재벌의 형성·발전에 있어서 창업자의 투철한 기업가정신이 크게 작용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정부와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하여 정부의 보호와 지원을 받으면서 투철한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온 기업이 재벌기업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參考文獻

1. 공병호, 「한국경제의 권력이동」, 창해, 1995.
2. 대우기획조정실, 「대우가족 부문별 성장사」, 1984.
3. 민경국, “자유경쟁과 기업가적 정신”, 자본주의 이념의 경제학적 재조명, 한국정신문화 연구원, 1988.
4. 신유근, 「한국의 경영」, 박영사, 1992.
5. 신유근 외, 「한국 현대기업의 경영 특성」, 세경사, 1995.
6. 조동성, 「한국재벌연구」, 매일경제신문사, 1990.
7. 정대용, “전략혁신과 기업가정신에 관한 연구”, 충실험제경영연구, 25집, 1995.
8. 정주영,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제삼기획, 1991.

9. 이석륜, 『경제발전론』, 법문사, 1989.
10. 이병철, 『호암자전』, 중앙일보사, 1986.
11. 太田一郎, 『企業家精神の生成』, 多賀出版, 1996.
12. 十川玄國, 『企業家精神の經營戰略』, 森山書店, 1991.
13. 吉森賢, 『企業家精神衰退研究』, 東洋經濟新報社, 1989.
14. Baumol, W., "Entrepreneurship : Productive, Unproductive, and Destructiv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8, 1990, pp. 893~921.
15. Drucker, P.,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 Practice and Principles", Harper and Row, 1985. Donald, S., "The Art and Science of Entrepreneurship", Ballinger : Cambridge Mass., 1986.
16. Willard, G. E., "Toward a Theory of Entrepreneurship",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8, 1993, pp. 183~195.
17. Leibenstein, H., "Entrepreneurship and Develop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58, 1968, pp. 72~83.

東隱 金容完의 財界活動과 經營哲學

朴載錄*

目 次

I. 머리말	I. 東隱思想의 形成過程
II. 生涯와 略績	2. 原理原則主義
1. 제1기(1904~1928년)	3. 公先私後의 精神
2. 제2기(1929~1938년)	4. 正道經營
3. 제3기(1939~1975년)	5. 政經分離의 實踐
III. 東隱의 財界活動	6. 顧客滿足의 價値創造
IV. 經營哲學	IV. 要約 및 맷은말

I. 머리말

한 가정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내조하는 良妻를 생각하며 國家가 어려울 때 忠臣을 생각하고, 企業이 힘들 때 人材를 생각한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제실정은 매우 어렵다. 株價는 폭락하고 換率은 천정부지(天井不知)이고, 大財閥과 중견기업의 부도가 속출하여 도산으로 이어지고 失業者의 증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우울하게 한다.

본 연구는 東隱 金容完의 生涯와 업적, 그리고 그의 財界活動과 經營哲學에 대하여 연구한 것이다.

동은 김용완은 1904년 충남 연산에서 光山金氏의 명문가에서 출생했다. 仁村이 경영하는 中央학교를 거쳐 日本 仙台中學校와 廣島師範을 졸업하고 仁村과 처남매간의 인연으로 秀堂이 경영하는 三水社에 入社하면서 社會에 첫 발을 들인 후 中央商工을 거쳐 경성방직에 들어와 평생을 바쳐 모범기업으로 성장시켰다.

해방과 더불어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방직협회 이사장, 전국경제인연합회의 10년 동안 회장을 역임하면서 재계의 지도자로 부상하여 명실공이 한국 재계를 이끌어 온 재계의 지도자였다.

경성방직은 1919년 仁村 金性洙가 오직 민족자본으로 창업한 우리나라 유수의 방직회사

* 國光大學校 經商大學 經營學部 教授

이다.

동은은 평생동안 그의 발끌이 암간 데가 없을 정도로 재계의 조직가였으며 利害가 상반되는 한국의 재계를 무리없이 이끌어 온 公人이었으며, 오로지 公先私後의 경영이념과 母自欺의 專門經營人の 典範을 보였다. 오늘과 같은 난국에 다시금 생각나게 하는 재계의 지도자였으며 생활인이었고 현대적 선비의 본보기였다.

이하 그의 생애와 업적, 그리고 재계 활동과 그의 경영이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生涯와 業績

1. 제1기(1904~1928년)

東隱 金容完은 1904년(甲子) 음력 4월 9일 충남 공주읍에서 구算末 進士벼슬을 지낸 예문가의 후예인 아버지 金應洙公과 어머니 趙氏 사이의 6남매 중 2번째로 태어났다. 東隱의 本家는 連山이었으나 東學亂의 후유증으로 민심이 흥흉하여 어머니 조씨는 시골을 떠나 친정인 公州로 가서 出產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그가 출생한 1904년의 政治·經濟 및 社會的 時代象을 살펴보면 2월에는 露日戰爭이 발발하고 8월에는 제1차 韓日協約이 체결되었으며, 11월에는 京釜線鐵道가 준공되는 등 국내외적으로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던 시절이었다. 또한 다음 해인 1905년 9월 러일강화조약이 체결되고 2월 제2차 한일협약(乙巳保護條約)이 체결되어 朝鮮은 日本의 保護政治下로 들어갔으며 특히 貨幣條例의 공포로 朝鮮에서 日本貨幣의 유통이 公認되기도 한 시기로 국내외적으로 매우 뒤숭숭한 때였다.

東隱(見名은 용완)의 본고장인 連山은 鷄龍山 남단 기슭 非山非野의 잔잔한 풍치 속에 잠긴 아름다운 고장이다.

東隱의 本貫은 光山金氏로 전하는 바에 의하면 광산 김씨는 紀元前 68년 약 2000여년 전 신라 昔脫解王을 시조로 하고 있다. 新羅, 高麗, 朝鮮의 三朝를 통해 광산 김씨는 亡國萬官大爵이 없고, 開國功臣도 없어 勢道와 權門을 이어 내려옴으로써 三韓甲族이라 일컬어 온다. 신라 말기 憲康王의 왕자인 王字公(諱)이 자손들을 이끌고 光州 西一洞으로 천거하였으니 이것이 본관을 光山이라 칭하게 된 연유이다. 高麗朝에 平章事가 배출되어 빛을 내어 西一洞을 平章洞이라 개칭하여 오늘에 이른다.

朝鮮朝에 이르러서는 특히 仁祖 때 黃岡公, 沙溪公, 慶獨齋公 등의 3대 名賢이 나와 光山金氏의 명성을 드높였다. 이들이 자리잡았던 곳이 계룡산 기슭에 있는 連山이다. 連山의 문벌들을 連山 金氏라 하여 오늘도 14대를 이어 300여호가 沙溪, 慶獨齋, 尤菴, 同春堂 선생의 위

패를 모신 遷廉書院을 중심으로 연산일대에서 산거하고 있다.

東隱은 바로 黃岡公 金繼輝(1526~1582)의 13대손이며, 沙溪公 金長生(1548~1631년)의 12대손이 된다. 원래 大司憲 黃岡 金繼輝는 漢城府 黃華坊 貞陵洞(현 貞潤, 현재의 大法院 자리)에 살았다. 沙溪가 어린시절을 보낸 곳도 이곳인데 沙溪와 慎獨齋의 徒生姪인 同春堂 宋凌吉도 이곳에서 출생했다. 그래서 후세인들은 黃岡의 집을 일컬어 三賢堂이라 불렀다. 沙溪가 10세 때 連山으로 이거했으며 황강은 粟谷과 交分이 돈독하였다. 황강의 성품이 워낙 강하고 읊골이 仁宗大王도 그의 忠誠心을 믿으면서도 直言이 두려워 그를 外職에만 둘렸을 정도였다고 한다. 連山에서의 黃岡一家의 生活을 참으로 清貧한 선비생활이었다. 沙溪와 慎獨齋父子가 장지문 하나를 두고 면학했던 삼 칸 집이 현재까지도 보존되어 있으며 사계와 신독재는 학문을 하다가 막하는 데가 있으면 장지문 넘어로 묻고 답하곤 했다고 전한다. 이리하여 文廟의 十八陸儒賢 중父子가 配享되는 최고의 영예를 지니고 있다".

東隱이 여섯 살 되던 1910년 5월 東隱家는 公州에서 다시 諭山郡 連山面 表井里로 이사했으며, 그후 連山普通學校를 거쳐 1915년 조부 金永熙(魯城郡守 역임)公의 뜻에 따라 서울로 이거하고 校洞學校로 전학했다. 그는 워낙 놀기를 좋아하여 연산학교 시절의 成績은 중간 정도였으나 서울에 와서는 열심히 공부하여 상위권에 들어갔다. 1917년 3월 校洞學校를 졸업하고 그의 나이 14세 때 蔚山 金氏 金暉中 대 규수인 金占順 女史와 결혼했다. 東隱의 장인인 金暉中은 名儒로 명성을 떨친 河西 金礪厚의 후손으로 경중 자신만 하더라도 秘書院 承旨, 奉常寺 副提調 등을 거쳐 珍山郡守를 지낸 正三品 通政大夫였다. 그는 2만석의 갑부요, 지체높은 양반이면서도 충청도 양반인 沙溪집안이 보다 지체가 높다 하여 자신의 가문보다 格이 높은 東隱家와 사돈이 된 것이다. 金暉中은 바로 仁村 金性洙·秀堂 金季洙 형제의 生父이며 따라서 仁村과 秀堂은 東隱 金容完의 처남이 된다. 동년 9월 용완은 仁村이 경영하는 명문사립 中央學校에 입학하였다. 1917년 3월 校洞學校를 졸업한 용완은 秀才들의 집합처인 京城公立高等普通學校에 옹시했으나 낙방하고 낙향하여 1년 동안 再修하고 재옹시하려 했으나 이때 仁村宅과 결혼하게 되고 따라서 中央學校에 들어갔던 것이다. 1919년 3월 당시 그는 중앙학교 2학년이었다. 중앙학교는 3·1운동의 產室이며 愛國運動의 본거지였다. 당시 校長은 仁村이고 學監은 古下 宋鎮禹였고 教師陣으로 白寔洙, 崔奎東, 羅景錫, 李康賢 등 애국지사들이 둇쳐 있었다. 그는 이곳에서 특히 애국·애족의 사상을 배웠으며 특히 日本人 赤羽先生으로 부터 浪漫主義 思想을 전수 받았으며 이로인해 그는 학교 선생님이 되어 이상적 농촌사회를 건설해야겠다는 꿈을 갖기도 했다.

1922년 3월 중앙학교를 졸업하고 渡日하여 4월에 日本 仙台第二中學校 4학년에 편입했다.

1) 東隱記念事業會, 「東隱 金容完」, 三和印刷所, 1979, pp. 27~35.

校長선생님 河合은 日本人이었지만 한국 유학생을 차별대우하지 않은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었다. 그가 이곳에 머무르는 동안 1923년 9월 關東大地震이 발생했을 때 흥분한 일본人们이 朝鮮人이라는 신분만 밝혀지면 무차별 살해하는 난국에서 간신히 某驛 역장의 도움을 받아 九死一生의 生을 건졌다.

전 天友社의 創立者였던 全澤瑞도 학생시절 관동대지진으로日本人에게 불잡혔다가 간신히 살아났다고 하니 두 사람의 인연이 대단하다고 볼 수 있다. 1924년 3월 용완은 仙台第二中學校를 졸업하고 金澤第4高等學校에 응시했으나 불합격되고 廣島高等師範學校 數理科에 다음 해에 입학했다. 京城帝國大學 法學部에願書를 제출했으나 포기했다. 실은 광도사법 입학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즉 구술시험도 東問西答했고 몸까지 약해 있었으나 교장 선생의 배려로 입학이 허가된 것이다. 광도고사를 나온 교수들의 면면을 살펴 보면 서울대 전 수학과 교수 崔允植을 비롯하여 朴寬洙, 李泰圭, 崔鉉培, 高光萬, 金淵昌, 金教文, 朴永域, 趙炳旭, 崔福鉉 등 17·8인이 있으며 李泰圭는 세계적인 物理學者이며, 崔鉉培는 한글학자, 高光萬은有名한 英文學者이다. 용완은 광도고사 시절 在日朝鮮人の 子女들을 위해 야학을 만들어 봉사 사업을 학우들과 하기도 했다.

광도고사의 倫理·道德 과목은 日本의 어떤 帝國大學보다도 우수했는데 이것은 바로 吉田賢龍 같은 훌륭한先生이 있었기 때문이다. 吉田 校長은 人格도 고매하지만 印度哲學과 佛教를 전공했다. 吉田은 용완이 1학년 때 修身을 가르쳤는데 이 시간에는 1학년 학생들 뿐만 아니라 教官들과 다른 학교 학생들까지 들어와 강의를 받을 정도였다. 그는 또한 칸트哲學에도 달관하였는데 그의 純粹理性批判論 강의는 대단한 흥미를 주었다. 특히 吉田 校長은 매년 졸업생들에게 빠짐없이 휘호를 써 주었는데 용완도 「善無懈」라는 휘호를 받아 평생동안 방에 걸어 놓고 볼 정도로 귀하게 여겼다고 한다.

동은은 1922년 3월부터 1929년 3월까지 7년간을 日本에서 공부하고 廣島高等師範學校를 졸업하고 귀국하였다.

2. 제2기(1929~1938년)

동은은 1929년 日本 광도고사를 졸업하고 귀국하였으나 그가 염원하던 학교 선생으로 나 가지 않았다. 그가 귀국하였을 때 秀堂 金季洙²⁾는 벌써부터 동은을 자기가 경영하고 있는 三

2) 金暉中の 차남으로 출생, 1921년 日本 京都帝大 정경학부를 졸업, 1922년 경성방직 상무, 경성직유 전무에 취임, 1923년 경성방직 전무, 1923년 三水社를 설립, 한일은행, 해동은행, 조선저축은행 중 역임, 1932년 중앙학원 보성전문 인수 참여, 1935년 경성방직 사장 및 1937년 중앙 상공사장 취임, 1938년 남만방직 설립, 1941년 삼양상사 사장 역임, 1945년 경성방직 사장 사임, 三養社에 전념, 1961년 한국경제협회 회장, 1975년 三養社 명예회장, 동탑산업훈장 수훈, 1979년 作故, 국민훈

水社로 끌어들여 함께 일할 결심을 굳히고 있었다. 수당은 이때 이미 三水社 외에 株式會社 中央商工과 京城紡織 그리고 海東銀行을 경영하며 기업화장의 도약단계에 있었다. 따라서 그를 보필할 유능한 人材가 절실히 요청되었는데 때마침 동온이 귀국함으로써 그를 자기 기업에 영입하여 장차 경영자로서의 훈련을 받게 하려 했던 것이다.

동온은 三水社(三叢社의 前身)에 입사하여 비서실에 근무했다. 주판, 부기, 전화받는 법까지 배우고 건축현장의 현장감독도 했으나 그해 11월 고무신 제조업체인 중앙상공으로 전근했다. 중앙상공은 수당이 京城織紐의 직조업을 폐지시키고 고무신 제조업체로 변경하면서 출발된 업체이다. 당시 고무신 제조업은 인기 업종이었다.

당시 고무신 업계는 서울의 李夏榮, 李丙斗 등이 중심이 되어 1920년대 大陸高무를 설립한 데서 비롯된다. 그후 齊藤高무, 京城高무, 內德高무, 朝鮮高무 등 日本資本의 5대 고무공장이 패권을 쥐었고 民族資本系 고무공장으로는 李夏榮의 大陸高무, 趙重熙의 牛島高무, 張斗鉉의 서울고무, 李春榮의 大同高무(평양), 金東元의 木浦고무, 金尚燮의 東亞高무(木浦) 등이 각축을 벌렸다.

동온이 중앙상공의 지배인 대리로 입사했을 때 사장은 명목상 仁村이 맡고 있었으며 秀堂은 평이사 촬체역, 지배인은 金鎮憲이었다. 김지배인은 대단한 수완가로 기업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국내 뿐만 아니라 만주와 중국까지 판로를 개척하여 대량 보급하는 등 후진기업으로서 급성장하고 있었으나 동온이 입사할 당시는 때마침 불어닥친 세계 대공황의 여파를 받아 중앙상공은 파산 지경이었다. 출고된 상품은 반품사태가 벌어지고 받은 어음과 개인 수표는 부도가 나 회사의 손실은 누적되었다. 이런 운영난에 빠진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사업 초년생인 동인이 뛰어 들게 되었다. 실제로 사회 초년생으로 주판이나 놓고 장부나 만질 정도인 그에게 부실기업을 정상화시킬 아무런 쟝션이나 능력이 없었으나 수당은 시키는대로 하면 된다면서 회사 정비의 책임을 일임했다.

지배인 金鎮憲, 공장장 李完榮, 그리고 지배인 대리 용완 세 사람이 일을 했는데 매일 어찌나 많은 於音의 반환이 돌아오는지 정신을 차릴 수 없었으며, 불황에 따른 需要不振으로 고무신이 팔리지 않는 것은 고사하고 팔린 상품이 반품되고 동온은 不渡於音을 막으려 동분서주해야 했다. 판매 촉진을 위해 만주에까지 판매원을 파견하여 고무신을 放賣토록 했지만 부도 어음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빚을 둘러치기도 하고 수당이 경영하는 海東銀行에서 貸出도 받았다. 이때 동온은 평생의 知己之友가 된 尤堂 李重宰를 漢城銀行에서 사귀게 됐다. 백방으로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으나 부채만 산적되자 지배인 김진현은 경영책임을 지고 퇴진하고 1930년 27세의 나이로 동온은 지배인이 되었다.

장 무궁화장 추서(경방 70년사, 1989, p. 74).

동은은 지배인이 되자 「발로 팔는 運動」을 개시했다. 자기 스스로 발 벗고 나서 국내 각지의 来來處와 滿洲까지 돌아다니며 장돌뱅이를 자임한 것이다. 두루마기에 고무신을 신고 장이 서는 곳마다 쫓아다니며 고무신을 팔는 장돌뱅이들과 어울렸다. 日本資本이 경영하는 5대 고무제조업체 말고도 大陸高무, 京城高무를 비롯 굴지의 회사와 30여 개에 소규모 공장까지 합치면 200여 개가 되어 경쟁은 치열했으며 누가 끝까지 버티고 일어서느냐 하는 죽고 살기의 난장판이었다. 당시의 시장판매구조는 注文販賣員을 통해 제품을 팔았는데 이들에게는 일정한 보수가 없는 능률급제이어서 거래처에 가 별별 수단을 다 쓰며 注文 받기에 혈안이 되었다. 특히 장돌뱅이를 아주 천하게 여기던 당시 주문판매원은 하대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 했는데 이러한 세계에 동은이 순진하게 달려든 것이다.

「발로 팔기 운동」은 사회 경험이 없는 동은에게 많은 것을 알게 했다. 장돌뱅이들은 동은을 만나면 신발 투정을 많이 했다. 즉 「빛깔이 이게 뭐냐?」「모양이 왜 이러냐?」「신발이 질기지가 않다」는 등 중앙상공 제품의 결함을 모조리 털어 놓았다. 동은은 그들이 저작한 결점의 시정을 약속했고 회사에 돌아오는 즉시 흡을 바로 잡아 다음 제품부터 개선하여 출하했다. 그러나 후발업체인 중앙상공의 제품이 대륙고무의 「大陸票」를 뛰어 넘기는 힘들었다. 그래서 동은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어 「大陸票」를 말하는 장사꾼이 있으면 자기가 신고 있는 고무신을 번쩍 들어 보이면서 「이거 보시오. 이것이 우리 회사 신발인데 6개월이 되었소. 아직 새 것과 다를 바 없지 않소」하면서 말보다는 그 증거를 제시하자 그들도 두 말이 없었다.

이렇게 하여 중앙상공의 「별票」 고무신에 대한信用이 날로 높아져 갔다. 그리고 販賣量도 날로 증가했다. 그가 함경도 시장을 개척할 때는 워낙 경쟁이 치열하여 보통 수단으로는 통하지 않아 「고무신 品質 6個月 保證販賣制」를 들고 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 즉 새로 사 신은지 6개월 안에 해어지면 새신으로 교환해 준다는 조건을 내건 혁신적인 판매제도이다. 그러나 소비자들도 약삭빠라 4개월 쯤 신고 좀 달으면 들에다 마구 비벼 일부러 구멍을 내고 새 신으로 교환해 달라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이 빈발하자 회사의 일각에서는 회사가 망하겠다면서 保證販賣制를 폐지하자고 했으며 일부 중역들도 이에 동조하여 동은의 생각을 저지했다. 그러나 동은은 교환해 준 신발이 전체의 몇 %나 하는 것이었다. 계수를 뽑아보니 전체의 1%에 불과했다. 교환을 요구하는 사람 중에 정말 惡德消費者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는 제품이 나빠서 교환을 요청했는데 바꿔주지 않는다면 선량한 소비자까지도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약속위반이 된다 하고 이는 광고비를 지출하는데 쓰는 셈 치고 보증제도를 계속 밀고 나갔다. 이와 같이 하여 보증판매제도 실시 후 1년이 지나자 판매고는 3배 이상의 증가를 가져왔다. 따라서 판매고 1위를 마크하던 「大陸票」 신발을 꺾고 판매고 1위로 부상하였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었다. 동은이 지배인으로 부임한 지 1년만에 결손투성이의 파산 직전에 몰려 있던 중앙상공은 모든 결손을 전보하여 경영 정상화를 회복하여 건실기업으로

변모했고 자본금도 10만원에서 배로 증가했으며, 九州大學 출신인 尹柱福을 공장장으로 영입하여 시설도 근대화시켰다. 동은은 不實企業을 成長企業으로 전환시켜 멋지게 첫 試鍛을 극복했다. 장사 경험과 지식이 부족했던 풋내기 초보생 경영자인 동은은 새 시대의 경영자로 부상했다. 구태의연한 坐商의 굴레에서 벗어나 소비자를 의식한 品質向上과 상표의 신용을 내세운 근대식 판매기술을 도입하여 朝鮮商界에 새국면을 개척했던 것이다.

중앙상공이 안정되자 秀堂은 동은에게 三養社의 일을 거들게 하였다. 1931년 三水社는 三養社로 社命을 변경하고 주요사업으로 농장관리에서부터 精米業, 鐵產業, 干拓事業 등 다방면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다. 동은은 중앙상공의 常務取締役으로 재직하면서 1·2년간 三養社 일을 돌보면서 사업의 시야를 넓혀갔다. 중앙상공의 확장을 계기로 다시 중앙상공에 전념하여 영등포구 양평동 1만여평의 부지에 새 공장을 건설하고 1934년 그는 전무취체역으로 승진했으며 취임시 라이벌이었던 大陸高무의 3배를 능가하는 판매실적을 마크할 정도로 사세를 확장시켰다.

이 무렵 수당은 만주로 사업을 확장시켰다. 仁村은 三養社의 滿洲進出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으나 당시 수당은 사업의욕이 가장 왕성했고 사업에 대한 나름대로의 자신감을 갖고 있었으며 특히 그는 民族을 위한 지름길은 企業의 육성에 있으며 企業의 번영은 곧 민족의 번영을 이룩하는 학신과 동포가 있는 곳에 企業이 있어야 한다는信念이 있었다. 또한 總督府 政策이 占領地 지출을 바라던 때라 朝鮮內에서의 사업허가를 억제했으므로 만주로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만주에서의 첫 사업은 吉林에 鏡石農場을 건설하고 流浪農民을 수용하는 농장 경영사업이었다. 또한 榆口에 天一農場을 만들고 만주 三養社를 두어 만주진출의 본거지로 삼고 있었다.

이와 같은 모든 사업을 몸소 관찰할 수 없는 수당은 동은으로 하여금 오늘은 만주로 내일은 孫佛干拓地로 뛰어 만들었다. 동은은 중앙상공에서 10여 년간 경영인으로서 경험을 쌓았는데 이 때의 경험을 이렇게 술회한다.

「당시 企業에 대한 총독부의 행정 자체에는 이렇다 할 불공평은 없었다고 할 수 있지만 金融 등 정책적인 지원과 뒷받침은 전적으로 日本企業에 편중해 있었다. 그러나 소비자가 조선 사람이라 같은 값이면 朝鮮企業 제품을 사주었기 때문에 한편에선 쉬운 면도 있었다. 中央商工을 맡아 경영하는 동안 사업을 하는데는 誠意와 努力, 勤勉이 절대적 요건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사업가의 故智도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故智란 바로 生產과 販賣에 대한 創意이다.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경우 첫째 그것이 소비자의 기호에 맞아야 되고 소비자 스스로가 제품에 대한 정직하고도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企業인이 노력해야 한다. 소비자의 비위를 맞추는 일이 어렵다고 그것을 등한시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기업인으로서 능력이 없는 것이다. 소비자가 좋아하는 것을 연구하고 소비자가 좋아하

도록 기업인이 성의를 보여야 한다. 속임수를 갖고는 결코 오래 가는 법이 없다. 예나 지금이나 소비자는 王임에 끌릴 없기 때문이다.]³⁾

3. 제3기(1939~1975년)

동은은 1938년 9월 중앙상공 전무취체역에서 京城紡織工業株式會社의 지배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당시 경성방직은 資本金을 500萬圓으로 증자하고 華北進出을 모색 중이었다. 中日戰爭의 영향으로 「不老草票」 광목이 만주에서 華北까지 인기를 얻고 있었으나 전쟁은 장기화되어 原棉不足과 수송애로로 경성방직은 화북공장을 건설하여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경영전략을 세웠다. 경성방직의 지배인 尹柱福이 지배인직을 사임함에 따라 수당은 동은을 그 자리에 보임했던 것이다. 이 때부터 朝鮮經濟는 준전시 체제로 전환되어 통제경제로 재계활동은 목이 조이기 시작했다. 면방업계도 이 때문에 美國棉과 印度棉에 의존해 오던 원면사정이 날로 악화되어 갔다. 방직회사마다 원면을 買占했기 때문에 가격은 폭등하고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형편이었다. 日帝는 1938년 10월 원면의 최고가격을 지정하고 國產原棉 재배를 독려하고 수매권을 각사에 할당했다. 판매는 무난하나 원면조달이 문제였다.

동은의 당면 과제는 원면조달로 귀착되었다. 따라서 동은의 경영지침은 원면의 생산확대와 유통단계 축소에 力點을 두기로 했다. 당시 棉花生產이 가장 많던 전남과 경기도 일대는 收買權이 朝鮮紡織에 주어졌기 때문에 동은은 황해도의 吉川에 이어 殷票에 제2綠棉工場을 건설하고 그후 三盛棉業을 인수, 평양에 제3조면공장을 세웠다. 그리고 5단계의 번잡한 流通段階를 축소하기 위해 朴興植의 和信商事와 공동출자로 도매상 大東織物을 설립했다. 확보된 원면중 절반은 군수용으로 둘려야 했고 극심한 수송난으로 원료의 적기 공급이 힘들었다. 생산과 판매가 원천적으로 통제된 때문에 임가공이나 다름없고 私企業이란 간판이 무색할 정도였다. 이 기간 동안 동은은 수당을 도와 教育事業과 종업원 후생복지사업에 힘을 기울였다. 財團法人 育英會를 만들어 종업원 자녀와 우수한 人材에 학자금을 보조했고, 경방인의 후생복지 위해 三養共濟會를 조직했다. 1944년 경성방직은 중앙상공과 東光製絲를 흡수 합병, 자본금이 1,300만원으로 증가되고 滿洲 蘇家屯에 자본금 1,000만원 규모의 南滿紡織을 두고 있었다. 1945년 해방이 되기까지 수당은 경성방직과 남만방직의 사장을 겸직했고, 동은은 경성방직 상무취체역으로 경성방직 경영에만 전념하고 있었다⁴⁾.

1944년 제2차세계대전이 극에 달하자 수당은 三養社를 제외한 모든 傷系事業을 경성방직으로 흡수 합병했다. 이때 專務取締役은 崔斗善, 동은은 상무취체역을 맡고 있어 경성방직은

3) 東隱記念事業會, 전개서, pp. 94, 95.

4) 동은기념사업회, 전개서, pp. 85~96.

崔斗善·동온의 팀워으로 8·15光復을 맞았다.

1945년 8월 12일 동온은 원서동 宋鎮馬宅을 방문했는데 金炳魯, 高義東, 徐相日 등 많은人士들이 모여 독립문제를 논의하고 있었다. 그들은 日本의 패망이 기정사실로 곧 항복할 것이라 말하고 동온을 보자 경성방직의 뒷수습을 잘 하라고 당부했다. 동온도 곧 日本이 敗亡하고 사태의 변화가 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사업하는 사람이 경거망동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총독부 경무국에 근무하는 崔慶進에게 사람을 보내 사태를 알아보니 日本은 8월 15일 정오를 기해 항복한다고 확인해 주었다. 동온은 三仙學校로 소개해 있던 경성방직 假事務所에서 8월 15일 정오 日皇의 항복 방송을 들었다. 社長인 수당은 만주로 출장 중에 있었으므로 회사로서는 커다란 전환점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동온은 간부직원회의를 열어 대책을 의논하고 社屋을 南大門路의 사옥으로 이전하기로 하였다. 영등포 공장에서는 소를 잡아 국을 끓이고 쌀밥을 지어 잔치를 벌렸다. 유일한 民族企業으로 좌절함이 없이 光復을 맞은 경방인들의 감격은 마치 개선장군 같았으나 그 감격은 2일을 넘지 못했다. 政局은 소관해지고 치안상태는 마비되었으며 左翼運動者들이 工具 속에 잠복해 들어와 종원원들을 선동하게 되어 소란을 피우게 되니 공장운영은 마비상태에 들어갔다.

8·15해방을 맞아 좌익운동자들이 제일 먼저 지목한 것이 경성방직이었으며 여성운동자가 여공으로 참입하여 사원을 선동하고 1945년 4월 31일 경성방직 영등포 공장 종업원들이 공원대회를 가진 것으로 비롯되었다. 하루가 멀다하고 공원대회가 열려 「우리에게도 在庫品을 나누어 달라」는 요구 조건을 내세우고 태업을 계속했다. 이들은 점차 정치적·사상적 색채를 띠어갔다. 좌익운동자들은 수당이 간부사원으로 장차 양성하기 위하여 일본에까지 유학시켰던 젊은 사원을 포섭하고 이들을 앞장 세우는데 성공했다. 포섭된 이들은 앞장서서 재고품의 분배, 임금인상은 물론 수당을 惡德企業家·擣取資本家로 몰아 세웠다. 그런가 하면 社員들까지도 이에 동조하였으며 공장장 장세형의 사택에는 갖가지 행패도 심했다.

경성방직은 영등포 공장의 가동을 위해 극력분자로 지목된 노무자들을 양평동 공장으로 배치했는데 영등포 지구의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가 양평동 공장을 본거지로 삼게 되고 이들이 영등포 지구의 선봉대가 되었다. 이들의 공격목표는 경성방직이 되어 매일 파업 또 파업이 계속되었다. 朝鮮에서 노동조합운동은 일제가 中日戰爭을 도발한 1930년대 후반기에 이르러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였기 때문에 지하로 참복하여 非合法 투쟁의 형태를 취했던 것이다. 이들을 주도한 것은 인테리 左翼 社會主義者들이었다. 경성방직 영등포 공장에 女工으로 위장해 들어와 맹활약 했던 젊은 여자들은 고등교육을 받은 부유한 가정의 규수였다. 젊고 발랄한 여성운동자에 포섭된 젊은 사원들은 끝내는 트럭을 타고 수십 명씩 성북동 수당의 자택에 몰려 들어 난통을 피우고 소란을 떨어 그곳에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살던 동온이 달려가 「나하고 짜지자」고 말리면, 「이제까지 착취해 많이 먹었으니 공장을 내 놓으라」는 등 갖

온 억지를 부렸고 여종업원들은 안방을 차지하고 농성을 벌였다. 중역들을 연금하고 동온 집에도 물려가 소란을 피웠다. 동온은 이들의 과격한 요구를 들으면서 자중했으나 그들이 「착취 많이 해먹었으니 공장을 내놓으라」는 말에 이르러서는 정색을 하고, 「착취, 착취하지만 내가 착취를 한 것이 아니라 자네들이 나를 착취한 것이 아닌가?」하고 반문했다. 「잘 들어보게. 나는 경성방직에 들어와서 내 돈 들여 돈 벌어 자네들 공부시키고 취직까지 시켜 자네들 가족까지 먹여 살리는데 나는 지금까지 경성방직에서 일전 한푼, 월급 한 번 제대로 받은 것이 없으니 착취자로 규정한다면 그것은 내가 아니고 자네들이야!」 이 한 마디를 남기고 수당은 지긋지긋하다고 그들과 상면조차 하지 않았다.

「잘 들어 두게. 지금 나는 자네들이 공장을 내 놓으라고 해서 화가 나는 것이 아니야. 어떻게 자네들이 나를 배신할 수가 있단 말인가. 나는 자네들에게 받은 背信感 때문에 온 몸이 떨려 오네」⁵⁾ 수당은 이 말을 하고는 한 가지 결심을 했다. 수당은 1922년 27세 때에 경성방직에 들어와 1945년 12월 경성방직 사장을 사임할 때까지 보수도 받지 않고 있었다. 그는 株式配當金을 받았으나 시간과 정력을 받쳐 일해온 代價는 받지 않았다. 경성방직은 수당이 사의를 표명할 때 퇴직금으로 一百萬圓을 지급하자고 重役會에서 결정했으나 수당은 이것마저 받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와중에 동온은 古下 宋鑑禹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전화의 내용은 韓民黨이 共產黨과 대결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경성방직에서 돈을 좀 대라는 요지였다. 동온은 혼자서 결정할 수 없는 처지여서 수당과 相議한 바 수당은 골똘히 생각한 끝에 결심하고 「돈을 내새. 나라가 이렇게 혼란에 빠지다가는 모든 게 공산당 수중에 들어갈 수도 있네. 경성방직 보다는 나라가 더 중요하지 않는가?」 결국 중역회를 소집하고 경성방직은 재고품을 모두 정리하여 당시로는 거액인 300萬圓의 자금을 마련했다.

경성방직은 李承晚 博士가 建國準備를 위해 美國으로 갈 때 여비 마련을 위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낸 후로는 지금까지 정치자금을 낸 일이 없다.

1945년 11월 수당은 판매수익금의 20% 범위내에서 전 사원과 종업원에게 해방기념 특별 상여금을 지급하였다. 이것은 해방을 기념하는 뜻도 있고 타회사처럼 「재고품 나눠 먹기」도 없었던 데 대한 배려의 뜻도 있고, 이제부터 합심하여 재출발하자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이 상여금은 사원의 경우 오천원에서 이만원 베이스로 지급되었는데 이 금액은 당시 월급의 약 백배가 되는 거액이었다. 1945년 9월 수당은 전 간부사원을 모아 놓고 사퇴선언을 했다. 그는 12월 제37기 주주총회를 마지막으로 27년간 심혈을 경주해 키워 온 경성방직을 떠났다.

수당이 물러나면서 제3대 경성방직 사장에 岷斗善이 취임했다. 수당은 최두선을 사장으로

5) 전계서, p. 102.

보임하면서 「당신더러 資本家라고 할 사람은 없으니 할 때까지 해 보시요」라고 했다. 최두선이 사장에 취임하면서 취체역에 선임된 임원들은 資本과는 관계 없는 經營陣으로 구성되었다. 경성방직은 이 때부터 大株主 수당의 資本家 經營體制로부터 이탈하여 자본과 경영이 분리된 專門經營人體制로 변신했다. 그 맴버는 취체역에 趙隣章, 張世衡, 陳在洪, 金丙運, 黃冰模 그리고 감사역에 金尙衡, 郭基鉉이었다. 동은은 이때 경성방직 상무를 내놓고 그가 專務로 겸임해 오던 三營商事의 社長으로 전근했었다. 동은은 崔斗善 사장이 東亞日報 사장으로 가게 되어 그 후임으로 1946년 6월 경성방직 제4대 사장으로 선임되어 6개월만에 다시 경성방직으로 복귀했고 최고경영자로 무거운 짐을 졌다.

실상 동은은 수차례 걸쳐 고향사람들로부터 국회의원 출마권유를 받았으나 거절했던 것이다.

동은은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경영정상화를 위해 선결한 과제는 左翼系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노동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임자로 李俊穆을 지목하고 그를 노동담당 常務로 보임했다. 李俊穆은 수당이 만주에서 간척사업을 할 때 만주국 관리로 있던 그를 뽑아 노동문제를 처리케 했던 인물로 노동문제에 일가견이 있는 행동적인 사람으로 동은은 그를 잘 알고 있었다. 노동문제의 해결은 全評系 극렬분자를 색출하여 추방하는 한편 우익계 大韓勞動總聯盟의 세력을 부식하여 全評의 횡포를 막는 일이다. 동은은 1947년 사장에 취임하여 1947년 하반기에 이르기까지 1년 반을 노동쟁의로 일과를 보냈다. 韓民黨이 大韓勞總을 결성하고 大韓商工會議所가 財界를 동원하여 全評 勞動運動의 기선을 꺾고 나섰다.

동은이 이상무로 하여금 영등포 공장의 정상화 작업을 개시하자 좌익계 극렬분자들이 강경하게 맞대응 했다. 그들은 영등포 공장에서 쫓겨나자 다시 楊平洞 고무공장으로 숨어들었다. 양평동 공장은 趙慶河 공장장이 2~3개월간 공장을 무단이탈하여 좌익노조원들의 발호를 조장해 오던 것을 金容隣이 들어서서 어느 정도 수습되었으나 이준목이 양평동 공장장으로 출현하자 좌익 노조원들이 궁지에 몰려 1947년 6월 양평동 공장에 불을 질러 전소되고 말았다. 동은은 암담한 지경이었으며 결국 공장은 복구되지 못하고 그곳의 종업원들은 실직되었다. 좌익노조의 횡포가 가셔지자 이번에는 우익노총인 大韓勞總의 노조가 노임분쟁을 일으키고 파업을 단행하는 등 소동을 벌렸다. 경성방직 쟁의의 요구조건 관철을 위해 영등포 일대의 10여개 공장이 동정파업으로 사태가 심각했다. 동은은 이 기간 경영자로서 노사문제에 대한 뼈저린 경험을 쌓았다. 대한노총의 쟁의도 수습되고 노조와의 대화의 길도 열려 1948년에 들어서면서 경영정상화가 되고 가동이 순조로웠다. 방직업계가 원면의 도입 및 배정을 위해 조선방직협회의 결성을 보게 되고 초대 이사장에 동은이 피선되었다. 한편 동은은 이 무렵 조선상공회의소 부회장으로 피선되어 재계활동에 가담하게 되었던 것이다.

1946년 가을 동온이 경성방직 사장에 취임한 지 얼마되지 않았을 때 그는 仁村의 부름을 받고 방문했다. 인촌은 편법으로 원면을 취급하여 그곳에서 얻을 수 있는 韓民黨 정치자금을 얻어 쓰려 했으나 동온이 거절하자 이 자리에서 생전 처음으로 仁村으로부터 심한 꾸중을 들은 일이 있었다. 동온은 政經分離原則의企業을 생각하고 경성방직을 정치권력 속에 말려들지 않게 하는 전례를 남겼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는데 경상방직은 정부 수립 전이나 후나 다름없이 일체의 정치에나 利權에 개입하지 않았다. 정부가 수립되자 反民族者 처벌에 관한 논의가 제기되고 따라서 수당의 신변이 위험하게 되었다. 1948년 9월 7일 제헌국회에서 反民族行為特別法이 통과되고 이어 특별조사위원회가 1949년 1월 구성되었다. 검거선풍이 일어나고 수당이 자택에서 영장을 받고 수감되었다. 동온은 백방으로 그의 무죄를 호소하고 인촌에게 호소했으나 일부 정객들의 만류로 성사시키지 못하였으며 서대문형무소의 면회조차 불허되었다. 10월 30일 수당의 구속취소처분이 받아져 구속에서 풀려났다.

1949년 5월부터 약 6개월간 美國시찰여행을 떠났다. 동온은 1947년 7월부터 朝鮮商工會議所 副會頭로 피선되어 財界活動에 참여했는데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을 본 후 독립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美國 朝野에 표하고 친선을 도모하기 위한 民間使節團을 정부와 조선상공회의소가 파견하게 되었는데 동온도 사절단의 일원으로 떠났던 것이다. 1949년 10월 말경 귀국했는데 그 때가 경성방직 창립 30주년으로 한달 늦게 거행되었으나 仁村, 海公 申翼熙 등 정재계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실로 해방 후 갖는 제일 성대한 기념식이었다. 동온은 꿈이 많고 진취적인 人物이라서 美國에서 귀국하자 그곳 광장에서 견문하면서 생각했던 것들을 회사 운영에 반영하고자 분주했다. 1950년 3월경 선거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5·30 선거가 공포되자 고향에서 連山金氏 同門을 대표한 사람들과 그곳 有志 5, 6명이 동온을 방문하고 제2대 국회 의원 출마를 간곡하게 요청하였으나 동온은 정치에 흥미를 잃은지 오래되고 정치와 단절하고 있었다.古今의 암살을 보면서 政治無常을 느꼈고 수당의 反民事件으로 정치사회의 非信非理를 체험한 동온이었다.

1950년 6월 25일 6·25 事變이 발발하자 의정부공장의 공장장 겸 전무이사인 趙鑑章으로 하여금 중요문서와 현금 등을 시흥공장으로 옮기도록 명령하고 각자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했다. 영등포 공장에 나와 보니 모든 직원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자신이 피난보침을 싸고 우왕좌왕한 것이 송구스럽기만 했다. 전세가不利하게 돌아가자 동온은 연산을 거쳐 대구로 피난간 후 다시 釜山으로 내려가 三養社 釜山事務所 2층에 방을 얻어 기거했다. 9·28 수복 후 동온은 제1차 수복반에 핵심하여 부산에서 배를 타고 木浦를 거쳐 9월 30일 仁川에 도착했다. 화물차에 매달려 영등포 공장에 도착하니 공장 건물은 폭격으로 홀연히 사무실 건물은 무사하였으며 사무실에는 朴仁煥(그후 사장을 역임함)을 비롯 3, 4명이 불을 켜고

있었으나 괴골이 상점해 있었다. 동온은 그들에게 조석이라도 해결하면서 약간의 돈을 주고 재건을 독려하고 박인환을 데리고 고무다리로 浮橋를 만들어 놓은 한강 다리를 건너 서울로 입성하니 시가지는 완전히 파괴되고 인적이 드물었다. 동온은 박인환을 통하여 9·28 수복 전까지 조업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북한군의 압력 때문이었으며 그들이 도주하면서 불을 놓아 기름통에 인화되어 방직공장이 완전히 소진되었음을 알았다. 서울 본사에 들르니 조인장 전무, 촉기현 감사 등 전 중역진이 출근해 있었으나 얼굴에 피기가 없이 누렇게 떠서 목불인견이었다. 동온은 얼마간의 돈을 주고 재건계획을 세웠다.

6·25 動亂은 경성방직이 30여년 동안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하루 아침에 갯더미를 만들어 버렸다. 영동포의 방직공장을 비롯하여 시흥에 있는 염색공장과 쌍림동의 피복공장, 의정부의 제사공장 등이 모조리 소진됐다. 동온은 우선 영동포 공장의 재건을 서두르기로 하고 총책임자로 陳在洪을 임명하고 기구를 축소하여 전원 재건에 임하는 조직체를 구성하였다. 다행히 織布工場이 소실되지 않고 고스란이 시설이 남아 있었으므로 방직공장내 일부에 불타버리지 않은 紡織機 4,600수의 설치를 서두르는 한편 일부 織機를 가동시켰다. 1·4후퇴로 1월 4일 간부전원의 피난을 확인하고 동온은 자동차 편으로 大邱를 경유 다시 釜山으로 피난했다. 1951년 3월 31일 전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해산하였다. 전국이 수습기미를 보이자 동온은 공장장 陳在洪으로 하여금 선발대를 조직하여 시찰토록 하고, 4월 중순 다시 진재홍과 金炳運을 조사단으로 하여 조사케 하고 7월 休戰會談이 진행되자 9월에 들어 영동포 공장의 재건계획을 본격화하고, 동온은 일부 복구반을 이끌고 상경 대원호텔에서 기거하면서 광교의 본사 사무실과 영동포 공장을 왕래하면서 재건을 독려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급한 것은 공장복구 자금이었다. 동온은 財務部와 韓國銀行, 貯蓄銀行 등을 날마다 찾아다녔다. 당시 재무부장관은 白斗鎮, 韓銀 總裁는 具容書, 상공부장관은 金勸이었다. 저축은행(현 제일은행)에 9억6천만원의 융자신청을 내고 있었는데 이 復舊資金이 野黨의 政治資金化 될 우려가 있다하여 경성방직에게만은 융자가 보류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동온은 「단 한푼도 정치자금으로 쓰지 않겠다. 지금 경성방직은 불타 버려 종업원들이 生計를 잃고 나라 사정으로도 衣料生產이 모자라 고통을 겪고 있는데 복구자금을 정치자금화 한다는 것도 언어도단이다. 승인해 달라」고 매일 같이 방문공세를 했다. 관계장관이 합석한 자리에 동온도 참석하여 정치자금화란 하나의 기우에 불과하다고 역설하여 3억圓이 삭감된 6억4천만원이 승인되고 제1차분으로 2억원의 대출을 받아냈다. 이것이 2월 13일이었는데 2월 말에 융자은행이 대출자금을 동결했음을 통고하고 기대출분도 6개월 내에 전부 변제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융자금으로 영동포 공장의 복구작업이 활기를 띠고 동온은 서울로 釜山으로 뛰며 자금조달에 진력하고 있을 때 융자금凍結이란 날벼락이었다. 동온은 즉시 釜山으로 내려와 관계요로에 알아보니 정치적 모략이었음이 확인됐다. 즉 당시 申翼熙가 국민당을 이

끌고 있었는데 경성방직 복구자금이 국민당의 정치자금화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세무서와 CIC에서 세밀조사를 받아 모든 진상이 사실이 아님이 밝혔겠으나 개헌파동으로 격화된 시기라 자금동결이 해결되지 못했다. 결국 공장장으로 하여금 종업원들에게 자금부족으로 계속할 수 없으니 해산해 줄 것을 요청케 했다. 엄동설한에 고된 작업을 추진하며 회망에 부풀어 있던 종업원들은 당국의 부당한 처분에 격분하여 임금을 받지 않아도 좋으니 작업을 계속하자고 더욱 합심하여 밤이면 촛불을 켜 놓고 일을 했다. 동은은 이런 종업원들을 보고 용기를 얻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기필코 해내야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자금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책임지고 할테니 공장을 복구해 봅시다」. 본격적으로 재건작업이 시작되었다. 은행용자가 막힌 이상 이제는 동은 자신이 자금을 만들어야만 했다. 우선 不要不急한 시설을 처분했고 타던 승용차도 처분했다.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모두 처분했다. 그러나 자금은 곧 바닥이 났고 私債를 얻어 대야 했다. 종업원들은 나무 판자와 철판을 살 돈이 없어 폭격으로 절단난 다른 공장의 젓더미 위에서 나무 조각과 철판을 주어다가 철공소를 만들고 기계를 조립했다. 그러면 어느날 美軍部隊에서 民情을 시찰하다가 경성방직이 自力으로 공장을 복구하는 광경을 보고 감격, 사진을 찍고 라디오방송을 하고 VOA(Voice of America)에서까지 방송을 하여 경성방직의 복구상황을 보도하게 되자 모든 시청자들을 놀라게 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동은은 응자은행의 기대 출금을 기일 내에 변제하고 있었다. 친신만고 끝에 4월 11일 精紡機 7천수, 織機 284대를 시운전하게 되어 시동식을 가졌다. 모든 중역과 종업원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다. 동은은 종업원들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 번 느꼈고 평생 동안 그때의 감격을 잊지 못했다.

전재를 입은 다른 방직공장들은 UNKRA 부흥자금을 얻어 쓰기도 했으나 그 자금도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했기 때문에 경성방직은 1달러도 얻지 못했다. 동은은 복구자금 동결사건 이후로 은행문턱을 드나들지 않기로 결심했다. 私債를 얻어 쓸 망정 관청이나 은행문을 드나들며 구차한 대부를 얻어 쓰기는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으며 실제로 그후 그는 은행을 드나들지 않았다. 동은은 막역한 친구 李重宰가 재무부장관이 되었을 때 그에게 「앞으로 네 방에 한 발짝도 안들여 놓겠다」고 말했다. 실상 1년 1개월 이장관이 재임하는 동안 동은은 장관실을 찾은 적이 없어 이장관은 「지독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동은에게 지어 주었다.

막상 始動式을 갖고 보니 또 하나의 관문이 가로놓였다. 방직협회에서 원면 배정을 신청하면 번번히 묵살하여 원면을 구득할 수가 없었다. 釜山 부두엔 原綿이 山積하고 援助綿이 남아 둘고 있는데 경성방직에 대한 원면배정을 묵살하는 방직협회였다. 경성방직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 개입하고 있었다. 당시 방직협회 이사장은 동은이었는데 때마침 渡日中에 있었는데 당국에서는 방직협회로 하여금 임시총회를 열게 하고 4월 11일 조선방직 사장 黃一邁을 이사장으로 선임한 직후의 일이다. 백약이 무효하여 東手無策에 있을 때 동은은 美大使 「무초」를

우연히 만날 기회가 있었다. 1952년 5월 駐日大使로 있던 마이어가 美大統領의 特使로 來韓 하자 주한 미국대사인 「무초」가 大韓商工會議所 會頭를 초청하여 「마이어」와 오찬을 함께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全用淳 會頭가 부재중이어서 副會頭였던 동온이 참석하게 된 것이다. 절호의 기회를 만난 동온은 두 사람에게 한마디 던졌다.

「釜山 부두엔 援助한 原綿이 산적해 있는데 경성방직은 한 근의 원면도 없소.」「무슨 말이 오?」. 무초 대사가 즉각 반응했다. 그도 경성방직이 李承晚 政權의 부당한 압력을 받고 있음을 짐작하고 있었다. 「내 책임아래 원면을 공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초는 즉각 UNCAC의 「로렌」대령을 불러 경성방직에 대한 원면배정이 되지 않는 이유를 조사도록 하고 UNCAC의 보증하에 9개월 분의 원면을 무이자로 확보하게 되어 전화위복의 기회를 맞았다.

1953년 7월 休戰協定이 조인되고 정부가 서울로 환도함에 따라 방직업계도 활기를 띠게 되고 경성방직은 제1차 재건계획을 끝마치고 제2차 건설계획을 영동포 공장의 시설을 6·25 동란 전의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한 중설계획으로 1954년에 착수했다. 윤크라 자금에 의한 시설도입의 길이 막혀 있던 경성방직은 1954년 機料品 도입을 조건으로 6만달러가 배정되어 있어 이 자금으로 정방기를 도입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 때에도 당국의 끈질긴 방해가 있어 부득이 정방기를 분해·도입하여 조립하는 과정을 겪었다. 1955년 시설확장을 위한 제3차 재건계획을 수립하고 시설을 밟주했는데 면방업계에 不況이 몰아쳤다. 그 해 단행된 單一換率制 실시와 大日本交易 중단으로 財界는 자금난에 허덕이고 私債에 의존해 오던 경성방직은 私債負擔에 억눌리게 되었다. 동온은 수당에게 사의를 표하고 다른 사람을 추천했으나 수당은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자리를 고수할 것을 강권하여 주저앉고 말았다. 수당은 경성방직을 떠난 후 단 한번도 동온에게 아래라 저래라 간섭한 일이 없다. 그저 동온에게 일임하고 회사 사정만을 간단히 보고받는 것으로 끝났다. 1958년 경성방직의 재건사업이 종업원들의 힘에 의해 완결되자 경성방직의 利益金이 종업원들에 돌아가야 한다고 자기 소유 주식의 30%를 경성방직 有功社員들에게 額面價格으로 매각하여 위로했다. 이로서 경성방직은 완전히 公開法人의 性格을 띠었다. 따라서 8·15해방 후 전재복구 즉 제3차 재건계획을 끝내고 수당이 자기 소유주식을 단 한주도 남기지 않고 重役·연고자·관계단체에 株式分散을 하여 企業公開化하는 1958년까지는 경성방직사에 한 획을 긋는 시기이다⁶⁾.

4·19는 동온을 다시 방협 이사장을 맡게 되고 不正蓄財處理法으로 재계에서 물의가 일자 경제가 정치와 결탁함으로써 일어나는 폐단을 제거하기 위해 韓國經濟協議會의 조직에 앞장섰다. 이 때부터 동온의 財界活動이 본격적으로 개시된다.

6) 동온기념사업회 간, 전계서, pp. 95~131.

4·19 이후 張勉 정권을 거쳐 5·16革命으로 軍事政權이 들어서자 經濟開發計劃이 강행되는 기간은 財界의 새로운 막을 여는 隘痛期였다. 경성방직은 1965년 日本 伊藤忠商事로부터 元利金 140만달러의 장기차관으로 획기적인 중설과 시설대체를 함으로써 방직업계 대열에서 뒤지지 않고 확대 성장을 할 수 있었다. 경기 전망이 밝지 않은 1965년 장기차관의 결정을 내린 것은 동은으로서는 일대 결단이었다. 여기서 잠시 이동충상사와의 借款 경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제1차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할 무렵 경제기획원장관으로 있던 金裕澤은 동은에게 경성방직의 시설확장을 요구해 와 경성방직은 노후시설의 改善를 위해 100만달러의 차관을 하기로 하고 IFC에 교섭하여 결충을 끌날 무렵 伊藤忠商事が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차관제공을 제의해 왔다. 경성방직과 이동충과는 창업 때부터 기술제휴·원료구입·판로확장에 손을 잡고 협력해 온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생소한 IFC보다는 유리한 조건으로 차관을 준다면 이동충상사가 더 편했던 것이다. 이동충은 元利金을 합쳐 총 140만달러를 연 6%의 利子로 10년 年賦償還으로 해 준다는 것인데 문제는 摆保였다. 당시 外國借款은 政府支拂保證이나 銀行保證이 있어야 되는데 동은은 伊藤忠商事에게 정부지불보증이나 은행지불보증 없이 경성방직 자체보증만으로 차관을 달라고 요구했다.

왜냐하면 만일 경성방직이 不實해져 차관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국가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였다. 경성방직이 굳이 自體保證만으로 차관을 줄 것을 요구하자 이동충으로서는 그런 前例가 없었으므로 중역회의를 거듭했으나 결론을 맺지 못하고 마침내 伊藤忠의 창설자인 伊藤忠兵衛(당시는 相談役 顧問)에게 자문을 구했다.

伊藤忠兵衛는 경성방직과 오래동안 去來를 직접 해온 사람이어서 경성방직의 信用과 性格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처지였다. 그는 주저함이 없어 경성방직의 요구를 수락해 주라고 自信있게 권고하고 나섰다. 따라서 경성방직은 자체 보증만으로 차관을 얻게 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 차관도입이 정부나 은행보증 없이 얻어들인 최초의 케이스가 되었다. 동은은 이동충을 방문하고 감사의 인사말을 하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당신네 빚을 꼭 갚겠소」라고 다짐하니 그는 웃으면서 「빚을 다 갚고 나면 우리 하고는 거래를 끊을 작정이오?」라고 말했다. 동은은 이와 같은 이동충의 아량을 보고 그의 事業哲學에 감탄하였으며 信用의 중요성을 절감했다. 우여곡절 끝에 얻어낸 차관이지만 막상 정부의 승인이 안 나와 근 1년간 끝게 되었다.

당시는 崔斗善 內閣이었으므로 경성방직은 정부에 일체 청탁하지 않기로 내부 결정하고 法대로 집행되기를 기다리다 보니 1년이 허송하게 되었다. 崔斗善 내각이 丁一權 내각으로 바뀌고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에 張基榮이 취임했다. 하루는 장기영 부총리로부터 동은에게 전화가 왔다. 「그동안 몰랐는데 경성방직에서 借款을 신청한 서류가 있더군요. 오늘 결제

했습니다」 1968년의 일이었다. 동은은 너무 고마워 사례의 말을 했다.

金裕澤이 경제기획원 장관으로 재직할 때 동은은 보고 경성방직도 개발계획에 참여하라고 해놓고는 애써 無保證借款을 얻어 놓으니까 차일피일 승인을 보류하고 있던 터에 또다시 동은에게 계획사업에 참여하라고 권고했다. 동은은 속이 상해 「새企業人을 양성하세요. 經濟도 革命이오. 경험자는 혁명을 일으키지 못하는 法이오」라고 林語堂의 말을 빌어 한마디 쏘아부쳤던 것이다.

1970년 동은은 商號를 「株式會社 경방」으로 바꾸고 1971년 동은은 「경방」 사장을 사임하고 社長에 趙英九 부사장을 승진·발령했다. 동은은 정부의 1·2차 개발계획이 진행되는 동안 財界가 온통 借款景氣에 들떠 있을 때 그는 극도로 몸을 도사리고 「경방」만은 기업자체의 힘으로 기업을 유지·발전시키는 기업이어야 한다는 동은의 經營哲學을 고수했다. 비록 경방이 업계의 랭킹에서 멀리 떨어져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경방의 경영을 模範企業으로 남게 해야 된다는 동은의 고집과 철학이 내재하고 있었다. 이후 동은은 경방의 경영을 후진에게 넘겨주고 오직 財界活動만 전념하였다. 1973년 차관경기의 부작용과 石油波動이 물고 온 不況으로 財界가 심한 진통을 겪게 되자 동은은 1975년 경방의 회장직마저 내놓고 경방의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었다. 동은의 경방사장 재임기간은 만 25년에 걸쳤으며 경방에 몸을 담은지 40여년이었다.

동은이 회장으로 물려 앉은 후 제2공장인 龍仁工場이 완공되었고 총시설은 12만 5,700수, 직기 1,200대를 갖는 규모를 갖추게 되었다. 경방으로서는 동은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世代의 경영자 시대로 들어감을 뜻한다. 그러나 경방을 이 나라의 유일한 模範企業으로 유지·발전시켜야 된다는 동은의 經營哲學이 사라짐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1978년 동은은 경방의 명예회장, 理事職마저 물려나면서 경방은 인촌의 創立精神을 되새겨야 된다는 주장 아래 仁村銅像의 건립을 종용하여 1978년 10월 동상이 세워졌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지만 동은은 「경방」의 전문경영인으로서 「경방」을 우리나라의 모범기업으로 남겼다.

1977년 동은은 「경방」의 理事職마저 물려나면서 그가 所有했던 「경방」의 株式마저 한珠 안남기고 깨끗이 「경방」 임직원들의 厚生事業을 위한 자금으로 회사하고 경영일선에서 물려나 財團法人 「경방育英會」의 理事長으로서 文化·獎學事業 일만을 유일한 여생의 사업으로 삼고 讀書三昧로 들어갔다.

한편 동은은 1968년 3월 大統領 表彰狀, 1974년 3월 國防部長官 表彰狀, 1974년 4월 金塔產業勳章, 1977년 5월 經濟人으로서는 처음으로 國民勳章 無窮花章을 받았으며, 1977년 11월 自由中國 外交勳章 大綏景星, 1978년 3월 프랑스 一等 國民勳章, 1988년 4월 日本 勳一等 瑞寶章 등을 수훈했다. 또한 그는 1972년 9월 延世大學校로부터 名譽經濟學博士學位를 취득

했다.

東隱 金容完은 우리나라 財界史에 큰 족적을 남기고 1996년 1월 17일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自宅에서 93세를 一期로 별세,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松亭里에 영민하고 있다.

III. 東隱의 財界活動

8·15 해방 후의 財界動向은 대체로 3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해방 직후 혼란기의 재계, 6·25 동란 후의 援助外換에 의한 輸入貿易時代의 재계, 5·16 혁명 후의 借款景氣時代의 재계가 그것들이다.

해방 직후 財界는 산업경제의 재건을 위한 경제면의 사업,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활동, 반공을 위한 투쟁 등 정치면의 사업, 전후의 국제정세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국민외교사업, 무질서한 財界를 정리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는 非常時期였다.

財界的 서열은 그간 재계를 주름잡아 온 경성방직 김연수, 화신산업 박홍식 등이 직접 나서지 못하고 永保그룹의 閔圭植, 朝鮮賣藥의 李東善, 金剛製藥의 全用淳 등의 新派들과 以北에서 월남한 小將派의 중심으로 개편되었다. 대체로 財界指導者로서의 서열은 閔圭植, 柳一韓, 金東善, 全用淳, 全恒燮, 崔斗善, 金用周 등의 순위가 확정되었다. 전용순은 永保그룹의 閔氏財團과 開成그룹 그리고 경성방직을 업고 나와 조선상공회의소를 재정비하는데 노력했으며, 金度演은 신진 자본가들을 망라하여 한국무역협회를 조직하여 신생 대한민국의 對外 무역활동에 대비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保守的 세력이라면, 韓國貿易協會는 신진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東隱이 조직하고 나선 대한방직협회는 순수한 產業活動을 뒷바침하기 위한 業種團體였다.

당시 財界는 이들 3단체에 의해 재정비되었고, 특히 정치면의 활동은 조선상공회의소를 통해 이루어졌다. 동온이 대한상공회의소 副會頭로 선출된 것은 1947년이다. 財力이 말하는 財界에서 유일한 산업기관인 경성방직을 가담시키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東隱의 財界活動은 유일한 民族企業으로 그간 民族獨立運動 진영과 사회개발에 기여한 경성방직이 갖고 있는 폭넓은 정치·사회의 지도세력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명분을 중히 하는 동온의 행동이 발언권을 얻게 된 것이다.

8·15 해방에서 1953년 상공회의소법이 제정되기까지의 상공회의소는 任意團體로서 그간 會頭는 閔圭植, 柳一韓, 李東善, 全用淳으로 이어 갔으며 副會頭 진영은 柳一韓, 李東善, 全用淳, 崔淳周, 李春玉, 金英俊, 李世賢, 金智泰, 金容完, 柳基東, 李重宰, 全澤璗가 등장했다. 해방 후의 財界人脈은 이들 會頭團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全用淳은 이중재와 막역하고 이중재

는 김용완과 막역한 사이고 보니 상공회의소는 이들이 주역이 되었다. 전용순은 이중재와 동은을 '時計바늘과 같은 사람'이라고 했다. 상공회의소는 '補強會'를 조직하여會員들의 찬조를 받아 反共·反全評·反全學聯·反建準 그리고 左右合作에 반대하는 反共一線을 지원하는 사업과 우익진영의 정권장악을 지원하는 일, 그리고 무질서했던 재계를 정리한 일이다. 상공회의소법이 공포되고 법에 따라 會長團의 선출을 하게 되었는데 모두들 東隱이 회장에 취임하기를 권고 했으나 끝내 고사했다.

전술한 바와 같이 1949년 美國 軋轂使節團의 一員으로 渡美했다. 대한상의는 전용순회장을 단장으로 공보처장 全東成, 대통령 비서실장 金良千이 대변인이 되어 2개 반으로 나누어 미국의 北部와 南部를 순회하게 되었다. 실업계에서 전용순, 김용주, 전항섭, 이세현 그리고 예술가 고수동, 金融界에서 金鐵炯(환금은행 부총재), 吳錦冰(신탁은행장), 張敬煥(식신은행 부총재) 그리고 정부대표 金東成, 金良千 등으로 구성되었다. 동은은 北部班의 一員으로 김진형, 김용주 등과 팀을 이루어 하와이·로스엔젤레스·샌프란시스코·포틀랜드·시애틀·시카고·알바나·바하로·디트로이트·클리블랜드·피츠버그를 돌아 워싱턴에 도착했다. 동은은 北美大陸의 엄청난 자원과 五大湖 부근의 공업도시를 보고 감탄했다.

1945년 해방이 되자 日本人들이 몰려가고 적산공장들은 原料難과 技術難으로 이중고를 겪어야 했다. 극심한 衣料不足으로 직물가격은 폭등했고 따라서 방직업계는 어느 공업부문보다도 가동이 시급했다. 1946년 7월부터 1947년 12월까지 18개월 동안에 배급된 광목은 1인당 一碩에 불과했다. 美軍政도 남한의 大宗工業인 방직공장의 가동을 지원하기 위해 ECA자금에 의한 원면공급을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조선방직협회가 1947년 2월에 창립되고 初代理事長에 동은이 취임하여 1·2·3대로 연임했으며 4·19 이후에도 다시 8대 이사장을 지냈다. 창립 당시 주요 회원사는 경성방직, 조선방직, 고려방직, 대한방직, 대전방직, 제일방직, 송고실업장, 대아방직, 조선제마 밀양모직 등 10개사를 비롯하여 그 밖의 섬유업체가 참여했다. 초대 이사장에 추대된 동은은 김상형을 전무로 보임했다. 방협은 미군정 당국의 배려로 GAR10A원조금에 의한 원면도입이 실현되었고, ECA자금에 의한 도입이 계속되어 활기를 띠웠다. 동은은 '국산면 대책연락위원회'를 조직하고 정부 당국에 국산면화증산책을 촉구하기도 했으며, 문교부 기술교육원과 ECA 기원하에 기술양성소를 개설하고 기술연습회를 열어 기술자 양성에 앞장 섰다. 경성방직은 제일방직과 함께 문교부 기술교육원의 지원을 받아 1949년 기술강좌와 영어·수학의 3개월 단기 양성소를 개설하고 1950년에는 경성방직, 전남방직, 고려방직, 제일방직, 동양방직 등 소위 '5대방'이 힘을 모아 단기 양성소를 설립하고 종업원의 기술향상에 힘썼다. 이와 같은 방협의 활동으로 6·25동란 직전에는 연간 면사 생산고는 7만捆, 면포생산고는 143만필로 증산되었다. 또한 방협은 통계가격으로 묶여 오던 면사포가격을 시장경제의 원리로 돌려야 된다는 입장을 고수, 1950년 가격통제를 해제했다.

동은은 방직협회 이사장을 1·2·3대를 연임하고 물러났는데 그 이유인 즉 부산 피난시절 동은이 일본에 출장간 사이 정부와 농간에 의해 사임되고 말았다. 동은이 일본에 있는 동안 방협은 임시 총회를 열고 임원진을 개선하여 새 이사장에 朝鮮紡織의 姜一遇가 파선되었다. 그는 정부관리 기업체인 조선방직의 사장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측근이었다. 동은은 이를 계기로 정부의 압력에 의해 대한상의 부회두 자리도 내놓지 않을 수 없었다. 高木風多라고 동은도 예외가 될 수는 없었던 것이다.

1965년 인도 뉴델리에서 국제상공회의소 회의가 개최되어 대한상의에서도 대표단을 파견하자 동은은 금성방직의 洪在善과 같이 방직협회 대표로 그 일원이 되었다. 흥제선과 동은은 한발 앞서 1월에 애굽과 신생 아프리카 제국을 방문하기 위하여 서울을 출발했다. 국제상공회의는 국제적인 경제협력을 통해 공존공영하자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끝냈다.

1960년 4·19 이후 10월경 동은은 재계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타개책을 논의하기 위해 당시 재계인물로 부상되던 宋大淳, 全澤璣, 李漢垣, 崔泰燮, 沈相俊 등과 접촉했다. 허정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내각이 수립되고 정치기업에 대한 웅정을 위해 不正蓄財處理法의 발동이 일어나 재계는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태로서 공동운명을 타개하기 위한 어떤 대책이 철실하게 요구되던 때이다. 동은은 항상 경제가 정치에 예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재계가 독자성을 갖고 그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을 꾀려한 바 있다.

1960년 12월 3일 반도호텔 특별실에서 창립 준비 간담회를 개최하고 7인의 창립준비위원으로 宋大淳, 金容完, 全澤璣, 李漢垣, 崔泰燮, 沈相俊, 金恒福이 천거되었다. 이들은 이 회가 조직면에서나 사업면에서 상공회의소와 서로 상충되거나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그 구성 멤버나 성격을 일본의 경제단체연합회 조직을 참작했다. 즉 첫째 상공회의소의 회원이 전상공업자인데 반하여 경제협의회의 구성멤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체로하여 이 회를 자본의 집단으로 할 것, 둘째 상공회의소와 같이 지방조직을 두지 말고 전국적 성격을 면 단체로 할 것, 셋째 대기업을 주도하지만 경제단체를 총망라하여 재계의 역할을 총집결 할 것, 넷째 상공회의소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데 반하여 이 회는 임의 단체로 할 것, 다섯째 선진제국과 같이 정치자금을 양성화함으로써 정치풍토를 정화하는 한편 정치문제에도 필요에 따라 관심을 가질 것, 여섯째 경제부흥을 위한 민간경제 외교의 본영이 되도록 자유자본주의 제국 재계와의 가교를 구축할 것, 그리고 당시 혼미상태에 있던 한일양국의 국교를 정상화 하도록 촉진키 위하여 韓日經濟協力 基本對策을 정립할 것 등의 대강을 마련했다. 또한 창립취지문, 정관, 제규정 및 사업계획을 세우고 회원 연락자를 선출했다.

1961년 1월 10일 반도호텔 대회의실에서 우리나라 주요 기업체 대표 78인이 회동, 한국경제협의회 창립총회를 가졌다. 동은은 창립준비위원으로 경과보고를 했다. 이날 회의에서 회장에는 재계 원로인 김연수를 추천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이사에는 金恒福, 全澤璣, 金

容完, 宋大淳, 李漢垣, 崔泰燮, 沈相俊, 朱錫均, 鄭坤秀, 金容成, 洪在善, 朴憲祐, 吳善模, 柳昌烈, 徐準湖, 金錦根, 朴斗乘, 李必興, 申泰鎮, 鄭寅旭, 監事에는 鄭宗諤, 任昌浩, 金仁得이 선임되었는데 부회장 2인은 회장 金季洙에 일임키로 했다. 1월 13일 이사회를 열고 부회장에 全澤瑞, 李漢垣이 선출됨으로써 회의 임원진이 완성되었다⁷⁾.

1960년 4·19가 물고 온 이슈의 하나가 부정축재자의 처단을 요구하는 것인데 허정내각에서 부정축재처리법안을 구상, 민의원을 통과하였는데 이를 새로 탄생된 민주당정권에 넘겼다. 경제협의회는 장면내각이 취할 경제정책의 텍스트를 만들어 수교했다. 즉 자유기업의 창달, 경제계의 간접 배제, 경제인의 자주권 인정 등을 요구했으며 부정축재처리법안의 수정을 요구했다.

1962년 5월 22일 5·16 혁명 후 군사혁명위원회 포고령 제6호에 따라 경제협의회는 물론 모든 정치, 경제, 사회단체들은 반년여의 단명으로 끝났으나 경협이 탄생하여 政經分離, 경제인의 자주권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어 민주경제 발전의 기틀이 되고 재계활동의 전망을 밝혔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4·19 혁명 후 과도기에 있어 재계인물로서는 가장 뛰어난 행동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동온이었고 때문에 표면에 나서 정치자금의 양성화를 주장할 수 있었고 경경분리를 재계활동의 기간으로 삼게 하여 한국자본주의 경제사의 한 장을 열게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즉 동온은 이미 이때 자타가 공인하는 재계의 지도자가 된 것이다.

5·16 혁명 후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재계인사 10여명을 불러 경제재건을 위한 방향제시를 요청한 바 있어 이때 동온은 농촌을 재건하여 국가의 기틀을 세우고 기술교육을 진흥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경제재건에 대한 견의서를 박정희 의장에게 보냈다.

혁명정부는 부정축재자로 지목된 수십명에게 처벌을 하지 않는 대신 경제재건에 참여하도록 하여 발과금이 가장 많은 13명으로 경제재건촉진회를 구성하고 이들이 기간산업 건설계획과 울산공단건설, 외자도입 등에 참여케 했다. 그러나 재건촉진회의 움직임을 재계 일각에 회의를 나타냈고 반론이 재기됐다. 즉 어찌해서 그들만이 재건에 참여하고 재계의 대포가 될 수 있느냐는 문제였다.

이들 반론자들은 1962년 10월 25일 심상준·정주영 등이 중심이 되어 재건촉진회 회원이 아닌 80여명의 실업인을 이 경제간담회란 명목하에 회동했다. 이것이 발전하여 가칭 '한국경제인협회' 창립준비위원회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경제재건촉진회는 문호를 열어 한국경제인협회를 확대강화하게 되었다. 이것은 이후 약 20여명의 신입회원이 참여하게 되고 1962년도 말 회원수는 40명이 되었다. 경제재건촉진회나 한국경제인협회는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만들기 위한 준비위원회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동온은 참여하지 않고 관망했다.

7) 동온기념사업회 편, 전개서 pp. 150~168.

동은은 5·16혁명 후에 발족한 경제재건축진회나 한국경제인협회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는 그때 차관으로 기업을 크게 일으킬 구상도 없기 때문에 경제건설하려는 모임에 참여할 이유가 없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3대 회장을 지낸 이정립 때에 들어가 재계단체로서의 회원 구성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으나 이 단체에는 온건파와 강경파가 대립을 벌리고 있었다. 경제인협회는 차기 회장을 선출하면서 동은을 회장으로 추대하였다. 그는 백번 사양했으나 결국 수락하게 되어 경제인협회 회장에 피선되었다.

1962년 9월 17일 일본경제사절단이 내한하여 한일 두 나라는 경제사상 처음으로 민간경제 협력의 방향을 추진했다. 동은은 이승만의 대일 강경외교에 다분히 비판적이었다. 즉 정치적 차원과 실리적 차원에서 문호의 개방을 역설했던 것이다. 한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국교 정상화가 절대 필요하다는 것이 동은의 생각이었다. 따라서 그는 경제협의회 조직에 솔선했으며 한일 민간협력의 길을 모색했다. 그는 金用周, 洪在善, 朴興植, 李漢垣 등과 함께 적극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했다. 1965년 4월 한국경제인 협회의 공식초청을 받아 일본재계를 대표하여 土光敏夫를 단장으로 단원 40명이 내한, 4월 22일 서울에서 韓日經濟懇談會를 개최했는데 한국측 대표는 동은이었다. 거리에는 한일 국교정상화반대 데모가 거세어 국무총리로부터 한일 경제회담의 연기를 공식 요청하였으나 동은은 결단을 내려 이를 강행했다. 이것이 점화가 되어 1966년에서 1968년까지 3년에 걸쳐 제3회까지 민간합동경제간담회가 서울과 동경에서 번갈아 열렸다. 이것은 그후 한일민간합동경제위원회로 개칭되었다. 그간 제1회는 상호간의 이해증진과 상업차관의 조기 제공문제를 주제로 했으며, 제2회는 기술협력 실천방안과 연수생 대일파견 및 1차상품 수입촉진이었으며 제3회는 합작투자 촉진과 기공무역 증진을 통한 교역의 균형화 문제였다.

東隱은 4·5대 회장을 맡고 제6대 회장을 洪在善이 하였다. 1968년 3월 임시총회를 열고 회명을 전국경제인연합회로 개명하였다. 홍재선의 건강 이유로 협회는 崔泰燮을 회장으로 추대하려 했으나 또 다시 동은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회장에 선출되었다. 동은은 사퇴하고 회에 나가지 않았으나 全經聯 事務局의 金尚榮, 金立三, 尹泰秉 등이 회장의 추임 승낙이 없는 것은 사무국을 불신하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회장이 취임하지 않으면 사퇴한다고 엄포를 놓아 동은은 다시 회장직을 수락했다.

제9대 회장으로 취임한 동은은 企業倫理를 제창하고 企業利潤의 社會還元 운동을 전개했다. 이에 전경련은 1969년 4월 25일 全經聯 대표들과 崔斗善 國務總理 간의 격의 없는 의견교환의 기회를 마련하고 우선 서울시 주변의 극빈동포 구호문제를 위해 전경련 사무국에서 구체안을 마련, 조속한 시일안에 최종리 입석하여 회원간담회를 열고 회원들의 협조를 구하기로 하였으나 돌연 최두선 총리가 사임하고 鄭一權 總理가 취임했다. 동은은 5월 1일 전경련에

서 가지회견을 갖고 기업의 社會奉仕와 企業人們의 나아갈 자세에 관한 기본방향을 천명하고 5월 4일에는 회장단(會長 金容完, 副會長 李華文, 具仁會, 李群球, 李道榮) 일행이 朴正熙 大統領을 예방하고 신임 인사 겸 財界의 당면문제와 韓國企業의 나아갈 길에 대한 전경련으로서의 태도를 밝혔다.

6월 5일에는 신임 鄭一權 總理를 초청, 관계각료 임석하에 경제단체 대표 및 유지, 회원 등 70여명이 회동하고 救貧事業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재확인했다. 마침 최두선이 대한적십자사 총재로 취임하여 전경련은 정부의 후원하에 대한적십자사와 공동으로 추진하여 전경련은 구호금품을 수집하여 大韓赤十字社에 보내면 그곳에서 적절히 배분처리하도록 하였다. 전경련에서 시작한 사회봉사 사업은 오늘날 이웃돕기·육영·문화·의료·구호사업 등 다채로운 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다. 동은이 제10대 회장을 있던 1971년 차관경제의 부작용이 나타나 한국경제는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고 사회적 불안이 조성되기까지 했다. 부실기업의 속출은 정치문제화되어 정국을 불안하게 했다. 1969년 5월 첫 단계로 대한플라스틱 등 30개, 2단계로 은행관리기업 56개 업체를 비롯해서 정리대상에 오른 업체는 96개에 달했다. 또한 1970년에 들어오면서 대기업들의 부도사태가 속출했다. 1971년에 들어가서는 사태는 더 옥악화일로에 치달았다. 동양시멘트의 이양구 사장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잠적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당시 재무부는 기업에 동원된 사채자금은 1천억 정도일 것이라 했고 국세청은 600억원이라 했으며 전경련에서는 1,800억원으로 추산했다. 전경련은 사태의 심각성에 따라 大統領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수수방관할 수 없는 처지라 판단한 동은은 재차 면담을 요청하여 15분간의 면담시간을 승낙 받았다. 토요일 南惠祐 財務部長官과 함께 동은은 청와대를 방문했다. 단 15분 내에 어떤 결론을 내야만 하는 절박한 시간이었다.

동은은 사태의 심각성을 솔직·담백하게 대통령께 보고했다. 경제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낱낱이 들어 설명하면서 기업이 私債가 많은데다 利子가 비싸고 은행융자 금리와 세금부담이 무거워 不實企業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하오의 스케줄을 모두 취소하고 2시간 반이나 동은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일일이 메모했다.

동은은 우선 몇가지 급선무한 대책을 제시했다. 즉 私債는 은행에서 떠맡고, 세금을 감해주고 金利는 떠맡고, 金利는 떠맡고 했다. 동은은 이 면담을 위해 경성방직이 중설을 위해 확보하고 있던 공장부지를 팔아 사채를 정리했다. 사심없는 몇몇한 처지에서 할 말을 하고 싶었던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반응이 없자 동은은 「政府豫算 半減論」을 주장했다. 이것은 바로 稅金을 半減하라는 대정부 폭탄선언이었다. 이 발언이 신문에 보도되자 정부도 아연 긴장했다.

청와대에서 수출확대회의가 열려 동은도 참석했는데 박대통령은 동은에게 「재정을 반감시키라는 것은 무모한 일이고 조금 더 참아주면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다. 그날 대통령과 동은은 점심을 거르면서 수습책을 논의했다. 私債를 갚아 주려면 行政力を 발동할 수 밖에 없다고

동온이 건의하자 대통령은 100억원의 특별자금을 배정할 것이니 전경련이 대상기업 30개를 선정해 달라고 해서 동온은 이를 거절하고 정부에서 직접 선정해 달라고 했다. 단체에서 선정하면 利害關係에 얹혀 짐음이 일기 때문이었다.

1년 후 1972년 8월 3일 긴급명령에 의한 私債凍結이 드디어 단행되었다. 이른 바 「8·3조치」였다. 정부는 사채를 동결시키면서 기업자금의 원활을 기하고자 기업합리화자금을 지원하여 후유증을 막았으며 이를 계기로 기업재무구조는 크게 개선되기 시작했다.

1973년 세계 경기의 호황으로 金利引下를 실현할 수 있었고 금융시장을 다변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경제계는 1973년 말 세계적인 오일쇼크로 다시 시련을 겪게 되자 박대통령은 1974년 연두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동온은 대통령에게 「오일쇼크는 우리나라에까지 큰 파문을 일으킨 것은 경제개발계획의 강행으로 石油를 많이 쓰는 나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난국을 피할 수 있는 조치를 내려 주셨던 덕택에 이 쇼크를 무난히 극복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우리나라도 고도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고 말하여 시기 적절했던 朴大統領의 8·3조치 단행을 칭송했다.

1970년 5월 韓國開發金融會社를 설립할 무렵 세계 은행 총재인 맥나마라와 조선호텔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동온은 가졌다. 그때 맥나마라는 동온에게 한국경제가 이렇게 급성장한 원인을 물었다. 동온은 「현 정부가 모든 행정력을 경제개발에 기울여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과감히 도입, 협력소를 불어 넣어 준 것과 기업인들이 이에 호응, 적극적인 활동을 했고, 또 수준 높은 노동력을 가진 것들이 원인이라」했다.

그때 맥나마라는 한국이 아직도 농촌과 도시의 소득격차가 심한 이유를 동온에게 물었다. 그는 미국의 잉여농산물이 한국 농촌의 생산의욕을 오히려 저하시켰음을 지적하면서 한국 농민들은 세계 어느 나라 농민보다 근면·성실하게 일하고 있으며 농민들의 교육열이 높아 대학까지 공부시키는 열성을 지니고 있음을 설명하고 세계은행이 한국의 농촌부흥을 위해 장기 저리자금을 대부해 줄 의사가 없는가를 물으면서 함께 서울에서 가까운 농촌을 돌아보는게 어떠냐고 하여 맥나마라는 자신이 직접 한국 농촌을 돌아보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한국이 농업개발자금을 최대한으로 지원해 주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동온은 1964년부터 1966년까지 4·5대 전경련 회장을 역임했고 1969년부터 1978년까지 도합 10년간 회장직을 맡아 재계의 지도자로 활약해 왔다. 총회가 열리기 하루 전 東驥은 金用周와 鄭周永을 차기 회장으로 천거하였는데 金用周가 한사코 고사하고 새회장으로 정주영을 내세웠다. 동온도 찬성했다. 동온은 10년간 다사다난했던 격동의 시기에 우리나라 재계를 이끌어 오고 명예회장으로 추대되었다.

동온은 商工會議所 副會頭, 大韓紡織協會 理事長, 그리고 經濟協議會의 조직과 全國經濟人聯合會 會長 이외에도 外交諮詢委員會 위원, 輸出検査 春議委員會 위원, 韓國經濟開發協會

고문, 韓日民間經濟合同委員會 한국측 위원장, 韓國請求權資金管理委員會 위원,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이사, 한국개발금융(주) 이사, 한국박람회협회장, 한일협력위원회 상임위원,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심의회 위원, 세정자문위원회 위원, 중앙노정협의회 위원, 한국과학원 이사, 금오공업고등학교 재단이사,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 이사장, 한국국제화협회 부회장, 한일민간합동경제위원회 한국측 위원장, 한국열관리협회 회장, 한국열관리시험연구소 이사장, 국정자문위원회 위원, 국토통일원 고문, 대한적십자 조직위원 국정자문회의 위원 등 財界, 政界 및 교육계 등에서 지대한 활약을 했다.

IV. 經營哲學

1. 東隱思想의 形成過程

發達心理學(development psychology)에 의하면 인간의 성장과 발달은 遺傳과 環境과의相互作用에 의해서 형성되며, 모든 행동의 특성을 발견하여 결합된 전인으로서의 발달단계를 거쳐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본다. 또한 교육적으로 볼 때 환경에는 外部的 條件을 들 수 있다. 외부적인 환경조건은 自然的 環境 외에 傳統이 있고 歷史와 文化가 있다. 個體는 短暂 좋던 간에 이와 같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때로는 환경의 힘에 지배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個體는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영향을 받아 성장하며 여러 계층의 人物, 사회적 존재를 알며 그에 대한 인식 · 흥미 · 好惡에 의하여 개체의 행동이 규정된다고 한다. 따라서 인간의 신체적 · 지적 · 정서적 · 사회적 발달은 유전과 환경이 서로 작용함으로서 자극과 영향에 따라 나타난다고 한다⁸⁾.

이와 같은 科學的 및 發達心理學的 사실에 조용하여 동은 김용환의 經營哲學의 형성과정을 살펴 보기로 하겠다.

전술한 바와 같이 동은의 本貫인 光山金氏는 黃岡公 金繼輝와 沙溪公 金長生 등을 배출한 名門巨族이다. 黃岡公은 동은의 13代祖이며 沙溪는 12代祖이고 그의 아들 慶獨齊는 바로 11代祖이다. 黃岡公은 栗谷이 말했듯이 당대의 유일한 領議政 材木이었으나 大司憲에 그치고 外職으로만 돌았다. 그의 성품이 어찌나 強直한지 仁宗大王도 그의 충성을 믿으면서도 直言이 두려워 외직으로만 돌렸다고 한다. 黃岡公, 沙溪公, 慶獨齊 등은 강직하고 청빈하여 不義를 참지 못하는 옮골은 선비로서 문묘의 18陸儒賢 중 父子가 配享되는 최고의 영예를 지니고 있어 동은은 어려서부터 이와 같은 名門巨族의 血統을 이어 받아 현대적 선비로서의 思想을 遺傳받았을 것이다.

8) 김재한, 「발달심리학」, 1975, pp. 12~13.

1917년 동은은 仁村이 경영하는 中央學校에 입학하여 당시 교장인 仁村과 학감 古下 宋鐵禹, 白寬珠, 崔奎東, 羅景錫, 李康賢, 崔斗善, 赤羽, 卞榮泰 등의 선생을 통하여 愛國愛族의思想과 진정한 민족애를 배움으로써 확고한 國家觀을 세웠으며, 1922년 渡日하여 仙台第二中學校를 다니면서 1923년 關東대지진 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日本人들의 民族差別意識과 함께 그들이 가지고 있는 人類愛를 배울 수도 있었다. 또한 廣島高等師範學校 數學科에 재학하면서 原理原則의 思想과 吉田賢龍 교장선생님을 통하여 道德과 倫理, 哲學 등 人間生活에 필수불가결한 德目을 배웠으며 世界 속의 인간이 되는데 있어 自己人格의 완성과 人格陶冶만이 새로운 價值創造를 할 수 있다는 최대의 교육 목적을 배웠다.

仁村 金性洙와 수당 金季洙를 통하여 동은의 평생 경영철학인 公先私後의 精神을 체득했으며 특히 수당과의 경영관리를 통하여 政經分離의 참다운 事業觀을 터득했던 것이다. 日本을 비롯한 美國과 西歐先進諸國, 그리고 이집트를 위시한 신생 아프리카 제국, 인도, 소련 등의 세계 여행을 통하여 人類의 發展史, 思想史, 文化, 社會史를 통하여 歷史觀을 확립했고 특히 未來 人類의 삶의 창조가 開放化·世界化에 있다는 확고한 未來像을 구축했고 雪峰 全澤瑞 등과 交友를 하면서 資本主義的 市場經濟原理를 체득했다. 湖南 제1의 甲富인 金暉中 宅의 규수 金占 女史와 결혼해 살면서 그녀를 통하여 철저한 勤儉節約의 生活哲學을 배웠으며, 先代부터 좀 색다른 家訓인 「비록 형제지간이라 하더라도 일체 돈 거래를 하지 말 것과 돈과 관계되는 保證은 일체 서지 말라」는 가훈에서 財上分明의君子之道를 배웠다.

이와 같이 동은은 祖上 傳來의 儒教의 선비정신과 東西洋의 博愛精神 그리고 愛國愛族의 民族觀 등을 모두 섭렵하여 體內的 化學作用을 통하여 그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동은의 독창적 사상이 임태되지 않았나 본다.

2. 原理原則主義

동은은 日本 廣島高等師範學校 數學科를 졸업했다. 수학의 원리는 原理原則이 그 生命이다. 동은은 수학을 工夫하면서 대자연의 理致와 萬物의 근원이 수학의 원리를 통하여 이루어진 오묘한 眞理를 배울 수 있었던 것이다. 사회과학과 인문과학과는 달리 자연과학의 기초원리인 수학은 公式을 벗어나서는 성립할 수가 없는 것이며 人類가 이 원칙을 저버리고 힘의 원리나 타협의 원리를 잘못 찾을 때 재앙과 파멸을 겪게 된다는 원리를 배웠다.

동은은 평생동안 사업을 경영하면서 원리원칙에 벗어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 사업상 회사의 경영이 잘못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는 이 원칙을 허물지 않았던 것이다. 동은은 崔斗善이 국무총리로 재임할 때 경성방직이 우여곡절 끝에 日本 伊藤忠商事로부터 自體保證만으로 140만달러의 상업차관을 얻었으나 정부의 승인이 없어 거의 1년 동안이나 도입하지

못하여 곤경에 빠졌던 일이 있었다. 최두선은 과거 경성방직의 사장으로 있었던 분이고 경성방직과는 극진한 인연이 있어 동온이 가서 부탁만하면 해결될 일이었으나 결코 동온은 부탁하지 않고 오직 法대로 처리해 주길 바랐을 뿐이다. 최총리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原理原則을 고수한 그의 경영철학 때문이었다.

3. 公先私後의 精神

전국경제인연합회 전 명예회장 劉彰順은 동온의 영결식장에서弔辭를 통하여 동온은 「善無悔」를 좌우명으로 「公先私後」를 경영이념으로 삼고 실천해 온 진정한 기업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남겨주었다⁹⁾고 솔직했다.

동온은 仁村 金性洙와 秀堂 金季洙와의 사업을 통하여 그들의 경영철학인 「公先私後」의 정신을 전수받아 몸소 이를 실천에 옮긴 기업인이다. 公先私後는 仁村의 경영이념이다. 黃明洙 교수는 「仁村의 경영이념은 〈公先私後〉 즉 〈國益優先〉의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仁村의 경영이념은 그의 生活信條에서 찾아볼 수 있다. 仁村의 생활신조는 〈公先私後〉와 〈信義一貫〉이었다. 그는 엄격하게 公私를 구분하였으며 항상 〈公〉을 우선으로 삼았다. 그는 公益 내지 國益을 항상 우선으로 삼았다. 그는 對人關係에 있어서는 한 번 알게 된 사람과는 信義를 평생 지켰다. “그는 일찍이 민족의 독립자강을 위해서 민족교육, 민족사업, 민족언론을 지켜야 한다”¹⁰⁾고 주장했다. 이는 그가 말하는 公先 = 公益 = 國益 優先 사상이 무엇인가를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仁村에 있어서는 公的事業은 항상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취급해야 하는 것이다」¹¹⁾라고 했다.

동온은 평생동안 이 〈公先私後〉의 理念으로 사업에 임하고 실천에 옮겼다. 그가 公先私後의 정신을 지킨 두 가지 좋은 예를 들어보자.

방직협회 이사장인 동온은 경성방직이 업계를 위해 지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경성방직은 社長이 방직협회 이사장으로 있다는 것이 경영상의 不利를 자초하는 일이었다. 公私를 분명히 가리는 동온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원면배정회의가 협회에서 열렸는데 경성방직에서는 張世衡 상무가 대표로 참석했다. 그때 동온은 경성방직의 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협회쪽의 입장만을 고집하는 것이었다. 그 때문에 장세형과 동온이 의견대립이 생겨 그날의 회의는 마치 두 사람만의 회의가 되었다. 이처럼 동온은 방직협회 이사장으로 있는 동안 결코 자기 회사의 利害에 얹매이지 않았던 것이

9) 경방 편, 「경방」, 제275호, 1996, p. 17.

10) 경방, 「경방 70년」, p. 61.

11) 東亞日報社, 「評傳 仁村 金性洙」, 황명수「仁村 金性洙의 企業活動과 經營理念」, p. 297.

다¹²⁾.

전술한 바와 같이 동은은 전경련을 대표하여 1971년 朴正熙 대통령과 재계의 당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면담할 기회가 있었다. 이때 동은은 경제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날낱이 설명하고 기업이 私債가 많은데다 利子가 비싸고 은행용자 금리와 세금부담이 무거워 부실기업이 늘어날 것이라면서 그 대책으로 私債는 은행에서 말고, 세금은 감해 주고, 金利는 인하해 달라고 했다. 이때 이미 동은은 이 면담을 위해 경성방직이 増設을 위해 확보하고 있던 공장부지를 팔아 私債를 정리하였던 것이다. 私心없는 몇몇한 처지에서 말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이 동은은 자기 보다는 회사를, 회사보다는 大義(국가사회)를 위해 일하였기 때문에 그는 방직협회 이사장을 1·2·3대를 연임했고, 그 후 다시 8대 이사장을 지냈으며 전경련 회장을 10년간이나 행하였던 것이다.

4. 正道經營

正道經營의 要緒는 〈正直〉이다. 韓國經營者總協會 李東燦 회장은 조사에서 「정도경영을 솔선수범 하시드니…」라고 동은을 일러 정도경영의 실천자로 자리매김했다.

孟子는 인간본성의 충분한 실현을 〈盡心〉이라고 했다. 즉 〈誠意〉를 다한다는 말도 진심의 뜻은 되지만 맹자가 말하는 진심의 의미는 인간성을 즉 仁·義·禮·智의 성을 최대한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진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直”이다. 孔子는 “인간이 산다는 것은 直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거짓으로 산다는 것은 유행으로 사는 것이니라”고 하였다. 直이란 솔직·강직 등의 의미와 동시에 賢樸·誠實·純眞의 뜻도 있다. 孔子는 “巧言令色”을 仁에 멀다 하고 “剛毅木訥”을 仁에 가깝다 하였다. “교언영색”은 성실치 못한 모습이오, “강의목 눌”은 순진한 모습이다. 인간성은 사실 賢直하고 순진하고 거짓을 꾸밀 줄 모르는 사람에게서 찾아 볼 수 있다.

“直”은 對人關係에서 정직·솔직의 의미도 되지만 자기에 대해서는 “母自欺”에 있다. 누구나 남에 대해서는 정직하기는 쉬우나 자기를 속이지 않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 속은 남이 들여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해도 좋다고 생각하기 쉽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선비들은 “무자기”에 가장 힘써 왔다. “慎獨”이란 말이 우리나라 儒學者들이 흔히 쓰던 署號(서실의 이름)인데 그 뜻은 흙로 있을 때 자기를 삼간다는 말이다. 사실 동양도덕의 근간은, “母自欺”, “慎獨”에 있다. 자기를 속이는 것이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된다. 범망을 교묘히 피하는 사람도 이런 사람이요, 부패·타락도 이런 사람이 하는 것이요, 사기

12) 동은기념사업회, 전개서, p. 169.

· 협잡도 이런 사람이 하는 것이오, 모략·증상도 이런 사람이 하는 것이오, 儒君子도 이런 사람에서 생기며 팔방미인도 이런 부류에서 일어난다. 자기에 충실하지 못하고는 도덕이 생겨날 수 없다. 먼저 자기를 알고 자기에게 충실히 해야 한다. 소크라테스가 “自己를 안다”한 “자기”는 孟子가 말한 自己와 비슷하다. 다만 소크라테스에 있어서의 “自己”는 理性面이 강한 완전한 자기임에 비하여 孟子에 있어서 “自己”는 情·理 양면이 “意”와 포함하여 행동하는 자기이다. 사람이 자기를 속이면 마음 한 구석이 놀 불안하여 心的 동요가 생기기 쉽다. 그러나 자기에 충실한 사람은 항상 편하므로 心的 동요가 생기는 일이 적다. 심적 동요가 생길 때는 곁에 들어나는 행동도 안정치 못하고 或東·或西로 극단에서 극단으로 기울어지기 쉽다. 그러나 마음의 안정을 얻은 사람은 행동에 있어서 墾正· 확고하고 光明正大한 기상을 보인다. 孟子는 “道” “母自欺”的 수양을 오래 쌓은 사람에게는 일종의 남과 다른 특이한 기계를 가진다 하였는데 그것을 “浩然之氣”라 하였다. 호연지기가 있는 사람이 “大丈夫”인 것이다.⁽³⁾

정도경영은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母自欺”的 사상을 가지고 光明正大하게 나갈 때 이룩되는 것이다. 동은의 11대조의 호는 “慎獨齋”이다. 沙溪 金長生의 아들로 巨儒이다. 동은이 정도경영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조상의 얼이 담겨 있었으며 그래서 그는 정도경영으로 경성방직을 모범기업의 모델로 삼은 專門經營人의 表像이 되었다.

5. 政經分離의 實踐

동은의 事業觀은 일관된 政經分離의 原則이었다. 그는 평생 사업을 경영하면서 정치와 경제의 미분리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해독을 미치는가를 절감했다. 동은이 정치자금을 댄 것은 단 두 번이었다. 즉 古下 宋鐵禹가 韓民黨 당수로 있을 때 그의 부탁을 받고 秀堂과 협의하여 경성방직의 재고품을 모두 정리하여 현금한 일이 있으며, 다음으로 건국 준비차 李承晚이 美國에 건너갈 때 여비를 지원한 외에는 단 한 번도 정치자금을 대준 적이 없다.

동은은 개인적으로도 정치적 농간에 의하여 방직협회 이사장을 사임해야만 했고 해방 후 경성방직이 복구자금으로 9억 6,000만원을 저축은행에 융자 신청했으나 오히려 기존 대출금 까지 회수당하는 수모를 당했으며, 또한 방직협회의 원면 배정에서도 정치적 음모로 단 한 근의 원면을 배정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1960년 4·19 학생의거로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고 許政의 과도내각이 수립되었을 때 정치기업에 대한 용징을 위해 不正蓄財處理法의 발동을 보게 되어 財界는 전전긍긍하면서 공동운명을 타개하기 위한 행동이 절실히 요구될 때 동은은 평소에도 경제가 정치에 애속되는 것

13) 李相殷, 「東洋의 人間型」, pp. 45~58.

온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떤 구체적인 모임을 만들어 財界가 독립성을 갖고 그 자체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리하여 조직된 단체가 輔國經濟協議會였다.

동은의 정경분리 원칙은 1949년 仁村이 경성방직에서 정치자금이 못나을 것을 잘 알면서도 편법을 동원하여 정치자금 마련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으나 동은은 정치나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일언지하에 거절하여 仁村으로부터 처음 심한 꾸중을 들은 일이 있다.

이와 같이 동은은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는 것만이 경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첨경임을 자각하고 끝내 정경분리를 주장하는 경영철학으로 일관했다.

6. 顧客滿足의 價値創造

1930년 동은이 中央商工에支配人代理로 취임했는데 그 당시에는 고무신 봄이 대단하여 평양·부산·서울 등지에 100여 개의 고무신 공장이 난립하여 경쟁이 무척 치열했는데 중앙상공의 지배인이 과욕으로 만주에 거액을 투입, 시장개척을 하려 했으나 실패하여 자본금 10만원, 회사의 부도액은 250,000원에 달했다. 이런 상태의 회사에 동은이 들어간 것이다. 회사에 들어가 살펴보니 의욕과잉으로 시설과 생산의 과잉을 초래하였고 여기에 불황이 겹쳐 실패한 것이었다.

그 때의 고무신 판매과정은 장들뱅이를 상대로 아침에 고무신을 배달해 주고 저녁에 수금하는 형식이었다. 그래서 그는 양복을 벗어 던지고 한복을 입고 고무신을 신고 맥고모를 쓰고 일선에 나가 「발로 팔기 운동」을 전개했다. 그런데 일선에 가서 보니 상인들의 인간성이 참 좋았던 것이다. 이런 좋은 사람들과 서로 성실성의로 하면 안될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 신용본위로 하고 그 자신이 모든 경비를 줄이고 기술을 혁신하여 좋은 상품을 만들어 고객이 만족하도록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빛깔이 이게 뭐냐?」「모양이 왜 이러냐?」「신발이 질기지가 않다」는 등 중앙상공 제품에 대한 결함을 모조리 털어 놓았다. 동은은 즉석에서 나쁜 점이 있으면 시정하겠다고 약속했고, 회사로 돌아오는 길로 그들이 지적한 험을 없애도록 지시하여 나쁜 점을 꼭 개선해서 다음 출하시는 좋은 제품을 내놓았다. 그러나 선발기업인 大陸고무가 내놓은 「大陸票」 신발은 위낙 신용이 있었고 고무신 장삿꾼들의 그와 같은 인식을 바꾸어 놓는데는 역부족이었다. 동은은 숙고 끝에 아이디어를 창안했다. 대륙고무의 「대륙표」를 말하는 장삿꾼이 있으면 자기가 신고 있는 고무신을 번쩍 들어 보이면서 「이거 보시오. 이 신발이 우리 회사 신발인데 이제 6개월이 되었소. 아직 새 것과 다를 바 없지 않소?」 말로 아무리 설득해도 안되는 일이었으며 눈 앞에 증거를 내놓고 말하는데 장삿꾼들도 두 말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중앙상공의

「별표」 고무신도 신용이 쌓여 갔다.

동은이 함경도 시장을 개척할 때는 위낙 경쟁이 심해서 보통 수단으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고 들고 나온 것이 「고무신 品質 6個月 保證販賣制」였다. 이는 새로 사 신은 지 6개월 안에 해어지면 새신으로 교환해 준다는 매우 혁신적인 판매제도이다. 그러나 사서 4개월 정도 신고 좀 닳으면 들에다 마구 비벼 일부러 구멍을 내고 새신으로 교환해 달라고 요청해 오는 소비자가 없지 않았다. 이러한 요구가 거듭되자 회사에서는 이마다간 회사가 망하겠다면서 保證販賣制를 폐지하자고 했으며 일부 중역들도 이에 호응하여 동운의 생각을 말렸던 것이다. 도대체 교환해 준 신발이 전체 판매액의 몇 %나가 문제였다. 개수를 뽑아보니 1%에도 미달 했다. 새신으로 바꿔달라는 사람 가운데 악덕소비자도 있었지만 그 중에는 정말 계품이 잘 못되어 교환을 요청해 왔을 때 교환해 주지 않는다면 선량한 소비자까지도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 악덕소비자의 횡포를 막기 위해 선량한 소비자까지 잃는다는 것은 백년을 내다보는 회사로서 취할 바가 아니라고 굳게 믿었다. 동은은 광고비 쓰는 샘치고 보증판매를 계속 밀고 나갔다.

보증판매는 실시 1년만에 판매실적을 3배 이상 올리고 판매실적 1위를 마크하던 大陸고무의 「大陸票」를 크게 앞질렀다. 고무신계의 王子였던 大陸고무를 누르고 1위로 부상하고 不實企業이던 중앙상공은 자본금도 10만원에서 배로 늘리고 공장시설도 새로이 확장했다.

이와 같이 동은은 행동하는 기업인으로 「발로 파는 운동」과 「고무신 품질 6개월 보증판매제」 등의 혁신적인 경영을 전개하여 고객만족의 가치창조를 이 땅에 처음으로 도입한 혁신적인 기업가이다.

IV. 요약 및 맷음말

이상에서 우리는 東隱 金容完의 生涯와 著績 그리고 그의 財界活動과 경영철학으로서 1) 東隱思想의 형성과정, 2) 原理原則主義, 3) 公先私後의 理念, 4) 正道經營, 5) 政經分離의 實踐, 그리고 6) 顧客滿足의 價值創造 經營 등을 살펴 보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 1) 동은은 名門巨族 光山金氏의 黃岡公, 沙溪公 및 慶獨齋와 같은 협통을 이어 받아 강직·청빈의 사상으로 불의와 부정을 용납하지 않는 현대적 선비상을 구현했다.
- 2) 철저한 儒教의 가문에서 출생·성장하였으나 유교사상보다는 그리스도 사상을 신봉하여 博愛精神으로 人類愛를 가졌다.
- 3) 湖南의 巨富 金暉中 宅의 규수와 결혼하여 당대의 지도자 仁村 金性洙, 秀堂 金季洙와

처남남폐가 됨으로써 그들과 함께 이 나라의 政治·經濟의 일익을 담당 재계의 지도자가 되었다.

- 4) 中央學校를 다니면서 仁村·古下·白寬洙·崔斗善·卞榮泰·李康賢 등 민족지도자들 밑에서 修學하면서 愛國愛族의 정신과 진정한 국가관을 세웠다.
- 5) 日本의 仙台中學 및 黃島高等師範學校를 다니면서 民族意識과 특히 吉田賢龍으로부터 宗教·道德·倫理·歷史 등을 배우면서 참 인간의 價值創造를 배웠다.
- 6) 日本·美國·西歐諸國·이집트 및 아프리카·소련 등을 두루 여행하면서 개방화와 세계화의 無限競爭時代의 來倒를 예견했다.
- 7) 仁村·秀堂과 더불어 사업을 경영하면서 公先私後의 경영이념을 전수 받아 실천에 옮기고 개인보다는 회사를, 회사보다는 大義(국의)을 위했다.
- 8) 원리원칙과 정도경영을 실천에 옮겨 專門經營人의 守則인 正道를 실천하고 母自歎의 사상으로 경성방직을 모범 기업의 전범으로 만들었다.
- 9) 방직협회·대한상공회의소 및 전국경제인협회의 회장으로서 우리나라 재계를 이끌었으며 日本의 錦澤榮一와 같이 韓國財界의 지도자였으며 조직자였다.
- 10) 私心없는 행동으로 朴大統領과 면담, 8·3조치를 이끌어 냈으로써 우리나라의 재계를 백척간두에서 구한 公先後私를 실천한 財界指導者였다.
- 11) 善無悔와 安分樂業을 좌우명으로 하여 평생을 살아 온 生活人이며 哲人이었다.
- 12) 우리나라 財界에 企業倫理와 企業의 社會的 責任을 도입한 未來指向의 기업인이다.
- 13) 우리나라 최초의 專門經營人으로서 專門經營人의 典範을 보였다.
- 14) 人材養成과 연구개발에 적극 투자하여 창조적이며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으로 공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했다.

參考文獻

1. 東隱記念事業會, 「東隱 金容完」, 1979.
2. 경방, 「경방 50년」, 三和印刷(株), 1989.
3. ___, 「경방 60년」, 三和印刷(株), 1969.
4. ___, 「경방 70년」, 三和印刷(株), 1979.
5. ___, 「경방」 제275호, 1996.
6. 東亞日報社, 「評傳 仁村 金性洙」, 1991.
7. (주) 삼양사, 「근대기업의 선구자」
8. _____, -수당 김연수 선생 일대기-, 독일인쇄, 1996.

9. 조기준, 「한국자본주의 성립사론」, 대왕사, 1982.
10. _____, 「한국기업가사」, 박영사, 1973.
11. 황명수, 「경영사학」, 일신사, 1972
12. _____, 「김성수의 생애와 기업이념」, 동아일보사, 1991.
13. 박재록, 「신경영사론」, 유풍출판사, 1994.
14. 경영사학회, 「경영사학」, 1~15호, 수서원.
15. 황명수, 「日本 經濟史」, 교학연구사, 1981.
16. 김재한, 「발달심리학」, 學友社, 1976.
17. 이상온, 「동양적 인간형」, 고대출판사, 1963.
18. 황명수, 「企業家史研究」, 檀大出版社, 1982.

歸屬 編紡織工場의 設立과 變化類型에 관한 研究

徐 文 錄*

目 次

I. 머리말	III. 歸屬 編紡織工場의 變化類型
II. 日帝下 大規模 編紡織工場의 設立과 發展	1. 第1類型
1. 大規模 編紡織工場들의 設立 契機	2. 第2類型
2. 1930年代 以前에 設立된 編紡織工場	3. 第3類型
3. 1930年代 設立된 編紡織工場	4. 第4類型
4. 1940年代 設立된 編紡織工場	5. 第5類型
5. 解放當時 歸屬 編紡織工場의 現況	IV. 뒷 음 말

I. 머리말

해방 이후 50여년 동안 괄목할 만한 경제적 성장을 이룬 지금까지도 해방 이후 5·16쿠데타 이전까지의 경제적 측면에 관한 연구는 심화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발전에 대한 國外의 연구는 한국의 경제발전과 식민지시대의 연속성이 연구의 주요한 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반해 지금까지 國內의 연구는 민족적 차원에서의 침략과 수탈, 그리고 이에 맞서는 독립투쟁이라는 측면에 그 초점이 놓여져 있었다. 따라서 일제의 경제적 유제가 광범위하게 존재할 뿐만 아니라 경제의 상당부분이 원조에 의해 운영되는 이 시기에 대한 연구가 큰 흥미를 끌지 못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일제 식민지시대의 경제적 유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경제적 측면에서 식민지시대의 일단면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 있다는 측면과 해방 이후 한국의 본격적 공업화의 초기단계에 대한 분석이라는 측면에서 이제는 보다 더 객관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연관성에 대한 논의는 '歸屬財產'에서 출발할 수 있다". 归屬工場이란 归屬財產의

* 檢國大學校 經濟學科 講師(經濟學博士)

1) '歸屬財產'은 일본인 소유재산이 해방 이후 미군정에게 소위 '敵產'으로 처리된 후 한국정부수립 이후에 정부에 귀속되면서 '歸屬財產'으로 관리되다가 민간에게 拂下되었던 資產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일본인 소유기업체로 판정되어서 적산기업체로 된 기업체들이 완전히 일본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이다. 미군정에서 한국정부로 귀속시켰던 기업체들의 귀속주식 분포를 보면 일본인이 100%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업체는 44%에 불과할 정도로 각 기업체들에 조선인 자본도

일종인데, 일반적으로 '歸屬財產'이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즉 '일본제국 주의의 지배기간 동안 형성된 경제적 산물로서 해방 이후에 한반도에 남겨진 각종 경제적 가치' 혹은 '일제가 식민지기간 동안에 소유했던 일본인 재산으로서 8·15 이후 미군정에 귀속된 재산'을 '歸屬財產'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 중에서 공장의 형태로 남겨진 归屬財產을 归屬工場이라고 한다²⁾.

귀속재산에 관한 연구는 그 규모면에서 가장 클 뿐만 아니라 설비의 대부분이 일본에서 수입된 것들이었다는 측면에서도 귀속재산으로서의 성격을 가장 분명하게 유지하고 있었던 대 규모 면방직공장들을 중심으로 할 때 보다 분명하게 연관성 문제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제하에서 설립된 대규모 면방직공장들이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로 대일교류가 재개되기 전까지로 연구기간을 한정한다. 그리고 각 공장들의 구체적 변화유형을 중심으로 몇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해 봄으로써 식민지시대와 한국공업화의 연관성 문제에 대한 연구기반을 형성하고자 한다.

기업들을 연구의 편의상 5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분석의 구체적인 대상은 郡是紡績
大邱工場, 大日本紡績 京城工場, 東洋紡績 仁川·京城工場, 吳羽紡績 大田工場, 朝鮮大和紡績 倉洞工場, 朝鮮棉花 木浦工場, 朝鮮紡織 釜山·大邱分工場, 朝鮮麻紡績 全州工場, 帝國製麻 仁川工場, 鐘淵紡績 光州·京城·春川工場, 金星紡織, 三礮紡織 등 12개 회사의 16개 공장이다.

본 연구는 각종 문헌들을 통한 연구와 동시에 각 개별기업의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이 각종 거시적 지표들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는데 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각 기업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社史나 社內資料, 證言 등을 통한 경영사적인 연구방법들을 통하여 실증적인 측면을 보강하였다.

본 연구는 제Ⅰ장에 이어, 제Ⅱ장에서는 일제하 식민지시대에 설립된 대규모 면방직공장의 설립과 발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Ⅲ장에서는 해방 이후 1961년까지의 귀속 면방직공장들의 운영과 불하, 전후복구 과정에서의 변화유형에 대하여 중요설비인 紡機와 織機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제Ⅳ장에서는 이상의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결론을 맺었다.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각 기업체들의 자본 소유구조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만 귀속재산 문제를 보다 더 분명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서문석, 「귀속 면방직기업의 변천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1997, pp. 63 참조).

2) 이 주제에 관한 연구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는 김기원, 「미군정기의 경제구조」, 푸른산, 1990; 이 대근, 「해방 후 귀속사업체의 실태와 그 처리과정」, 안병직 외, 「근대조선의 경제구조」, 비봉출판사, 1990; 이대근, 「정부수립 후 귀속사업체의 실태와 그 처리과정」, 안병직 외, 「근대조선공업화의 연구」, 일조각, 1993; 공체우, 「1950년대 한국의 자본가 연구」, 백산서당, 1993 등이 있다.

II. 일제하의 대규모 면방직공장의 설립과 발전

1. 대규모 면방직공장들의 설립 계기

일제하에 설립된 면방직공장들은 두 개의 계기를 중심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다. 그 첫째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1931년에 발발했던 滿洲事變이고 두번째 계기가 되는 것이 1937년 발발했던 中日戰爭이다.

먼저 첫번째 계기가 되는 만주사변을 기점으로 일본 내부의 여러 가지 사정과 대륙침략을 위한 병참물자 보급차원에서 일본인 자본들이 대거 조선에 몰려들어 대규모의 면방직공장들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두번째 계기가 되는 중일전쟁을 계기로 조선에 유입된 일본인 자본은 이전까지의 투자방식과는 다른 형태로 투자를 하였다. 즉 이 당시의 신규투자는 일본내의 설비들이 중국 대륙 침략과 미군의 폭격을 피하기 위하여 疏開되어 조선으로 옮겨지는 방식이었다.

만주사변을 계기로 설립된 공장들은 해방 이전에 이미 활발한 조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일전쟁을 계기로 해서 설립된 공장들은 일반적으로 해방 이전에는 본격적인 조업을 하지 못하였고, 해방 이후에나 기계설치가 완성되어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2. 1930年代 以前에 設立된 紡織工場

일본인 자본이 조선의 면방직업계에 진출하여 해방 이후까지 귀속 면방직공장으로 남은 것들 중에서 가장 먼저 설립된 공장은 1906년에 목포에 세워졌던 조선면화 목포공장이었다. 그러나 이 공장은 해방 당시에도 織機 86대만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여서 이후 설립되는 면방직 공장들의 근대적 대규모 설비와는 차이가 있었다.

최초로 조선에 세워진 근대적 대규모 면방직공장은 1917년에 세워진 朝鮮紡織 釜山工場이다. 三井系資本에 의해 설립된 이 회사는 이전의 소규모 설비와는 다른 대규모 설비인 力織機를 설치한 최초의 기계제공장으로서 1922년 1월에 조업을 시작하였는데, 1920년대에 설립되어 해방 때까지 존립했던 일본인 소유 대규모 면방직공장은 이 공장 이외에는 없었다. 당시의 조선방직 부산공장의 설비는 紡機가 15,200대였으며 직기는 608대였다³⁾.

3) 大韓紡織協會, 「紡協創立十周年 記念誌」, II部 會員工場編 - 1面의 朝鮮紡織의 沿革編 참조; 實業源, 「植民地期朝鮮棉作絲業의 展開構造」, 東京大學 博士學位論文, 1992, p. 104에는 朝鮮紡織의 「第六回營業報告書」를 참조하여 紡機 15,200臺와 織機 608臺로 조사되어 있다.

3. 1930年代 設立된 織紡織工場

만주사변 후 조선은 일본의 병참기지의 역할을 수행해야 했기 때문에 만주사변을 기점으로 하여 본격적으로 근대적인 대규모의 면방직공장들이 세워지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表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東洋紡績株式會社의 仁川工場과 京城工場이 세워졌고, 鐵淵紡績株式會社의 光州工場과 京城工場이 각각 세워졌다. 그리고 1930年代 末에는 大日本紡績株式會社 京城工場과 帝國製麻纖維株式會社 仁川工場이 설립되었다. 당시에 면공업이 급격하게 발전하게 된 이유는 군수의류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 가장 두드러진 이유였으며 이와 동시에 방직공업의 입지조건으로 당시 식민지하의 조선이 유리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었다⁴⁾.

〈表 1〉 1930年代 設立된 近代的 織紡織工場

會社名	設立日	設立地	設立當時設備	
			紡機(臺)	織機(臺)
東洋紡績(株) 仁川工場	1933. 12 (1934. 10)	仁川市 萬石洞	31,488	800
京城工場	1936. 12 (1937)	서울市 永登浦洞	40,53	1,440
鐵淵紡績(株) 光州工場	1935. 8 (1934. 9)	光州市 林洞	38,368 (35,000)	1,510 (1,000)
京城工場	1936. 10 (1935. 7)	서울, 永登浦, 文來洞	30,240	600
大日本紡績(株) 京城工場	1939. 4	서울, 永登浦, 堂山洞	0	417
帝國製麻纖維(株) 仁川工場	1939. 4	仁川市 鶴翼洞	7,388*	132

자료 : 大韓紡織協會, 「紡協創立十周年 記念誌」, I -7, II -21, 31, 41, 47, 107, 117면에서 작성.

주 : (1) 위의 자료에서 I부와 II부의 기록이 서로 차이가 있었다. ()안에 있는 것은 II부의 설립일 기록임.

(2) ‘*’는 麻紡績機를 가리킴.

(3) 鐵淵紡績의 설립 당시 설비 중 ()안의 수치는 曹辰源, 「植民地期朝鮮締約作轉業の展開構造」, 東京大學 博士學位論文, 1992, 104에서 재인용.

4) 織紡織工業은 생산제품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들, 즉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지 않아 저렴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던 식민지 조선이 유리한 곳이었으며, 엄청난 잠재수요를 가

4. 1940年代 設立된 紡織工場

중일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을 맞은 일본은 전시경제로의 재편과 중추적 산업의 被爆威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산업시설들을 자신들의 식민통치 지역 내로 이전하였다. 바로 이 과정에서 조선으로도 많은 설비들이 이전되었지만 이 설비들의 대부분은 그 당시에 설치·가동되지 못하고 해방 이후가 되어서야 설치되어 가동되기 시작했다.

당시 조선에 세워진 면방직공장들에 대한 설립 당시의 자료들이 미진한 관계로 해방 당시의 상황을 통하여 이 공장들을 살펴보면 위의 〈表 2〉와 같다.

〈표 2〉

中日戰爭以後 設立된 近代的 紡織工場

會社名	設立日	設立地	解放當時 設備			
			紡機(臺)		織機(臺)	
			設置	未設置	設置	未設置
都是紡績(株) 大邱工場	?	大邱市 七星洞	19,928	15,672	0	408
吳羽紡績(株) 大田工場	1942. 12	大田市 柳川洞	0	15,848*	0	0
朝鮮大和紡績(株) 倉洞工場	1942. 12	京畿, 양주, 倉洞里	0	0	150	0
朝鮮紡織(株) 大邱分工場	1941. 2	大邱市 砧山洞	?	?	?	?
朝鮮麻紡績(株) 全州工場	1942. 12	全州市 鎮北洞	0	5,700*	0	?
朝鮮紡織(株) 春川工場	1941. 2	春川 ?	0	?	0	?

자료 : 大韓紡織協會, 「紡協創立十周年 記念誌」, I-7, II-53, 59, 65, 91, 107, 118, 면에서 작성.

주 : (1) 조선방직 대구분공장은 1943년 12월 조업을 개시했다는 기록이 있지만 그 구체적 내용은 미상임.

(2) *는 해방 이후 40년대 후반에 설치된 것으로 보아 해방 시에 미설치된 것으로 추정.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都是紡績 大邱工場과 朝鮮大和紡績 倉洞工場, 朝鮮紡織 大邱分工場 만이 시설을 갖추었고 나머지 공장들은 단지 일본에 있던 설비들을 조선에 이전만 하

지고 있는 생활필수품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식민지로서 本國人에 대한 각종 특혜가 있었던 것도 중요한 이유들 중의 하나이다.

였을 뿐 설치도 하지 못한 채 해방이 되었다⁵⁾.

5. 解放當時 韓屬 紡織工場의 現況

1945년 8월 해방 당시 우리나라 면방직공장들의 상황은 일제시기의 면방직공장들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결산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당시 존재했던 대규모 면방직공장은 조선인 소유 2개 공장(京城紡織, 松高實業)과 일본인 소유의 10개 공장⁶⁾ 등 모두 12개였다. 해방 당시 면방직공장들의 상황을 설비를 중심으로 나타내 보면 아래의 <表 3>과 같다.

<표 3>

解 放 時 時 的 工 場 別 施 設 狀 況 表

工 場 別	紡 織 機 (錘)			織 布 機 (臺)		
	設 置 施 設	未 設 置 施 設	總設備中 各工場設備의 比重(%)	設 置 施 設	未 設 置 施 設	總設備中 各工場設備의 比重(%)
郡是紡織(大邱)	19,928	15,672	10.5	0	408	4.2
大日本紡(京城)	0	0	0.0	417	0	4.3
大和紡織(倉洞)	0	0	0.0	150	0	1.5
東洋紡織(京城)	45,328	0	13.4	1,440	231	17.3
(仁川)	35,088	0	10.5	1,292	0	13.4
朝鮮紡織(釜山)	40,000	10,304	14.9	1,264	49	13.6
朝鮮棉花(木浦)	0	0	0.0	86	0	0.8
朝鮮製麻(仁川)	4,480	0	1.3	0	0	0.0
鐘淵紡織(光州)	35,104	3,264	11.3	1,440	70	15.7
(京城)	48,320	1,400	14.7	1,525	0	15.8
所屬不明確	0	48,224	8.9	0	211	2.1
小 計	228,248	78,864	91.0	7,614	969	89.3
京城紡織(京城)	25,600	4,600	8.9	896	0	9.3
松高實業(開城)	0	0	0.0	130	0	1.3
小 計	25,600	4,600	0.0	1,026	0	10.6
合 計	253,848	83,464	100.0	8,640	969	100.0
總 合 計	337,312		100.0	9,609		100.0

자료 : 大韓紡織協會, 「紡協創立十周年 記念誌」, 1957, I-12~13면에서 편집 재작성.

주 : (1) 鐘淵紡織(光州, 京城) 및 朝鮮紡織(釜山)에 각각 자가발전 시설을 보유하고 있었음.

- (2) 본 표에서 미설치 시설이라 함은 설치중에 있는 설비를 포함함.
- (3) 鄭是紡織 大邱工場의 설비는 해방 직후 화재로 전소되었음.
- (4) 이외에도 吳羽紡織 大田工場, 朝鮮紡織 大邱分工場, 朝鮮麻紡績 全州工場, 鐘淵紡績 春川工場의 統計는 원 자료에 빠져 있음.
- (5) 京城紡織과 松高實業은 조선인 소유공장이므로 편집과정에서 분리하였으며, 소속불 명확한 설비는 일본인 소유로 간주하였다.

당시 12개 회사의 일본인 소유 14개의 대규모 면방직공장 중에서 위의〈표 3〉에서 드러나고 있는 바와 같이 8개 회사의 10개 공장과 조선인 소유 2개 공장에 대한 설비규모가 드러났다. 총 337,312臺의 紡機 중에서 91%에 해당하는 307,112臺(미설치설비 포함)가 귀속면방직공장에서 보유했던 紡機이며, 총 9,609대 중에서 89.3%에 해당하는 8,583대(미설치설비 포함)의 織機가 귀속면방직공장에서 보유했던 織機"였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

반면에 각 공장에 보유설비로 드러난 설비 이외에 역 근처에 약적되어 있어서 소속이 불명확했던 설비도 존재하였으며, 이 설비들 중에는 그 규모가 정확히 파악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IV. 귀속 면방직공장의 변화유형⁵⁾

식민지시기에 일본인 소유로 운영되던 면방직공장들은 해방 후에 美軍政에 의해 故產企業으로 관리되면서 그 중 일부는 민간인에게 불하되기 시작하였다.

해방 이후 귀속 면방직공장들은 당시의 정치적·사회적 혼란으로 인해 조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관리체계의 문제점들로 인해 생산설비들 중 일부가 유실되기도 하는 등 여러 차례 변화를 겪었다.

-
- 5) 大韓紡織協會, 「紡協創立十周年 記念誌」, 1957, I-8면.
 - 6) 大韓紡織協會, 「紡協創立十周年 記念誌」, 1957, 1면: 그러나 이러한 면방직협회의 기록과는 달리 해방 이후 1961년까지 운영된 적이 있는 공장을 여러 자료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일본인 소유의 회사는 12개 회사의 14개 공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吳羽紡織 大田工場, 朝鮮紡織 大邱分工場, 朝鮮麻紡績 全州工場, 鐘淵紡績 春川工場 등의 통계가 이 자료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吳羽紡織 大田工場과 鐘淵紡績 春川工場은 해방 이후에나 설비를 설치하고 조업을 할 수 있었으며, 朝鮮麻紡績 全州工場은 桑毛紡績에, 朝鮮紡織 大邱分工場은 매리아쓰방직에 속했던 것으로 보인다.
 - 7) 이 자료의 본문에는 미설치 직기가 435대로 표시되어 〈표 3〉보다 534대가 적은 9,075臺의 직기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大韓紡織協會, 「紡協創立十周年 記念誌」, 1957, p. I-12).
 - 8) 대한방직협회, 「섬유연보」, 각 호: _____, 「방협창립십주년기념지」, 1957: _____, 「방협20년사」, 1967 참조.

1947년에 들어서면서 많은 공장들이 조업을 시작하였고, 설비들도 차츰 재정비되어 해방 이전의 상황으로까지 호전되었지만 1950년 한국전쟁으로 귀속 면방직업체는 커다란 피해를 입었다. 일부 공장들은 그 물적 기반을 완전히 상실한 채 청산되었던 반면에 일부의 기업들은 1950년대 내내 전쟁의 피해를 극복하고 파괴된 설비들을 재생하면서 부흥계획들을 진행했던 공장들도 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12개 귀속 면방직기업체의 16개 공장⁹⁾에 대하여 5개의 유형으로 나뉘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일제하 일본인 소유 공장들의 해방 직후의 現況과 管理, 拂下過程을 살펴본다.

둘째, 해방 직후의 혼란, 戰災와 復舊, 援助受惠 과정에서 중요설비인 紡機와 織機를 중심으로 설비의 변화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이를 통해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통한 이른 바 '物的 遺產'인 귀속기업체들의 존재형태와 변화유형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해방 이후에 대상 귀속공장들이 그 관리조직과 불하과정에서의 变動으로 말미암아 여러 차례 공장의 명칭이 변동되어 혼란이 초래될 수가 있다. 따라서 각 공장의 변동과정을 일제시대부터 불하 당시까지를 설비의 변동을 중심으로 나타내 보면 아래의 <表 4>와 같다.

1. 第1類型－拂下以前 解體된 形態

1) 錦淵紡織株式會社 春川工場

(1) 管理와 拂下

이 공장은 방직관계사업체 통합운영 방침에 따라 1949년 9월 錦淵紡織 京城工場이 속해 있던 당시의 高麗紡織公社에 합병되었다. 그러나 1950년 4월의 방화로 일부 소실되고 한국전쟁으로 인해 완전히 소실되면서 공장은 소멸되었다.

(2) 設備

1947년에 5,136주, 1949년에 428주의 방기를 설치하는데 당시 신규설비의 도입이 없었던 상황으로 보아 이 설비는 해방 이전에 들여왔다가 설치되지 못했던 설비로 추정된다. 증설로 인해 5,564주였던 이 공장의 방기는 1949년 5월의 화재로 인해 2,140주만이 남아 한국전쟁을 맞게 되었다. 해방 당시에 직포설비를 보유하지 못했던 이 공장에서는 1947년에 織機

9) 본 연구의 대상시기에 운영되었던 면방직기업들 중에는 해방 당시에는 없었지만 이후 귀속설비들을 불하받아 등장한 기업도 있으며, 귀속기업체로부터 일부 설비들을 인수받아 등장한 기업들도 있다. 전자의 대표적인 경우가 金星紡織으로 볼 수 있으며 후자의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피난지에서 疏開된 設備로 설립되었다가 다시 본래의 기업으로 흡수된 大東紡織, 東亞紡織, 亞洲紡織 등이 있다.

<표 4>

歸屬 織紡織企業體의 名稱 變動 狀況

日帝下의 工場名	解放 以後 拆下以前까지의 工場名	拆下時의 工場名
都是紡績 大邱工場	大邱紡績公社→朝鮮紡織 大邱工場 (49.11)→大韓紡織株式會社(55.5)	大韓紡織株式會社(55.5)
大日本紡績 京城工場	大韓紡織公社(46.6) →全南紡織公社 서울工場(49.9)	韓永紡織株式會社(53.8)
東洋紡績 仁川工場	東洋紡績公社(45.10)→第一紡績公 社(47.10)→東洋紡績公社(49.9)	東洋紡織株式會社(55.8)
東洋紡績 京城工場	東洋紡績公社 京城工場(45.10) →第一紡績公社(49.9)	* 1952年 3月 疏開動產의 拆 下(金興培)後 消滅
吳羽紡績 大田工場	大田紡織株式會社(51.10)	大田紡織株式會社(53.3)
朝鮮大和紡績 倉洞工場	大亞紡織株式會社(?)	大亞紡織株式會社 (52.4)~54年 消滅
朝鮮棉花 木浦工場	大韓綿業公社(45)	大韓綿業株式會社
朝鮮紡織 釜山工場	韓一實業公社(46.5)→朝鮮紡織公社 (47.5)→朝鮮紡織株式會社(48.4)	朝鮮紡織工業株式會社 (55. 10)
朝鮮紡織 大邱分工場	大邱麥리야쓰公社(49.4)	內外紡績株式會社(55.9)
朝鮮麻紡績 全州工場	朝鮮實業公社 全州工場(48.8)→朝鮮 絹毛紡織公社(48.8)→全州紡織株式 會社(?)	全州紡織株式會社(51.12)
帝國製麻 仁川工場	東洋紡績公社 鶴翼工場(49.10)	興韓紡織株式會社(53.2)
鐘淵紡績 光州工場	朝鮮實業公社 光州工場(45.10) →全南紡織公社 光州工場	全南紡織株式會社(53.2)
鐘淵紡績 京城工場	朝鮮實業公社 서울工場(45.10) →高麗紡織公社(47.7)	泰昌紡織株式會社(55.11)
鐘淵紡績 春川工場	高麗紡織公社 春川工場(47. 7)	* 韓國戰爭의 피해로 인해 消滅

주 : () 안은 年月을 나타냄.

자료 : 大韓紡織協會, 「紡協創立 十周年 記念誌」, 1957, Ⅲ부 會員工場 編; 大韓紡織協會,
「纖維年報」, 各 年度에서 작성.

200대를 보유하게 되었는데 이 설비는 일제시대에 들어왔던 적산설비로 추정된다.

그러나 한국전쟁 이후의 이 공장에 대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공장에 있었던 5,000여주의 방기와 200대의 직기는 한국전쟁으로 소멸된 것으로 보인다.

2. 第2類型 - 拂下以後 韓國戰爭의 損害로 消滅된 形態

1) 東洋紡績株式會社 京城工場

(1) 管理와 拂下

1937년에 설립되었던 東洋紡績 京城工場은 해방당시에 45,328추의 방기와 1,440대의 직기를 보유하고 있었던 대규모 공장이었다. 이러한 설비규모는 朝鮮紡織 釜山工場, 鐵源紡績 京城工場과 더불어 해방당시 40,000추 이상의 대규모 공장을 중의 하나로 꼽히는 수준이었다.

이 공장은 1945년 10월 미군정의 관리하에 놓이게 되면서 東洋紡績公社 京城工場으로 운영되었는데 이 시기에 崔光源이 공장장으로 취임하였다. 1949년에 이 공장은 東洋紡績公社에서 분리되어 第一紡績公社로 발족하면서 毛紡織을 하고 있던 안양공장을 통합운영하였다.

그러나 한국전쟁으로 공장의 全施設이 焼失되었으며, 1952년에도 일부 疏開動產이 386萬圓에 불려되었다. 1953년 11월에는 8,100萬圓에 金興培가 공장을 불하받았으나 운영하지 못하고, 1954년에 방직협회를 탈퇴하는 것을 계기로 이 공장은 사라지고 말았다.

(2) 設備

이 공장이 보유하고 있던 45,328추의 방기는 1950년까지 변동이 없었으며, 이 설비 모두가 운전가능했었던 것으로 보아 한국전쟁 이전까지 적산설비가 거의 온전히 보존 운영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설비는 한국전쟁으로 전부 소실되었으며 그 중 일부가 疏開된 뒤 불하되었으나 특별한 역할을 하지는 못했다.

이 공장이 직포부문에 사용하던 직기는 해방 직후에 1,440추였다가 1947년에 통계가 재개되었을 때 300대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해방 직후에 파손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1950년 한국전쟁 전까지 이 공장에서는 일제하의 적산직기 1,140대를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지만 이 설비들은 한국전쟁으로全破되었으며 이후 재생되지 못하고 소멸되었다.

2) 朝鮮大和紡績株式會社 倉洞工場

(1) 管理와 拂下

朝鮮大和紡績 倉洞工場은 1942년에 설립되었으나 해방 직후 織機 150대만을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보아 해방 이전까지 직포부문에서만 조업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 공장은 회사명을 大亞紡織株式會社로 고치고 사장에 安應鎮이 취임하였다. 그러나 한국전쟁으로 말미암아 전 시설을 소실하고, 1952년 4월 일부 잔여시설을 疏開하여 南下하였다. 그리고 그 해 6월 잔여시설 일체를 李熙洙가 불하 받았으나, 이 회사는 이후 전혀 기록에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업이 진행되지는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부 설비들은 해체되어 판

매되었거나 폐기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기에 외부로부터 설비의 유입이 없는 상황에서, 일부 공장들에서 설비의 증가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일부 불하설비가 해체되어 거래된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2) 設備

이 공장은 직기만을 보유했던 관계로 방직부문의 생산은 전혀 없다. 다만 직포부문에서 해방 직후 織機 150대를 보유하고 있다가 1947년 2대가 줄어 148대로 한국전쟁 직전까지 조업을 하였다.

그러나 해방 당시 운전가능주의 수치는 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運轉臺는 20~50여대 수준에 지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실제 조업은 정상화되었다고 보기是很 어렵다.

3) 呉羽紡績株式會社 大田工場

(1) 管理와 捕下

1942년 대전에 설립되었던 이 공장은 紡機나 織機를 설치하지 못한 채로 해방을 맞았다. 1946년 8월에 가서야 紡機가 설치되면서 본격적으로 조업이 시작되었다.

1947년 8월에 金鍾奎가 관리인으로 임명되었고, 1949년 11월이 되어서야 설비의 설치를 끝내고 실제 조업을 시작하였다.

이 공장은 1951년 12億5,000萬圓에 이석오에게 공매불하되었으며 1953년 3월에 자본금 500萬圓의 주식회사로 출범하였다. 이 때 鄭載鑑가 사장으로 취임하였고, 1953년 UNKRA 자금 941,967달러로 織機 18,848주를 배정받아 1954년부터는 본격적인 조업을 재개하였다.

(2) 設備

해방 당시에 이미 설치되어 운영되던 설비가 존재하지 않았던 이 공장에는 1947년에 5,376주, 1948년에 5,336주, 1949년에 5,136주가 설치됨으로써 한국전쟁 이전까지 총 15,848주의 紡機를 보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전쟁으로 保有紡機 전부를 燐失한 이 공장은 1953년 6월에 UNKRA원조로 도입된 설비 중 18,848주의 新規紡機를 배정받아 설치하였다. 여기에 1953년도 정부보유달러에 의하여 도입된 설비 중 5,376주의 紡機를 배정받아 총 23,856주의 紡機를 보유하게 되었다.

1956년에는 동아방직, 경성방직, 태창방직 등과 함께 당시 도입된 총 63,600주의 신규방기 중에서 5,600주의 紡機를 배정받아 29,456주의 紡機를 보유하였으며 이후 1961년까지 설비의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대전방직은 일제하의 吳羽紡績으로부터 그 연원을 둘 수는 있지만 전후 조업을 재개하는데 사용된 설비는 한국전쟁을 통해 과손된 설비를 재생한 것이 아니라 1953년부터 수입된 신규방기를 배정받아 조업을 하였으므로 직산설비와의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며, 吳羽紡

績이 소유하고 있던 15,848추는 한국전쟁을 통해 청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직포부문에 있어서도 1957년에 1954~1955년 UNKRA자금 275萬달러를 통해 수입된 신규직기 2,031대 중에서 배정받은 600대가 이 공장에 설치된 첫 직기였기 때문에 적산설비와는 무관한 것이었다.¹⁰⁾

4) 朝鮮棉花株式會社 木浦工場

(1) 管理와 拂下

조선면화 목포공장은 1906년에 織綿工場으로 설립되었는데 해방 직후에도 織機 86대만을 가지고 있던 소규모 공장이었다.

미군정 아래에서 羅達洙가 지배인으로 취임하였고, 회사명이 大韓綿業公社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 회사는 한국전쟁으로 인해 全燒毀으로써 그 이후 운영되지 못하였다.

(2) 設備

해방 이후에 공장은 86대의 직기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1947년에 72대의 직기를 증설함으로써 158대의 직기를 보유하였다. 그러나 한국전쟁 이후에 생산이 재개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설비들은 파손되어 소멸한 것으로 추정된다.

5) 帝國製麻株式會社 仁川工場

(1) 管理와 拂下

이 공장은 1939년에 설립되어 1942년 11월에 마방직기 7,388추, 면방직기 10,856추, 織機 132대로 조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해방 당시의 설비상황을 보면 紡機 4,480추만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해방 이후 조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미 손실을 입었다고 추정된다.

1945년 미군정에 접수된 이 공장에는 鄭奎成이 관리인으로 임명되었다가 1948년 1월에는 楊宇朝가 이사장으로 임명되었다. 다음 해인 1949년 2월 신학균이 이사장으로 취임하였고, 그 해 10월에는 정부의 방적관련 사업체 통합 운영방침에 의해 東洋紡績公社 鶴翼工場으로 통합되었다. 그러나 이 공장은 한국전쟁으로 전부 소실되었고, 1952년 9월에 종업원 대표인 張龍雲 명의로 2,821萬圓에 불하되었다.

1953년에 다시 조업이 시작되어 그 해 2월에는 公稱資本金 5천만원으로 興韓紡績株式會社로 발족하였고, 사장에 李宗鉉이 취임하였다가 1960년에 取締役社長에 박홍식이 취임하였다.

10) 大韓紡織協會, 「織維年報」, 1958년, 국내통재편, 3면 참조.

방적부문에서 原絲의 생산은 1957년, 즉 織機 600臺가 도입된 직후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오직 賣絲만을 생산한 것으로 보아 그 이전에는 공장 내에서 직포부문의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2) 設備

1947년에 이 공장은 4,480주 의 紡機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한국전쟁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소실되고 말았다.

1954년에 10,368주 의 紡機를 보유하게 되었는데, 이 紡機는 1953년 정부보유달러 591만달러에 의해 들여온 新規紡機 109,568주 중 일부이다. 따라서 흥한방직 인천공장이 한국전쟁이 전에 가지고 있던 방기 4,480주는 재생되지 못하고 청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織機는 1954년에 220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해방 이후 처음 보유한 직기였다. 그러나 이 시기까지 외국으로부터의 織機 수입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이 직기는 모두 타 회사로부터 구입한 직기이거나 재생직기로 추정된다.

3. 第3類型－拂下 後 統廢合된 形態

1) 大日本紡績株式會社 京城工場

(1) 管理와 拂下

1939년에 서울 영동포 당산동에 설립되었던 大日本紡績株式會社 京城工場은 해방이 될 때 까지 그다지 활발한 운영을 하지 못하였다. 설립당시에는 주로 가공시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체제였는데, 1945년 7월에 紡織工場을併設하였다.

1945년 10월에 미군정에 접수된 이 공장은 미군정당국에 의해 1946년 회사명이 大韓紡織公社로 바뀌고 池善吉이 관리인으로 취임하였는데, 이 시기부터 설비들을 재정비하여 공장을 가동하였다. 그 후 1949년의 방직관련사업체 통합 운영방침에 의하여 全南紡織公社 서울공장으로 통합운영되었다.

이 공장은 한국전쟁으로 인해 완전히 파손되었으며, 1952년 3월에 5,399萬圓에 申鈞均에게 불하되었다. 1953년 8월에는 韓永紡織株式會社로 社名을 바꾸고 代表取締役 社長에 金奎성이 취임하였으며, 1955년에는 李漢垣으로 교체되어 1961년 당시까지 대표취체역을 맡았다.

(2) 設備

해방당시에는 없었던 紡機가 1947년에 8,190錘가 설치되었고, 1948년에는 10錘, 1949년에는 456錘, 1950년에는 2,344錘가 새로이 설치됨으로써 총 11,000錘의 설비를 갖추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일제하의 대규모 방직회사들이 10,000주 단위로 건설되었던 것을 볼 때 이 설비들은 일제말기에 들여와 미처 설치되지 못하고 있다가 이 시기에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설비는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완전히 소실되고 말았다. 1953년 6월에 재생방기

2,391주로 조업을 개시한 후, 1954년과 1955년 중에 재생방기 3,097주를 정비하여 1955년 말에는 5,936주가 되었다. 이 시기에 448주의 신규방기를 배정받았던 것으로 보아 실제 재생방기는 5,936주에서 448주를 뺀 5,488주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1954년에는 그 해 UNKRA자금과 정부보유달러에 의해 165,008주의 紡機가 수입되었는데 이 중에서 한영방직주식회사가 448대를 배정받았다. 그 결과 1954년에는 5,936주의 紡機를 보유하였다. 그리고 1958년에 再生紡機 352대를 추가 정비함으로써 총 6,288주가 되었다. 이중에서 448주를 뺀 5,840주는 일제하의 11,000주 중에서 재생한 紡機이다.

織機는 해방 당시에 417대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해방 이후 정비를 통하여 한국전쟁 직전에는 413대를 보유하였다. 이 직기는 한국전쟁 전까지 계속 보전되었으나 한국전쟁으로 인해 완전히 파손되어 1961년까지 織機는 전혀 보유하지 못했다. 따라서 大日本紡績이 남기고 간 織機 417대는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완전히 망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2) 鐘淵紡績株式會社 京城工場

(1) 管理와 拂下

1935년에 설립된 이 공장은 1936년 10월에 조업을 시작하였다. 해방 당시의 설비현황을 보면 紡機가 48,320주, 織機 1,525대를 보유했고, 미설치 紡機도 1,400주나 보유하고 있어 해방당시의 현황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공장이었다.

1945년 미군정이 접수하여 朝鮮實業公社 奉下 서울工場으로 운영하였다. 사장에 金成浩가 취임하여 1946년 3월부터 조업을 재개하였다. 그해 6월 미군정은 조선실업공사를 해체하고 이 공장을 미군정 방직공장 운영부 감독하에 영등포공장으로 발족시키고 관리인에 金學洙를 임명하였다.

그러나 1947년 7월에 방직공장 운영부가 해체되고 광주공장, 전주공장, 춘천공장, 대전공장, 영등포공장 등의 5개 공장이 통합되어 고려방직공사로 개칭되면서 김학수가 이사장에 선임되었다.

1948년 6월에 고려방직공사로 독립하여 김학수가 이사장에 다시 선임되었다가 12월에 洪貞模로 교체되었다. 1949년 방직관계사업체 통합운영 방침에 따라 춘천공장을 병합하고 춘천공장에 織機 176대를 설치하였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춘천공장은 1950년의 방화로 완전 소실되었다.

이어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49,720주의 紡機와 1,525대의 織機 전 설비와 일부 가공시설이 피해를 입었다. 1952년 5월 이 공장의 紡機 10,400주와 織機 100대의 疏開動產이 大東紡織株式會社에 1,450萬圓에 볼하되었다¹¹⁾.

1953년부터 다시 조업이 재개되었으며 이사장에 玄權이 취임하였다가 다음 해인 1954년 3

월에 다시 洪貞模로 교체되었다.

1955년 3월에 泰昌紡織株式會社가 고려방직공사를 임대하기로 계약하고 4월부터 건설공사에 착수하였다. 그 해 11월에는 이 공장이 태창방직주식회사에 인수되었으며, 1956년 1월에 태창방직주식회사에 1億7千萬圓에 볼하되었다.

(2) 設備

해방 당시의 이 공장의 방직설비는 48,320주였으며 여기에 1,400주의 미설치 紡機가 있었다. 1947년에 이 설비가 설치되어서 한국전쟁 직전까지 49,720주의 紡機를 보유하였다.

그러나 1949년에 들어서면 운전가능주가 전체설비의 69%에 해당하는 34,141주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설비들의 노후도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한국전쟁으로 말미암아 설비 전체가 파손되어 1955년까지 전혀 설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가 1956년 3월에 新規紡機 50,000臺와 舊紡機 8,216주를 다시 보유하게 되었다.

이후 계속적으로 방직설비가 정비되었지만 1961년 당시 53,216주의 紡機 중에서 신규방기 50,000주를 제외하면 舊設備었던 再生紡機는 3,216주에 불과하였다. 즉 전체 방직설비의 약 6%만이 1961년까지 이 공장이 보유하고 있던 舊設備였다.

해방 당시에 보유하고 있었던 織機 1,525臺는 한국전쟁 전까지 그대로 보유하였지만 運轉可能臺數는 계속 줄어들었다. 기계의 노후의 문제와 각종 부속품의 공급단절이 그 이유였다.

1956년에는 정부보유달러 550만달러에 의하여 新織機 1,200대가 설치되었는데 이 직기는 1958년에 紗織機로 개체되었고, 이후에는 800대의 織機만을 보유하였다.

따라서 이 공장이 보유하고 있었던 해방 이전의 1,525주의 직기는 직접적인 재생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한국전쟁으로 인해 청산된 것으로 보인다.

3) 東洋紡績株式會社 仁川工場

(1) 管理와 拂下

東洋紡績 仁川工場은 1934년 10월에 설립되어 운영되다가 해방이 되자 적산기업으로 분류되어 미군정의 관리하에 들어갔다. 해방 당시의 이 공장의 설비는 紡機 35,088주와 織機 1,292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미군정은 이 공장을 1945년 10월 東洋紡績公社로 발족시키고, 崔楠을 관리인으로 임명하여 공장부지와 대지 26,808평, 본 공장 건물 외 12,430평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1946년에 徐廷翼이 인천공장으로 취임하였고 10월에는 이사제가 실시되었는데 여기에서 서정익이 담당이사가 되었다.

이 공장은 1947년 10월에 第一紡績公社로 통합되었다가, 1949년 9월 방직관계사업체 통합

11) 서문석, 앞의 논문, p. 162 참조.

분리운영방침에 따라 제일방적공사로부터 분리되어 다시 東洋紡織公社로 이름을 바꾸었다. 또한 구 朝鮮製麻紡織株式會社 仁川工場을 鐵鋼工場으로 개칭하여 흡수·합병하였다.

이 공장의 설비 4,608주는 전쟁 중에 1億 6,600萬圓에 불하되었고, 1955년 2월에는 공장의 고정시설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그 해 8월에 서정익이 공장의 고정시설을 25億圓에 불하받으면서 자본금 1億으로 東洋紡織株式會社가 새로이 발족되었다.

(2) 設備

해방 당시 이 공장이 가지고 있던 35,088주의 紡機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1950년 한국전쟁으로 설비수가 31,388주로 줄어들고 운전가능주는 26,016주로 감소하였다. 년말 방적설비는 20,088주로 되어 있으나 이미 운전가능주는 없었으며, 紡機 15,000주와 건물 1,800평이 소실되는 피해를 보았다.

1950년 11월에 4,608주를 제주도로 소개하였으며, 이 설비는 1951년 1億 6,600萬圓에 불하되어 釜山市 釜岩洞에 자본금 5億圓의 東亞紡織株式會社의 기간설비가 되었다. 이 공장은 여러 자료에서 확인된 대로 동양방적 인천공장이 피난시기에 부산에 세웠던 회사였다¹²⁾.

1952년에 29,712주의 紡機가 설치되었지만 운전가능주는 25,424주에 불과하였으며, 1954년에 가서야 30,096주의 설비와 30,064주의 운전가능주를 보유하였다.

1956년에 영국제 방적기 5,600대가 도입되었는데 이 설비의 도입 이전에는 모든 설비가 일제하의 적산설비였다는 것을 감안할 때 1955년의 30,096주의 紡機가 이 시기까지 남았던 적산설비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1956년에 5,600주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체 운전가능주는 30,096주에서 34,129주로 늘어난 것으로 보아, 이 시기에 노후설비의 일부, 즉 적산설비 1,567대는 개체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1957년에 신규방기가 다시 4,300주가 증설이 되었는데 반해 설비주는 39,016주로 증가된 것으로 보아 980대의 적산설비가 다시 감소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1959년에 39,696대, 1960년에는 40,016대로 설비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이 공장의 통계자료에 나타나는 1961년의 9,984대 新規紡機의 증설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1954년에 384주, 1956년의 5,600주, 1957년의 4,300주, 1958년의 9,984대의 신규설비가 들어옴으로써 20,268대의 신규방적기가 들어온 셈이 된다. 따라서 1961년의 총설비 40,016대의 방적설비 중에서 20,268대를 뺀 나머지 19,748주의 설비는 1961년까지 동양방직주식회사에서 보유하였던 구형방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직기는 1,292대였는데 이 중에서 1947년에 鐵機 12대가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해방 이전의 상태를 거의 유지하고 있었다.

12) 東一紡織株式會社, 「東一紡織社史」, 1982, 65~66면 참조.

1956년에 일본제 광폭직기 60대를 도입¹³⁾하였다고 되어 있지만 통계상으로는 1954년의 1,234대에서 1955년 1,316대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82대가 증설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1961년까지 이 설비를 제외하고는 일제하의 적산설비 1,240여대 정도가 남아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朝鮮蠶絲績株式會社 全州工場

(1) 管理와 拂下

1942년에 설립된 공장은 해방 당시의 현황에 대해서는 특별히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1946년에 들어서야 絹毛絲績을 개시한다는 정도가 알려져 있다.

이 공장은 미군정에 의해 1946년 2월 朝鮮實業公社 拿下 全州工場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관리인에는 金顯玉이 취임하였으며 그 해 11월에 조업을 개시했다.

1948년 8월 조선실업공사와 분리하여 全州絹毛絲織公社로 이름을 바꾼 이 공장은 1950년 3월에 金大熙가 이사장에 취임을 하였다.

한국전쟁을 맞아 이 공장의 일부 설비는 피해를 보았지만 다른 공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피해를 보았다. 1951년 김대희 외 2명에게 우선권이 인정되어 불하되었으며 1952년 4월에 조업을 재개하였다.

이후 1954년 재단법인 중앙학원이 전주방직주식회사의 全柱式을 인수하고 직영공장으로 운영한 이후부터는 梳毛絲部門으로 조업을 집중하여 1958년과 1959년에 梳毛精紡機를 각각 2,000주, 2,500주를 설치하여 운전하였다.

(2) 設備

1947년에 보유하고 있던 5,700주의 紡機는 일제하에서 형성된 것이었다. 한국전쟁으로 조업이 완전 중단되었지만 1954년의 통계에 전쟁이전의 설비들이 그대로 있는 것으로 보아 전쟁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

직포부문은 1952년에 보유 중이던 織機 84대 중에서 56대를 설치하고 조업을 시작하였다. 이 당시에는 어떠한 직기도 수입되지 않았던 시기이므로 공장에 해방 이전부터 미설치 상태로 남아 있던 직기이거나 다른 공장으로부터 받은 적산설비임에 틀림없다.

5) 鐘淵絲績株式會社 光州工場

(1) 管理와 拂下

1934년에 설립되어 1935년 9월에 紡機 38,368주와 織機 1,510대, 그리고 발전기 1대를 갖춘 대규모 공장으로 출발하였다.

13) 大韓紡織協會, 「紡協創立十周年記念誌」, I-61면 참조.

해방 당시 35,104주의 紡機와 1,440주의 織機를 보유하는 한편 미설치 紡機가 3,264주, 미설치 직기가 70대에 이르렀다. 그리고 1945년 10월 미군정에 접수되어 朝鮮實業公社 傘下 光州工場으로 운영되다가 그 11월에 金瀧楠이 관리인으로 임명되었다.

1948년 10월 정부지시에 의해 全南紡織公社 光州工場으로 분리되어 金瀧楠이 이사장으로 취임하였고, 大韓紡績公社 永登浦工場(舊 大日本紡績 京城工場)을 통합운영하였다.

이 공장은 1950년 한국전쟁으로 말미암아 紡機 38,368주와 織機 1,510대, 건평 10,431평의 건물 전체가 피해를 보았다. 1951년 11월 60億5,000萬圓에 金瀧楠에게 불하된 후, 1952년에 大韓紡績公社 永登浦工場을 분리하고, 1953년 2월에 자본금 60億圓의 주식회사로 변경하여 金瀧楠이 사장으로 취임하였다.

(2) 設備

1934년 설립 때부터 보유하고 있던 紡機 38,368주를 1945년 해방 당시까지 보유하였다. 그러나 이 紡機는 한국전쟁 이전에 이미 서서히 그 노후성을 보이고 있었다. 즉 1948년 운전 가능수가 36,440주였던 것이 1949년이 되면 28,860주로, 1950년에는 23,645주로 급격히 감소하다가 한국전쟁으로 말미암아 완전 소실되었다¹⁴⁾.

1951년에 5,000주의 紡機를 재생하였으며, 1952년에는 1,800주를, 1953년에는 10,240주를 각각 재생하였다¹⁵⁾. 1954년에는 1953년 UNKRA자금으로 신규방기 18,480주를 배정받아 설치·운영함으로써 신규방기를 보유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해 7월에 紡機 4,000주를 다시 재생하고, 신규방기 4,400주를 배정받아 설치·운영함으로써 총 43,920주의 紡機를 보유하게 되었다.

1958년에는 精紡機 10,000錘를 증설하여 총 53,920주의 紡機를 보유하게 되었는데, 이 중 32,880주의 신규방기를 제외한 21,040주의 재생방기를 보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설립 때부터 보유하고 있던 織機 1,510대를 해방 이후까지 계속 운영하였지만 설비의 노후화로 인해 운전가능 대수는 1949년에 1,203대까지 감소하였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설비의 대부분이 파괴된 상황 속에서 1952년 8월과 12월에 각각 88대, 96대의 직기를 재생하여 총 184대의 직기를 보유하였다.

1954년에 220대, 1955년에 200대의 재생직기를 정비하였고, 1955년에 신규직기 625대를

14) 1951년 창업 당시 재생이 완전히 불가능한 설비가 “정방시설 32대, 정방기 10대, 후방시설 4개, 織布 준비시설 6대, 織機 317대, 타울기 6대, 전동기 511대, 공장건물, 기타설비 등”으로 조사되어 있다(『全紡三十年』, 全紡株式會社, 1984, p. 191).

15) 당시 신규설비 중 1954년의 18,480주는 영국 Platt사로부터, 4,400주는 일본의 O.K.K.사로부터, 58년의 10,000주는 일본의 壱和로부터 수입한 설비였다(전방주식회사, 『전방삼십년』, 1984, pp. 120~125 참조).

설치함으로써 1955년에 1,288대로 직기가 증가하였다¹⁶⁾. 1956년에 다시 재생직기 112대를 추가하였으며 1958년 10대의 신규직기의 중설이 있었다¹⁷⁾.

따라서 전남방직의 1960년 織機 1,351대 중에서 신규직기 635대를 제외한 716대의 적산설비가 1961년까지 남아 있었던 것이 드러났다.

4. 第4類型－拂下 以後 拂下以前의 狀態가 維持된 形態

1) 鄭是紡績株式會社 大邱工場

(1) 管理와 拂下

鄭是紡績株式會社는 해방 이후 미군정에 故產으로 접수되어 관리되었다. 공장명이 大邱紡績公社로 개칭되었다가 1949년 방직관계사업체 통합분리운영방침에 따라 朝鮮紡織에 통합되어 朝鮮紡織 大邱工場으로 운영되었다.

이 공장은 조선방직 부산공장, 삼호방직 대구공장 등과 더불어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은 공장 중의 하나이다. 1955년 5월에 大韓紡織株式會社가 朝鮮紡織으로부터 이 공장을 임대하였다가, 그 해 8월 정부사정가격 7億圓으로 薛卿東에게 불하되었다.

(2) 設備

일본인 소유였던 鄭是紡績 大邱工場은 해방 당시 설치되었던 織機 19,928주와 미설치방기 15,672주가 있었다. 그러나 직기는 미설치된 것만 408대가 있었다.

이 설비들은 해방 직후 화재로 全燒되었지만 불타버린 설비를 재정비하여 1947년에는 이 설비를 가지고 조업을 재개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해방 당시의 설치설비규모로 볼 때 이 공장은 당시의 대규모 공장들의 41%~56%에 이르던 설비규모였지만 화재를 겪은 후 설비들을 재정비하여 조업이 진행되었을 당시에는 약 10% 수준으로 하락하였던 것이다¹⁸⁾.

해방 직후의 혼란 속에서 설비 전체를 소실하였던 이 공장은 1947년에 織機 3,200주를 재정비하였으며, 1948년에는 6,800주, 49년에는 2,000주, 1950년에는 8,000주의 織機를 재정비하여 설치하였다. 설치된 織機 19,928주와 미설치 織機 15,672주를 합해 총 35,600주가 소실되었지만 이 중에서 20,000주를 재생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 공장은 한국전쟁의 피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織機를 재정비하여 1955년에는 20,768주까지 설비를 늘렸다.

16) 1954년 당시 신규설비 625대 중에서 425대는 일본의 利川으로부터, 200대는 遼州로부터 수입하여 설치한 것이다(『전방삼십년』, 전방주식회사, 1984, pp. 120~125 참조).

17) 大韓紡織協會, 「紡協 創立十周年 記念誌」, 1957, Ⅲ부 참조.

18) 大韓紡織協會, 「纖維年報」1955년판, 4부－통계편－13면.

1956년 紡機가 11,808주로 늘어나는데 이것은 동아방직으로부터 인계받은 것으로 이는 기업결합의 결과였다. 그런데 이 동아방직은 동양방직공사 인천공장의 소개설비로 세워진 회사였다. 따라서 이 공장에서 인계받은 11,808주의 紡機는 적산설비였음을 알 수 있다¹⁹⁾.

해방 당시에 미설치 織機 408대만을 보유하고 있던 이 공장은 1947년에 이 직기를 설치하였지만 1948년에 화재로 소실되었다. 이 후 소실된 직기를 재정비하고, 한국전쟁으로 大邱以北地方의 設備들이 疏開되는 과정에서 입수한 것으로 보이는 설비들을 합하여 1956년에 총 516대의 직기를 보유하였다. 그리고 1953년도 UNKRA자금으로 1957년도에 300대의 직기를 배정받아 816대의 직기를 보유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공장은 1961년까지 516대의 적산직기와 300대의 신규직기를 보유하여 총 816대의 직기로 조업을 힘으로써 일제하에 설치되었던 설비의 비중이 약 63%에 이르렀다.

2) 朝鮮紡織株式會社 釜山工場

(1) 管理와 拂下

식민지시대에 세워진 최초의 근대적 대규모 면방직공장으로 1917년에 자본금 500萬圓으로 부산에 세워졌다. 그리고 1922년 紡機 15,200주, 織機 608대로 조업을 시작하였다.

이 공장은 1945년 해방 당시 40,000주의 紡機와 1,264대의 직기 외에도 미설치방기 10,304주와 미설치직기 49대를 보유하고 있었던 대규모 공장이었다. 이 규모는 東洋紡績 京城工場과 鐘淵紡績 京城工場에 이어 세번째의 규모였으며, 내부에 자가발전 시설까지 갖추고 있었다.

해방이 되자 그 해 11월에 미군정 관리하에 河元俊이 관리인으로 취임하여 시운전을 시작하였다. 1946년에는 韓一實業公社로 이름이 바뀌면서 관리인도 崔士烈로 바뀌었다.

이후 1947년 5월에 朝鮮紡織公社로 회사명을 바꾸고 관리인도 鄭明石으로 교체한 이 공장은 그 해 11월에 미군정의 지시로 이사제를 실시하고 이사장에 정명석이 취임하였다. 그러나 1948년 4월 管財使 제10호에 의해 주식회사로 환원되어 취체역사장에 鄭浩宗이 취임하였다.

1949년에는 정부의 지시에 의해 일제하의 朝鮮紡織 大邱分工場이었던 大邱매리야쓰工場을 분리하고 일제하의 郡是紡績 大邱工場이었던 大邱紡績公社를 통합운영하게 되었다.

1951년에 姜一邁가 사장에 취임하였으나 1954년 11월 정부지시에 의해 다시 姜一邁를 이사장으로 하는 이사제가 실시되었다. 그리고 1955년 2월에는 정부의 귀속기업체 임대방침에 따라 부산공장에 대한 임대계약이 체결되었다.

그 해 5월 통합되었던 대구공장을 대한방직주식회사에 임대계약하여 분리하는 한편, 8월에 姜一邁를 취체역사장으로 하는 주식회사 체계로 개편하였다. 그리고 10월에는 부산공장이

19) 大韓紡織協會, 「紡協創立十周年記念誌」, 1957, II부.

강일매에게 35億圓에 불하되었다.

이 공장은 30,000추 이상의 대규모 공장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전쟁을 겪으면서도 전혀 피해를 입지 않은 공장으로 당시로서는 최대 규모의 공장이었다.

(2) 設備

해방 직후에 40,000추의 紡機를 소유하고 있던 이 공장은 당시 마설치설비 10,304추를 1947년에 설치하는 한편 자가발전 시설도 복구하여 50,304추를 가지고 한국전쟁 전까지 조업을 진행하였다.

한국전쟁 중에 전혀 피해를 겪지 않았던 이 공장은 1957년에 紡機를 棉毛紡績機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전체 紡機가 5,200추 감소되었다. 이후 조선방직은 紡機 45,104추를 1961년까지 보유하였다. 따라서 이 공장이 적산설비를 가장 많이 원형대로 보유하고 있었던 공장이었다.

해방 직후 1,264대였던 직기는 1947년에 6대가 감소하였고, 1948년에는 55대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소규모의 증감은 기존 직기의 정비과정에서 발생되었거나 이 시기에 일부 적산설비들이 부분적으로 불하되면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이 직기들은 모두 적산설비였다.

한국전쟁 직전에 1,313대로 늘어난 직기는 1953년에 336대, 1954년에 272대, 도합 608대의 신규직기가 도입되어 1955년에 총 1,693대를 보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신규직기의 증가분 608대를 감안할 때, 308대의 직기만이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 총량으로 보면 織機 228대가 감소했다는 것인데 이 때 감소된 직기는 노후설비, 즉 적산설비가改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설비의 규모는 한국전쟁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적산설비 1,313대의 약 17%에 이르는 분량이다.

5. 第5類型－鐵屬綿紡織設備의 拂下를 통한 解放以後 設立된 形態

1) 金星紡織株式會社 安養工場

(1) 管理와 拂下

1948년 10월에 설립된 금성방직주식회사 안양공장은 1949년 2월에 舊 朝鮮織物株式會社의 공장건물을 사용하여 조업을 개시했다²⁰⁾. 당시 사용된 방직기는 적산설비를 불하 받아서 조업을 개시한 것이다²¹⁾. 따라서 일제하에서 설립된 공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본 연구에서

20) 黃明水, 「省谷과 金星紡織」, 『經營史學』, 經營史學會, 1987, 114~115, 각주 3 참조; 권태역, 「한국 근대면업사연구」, 일조사, 1989, pp. 277~278 참조; 省谷傳記刊行委員會, 「별일敘解－省谷 金成坤 先生 邇話集－」, 1985, p. 52.

21) 성곡전기간행위원회, 위의 책, pp. 52~53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적산설비를 핵심설비로 하여 설립되었으므로 이 공장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1948년 10월 자본금 1億圓으로 설립된 금성방직은 1949년 2월에 일부 가동되고, 1949년 말에 紡機 10,500주, 織機 50대의 조립을 완료하였다. 시험가동에 들어간 1950년 1월에는 紡機 12,400주와 織機 50대, 자본금 2億5千萬圓이 될 정도로 지속적으로 투자를 진행하였으나²²⁾, 한국전쟁으로 모든 설비가 소실되었다.

1952년 舊 朝鮮織物株式會社의 殘有動產 및 不動產 전부를 불하받아 인수하고, 1953년 안양공장의 복구공사를 시작하여 1954년 5월에 조업을 재개하였다²³⁾.

(2) 設備

1949년 2월 설립 당시 2,000주로 시작했던 이 회사는 지속적으로 紡機를 증설하여 1949년 말에는 8,966주의 설비를 보유하였다. 그리고 1950년 한국전쟁 전까지 1,530주를 증설하여 전쟁 전 10,496주의 紡機를 소유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 설비들은 한국전쟁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파손되었다. 방적부문의 설비는 1954년에 가서야 UNKRA 1953년도 자금에 의해서 18,480주가 배정되고, 이 해에 정부보유달러에 의하여 11,600주를 도입함으로써 총 30,080주를 보유하게 되었다²⁴⁾. 따라서 금성방직이 소유했던 일제하의 구형방기 10,496주는 한국전쟁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청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954년 30,080주이던 이 공장의 방직설비는 1956년 태평방직의 10,000주와 아주방직의 18,336주의 방직설비들을 인수 받으면서 58,416주로 증가하였다. 이 설비들은 20,800주의 신규방기와 5,536주의 적산 노후설비로 구성되어 있음이 밝혀졌다²⁵⁾. 이후 1959년에 288주가 증가하는데 이 설비는 재생설비였다.

결국 1961년 58,704주의 방적설비 중에서 5,536주의 노후설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신규적 기임이 드러났다. 그러나 운전가능주의 상황을 보면 이 5,536주는 제외되고 있는 것이 드러난다. 즉 1957년 58,704주 중에서 운전가능주가 53,000주이고 이후 계속 소폭의 변화를 보이다가 1961년에 다시 운전가능주가 53,954주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적산 노후설비는 금성방직으로 이관된 후에는, 그 자체로서 방적이 가능한 설비라는 측면의 성격은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볼 수 있다.

22) 황명수, 「성곡과 금성방직」, 위의 책, 122면 참조.

23) 이 공장은 1967년 10월에 '쌍용양회의 대단위 동해공장의 건설을 위한 내자조달을 위하여' 대한농 산에 매각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大農三十年史』, 1985, 155면).

24) 성곡전기간행위원회, 위의 책, p. 60 : 김병학, 위의 논문, p. 14 참조.

25) 서문석, 위의 논문, pp. 220~222.

1950년 1월에 방적기와 함께 織機 50대가 설치되었지만 운전가능 대수가 18대에 불과해 운휴되었으며, 이 설비들은 한국전쟁으로 말미암아 파손되었다.

1954년 12월에 330대를, 1955년에 200대의 직기를 설치하여 524대의 직기를 보유하였는데 이 중 100대는 재생설비이고 나머지 200대는 신규설비였다. 여기에 1954~1955년에 UNKRA자금으로 600대를 증설하였고, 아주방적이 설치하였던 신규직기 300대와 태평방직의 50대, 그리고 신규직기 180대가 늘어나 총 1,654대의 직기를 보유하였다. 이 중에서 1,330대가 신규직기이므로 324대의 직기는 적산 노후설비였다. 그러나 운전가능 대수를 볼 때 324대의 직산 노후설비 중에서도 약 200대는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결국 약 100여 대 정도의 舊型鐵機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약 10%의 織機만이 故產老朽設備였음이 드러났다.

2) 三龍紡織株式會社 大邱工場

(1) 管理와 拂下

금성방직과 더불어 해방 이후 설립된 삼호방직주식회사 대구공장은 1949년 조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아, 귀속설비를 통하여 운영된 회사임에 틀림없다.

1949년 3월에 자본금 3억원으로 설립된 이 회사는 1951년에 자본금을 10억원으로 늘리고 주식회사 체제로 개편한 후 정재호가 취체역사장에 취임하였다.

1953년에 정부보유달러 471만달러를 대부 받은 후 자본금을 1천만원으로 增資하였다.

(2) 設備

삼호방직의 48,000주는 1950년의 한국전쟁으로 인한 소개시설일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 1949년에 시작된 紡機 6,000주 건설공사는 1950년에 마무리되었고 1952년에 紡機 1,200주를 증설하였다. 1953년에 신규 紡機 8,000주, 1956년에 紡機 3,200주를 증설하였다. 따라서 1956년까지 31,600주를 보유하였는데 이중 12,976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신규설비였다. 1957년에는 7,200주의 재생산 설비를 증설하여 1961년 당시 38,800주의 설비 중에 20,176주의 舊型設備와 18,624주의 新規設備를 보유하였다.

1953년에 織機 100대를 신설하고 1954년에 織機 200대를 증설하였는데 이 설비들은 모두 구형직기였으며, 1957년의 300대는 新規織機였다. 1960년에는 직기 328대를 감소시킴으로써 272대의 직기를 보유하였는데 이 설비는 모두 신규직기였음이 드러났다.

3) 朝鮮紡織株式會社 大邱分工場

(1) 管理와 拂下

1941년에 설립되어 1943년에 조업을 시작한 조선방직주식회사 대구분공장은 1945년 해방 당시에 면방직업이 아니라 메리야쓰업에 종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면방직공장으로

의 운영은 해방 이후에 일부 적산설비들을 매수함으로 시작된 것이다.

이 공장은 해방이 되자 그 해 8월에 미군정에 의해 접수되었고, 이후에 李在致이 대표로 임명되어 그 해 10월부터 조업이 시작되었다.

1946년에 공장장으로 취임한 李淳熙는 1949년 2월 조선방직과 분리하여 대구메리아쓰공사로 회사명을 바꾸면서 이사장에 취임하였다.

1951년 12월 이 공장은 이순회를 불하인으로 하여 6억 2,600만원에 불하되었다.

(2) 設備

1953년 정부보유달러 352,644달러를 대부받아 그 해 8월 紡機 10,000추로 조업을 시작하였으며, 1955년에는 신흥방직주식회사의 소유의 紡機 4,800추를 매수하는 한편, 560추의 적산설비를 확보하여 총 15,360추의 紡機를 보유하였다.

여기에서 이 공장이 매수한 신흥방직주식회사의 소유방기 4,800추 중 3,600추는 敵產設備였으므로 내외방적은 4,160추의 재생설비와 11,200추의 신규설비를 보유하게 되었다.

직포부문은 1954~1955년 UNKRA자금으로 내외방적에 배당된 300대의 직기가 1957년부터 설치되었으며 이것이 이 공장의 첫 직기였다. 따라서 직포부문에서도 적산설비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V. 맷 음 말

한국의 본격적인 공업화의 시기가 1960년대 이후의 시기라면 이 이전시기와 단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대한 연구는 필연적으로 귀속재산의 연구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귀속 면방직공장들이 민간불하 후 어떠한 성격변화가 있었으며, 그 변화유형은 어떤 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귀속 면방직공장들은 불하 이전에 이미 해체된 경우(제1유형)와 불하 이후 한국전쟁의 피해로 말미암아 소멸된 경우(제2유형), 불하 후 통폐합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원래의 성격을 상당부분 끊어버린 경우(제3유형), 불하 이후까지 불하 이전의 형태들을 그대로 유지하였던 경우(제4유형), 불하된 설비로 공장을 설립하여 운영되었던 경우(제5유형) 등의 5가지 유형으로 변화했음이 밝혀졌다.

제1유형에는 鐮淵紡績株式會社 春川工場이 속하는데 이 공장은 한국전쟁 직전에 있었던 화재로 인해 큰 손실을 입었으며 한국전쟁을 통하여 불하도 되기 전에 완전히 소실되었다.

제2유형에는 東洋紡績株式會社 京城工場, 朝鮮大和紡績株式會社 倉洞工場, 吳羽紡績株式

會社 大田工場, 帝國製麻株式會社 仁川工場 등이 있으며 이 공장들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큰 피해를 입고 난 후 불하가 이루어짐으로써 실질적인 조업은 재개하지 못하고 소멸되었다.

제3유형에는 大日本紡績株式會社 京城工場, 鐘淵紡績株式會社 京城工場, 東洋紡績株式會社 仁川工場, 朝鮮麻紡績株式會社 全州工場, 鐘淵紡績株式會社 光州工場 등이 있는데 이 공장들은 한국전쟁으로 인해 상당부분 피해를 입고 자립적인 생산을 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로 공장의 운영형태나 설비들이 한국전쟁 이전의 형태를 회복하지 못한 경우였다.

제4유형에는 都是紡績株式會社 大邱工場, 朝鮮紡織株式會社 釜山工場 등이 속하는데 이 공장들은 대구와 부산에 소재하던 공장으로서 한국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았다. 따라서 귀속재산으로서의 원형을 가장 온전히 유지한 채로 운영되었던 공장들이다.

제5유형에는 金星紡織株式會社 安養工場, 三纏紡織株式會社 大邱工場, 朝鮮紡織株式會社 大邱分工場 등이 속하는데 이 공장들은 구형설비를 불하받으므로써 해방 이후에 설립된 회사들이다. 朝鮮紡織 大邱分工場의 경우 1941년에 설립되었지만 면방직업은 해방 이후 불하된 구형설비로 시작했다. 이 공장들 중에서 금성방직은 한국전쟁으로 인해 舊設備를 완전히 끌고 전후복구과정에서 신규설비로 조업을 재개했으며, 나머지 두 공장은 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한국전쟁의 피해가 미미했던 경우였다.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일제의 경제적 유산으로서의 귀속기업체에 대한 평가문제를 면방직기업의 중요설비인 紡機와 織機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귀속 면방직공장은 해방 직후의 혼란기에 그 중요 설비측면에서 적지 않은 손실이 있었으며, 한국전쟁을 통하여 귀속 면방직공장의 대부분이 원형을 상당부분 상실하였다.

또한 한국전쟁을 통하여 귀속 면방직공장들은 전체 보유설비 중 70% 내외가 피해를 입음으로써 이전의 원형을 유지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간과된 것이 '罹災設備의 再生過程'이다. 즉 귀속기업체들의 설비는 한국전쟁으로 말미암아 파괴됨으로써 단절되었다고 보았지만, 복구에 실패하고 청산되었던 몇개의 공장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기업에서는 이를 재생하여 조업에 임하였다라는 것이다.

재생과정을 거치거나 조선방직 부산공장처럼 불하설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1961년까지 조업에 임했던 설비가 전체방기 492,576추 중에서 약 37%를 차지하는 180,080추나 되었으며 전체 織機 9,815대의 약 53%를 차지하는 5,228대나 되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한국전쟁으로 인해 설비측면에서 분명한 단절이 나타났다는 인식은 오류임이 드러났으며, 1961년까지도 불하설비들은 중요한 역할과 비중을 차지했다.

둘째, 해방 이후 1961년까지의 한국 공업화 초기단계에 있어서의 귀속 면방직기업의 역할은 절대적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1953년 전후복구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새로운 면방직 설

비들이 도입되어 일제하의 설비들을 대체하기 시작하여 1954년이 되면 이미 국내 면방직업계 설비의 약 50%에 해당하는 신규설비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1961년에도 귀속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던 면방직공장은 총 5개로 이 회사들이 보유한 설비는 약 50만주의 紡機 중에서 약 6만여주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면방직업계에서 귀속면방직공장의 역할은 절대적이었다.

불하된 설비들은 1950년대 중반에 이르러 機器品의 국산화가 이루어지면서 더욱 효과적으로 조업에 임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이 설비들의 생산성이 새로 도입된 신규작기에 상당히 접근하는 현상까지 초래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의 설비들이 주로 美國과 英國에서 만들어진 설비들이 도입되었지만 당시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故產設備들의 機器品은 국교정상화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으로부터 수입하였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한국전쟁 이후에 많은 설비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도입되면서 일제하의 설비들은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였으며, 설비의 성격자체가 신규설비에 맞게 변화된 것으로 보았던 견해는 오류임이 드러났다.

셋째, 일제하에 설립되었던 귀속 면방직공장들은 해방 이후 혼란기, 한국전쟁기, 50년대 후반 침체기 등의 새 시기를 거치면서 일제하의 일본인 소유재산이라는 일본과의 연관성이 미국을 주도로 한 전후복구과정에서 상당부분 탈색되었던 반면, 당시 면방직 설비의 약 절반에 가까운 설비들이 건재한 상태에서 1960년대에 들어섰다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전자가 미국과의 연관성의 형성이 제한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정적이라면, 후자는 조선방직 부산공장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설비가 전쟁의 피해를 겪은 상태에서 재생해냈다는 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귀속 면방직공장들이 그 자체로 한국공업화에 일정한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전후 복구과정에서의 각 공장의 노력에 의하여 일정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거대 귀속기업을 불하받았다는 정치적·사회적 인정을 통하여 대규모의 지원과 원조의 혜택을 받으면서 급속히 성장한 결과 공업화과정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연구의 한계로는 일제하의 면방직 통계들이 온전하지 않아 일제하의 조업과 생산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이것과 해방 후 귀속 면방직기업과 비교해 봄으로써 그 효율성 측면이나 중요설비들의 수명, 개체에 관한 구체적인 고찰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외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들은 향후 후속연구과제로 다루기로 한다.

참 고 문 헌

1. 경성방직주식회사, 「경성방직 50년」, 1969.

2. 경영사학회 편, 「성곡 김성곤 연구」, 1988.
3. 공제옥, 「1950년대 한국의 자본가 연구」, 박산서당, 1993.
4. 권태억, 「한국근대면업사 연구」, 일조각, 1989.
5. 김경남, 「1920·30년대 면방대기업의 발전과 노동조건의 변화」, 「부산사학」 25, 26합본호.
6. 김기원, 「미군정기의 경제구조」, 푸른산, 1990.
7. 金大來·崔成日, 「부산지역 귀속사업체에 관한 연구」 I, 「論文集」, 부산여자대학교, 1995.
8. 김양화, 「1950년대 제조업 대자본의 자본축적에 관한 연구 : 면방, 소모방, 제분공업을 중심으로」, 서울대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1990.
9. 김형남 전기 편찬위원회, 「김형남전」, 1985.
10. 金熙仲, 「1950年代 韓國 織工業의 展開過程에 관한 考察」, 「經營研究」, 湖南大學校, 1994.
11. 대한방직협회, 「면방직통계표」, 각 호.
12. 대한방직협회, 「방협 20년사」, 1967.
13. 대한방직협회, 「방협 30년사」, 1977.
14. 대한방직협회, 「방협 40년사」, 1987.
15. 대한방직협회, 「방협창립십주년기념지」, 1957.
16. 대한방직협회, 「섬유년보」, 각 년도.
17. 董 吉, 「한국면방직공업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5.
18. 동일방직주식회사, 「동일방직사사 : 1955~1981」, 1982.
19. 박재울, 「한국 면방직업의 사적 연구－1876－1945년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1980.
20. 성곡 전기간행위원회, 「별일없제－성곡 김성곤 선생 일화집－」, 1985.
21. 安秉直·中村哲 共編著, 「近代朝鮮工業化의 研究 : 1930－1945年」, 一潮閣, 1993.
22. 尹在煥, 「國內綿紡織施設現況」, 「방적」, 1980.
23. 이대근, 「정부수립후 귀속사업체의 실태와 그 처리과정」, 안병직 외, 「근대조선공업화의 연구」, 일조각, 1993.
24. 이대근, 「해방후 귀속사업체의 실태와 그 처리과정」, 안병직 외, 「근대조선의 경제구조」, 비봉출판사, 1990.
25. 재무부, 「재정금융의 회고」－전국십년업적, 1958.
26. 전방주식회사, 「전방 30년」, 1984.

27. 조선식산은행 조사부, 「식산은행조사월보」, 각 호.
28. 조선은행 조사부, 「경제년감」, 1948, 1949.
29. 조선은행 조사부, 「조선경제통계요람」, 1949.
30. 최세양, 「1950년대 섬유산업의 자본축적과정에 관한 연구」, 한양대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1994.
31. 한국산업은행 조사부, 「한국산업경제 10년사」, 1955.
32. 한국산업은행 조사부, 「한국의 산업」, 1962.
33. 韓國生產性本部 產業經濟研究所, 「韓國의 工業」, 韓國生產性本部, 1971.
34. 韓國織維產業聯合會, 「織維年鑑」, 각 년도.
35. 한국은행 조사부, 「경제년감」, 각 년도.
36. 한국은행 조사부, 「경제통계연보」, 각년판.
37. 한국일보사, 「재계회고」 1~10, 1981.
38. 허수열, 「일제하 한국에 있어서 식민지적 공업의 성격에 관한 일 연구」, 서울대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1983.
39. 홍성유, 「한국경제의 자본축적과정」,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64.
40. 황명수, 「성곡과 금성방직」, 「경영사학」 제 2집, 경영사학회, 1987.
41. 황명수, 「한국기업의 발달」(1910~1945), 「논문집」 14호, 단국대학교, 1980.
42. 황명수, 「해방이전의 재한일본인 기업가에 관한 사적 연구」, 단국대학교 상경대학, 상경논총, 제 10호, 1971.
43. 황명수, 「기업가사연구」, 단국대학교출판부, 서울, 1976.
44. 황병준, 「한국의 공업경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71.
45. Tom Kemp, 林達 監譯, 「工業化の歴史類型」, 東京 : 學文社, 1991.
46. 堀和生, 「朝鮮工業化の史的分析」, 東京 : 有斐閣, 1995.
47. 金洛年, 「日本の植民地投資と朝鮮の工業化」, 韓日文化交流基金, 第 8次 韓日・日韓合同學術會議, 1994. 7.
48. 鹿兒島經濟大學地域總合研究所 編, 「近代東アジアの諸相」, 東京 : 勁草書房, 1995.
49. 大江志乃夫「外」編, 「〈岩波講座〉近代日本と植民地. 3」, 東京 : 岩波書店, 1995.
50. 藤田文吉, 「朝鮮産業經濟の近代化と朝鮮殖產銀行」, 東京 : 西田書店, 1993.
51. 木村光彦, 「植民地下朝鮮の紡織工業」, 安場保吉 外 編, 「プロト工業化期の經濟と社會」, 日本經濟新聞社, 1983.
52. 米川伸一, 「紡績業の比較經營史研究: イギリス・インド・アメリカ・日本」, 東京 : 有斐閣, 1994.

61. 森田芳夫, 「朝鮮収戰の記録」, 嶽南堂, 1979.
62. 小林英夫, 「1930年代日本窯素肥料株式會社の朝鮮への進出について」, 山田秀雄 編, 「植民地經濟史の諸問題」, アジア經濟研究所, 1973.
63. 小林英夫, 「大東亞共榮圈」の形成と崩壊, お茶の水書房, 1975.
64. 神谷不二 編, 「朝鮮問題戰後資料」, I, II, 日本國際問題研究所, 1976.
65. 鈴木義嗣, 「50年代 韓國經濟의 成長과 工業化」, 梶村秀樹 외(우대형 역), 「한국경제의 구조」, 학민사, 1985.
66. 中村哲 編, 「東アジア資本主義の形成」, 東京:青木書店, 1994.
67. 河合和男・尹明憲, 「植民地期の朝鮮工業」, 東京:未來社, 1991.
68. 韓福相, 「韓國の經濟成長と工業化分析」, 東京:勁草書房, 1995.
69. 花房政夫, 「韓國綿工業の發展過程」, 山田三郎 編, 「韓國工業化の課題」, 1971.

近代經濟學의 스톡홀름學派에 관한 研究 — 특히 위르달을 中心으로 —

李 光 鐘*

目 次

I. 序 論	2. 經濟理論
II. 스톡홀름學派의 形成	3. 社會思想
1. 成立 背景과 特徵	IV. 위르달의 아시안 드라마
2. 빅센의 經濟理論	1. 아시아 전단
3. 카센의 經濟理論	2. 貧困의 挑戰
III. 위르달의 生涯와 經濟理論 및 社會思想	V. 結 論
1. 生涯	

I. 序 論

本論文은 19世紀의 1870年代에 오스트리아 원大學의 맹거(Menger, C.), 스위스 로잔느大學의 왈라스(Walras, L.), 英國의 제본스(Jevons, W. S.) 등이 각각 나라를 달리하고 같은 理論을 거의 동시에 발표한 效用理論에 의하여 經濟學이樹立됨을 시작으로 하는 近代經濟學에 대한 研究로서 IMF管理經濟時代에 外換과 金融의 危機를 克服하기 위한 理論的 方案을 提示하는데 意味를 두고 있다.

古典經濟學은 70年代의 劇期的인 時期를 契機로하여 漸次 跡을 잊고 近代經濟學은 새로운 脚光을 받아 學界를 支配하기 시작하였다.

近代經濟學의 理論 形成過程은 1876年 5月 3日 런던 經濟學 클럽이 開催한 스미드(Smith, A.) 「國富論」刊行 百年祭의 討論에서 古典經濟學에 대한 새로운 反省의 契機가 되었다. 즉 古典經濟學은 理論的으로는 抽象的이며 實踐的으로는 時代에 뒤떨어졌다라는 懐疑가 일어났는데 이러한 古典經濟學에 대한 懐疑 내지 批判은 歷史學派, 社會學者, 社會主義者들에 의하여 提起되었다. 그들의 批判內容은 첫째, 方法論의 反省으로서 古典經濟學의 抽象的 演繹的 理論은 그 당시 英國에는 安當한 理論이었으나 그들은 國民經濟의 特殊性을 研究하고 明確히 하려고 하였으므로 演繹的 方法은 先進 資本主義 國家의 經濟社會에만 限定하고 後進社會에

* 信興專門大學 稅務會計科

對해서는 諸納的 또는 社會的 分析을 하여야 된다는 理論으로써 抽象的, 演繹的 理論에서 經濟學의樹立을 反對하였다. 둘째, 經濟理論의 再檢討로서 近代經濟學의 創設者에게는 古典學派의 勞動價值說 또는 客觀的 價值說이 時代의 實情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다. 古典學派는 生產價格 특히 工業製品의 價格은 平均費用과 平均利潤과의 合計에 의하여 決定된다고 보는데 이는 限界費用과 平均費用과의 乖離없는 狀態를前提로 하고 있다. 換言하면 古典學派는 資本主義形成期에 平均化理論으로서 說明할 수 있는 것이었으나 이제 巨大한 固定資本을 投下하는 70年代의 經濟的 現實을 밝히는데는 限界理論이 필요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消費需要는 個人的 限界效用理論에 의하여 明確히 밝힐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政策에 있어서 古典學派에 대한 強力한 非難은 自由放任이었는데 自由競爭的 資本主義는 小生產業者를 위주로 하는 經濟理論이었으나 產業革命에 의하여 小生產業者는 資本家와 勞動者의 두 계급으로 대립되어 勞動者의 暗澹한 生活相이 現實化되자 自由競爭과 自由放任에 대한 批判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自由競爭의 弊害를 解決하고자 分配問題에 關心을 가지게 되어 古典經濟學의 生產中心의 經濟理論에서 個人的 消費 및 需要中心의 經濟理論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그 당시에 있어서 生產面에서는 資本主義의 高度化에 의하여 自由로운 競爭과 選擇은 거의 不可能하게 되었으나 消費者的 需要面만은 自由로운 競爭이 가능한 分野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즉, 經濟原則이 適用되는 分野는 生產面이 아니라 消費者的 市場에서만 可能하였다. 이에 經濟理論의 新局面을 打開하고자 需要 및 效用을 根幹으로 하는近代經濟學이 形成되었다. 近代經濟學은 많은 經濟學說이 展開되어 學說의 盛衰를 이루고 있으며 이 學說의 盛衰은 서로 交錯되고 交流되어 明確히 區別하기가 곤란하다¹⁾. 이러한 難点으로近代經濟學을 몇개의 學派 즉 限界效用學派, 新古典學派, 制度學派, 스톡홀름學派 등으로 區分하고 있는데 本稿에서는 一般均衡理論에 결여되어 있는 景氣變動論의 發展에 크게 공헌한 스톡홀름學派를 中心으로 考察하려 한다.

II. 스톡홀름學派의 形成

1. 成立背景과 特徵

스톡홀름學派는 北歐學派 또는 스웨덴을 中心으로 發達하였기 때문에 스웨덴學派라고 한다. 이 學派는 創始者인 빅셀(Wicksell, J. G. K., 1851~1916)과 代表的인 사람으로 카셀(Cassell, G., 1866~1945), 린달(Lindahl, E. R., 1898~), 뮤르달(Myrdal, K. G., 1898~), 오린(Olin, B. G., 1899~) 등에 의해 形成 發展되었다. 이들은 오스트리아

1) 崔文煥(1959), 經濟學史, 日新社, pp. 332~342.

學派 및 로잔느學派의 영향을 받았으나 一般均衡理論에 缺如되어 있는 景氣變動理論을 슘페터와 다른 角度에서 發展시켰으며 現代 經濟學界에 캠부리지學派와 겨루는 흥 lut함을 엿볼 수 있다. 1900年에 이르기까지 經濟變動論, 景氣變動論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없었다²⁾.

제본스(Jevons, W. S.), 쥬글라(Juglar, C.), 바라노브스키(Baranowsky, T.), 스피트호프(Spiethoff), 슘페터 등이 景氣變動에 관한 연구를 하였으나 이들의 이론은 近代經濟理論에 입각하여 전개된 것은 아니었다. 제본스는 景氣變動 恐慌은 經濟體制의 外部에서 초래된 것이라고 하며 景氣循環의 原因을 太陽의 黑點에서 설명하였다. 즉, 혹점의 증가는 農業收穫을 감소시켜 工業製品의 수요를 억제시키므로 불경기가 초래한다고 하였다. 또한 슘페터는 景氣循環論에서 景氣變動의 요인을 人間行動 또는 制度的 요인에서 찾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從來의 靜態學的 均衡理論을 그대로 적용시킬 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새로운 動態學的 分析方法을 利用한 近代經濟學의 理論을 景氣變動에 適用시킬 필요가 生成되었다.

따라서 動態學的 分析의 要請은 理論的 欲求에서 만이 아니라 價格의 自動調節 作用에 의존하고 있는 經濟均衡의 機能을 發揮하지 못하고 景氣變動을 초래하여 이에 따른 失業事態는 深刻한 社會問題로 대두되었다. 이를 解決하기 위한 時代的 요구에 따라 動態的 分析에 의하여 經濟問題을 해결하고자 하는 理論體系로서 대두된 것이 스톡홀름學派이다³⁾. 이와 같이 시대 상황에 따라 慢動된 스톡홀름學派의 特徵은 다음과 같다.

첫째, 從來의 一般均衡理論은 靜態的 假說에 의하여 분석되므로 現實經濟와는 너무나 거리가 있기 때문에 어떤 特定 學說에 치우치지 않고 다른 學派의 理論과 成果를 검토 분석하여 그 長點만을 채택하고 短點은 배제한 綜合的 理論體系를 構成하였다.

둘째, 事前的(ex-ante)과 事後的(ex-post)으로 區分하여 所得 또는 貯蓄 같은 概念을 장래의 計劃·期待 또는 過去의 期間에 관련시키는 期間分析이다. 즉, 事前的是 豐算策定이나 計劃을 세우는 것과 같으며 事後的是 經過된 過去의 事實을 의미한다. 이러한 景氣變動의 分析에 있어서 變動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期間分析을 사용하였다.

셋째, 貨幣數量說 대신에 貯蓄과 投資의 概念을 도입하여 景氣變動理論을 세우고 貨幣的 景氣政策을 통하여 失業問題의 解決을 강구하였다.

2. 빅셀(Wicksell, K.)의 經濟理論

스톡홀름學派의 선구자인 빅셀의 經濟理論은 1893年에 出版된 「價値, 資本 및 地代」에서 一般均衡理論과 봄바벨크의 資本理論을 결합한 獨創的인 經濟理論이었으며 윌라스, 제본스, 맹거 등 限界效用學派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여 限界效用 價値論을 明確하게

2) 上揭書, pp. 385~386.

3) 주명건(1993), 經濟學史, 박영사, pp. 478~479.

밝히고 限界理論의 制約과 限界를 지적하였다⁴⁾.

또한 그는 限界理論을 生產에 적용시켜 土地, 勞動, 資本의 限界生產力說을 展開하여 學界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그의 가장 큰 功績은 1898年에 出版된 「利子와 物價」에서 새로운 資本理論으로 出發하여 物價變動을 貨幣面에서 動態的으로 설명한 점이다. 즉, 빅셀의 資本理論은 빔바벨크의 利子論을 發展시킨 限界生產力說에 基礎를 두고 있는데 그는 資本을 貯蓄한 勞動力과 土地의 生產量이 數年間 積累된 것으로 보고, 貯蓄한 勞動力과 土地의 限界生產力은 現在의 限界生產力보다 크기 때문에 資本利子는 兩者的 差額에 의해 결정되거나, 資本投下期間의 限界生產力과 같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는 資本을 廣意의 資本과 固有한 意味의 資本으로 區分하여 光의 차본은 利子가 발생하는 財貨로, 고유한 의미의 차본은 生產財 또는 消費財로 區分하였다. 또한 그는 固有한 의미의 資本을 중시하고 이것을 다시 貨金이나 地代 등으로 측정되는 自由資本과 消費財 生產에 投下되는 固定資本으로 區分하고 있다⁵⁾.

그는 利子와 物價問題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리카도와 다른 한편으로는 투우크(Tooke, T.)의 問題에서 출발하였다. 즉, 리카도는 貨幣數量說에 입각하여 貨幣의 過剩은 일부는 物價騰貴에 의하여 다른 일부는 利子率의 低下에 의하여 나타난다고 보아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貨幣의 過剩 供給에서 찾았으나 투우크는 統計資料에 의하여一般的으로 物價騰貴는 높은 利子率과 利子率騰貴로 인하여 일어나며 반대로 物價의 下落은 낮은 利子率과 利子率이 下落할 때 일어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빅셀은 利子率은 絶對的이 아니고 相對的이라고 하면서 대체로 투우크의 주장에 동조하여 貸付金에 賦課되는 利子率은 그 자체로서는高低를 明確히 할 수 없는 것이며 貨幣所有者에 의하여 일어질 것이라고 期待되는 報酬와 관련하여 결정되며 生產要素의 需要에 영향을 주고 직접적으로 物價變動의 原因이 된다고 보았다. 그는 利子率을 自然利子率과 貨幣利子率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自然利子率은 實際의 事實上의 利子率을 의미하는 것으로 實物資本이 現物로 貸與될 때 需要와 供給에 의하여 결정되는 利子率로서 貯蓄과 投資가 같게 되는 均衡利子率이며, 貨幣利子率은 銀行의 貸付利子率이라고 하며 양자가 일치될 때 經濟는 均衡狀態에 있다고 보았다⁶⁾. 또한 自然利子率은 貨幣와 中立의 인 관계에 있으며 實物資本의 限界生產力과 같고 케인즈의 資本의 限界效率과 같은 개념으로서 IS利子率에 해당한다. 그리고 貨幣利子率은 貸付資金에 대한 需要와 供給이 일치할 때 결정되는 市場利子率 즉, LM利子率이다. 따라서 自然利子率이 貨幣利子率과 일치할 때에는 貯蓄과 投資가 均衡을 이루어 物價水準은 變動이 없으나 貨幣利子率과 自然利子率이 不一致하면 貯蓄과 投資間에 不均衡이 생기고 物價는 變動하게 된다. 이러한 見解가 빅셀의 累積過

4) 崔文煥, 前揭書, p. 389.

5) Wicksell, K. (1893), Überwert, Kapital und Rente, p. 133.

6) Robbins, L. (1935), Lectures on political Economy, Vol. 2, p. 593.

程이다.

그는 모든 去來는 銀行이 供給하는 預金通貨로서 決濟되며 銀行은 金利生活者로부터 預金을 받아 企業家에게 經營資本으로 供給하여 企業活動을 하게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技術의 進步나 다른 要因에 의하여 많은 利潤을 얻게 되거나 銀行의 貨幣利子率이 不變이면 自然利子率이 貨幣利子率보다 높아진다. 그러면 企業家는 銀行의 貸出金을 사용하여 勞動者 및 地主 등의 要素供給者에게 이전보다 높은 所得을 支拂하여 企業을 擴張하게 하므로 財貨에 대한 需要는 增大하고 銀行의 貨幣利子率도 높아진다. 이 때에 貨幣利子率이 自然利子率 보다 낮을 때에는 信用은 擴大되고 物價水準은 上昇한다. 이와 반대로 貨幣利子率이 自然利子率 보다 높을 때는 銀行信用이 收縮되어 物價水準은 下落한다. 이러한 說明은 投資가 賯蓄을 따르지 못할 때는 不景氣가 일어나고 投資가 賯蓄을 超過하면 好景氣가 일어난다는 케인즈의 理論에 接近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는 自然利子率과 貨幣利子率간에 괴리가 있을 때 經濟의 不均衡이 일어나고兩者가 一致할 때까지 累積的인 變動過程을 겪는다고 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累積的인 變動過程을 일으키는原因是 貨幣的 摆亂이 있기 때문에 金融政策에 貨幣的 要因을 安定化시키면 經濟의 均衡的 發展은 促進된다. 이러한 빅셀의 주장은 미제스(Mises, L. E. V.)와 하이에크(Hayek, F. V.)에 의하여 완성되었는데 이 學說은 貨幣的 過剩投資說이라고 한다⁷⁾.

3. 카셀(Cassel, G.)의 經濟理論

카셀은 限界效用 價值說은 測定할 수 없는 效用單位의 概念에 基礎를 둔 것이라고 하며 소비자의 需要函數에서 출발하는 價格理論으로 代替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限界效用分析이 財貨의 效用函數의 連續性에 관한 無價值한 假定에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初期의 論文 「價格理論概要」에서 價值論의 無用論을 주장하였다. 그에 依하면 限界效用說은 效用의 可測性을前提로 하고 있으나 效用은 主觀的인 것이므로 測定할 수 없기 때문에 無用함을 주장하고 이 概念에 對替하여 稀少性의 原則을 제시하고 이 原則하에 그의 經濟理論의 體系를 세우고자 하였다⁸⁾. 그는 供給이 稀少할 때에는 超過需要가 나타나게 되고 그 超過需要를 배제시키기 위해서는 稀少한 財貨의 價格이 上昇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그의 稀少性의 原則이다. 그러나 카셀이 學界에 寄與한 것은 價格理論보다도 貨幣金融理論과 景氣變動論이다. 그의 貨幣金融理論은 貨幣數量說을 外換率의 결정에 적용한 國際金融分野에서 購買力 平價說로 代表된다. 이 理論은 두 나라가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다면 정상환율은 인플레이션 이전의

7) Mises, L. E. V., Theorie des Geldes und der Umlaufsmittel, 1912, Hayek, F. V., Monetary and Trade Cycle, 1982.

8) Cassel, G. (1922), Money and Foreign Exchange after 1919, London.

外換率에 相對的 인플레이션을 꿈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⁹⁾. 다시 말해서 他國의 貨幣에 대해 自國의 貨幣를 대가로 支拂하는 理由는 外換이 購買力を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自國貨幣을 支拂할 때도 一定한 購買力を 양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外換을 自國貨幣로 평가할 경우 들 사이의 比率은 各國의 貨幣가 가지고 있는 購買力의 比率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이 理論은 第1次 大戰 後 金本位制度가 붕괴되고 인플레이션이 深化되었을 때의 外換理論이다

¹⁰⁾

또한 그의 景氣變動理論은 後에 오스트리아學派의 景氣理論인 貨幣의 過剩投資理論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는 一般均衡理論으로는 景氣循環을 說明하기 어렵기 때문에 歷史的, 統計的 資料에 의하여 解明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資料에 따라 生產財의 生產이 消費財의 生產보다 景氣變動에 민감하다는 것을 提示하고 이러한 사실과 景氣變動과의 相關關係를 밝히려 하였다. 그는 景氣變動을 決定하는 要因은 固定資本의 價格과 利子率에 의존한다고 보고 이 중에서도 利子率이 가장 重要한 作用을 한다고 보았다¹¹⁾. 그리고 恐慌은 利子率이 너무 낮아서 일어나는 過剩 貯蓄에 원인이 있으며 利子率이 充分히 上昇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說明하였다.

III. 뷔르달(Myrdal, K. G.)의 生涯와 經濟理論 및 社會思想

1. 生涯

뷔르달은 1898년에 出生하여 스톡홀름大學과 同大學院을 1923년에 卒業한 後 1927年 “經濟的 變化下에서의 價格 決定의 問題”라는 論文으로 經濟學 博士 學位를 받았다. 그는 1930年 제네바 國際問題研究所의 助教授로 있다가 1934年에서 1950年까지 스톡홀름大學의 經濟學 및 財政學 教授로 있었다. 그 후 1945년에는 스웨덴 王立科學院 會員으로 選出 되었으며 1960年에는 스톡홀름大學의 國際經濟學 教授, 1967年에는 명예교수로 재직하였다¹²⁾.

그는 教授 이외에도 많은 社會活動과 經歷을 가지고 있다. 第2次 世界大戰 前에는 스웨덴 政府의 經濟社會政策顧問, 國會議員, 스웨덴 銀行理事, 政府政策委員會 委員을 歷任한 바 있으며 第2次大戰 後에는 社會民主黨 上院議員, 商務長官, 戰後經濟計劃 委員會의 위원장으로 스웨덴의 經濟政策樹立에 도움을 주었다. 1947年 이후에는 UN 유럽經濟위원회의 위원장, 스

9) 주명진, 前揭書, p. 485.

10) 鄭道泳(1980), 國際經濟, 博英社, pp. 235~236.

11) 주명진, 前揭書, p. 486.

12) 上揭書, p. 489.

톡홀름 國際平和研究所長 등을 歷任하였으며 우수한 연구진을 構成하여 東·西歐 經濟에 대한 分析과 美國 黑人問題, 國際問題 및 後進國 開發問題 등의 연구에 몰두하였다.

또한 그는 1974年 스웨덴 王立科學院의 노벨 經濟學賞을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Hayek, F. V.)와 共同으로 受賞하였다. 이들은 貨幣 및 景氣變動理論과 經濟·社會制度간의 相互聯屬性에 대한 研究가 훌륭한 業績으로 認定되어 이 賞을 받게 되었다.

노벨 經濟學賞이 授與되기 시작된 이후부터 이 두 經濟學者는 항상 受賞候補의 名單에 올랐었다. 이들의 研究는 純粹經濟理論에서 시작하였으며 1920年에서 1930年 初期에는 同一分野인 景氣變動과 貨幣理論을 집중적으로 研究하였다. 그 후 이들의 연구는 社會 및 制度의 인측면을 포함하는 研究로 확대되었다¹³⁾.

2. 經濟理論

뮈르달은 빅셀 등 스톡홀름學派의 영향을 받아 경제의 積積的 過程을 중요시하였으며 새로이豫想, 事前的, 事後的 등의 概念을 導入하여 巨視的 動學分析에 노력하여 지대한 공헌을 하였고 미국의 褐色人問題, 남아시아의 빈곤문제 등을 分析하는데 있어서 理論的 礎石이 되었다.

우선 그의 經濟理論을 博士學位 論文인 經濟的 變化下에서의 價格決定의 問題와 貨幣的 均衡論 등으로 大分하여 그 概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學位論文인 經濟的 變化下에서의 價格決定의 問題에서 그는 市場條件과 技術進步 등 장래의 환경변화에 대한豫想이 企業家, 金融機關 등의 價格決定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分析하였다. 그에 의하면 價格決定過程은 다른 條件이 不變인 등의前提에서 分析되는 靜態的概念으로는 規明할 수 없으며 實質的인 靜態的 均衡狀態는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견해였다. 現在의 價格決定은 事前的인 變化에 대한豫想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豫想은 收入과 費用 등의豫想 결과에 대한 確率的 判斷이라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는豫想되었던 變化와豫想하지 못한 變化를 명백히 구분하고豫想된 變化는 企業家에게 아무런 損益도 초래하지 않지만豫想하지 못한 變化는 價格과 費用에 變化를 야기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資本價值를 變化시키고 企業家에게 損益을 초래하게 되는데 現實에서는 이 두 가지가 혼합되어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豫想을 危險과 結付시켜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뮤르달의 巨視的 動學分析에서 理論의 중심이 되는 4개의 假定이 있는데 이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① 時間要素는 不確實性을 가지고 있다. ② 企業家의 장래豫想에는 客觀的 危險이 따르고 그것은 기업가의 경험과 능력에支配된다. ③ 信用供給者的의 측면에서 볼 때

13) 朴宇熙(1980), 經濟學說大觀, 博英社, pp. 277~278.

企業에 대한 人的危險이 存在하고 이는 摂入된 資本이 많으면 減少한다. ④ 危險의 과소평가와 과대평가는 위험부담에 있어서 중대한 影響을 미칠 것이라는 것 등이다.

그는 客觀的 危險과 主觀的 危險 그리고豫想에 대한 評價의 差別은 많은 난점이 있다는 것이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客觀的 基準으로서의 中立的 危險이라는 概念과 위험의 평가 및 위험의 회피 문제 등은 樂觀的 또는 悲觀的 편견에 따라 差別하는 것이라고 하였다¹⁴⁾.

둘째, 貨幣的 均衡論에서 그는 巨視經濟學으로 옮아갔으나 學位論文에서의 動學理論과 共通點이 많이 있다. 즉豫想된 結果와 事後的 結果를 비교하는 것을 볼 때에는豫想이라는 變數를 가지고 巨視的 動學分析을 하였다.

그는 動態分析은 두 가지 相異한 方向으로 分析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데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①豫想이 現在에 미치는 影響을 分析하는 것, ② 먼저豫想했던 것과 現在 實現된 것의 차이가 次期에 미치는 影響을 分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뮤르달이 分析한 것은 ①번의 문제였고 ②번의 문제는 斯德哥爾摩學派의 다른 學者들에 의한 繼起分析으로 研究되었다.

뮤르달은 빅셀의 貨幣的 均衡에 관한 定義에서 출발하였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利子率은 實質資本收益과 일치하고, ② 事前的 投資와 事前的 貯蓄은 일치하며, ③ 價格은 不變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하였다¹⁵⁾. 즉 빅셀은 動態的인 實物經濟學에서 企業家는 自然 利子率과 市場利子率이 일치하고 事前的 貯蓄과 事前的 投資가 일치하도록 행동한다고 전제하였으나 貯蓄과 投資는 항상 일치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均衡을 일정수준 위에서 성립하는 一般均衡과 區分하여 中立均衡이라고 하였다. 그는 빅셀의 中立均衡의 概念을 貨幣論의 인 입장에서 파악하여自身의 利子 및 貨幣理論을樹立하였고 貨幣理論에서豫想의 要素를 도입하여 事前的 고찰을 중요시하였으며 經濟學은 實踐的 的目的을 지향하기 때문에 事後的인 計劃보다는 事前的으로 각종 計劃을 수립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종래의 動態理論에豫想要素를 도입하여 貯蓄과 投資의 均衡을 事後的이 아닌 事前的 意味에서의 均衡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그는 後進國 開發에 대하여 많은 研究를 하였는데 後進國이 經濟發展을 이루하기 위해서는 制度的인 改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開發途上國의 鐵餉現狀을 깊이 憂慮하면서 社會改革을 통한 土地, 教育改革 및 脫稅, 不正腐敗의 근절이 요구됨을 강조하였으며 先進國의 政治的 차원에서의 援助보다는 開發途上國의 社會·文化風土에 알맞는 援助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14) 上揭書, pp. 280~281.

15) 上揭書, p. 282.

그는 經濟學의 研究에 있어서 價值基準의 전재를 명시해야 하고 학문상의 障壁을 초월한研究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는 經濟的 要因을 內的·外的인 要因으로 区分한다거나 經濟的 要因만을 우선하는 방법을 배척하고 社會的 要因들이 相互作用하여 效果를 發生한다는 循環的·累積的 因果關係를 중시하였다. 따라서 現實的인 經濟分析이 되기 위해서는 관련 있는 諸要因을 分析해야 하며 一般經濟理論은 社會理論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그는 理論의 精巧化 보다는 有用性을 중요시하였고 低開發國은 計劃化에 의해 福祉國家를 건설할 수 있으며 發展計劃은 經濟開發의 累積化에 대한 청사진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어느 한 國家만의 計劃化는 國際的 分裂을 조장할 뿐이고 福祉世界를 建設하기 위해서는 범세계적인 國際協力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¹⁶⁾.

특히 그는 1930年代 世界 恐慌의 打開策으로 스웨덴 政府의 公共支出의 增大 등 恐慌對策을 케인즈 보다 먼저 같은 理論을 提示하고 주장하였으며 開發途上國에 대한 先進國의 援助가 開發途上國 經濟에 實質的으로 기여하지 못하였고 先進國 經濟學者들의 開發理論 또한 開發途上國의 開發成果에는 기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3. 社會思想

뮈르달은 社會科學에서 價值의 問題가 오랫동안 관심사였다. 그에 의하면 전통적으로 經濟理論은 價值와는 관계없이 獨立的으로 存在한다고 보았으나 사실은 價值前提를 숨기거나 形而上學的 概念속에 도피시켰을 뿐이라고 하면서 經濟學者가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것은 手段이 아니라 目的이므로 經濟學者는 확실한 價值前提 위에서 實證的 理論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그는 價值前提를 옛날부터 계승되는 自由, 平等, 博愛¹⁷⁾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때로는 政治的 民主主義와 機會均等¹⁸⁾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뮈르달의 價值前提是 언뜻 보기에는 매우 평범하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西歐近代市民社會의 民主主義的 理念을 계승하면서 改革을 追求하는 現代의 改革派의 새로운 理念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그는 近代市民社會의 民主主義的 理念의 계승자이며 改革者인 동시에 社會民主主義者이다. 또한 그는 한편으로는 現代保守主義의 입장을 代表하는 낡은 형의 自由主義와 대립하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全體主義的인 社會統制를 주장하는 急進主義와 대립하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뮈르달은 자신과 반대입장의 낡은 형의 自由主義를 비판하는 한편 平等主義의 주장을 바탕으로 하여 計劃化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自由

16) 주명건, 前揭書, pp. 490~491.

17) Myrdal, K. G., Beyond the Welfare State(Yale Univ. Press, New Haven, 1960), ch. 1.

18) Myrdal, K. G., Economic Theory & Underdeveloped Regions(London : Gerald Duckworth & Co. Ltd. 1957), Preface.

主義의 전통이 產業的 상층계급의 입장으로 變質된 것에 항의하고 民主主義的政治過程에 의해서 平等化를 追求하는 세력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따라서 이러한 政治勢力에 의해 국가 간섭이 증대되고 있는 社會環境에서 意識化된 計劃化가 필요하다고 그는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社會는 歷史的 文化的인 배경이 相異하기 때문에 計劃化는 다양한 類型을 갖게 되고 西歐諸國의 經濟發展은 利己心과 限界理論이 결합한 經濟的 自由主義에 의하여 達成되었다¹⁹⁾는 것이며 그것은 國家干渉과 保護主義를 거쳐서 점차 規制的인 것으로 變質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그는 밝혔다.

또한 民主主義의 原理는 社會的인 意思決定에 各個人을 參여시키고 民意를 尊重하는 1人1票로 具體化 되었지만 經濟成長이 進展됨에 따라 오히려 不平等이 擴大되어 왔다²⁰⁾고 보았다. 그리고 經濟的 自由主義에서 契約의 自由 財產權의 不可侵 自由競爭 등의前提는 規制의 대상이 되었다. 이와 같은 國家의 간섭이 있다는 것은 福祉國家의 未成熟을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福祉國家로 發展하기 위해서는 組織의 分權化를 통한 管理의 實현과 國가의 간섭을 줄이는 政策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뒤르달은 주장하였다²¹⁾.

그는 平等主義의 입장에서 計劃化的 필요성을 주장하는 동시에 그 計劃화가 지향하는 繩極의인 目標는 市民의 自由로운 社會이므로 많은 사람들은 福祉國家에서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²²⁾라고 밝혔다.

이와같이 그는 전통적인 市民社會에서 낡은 형의 民主主義를 批判하는 近代 市民社會의 民主主義의 理念의 繼承者이고 改革者이다.

IV. 뒤르달의 아시안 드라마

1. 아시아 진단

뒤르달은 1968年에 出刊된 「아시안 드라마」²³⁾의 주된 관심은 低開發國의 經濟構造 및 發展의 問題에 있으며 이 책은 인도에서 필리핀까지 주로 南아시아 나라들을 對象으로 1960年代의 政治的·經濟的構造를 植民地였던 과거를 배경으로 분석하였다. 그는 南아시아의 一般的인 特徵은 泰國을 제외한 나머지 國家들은 모두 植民地 經驗이 있고 植民統治의 期間은 相異하나 모두가 長期間統治되었다는 共通點이 있다. 또한 유일한 泰國도 植民主義의 그늘에서

19) 李海珠(1991), 社會經濟思想史, 經世院, pp. 436~437.

20) Myrdal, K. G., op. cit., p. 107.

21) 李海珠, 前揭書, p.437.

22) Myrdal, K. G., Beyond the Welfare State, ch. 6.

23) Myrdal, K. G., Asian Drama, An Inquiry into the Poverty of Nations(New York : Pantheon, 1968).

벗어나지 못하고 植民主義的 간섭에 의하여支配되었다²⁴⁾.

이들 모든 國家와 國民들은 國家的團結을 이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相對的으로 볼 때 求心力 및 遠心力의 강도는 국가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또한 南아시아 諸國은 經濟的인面에 있어서도 유사한 점이 있다. 이들 諸國들은 빈곤한데 國土가 크고 人口가 많은 國家일수록 더 빈곤하다. 社會的 및 經濟的 不平等은 극단적이며 一般大衆의 生活水準은 第2次大戰 이전보다 낮거나 높다해도 절대적 수준은 매우 낮다. 즉 貧困과 不平等의 현상은 共通的이고 一般的이다. 經濟發展에 있어서 이러한 要因들을 극복하기는 매우 힘든 것이며 이 장애요인들은 대부분 既存制度 및 態度의 非效率性·硬直性 등에 기인한다²⁵⁾. 이러한 事實들은 위르달의 관심사로서 이들 국가들을 分析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南아시아 諸國은 戰後殖民地에서 解放된 新生國으로써 政治的獨立과 함께 自立經濟를 目標로 한 급진적인 改革을 推進하였으나 집권층의 부정부패와 무능으로 인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不信과 敵對感까지 사게 하였다고 한다²⁶⁾. 이들 低開發國은 立法과 法律施行에 취약성이 많은 軟性國家인데 이러한 社會에는 태만과 방종이 全社會에 만연되어 있다. 따라서 부정부패 일소를 위한 투쟁이 社會全域에서 증가되고 있는데 이것은 보다 높은 평등을 위한 것이다.

또한 南아시아 諸國의 經濟的現實은 일찍이 開發國이 經驗한 바와 같은 그러한 漸進的인 변화가 아니라 외부에서 급격히 近代化의 물결이 밀어닥치고 있다. 여기에다 폭발적인 人口增加로 社會는 수세기 동안 정지 상태에 있으며 近代化의 要素는 社會에 분산되어 있다. 이렇게 分散되어 있는 近代化의 요소는 改革과 計劃化를 통하여 成長의 基礎가 되어야 한다고 위르달은 주장하였다. 또한 이들 諸國은 소수 집권층과 다수의 무지한 대중으로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權力의 集中에 따른 특혜 및 부정부패가 성행하고 있으므로 計劃化는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하기 쉽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들 집권층은 國民經濟全般에 대한 計劃化 보다는 展示效果에 치중한 近代工業의 건설을 서두르는 傾向이 있는데 이는 항상 資本不足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勞動力과 人口問題에 있어서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는 低開發國의 不平等을 심화시키고 成長과 發展을 저해한다고 하면서 인구폭발을 막기 위해서 家族計劃運動의 전개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위르달은 平等의 實現을 위해서는 農地制度와 教育制度 등을 改革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²⁷⁾.

24) Ibid., pp. 859~860.

25) Ibid., pp. 1862~1864.

26) Ibid., pp. 946~947.

27) Ibid., p. 1863.

以上과 같이 南아시아 諸國의 現實的인 解決 과제는 經濟發展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發展 앞에는 貧困이 開發 앞에는 不平等이 놓여 있다. 이것이 南아시아의 현실 문제인데 貧困과 不平等의 要因은 經濟的인 問題 뿐만이 아니라 政治·社會·文化 등 諸要因에 의한 복합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南아시아의 現實問題 解決을 위해서는 이들 諸要因의 相互作用過程을 파악 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社會的·經濟的 制度의 改革과 社會規律을 항상시키지 않고서는 貧困과 不平等을 극복하고 經濟發展을 이룩할 수 없다는 것이 뷔르달의 南아시아에 대한 진단이다²⁸⁾.

그러나 이러한 現實이 軟性國家인 南아시아 諸國의 悲觀主義 혹은 敗北主義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諸國이 긴박한 현실을 直觀하고 勇氣와 信念과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탈출하려고 노력한다면 이 地域은 새로운 未來를 創造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 한 것으로 여겨진다.

2. 貧困의 挑戰

뷔르달은 아시안 드라마의 後篇으로 출간된 貧困의 挑戰에서 低開發國의 發展을 위해서 그들 諸國이 할 일과 이를 도와주는 開發國의 責任을 강조하고 있다. 즉 低開發國은 思想은 있되 國民的 統一이 없고 計劃은 있되 所得 階差는 날로 增加한다. 이러한 암담한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低開發國이 가지고 있는 農村의 유류노동력을 活用하는 自助努力이 무엇보다 重要하고 權力이나 富의 편재 등 기득권의 제거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土地改革을 통해서 土地와 人間간의 새로운 관계의 정립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低開發國이 革命 없이도 改革을 實現할 수 있는지가 문제시 되는데 뷔르달은 低開發國의 改革의 實現性 여부는 이들 저개발국에 대한 開發國의 政策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하면서 現在의 南아시아는 매우 유동적이므로 開發國은 제2의 베트남을 방지하기 위해서 平等·自由·博愛의 정신을 되찾아서 福祉國家의 범위를 世界에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開發國은 원조를 감소시키지 말고 더욱 증가시키되 援助를 援助供與國의 이익이 되도록 政治的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國家間의 조화를 위해 資源이나 技術 뿐만이 아니라 貿易·金融 등 對外經濟政策上의 國民主義的 要素가 타파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어느 特定한 입장이나 思想에 치우치지 않고 全人類의 福祉向上을 바라는 福祉國家論者로서의 일관된 思想이라고 할 수 있다.

28) 李海珠, 前揭書, pp. 454~455.

V. 結論

이상에서 스톡홀름學派에 관하여 뮤르달을 中心으로 살펴 보았다. 따라서 이를 要約하여 結論을 지어보면 다음과 같다.

뮤르달은 1974年 노벨經濟학상을 수상하였고 빅셀 등의 영향을 받아 經濟의 累積的 過程을 중요시하였으며豫想·事前的·事後的 등의 概念을 도입하고 巨視的 動學分析에 노력하여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미국의 貧困문제와 南아시아의 貧困問題 등을 分析하는데 있어서도 理論的인 초석이 되었다.

그는 低開發國의 發展을 위한 開發國의 責任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의 價值前提인 自由·平等·博愛의 要求에 기초하고 있다.

그는 低開發國이 할 일과 이를 돋기 위한 開發國의 책임을 밝히고 있다. 低開發國은 思想은 있으나 國民的 統一이 없고, 計劃은 있되 所得隔差는 날로 증가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現實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低開發國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可用資源인 農村의 유휴노동력의 活用에 의한 自助努力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權力이나 富의 편재 등 기득권익을 제거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특히 그는 土地改革을 통하여 土地와 人間간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야 할 것이며 低開發國이 革命 없이 改革을 實現하기 위해서는 低開發國에 대한 開發國의 政策의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였다. 또한 開發國은 지금까지의 援助를 줄이지 말고 증가시키되 援助量 援助供與國의 利益이 되도록 政治的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國家間의 조화를 위해서는 資源이나 技術의 援助만이 아니라 貿易·金融 등 諸分野에 걸친 對外經濟政策上의 國民主義的 要素가 타파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생각에서 特定한 입장이나 思想에 치우치지 않고 全人類의 福祉向上을 바라는 福祉國家論者의 일관된 사상이 흐르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은 뮤르달이 理想主義者이며 改革論者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理論은 긍정적인 측면과 동시에 부정적인 측면도 내포하고 있다. 즉 그의 理想的인 價值前提가 現實的인 基礎 위에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를 理想主義者로 규정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政治的으로 볼 때 그의 理論은 非現實的인 면도 있다. 또한 南아시아 諸國의 現實的인 과제에 있어서 각 要因 간의 相互關係가 充分히 說明되지 않고 있으며 低開發國의 社會經濟構造를 全體的으로 어떻게 規定하고 파악할 것인가 하는 점도 또한 불명확하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그의 理論과 政策的 提案은 어느 하나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면서도 그 現實的可能性에서는 회의감을 저버릴 수 없다.

그러나 뮤르달의 모든 提案은 그것이 비록 非現實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모두 實現되

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方法과 見解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높이 평가되고 있다. 또한 低開發國의 발전을 社會·經濟構造의 變革으로 파악하고 既存制度에 대한 改革의 필요성을 認識할 때에 오늘날 低開發國들[이] 직면하고 있는 諸般問題의 해결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參 考 文 獻

1. 朴宇熙(1980), 經濟學說大觀, 博英社.
2. 李海珠(1991), 社會經濟思想史, 經世院.
3. 鄭道冰(1980), 國際經濟, 博英社.
4. 주명전(1993), 경제학사, 박영사.
5. 崔文煥(1959), 經濟學史, 日新社.
6. Cassel, G. (1922), Money and Foreign Exchange after 1919, London.
7. Hayek, F. V. (1982), Monetary and Trad Cycle.
8. Mises, L. E. V. (1912), Theorie des Geldes und Umlaufsmittel.
9. Myrdal, K. G., Asian Drama. An Inquiry into the Poverty of Nations (New York : Pantheon, 1968).
10. _____, Beyond the Welfare State, ch. 6.
11. _____, Beyond the Welfare State (Yale Univ. Press, New Haven, 1960), ch. 1.
12. _____ Economic theory & Underdeveloped Regions (London : Gerald Duckwo-
rth & Co, Ltd. 1957), Preface.
13. Robbins, L. (1935), Lectures on Political Economy, Vol. 2.

華僑의 資本形成過程과 經營戰略*

이 덕 훈**

目 次

I. 시작하는 말	2. 화교의 푸쉬(push) 요인
II. 개념과 연구분석률	IV. 동남아에서의 华僑의 등장배경요인
1. 화교의 정의	V. 화교 자본의 형성과정
2. 본 연구의 연구방법 및 분석률	1. 화교 자본 형성의 산업분야별 특징
III. 화교의 해외이주요인	2. 화교 자본의 성장과 경영전략
1. 화교의 풀(pull) 요인	VI. 맺는말

I. 시작하는 말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등장한 말이 “21세기는 아시아·태평양의 세기”라는 말이었다고 하겠다. 아·태지역의 주역은 미국, 일본, NIES(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ASEAN(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부르네이, 베트남), 중국 등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시대를 태평양시대로 부르는 것도 가능하나 그 중심축이 미국으로부터 서태평양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시아·태평양시대로 부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주역으로서의 아시아세기의 주역에는 중국인의 등장을 빼놓을 수 없는데 중국인의 경제성장에는 ASEAN 각국의 화교자본이 대만, 홍콩의 자본과 경합하면서 중국에 투자하여 이것이 중국의 경제성장에 커다란 역할을 하여 중국의 부상을 느끼게 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화교는 국가단위로 보면 소수파이고 국적도 현지국적을 취득한 경우도 많아 눈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지역전체로서는 다수파를 형성하고 본인들의 네트워크 속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지역의 특수성을 생각하면 중국, 홍콩(반환되었음), 대만 그리고 화교에

• 이 논문은 1996학년도 학술진흥재단 공모과제 연구비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다. 본 논문작성을 위해 필자는 동남아를 3회 방문하였다. 방문시 필자에게 협조해 주신 싱가포르 中華總商會의 Chan That Leong 씨, 한국 무역진흥공사(KOTRA)의 싱가포르지사의 윤성근 관장, JETRO(일본무역진흥회) 싱가포르 가도고지 소장, 태국의 JETRO 방콕의 하야세마사토시 차장, 방콕 한국무역진흥공사(KOTRA)의 최공립 관장, 인도네시아의 PT Segoro Ecomomulo Textile 그룹의 Ari peris 사장과 JETRO, Jarkarta의 수가요지씨, 인도네시아 국립대학 유학생인 하야시유타카군, 홍콩의 香港城市大學의 데이몬 드라몬드 교수 등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 한남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의해 거대한 경제권이 형성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러한 영향력 때문에 본토의 중국인 말고도 ‘드러커’는 21세기는 화교의 시대라고 할 만큼 해외중국인의 시대, 해외중국인의 기업성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화교의 기업성장은 중요한 또 하나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화교들의 경제적 지배에 대한 동남아제국의 반응은 현지인 우대정책인 인도네시아의 Pribumi정책이나 말레이시아의 Bumiputra정책 등으로 이어져 토착사회의 웅집력과 정체성을 갖게 하였다.

이러한 사고하의 동남아시아 각국은 화교의 경제적 우위에 대한 반발로 말레이시아의 1965년 5월 총선거사건, 인도네시아의 1965년 9·30사건 등을 계기로 반화교사상이 내재하였다. 1994년 다시 인도네시아에서 폭동이 일어나 화교들을 회생양(scape goat)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처럼 양면성을 갖고 있는 화교기업에 대해서는 논자에 따라 그 접근을 달리 하고 있다.

화교를 평가할 때 화교계통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역사적인 회생자로 보는 견해, 동남아시아 각국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식민지시대의 매판자본으로 발전하여 동남아 발전에 회생자로 보는 견해, 이에 절충한 동남아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로 보는 견해 등으로 나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화교의 개념을 내리고 어떻게 해서 세계사에서 화교가 등장하게 되었나 하는 등장배경과 화교의 Pull요인과 Push요인을 살펴 보기로 한다. 또한 화교자본의 형성과정에서 나타난 그들의 성장과정을 통해 화교기업의 경영전략을 살펴보고 화교기업의 자본형성과정을 통해 나타난 그들의 경영특질을 고찰하여 화교기업의 진면목을 살핌을 그 목적으로 한다.

II. 개념과 연구분석틀

1. 화교의 정의

화교의 위상이 커지면서 화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화교에 대한 정의와 개념을 논할 경우 확실하게 논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논자에 의해 개념이 다를 수가 있으며 “중국국적을 갖고 있는 자”로 보는 견해와 국적보다도 “중국인의 혈통을 가진 자”로 보는 견해로 나뉘어지기 때문이다. 국적을 중심으로 보는 경우에는 중국적과 거류국적의 이중국적을 갖은 자는 화교가 아니라고 해석하며 거류국 정부는 대개 이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혈통, 이름, 언어, 문화 등의 중국적 요소만으로 화교를 구분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왜냐하면 본인의 현장조사에 의하면 화교의 후손인 프라나칸(Perana Kan), 바바(Baba) 등의 華人들은 중국국적보다는 인도네시아인, 말레이인 등 거주국적을 취득하여 본

인들도 화교라기보다는 거주국인의 중국계라는 것으로 살아가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 중국어를 하지 못하는 화인 집단들 중에서도 중국문화나 중국식 이름 등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화교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는 자신의 정체성¹⁾에 의해 위치되어 진다고 하겠으며 화교에 대해 좀 더 정확히 연구하려면 역사적인 접근으로 화교가 세계사에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가를 살펴보면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華僑를 단어적으로 설명하면 “華”는 中華의 華이며 僑는 임시 사는 곳, 여행하는 신분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화교란 일시적으로 국외에 여행하여 거주하는 중국인의 의미가 된다. 다시 말하면 “지금에는 외국에 임시 살고 있지만 성공하면 금의환향해서 갈 사람들”이라는 뉴앙스를 품고 있어 화교를 영어의 overseas Chinese라는 의미만으로는 정확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세계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보편적 개념으로서의 화교는 어느 거주국에서나 중국 국적을 가진 채 해외에 임시로 살고 있는 중국인을 華僑²⁾로 정의한다 또한 광의의 개념으로서의 화교는 중국 국적과 관계없이 거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중국인(속칭 華人)을 칭하며 보편적 개념인 화교와 구별된다³⁾.

그러나 여기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국적, 혈통, 문화성 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자신이 화교(화인도 포함)라는 자기인식이 중요하며 또한 중국적 특징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따라서 필자는 華僑의 정의를 국적과 혈통을 포함한 것은 물론 문화적 특징까지도 포함하여 “제국주의적 단계에서 대규모적으로 해외에 이주한 중국민족 및 그 자손으로 거주민족과 동화했거나 또는 중국민족으로서의 특징을 잊어버리지 않고 거류국에 살고 있는 중국계의 사람들⁴⁾로 정의하였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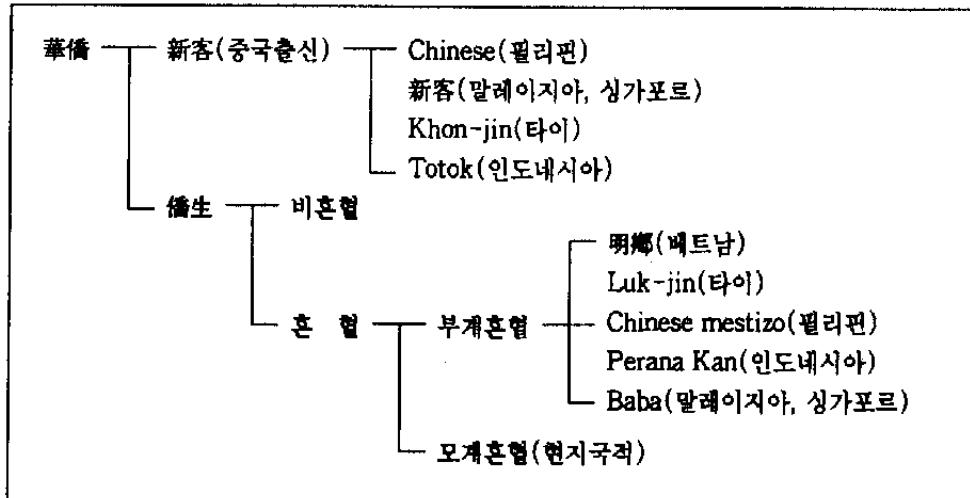
1) G. William Skinner, "Overseas Chinese in Southeast Asia",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January, 1959. p. 137.

2) 화교란 단지 일시적으로만 나라를 떠나 있으며 언젠가는 중국으로 되돌아 갈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이기도 하다.

3) 국적을 중심으로 화교를 구분하는 것은 중국대륙의 입장이며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들의 정의에 따르면 중국국적을 갖고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인을 華僑, 현지의 국적을 갖고 있더라도 중국의 고유 문화, 생활습관(chineseness)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자를 華人, 대만, 홍콩, 마카오인들을同胞로 구별하고 있다. 한편 대만은 이중국적을 인정하고 있어 중국계의 혈통을 가진 자를 화교로 간주하고 있다.

4) 참고, 화교경제의 생성과 경제발전, 경제연구 제6집, 한남대학교 경제연구소, 1996.

5) 물론, 거류국 정부는 중국국적을 갖고 있는 자를 화교로 정의하고 있으며 중국인의 혈통과 관계없이 귀화한 자는 거류국민으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화교란 중국인의 혈통을 갖고 있는 자로 보는 견해도 모순점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국적을 중심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화교들 가운데에 이중국적을 갖고 있는 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도 논의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자료 : 이덕훈, “華僑經濟의 生成과 經濟發展”, 韓南大學校 經濟研究所, “經濟研究” 第6輯, 1996. 2. p. 368.

〈그림 1〉 국적과 혈통에 의한 화교·화인의 범위.

이러한 정의에 대해 반론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왜냐하면 이미 12세기경에 북위사람들이 10년 이상을 해외에서 거주한 것을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계자본주의가 제국주의적 단계에 진입하기 전에도 중국인의 해외이주는 행해졌던 것이다. 중국인의 해외이주는 제국주의적 단계라는 풀(pull)요인만이 아닌 푸쉬(push)요인으로서 중국에도 그 요인이 존재해 있던 것이다⁶⁾. 그러나 역시 제국주의적 단계 진입 전에 화교의 대량 유출이 이루어진 점과 현지 여성들과 혼인에 의해 형성된 혼혈집단은 제국주의적 단계 진입 전(15, 17세기)에 이주한 혼혈중국인들은 생존을 위해 중국어 대신 현지어를 사용하였으며 중국인으로서의 고유한 문화, 전통조차 상실한지 오래되므로 거류국에서 조차 이들에 대해서는 문제시 삼지 않았다”(그림 1 참조). 따라서 “제국주의적 단계에서 이주”의 의미에 대해서는 문제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된다.

2. 본 연구의 연구방법 및 분석틀

본 연구의 주제가 화교자본이므로 화교기업, 화교경영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지금까

6) 중국인의 해외이주에 대해 화교를 단편적으로만 보지 말고 중국의 국내이주와 관련해서 보는 연구도 많아지고 있다. Ho Pingti, studies on the Population of China, 1378~1953. Harvard University Press, 1954.

7) 중국에서 태어났으며 중국어를 사용하는 자를 신거(新客)라 하고 차오승(華生)은 부계혼혈로 현지에서 태어난 자를 지칭한다.

지의 연구는 화교자본이나 화교기업의 성공요인을 다룰 경우 문화적 요인으로 규정하여 중국인의 특성, 가치관과 문화에 연결시켜 이해하려는 입장⁸⁾이 선두그룹을 유지해 왔다. 한편 화교자본의 성장요인을 주어진 구조적 환경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어 설명하거나(요시하라 구니오, 1989), 화교자본을 식민지 통치구조가 창출해낸 부산물(purcell, 1965)로 본 구조요인파⁹⁾도 그 뒤를 잇는다.

그러나 화교자본의 형성과정 중 특히 화교기업의 경제적 성공이나 한계를 중국인의 전통, 문화로 보는 요인과 식민지통치의 유산과 국제정치·경제질서의 재편과 변화과정으로 보는 구조요인에 어느 정도 이해가 가며 수긍할 부분도 있다. 그러나 화교란 복합적인 요인의 산물이며 화교자본의 거대 자본화 과정은 1960년 이후의 거류국의 공업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화교의 자본 형성과정에 중요한 시기였던 식민지시대에는 중간자적 역할을 하여 산업자본보다는 상업자본의 역할이 강했기 때문에 거대자본이 이루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점과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고집해 온 중국인의 문화적 특성과 연결된 가부장적 기업으로는 성장의 한계를 초래하였기 때문이다¹⁰⁾.

따라서 화교자본의 성장요인은 오히려 환경적용을 하기 위한 그들의 복합적 요인으로 보아야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화교자본의 형성과정을 정확하게 살펴보기 위해 그들의 環境適應的인 면을 중심으로 접근하려고 한다. 특히 화교자본의 형성과정을 정확히 살펴보기 위

8) 이에 대한 견해를 주장하는 학자는 Nonini(1983), Barton(1983), Clad(1989), Redding(1990), Heng (1992) 등이 있다.

- Nonini, D. M., The Chinese truck transport Industry of a Peninsula Malaysia market town, In Lim and Gosling(eds) The Chinese in Southeast Asia, Volume I, Maruzen Asia, Singapole, 1983.
- Barton, C. A., Trust and credit: Some observations regarding business strategies of overseas Chinese trader in South Vietnam in L, Lim and P. Gosling(eds) The Chinese in Southeast Asia, Volume I, Maruzen Asia, Singapole, 1983.
- Clad, James, Behind the Myth : Money and Power in Southeast Asia. London: Grafton, Coppel, Chares A. 1989.
- Redding, S. Gorden, The Sprit of Chinese Capitalism. Berlin and Newyork : de Gruyter, 1990.
- Heng, P. K, The Chinese business elite of Malaysia, in R. Mcvey(ed.) Southeast Asian Capitalist, Southeast asia Program, Cornell University, Ithaca, New york, 1992.

9) 이에 대한 견해를 주장하는 학자는 다음과 같다.

- Purcell, Victor, The Chinese in Southeast Asia, Oxford University Press, 1965.
- Furnivall, J. S. Netherlands India : A Study of Plural Econom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7.
- 游仲勳, 東南 アジアの華僑, アジア 経済研究所, 1970.

Yoshihara Kunio, The Rise of Ersatz Capitalism In Southeast Asia,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10) 또한 식민지자본의 종속된 화교자본으로만 볼 경우에는 식민지를 겪었던 동남아시아 각국의 정치사관과도 연결되게 볼 수도 있다. 또한 화교를 국내자본가로 보지 않는 견해와 식민사관적인 견해로 종속적으로 볼 수 있다.

해 화교의 풀요인, 푸쉬요인 그리고 화교의 등장·배경요인을 설명하기로 한다.

또한 화교자본의 형성과정을 초기 꾸리시절부터 아세안 각국의 독립 후 어떻게 적용, 발전하였는가를 산업분야와 기업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III. 화교의 해외이주요인

1. 화교의 풀(pull)요인

화교가 제일 많이 거주하는 곳은 동남아시아라 할 수 있다(중국의 해외교포 중 동남아시아가 2,340만으로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의 화교는 식민지시대에 본격화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어떠한 이유에서 이처럼 대량의 화교가 존재하게 되었는가?

우선 동남아시아는 고대부터 아시아 내륙부와 섬들을 잇는 말레이반도, 수마트라, 보르네오 등을 중심으로 향신료를 수집하는 유럽의 동방무역에 대한 해상교통의 요충이었다. 16세기의 대항해시대에는 유럽 강국들의 통상로를 확보하기 위한 각축전이 끊이지 않았다. 1511년 포르투칼이 말라카를 차지하고 1640년 네덜란드가 다시 말라카를 점거하였으며 1842년 英蘭조약에 의거 다시 영국이 차지하게 되었다. 16세기 말기에 스페인에서 독립한 네덜란드는 재빨리 향료무역에 진출하여 동인도회사(East India Company, Dutch, 1602~1798)를 설립하여 1613년에는 자카르타를 확보, 안봉에서 영국을 말라카에서 포르투칼을 축출하여 해상교역루트의 지배를 확립하였다. 그 후 1755년 왕국의 분열을 틈타 샤바전역을 지배하에 놓았다.

이러한 예를 보더라도 이 지역의 각축은 국가, 사람, 영토의 정복이 아니고 무역항 등의 해안 주요도시를 중심으로 거점도시의 지배에서 시작된 것이라 할만큼 동남아시아는 해상무역의 중심지였다.

그리고 이 지역이 세계최대의 주석매장량을 비롯, 고무재배에도 최적지임이 들어나자 자본 투자가 시작되며 식민지 개발에 힘쓰기 시작했으며 강제재배제도¹¹⁾를 통하여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그러나 당시의 동남아시아 사회는 비교적 소규모의 집단과 농업과 어업을 영위하는 자급자족적인 사회안에서 살아왔다. 종주국인 식민지 정부가 농민을 전통적 사회에서 일탈시켜 풀

11) 강제재배제도(Culture system)는 각 촌락의 경지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곳을 식민지정부가 지정하는 커피, 담배, 사탕수수 등의 상품작물을 재배시켜 이것을 일방적인 자정가격으로 사들이는 제도를 말한다. 이렇게 사들인 물건을 준정부기관인 네덜란드통상회사(Nederlandsch handelsmaatschappij, NHM)를 통해 수출하였다. Steinberg David J. (ed), In search of Southeast Asia : A Modern History, Praeger, 1971,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85. pp. 152~153.

랜테이션이나 주석광산의 노동자로서 강제적으로 일을 시킨다는 것은 전통적 사회를 근본부터 파괴하는 것이 되므로 식민지 정부로서는 위험이 닥치므로 시도하기 어렵다.

따라서 전통적 사회를 지키며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남아시아 이외의 근접 지역에서 노동자를 데리고 오는 수 밖에 없다. 이래서 등장한 것이 화교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제국주의적 단계란 무엇을 가르키는 것일까? 제국주의적 단계란 유럽을 중심으로 나타난 근대화가 아시아로 향해져 팽창된 단계에서 식민지 개발과 함께 형성된 것을 말한다.¹²⁾

물론 노예제도의 폐지 직후의 과도기에는 모든 나라가 발전하는 생산력에 대응하는 새로운 노동력을 보충, 획득하기 위해 곤란에 직면해 있었다. 당시 외국 노동력의 수입은 인도, 말타 등이 주를 이루었으나 우수한 노동력을 갖고 부자런한 중국인 노동자가 지속적인 노동력의 보충원으로서 주목을 받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제국주의 열강들은 노예에 대응한 노동력을 필요로 하였고 인구가 많은 중국이 그 대상이 되었다.

1820년대 유럽의 교회에서는 인권적인 면에서의 혹인노예제도에 반대하는 내부고발이 시작되었고 노동력의 효율적인 면에서 보면 사망률도 높고 농률이 무척 낮기 때문에 새로운 인적자원이 필요했던 것이다.¹³⁾

근대 자본주의가 세계적 규모로 확장되어 가고 있는 중에 네덜란드나 영국들이 廣東省 등의 화남연해지방의 중국인을 납치, 인신매매, 계약이민 형태의 신 노예인 꾸리무역으로 변해져¹⁴⁾ 동남아, 호주, 북미 등의 광산 일부, 철도시설 노동자 등으로 이용되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편전쟁을 전후로 중국의 사회, 경제의 해체과정과 동남아에 있어서의 유럽 세력을 중심으로 한 식민지 개발과의 연동하에 노예 노동력을 대신하여 화교사회가 형성되어 진 것이다.

2. 화교의 푸쉬(push)요인

“바닷물 닦는 곳에 화교가 있다”는 말이나 “연기가 나는 곳에 화교가 있다”는 말 등은 화

12) 그러나 17세기의 네덜란드령 인도(현 인도네시아)에서는 복간성이나 광동성의 해안을 기습하여 노예사냥을 행하여 자기들의 식민지에 끌고가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였을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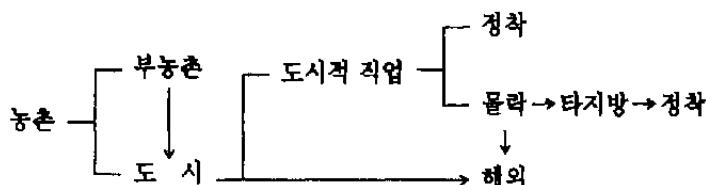
13) 식민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던 영국이 1833년 노예제도의 폐지를 단행한 것을 계기로 1870년까지 포르투칼, 스페인, 네덜란드 등 거의 모든 국가가 노예제도의 폐지에 동행하였다. 이 노예제도의 폐지는 생산력의 발전이 필연적으로 불러 일으키는 사회적 변혁과 동시에 일어났다고 하겠다. 특히 서구식 근대화에서는 노동자의 인격까지 소유하는 노예제도보다는 자유스로운 임금노동자의 고용방식이 근대적 경제체제에 맞는 시스템이었다고 하겠다.

14) 계약이민의 초기시대에는 노예로써 매매는 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계약제도하에 해외에 이출된 중국인 노동자가 가축처럼 취급되어 매매된 것은 sailing pig라는 속어가 남아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계약이민의 꾸리들은 노예로써는 매매되지 않았지만 노예처럼 또는 노예보다도 더 심한 가축처럼 매매되었던 것이다.

교외 글로벌적인 전개와 해외적용을 형용하는 말이라 할 수 있는데 중국사에서의 해외이민은 의외로 그 역사가 짧다. 중국인의 동남아시아의 이주역사는 고대로부터라고 전해지고 있으나 기록으로는 북송 말의 1119년 萍州可談 2권이다¹⁵⁾. 그러나 이것보다도 훨씬 전에 중국인의 해외이주는 시작되었으며 논자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하기도 한다. 臺灣에서 발행한 華僑志에서는 華僑移植簡史에서는 唐나라代까지를 선구시대로 하고 그 다음은 宋, 元, 明, 清의 각 왕조별로 시기를 구분하고 있다. 또한 王瑜는 화교의 호칭의 변천에 초점을 맞추어 3단계 4시기로 구분하고 있다. 즉 3단계란 군주시대, 민국시대, 국공시대로 나누고 화교의 명칭도 제1시기인 무명의 시기, 제2시기를 唐인의 시기로, 제3시기(2단계)를 華僑의 시기로 그리고 제4시기(3단계)를 華人의 시기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구분은 화교의 호칭 또는 화교의 발생과 관련이 있는 구분이라 하겠다¹⁶⁾.

그렇다면 화교이민의 푸쉬요인은 무엇인가?

화교이민의 기원과 실태에 관한 연구는 많기 때문에¹⁷⁾ 그러한 예를 종합하여 논하면 중국에서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국내이주를 한 경우도 많다. 우선 그들은 농촌에서 부농촌으로, 부농촌에서 적응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도시로 향하여 도시적 직업을 택한다. 또한 도시적 직업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일확천금을 노리기 위해 해외로 이주하게 된다(그림 2 참조). 물론 국내이주라 하더라도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해외이주와 같은 이문화생활이었다고 하겠다.



〈그림 2〉 중국인의 국내/해외 이주 과정.

여기에서 흥미스러운 것은 화교의 출신지방은 광대한 중국에서도 남방지방 예를들면 福建省, 廣東省, 海南島 등의 연안지방이 많다는 점이다. 복건, 광동 등의 화남중국인의 특성은 농

15) 成田節男, 華僑史, 養軒書院, 1941年, p. 49.

16) 이러한 중국인의 해외이주는 중국의 내란, 왕조의 교체, 정치적 요인에 의해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근대의 대량 유출이 이루어진 것은 王瑜의 지적대로 화교의 시기로 일컬어지는 제국주의의 중국침입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하겠다.

17) 游仲勳, 東南アジアの 華僑, アジア 經済研究所, 1973.

Furnivall, J. S., Netherlands India : A Study of Plural Econom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7.
Skinner, G. W. Chinese Society in Thailand : an analytical history, Cornell University Press, Ithaca(1957)

촌에서 인근농촌으로 경업노동 그리고 농촌을 떠나 도시로, 도시에서 타지방으로 그리고 해외이주라는 시간, 공간적 이동이 수세대에 걸쳐 적용되었기 때문에 해외이주, 적용을 선천적으로 용이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¹⁸⁾.

일반적으로 화교의 해외유출은 아편전쟁 후에 체결된 南京條約(1842), 天津條約(1858년), 北京條約(1860년)의 결과라 하겠다. 즉 청조는 아편전쟁 이후 20년이란 짧은 기간에 쇄국주의를 풀고 중국인의 해외이주를 처음으로 허가한 것이라 하겠다. 처음으로 허가했다는 말은 아편전쟁 이후에 허가 없이 해외이주가 자유스러웠으며 1858년에는 정부가 포고하여 해외이주의 중국인의 보호를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1860년이 되어서 북경조약에서 비로소 중국인의 해외이주를 허가했던 것이다.

해외화교무역의 전성기는 1850년에서 70년경으로 최초는 영국령 해협식민지(싱가폴, 괘낭, 말라카)개발의 필요성에 의해 동남아 각지에 유입된 것과 때를 같이 한다¹⁹⁾. 1873년의 차이나 리뷰는 마카오와 그 주변에 매년 1만명에서 2만명의 꾸리가 해외에 유출된다고 지적하였다²⁰⁾. 영국, 포르투갈, 미국, 네덜란드, 스페인 등이 1833년 이래 폐지된 노예제에 대신한 대체노동력으로서 화교를 선택함과 동시에 중국 국내에서도 생존하기가 어려운 빈농의 차남, 삼남 등은 일화천금을 위해 식민지 지배하의 새로운 개발지 동남아로 향하였던 것이다.

IV. 동남아에서의 華僑의 등장배경요인

이러한 대체노동력의 화교를 꾸리(苦力)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꾸리가 어떻게 동남아시아에 유입되었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꾸리²¹⁾의 전신인 화공(華工)이 동남아시아에 출현한 것은 1785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²²⁾. 말레이반도의 중앙부 괘낭을 점령한 영국은 이 섬을 개발하기 위하여 대량의 노동자를 필요로 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인을 강제적으로 투입했던 것이다. 이것이 동남아시아에 대량의 중국인이 노동자로서 투입된 최초였다고 하겠다.

18) Yong Mun Cheong, Asian Traditions and Modernization, TIME Academic press, 1992, pp. 15~16.

19) 1845년 경부터는 남북아메리카, 호주 등 신대륙으로 이주하였다.

20) Garth Alexander, The Invisible China, 華僑, 見えるる中國, 전계서, p. 15.

21) 꾸리(苦力)는 영어로 coolie, cooly, kooli라고 하며 유럽인들은 해외영토에서 일하는 중국인 노동자, 또는 인도인의 계약노동자를 이렇게 불렀지만 일반적으로 미숙련 노동자를 총체적으로 지칭하여 쿠리라고 한다. 꾸리(苦力)라는 말은 원래 중국어가 아니고 힌두어의 kuli, 타미르어의 kuli가 영어화하여 cooli로 되어 苦力으로 되어진 것이다. 예를 들면 남아프리카의 cooli는 지금도 인도인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된 것인데 이것 또한 인도의 식민지화와 함께 다른 식민지 경영에 의한 인적자원의 부족에 의해 나타난 것으로 제국주의적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2) 桶泉克夫 ‘華僑の挑戦’, The Japan Times, 1994, p. 65.

1800년에서 20년까지에 영국의 동인도 회사는 광주의 광주상관의 매판자본을 통하여 광동 성내의 황포(黃浦), 금성문(金星門), 마카오 등에서 수회에 걸쳐 노동자의 밀수출을 하여 말라카, 페낭 등에 보냈던 것이다. 그 가운데에는 중세의 칼리브해의 토리니다니토바고 등에까지 전매된 자도 있다. 1819년이 되자 영국은 싱가포르를 점령하여 더욱 많은 대량의 중국인 노동자(華工)을 필요로 했던 것이다²³⁾.

1800년 페낭에서는 계약화공의 전매가 보여진다. 당시의 시세로는 1년 계약의 화공은 은화로 30元, 동남아시아 각지, 광주, 마카오 등의 불법조직에 이용당해 출국하는 화공을 猪仔로 불렸다.

1923년 당시의 싱가포르의 래플즈(Raffles) 총독이 화공의 여비 20元을 상환기한은 2년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법률을 제정한 것을 보더라도 이러한 무역이 영국해협 식민지를 중심으로 행해진 것은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1830년에서부터 시작된 구미제국의 노예제도의 폐지의 움직임은 당연히 노예에 대용하는 값싼 노동력을 필요로 했고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적당한 노동자로서 중국인 노동자가 선택되기에 이르렀다.

〈표 1〉 페낭섬의 인구의 변화

년 도	화 교	말레이시아인	기 타	총 인 구
1818	7,858	12,190	14,952	35,000
1830	8,963	11,943	13,053	33,959
1842	9,715	18,842	12,342	40,499
1851	15,457	16,570	11,116	43,143
1860	28,018	18,887	13,051	59,956
1937	150,798	40,542	39,161	230,500

자료 : F. A. Swettenham "British Malaya, an account of origin and progress of British Influence in Malaya" 1929. 成田節男, "華僑史" 1941.

〈표 1〉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1818년의 페낭의 인구는 35,000명, 그 중 화교는 7,858인으로 22%를 차지하였으나 185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화교인구는 말레이인과 비슷해져 1851년에는 총인구의 36%인 15,457명을 기록하였고, 1860년대에는 총인구의 46.7%인 28,018명,

23) 1807년과 38년에 영국은 자본주의의 발전과 자유무역을 지키는 입장에서 노예무역 폐지를 선언했지만 북미에서는 대량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여 북미의 식민지 경영자는 동남아의 화공의 움직임에 눈을 둘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이를을 계약노동자로서 사용할 것을 생각했던 것이다. 해방되었던 흑인노예에 대신하여 화공이 노동시장에 투입되었던 것이다.

1937년에는 총인구의 65.4%인 150,798명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화교가 증가한 이유는 영국 식민지정부가 식민지정부의 노동력 부족 때문에 화교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라 할 수 있다.

1920년경의 말라야의 산업은 임업이 주였으며 주석과 그 밖의 광업이 그 다음이었다. 농업은 고무가 주요산물이었고 말라야의 경제를 좌우하는 것이었으며 그 수요는 세계적으로 확대되었다. 1899년 2,000에이커였지만 1923년에는 227만 5천에이커로 확대, 세계수요의 반을 차지하였다²⁴⁾.

고무농장의 25%가 중국인에 의해 경영되었는데 맨손으로 이주했던 이들이 얼마나 각고 노력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다. 1930년경 말레이 총독이었던 스웨터함(Swetter ham)은 영국령 말레이(British Malaya)에서 당시의 화교가 어떻게 세력을 확대했는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말라야 보호국은 주석이 중요한 수입원이기 때문에 정부는 적극적으로 이것을 원조해야 한다고 하여 1882년 회사를 조직하여 주석채광을 시작하였지만 실무는 전부 화교가 장악하고 있었다. 그 공적은 불멸의 빛을 말한 것이며 백인이 말라야에 오기 전에 이미 화교가 광업노동자로, 상인으로서 노력하여 개발하였다²⁵⁾.

중국인의 동남아시아의 이주는 19세기 제국주의적 단계에서 발생한 것이며 상술한 노예제도의 폐지와 관련이 깊다. 즉 노예에 대응하는 값싼 노동력을 필요로 했고 우수한 노동력을 갖고 있는 부지런한 중국인을 移民대상으로 하였다.

이민에는 자유이민(現單新客, 支拂移民)과 계약이민(餘單新客, 未拂移民)이 있는데, 그 중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은 缺費制(결비제)에 의한 계약이며 즉 꾸리(苦力)이었다.

<표 2>는 1801~1925년까지에 걸쳐 나타난 계약 이민의 추세를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 보

<표 2> **화교 계약 移民의 추이**

	1801~1850	1851~1875	1876~1900	1901~1925
총수(A)	320,000	1280,000	750,000	650,000
동남아시아(B)	200,000	645,000	700,00	425,000
말라야		350,000	360,000	125,000
동인도		250,000	320,000	300,000
필리핀		45,000	20,000	-
B/A(%)	62.5%	50.3%	93%	65%

자료 : 阿澤意, 「19世紀 成行的 契約華工制」, 歷史研究, 1963年 1期.

24) 劉繼宣著, 植村保三郎譯, 中華民族南洋開拓, pp. 193~194.

25) 劉繼宣, 順治書, pp. 253~254.

여지는 것처럼 1851~1875년까지가 128만명이라는 숫자의 계약 이민이 중국 본토에서 유출된 것이다.

이 시기를 꾸리무역의 시대라 할 수 있다. 꾸리 무역이 성황된 배경을 19세기 말 노예해방으로 새로운 노동력의 수요가 증대한 것과 또 북미의 철도 건설, 호주, 캘리포니아의 골드러쉬 그리고 말라야의 주석 개발이 각광을 받으면서 새로운 노동력 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870년대를 축으로 전환이 나타나는데 운송수단으로서 기선의 등장, 북미 대륙 횡단 철도의 탄생(1869) 그리고 유럽계 미국 이민 노동자에 의한 배화운동 등에 의해 이 지역의 꾸리 이주가 감퇴하며 그 결과 꾸리 이주는 신대륙에서 동남아시아로 전환하였다. 1851~1875년을 보더라도 동남아시아가 50.3%였는데 1876~1900년에는 93%로 증가한 것을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다고 하겠다.

현대의 이주 중국인 다시 말하면 현대의 화교라는 용어가 이 시기에 제국주의적 단계의 산물로서 형성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단계에 들어서면서 본격화된 것은 중국인의 대규모적인 해외이주인데 계속 증가 일변도의 길을 걸어 세계 대공황 직전까지 피크를 이루었다.

1920년에서 30년까지 10년간 200만 이상의 꾸리가 영국 보호하의 말라야 각지에 보내졌다. 1934년의 관계 각국의 조사에 의하면 영국령 말라야 및 보르네오 200만과 네덜란드령 동인도 123만 미국령 필리핀 10만8천을 합하여 334만이 중국국적 화교인구로 밝혀지고 있다. 단 이 숫자는 중국 국적자만의 통계로 혼혈인구는 제외되었다(표 3 참조). 네덜란드, 미국령 등 식민지의 혼혈인구는 함께 100만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것을 보더라도 1930년경이 해외화교의 절정기라고 하겠다.

〈표 3〉 1934년의 각 식민지의 중국국적화교인구통계

각 식민지	중국 국적 화교인구
영국령 말라야 및 보르네오	2,000,000
네덜란드령 동인도	1,233,000
미국령 필리핀	108,000
합계	3,341,000

자료：松本三郎外、東南アジアにおける中國のイメージと影響、大修館書店、1991. p. 162에서 작성。

그러나 이러한 화교이민도 1930년 이후에는 종말을 고한다. 그 이유는 첫번째 세계공황이 발생하여 세계 각지에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하여 화교의 필요성이 격감되어졌다. 두번째는 공업과 기술이 발전하여 성력화한 결과 대량의 노동력이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다. 세번째는

러시아 혁명으로 상징되는 사회주의 사상의 보급에 의해 화교무역과 화교학대에의 비판이 형성되어졌다. 이렇게 되어 인권을 무시한 형태로 진행되어진 서구식민지 자본주의의 이윤추구의 화생자로서의 꾸리무역의 현상은 종언을 맞게 되었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에 의해 정치혼란기격에 들어서면서 해외이주도 증가하였다.

V. 화교 자본의 형성과정

동남아시아의 경제적 거인으로서 성장한 화교자본은 동화, 적용을 거듭하면서 정치적 배제의 대가로 경제적 특권을 향수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화교연구의 시점은 전공업화 시기의 화교기업, 또는 기업가의 경제활동에 초점을 맞춰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물론 이 주장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전공업화시기, 즉 식민지시기의 화교자본 연구로서는 화교기업의 성장패턴 및 기업가들의 행동양식을 정확하게 보기 어려우며 식민지시기에 대기업으로 성장했던 기업들도 그 이후에 자취를 감추었으며, 그 반대로 조그만 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한 것을 보면 전 공업화 시기의 화교자본 연구만으로서는 정확한 화교자본의 형성과정을 간파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식민지시기의 화교자본의 형성과정 및 독립 후의 발전 과정을 통하여 화교자본의 형성과정을 살펴기로 한다.

화교자본을 살펴 보기 전에 우선 그들의 현재 위치를 살펴 보기로 한다. 태국 인구의 11%에 해당하는 화교가 태국자본의 81%를, 인도네시아에서는 인구의 4% 밖에 안되는 화교가 전체자본의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필리핀에서는 인구의 2% 밖에 안되는 화교가 전체자본의 50%를 차지하고 있다(표 4 참조).

〈표 4〉 아세안 각국의 화교자본

국 명	인 구(만명)	인 구(%)	자 본 비 율(%)
태 국	610	11	81
말 래 이 시 아	520	30	61
싱 가 포 르	200	76	81
인 도 네 시 아	650	4	73
필 리 핀	120	2	50

주) 상장회사만. 단 태국의 경우 91년말의 시점으로 화교계 기업의 상장주식의 시가 총액은 89%를 차지한다고 함.

자료：“東洋經濟”臨時增刊(1993年 11月 2日)과 李國編 海外華人乃其居住區概況, 1991年, 中國華僑出版公社.

물론 이것은 상장회사만을 나타낸 것으로서 각국의 평균을 보면 약 70%를 차지한다. 그러나 중소기업까지 포함하면 이 비율은 훨씬 높아지리라 생각된다.

또한 아세안 각국의 대기업 30개 중 11개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기업의 약 37%를 차지하고 있어 화교시대의 도래를 피부로 느낄 정도이다(표 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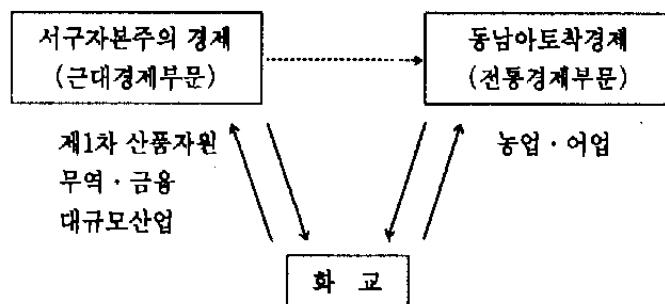
〈표 5〉 화교의 국별 자본별 분포

	기업 수	정부자본	민족자본	화교자본	외국자본
싱가포르	9	3	0	4	2
말레이시아	8	4	2	2	0
태국	7	2	2	3	0
인도네시아	3	1	0	2	0
필리핀	3	0	3	0	0
합계	30	10	7	11	2

자료 : Straits Times, 25 July, 1996에서 작성

이러한 화교자본의 성장과 확대를 보면 경이롭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나 이러한 성장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화교자본이 어떻게 성장·발전되었는가를 우선 살펴 보기로 한다.

동남아시아의 토착사회는 농업과 어업의 전통적 산업을 중심으로 발달해 왔다. 구미선진제국의 식민지화 목적은 전통적 국가의 사람이나 영토지배의 목적이 아닌 무역독점이었다. 그리고 미개발의 광대한 토지에서 수출용 1차산업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농업과 어업만을 위주로 살아온 토착사회의 전통적 경제와 식민지 세력하의 근대자본주의



〈그림 3〉 식민지시기 동남아시아 사회의 화교의 경제활동.

경제와는 접점을 찾기가 어려웠으므로 이중 경제를 잊게 하는 매개적 역할을 필요로 하여 자연스럽게 화교자본이 등장하였다.

<그림 3>과 같이 화교는 근대 경제부문과 전통 경제부문을 잊는 역할, 구체적으로는 전통적 경제부문의 소농민이 생산한 1차 상품 자원을 집중적으로 사들여 이것을 수출기업에 판다. 또 그 역루트를 사용하여 구미기업이 수입한 공업제품이나 소비제품을 사서 그것을 다시 파는 소매상에 파는 중간매개의 기능이 있다.

화교경제의 중심은 상품경제(상품생산, 유통을 중심으로 한 화폐경제)의 발달이라 하겠다. 이처럼 상품경제의 발달을 기초로 하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비교적 자본주의 발달이 전통경제보다는 비교적 이루어졌다고 하겠다²⁶⁾.

화교경제는 자본주의 하에서의 이민경제이기 때문인지 그 출발부터가 상품경제였다. 화교 경제의 자본형성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마크로적인 산업분야별의 흐름을 살펴보고 경영전략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마이크로적인 개인기업별의 흐름을 살펴 보기로 한다.

1. 화교 자본형성의 산업분야별 특징

화교자본형성을 마크로적인 입장에 대해 먼저 살펴 보기로 하자. 상품경제를 중심으로 한 화교기업의 생성발전패턴은 산업분야에 따라 3가지 타입으로 나누어진다.

첫번째가 제1차 산품기반형이고, 두번째가 상업기반형, 세번째가 공업기반형이다.

제1차 산품기반형이라는 것은 고무가공업, 주석개발업, 제당업 등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 제1차 산품에는 농업도 들어가는데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화교경제는 전분야에서 차지하는 농업부분의 비중이 무척 낮으며 공업, 상업, 금융업, 유통업, 서비스업 등의 비농업적 부분 특히, 비농민의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위치적으로도 화교경제는 도시의 비중이 높으며 농촌의 비중이 적은 것도 그 특징의 일부분이라 하겠다.

제1차 산품기반형의 첫번째 특징은 구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농업을 선택하지 않았으며, 또 그 내용도 농업과는 전혀 다른 부분을 의미한다. 자급자족 농업은 대개 토착민이 맡아 했고 화교는 상업적 농업에 치중했다. 말라야에 사는 무단입주자들은 (Squatters)은 돼지를 기르고 채소와 과일을 재배했으며 보르네오 서쪽과 북쪽의 화교들은 고무 소자작농이 되었다. 즉 화교는 농부이면서 상인이었다²⁷⁾.

물론 화교 중에서는 농산물 가공업과 관계되는 자본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도 임금노동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적 경제 관계하에서 이루어지며, 화교 자본주의하의 농업이 아시아적

26) 화교경제에서 무엇보다도 빨리 나타난 자본은 關稅, 廣東출신의 해상 상업자본이었으며, 정착상인에 의한 도시자본 및 농촌의 상업자본, 그리고 이것들과 결부된 고리대금 자본이었다.

27) 메리 F 소머스 하이두스, 박은경 역. 동남아시아의 화교, 형설출판사, 1993, p. 36

사회의 특징인 쌀농사보다는 고무, 파인애플, 사탕 등의 상업작물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며 식민지시대에 사업을 개시하여 어느 정도 기반을 쌓아 전후에 이것을 발전시킨 유형이다. 싱가포르·말레이지아에서 고무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리콘친일족이 이에 해당된다.

두번째의 상업기반형은 무역, 해운, 금융 등의 제1차 산품기반형과 관련되어 나타난 산업분야이다. 외국자본과 전통경제와의 중간매개로서의 유통이나 금융 등의 사업에 종사하여 발전한 스타일이다. 아세안 제국의 금융, 부동산, 호텔, 주택개발, 레파트 등 금융산업·서비스산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타입이 이에 해당된다. 태국의 방콕은행, 농민은행, 아유타야 은행 등이 이에 속한다. 소비제품을 중심으로 발전한 사하그룹이나 레파트 산업의 태국의 센트럴그룹, 싱가포르의 메트로 그룹을 들 수 있다.

세번째가 공업기반형이다. 공업기반형은 ASEAN제국의 정부가 근대화에 힘을 쏟은 제조업분야에 뛰어 들어 성장한 분야이다. 외자에 의존하면서 발전한 싱가포르나 말레이지아를 제외하면 태국이나 인도네시아의 공업화를 화교자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공업기반형은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수입대체 산업분야에 발전한 타입과 또 하나는 정부가 중점을 둔 특화 산업분야에 뛰어들어 성장을 이루었다. 수입대체 산업분야의 발전한 유형은 사립 그룹과 자동차 산업의 아스트라 그룹, 제지업의 시날·마스 그룹 등 인도네시아의 화교자본이 포함되며 특화산업분야는 1960·70년대에 태국정부가 민간기업을 축으로 공업화를 이룰 때 섬유, 가전산업 등을 중심으로 발전한 스쿠리 그룹이나 사하유니온 그룹 등의 태국화교자본이 이에 속한다.

2. 화교 자본의 성장과 경영전략

하버드대학의 가오(kao) 교수가 150인 이상의 화교기업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민1세 중 90%는 전쟁을 경험하였으며, 40%는 정치적 혼란을 겪었으며, 32%는 가정을 잃었으며, 28%는 경제적 재난을 맞아 막대한 재산손실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²⁸⁾.

따라서 화교기업가들은 이러한 험난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한 경영전략을 개발하였는데 그 전략을 살펴 보기로 한다.

경영전략이란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사결정률(decision rule) 내지 지침²⁹⁾으로 정의 되거나 현재 및 예정된 자원전개와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기본패턴³⁰⁾ 등의 정의가 있으나 화교

28) Murray Weidenbaum, E. Samuel Hugher, *The BamBoo Network*, Free Press, 1996, pp. 53~54.

29) H. I. Ansoff, *Corporate Strategy*, McGRAWHILL, 1965. 廣田壽亮 譯, 企畫戰略論, 產業能率短期大學出版部, 1969, p. 129.

30) C. W. Hofer & Schendel, *Strategy Formulation : Analytical Concepts*, West Publishing Co, 1978. p. 4.

자본의 경영전략이란 이문화지역에서의 경영환경 적용을 위한 패러다임이며 경영자원의 활용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다각화방향을 중심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다시 말해서 본 절에서는 전 절에서 산업분류별로 마크로적인 요소를 논하였지만 추상적이기 때문에 경영사적인 입장 즉, 개인기업별의 환경적용을 위한 적용전략 중 화교들이 일반적으로 성장해 온 방법 중의 하나인 다각화를 고찰해 봄으로써 화교자본의 성장과정을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白手起家³¹⁾를 꿈꾸며 이민 온 화교들은 초기에는 자본이 없기 때문에 육체노동에 종사한다. 그리고 육체노동에서 각고 절약한 금전을 자본으로 조그만 장사를 시작한다³²⁾. 태국의 특특이나 인도네시아의 베짜, 필리핀의 지프니 등은 화교들의 인력거에서 출발하였다고 한다. 인력거나 부두 노동자³³⁾로 출발한 꾸리들은 맨손으로 건강한 육체를 자산으로 한 그들이었기 때문에 돈을 벌면 목숨을 걸고 저금을 한다.

약장수나 채소를 파는 행상 또는 노점상으로 출발하는 것이 보통이나 소자본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벽지나 산촌으로 행상으로 상품을 판매하러 다닌다. 우선 이들은 현지어를 하지 못했으므로 단순한 일 밖에 종사할 수 밖에 없었다. 물물교환 등 전통적인 농업사회에서 이들은 각 지역을 이동하며 화폐 자본화하기 시작한다³⁴⁾.

이렇게 해서 그들은 원주민의 생활을 어느 정도 화폐경제의 방향으로 유도하며 화교들 자신들도 원주민의 농촌 생산물과의 교환 과정에서 자본의 원시적 형성과 중식의 활동을 시작한다.

이런 과정에서 자금을 축적 중식한 화교들은 다음 단계인 경제 부분으로 이동해 간다. 그들

31) 중국의 華南지방의 말로써 생활을 위해 집을 나간 노동자가 맨손에서 재산을 일군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 말은 생활의 전부를 재산을 중식하는 것에 집약되기 때문에 우리의 自手成家라는 말과 비슷하기도 하나 약간 다른 면도 있다고도 하겠다.

32) 따라서 “꾸리”시대의 화교들은 겨우 손에 들어온 금전을 적극 절약하고 축적한다. 그리고 꾸리에서 각고 절약한 금전을 자본으로 조그만 장사를 시작한다. 원래 동남아시아의 화교 중에는 일화천금의 꿈을 갖고 맨몸으로 도항한 꾸리가 많다. 또한 도항운임도 지불하지 않고 前借金(전차금)의 계약꾸리도 무척 많았다. 물론 전부 성공한 것은 아니고 강한 의지, 강인한 체력, 운이 좋은 사람들은 꾸리에서 白手起東의 첫걸음을 내디딘다.

33) 싱가풀의 화교들은 무역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도 처음에는 부두노동자로 출발하여 다른 노동자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여 영국인의 눈에 들어 조금씩 승진하여 일을 배우고 영국인들이 식민지를 독립시킬 때 무역업으로 시작하였다고 한다. 싱가풀 중화총상회 Chan Thait Leong 씨와의 인터뷰(1997년 1월 29일).

34) 이 행상인에서 어느 정도의 금전적 여유가 있으면, 또는 금전적 여유가 있는 자는 단순한 잡화류의 판매뿐이 아니고 다른 상품을 경영하는 자가 많다. 예를 들면 약장사, 의류, 쌀, 소금 등의 일용품과 원주민의 농산물을 물물교환하여 이익을 챙기거나 돈을 벌려주는 전당포 등을 경영한다.

은 행상인이 선택하는 직업 부분은 식량, 음료, 담배, 전자, 기계 차량과 부품, 섬유 의류, 목재, 고무 등의 취급업자 그리고 부동산 주선업, 대리점 업무, 금융업 등이다³⁵⁾.

화교들의 상업부문에서의 활동은 타지에서 볼 수 없는 무척 독특한 시스템이 존재한다. 방(幫)이라 불리는 동향, 동족적인 연대에 의해 강력하게 풍쳐져 있으며, 같은 동향인이 동일지대에 집중하여 같은 직업,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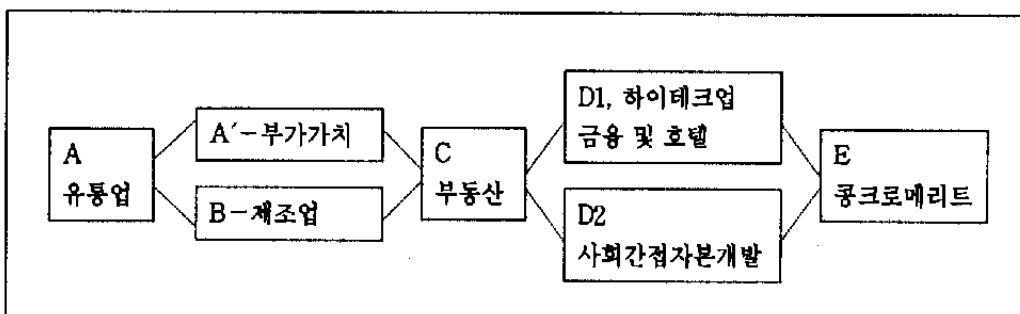
전술한 바와 같이 동남아시아에서 화교의 경제적 세력을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중개적 상업활동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이라 하겠다. 이들의 상업활동은 구미(식민지 종주국)의 무역상과 원주민 사이에서 서서 상품의 집하배급망을 장악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미의 무역상에 의해 수입된 소비재는 그 대부분이 화교에 의해 판매되며, 현지 생산물은 주로 화교에 의해 집하된다³⁶⁾.

이러한 집하, 배급조직의 밑단은 화교의 중개적(매판) 상업활동의 기초이며 이러한 시스템이 동남아 사회의 촌락에 정착하여 촌락의 일상거래를 행하고 있는 소매상, 중개상인인 것이다. 이러한 화교매판자본이 점점 성장하여 거류국 경제에 뿌리를 내려 발전한 것이다.

예를 들면 태국에서의 기초적 매판(Compradore)은 무역을 중심으로 한 상사매판으로 발전하였다. 소매, 도매, 집하의 분야에서 절대적 세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대한 외국자본도 화교를 유통중개자로서 이용하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교자본과 결부되어 중개상으로 발전되었다³⁷⁾.

현재 대기업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화교는 상품경제 즉, 유통업을 출발점으로 <그림 4>와 같은 과정을 거쳐 재벌화되었다고 하겠다.

초기에 화교가 상품경제로 움직일 수 밖에 없었던 점은 ①초기 투자가 적어도 할 수 있다



<그림 4> 화교기업의 다각화과정.

35) 꾸리에서 출발한 화교들은 행상인이나 소매상인으로 재출발하는 것이 전형적이며 다시 자본이 축적되면 시내에 점포를 경영한다.

36) 예를 들면 태국, 미얀마, 베트남의 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고무 등 각종 생산물.

37) 須山卓, 日比野丈夫, 藏居良造, 華僑 NHK BOOKS, 1974, pp. 60~61.

는 점. ② 화교의 정보 네트워크를 살릴 수 있다는 점에 있다³⁸⁾.

이윽고 사업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단순한 상품 중개업에서 탈퇴하여 그 다음 단계인 사업 다각화가 시작된다. 사업다각화 과정은 <그림 4>에서 나타난 것처럼 여러 흐름으로 나뉘어진다.

물론 동남아시아라 하더라도 나라와 지역에 따라 조금씩 그 형태가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다각화의 첫번째 단계는 유통업에서 제1차 산품의 상류 부분, 즉 제1차 산품의 고부가가치화로의 진출(A에서 A')이다.

예를 들면 말레이시아의 퀘크 그룹은 사탕이나 쌀의 유통으로 사업을 시작한 후 일본 기업과의 합작으로 제조업으로 진출, 사탕수수의 플랜테이션 전업으로 손을 뻗쳐 사탕 왕으로 불려지기까지 하였다³⁹⁾. 이러한 사업 확대에 의해 화교 그룹은 제품의 생산에서 유통까지를 지배, 독점적인 이익을 얻었다.

또 하나의 다각화 방향은 유통에서 전혀 관계없는 제조업 부문에의 진출(A에서 B로)이다. 그 진출의 계기는 현지 생산을 목표로 선진국의 기업과 수입 대리점을 경영하는 화교에 의한 합작회사의 설립이다.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의 이스트라(Astra)그룹은 농업과 임업을 중심으로 성장했지만 트럭의 수입업자로 성공한 후 도요타의 대리점을 획득, 자동차의 조립 생산에 편승·성장하였다⁴⁰⁾.

다각화의 두번째 단계는 부동산업의 진출(A'에서 C로, B에서 C로)이다. 본업과의 관련성은 적으나 특히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는 용이하게 투자 수익을 예상하여 부동산 투자에 활발하게 진출하였다. 또한 이들 지역에서는 고향을 떠나 자산이 없는 화교가 부동산을 자산으로서 중요성을 인식한 것도 이러한 경향을 가속화시킨 이유의 하나라 하겠다. 예를 들면 홍콩의 실업가 리카싱(李嘉誠)은 완구나 일용품의 수출로 생긴 이익을 기초로 부동산 임대업에 진출, 홍콩 제1의 부호가 되었다⁴¹⁾.

다각화의 제3단계는 새로운 다각화, 대규모화(C에서 D1, C에서 D2)이다. 이러한 배경은

38) 화교의 무역상은 「行」 또는 「座」로 불리는 일종의 길드적인 무역 집단 또는 도매상 집단을 조직하고 있다. 지금도 그 명칭이 남아 있어 「南北行」 등의 간판을 홍콩이나 방콕의 차이나타운에서 볼 수가 있다.

39) 로버트 퀘크(郭鶴年)은 1924년 죠호바르에서 태어났다. 부친은 福建省 출신으로 1909년 이주하였으며 로버트는 1959년 35세에 마라야精糖(후의 말레이시아 精糖, MSM)을 설립, 62년 이후 슈가왕으로 불려지기 시작하였다. 70년대에는 설탕, 시멘트, 제분을 중심으로 하는 제조업의 3사가 중핵기업을 이루었다. 지금은 설탕, 제분, 시멘트, 합판, 조선, 해운, 금융, 무역, 광산, 부동산, 호텔 등의 다분야에 진출하는 콩그로머리트가 되었다. 游仲勳, 華僑, 講談社現代新書, 1990, pp. 105~106.

40) 井上降一郎, アジアの財閥と企業, 日本經濟新聞社, 1987.

41) 리카싱은 광동서의 潮州에서 1928년 태어나서 11세인 1939년에 홍콩으로 이주하여(14세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남) 광장노동자, 영업사원 등을 거쳐 22세가 되던 1950년에 자기가 저축한 7,000 홍콩달러를 가지고 플라스틱 가공회사인 장강실업을 설립, 홍콩 플라워로 재산을 모았다. 73년 오일쇼크대 부동산을 사들여 큰 돈을 벌었으며 78년에는 홍콩 최대의 토지 사용권의 보유자가 되었다.

화교 그룹의 대규모화에 의해 자금적 제약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우선 첫번째의 움직임(C에서 D1)은 금융업의 진출이나 막대한 설비 투자나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하이테크 업종이나 중공업에의 진출이다. 기술을 갖고 있지 않는 화교 그룹의 경우 우선 외국 그룹과의 합작에 의해 진출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태국의 사하그룹은 한국, 스위스의 기업과 합작으로 텔레비전과 프린트 기반의 생산을 시작하였다.

두번째(C에서 D2)의 움직임은 인프라스트럭처의 개발은 투자액이 크다는 점과 투자 횟수 기간이 길다는 점 등 종래의 화교의 경영 스타일과는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사업 자체의 수익성보다는 주변지역의 부동산 개발권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과 개발지역의 정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확립할 수 있다는 점(특히 對中投資)을 들 수 있다⁴²⁾.

본업으로부터의 탈피는 화교그룹의 경영 규모가 비약적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자본축적을 배경으로 하는 다각화의 네번째 단계는 기업 매수에 의한 사업 확대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금융, 유통, 제조, 부동산 등 많은 업종을 포함한 콩글로머리트가 되었다(표 6 참조).

〈표 6〉 주요 화교 그룹과 사업 내용

본 거 지	그 룹 명	사 업 내 용
홍 동	리카싱	부동산개발, 시멘트, 무역, 위성통신
	위로크와프	백화점, 호텔, 항공
	新鴻基	부동산, 금융, 보험
	担基	부동산, 금융, 운수
인도네시아	사림 시나르마스	금융, 시멘트, 자동차 금융, 부동산, 필프, 팜오일
태 국	방콕은행 챠론, 포까판	금융, 보험 석유 화학, 정보 통신, 부동산, 금융, 무역
대 만	霧圓 타이완 프라스틱	보험, 건설, 신탁, 백화점 석유 화학, 섬유, 목재 가공
말레이시아	로버트·크루크	농업, 제분, 호텔, 합판, 부동산, 해운

자료：日經ビジネス 1994年 1月 24日

이러한 화교 재벌의 자본형성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할 수가 있다.

첫번째, 동남아의 화교 재벌의 성장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부동산과 금융업의 진

42) 홍콩의 호프웰 그룹이 제안하고 있는 방콕의 대량 운송시스템이나 중국 광동성의 고속도로 건설을 예로 들 수 있다.

출이다. 이 분야에 진출하지 않은 화교재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성장요인에서 부동산단계와 금융업단계는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번째, 화교재벌은 사업의 확대화와 함께 장기적 투자를 필요로 하는 제조업, 하이테크, 중공업 나아가서 사회간접자본 개발 등으로 진출, 종래의 단기적인 이익을 지향하는 상업 자본가에서 산업 자본가로 이동하고 있다.

세번째, 이러한 화교 재벌의 사업발전 과정은 아시아지역의 경제발전 과정에 대응하여 발전하고 있는 점이다. 요즈음 대만, 홍콩, 싱가포르에서 중국이나 아세안 계국으로 직접투자가 이동하고 있다⁴³⁾.

네번째, 화교 재벌의 경우, 해외 진출 시에는 아시아지역에 펴져 있는 화교의 네트워크에 의해 진출국가의 고객욕구, 파트너의 선정 등이 용이하게 결정된다는 점이다.

화교의 자본 형성과정과 경영전략이란 관점에서 지금까지의 통설, 예를들면 화교 자본은 제1차 산품기반형과 상업기반형은 식민지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세번째 공업기반형은 독립 후에 이루어진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또한 상업자본가에서 산업자본가로 전환한 것도 독립 후의 시기이다. 이는 지금까지 화교의 자본 형성과정은 식민지 시기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나타낸 것이다.

식민지시대의 화교자본을 「상업자본」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첫번째 임시거주에 지나지 않는 화교로서는 고무, 청미업, 주석 등의 1차 가공제조업 이외에는 장기적 투자를 필요로 하는 중공업에 진입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점과 두번째로서는 거대한 자본의 제조기술·제품시장을 필요로 하는 제조업종에는 소자본의 화교로서는 거의 불가능했던 점, 세번째로서는 이민화교가 간단히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은 상업 이외에는 없었던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독립 후는 공업부문을 기반으로 발전을 이룩한 기업이 많다. 후진국이 많았던 ASEAN의 초기의 공업화는 수입 대체형으로 정부의 보호정책으로 국내시장이 보증되었기 때문에 화교 자본은 경공업이나 소비재 산업부문으로 독립적 입장을 달리면서 기업기반을 구축한 산업자본화를 이룩하였다.

그리고 국내시장의 산업을 기반으로 해외투자도 진행되어 이러한 자본은 국제적으로도 산업자본화 하였다. 태국의 C.P Group, 말레이시아의 쿼크 Group, 인도네시아의 사림 Group, 시나루 마스 Group은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으며 태국과 인도네시아에 공업기반형의 산업자본이 많다. 그러나 일부의 자본이 산업자본화를 이룩하였다고 하나 지금도 동남아의 화교자본의 해외투자는 부동산 등의 비제조업 투자도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43) 이러한 이유는 ① 노동력, 토지 등의 생산 요소의 코스트 증대에 의한 생산 거점을 이전한 점, ② 이러한 나라들의 인프라 정비 등 수요가 아직도 크게 존재한다는 점에 있다.

식민지 시기의 화교의 행동양식은 우선 자본축적을 이룩하여 잉여자본을 부동산 등에 투자하였는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행동양식이 현대에도 이어진다고 하겠다.

현대 화교자본의 투자분야는 국내시장에서는 산업자본화 했지만 해외시장에서는 본업 이외의 투자도 적지 않아 식민지시대의 특징과 변하지 않는 화교자본의 전통을 보여지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화교자본의 특징은 중국적인 가치관, 식민지시기의 자본 형성과정에 나타난 상인적 특질, 그리고 독립 후에 나타난 기업가적 특질의 복합적 요인에서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VI. 맷는 말

지금까지의 화교기업의 자본 형성과정과 경영전략을 살펴보았다. 화교자본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하며 화교기업의 경영방식과 전략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한 화교기업의 성쇠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 내릴 수 있겠는가? 이러한 답에 대해 누구도 명확하게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화교기업의 자본 형성과정과 경영전략은 그들의 문화적 특질과 외부적 환경과 관계가 있으므로 이들 요인의 끊임없는 반응 속에 틀을 이루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것들은 화교기업의 경영전략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하다고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식민지 시기의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화교사회의 경제활동은 동남아 토착경제와 서구 자본주의 경제와의 중간매개의 기능으로 출발하여 제1차 산품기반형, 상업기반형, 공업기반형 등으로 나누어 발달하였다. 다시 말하면 제1차 산품기반형은 외국자본과 동남아 토착경제와의 중간매개로서의 임금노동을 중심으로 상업작물로 성공을 이루었으며 상업기반형은 서구적 식민자본주의가 발달하며 나타난 유통, 금융, 서비스산업으로 성공을 이루었다. 공업기반형은 동남아제국이 독립하면서 근대화에 뛰어들면서 발전한 형태를 지칭한다.

화교기업의 경영전략은 개인기업별 다각화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는데 다각화의 첫번째 단계는 유통업에서 제1차 산품의 상류 부분, 즉 제1차 산품의 고부가가치화 입종으로의 진출이다. 또 하나의 다각화 방향은 유통에서 전혀 관계 없는 제조업부문에의 진출이다. 그 진출의 계기는 현지 생산을 목표로 선진국의 기업과 수입 대리점을 경영하는 화교에 의한 합작회사의 설립이다. 다각화의 두번째 단계는 제1차산품의 고부가가치화 입종과 제조업에서 부동산업의 진출을 들 수 있다. 본업과의 관련성은 적으나 특히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는 용이하게 투자 수익을 예상하여 부동산 투자에 활발하게 진출하였다. 또한 이들 지역에서는 고향을 떠나 자산이 없는 화교가 부동산을 자산으로서 중요성을 인식한 것도 이러한 경향을 가속화시

킨 이유의 하나라 하겠다.

다각화의 제3단계는 새로운 다각화, 부동산업종에서 하이테크업종, 금융, 호텔업종으로의 진출과 부동산업종에서 사회간접 자본개발 등 대규모화된 점이다.

본업으로부터의 탈피는 화교 그룹의 경영 규모를 비약적으로 확대되었다. 다각화의 네번째 단계는 기업 매수에 의한 사업 확대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금융, 유통, 제조, 부동산 등 많은 업종을 포함한 콩글로머리트가 된 점이다.

산업별 자본 형성과정과 기업별 다각화를 통해 나타난 점은 식민지 시기의 화교 자본은 자본 형성과정과 경영전략의 다각화의 한 부분을 이룰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오늘날의 화교기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독립 후에 나타난 기업가적 특질이 더 큰 작용을 했다는 점이다. 이 점은 산업별로 공업기반형에 뛰어들지 않았던 기업업종은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없었으며 다각화 면에서 보면 부동산 단계가 자본 형성과정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것은 화교기업이 현지 국적을 취득하며 중국인보다는 중국계 현지인으로 활동을 하며 국가적 산업에 뛰어들은 점이나 현금을 위주로 한 이주형산업보다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정착형산업으로 변화한 점과 관계가 밀접하다.

화교자본이 성장하게 된 특징은 중국국적보다는 중국인의 가치관을 선호하고 중국국적의 화교보다는 현지국적의 華人으로 행동하였다는 점이므로 정치적인 면과 밀접하다고 하겠다.

특히 독립 후에는 현지국의 정치인들과 밀접하게 움직여야만 기업을 살릴 수 있었으므로 중국적과 중국문화를 내세우지 않았으며 중국계 현지인으로 행동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역사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 일괄적으로 논하기는 어렵지만 화교기업의 약점이라 할 수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리고 기업의 이해 관계자인 현지 국민들과의 조화가 앞으로의 화교자본의 성장에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 이것이 21세기에 화교기업이 성장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참 고 문 헌

1. 매리. F 소머스 하이두스, 박은경 역 「동남아시아의 화교」, 협성출판사, 1993.
2. 이문봉, 「동남아 화교기업」, 길벗, 1994.
3. 동남아시아연구소편, 「동남아시아 지역학개론」, 한남대학교 출판부, 1992.
4. 한국무역협회, 「동남아시장 진출확대방안」, 1991.
5. 동남아정치연구회 편역, 「동남아정치와 사회」, 한울 아카데미, 1992.
6. 이덕훈, 「화교경제의 생성과 경영발전」, 경제연구 제6집, 한남대학교 경제연구소 1996.

7. 이덕훈, 「복합인종사회 말레이시아의 인종조화와 부미푸드라정책」, 동남아연구 제5권, 1996. 2, 한남대학교 동남아시아 연구소.
8. _____, 「화교사회의 결합과 네트워크」, 산업경영연구 제11집, 한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1997. 2.
9. _____, 「화교의 이문화적용과 마찰」, 경제연구 제7집, 한남대학교 경제연구소, 1997. 2.
10. _____, 「화교기업의 기업가적특성과 문화」, 생산성연구 제11권 2호, 한국생산성학회, 1997. 6.
11. 須山卓外, 「華僑」, NHKブックス 202, 1987.
12. 殷柏林, 「中華思想と華僑」, アジア文化選書, 1992.
13. 酒井忠夫, 「東南亞細亞の 華人文化と文化摩擦」, 岩南堂書店, 1987.
14. 游仲勳, 「東南アジアの華僑」, アジア経済研究所, 1970.
15. _____, 「華僑」, 講談社現代新書, 1990.
16. 楠原克夫「華僑の挑戦」, The Japan Times, 1994.
17. Garth Alexander, 「The Invisible China - The overseas chines and the Politics of Southeast Asia」, MacMillan, New York, 1974.
18. G. William Skinner, 「Chinese Society in Thailand」, Cornell University Press New York, 1962.
19. _____, 「Overseas Chinese in Southeast Asia」,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January, 1959.
20. Ho Pingti, 「Studies on the Population of China, 1378~1953」, Harvard University Press, 1954.
21. Neil S. Smelser, 「Mechanism of Change and adjustment to Change in Bert F. Hoselitz and Wilbert E Moore(eds)」, Industrialization and Society, (The Hague : UNESCO and Mouton), 1963.
22. Steinberg, David J. (ed), 「In search of Southeast Asia : a modern history」, Univ. of Hawaii Press, 1985.
23. Pye, Lucian W., 「Asian power and politics : the cultural dimensions of authorities」, Harvard U. P., 1985.
22. Wright, A. F., ed, 「Confucianism and Chinese Civilization」, Stanford University Press, 1959.
23. Perkins, P. H., 「Agricultural Development in China, 1368~1968」, Chicago : Aldine publishing Co., 1969.

24. Yong Mun Cheong, 「Asian Traditions and Modernization」, TIME Academic Press, 1992.
25. Nonini, D. M., 「The Chinese truck transport Industry of a Peninsula Malaysia market town, In Lim and Gosling(eds) The Chinese in Southeast Asia」, Volume I, Maruzen Asia, Singapole, 1983.
26. Barton, C. A., 「Trust and credit: Some observations regarding business strategies of overseas Chinese trader in South Vietnam in L. Lim and P. Gosling(eds) The Chinese in Southeast Asia」, Volume I, Maruzen Asia, Singapole, 1983.
27. Clad, James, 「Behind the Myth : Money and Power in Southeast Asia」, London : Grafton, Coppel, Chares A. 1989.
28. Redding, S. Gorden, 「The Sprit of Chinese Capitalism」, Berlin and Newyork : de Gruyter, 1990.
29. Heng, P. K, 「The Chinese business elite of Malaysia, in R. Mcvey(ed.) Southeast Asian Capitalist, Southeast asia Program」, Cornell University, Ithaca, New york, 1992.
30. Purcell, Victor, 「The Chinese in Southeast Asia」, Oxford University Press, 1965.
31. Yoshihara Kunio, 「The Rise of Ersatz Capitalism In Southeast Asia」,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32. Steinberg David J. (ed), 「In search of Southeast Asia : A Modern History」, Praeger, 1971,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85.
33. Furnivall, J. S., 「Netherlands India : A Study of Plural Econom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7.
34. Yong Mun Cheong, 「Asian Traditions and Modernization」, TIME Academic Press, 1992.
35. Murray Weidenbaum, E. Samuel Hugher, 「The BamBoo Network」, Free Press, 1996.

일본 벤처기업의 생성배경과 경영과제

朴 京 烈*

目 次

- | | |
|--------------------|------------------|
| I. 서 론 | 2. 벤처기업의 연구개발 전략 |
| II. 일본 벤처기업의 생성배경 | 3. 벤처기업의 기업간 관계 |
| 1. 1970년대의 생성배경 | IV. 벤처기업의 경영과제 |
| 2. 1980년대의 생성배경 | 1. 벤처기업의 성장방식 |
| 3. 1990년대의 생성배경 | 2.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
| III. 일본 벤처기업의 경영특성 | V. 결 론 |
| 1. 성장단계별 특성 | |

I. 서 론

1990년대 초반부터 일본은 벤처기업의 봄이 일어나고 있다. 벤처기업이 단지 봄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환경적·제도적 조건이 필요한 것인가? 일본은 미국에 비해서 벤처기업의 성장속도가 늦다고 알려져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II절에서는 1990년대 본격적인 벤처기업이 생성되기까지의 그 생성배경을 고찰한다. 어떠한 경제·경영환경이 벤처기업 육성을 가져오게 하는가를 검토한다. III절에서는 일본 벤처기업의 경영적 특질을 분석하고, IV절에서는 벤처기업의 경영과제는 무엇인가를 고찰한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일본의 벤처기업의 실태가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육성에 시사하는 점을 지적한다.

연구방법으로 일본 벤처기업을 조사한 (財)研究開發型企業 育成센터의 「벤처비지니스 動向調査 報告」(1994)를 자료로 활용하고, 방문조사한 벤처기업인 大京電子電線(株)의 사내 자료를 활용하였다.

II. 일본 벤처기업의 생성배경

1. 1970년대의 생성배경

* 東新大學校 經營情報學科 教授

일본에서는 3차에 걸쳐 벤처기업의 붐이 있었는데, 제1차 벤처기업 붐은 1970~1973년에 일어났는데, 그 생성배경은 다음과 같다(坂本光司, p. 131).

첫째는 산업구조의 지식집약화이다. 전후의 혼란기를 거쳐 순조롭게 확대·발전해온 일본 경제가 최초로 경험한 경제충격은 1971년의 달러쇼크이다. 1949년 이후 1달러 360円이라는固定換率制로 고도한 경제성장을 계속해온 일본경제이었지만, 달러쇼크를 계기로 경제성장의 대폭적인 감속과 산업구조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2년 후인 1973년에는 제1차 오일쇼크가 발생하게 된다. 그 결과 重厚長大型 產業構造는 근본적인 변혁이 요청되었다. 戰後 일괄되게 고도한 성장을 계속해온 일본경제는 1974년에 최초로 마이너스 성장이 되고 대량 생산·대량판매를 전제로 성립해온 대기업 체제는 커다란 轉機를 맞이하게 되었다. 즉 자원 집약형·重厚長大型의 일본 산업구조는 지식집약형·기술집약형으로 전환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전환은 知識集約型의 기업이 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둘째는 대량생산·대량판매형의 경제성장이 終焉됨에 따라서 소품종 대량생산의 시대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다품종 소량생산에는 小ロット시장의 확보를 목적으로 생성된 중소기업에게 발전의 기회가 주어졌다.

셋째는 연구자·기술자의 스판오프의 활발화이다. 두 번에 걸친 경제쇼크로 대기업은 생존하기 위해서 인원정리를 중심으로 한 경영의 슬림화와 리스트럭처링을 시도하였다. 대량의 명예퇴직자를 모집하는 한편 인원감축을 위한 分社化, 연구개발비의 삭감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기업 중에서는 연구자·기술자의 스판오프가 이루어지고 分社化된 중소기업의 벤처비지니스화가 활발하게 되었다.

넷째는 벤처캐피탈의 생성과 지원이다. 일본의 벤처캐피탈은 미국의 벤처비지니스의 붐의 영향을 받아 1972~1974년에 걸쳐서 설립되었다.

이러한 경제환경 상황 속에서 벤처기업은 수백개가 있었지만 오일 쇼크로 전체적인 경제활동의 정체에 의해서 도산되거나 대기업에 흡수·합병되거나 또는 하청중소기업으로서 존립하게 되었다.

2. 1980년대의 생성배경

제2차 벤처기업 붐은 1983~1986년에 다시 발생했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坂本光司, p. 134).

첫째는 본격적인 성숙화 경제의 진전이다. 2차에 걸친 오일쇼크를 계기로 일본경제는 본격적인 저성장 경제시대에 돌입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는 대량생산 효과나 선행투자의 우위성 등은 확보되지 못하고 하청형 중소기업의 경영은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환경 변

화에 대응하여 하청 중소기업이 자립경영을 지향하는 가운데 제1차와 다른 벤처기업이 나타나게 되었다.

둘째는 기술혁신의 진전이다.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신소재, 바이오 테크놀러지, 그리고 정보통신과 같은 분야의 기술혁신은 중소기업의 벤처비지니스화를 크게 촉진하였다. 이러한 첨단적 기술들이 일반화되어 중소기업도 기술도입이 용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셋째는 국제분업의 진전이다. 일본경제가 본격적인 국제분업을 하게 된 계기는 1985년 프라자 합의 이후이다. 그때까지 1달러 240~250엔에서 120~140엔으로 2배 상승하였다. 이러한 급격한 엔고는 일본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 즉 국제적 비교열위 상품은 국내는 물론 세계의 시장에서 통용되지 않게 되었다. 한편 대기업의 엔고에 대한 대응으로 생산의 해외이전이나 부품수입의 증대는 하청중소기업의 사업기회의 대폭 감소를 가져 왔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일본의 중소기업은 脱下請·국제적 비교우위화를 시도하기 위해서 기술개발 활동을 촉진하게 되었다.

넷째는 하청거래 그 자체의 질적 변화이다. 즉 양적 확대가 점차로 어렵게 되고 또한 다품종 소량생산이 진전되고 더욱이 엔고에 의한 가격경쟁력이 저하되는 가운데 일본의 대기업은 그 조달 메카니즘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하청거래의 유니트 발주화, OEM 발주화와 같은 거래이다. 이와 같은 하청거래의 변화는 전통적인 하청거래에 의해서 지탱해온 하청기업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즉 독자기술, 독자상품을 보유하지 않은 기업의 수주는 보증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다섯째는 異業種 교류의 활발화이다. 벤처기업의 배출에 커다란 기여를 한 것이 이업종 교류의 활발화이다. 이업종 교류가 중소기업의 경영전략으로서 평가되기 시작한 것은 1988년 「融合化法」의 시행 이후이다. 경영자원의 한계가 있는 중소기업이 외부 경영자원의 내부경영자원화를 시도함으로써 「이업종 교류」라는 경영전략이 법률의 시행도 있어 보편화되었다. 따라서 일반 중소기업의 벤처비지니스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여섯째는 자본시장의 충실·강화이다. 1981년까지 VC(venture capital)의 수는 8社이었지만 83년에는 32社, 85년에는 81社로 4년만에 10배로 증가하였다. 한편 1983년에는 株式店頭공개지표 등 공개기준이 완화되어 자금면에서 중소기업의 벤처비지니스화가 크게 촉진되었다.

그러나 제2차 벤처비지니스도 길게 계속되지는 않았다. 1987년에 들어서 거품경제가 본격화되고 벤처기업을 하지 않아도 그 성장은 충분히 보증된 환경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벤처기업에 대한 관심은 약해졌다.

3. 1990년대의 생성배경

1990년대 초반부터 다시 벤처기업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아져 제3차 벤처기업 붐이 일어나고 있다. 그 배경은 다음과 같다(坂本光司, p. 136).

첫째는 엔고의 급진전이다. 1달러 360엔에서 100엔으로 엔고가 진행됨에 따라서 일본의 기업들은 通常的인 비용절감에는 한계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의 기업은 그 생산이나 조달을 보다 한층 국제화하든지 아니면 외국에서는 생산이 불가능한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조가 없이는 그 생존이 어렵게 되었다. 즉 비가격 경쟁력의 우위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생존의 길이 되었다. 円高에 의한 국내외 가격차의 심화는 소비자의 해외제품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소위 消費의 空洞化를 발생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기업은 혁명적인 비용 절감을 하든지 그것이 불가능하면 하나의 독창적인 전략상품의 개발이 요구되었다.

둘째는 지역 산업정책의 변화이다. 지금까지의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산업정책은 중앙정부에서 기획한 사업을 그대로 전개하는 스타일의 사업이 대부분이었다. 한편 지역자립화를 위한 주요한 정책은 선전국이나 대도시권에 입지한 유명 하이테크 산업을 유치하는데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앙정부 의존이나 외부경제 의존형의 지역활성화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것만이 아니라 지역에 입지한 유력기업이 해외로 이전을 가속화하여 지역경제의 空洞化가 우려되었다. 이와 같은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창조형이고 국제적 비교우위를 갖는 벤처기업을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게 되었다. 또한 通商產業省이나 중소기업청에서도 「創造的 中小企業 振興法」을 제정하여 종합적인 신규사업의 지원시책을 실시하고 있다.

셋째는 벤처기업에 자금공급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 벤처캐피틀에 대한 법적제도의 변화이다. 벤처캐피틀은 벤처기업의 주식을 인수하는 형태로 투자하지만 일본에서는 「독점금지법」 제9조에 회사의 사업활동의 지배를 목적으로 한 持株會社를 금하고 있었다. 제1차 벤처붐이 있었던 1972년에 벤처캐피틀이 기업의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하여 임원을 파견한다면, 持株會社의 유사형태가 되기 때문에 벤처캐피틀의 활동이 제약되어 왔다.

1972년에 공표된 가이드라인에서 벤처캐피틀은 「벤처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그 성장을 지원하는 기능을 하는 회사」라고 정의되고 그 활동에는 다음과 같은 제약이 있었다(森本隆男 編著, p. 422). ① 투자처기업에 대한 임원 파견 또는 임원겸임의 금지, ② 투자대상 주식은 원칙으로서 新株에 한정, ③ 각 투자처에 대한 출자비율은 49% 이하로 제한, ④ 취득주식의 처분에 있어서는 투자처기업의 의향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규사업 육성을 위한 환경을 정비한다는 관점에서 벤처캐피틀에게 허용되는 활동 범위 등에 관해서 수정안이 제시되었다. 1994년 7월에 공표된 새로운 가이드라인(「벤처캐피

률에 대한 독점금지법 제9조의 규정의 운용」)에서는 벤처캐피탈은 「벤처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동시에 경영노하우 등의 전문지식, 시장정보를 비롯한 갖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그 성장을 지원하는 기능을 가진 회사」라고 정의되고,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다(森本隆男 編著, p. 424). ① 벤처캐피탈의 총자산에 차지하는 주식의 價額은 상황에 따라서는 투자처기업에 대해서 50% 이상의 출자도 가능하고, ② 투자처기업에 대해서 임원파견도 용인하며, ③ 벤처캐피탈 사이의 주식의 양도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 결과 株主인 벤처캐피탈의 임원을 받아들이게 되어 체크되는 시스템이 되었고 또한 단지 체크만이 아니라 갖가지 어드바이스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종래에는 벤처캐피탈의 투자대상은 「원칙으로 新株」로 규정했으나 새로운 가이드라인에는 이 규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벤처기업의 주식을 다른 벤처캐피탈이나 기관투자가에게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어 취득한 주식을 효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벤처캐피탈의 활동이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되었다.

상기와 같은 생성배경 하에서 일본 벤처기업은 성장하여 왔는데 일본 벤처기업의 경영특질과 경영과제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III. 일본 벤처기업의 경영특성

일본 벤처기업의 경영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財)研究開發型企業 育成센터의 「벤처비지니스 動向調査報告」(1994)를 자료로 활용하였다. 조사대상 707社를 개괄하면 매출액 32.7억 엔, 자본금 1.5억엔, 종업원 115명이다. 업종은 전기·전자(19.7%)를 중심으로 기계제조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의 91.5%가 종업원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며, 더욱이 20인 미만의 소규모 중소기업도 16.4%를 차지하고 있다.

全從業員에서 차지하는 연구개발요원은 10.9%이며 따라서 벤처기업은 평균적으로 10명 중에서 1인은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의 일반적인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요원의 비율이 0%~5%인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연구개발요원의 비율이 5%~10% 미만의 층이 많으며, 연구개발요원의 비율이 20%를 넘는 고도한 연구개발 집약형 기업도 10% 정도 존재하고 있다.

Ⅲ절에서는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특성, 연구개발 전략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벤처기업과 다른 기업과는 어떠한 기업간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가를 검토한다.

1. 성장단계별 특성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를 스타트업期, 급성장기, 成長前期, 成長後期로 나눌 수 있다. 스타트

업기는 8.5%(60사), 급성장기 8.5%(60사), 成長前期 40.2%(284사), 성장후기 39.5%(279사)로 분포되어 있다.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연구개발비를 주목하면 <표 1>과 같이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매출액 중에서 차지하는 연구개발비 비율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스타트업期」의 5.4%에서 「성장후기」의 2.4%까지 저하하고 있다. 스타트업기와 급성장기는 연구개발비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성장후기에 있는 기업은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작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점은 同비율의 분산이다. 각 단계의 分散値를 보면 「스타트업期」 63.7%, 「급성장기」 49.1%, 「成長前期」 22.5%, 「성장후기」 9.4%로 성장단계가 진행됨에 따라서 확실히 작게 되어 있다. 즉 「성장초기」의 단계에는 연구개발 투자를 적극적으로 행하는 기업과 행하지 않는 기업의 차이가 크며, 성장함에 따라서 벤처기업의 투자행동은 어느 범위로 수렴되어 가는 경향이다.

<표 1> 成長단계별 연구개발비의 비율과 경상이익률의 비율

성장단계	연구개발비 비율	연구개발비의 분산치	매출액 경상이익률
스타트업기(8.5%)	5.4%	63.7%	1.9%
급성장기(8.5%)	5.0%	49.1%	4.0%
성장전기(40.2%)	3.4%	22.5%	3.9%
성장후기(39.5%)	2.4%	9.4%	1.4%
전체평균	3.3%	-	2.5%

(출처) (財)研究開發型企業育成センター(1994), 『ベンチャービジネス動向調査報告』

매출액 경상이익률에 있어서도 성장단계별로 명확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스타트업期에는 경영기반이 아직 확립되지 않아 수익성은 적다. 그러나 급성장기에 들어가면 경영기반이 확립되고 동시에 기업의 패력, 신제품에 의해서 수익성은 급상승한다. 成長前期에 들어가면 기업 패력은 다소 떨어지지만 경영기반은 한층 강화되고 수익성은 여전히 높게 된다. 成長後期에는 기업 패력의 쇠퇴, 기존제품에의 과도한 의존, 경영관리를 위한 비용상승에 의해서 수익성의 저하가 뚜렷이 나타난다.

<표 1>에서와 같이 연구개발비는 다음 성장단계의 경상이익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스타트업기와 급성장기의 높은 연구개발비는 다음 단계인 급성장기와 성장전기의 경상이익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成長前期의 상대적인 연구개발비의 저조는 成長後期의 경상이익률의 저조를 가져오고 있다.

2. 벤처기업의 연구개발전략

벤처기업은 고성장성, 고수익성, 독립성, 개발지향, 新規性 등에 의해서 특징되어지는데 벤처기업이 이러한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업종이나 경제환경, 기업 고유의 사정 등에 의해서 각각의 상황은 다르며 벤처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의 원형(proto-type)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다양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벤처기업의 본질을 찾기 위하여 전형적인 벤처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추출기준은 高成長性(과거 3년간의 매출액성장 15% 이상), 고수익성(과거 3년간의 경상이익률/매출액의 15% 이상), 개발지향(연구개발비/매출액의 비율 3% 이상, 또는 연구개발요원/전종업원의 비율이 15% 이상), 독립성(商社나 기업 등의 出資비율 25% 미만), 신규성(설립 후 10년 이내 또는 과거 3년간에 개발한 신제품의 비율 40% 이상), 주식공개 의욕(공개했거나, 10년 이내에 공개하려는 기업)의 6개이며 이것 중에서 4개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은 전형적인 벤처기업이라고 한다. 이러한 기준에 충족된 기업은 벤처적 특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新벤처기업(New-Venture)이라고 부르고, 그렇지 않은 기업을 벤처적 성격을 가진(Venture-Like) 기업이라고 정의한다. 상기의 절차에 의해서 추출된 NV기업은 8.2%(58社)를 차지하고 있다.

NV기업과 VL기업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NV기업의 평균 종업원수는 67명인데 비해서 VL기업은 120명으로 약 두배이다. 성장단계별로 보면 스타트업期 또는 急成長期에는 NV기업이 44.8%를 차지하고 있으나 VL기업은 14.5%를 차지하고 있다. VL기업은 成長 後期단계에서 41.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점하고 있다. 즉 NV기업은 규모가 작고 成長 前期段階에 있으나 VL기업은 비교적 규모가 크고 成長 後期段階에 있다.

연구개발에 있어서 경영자가 스스로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점이 벤처기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개발 테마의 발안자는 「경영자」가 49.2%(348사)이고 「관리자층」이 21.2%(150사), 「경영자 이외의 사내연구원」 9.9%(70사), 「고객」 5.5%(39사), 「사내의 생산현장」 3.1%(22사), 「모기업」 2.4%(17사), 「공동개발의 상대」 2.3%(16사)이다. 특히 NV기업은 경영자가 60%를 發案하고 있다.

그리고 NV기업은 연구개발요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전종업원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4.9%에 달하고 VL기업은 9.6%이다. 그리고 NV기업은 독립된 연구개발 부문을 상설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56.9%), VL기업은 9.6%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연구개발요원의 수가 많고 연구개발의 조직체계가 충실하고 있는 점도 NV기업의 커다란 특징이다.

NV기업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연구개발비의 비율은 9.1%이나 VL기업은 2.7%에 그치

고 있다. 그리고 시장금리 차입의존도는 NV기업이 20.1%이고 VL기업이 11.8%로 나타나고 있다. NV기업은 연구개발비의 지출이 많기 때문에 외부자금 중에서도 「민간으로부터 시장금리 차입」의존도가 높은 경향이 있다. 즉 외부자금을 도입하여서라도 적극적인 연구개발에 투자하려는 의도가 나타나고 있다.

벤처기업이 어떤 목적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실시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면 〈표 2〉와 같다. 벤처기업의 연구개발의 기본전략을 보면, 첫째로 「도입기술의 개량·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도입형을 취하는 기업은 적고, 대다수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自社 독자의 자주 기술개발형의 연구개발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둘째로 자주 기술개발형 중에서도 전략의 중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① 자사 기존기술 개선형(「자사가 보유하는 재래기술의 개선」 48.1%), ② 혁신기술의 Seeds육성·강화형(「장래의 신기술의 Seeds를 육성강화」 46.7%), ③ 자사 기술 상품형(「자사 보유 기술의 상품화에의 용용」 41.3%)으로 나누어진다. 특히 NV기업은 연구개발 투자의 목적에 있어서 장래의 혁신기술의 Seeds를 육성·강화하는데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

〈표 2〉 연구개발 투자의 목적(2개 이내 선택)

	總 計	NV	VL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래기술의 개선	48.1%(340사)	39.7%(23사)	48.8%(317사)
장래의 혁신적인 기술의 seeds의 육성·강화	46.7%(330사)	70.7%(41사)	44.5%(289사)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상품화에의 용용	41.3%(292사)	58.6%(34사)	39.8%(258사)
기존제품의 생산공정의 혁신	25.3%(179사)	5.2%(3사)	27.1%(176사)
도입기술의 개량·개선	14.4%(102사)	8.6%(5사)	14.9%(97사)

(출처) 〈표 1〉과 동일

이와 같이 벤처기업에 있어서 연구개발 전략의 특징은 자주 기술개발이다. 자주 기술개발이 전략의 기본인 이상 제품기술, 생산기술에 관계없이 기술의 획득 방법으로써 가장 많은 것은 〈표 3〉과 같이 「전부 자사개발」이며 전체의 과반수에 달하고 있다. 「일부 기술의 도입」이 약 20%에 달하고 있으며 함께 하면 자주 기술개발에 중심을 두고 있는 벤처기업은 약 80%에 달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기술개발의 대부분을 기술도입에 의존하는 「전면적으로 기술을 도입하여 자사용으로 개량한다」와 「모두 기술도입」의 방법을 취하는 벤처기업은 10%에 그치고 있다. 기술획득 방법에 있어서 NV기업은 「전부 자사개발」이 77.6%로 보다 높은 비율

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의 벤처기업은 기술의 外部依存度가 낮고 社內의 자체적 연구개발 능력이 높은 기술집약형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NV기업이 VL기업에 비해서 이러한 특징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3〉

기술 획득의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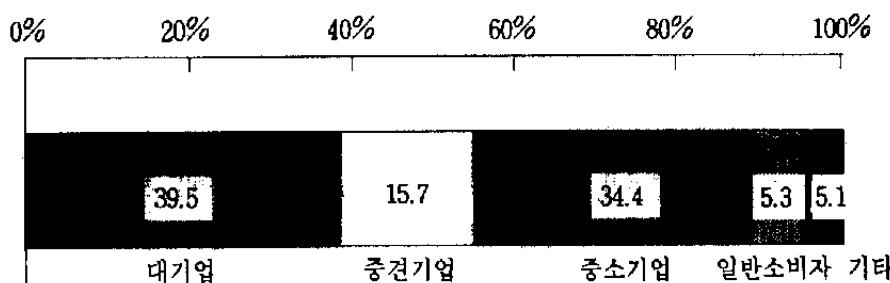
	總 計	NV	VL
전부 자사개발	56.0%(396사)	77.6%(45사)	54.1%(351사)
일부 기술의 도입	23.3%(165사)	13.8%(8사)	24.2%(157사)
전면적으로 기술을 도입하여 자사용으로 개량	9.1%(64사)	5.2%(3사)	9.4%(61사)
모두 기술도입	3.7%(26사)	-	4.0%(26사)

(출처) 〈표 1〉과 동일

3. 벤처기업의 기업간 관계

벤처기업의 모기업과의 거래관계를 보면 조사대상 611社 중에서 「자본계열 또는 거래관계에 있어서 고정적인 특정의 고객관계가 있는 모기업」을 가진 벤처기업은 27.3%이고 3분의 2는 독립성을 가진 기업이다. 또한 모기업을 가진 기업 중에서 모기업과의 거래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적으로 51.2%로 나타나고 있다.

대기업과의 관계를 보면(복수 응답), 「경영에 관한 유용한 정보의 수집」이 31.8%, 「기술제휴」가 19.7%, 「판매제휴」가 20.1%, 「공동연구·공동개발」이 21.2%, 「경쟁관계」가 17.1%, 「특정한 관계는 없다」가 29.4%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벤처기업은 대기업과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출처) 〈표 1〉과 동일

〈그림 1〉 벤처기업의 고객 구성

또한 벤처기업의 제품 판매처는 <그림 1>과 같이 「대기업 (1部 上場企業)」이 39.5%, 「中堅企業 (2部 上場企業)」이 15.7%, 「중소기업」이 34.4%, 「일반 소비자」가 5.3%로 나타나고 있다. 벤처기업의 제품의 판매처는 90%가 기업이고 일반 소비자에 대한 판매는 5.3%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벤처기업의 대부분이 기업을 향한 中間財를 생산·판매하고 있으며 일반 소비자를 향한 최종 소비재의 생산·판매에 종사하는 것은 드물다. 따라서 제품이 中間財인 까닭으로 기업의 설비투자의 확대·축소여부가 벤처기업의 업적에 영향을 주게 된다고 예상할 수 있다.

1990년대 전반 일본 기업들의 설비투자의 침체가 있었는데 벤처기업에 영향을 주었다. 즉 벤처기업의 업적의 저하여부에 대해서 「저하했다」가 약 75%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간 거래가 주대상인 벤처기업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업적의 저하요인으로 고객기업의 설비투자의 감퇴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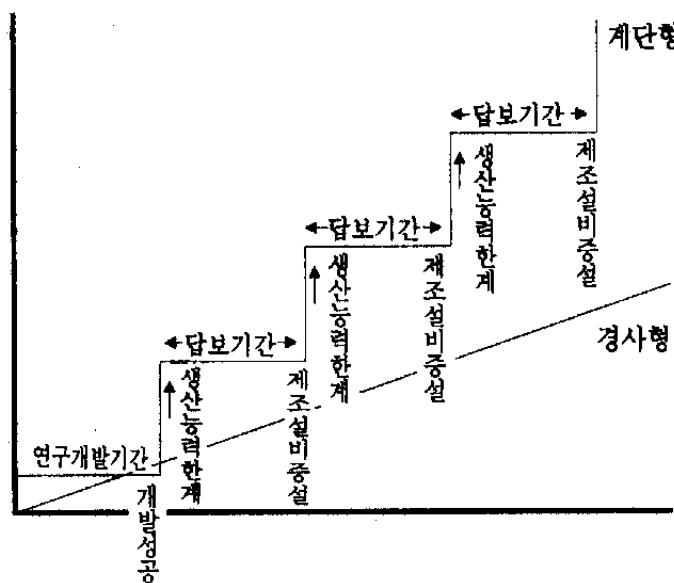
IV. 벤처기업의 경영과제

1. 벤처기업의 성장방식

벤처기업의 성장방식은 일반 중소기업이나 대기업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범용품이라고 불리는 종래의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일반기업의 성장조건은 판매력이며, 그 판매노력·판매능력의 결과 年上昇률 2~3%가 되어 경사적 형태로 원만하게 성장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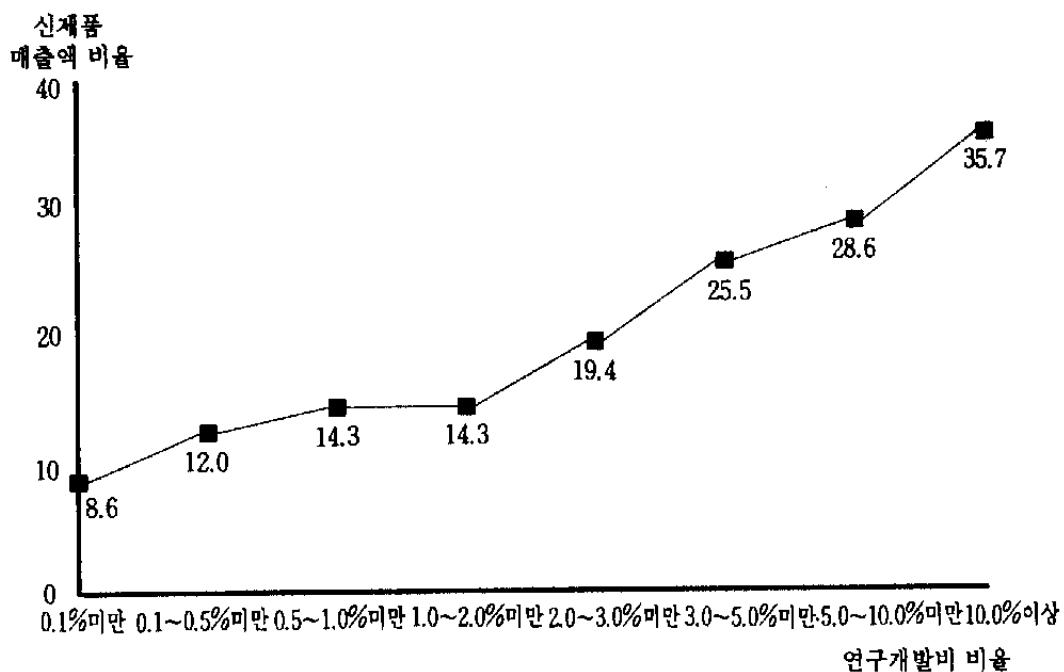
일반기업에 비교해서 벤처기업의 성장방식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경영목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벤처기업의 경영목표로서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것은 「新製品開發」이 41.4%로 압도적이고 「シェア 확대」가 16.4%이고, 「비용 절감」이 8.8%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벤처기업의 경영목표이자 성장조건은 시장이 요청하는 신제품을 개발하는 것이며 그것의 성공에 의해서 계단형으로 성장하게 된다. 따라서 踏步狀態를 거쳐서 조건이 갖추어진 시점에서 2배, 3배로 성장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림 2>와 같이 벤처기업의 제조설비는 자금조달 능력의 부족에 따른 소규모의 增設이 되기 때문에 계단형성장이 된다. 여기서 생산능력의 한계는 자금조달 능력의 한계를 의미한다.

신제품개발에 의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비가 소요하게 된다. 신제품의 매출액 비율(평균 19.7%)과 연구개발비 비율(평균 3.3%)의 관계는 연구개발비가 많은 벤처기업일수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신제품의 비율이 많게 된다(<그림 3>). 이것은 연구개발 투자를 적극적으로 행하는 벤처기업일수록 신제품을 개발하고 시장에 투입하는 경영력을 갖추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자료) 大京電子戰線(株) 사내자료에서 수정

〈그림 2〉 경사형과 계단형의 성장



〈그림 3〉 신제품 매출액 비율과 연구개발비의 비율

벤처기업은 연구개발비를 어떻게 조달하고 있는가를 보면, 연구개발비의 80%를 자기자금에서 충당하고 있다. 그리고 민간 금융기관의 시장금리로 차입하는 경우가 11.5%을 차지하고 있다. 「보조금 등의 公的援助」와 「利子補給 등이 불온 低金利借入」이 각각 3.8%, 2.1%로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自己資金에의 의존도가 극히 높고 활발한 연구개발⇒신제품의 개발⇒틈새시장의 확보·시장シェ어의 획득⇒기업수의 향상⇒자기자금의 충실⇒활발한 연구개발이라는 순환이 開發志向의 벤처기업에 있어서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벤처기업의 제조설비는 자금조달 능력의 부족에 따른 소규모의 增設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신제품을 개발하고 안정된 성장을 위해서는 연구개발비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설비투자가 지속되어야 한다. 일본 벤처기업의 1993년도 평균 투자액은 1억 3,800만엔이고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설비투자액의 평균 비율은 5.1%이다.

벤처기업의 설비투자의 주요 목적을 보면 「연구개발 또는 신제품의 제조」가 20.4%, 「省力化·합리화」가 19.7%, 「기존설비의 유지·보수·更新」이 18.5%, 「능력증강·매출의 증대」가 16.4%로 나타나고 있다.

벤처기업은 설비투자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고 있는가를 보면, <표 4>와 같이 「차입금」이 60.5%, 「內部留保」가 38.0%, 「주식·社債의 직접금융」이 1.6%이다. 그 중에서 벤처캐피탈의 이용은 전체의 1%에도 못미치고 있다. 이와 같이 벤처기업에 있어서 자금조달은 간접금융과 내부유보에 의한 충당이 많고 직접금융에 의한 자금조달을 행하는 것은 극히 적다. 이와 같은 점은 자본시장으로부터 직접 조달된 자금에 의존하고 있는 대기업과는 대조적이다.

이와 같이 벤처기업의 설비투자 자금은 차입금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데 벤처기업에 있어서

<표 4> 설비투자 자금의 조달처별 구성

	1992년도 실적	1993년도 실적
주식·社債	1.2%	1.2%
벤처캐피탈	0.4%	0.2%
일반 금융기관	51.3%	52.6%
商社·제조업체	1.3%	0.9%
그 밖의 차입금	7.8%	8.0%
내부유보	38.0%	37.1%
합 계	100 %	100 %

(출처) <표 1>과 동일

차입금에 대한 평가는 일반기업과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일반기업의 경우에는 차입금이 매출액과 同額이라면 판매부진으로 경영이 어려운 위험기업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벤처기업의 경우는 매출액이 차입금과 동액이 되면 성공한 기업이 될 수 있다. 자금조달에 있어서 100% 차입한 경우를 가정할 경우, 벤처기업의 차입금과 매출액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大京電子電線(株)의 사내자료).

① 벤처기업은 스타트업期에 借入金에 거의 의존하지만 賣出額은 제로부터 시작한다. 그 후 연구기간을 2~3년 경과하면서 차입금은 점점 증가한다.

② 신제품의 개발에 성공하고 그것이 시장에 인정되어 판매하게 되어 그 賣出額이 借入金과 同額이 될 때 벤처기업은 성공할 기회를 가진다. 제품이 中間財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인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③ 賣出額이 借入金과 同額에 도달할 때 기존의 제조설비는 생산능력의 한계가 있어 踏步 상태가 2~3년 계속된다. 따라서 大量生產 설비를 갖추기 위한 자금조달을 하기 때문에 借入金은 증가한다.

④ 대량생산 설비의 도입에 의해 생산능력은 배로 증가하고 매출액은 차입금과 同額이 된다.

⑤ 매출액이 차입금과 同額에 달한 경우, 기존의 제조설비는 생산능력의 한계가 되어 踏步 상태가 2~3년 계속된다. 따라서 大量生產 설비를 위한 資金調達이 필요하기 때문에 借入金은 다시 증가한다.

⑥ 量產설비의 도입에 의해서 生產能力은 다시 배로 증가하고 매출액은 차입금과 동액이 된다.

⑦ 이상과 같이 먼저 차입금이 증가하고 매출액이 그것에 뒤따르는 패턴을 수차례 반복하는 사이에 필요로 하는 설비는 모두 갖추게 되고 생산능력 증설의 필요성은 줄어든다. 따라서 차입금은 정지하고 매출액이 증가하게 된다.

⑧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차입금은 감소하여 간다.

이와 같이 벤처기업의 특질은 그 성장과정에 있어서 먼저 차입금에 의존하고 매출액이 차입금을 뒤따르는 계단형 성장을 형성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그 과정에 있어서 이의 목표의 설정보다는 金利支拂과 차입금의 반환을 위한 부채관리에 중점을 두게 된다.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매출액이 필요한가를 산출하여 그 계산치를 매출액 목표로 설정하게 된다. 따라서 개발제품이 대량 생산할 수 있을 때까지 자금력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된다.

벤처기업의 과제는 개발한 제품이 판매될 때까지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며, 우수한 신제품 개발이라 하더라도 곧바로 판매되는 것은 드물다. 특히 벤처기업의 제품이 일반소비재가 아

니고 中間財이기 때문에 시장에 인정되어 판매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한다. 그 사이에 자금을 확보하느냐가 중요한 과제이다.

그리면 일본의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방법인 벤처캐피탈의 이용실태와 주식공개 상황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벤처캐피탈의 이용실태는 656社 중에서 벤처캐피탈을 「현재 이용하고 있다」가 19.9%(141社), 「이용한 적이 있다」가 3.0%(21社)로서 합계하면 약 20%에 달하고 있다. 「향후 이용하겠다」가 14.0%(99社)이고, 「전혀 알고 있지 않다」가 4.7%(33社), 「이름은 알고 있지만 사업내용은 알지 못한다」가 16.7%(118社)이다.

그리고 벤처기업의 株主의 구성을 보면 「社長·경영진·친족」이 68.8%, 「從業員」 8.6%, 「商社·기업」이 8.7%, 「VC」이 5.6%, 「기타」가 7.0%이다. 사장·친족·경영진의 持株比率은 小企業일수록 높은 경향이며, 종업원 20인 미만의 기업에서는 80%을 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300인 이상의 기업이 되면 이 비율은 50%이다. 이것은 금융기관, VC 등으로부터 출자가 증가한 것을 의미하지만, 자본의 확대, 주식의 분산소유가 더욱 진행되면 주식공개도 중요한 경영목표가 될 수 있다. 주식공개 방침에 대해서는 660社 중에서 「이미 上場함」이 1.3%(9사), 「5년 以內의 공개」가 8.4%(56사), 「10년 以內의 공개」가 9.2%(61사), 「공개하고 싶지만 전망이 서지 않음」이 38.4%(254사), 「공개하고 싶지 않다」가 42.4%(280사)로 나타나고 있다. 주식공개의 장점은 자본시장이라는 유력한 자금조달의 확보, 자본이득의 확보(주식 자산가치의 증대, 창업자이윤)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은 거의 미공개 기업이며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것은 벤처기업의 설비투자 자금의 조달에 있어서 間接金融에 의한 차입이 중심이고 直接金融이 적게 충당되는 것과 일치하고 있다.

일반 중소기업이 간접금융에 의존하는 경우 먼저 경영자 개인의 자산이나 신용을 담보로 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경영자원을 축적하게 된다. 새로운 기술이나 경영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기업에 경영자원을 축적하는데는 시간이 걸린다. 벤처기업의 성장의 속도를 높히기 위해서는 성장에 알맞는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일본 벤처기업의 성장 스피드가 늦는 이유의 하나는 벤처기업의 특징을 가진 중소기업이 간접금융에 의한 차입에 주로 의존하고 그 성장에 알맞은 자금을 적절히 조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V. 결 론

본고에서는 일본 벤처기업의 생성배경을 고찰하고 벤처기업의 경영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리고 벤처기업의 경영과제를 검토하였다.

벤처기업의 생성배경은 일본에서는 1990년대 전반부터 앤고의 급상승에 따른 비가격경쟁의 우위성을 확보가 요청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産業空洞化에 대처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특성을 보면 스타트업기와 급성장기에는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그 결과 수익성이 높은데 비해서 성장 후기단계의 기업은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감소하고 수익성이 낮다.

그리고 전형적인 벤처기업은 연구개발 투자의 목적에 있어서 장래의 혁신적인 기술의 Seeds를 육성하고 강화하는데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기술획득의 방법에 있어서 완전한 자사개발이 중심이며 기술의 외부 의존도는 낮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기업간 관계를 보면 벤처기업의 제품판매처는 90%가 기업이며 일반 소비자에 대한 판매는 5.3%에 지나지 않는다. 기업 중에서 대기업이 40%, 중견·중소기업이 60%이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 분업만이 아니라 中堅·中小企業間의 수평적인 분업이나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제품이 中間財인 관계로 대기업·중견기업의 설비투자 증감여부가 벤처기업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벤처기업의 성장조건은 신제품 개발능력에 있으며 그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연구개발과 설비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 일본 벤처기업에 있어서 연구개발비는 사내유보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설비투자 자금은 일반 금융기관 등의 차입금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벤처기업의 차입금에 대해서는 일반기업과 다르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즉 차입금이 매출액과 同額이라도 일반기업과는 달리 성공기업이라 볼 수 있다.

벤처기업의 경영과제는 개발한 제품이 판매될 때까지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다. 우수한 신제품개발이라 하더라도 곧바로 판매되는 것은 드물다. 특히 벤처기업의 제품이 일반 소비재가 아니고 중간재이기 때문에 시장에 인정되어 판매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한다. 그 사이에 설비투자 자금을 확보하느냐가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中間財的 제품특성과 간접금융에 의한 차입의존이라는 資金調達의 상황 때문에 벤처기업의 성장유형은 階段型 成長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한국 벤처기업에 시사하는 것은 무엇인가? 일본의 벤처기업의 성장속도가 미국과 비교할 때 성장 스피드가 늦은 이유의 하나는 벤처비지니스의 특질을 가진 중소기업이 그 성장에 적합한 자금을 적절히 조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벤처기업의 자금은 창업자금, V/C 투자(equity finance), 용자(debt finance)로 구성되는데 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성장에 알맞는 창업자금과 설비투자 자금이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즉 V/C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자본시장의

육성이 필요하다. 미국의 NASDAQ 市場의 경우 창업부터 주식공개까지 걸리는 平均年數는 5~6년인데 비해서, 일본의 첨두시장의 경우는 17년이 걸린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경우도 벤처캐피탈의 투자가 활성화되는 자본시장의 육성이 요구되어진다.

그리고 벤처기업의 경우 독자의 기술이나 특수한 아이디어, 경영자의 선견성 등의 자질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은 벤처기업이 실적도 불충분한 창업기에는 간접금융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 직면하는 것이 담보의 문제이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금융기관도 부동산 담보를 중요시 하고 있기 때문에 창업기의 벤처기업은 충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없다. 따라서 대기업이나 公共的機關이 보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게 된다.

參考文獻

- 朴京烈(1996), 「일본중소기업의 기술력변화와 유형에 관한 연구」(韓國 中小企業學會 編『中小企業研究』, 제18권, 2호, pp. 185~207).
- 土屋守章・三輪芳郎編(1990), 「日本の中小企業」, 東京大學出版會.
- 鷹満博(1991), 「地域中小企業の構造調整」, 新評論.
- 村社隆・朴京烈(1994), 「大阪の中小工業の基本構造(金型製造業)」, 大阪府立産業開発研究所.
- 深瀬・小島一郎・朴京烈(1995), 「大阪の中小工業の基本構造(ペアりんぐ製造業)」, 大阪府立産業開発研究所.
- 日向野大太郎・朴京烈(1995), 「大阪の中小工業の基本構造(鐵鋼しやりんぐ業)」, 大阪府立産業開発研究所.
- 朴京烈(1994), 「金型製造業の基本構造の日韓比較」, 「產開研論集」, 第7, 大阪府立産業開発研究所.
- 吉田敬一(1996), 「轉機に立つ中小企業」, 新評論.
- 川上義明(1993), 「現代日本の中小企業」, 稅務經理協會.
- 百賀惠夫・伊藤正昭編(1991), 「中小企業論」, 白桃書房.
- 森本隆男 編著(1996), 「中小企業論」, 八千代出版.
- 坂本光司(1995), 「ゼミナール 中小企業經營論」, 同友館.
- (財)研究開發型企業育成センター(1994), 「ベンチャービジネス動向調査報告」.

손해보험자와 운송인의 이해관계 변화에 관한 사적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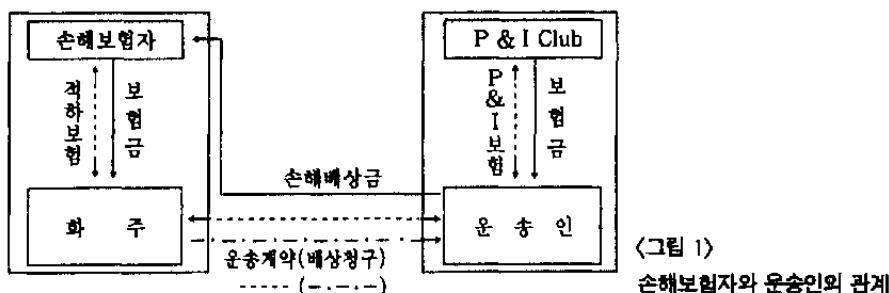
李 洪 茂**

目 次

- | | |
|-----------------------|-------------------------|
| I. 서 론 | 2. 복합운송인에 대한 내용 |
| II. 운송인 책임의 역사적 변천 | IV. 손해보험자와 운송인의 이해관계 변화 |
| 1. 해상운송인의 책임 | 1. 적하보험과 책임보험의 관계 |
| 2. 복합운송인의 책임 | 2. 운송인에 대한 손해보험자와 이해관계 |
| III. 운송인에 대한 적하보험의 내용 | V. 결 론 |
| 1. 해상운송인에 대한 내용 | |

I. 서 론

화주¹⁾는 화물의 국제운송시에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한다. 운송인은 이 운송계약에 의해서 운송 중 화물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화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국제화물운송은 주로 해상운송에 의존해 오고 있다. 이러한 해상운송인의 화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전통적으로 보험자는 담보하지 않고 있으므로 P & I(Protection & Indemnity) Club이 제공하는 P & I보험에 의해 담보되고 있다. 여기에 비해서, 보험자(손해보험회사)는 화주에게 적하보험을 적극적으로 제공해 오고 있다. 적하보험계약에 의거해서 화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화주의 운송계약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운송인에 대해서 대위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러한 운송인의 손해배상금은 P & I보험에서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이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 본 연구는 단국대학교 97학년도 대학연구비(신진연구)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단국대학교 상경대학 경제·무역학부 전임강사(상학박사)

따라서, 화주와 손해보험자는 운송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공동의 이해관계에 있고, 운송인과 P & I Club이 손해보험자(화주)의 손해배상청구를 방어해야 하는 공동의 이해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P & I Club과 운송인, 손해보험자와 화주가 각각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은,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책임보험은 P & I Club이 제공하고 화물의 물적 손해에 관한 적하보험은 손해보험자가 제공하는 일종의 역할분담에서 비롯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P & I Club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각 선사는 해외의 P & I Club에 가입하고 있으며, 복합운송인이 배상책임을 종합적으로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예도 거의 없었다. 따라서, 운송인이 손해보험회사에 부보하는 예가 거의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손해보험회사와 운송인의 대립적인 관계가 확고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운송의 소비자인 화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운송인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더욱이, 선진국의 운송인단체들은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화주에게 가능한 충분한 손해배상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下에서 복합운송인이 외국보험자에게 부보하는 경우가 급증했고²⁾,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의 손해보험회사 각사도 1997년부터 복합운송인을 대상으로 한 종합보험인 「국제화물 운송업자 종합보험」을 발매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인 운송인과 손해보험자(이하, 편의상 보험자로 칭함)의 이해관계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손해보험자가 운송인의 책임보험을 인수하지 않는 것이 손해보험자와 화주가 운송인과 대립해서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는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국제화물운송에 관한 운송인 책임의 변화와 이에 대한 손해보험자의 내용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하는 것에 의해서, 한국의 손해보험회사와 운송인의 이해관계를 검토하려고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II. 운송인 책임의 역사적 변천

전통적으로 국제간 화물운송의 대부분은 해상운송에 의존해 오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컨테이너의 보급과 함께 복합운송이 일반화되고 있다. 이하, 이러한 해상운송인과 복합운송인 책임내용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고찰한다.

1) 화주는 무역조건에 따라서 송화인이 되는 경우(CIF조건)와 수화인이 되는 경우(FOB조건)가 있다.

2) 영국의 컨테이너보험전문회사인 TT Club에 가입한 국내복합운송업체는 63개이다(『Cargo News』, 1997년 8월, p. 49).

1. 해상운송인의 책임

영미법상에서의 해상운송인의 책임은 손해가 있으면 배상한다는 절대책임이었다. 이러한 절대책임은 해상운송인에게는 가혹한 것으로서 해상화물운송에 장애가 된다고 해서 보통법(common law)에 의해 그 책임을 완화한 엄격책임이 되었다. 엄격책임은 불가항력, 외적, 화물 또는 포장의 하자, 또는 공동해손에 의한 손해를 해상운송인의 면책으로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엄격책임은 화주에 대한 무한책임이었으나 1734년에 선가(船價)와 운송임의 합계를 책임한도액으로 하는 유한책임제로 변화했고, 1862년에는 선가의 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금액주의로 바뀌었다³⁾.

이와 같이 해상운송인의 책임을 유한책임으로 한 것은 해상운송에 있어서는 1사고당의 집적 손해액이 너무 크다는 이유에서였다. 즉, 해상사고가 발생하면 선주에게는 선박과 화물의 손해액과 선원이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동시에 발생하게 되며, 이로 인해서 선박회사가 도산하게 되면 국제화물운송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한편, 해상운송인측도 그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운송계약의 증거인 선하증권에 선원과 실면책조항 등의 면책조항을 도입해서 책임을 면제 또는 경감해 가고 있었다⁴⁾. 이와 같은 면책이 법률로 금지되고 있는 경우는 책임한도액을 낮게 책정하고 있었으며, 사실상 실행불가능한 짧은 기간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선하증권에 규정함으로써 손해배상 청구를 피하거나 화주에게 불가능한 거증책임을 지우고 있었다. 더욱이, 해상운송인은 운송계약 중에 보험 이익향수조항(Benefit of insurance clause)을 관행적으로 삽입하고 있었으며, 이에 근거해서 보험의 양수인으로서 화주가 가입한 보험이익을 향수하고 있었다. 즉 선주는 화주가 가입한 적하보험의 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대신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운송인의 면책에 대해서 화주, 보험자, 은행은 오랫동안 불만을 가져 왔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제1차 세계대전 후 수년간에 도난에 의한 보험금이 급증했고, 보험자는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적하보험의 보험금액을 선적가격의 75%로 제한하게 된다⁵⁾. 이와 같이 도난이 증가하고 해상운송인이 거의 모든 손해에 대하여 면책되는 상황을 배경으로 해상운송인은 절도를 유발하고 있다고 비난을 받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해상운송인과 화주 쌍방에게 공평을 기하기 위해, 영국정부는 1921년에 사태해결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게 된다. 이 위원회는 통일법률의 제정과 선하증권상 면책조항 사용의 금지를 권고했다. 해운업계는 이 권고에 대해서 법률에 의해 규제받기 보다는 자주적인 규칙의 제정을 희망하게

3) 今泉敬忠(1993), 「英國P & I保険の研究」, 成文堂, pp. 9~17.

4) 大崎正瑞(1989), 「船荷證券の研究」, 白桃書房, pp. 4~11.

5) 高城照三 監譯(1968), 「英國海上保險約款の變遷」, 損害保険事業研究所, pp. 220~221.

된다. 이를 위해 해운업계는 국제법학회(The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의 협력을 얻어서 1921년에 선주와 화주의 대표가 해이그에 모여서 협의하게 되었고, 1924년에 해이그 규칙(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of Law relating to Bills of Lading : Hague Rules)을 제정해서 1931년에 발효하게 되었다.

해이그규칙은, 운송품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서 운송품에 입힌 손해에 대해서는 해상운송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여기에 반하는 면책조항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⁶⁾. 따라서 보험이익향수조항 또는 여기에 유사한 조항은 무효로 되었다. 그러나, 항해과실, 화재, 불가항력, 전쟁 등에 의한 손해는 해상운송인의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다⁷⁾. 항해과실(errors of navigation and management of ship)이란⁸⁾ 항해 및 선박의 취급에 관한 과실로, 해상운송인이 책임을 지는 운송품의 보관 등에 관한 상업과실(errors of cargo handling and custody)과⁹⁾ 대비되는 것이다. 해이그 규칙은 국제해상운송을 위하여 발행된 선하증권 또는 이에 유사한 권리증서에 적용된다¹⁰⁾.

이러한 해이그규칙이 제정된 후에 이것을 개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두 가지가 있었다. 해이그비스비규칙과 함부르크규칙이다. 해이그비스비규칙은 1968년에 채택된 것으로 전술한 해이그규칙을 계승한 것이나, 제2차 대전 후 컨테이너의 출현과 각국의 조약 협석이 상위하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해이그비스비규칙은 해이그규칙과 마찬가지로 국제해상운송을 위해서 발행된 유통가능한 운송계약서(선하증권)에 적용되는 것을 목적을 하고 있으며, 특수한 위험을 갖는 생동물과 갑판적 화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함부르크규칙(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 Hamburg Rules)은 전술한 해이그비스비규칙에 대립되는 것으로, 해상운송인의 항해과실 등을 면책으로 하는 전통적인 책임원칙을 유지하는 해이그규칙 및 해이그비스비규칙에 근거한 해상운송인의 책임체계는 선주국인 선진국 중심의 책임체계이기 때문에, 화주국의 이익을 해친다고 하는 개발도상국 중심의 주장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개발도상국의 주장을 배경으로,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 및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에서의 심의를 거쳐, 1978년에 성립하고 1992년에 발효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함부르크규칙은 1996년 3월말 현재 7개국이 비준하고 17개국이 조약에 참가하고 있다¹¹⁾.

함부르크규칙은 선하증권의 발행에 관계없이 2국간 항구상호간의 국제해상운송에 적용된

6) Article III.

7) Article IV.

8) 林田 桂(1974), 「海上保險研究」, 海文堂, pp. 1~18.

9) 那崎義史(1979), 「商業過失と英國の積荷保險」, 「損害保險論集」, 損害保險事業研究所, pp. 127~148.

10) Article I (b).

11) OECD(1997), *Maritime Transport 1995*, pp. 144~147.

다¹²⁾. 즉 선하증권(Bill of Lading)의 의미를 해상운송의 증거서류로 규정함으로서 선하증권 뿐만이 아니라 기타 선하증권 이외의 운송서류도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¹³⁾. 또, 갑판적화물, 생동물도 화물으로서 새로운 적용 대상이 된다. 더욱이, 헤이그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상 운송인 면책사유를 폐지하고 과실 유무에 관한 거증책임을 해상운송인에게 전환하고 있다. 따라서, 해상운송인은 자기 및 대리인이 사고 및 그 결과를 배척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요구 되어지는 일체의 조치를 취한 것을 증명한 때만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함부르크규칙이 적용되는 경우, 항해과실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도 해상운송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그 결과 화주가 부담하고 있던 공동해손¹⁴⁾ 분담액도 해상운송인이 부담하게 되어 해상운송인에게는 보다 무거운 책임이 부과된다. 공동해손은 항해의 과실에 의해 야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동해손분담액도 해상운송인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해상운송인의 책임은 손해가 발생하면 책임을 지는 절대책임으로부터 불가항력 및 외적 등에 의한 손해는 면책되는 엄격책임으로 변화했고, 또 과실에 의한 손해만을 책임지는 과실책임으로 변해 왔다. 이 과실책임하에서도 항해과실과 같은 특정 사유에 대해서는 면책되고, 손해배상액은 일정한도로 제한되었다. 선진국은 이와 같이 확립되어 온 해상운송인의 기본적인 책임원칙을 유지하는 것에 의해서 넓은 의미에서 국제해상운송 전체의 비용 증가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개발도상국은 과실로 인해 화물에 손해를 입힌 해상운송인이 면책사항에 의해 책임을 지지않고, 더욱이 공동해손제도에 의한 비용의 일부를 화주에게 분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세계의 주요 해운국은 헤이그규칙 또는 헤이그비스비규칙을 채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선진국들의 주장에 대립하는 함부르크규칙은 아직 그 영향이 크지는 않으나 1992년 11월부터 발효하고 있다.

2. 복합운송인의 책임

1950년대에 도입되고 1970년부터 본격화된 컨테이너화(containerization)에 의해¹⁵⁾, 단일 운송계약하에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운송수단을 조합해서 적출지부터 목적지까지 일관운송하는 국제복합운송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부산항도 세계 7위의 컨테이너 취급항으로 알려져 있다¹⁶⁾. 이러한 국제복합운송은 선박을 소유하는 정기선사를 중심으로 하

12) Article I . 6.

13) Wilson, J. F. (1988), *Carriage of Goods by Sea*, Pitman Publishing, pp. 202~2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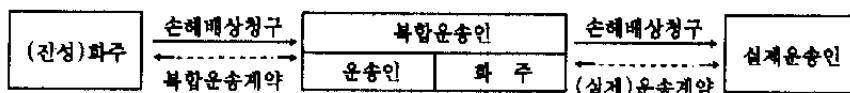
14) 공동해손의 정산은 1974년에 제정된 요크엔트워프규칙(York-Antwerp Rules)이 사용되고 있었으나 1994년에 새롭게 제정된 것이 점차로 사용되고 있다.

15) 육선종·추창업·김용진(1997), 「국제복합운송론」, 두남, pp. 506~508.

16) Fleming, D. K. (1997), "World container port rankings", *Maritime Policy & Management*, Vol. 24, Taylor & Francis, pp. 176~177.

는 VOCC(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와 선박을 소유하지 않는 NVOCC(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의 두 집단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¹⁷⁾.

이러한 복합운송인은 복합운송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제운송인에게 하청하는 경우가 있으며, 실제운송인이 복합운송인에 대하여 운송중권을 발행한 때에는 복합운송인과 실제운송인 사이에도 계약관계가 발생한다. 이 경우, 복합운송인은 고객인 (진성)화주에 대해서는 운송인의 입장에 서게 되나 실제운송인에 대해서 화주의 입장에 서게 된다. 따라서, (진성)화주는 복합운송인에게 복합운송계약에 의거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복합운송인은 실제운송인에게 (실제)운송계약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복합운송인의 책임 관계

이러한 실제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칙은 운송수단별로 성립하고 있다. 즉, 해상운송에는 전술한 헤이그비스비규칙과 함브르크규칙이, 육상운송에는 국제철도물품운송조약(CIM) 및 국제도로물품운송조약(CMR)이 있고, 항공운송에는 바르사바조약(WARSAW)이 있다. 그러나, 이들 각 조약별로 운송인의 책임내용과 배상한도액이 서로 다르다. 따라서, 이들 각 운송수단을 일관해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복합운송인의 책임과 각 운송구간에 적용되는 선박, 항공기, 트럭, 철도 등의 실제운송인에 대한 책임과의 관계가 문제가 된다. 이와 같은 복합운송인의 책임을 통일하려는 움직임은 1950년대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ICC의 복합운송증권에 관한 통일규칙, UN 국제복합운송조약, UNCTAD/ICC 복합운송증권규칙의 세 가지가 성립되고 있다.

국제상공회의소(ICC)는 1973년 초두부터 복합운송증권(CT Document)을 은행이 매수 가능한 것으로서 인정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민간에 위한 국제적 통일규칙의 작성에 착수했다. 그 결과 1973년 11월에 TCM조약안을 기초로 해서 복합운송증권에 관한 통일규칙(Uniform Rules for a Combined Transport Document, 1973)을 공표하고, 이 규칙의 개정판을 1975년 10월에 ICC Publication No. 298로 발표하고 있다. ICC의 복합운송증권 통일규칙은 복합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복합운송인은 운송품의 인수시점에서 인도시점까지 발생한 운송품의 멸실, 손상 또는 지연에 관해서 책임

17) 披露(1995. 12), 「日本における國際貨物運送システムの再編について」, 『商経論集』, 第69號, 早稻田大學, pp. 132~143.

을 진다. 운송품의 멸실, 손상 또는 자연이 어떤 특정구간에서 발생한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운송인의 책임은 당해 구간에 적용되는 국제조약 또는 국내법의 규정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한다. 즉, 복합운송인의 책임체계는 이종책임체계(Network Liability System)에 의거하고 있다. 또, 책임내용은 과실책임이며, 동맹과업, 고유의 하자 등에 대한 면책이 규정되어 있다(제12조). 이러한 ICC의 복합운송증권 통일규칙은 민간단체에 의해서 작성된 임의적인 것으로, 복합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이에 준거할 것을 합의한 경우에만이 적용된다.

한편, 국제연합에서도 1979년 11월과 1980년 5월의 2회기에 걸쳐 국제복합운송조약 채택 회의가 제네바에서 개최되어, UN국제복합운송조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of Goods)이 1980년 5월 24일에 채택되었다. UN국제복합운송조약에서 규정하는 복합운송인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복합운송인의 책임기간은 복합운송인이 화물을 인수한 시점부터 인도시점까지의 운송의 모든 기간으로 한다. 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화물의 멸실, 손상 또는 자연에 관해서, 복합운송인은 자신, 그 사용인 또는 대리인, 그 밖의 자가 손해를 야기한 사고의 발생 및 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일체의 조치를 취한 것을 증명하지 않는 한, 그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진다. 즉, 원칙적으로는 전운송구간에 걸쳐서 예외없이 과실책임원칙에 의해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복합운송인의 책임체제 전구간에 걸쳐서 동일한 책임을 지는 단일책임체제(Uniform Liability System)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책임한도액은 해상구간을 포함하는 복합운송과 해상구간을 포함하지 않는 복합운송을 구분해서, 본 조약에 의한 것보다 높은 책임한도액을 정하는 국제조약이나 강행법규가 있는 경우에는, 책임한도액은 그 국제조약이나 강행법규가 우선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제19조).

이러한 UN국제복합운송조약이 해이그규칙 또 해이그비스비규칙과 같이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복합운송인이 책임을 지고 해상운송인은 면책되는 경우가 있다. 즉, UN국제복합운송조약에는 과실책임에 일체의 예외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항해과실의 문제를 취급하고 있지 않다. 그 결과, 동 조약을 해이그규칙 또는 해이그비스비규칙과 같이 채용하는 경우, 항해과실면책 때문에 화물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해서 해상운송인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손해에 대해서도 복합운송인이 책임을 지게 된다.

선하증권은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상운송에만 사용된다. 그 이유는 항공, 도로 또는 철도에 의한 운송은 운송기간이 짧기 때문에 선하증권을 사용하는 경우 선하증권이 도착되는 시간과 겉맞지 않기 때문이다. 해상운송에 있어서도 화물의 대양횡단운송의 소요시간은 단축되고 있으며, 선하증권의 원본 중 1통이 도달하기 전에 본선이 먼저 도착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운송인은 대개 은행보증을 요구하고 후일 그 화물이 정당하지 않은 개인에게 인도된 것이 판명된 때에는 면책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¹⁰⁾. 이와 같은 선하증권

과 상환하지 않고 화물을 인도하는 관행이 확산될 경우, 운송인은 선하증권 원본과 상환하는 경우 이외는 화물을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의해서 유지되어 온 선하증권의 유통성이 위기를 맞을 수도 있는 것이다. 더욱이 선하증권 등의 운송서류에 적용되는 현재의 각종 국제조약은, EDI를 이용한 운송의 경우에도 서류를 별도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EDI보급의 장애 요인으로 지적된다¹⁹⁾.

이러한 상황下에서 운송화물의 중방서류로서의 선하증권제도는 변화하고 있다. 즉 항공, 도로, 철도운송에서 뿐만이 아니라 특히 근거리 운송을 중심으로 해상운송에서도 유통성이 없는 waybill 형태의 문서가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²⁰⁾. 이러한 형태의 문서는 소유권을 나타내는 증서는 아니므로 목적지에서 화물의 인도시에 문서증권을 필요로 하지 않고, 화물은 운송증권면에 수화인으로 지명된 자에게 인도된다. UN국제복합운송조약은 이와 같은 현실을 고려해서 유통성이 있는 복합운송증권(제6조)과 유통성이 없는 복합운송증권(제7조)의 모두에 적용된다.

이러한 UN국제복합운송조약은 개발도상국의 주도에 의한 것으로 현재 6개국이 서명하고 있어 발효에 필요한 30개국의 비준이 언제가 될 것인가는 예측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88년에 UNCTAD와 ICC의 합동작업반이 조직되어 복합운송에 관한 통일 규칙의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과를 거쳐서 제정된 UNCTAD/ICC 복합운송증권규칙(UNCTAD/ICC Rules for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s 1992)은, Hague-Visby Rules를 기초로 한 것으로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UNCTAD/ICC 복합운송증권규칙은 복합운송계약에 삽입시키는 경우에 적용되는 임의적인 것이다. 복합운송인의 책임체계는 단일책임체계를 원칙으로 하나 국제법규나 국내법규의 강행규정이 있으면 이를 강행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즉, 수정단일책임(Modified Uniform Liability)을 채택하고 있다. 책임내용은 과실책임원칙으로 항해과실 등의 일정한 사유는 운송인의 면책으로 하고 있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각 국제화물운송에 관한 규칙내지 조약은 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그 책임내용이 상이하다. 더욱이, 손해배상책임에 한도액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 한도액은 각기 상이한 것이 되고 있다. 화주(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는 운송인의 책임을 강화하려고 하고, 운송인(선진국)의 입장에서는 책임수준을 낮게 규정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거의 모든 국제복합운송이 ICC의 복합운송 통일규칙 또는 UNCTAD/ICC 복합

18) Morris, J. R.(1997), "The Delivery of Cargo without Production of Bill of Lading", *International Insurance Law Review*, Vol. 5.

19) Jones, P.(1994), "International transport conventions: obstacles to the use of EDI", *The EDI Law Review*, No. 4, Kluwer Academic Publishers, pp. 277~285.

20) 宮本三夫・郷原賛亮共譯(1994),『國際運送と新しい企業責任』,成山堂書店, p. 32.

운송증권규칙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운송인 또는 복합 운송인에게 곧바로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책임이 있다고 해서 손해액 전액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다. 즉, 운송인의 책임은 범위와 금액으로 제한되는 유한책임제도이며, 이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국제화물운송에 관한 협약하는 모든 조약 또는 규칙에 공통되고 있다.

III. 운송인에 대한 적하보험의 대응

적하보험은 화주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가입하는 화주(피보험자)를 위한 보험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각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적하보험 약관은 영국의 보험업계가 제정한 영문약관이다. 이하, 이러한 적하보험의 운송인에 대한 대응을 역사적으로 고찰한다.

1. 해상운송인에 대한 대응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국제조약이 제정되기 전에는, 운송인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할 손해에 대해서도 화주가 보험자로부터 보상받는 경우에는, 화주에게는 실질적인 손해가 없다는 이유로 화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고 있었다. 더욱이, 운송인이나 그 밖의 수탁자는 운송계약서(선하증권 등)의 수탁자조항에 보험이익향수조항을 삽입하고 있었으며, 이 조항은 유효하다고 인정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下에서, 화주는 운송인측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로 손해액이 소송비용을 충당할 만한 가치가 있을 정도로 큰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송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실의이 없는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이와 같이 거의 모든 손해가 보험자에게 전가되는 것은 보험자의 이익에 대처되는 것이었다.

보험자는 이러한 운송인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운송인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는 보험자가 구상할 수 있도록 하든가 다른 방법으로 운송계약서에 삽입되는 보험이익향수조항에 대항할 필요가 있었다²¹⁾. 영국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가진 조항이 적하보험계약에 삽입되고 있었으며, 1925년에는 협회수탁자조항(Institute Bailee Clause)이 제정되었다. 이 조항은 모든 적하보험계약에 삽입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 아니고, 당시 해이그규칙에 의거한 해상물품운송법이 제정되지 않은 미국 및 캐나다와의 무역에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보험자에게 권고되고 있었다. 영국에서는 1924년에 전술한 해이그규칙에 근거한 해상물품운송법(Carriage of Goods by Sea Act)이 제정되어 운송인의 면책 등이 제한되고 있었으나, 동법이 제정되지 않은 국가에서 발행되고 있는 선하증권 등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21) 鹿井利明(1986), 「英國海上保險約款論」, 關西大學出版部, pp. 265~267.

에 유연성있게 대처하기 위해서, 협회수탁자조항은 영국보험업계가 제정한 협회적하약관 (Institute Cargo Clauses; ICC)에 삽입되지 않고 개별로 인쇄되어 필요시에 첨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²²⁾. 이 협회수탁자조항은,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의 여부에 관계없이 선하증권에 보험이익항수조항이 없다고 가정하고, 운송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지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방법에는 화주가 운송인과 보험자의 어느 쪽으로부터도 손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발생시키는 문제가 있었다. 실제로는 선하증권상에 보험이익항수조항이 삽입되어 있어 화주가 운송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보험자는 손해보상을 거절하기 때문이다.

화주가 보험에 가입하고도 손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험자는 적하보험약관의 수탁자조항을 운송인에게 구상하기 위한 조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서 1934년에 협회수탁자조항을 개정해서 협회적하약관(ICC)에 삽입하게 되었다. 그 개정내용은 보험이익항수조항이 없다고 가정해서 운송인이 책임져야 할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면책되나, 운송인이 그 손해배상을 거절할 때에는 보험자가 보상한다는 것이었다. 보상 내용은 손해상당액을 무이자로 피보험자(화주, 이하 동일)에게 대여하고, 피보험자가 운송인에게 손해를 회수한 때에 한해서 회수액을 한도로 대여금을 반환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한 조건으로, 피보험자가 보험자를 위해서 운송인에 대한 청구권 보존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 중 보험자의 대부금에 대한 부분은 보험자가 지불한다는 것이었다. 영법에 있어서는 대위권에 근거해서 보험자가 운송인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우리나라와 일본 등과는 달리, 보험자가 자기명의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없고 피보험자가 원고가 되고 있다²³⁾.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보험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청구권 보존 요구는 사실상 대위권 보존을 위한 조치였다.

한편, 영국이 1924년에 해상물품운송법을 제정한 후에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각각 1936년에 제정된 해상물품운송법에 의해 외국행화물의 운송계약에 삽입되는 보험이익항수조항이 무효로 되었다. 따라서, 1958년 협회적하약관(ICC)의 수탁자조항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화물의 손해를 보상하고 피보험자에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나, 이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보험자가 지불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즉, 운송인이나 그 밖의 수탁자가 운송계약상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는 피보험자가 운송인 등에게 손해발생을 통지를 행하고 소송기한내에 소송을 제기하는 의무를 피보험자에게 과했을 뿐 특별히 보험이익항수조항의 면책을 명기한 것은 아니었다. 이와 같은 1958년 협회적하약관(ICC)의 수탁자조항은, 각국

22) 高城照三 監譯(1968), 「英國海上保險約款の變遷」, 損害保險事業研究所, pp. 223~225.

23) 後藤茂之(1987), 「貨物保險代位請求権をめぐる諸問題について(2), 「損害保險研究」, 第49卷 第3號, 損害保險事業聯合研究所, pp. 100~103.

이 해이그규칙을 내국법화해서 모든 해상운송에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 보험자가 구상청구를 하기 위해서 피보험자에게 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보존을 요구하는 일종의 손해방지조항이었다. 1934년 협회적하약관(ICC)의 수탁자조항이 운송인의 보험이익향수조항에 대항하기 위한 면책조항이었던 것과는 다른 것이다. 그러나, 1958년 협회적하약관(ICC)에서의 수탁자조항에 대한 개정은 시기상조였다. 모든 운송계약의 보험이익향수조항이 무효로 된 것이 아니고, 해상물품운송법이 적용되는 범위에 한정해서 무효였기 때문이다. 즉, 해이그규칙은 국제해상운송을 위해서 발행된 유통증권에 적용할 목적으로 제정되고 있기 때문에 내국간 운송 등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63년 협회적하약관(ICC)에는 손해방지조항화된 1958년 협회적하약관(ICC)의 수탁자조항과는 별도로, 당초의 협회수탁자조항과 같은 취지의 보험이익불공여조항(Not to insure clause)이 규정되었다. 영국에서 1982년 협회적하약관(ICC)만을 사용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와 일본 등지에서는 후술하는 1982년 협회적하약관(ICC)과 함께 현재까지도 사용되고 있는 1963년 협회적하약관(ICC)의 제9조(수탁자조항)과 제10조(보험이익불공여조항)은 다음과 같다.

9. It is duty of the Assured and their Agents, in all cases, to take such measures as may be reasonable for the purpose of averting or minimising a loss and to ensure that all rights against carriers, bailees or other third parties are properly preserved and exercised.

「제9조(수탁자조항) 손해를 방지·경감할 목적으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고, 운송인, 수탁자 그밖의 제3자에 대한 일체의 권리가 적당히 보존되어 행사할 수 있도록 확보하는 것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피보험자 및 그 대리인의 의무이다.」

10. This insurance shall not inure to the benefit of the carrier or other bailee.

「제10조(보험이익불공여조항) 이 보험은 운송인이나 그 밖의 수탁자를 위하여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그 후 1982년 협회적하약관(ICC) 제정시에는 전술한 수탁자조항과 보험증권본문의 손해방지조항(제16조)이 합체화되어 피보험자의 의무조항(Duty of assured clause)으로 신설되고, 보험이익불공여조항(제15조)은 그대로 재록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82년 협회적하약관 제16조(피보험자의 의무조항)은 다음과 같다.

16. It is the duty of the Assured and their servants and agents in respect of loss recoverable hereunder

16.1 to take such measures as may be reasonable for the purpose of averting or minimising such loss, and

16.2 to ensure that all rights against carriers, bailees or other third parties are properly preserved and exercised

and the Underwriters will, in addition to any loss recoverable hereunder, reimburse the Assured for any charges properly and reasonably incurred in pursuance of these duties.

「제16조(피보험자의 의무조항)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는 것은 이 보험에 의해 보상되는 손해에 대한 피보험자 및 그 사용인, 대리인의 의무이다.

16.1 상기의 손해를 회수 또는 경감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과

16.2 운송인, 수탁자 및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일체의 권리가 적절히 보존되어 행사할 수 있는 상태를 확보하는 것.」

또, 보험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이 보험에서 보상되는 일체의 손해 외에, 이러한 의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적절하고도 합리적으로 지출된 일체의 비용을 지불한다.

이상의 고찰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적하보험에서는 적하보험이 운송인의 책임회피 또는 책임경감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노력해 왔다. 동시에 피보험자(화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서 적하보험의 효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배려해 왔다. 즉, 피보험자(화주)의 손해는 가능한 신속하게 보상하나, 운송인에게 책임이 있는 부분은 가능한 구상해서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적하보험에서의 보험자의 입장은 과거에도 그려했듯이 현재에도 해상운송인에 대해서 대립적이다.

2. 복합운송인에 대한 대응

1779년에 영국의 로이즈가 채용한 SG보험증권²⁴⁾에 의한 적하보험의 담보는 화물이 본선에 선적되었을 때 시작되어 도착항의 부두에 하역되었을 때 종료되고 있었다. 따라서, 화물이 본선 적재를 위해서 부선안에 있는 동안은 담보되지 않고, 도착항의 본선에서 하역된 후 부두에 양륙하기 위해서 부선에 있는 동안은 담보되고 있었다. 즉, SG보험증권에서는 선적항의

24) 황남일·이홍무(1997), 「무역보험의 이론과 실제」, 무역경영사, pp. 191~213.

본선에서 하역항의 부두까지를 담보하고 있었으며, 선적항에서는 본선의 위험과 부선의 위험은 별개의 위험으로 간주되고 있었다. 따라서, 선적항의 육상에서 본선까지의 부선운송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부선조항(craft clause)을 첨부한 특약이 체결되고 있었다²⁵⁾. 그 후 육상운송까지 담보를 확장하기 위하여 창고간담보조항이 사용된다. 창고간담보조항(Warehouse to Warehouse Clause)은 19세기 말에 도입되어 협회적하약관(ICC)이 처음으로 제정된 해인 1912년에 협회적하약관(ICC)에 삽입된 것이다. 이러한 창고간담보조항은 수 차례 개정이 거듭된다²⁶⁾. 그 후 Jhon Maritime of London, Ltd. v. Russel 사건을 계기로 최종 창고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²⁷⁾ 1963년에 보험기간에 관한 세 조항을 하나로 합친 운송조항(Transit Clause)이 협회적하약관(ICC)에 도입되어 선적 전과 하역 후의 전 구간이 담보된다. 그 내용은 보험담보는 운송화물이 보관장소에서 반출되는 시점에서 시작되어 목적지의 최종 창고에 인도될 때까지 계속된다고 규정한 것이다²⁸⁾. 이러한 내용의 운송조항은 세 종류(A, B, C)의 1982년 협회적하약관(ICC)(제8조) 모두에 제특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담보범위의 확장과 함께 전술한 컨테이너화가 진행되어,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1982년 협회적하약관(ICC)의 일반면책조항(제4조)에 컨테이너에 관한 규정이 삽입되었다²⁹⁾.

1982년 이전의 협회적하약관(ICC)에는 불완전한 포장에 의한 손해에 대한 규정은 없고, 피보험화물의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에 의한 손해의 면책이 규정되어 있었으나, 불완전한 포장은 판례에 의해서 전위험담보(All Risks) 하에서도 고유의 하자로서 면책되고 있었다³⁰⁾. 이에 대하여, 1982년 협회적하약관(ICC)의 일반면책조항(제4조3항)에는 화물이 운송 중의 제위험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포장을 피보험자에게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포장에는 컨테이너 또는 리프트벤에의 화물의 적입(stowage)을 포함하고 있다. 그 이유는 컨테이너가 포장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담보가 개시되기 전에 피보험자 또는 그 사용인에 의하여 컨테이너 또는 리프트벤에 운송화물이 적입된 경우에는 보험자가 면책된다. 그러나, 보험담보가 개시된 후에 운송인에 의해 운송화물이 컨테이너 또는 리프트벤에 적입된 경우는 보험자가 면책되지 않고 피보험자에게 손해가 보상된다. 운송인에 의하여 운송화물이 컨테이너 또는 리프트벤에 적입된 경우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보상한 후에 운송인에게 구상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또, 세 종류의 1982년 협회적하약관(ICC) 모두에 규정하고 있

25) 萬城照三(1950),『海上保險研究(下)』, 損害保險事業研究所, pp. 95~99.

26) 加藤修(1990),『國際物流のリスクと保険』, 白桃書房, pp. 190~196.

27) 萬城照三(1970),『英文橫荷保險證券論』, 早稻田大學出版部, pp. 286~292.

28) 황남일·이홍무(1997), 전계서, pp. 257~263.

29) 상계서, pp. 241~246.

30) Lambeth, R. J. (1986), Templeman on Marine Insurance, Pitman Publishing Ltd., pp. 168~169.

는 불감항(不堪航) 혹은 부적합면책조항(제5조)에는 부적합(unfitness)에 관하여는 선박 또는 부선 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또는 리프트벤 등의 운송용구가 규정되어 있다. 그 내용은 선박이나 운송용구가 안전한 운송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피보험자가 알고 있었을 경우에만 보험자의 면책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선박이나 운송용구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피보험자가 불감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까지도 선박과 운송용구에 대한 감항성(堪航性;seaworthiness) 또는 적합성을 요구하는 것은 가혹하며, 그 결과 손해가 발생한 때에도 피보험자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어 적하보험의 효용을 감소시킨다는 이유에서이다.

이상과 같이 복합운송에 대한 적하보험의 내용은 해상운송의 담보에 육상운송까지도 포함해서 담보범위를 확장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적하보험의 담보범위 확장에 대응하기 위하여 포장이나 컨테이너 등의 운송용구에 관한 면책이 규정되었다. 그러나, 화주인 피보험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적하보험의 효용을 유지하는 동시에 운송인에게 책임이 있는 손해는 구상한다는, 종래의 적하보험에서의 보험자 입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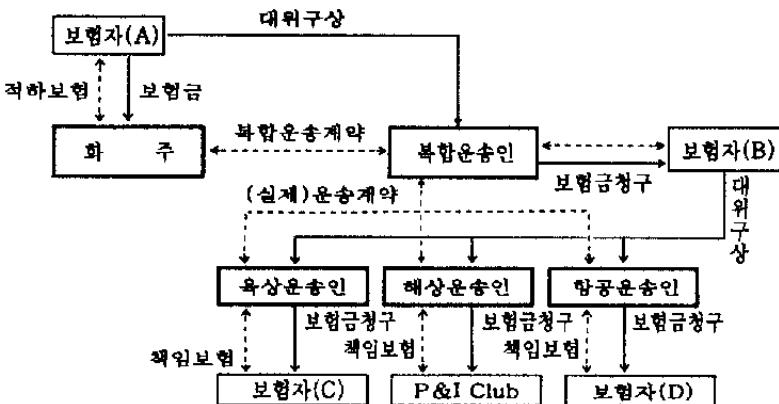
IV. 손해보험자와 운송인의 이해관계 변화

적하보험은 화주가 가입하는 보험이며, 책임보험은 운송인이 가입하는 보험이다. 이하, 이 2종류 보험의 관계와 보험자의 입장을 고찰함으로써 보험자의 운송인에 대한 이해관계를 규명한다.

1. 적하보험과 책임보험의 관계

국제화물운송에 관계되는 보험을 단순화해서 정리하면, 화주가 보험자에게 부보하는 적하보험과 운송인이 P & I Club 또는 보험자에게 부보하는 책임보험이다. 이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의 <그림 3>과 같다.

복합운송의 경우, 화주는 복합운송인과 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자(A)와 적하보험 계약을 체결한다. 복합운송인은 운송화물의 손해에 대한 화주의 손해배상청구에 대비해서 보험자(B)와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각 운송구간별로 실제운송인과 (실제)운송계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의 보험자(B)는 손해보험회사 또는 TT Club(Through Transport Mutual Insurance Association)이다. TT Club은 영국의 컨테이너보험 전문 보험회사이다. 또, 복합운송인은 각 실제운송인에 대해서는 화주의 입장에서 화물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된다. 각 실제운송인은 이러한 복합운송인의 손해배상청구에 대비해서 보험자와 책임보험계약 또는 P & I Club과 P & I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그림 3〉 국제화물운송에 관한 적하보험과 책임보험

복합운송조약은 화주와 복합운송인간의 복합운송계약에 적용되며, 복합운송인과 육상운송인·해상운송인·항공운송인 등의 실제운송인 간의 운송계약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운송인과 복합운송인의 운송계약은 복합운송계약이 아니며, 헤이그비스비규칙이나 바로샤바규칙 등의 특정의 단일운송방식에 적용되는 조약 또는 국내법이 적용된다. 그 결과, 복합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이 실제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복합운송인은 화주에게 지불해야 할 금액을 실제운송인에게 완전하게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욱이 실제운송인이 도산하거나 재하청을 하는 경우는 복잡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한다³¹⁾.

따라서, 복합운송인은 실제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계없이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에 대비해서 보험자에게 책임보험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에 복합운송업계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추세이다. 1984년 영국복합운송인협회(The United Kingdom's Institute of Freight Forwarders; IFF)는 가입신청자가 회원으로서의 적합성 또는 적격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로서 적당한 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³²⁾.

이러한 책임보험에서 보상되는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소송이나 중재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책임유무가 확정되기까지는 수년씩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운송인은 소송이나 중재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경감하려고 노력한다. 따라서, 운송인을 상대로해서 화주가 책임을 추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로 인식되어 오고 있다. 더욱이 전술한 바와 같이 각 조약 또는 규칙별로 각기 다른 책임내용과 책임한도액이 설정되어 있으며, 운송인은 이러한 책임내용과 한도액 범위내에서만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있다. 이러한 운송인의 손

31) 1997년 7월말 현재 83개의 복합운송업체가 이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32) 윤민현(1997), 「한국 P & I 클럽 설립에 관한 고찰」, 『損害保險』, 제342호, 대한손해보험협회, pp. 24~25.

해배상책임이 인정된 후에야 비로서 책임보험에서 운송인에게 보상되고 손해배상금이 운송인으로부터 화주에게 지급되는 것이다. 더욱이,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조차도 그 손해를 실제로 지불할 운송인의 지불능력에 대한 보장은 없다. 즉, 운송인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한 경우에도 가입액이 부족하거나 P & I보험 또는 책임보험에서 담보하지 않는 특정위험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의해서 운송인이 지불불능(도산)이 될 수도 있다. 한편, 적하보험은 운송인의 배상책임 유무에 관계없이 화물에 발생하는 특정손해를 신속하게 보상해 오고 있다. 따라서, 은행 등은 운송인의 책임여하에 관계없이 특정손해가 보상되는 적하보험증권을 화주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국제운송화물은, 화주가 화물의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 적하보험에 부보하고, 운송인이 동일한 화물에 발생한 손해 중 화주에게 지불하게 될 손해배상금을 보상받기 위해서 P & I보험 또는 책임보험을 부보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운송인의 책임추궁은 보험자간의 구상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다. 이와 같이 동일 목적물에 대해서 화주와 선주가 동시에 서로 다른 보험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중복보험(double insurance)이라고 주장되기도 한다. 그러나, 운송인이 국제화물운송에 관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전통적인 운송인의 책임은 과실책임으로 특정사유에 의한 손해는 면책되고 있으며,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일정한도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보험은, 국제화물운송에 관한 위험 전부에 대해서 중복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적하보험은 보험요율 산정시에 적하보험자의 운송인에 대한 구상액이 충분히 고려된다. 적하보험의 가격인 보험료는 보험자가 자불하는 실제손해액 즉 지급보험에서 구상회수액을 차감한 금액에 기초해서 산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구상액이 크면 클수록 보험의 원가인 보험자가 부담하는 실제손해액이 적어지므로 보험료가 싸게 될 것이고, 구상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보험의 원가인 보험자가 부담하는 실제손해액이 많아지므로 보험료가 비싸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보험계약의 목적은 일정인이 일정사고에 의해서 손해를 입을 가능성으로 정의되는 피보험이익(insurable interest)이며, 각국의 보험계약법은 피보험이익이 없는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³³⁾. 적하보험에서의 일정인은 화주이고 일정사고는 화재·침몰 등이며, 책임보험에서의 일정인은 운송인이고 일정사고는 손해배상을 청구당하는 것이다. 중복보험이란 동일한 피보험이익에 대해서 중복해서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지칭하기 때문에 동일한 화물의 서로 다른 피보험이익에 대해서 각각 적하보험계약과 책임보험계약이 체결된다고 해서 중복보험이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보험은, 중복보험이라기보다는 2중구조보험(dual system of insurance)이라고 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즉, 적하보

33) 1906년 영국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 제4조.

험은 화물의 물적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 화주가 화주의 비용으로 가입하는 보험이고, 책임보험은 화물의 손해 중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보상받기 위해서 운송인이 운송인의 비용으로 가입하는 보험인 것이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화주는 운송인의 책임여하에 관계없이 적하보험에 필요하고, 국제운송 도중에 발생한 화물의 손해는 최초에 적하보험자로부터 화주에게 보상된다. 적하보험자인 보험자(A)는 화주로부터 복합운송에 관한 조약 또는 규칙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양도받아 복합운송인에게 대위구상하면 복합운송인은 보험자(B)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게 된다. 보험자(B)는 화주로서의 복합운송인에게 각 운송수단별로 성립되고 있는 각종 조약 등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양도받아 각 실제운송인에게 구상청구하고, 각 실제운송인은 자신과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보험자(C), 보험자(D) 또는 P & I Club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된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거의 모든 분쟁은 적하보험의 보험금을 지불한 적하보험자와 책임보험자(또는 P & I Club)의 관계로 종결된다. 따라서,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각종 조약이나 규칙의 주된 역할은, 최종적으로 보험자(또는 P & I Club)간의 구상청구권의 내용을 결정하는 데 있다.

2 운송인에 대한 손해보험자의 이해관계

운송인의 책임이 강화된다고 해서 당장에 국제운송에 관한 위험전체가 변화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화물의 멸실이나 손상이 증감하는 것도 아니다(운송인의 책임이 강화되면 화물에 대한 운송인의 배려가 개선되는 결과 장기적으로는 손실사고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되기도 한다). 따라서, 운송인의 책임수준을 결정하는 문제는 손해사고의 수량이 아니고 손해를 누가 부담하는가 하는 문제가 된다. 즉, 함브르크규칙의 발효와 같은 운송인의 책임강화는 적하보험을 인수한 보험자에게는 운송인에 대한 구상청구가 보다 용이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운송인책임이 강화되면 적하보험자에 의한 구상청구의 성공전수 또는 금액이 증가하게 되고, 그 결과 적하보험자는 적하보험의 보험료를 인하하지 않는 한 이익이 증가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보험자는 전통적으로 화물 등에 대한 물적위험을 주로 인수해 오고 있으며, 배상책임의 인수에는 매우 소극적이었다. 또, 종래의 해상운송인은 선박을 소유하는 선주이며, 선주의 화주에 대한 배상책임은 P & I Club이 담보해 왔다. 따라서, 운송인의 책임강화는 보험자의 P & I Club에 대한 구상액을 증가시켜 보험자의 실제손해부담액을 감소시키므로 보험자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것이었다. 또, 운송인의 책임강화에 의해서 위험의 배분이 화주로부터 선주로 이전하게 되면 선주가 부담하게 될 손해배상액이 증가하게 된다. 그 결과, 선주의 손해배상액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P & I Club의 부담액도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P

& I Club은 운송인의 책임강화는 이익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서 이에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한다. 이러한 P & I Club의 입장은 과거에도 그려했듯이 현재에도 변함이 없다.

그러나, 함브르크규칙의 제정시의 입장표명에 나타난 바와 같이³⁴⁾, 현재는 P & I Club뿐 만이 아니라 운송인의 책임강화에 대해서 소극적인 보험자도 적지 않다. 이러한 보험자의 태도는 전통적인 것과는 크게 다른 것이다. 복합운송인 중에 선박을 소유하지 않는 NVOCC는 선주를 회원으로 하고 있는 P & I Club에는 가입할 수 없다³⁵⁾. 따라서, NVOCC는 화주에 대한 배상책임의 담보를 보험자에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영국이나 일본 등지의 보험자는 이러한 복합운송인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컨테이너의 출현 직후인 1960년대 말부터 복합운송인을 위한 컨테이너종합보험(협회컨테이너약관이 1969년 10월에 제정되고 1987년 1월 1일에 개정됨)을 발매하고 있다. 컨테이너종합보험에는 컨테이너자체의 보험(Container Itself Insurance or Box Insurance)과 컨테이너소유자의 제3자 손해배상책임보험(Container Owner's Third Party Liability Insurance) 및 컨테이너운영자의 화물손해배상책임보험(Container Operator's Indemnity Insurance)의 세 종류가 있다³⁶⁾. 컨테이너종합보험은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복합운송인에게 보험담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발매된 것이다. 이는 컨테이너자체의 보험을 주보험계약으로 해서 컨테이너소유자의 제3자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컨테이너운영자의 화물손해배상책임보험을 특약형식으로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컨테이너자체의 보험계약은 단독으로 체결될 수 있으나, 컨테이너소유자의 제3자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컨테이너운영자의 화물손해배상책임보험은 컨테이너자체의 보험에 부대해서 계약이 체결된다. 이러한 컨테이너자체의 보험은 컨테이너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부보하는 보험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협회컨테이너약관(Institute Container Clauses)과 컨테이너소유자의 제3자 손해배상책임보험(Container Owner's Third Party Liability Insurance) 및 컨테이너운영자의 화물손해배상책임보험(Container Operator's Indemnity Insurance)의 세 종류의 약관이 1983년 1월에 각각 인가되었다. 이는 협회컨테이너약관을 주보험으로 해서 컨테이너소유자의 제3자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컨테이너운영자의 화물손해배상책임보험을 특약형식으로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전술한 컨테이너종합보험과 동일한 형식의 보험이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복합운송인이 이 보험에 가입하는 예는 거의 없었다. 그러던 중 1997년에 들어와 FIATA가 회원에게 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했다. 즉, 한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Korea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s Association; KIFFA)가 회원으로 가입

34) 宮本三夫・郷原資亮, 전개서, p. 22.

35) 今泉敬忠(1989), 「P & I保険の解説」, 成山堂書店, pp. 15~16.

36) 加藤修(1994), 「國際貨物海上保險實務」, 成山堂書店, pp. 206~227.

하고 있는 국제복합운송주선업협회 국제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Forwarders Association; FIATA)은, 적절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회원에게 표준복합운송선하증권인 FBL(FIATA Combined Transport Bill of Lading)의 사용을 금지한 것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손해보험회사 각사는 운송인의 화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Goods-Legal Liability), 전문직업인 배상책임(Professional Indemnity), 컨테이너에 대한 전위험담보(Trailers / Containers - All Risks), 화물에 대한 전위험담보(Goods - All Risks)의 4종류를 선택적으로 부보할 수 있는 「국제화물 운송업자 종합보험(International Freight Movement Operators Insurance)」을 발매하기에 이르렀다. 그 특징은 기존의 보험보다 담보범위를 확장하고 선택적으로 부보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가입자의 선택폭을 넓힌 데 있다. 이 보험은 복합운송인이 가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 급격히 가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³⁷⁾. 그러나, 영국의 TT Club의 보험에 비해서 제3자 배상책임과 운송인의 벌금, 방역비 등의 기타비용이 담보가 없는 문제점은 있다.

이상과 같은 상황하에서도 보험자의 운송인에 대한 대립적인 이해관계가 변하지 않을 것인가가 문제이다. 복합운송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경우, 적하보험을 인수한 손해보험자(A)는 복합운송인에 대한 구상청구 가능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구상액을 획득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화주에 대한 실질적인 손해보상액도 감소한다. 따라서, 보험자(A)는 화주에 대한 적하보험의 보험료를 인하하지 않는 한 이익이 증가한다. 한편, 복합운송인의 책임이 강화되면 복합운송인은 보다 많은 손해배상금을 지불할 책임을 지게 되고, 그 결과 보험자(B)가 인수하는 화물손해배상책임보험에서는 보험금지급액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화물손해배상책임보험은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는 한 이익이 감소되거나 손실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즉, 보험자(A)와 보험자(B)가 동일 보험자이고 보험료의 인상이나 인하가 없는 경우를 가정하면, 적하보험의 이익증가를 화물손해배상책임보험의 손실증가가 상쇄하는 결과가 된다. 단, 적하보험 인수금액과 책임보험 인수금액의 크기에 따라 손실과 이익의 변동폭에 대한 비교가 문제시 될 뿐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같이 동일보험자가 적하보험과 책임보험을 동시에 인수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운송인책임의 강화가 반드시 보험자(보험회사)의 이익증가가 되지는 않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보험자가 구상청구에 성공한다는 것은 화물손해배상책임보험에서 지급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운송인의 책임이 강화되는 경우, 보험자는 적하보험의 보험료인하 압력만 받게 될 것을 염려한다. 더욱이, 우리나라에는 P & I Club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모든 선사는 영국을 비롯한 각국의 P & I Club에 가입하고 있고³⁸⁾,

37) 1997년 7월 말 현재 83개의 복합운송업체가 이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보험자는 운송인의 배상책임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복합운송인협회 등을 중심으로 복합운송인 스스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서 손해배상능력을 유지하려는 현재의 세계적인 추세는 우리나라 복합운송인에게 책임보험가입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보험자가 운송인의 책임강화만을 주장할 수 만은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즉, 보험자가 적하보험을 판매하고 운송인에 대한 책임보험은 판매하지 않던 시기에는 운송인의 책임강화가 곧 보험자의 이익증대를 의미했으나, 적하보험과 책임보험을 동시에 판매하게 된 현상황에서 운송인의 책임강화가 보험자의 이익증대가 된다는 등식이 반드시 성립하지 않게 된 것이다.

V. 결 론

보험자는 화물의 국제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화주에게 보상하고, 운송인이 배상책임을 지야할 손해는 적극적으로 운송인에게 구상청구하는 대립적인 관계였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도, 운송인의 면책범위의 확대와 보험이익향수는 보험자가 운송인과 대립하는 이유였고, 운송인책임의 강화는 보험자의 이익에 일치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적하보험자는 전통적으로 운송인의 책임강화를 요구하며, 보험이익불공여조항 등을 협회적하약관(ICC)에 규정해서 적하보험의 운송인의 책임회피 또는 경감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한편, 화주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적하보험의 효용을 유지해 오고 있다.

한편, 선박을 소유하지 않은 복합운송인은 선주책임보험조합인 P & I Club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배상책임의 담보를 보험자에게 의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보험자도 운송인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을 발매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운송인의 책임강화가 보험자의 이익이 된다는 등식에도 변화를 초래했다. 즉, 운송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경우, 적하보험에서는 구상액을 증가시켜 보험자의 이익이 증가하나, 운송인을 위한 책임보험에서는 보험금 지급액을 증가시키므로 손실이 증가된다. 이와 같은 상황변화는, 보험자가 인수하는 적하보험보다 책임보험의 인수금액이 많아질 경우는 지금까지의 보험자의 입장과는 정반대로 운송인의 책임경감이 보험자의 이익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직은 보험자에게 적하보험의 중요한 사업대상이기는 하나, 운송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합브르크규칙에 반대하는 보험자도 많았다는 사실은 보험자의 입장이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38) 윤민현(1997), 「한국 P & I 클럽 설립에 관한 고찰」, 『損害保險』, 제342호, 대한손해보험협회, pp. 24~25.

우리나라는 P & I Club이 존재하고 있지 않으므로 P & I Club을 설립하지 않는한 운송인에 대한 보험도 보험자가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할 특수한 사정이 있으며, 각 손해보험회사가 운송인을 위한 보험을 적극적으로 발매하기 시작했다. 국제화물운송에서 복합운송이 일반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는 매우 큰 변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은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보험자의 운송인에 대한 이해관계와는 전혀 성질이 다른 이해관계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와는 달리 국제화물운송에 관한 조약의 채택이나 법규 등의 제정 또는 개정시에 운송인과 손해보험자가 공동보조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참 고 문 헌

1. 곽봉환(1993), 「Forwarder의 運送責任과 保險의 問題」, 海運產業研究院.
2. 오원석(1996), 「海上保險論」, 三英社.
3. 옥선종 · 추창엽 · 김웅진(1997), 「국제복합운송론」, 두남.
4. 윤민현(1997), 「한국 P & I 클럽 설립에 관한 고찰」, 「損害保險」, 제342호, 대한손해보험협회.
5. 이시환(1995), 「貿易保險論」, 大旺社.
6. _____, 「貿易運送論」, 大旺社.
7. 전창원(1996), 「貿易運送實務」, 貿易研究院.
8. 황남일 · 이홍무(1997), 「무역보험의 이론과 실제」, 무역경영사.
9. 姫崎義史(1979), 「商業過失と英國の積荷保険」, 「損害保險論集」, 損害保險事業研究所.
10. 今泉敬忠(1993), 「英國P & I保険の研究」, 成文堂書店.
11. _____ (1989), 「P & I保険の解説」, 成文堂書店.
12. 大崎正彌(1989), 「船荷證券の研究」, 白桃書房.
13. 萩城照三(1950), 「海上保險研究(下)」, 損害保險事業研究所.
14. _____ (1970), 「英文積荷保險證券論」, 早稻田大學出版部.
15. _____ 監譯(1968), 「英國海上保險約款の變遷」, 損害保險事業研究所.
16. 加藤修(1994), 「國際貨物海上保險實務」, 成山堂書店.
17. _____ (1983), 「國際複合運送に關する貨物保險問題」, 「損害保險論集」, 損害保險事業研究所.
18. _____ (1990), 「國際物流のリスクと保険」, 日通綜合研究所.
19. 龜井利明(1986), 「英國海上保險約款論」, 關西大學出版部.

20. 後藤茂之(1991. 11), 「國際複合運送の發展と運送責任の考察(1)」, 「損害保險研究」, 第53卷第3號, 損害保險事業總合研究所.
21. _____ (1987. 8), 「貨物保險代位請求權をめぐる諸問題について(1)」, 「損害保險研究」, 第49卷第2號, 損害保險事業總合研究所.
22. _____ (1987. 12), 「貨物保險代位請求權をめぐる諸問題について(2)」, 「損害保險研究」, 第49卷第3號, 損害保險事業總合研究所.
23. 鈴木辰紀(1976), 「保險者の請求權代位についての再論」, 「萬城照三博士古稀記念損害保險論文集」, 記念論文集編纂委員會.
24. 宮本三夫・郷原資亮 譯(1994), 「國際運送と新しい企業責任」, 成山堂書店.
25. 李洪茂(1996), 「保險事業と規制緩和」, 成文堂.
26. _____ (1995. 12), 「日本における國際貨物運送システムの再編について」, 「商經論集」, 早稻田大學.
27. Astle, W. E. (1981), *Hague Rules Law Digest*, Fairplay Publications.
28. _____ (1981), *The Hamburg Rules*, Fairplay Publications.
29. _____ (1982), *Bills of Lading Law*, Fairplay Publications.
30. Faber, D. (1996. 11), "The problems arising from multimodal transport",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31. Ivamy, E. R. H. (1985), *Marine Insurance*, London Butterworths.
32. Jones, P. (1994), "International transport conventions: obstacles to the use of EDI", *The EDI Law Review*, No. 4, Kluwer Academic Publishers.
33. Kovats, L. J. (1975), *The Law of Hovercraft*, Lloyd's of London Press.
34. Lambeth, R. J. (1986), *Templeman on Marine Insurance*, Pitman Publishing Ltd.
35. Mustill, M. J., Gilman, J. C. B. (1981), *Arnould's Law of Marine Insurance and Average* Vol. I, Stevens & Sons Ltd.
36. _____, *Arnould's Law of Marine Insurance and Average* Vol. II, Stevens & Sons Ltd.
37. OECD(1997), *Maritime Transport 1995*.
38. Wilson, J. F. (1988), *Carriage of Goods by Sea*, Pitman Publishing.

임금협상시 회계정보에 대한 이해관계집단의 반응연구

김인호* · 홍정화** · 이환수***

목 차	
I. 서 론	
II. 이론적 배경	3. 통제적 분석방법
1. 노사관계와 회계정보	IV. 자료분석 결과
2. 노동조합에의 회계정보 제공의 필요성	1. 종업원들의 재무제표에 대한 인식도 및 외부단체의 기업평가 자료의 영향 정도에 대한 분석
3. 선형연구의 검토	2. 임금협상시 회계정보의 커뮤니케이팅 효과에 대한 분석
III. 연구가설 및 연구설계	V. 결 론
1. 연구가설의 설정	
2. 연구설계	

I. 서 론

오늘날 회계의 목적은 정보이용자들이 합리적 판단과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하는 것이다. 특히 재무보고의 목적은 주주 및 채권자들이 합리적인 투자 및 대출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의 전망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정보로서 재무제표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회계의 목적과 재무보고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면 개인이나 조직의 경우에 있어서는 각자의 목적이 달성되고, 자본시장에서는 한정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가 있다. 즉, 전통적으로 회계는 이해관계자로서 주주, 채권자, 경영자 등만을 중요시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회계정보는 자본시장내에서 효율적인 자원배분에는 기여한 것이 사실이지만 사회전체적으로 보아서는 자원배분이나 소득배분에는 제대로 기여하지 못하였다 (Cooper & Sherer, 1984).

지금까지 중요한 이해관계자집단이면서도 회계의 관심영역 이외에 속했던 집단이 바로 종업원(노동조합)이다. 즉, 회계연구에 있어서도 회계정보가 주주와 채권자들에게 정보효과 (information content)가 있는지의 여부에 초점이 두어져 왔다. 물론 부분적으로나마 기업

* 경원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과 교수

** 경원대학교 경상대학 회계학과 교수

*** 가톨릭상지대학 교수

의 이해관계자로서 노동조합, 소비자 및 지역주민도 회계정보에 기초를 두고 의사결정을 한다는 연구가 진행되어 온 것도 사실이지만 주된 연구의 흐름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주주와 채권자만을 대상으로 주장되었던 재무보고의 목적은 종업원집단도 기업 실체(business entity)와 관련하여 중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이해관계자 집단으로 포함되도록 확대되어야 하며, 회계연구도 종업원집단을 대상으로 보다 더 확대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기업으로부터 회계정보를 제공받아야 할 집단이 주주, 채권자 및 경영자 뿐 아니라 종업원집단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그들의 협조하에서 기업의 존속과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종업원들에게도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당한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최근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과거의 심한 갈등과정을 겪으면서 축적된 협상기술의 활용과 국경이 없는 무한경쟁시대의 전개라는 기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동반자 관계의식의 형성으로 어느 정도 성숙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임금협상에 있어서 당해 기업의 임금협상과 관련된 자율적 요소만이 아닌 임금협상과 관계없는 요소와 외부적 요인, 즉 노동조합의 정치공세성 요구라든지 정부 또는 경제단체의 임금가이드라인의 설정 등의 기업외부적 요소가 고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개별기업의 특성과 상황에 따른 원만한 임금협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정보를 노사양측이 공유하여야 하며, 또한 이러한 경제적 정보에 근거를 두고 임금인상을의 결정 등이 이루어지는 합리적 임금협상기술의 정립과 경제적 정보를 존중하는 의식의 전환이 노사양측에 요구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임금협상 당사자들에게 있어서 기업의 경제적 정보에 대한 전달 매체로서의 회계정보의 중요성과 신뢰성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 또한 임금협상 당사자들과 회계정보 제공자들에게 있어서 회계정보의 이해와 활용면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회계정보가 임금협상 과정에서 가지는 커뮤니케이팅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회계의 실증연구의 범위를 확대하는데 기여함은 물론 합리적 임금협상 모형의 정립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노사관계와 회계정보

1) 노사관계와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가 경제학, 사회학, 경영학 및 법학분야에서만 이루어져 왔고 이들 연구들은 규범적 관점에서 정책적 제언과 방향제시에 그쳤기 때문에 임금협상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의 경영노사관계」, 1988, 4쪽)

임금협상에 있어서 회계정보는 계량적 정보로서 다른 어떠한 정보보다도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이다. 회계정보는 단지 특수한 일부 분야에서만 유용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회계정보를 노동조합에 제공한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노사간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정립하는데 기여한다.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간단히 정리한다면 “사실에 의한 관리(management by facts)”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다. 사실에 의한 관리란 사용자(경영자)가 소유권에 의존하여 카리스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시와 통제권을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행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 의한 관리는 Taylor가 주장한 과학적 관리법과도 일맥상통 한다. 또한 사실에 의한 관리는 산업의 민주화와도 관련이 있다(Bougen, 1988).

과학적 관리법은 종업원들이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통하여 종업원들을 동기부여 시킨다는 취지이다. 그러므로 과학적 관리법은 이익분배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과학적 관리법은 산업민주화와도 관련이 있다. 이는 과학적 관리법 하에서 경영자와 종업원이 모두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행동하게 되며 이러한 규칙에 경영자와 종업원이 모두 동의하였다면 이러한 절차나 규칙에 따른다는 것은 곧 민주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학적 관리법이 효과를 거둘 수 있기 위해서는 작업표준, 상여금제도, 작업방법 등이 경영자의 일방적인 권한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종업원과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항상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를 충족시키는 것이 바로 회계정보인 것이다. 경영자가 모든 권한을 회계정보에 입각하여 행사하고 권한행사의 기초가 된 회계정보를 종업원(노동조합)에게 제공하는 것은 노동조합측이 경영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불만을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은 경영자의 능력을 존중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여 왔다. 그 이유는 경영자가 의사결정을 어떻게 내리는지 명확히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경영자가 노동조합측에 기업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을 불신하여 왔다. 이러한 불신은 직접적으로 경영자와 노동조합의 관계를 갈등의 관계로 이끄는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경영자가 회계정보를 기초로 하여 의사결정을 내리고 의사결정의 기초자료가 되었던 회계정보를 노동조합에 제공한다면 경영자와 노동조합간에 발생되었던 많은 갈등과 불신의 벽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회계정보가 위에서 지적된 여러가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가 요구된다(송자, 1989).

첫째, 회계정보는 조직의 성과를 나타내고 경영자와 종업원이 기업에 공헌한 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이고 믿을만한 정보이어야 한다.

둘째, 노동조합이 기본적으로 회계정보를 객관적이고 믿을만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야

한다. 노동조합이 처음부터 회계정보를 신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영자가 회계정보를 계속적으로 커뮤니케이팅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신뢰가 형성될 수 있다.

셋째, 경영자와 노동조합간에는 원초적이고 영구적인 불신감은 형성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2. 노동조합에의 회계정보 제공의 필요성

오늘날 노사간의 협상과정은 일정한 분배몫을 놓고 상호투쟁을 하는 분배적인 협상과정이 아니라 노사가 공동의 문제를 상호협의하에 해결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분배할 몫이 증가하게 되고 나아가 노사 모두의 부가 증대되는 통합적인 협상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통합적인 협상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노사간에 상호신뢰가 형성되어야 한다. 노사간에 상호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영자가 노동조합에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경영자가 노동조합에 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실은 노사간의 협상과정이 통합적인 협상과정으로 발전하기 위한 하나의 기초적 전제가 된다.

노사관계에서 정보는 상호간에 신뢰감을 조성하고 객관적인 임금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중에서 특히 회계정보는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경영자는 회사의 상황을 설명하고 노동조합은 회사의 사정을 이해하는데 거대한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영자들은 노동조합과의 원만한 관계유지를 위해서 회계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그러면 이하에서는 경영자가 노동조합측에 회계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사회경제적 요인

노동조합(종업원)에 회계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갑자기 인식된 것은 아니며 오랜 시간을 두고 형성되어 온 사회경제적 분위기가 경영자들로 하여금 종업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압력으로 작용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회경제적 분위기 때문에 종업원들은 그들 자신이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경영자에게 정보를 요구하게 된 것이다 (Yorston, 1960).

Lewis 등은 종업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사회경제적인 요인에 무엇이 있는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Lewis 외 공동연구, 1984). 이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종업원(노동조합)에의 정보제공 문제에 관심을 중대시키게 된 사회경제적인 요인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정보제공의 필요성을 증대시켰다. 기술이 급격하게 변동됨에 따라 산업구조가 크게 개편되게 되고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지 못한 기업은 도산하고 만다. 따

라서 기술의 급격한 변동이 있게 되면 종업원들은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감을 느끼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경영자에게 기업의 미래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발전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경제불황이 정보제공의 필요성을 증대시켰다. 경제가 전반적으로 불황기에 접어들면 도산하는 기업이 늘게 되고, 이는 실업자를 증가시키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기업의 사정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게 되었다.

셋째, 노동조합이 강력한 힘을 갖게 되면 정보제공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그 이유는 노동조합에서 보다 많은 분배를 요구하기 위하여 경영자에게 정보를 요구하게 될 것이고 경영자는 노동조합에 회사의 상황을 설명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2) 경영자의 도의적인 의무

노동조합에 대한 정보제공은 경영자의 당연한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기업의 경영자들은 주주들에게 법적·도의적인 수탁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경영자들은 주주들에게 자신의 수탁책임완수 정도를 보여주기 위하여 재무제표를 통하여 주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는 종업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비록 경영자가 종업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을지라도 도의적인 의무는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종업원들은 주주가 회사에 자본을 제공한 것과 마찬가지로 회사에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과 같이 고도의 숙련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현실에서는 종업원들은 한 회사에서 평생 또는 장기간 근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회사가 매우 오랫동안의 경험을 요구하고 고도의 기술을 가진 전문화된 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느 한 직종에서 유능한 종업원이 다른 직종에서도 동일하게 능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업원들은 한 직장에서 장기간 근무하게 된다.

결국, 주주들은 자본만을 투자하였지만 노동자들은 종업원들은 그들의 한 평생을 회사에 바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경영자들은 당연히 종업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다(Anderson, 1961).

경영자의 종업원에 대한 의무는 정보제공만으로 그치지 않는다. 즉, 경영자는 대부분의 종업원들로 하여금 경영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주주와 같이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종업원들을 교육시켜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종업원들은 자본주의 체제의 근간인 주식회사제도를 이해하고 경영자나 자본가들을 적대시하지 않고 그들에게 협력할 수 있다. 종업원들에 대한 교육은 경영자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회계전문가들이 함께 느껴야 하는 의무이기도 하다(Yorston, 1960).

3) 경영자와 종업원간의 정보불균형 해소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장점은 모든 자원배분이 구성원들의 경쟁을 통하여 외부의 간섭없이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본래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발휘하려면 시장은 완전 경쟁상태에 있어야 한다.

완전 경쟁상태는 모든 시장의 참가자들이 동일한 정보를 갖고 정보를 똑같이 활용할 수 있다는 가정 즉, 정보의 균형상태를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현실적으로 제대로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현실적으로는 엄연히 정보를 소유한 자와 정보를 소유하지 못한자가 구분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정보불균형상태(information asymmetry)라고 한다. 이러한 정보불균형상태가 제대로 해소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계속되면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며 극단적으로는 시장이 붕괴된다.

정보불균형상황을 해소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방법 중의 하나는 정보를 소유한 자가 정보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에게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자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는 자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실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불균형상황에서 정보균형상황을 유도하는 것이다²⁾.

정보불균형상황은 경영자와 노동조합(종업원)간에도 발생될 수 있다. 경영자는 일반적으로 종업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정보를 소유하고 있다. 종업원들은 자신들이 경영자에 비하여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 때문에 경영자로부터 받을 불이익을 염려하고 경영자를 불신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경영자와 종업원들간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노동력의 제공과 임금의 제공이라는 관계는 무너지고 결국 경영자와 종업원이 모두 피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영자가 노동조합에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3. 선행연구의 검토

1) 외국에서의 선행연구

Cooper와 Essex(1977)는 과거자료에 해당되는 회계정보는 단체교섭에서 유용하게 활용되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Parker(1977)는 호주에서 종업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점차로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인식하고, 그 이유로서 사회전반적으로 인간의 노력을 소중히 하는 민주적 흐름이 증대되고 있으며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시되어 종업원에게 정

2) Leland와 Pyle은 자발적인 정보제공노력을 신호효과(signalling)라고 하고 주주와 경영자간의 신호효과에 대하여 연구하였다(Leland와 Pyle, 1977).

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이 작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Hussey와 Crag(1979)는 종업원들이 그들에게 제공되는 보고서를 실제로 읽고 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을 이해하는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종업원들은 그들에게 제공되는 보고서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높았으며, 특히 관리직이 생산직의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Hussey와 Crag는 일단 모든 종업원에게 요약된 보고서를 제공하고 이해가 안 되거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종업원의 요청이 있을 때 해당 종업원에게 다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Purdy(1981)는 1975년도에 선정된 영국의 50대기업을 대상으로 종업원에 대한 정보제공 실태를 조사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종업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가장 큰 이유는 노동조합의 요구이었다.

Lewis, Parker와 Stucliff(1984)는 종업원들에게 정보제공의 필요성을 증대시키는 사회 경제적 요인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그리고 Schreuder(1981)는 기업의 사회보고서가 종업원들에게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를 조사한 바, 비교적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또한, Balver, McDonald와 Miller(1988)는 기업공개시에 존재하는 경영자와 종업원간의 정보불균형상태에서 회계감사인의 신뢰도가 정보불균형상황을 해소하는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연구하였다.

그런데 노사관계에 있어서 회계정보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들은 노사관계의 상황에 따라서 유용성이 상이함을 지적하고 있다. Bougen, Ogden과 Outran(1990)은 협상당시의 상황 및 경영자에 대한 불신과 노동조합의 민주화 정도에 따라서 회계정보의 유용성이 차이가 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한국에서의 선행연구

송자와 최기호(1988)는 종업원들에게 유용한 정보는 기존의 투자자들이 제공받고 있는 정보와 함께 회사의 임금지급능력, 작업상의 안전에 관한 정보 등이 중요한 것으로 지적하였다. 그리고 종업원들에게 효율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회계전문가의 활용, 공식적인 정보제공에 대한 규제, 부가가치보고서의 활용을 제시하였다.

송자(1989)는 종업원에의 정보제공은 경영자가 스스로 노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성의이며 그 방안으로서 부가가치보고서가 가장 적당하다고 주장하고, 임금협상시 공인회계사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박준완(1990)은 노사협상시 회계정보의 역할은 협상당사자의 협상목표, 노동조합의 회계 정보 활용능력과 신뢰도 뿐만 아니라, 정치적·조직적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

였다. 그러므로 이상과 같은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회계의 기술적 측면에서만 정보 제공 방안을 검토할 경우에는 노사협상에 유용한 방안을 제시할 수 없다고 그는 주장하였다.

홍정화(1992)는 회계전문가가 경영자와 노동조합측에 자문역할을 해야 하며, 특히 노동조합과 경영자들에게 재무문제에 대한 이해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자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바람직한 공시정책의 선택에 있어서는 노동조합측에 제공되는 재무정보의 형태와 양의 선택에 대한 검토시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조국진(1993)은 경영자는 노사협상에 있어서 회계정보제공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종업원들이 회사의 정보를 잘 알고서 회사를 노사공동의 장으로서 구축할 수 있도록 경영자들은 노력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경영자들이 회사정보를 득점한다면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허성관과 박영수(1994)는 경영자가 노동조합에 회계정보를 제공하는 정도에 따라서 노사관계의 효율성이 영향을 받는지를 실증적으로 연구하였다. 그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노동조합에 회계정보가 제공되는 정도가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그들은 노사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경영자가 선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 이외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신정식(1991)의 연구결과는 노동조합측이 회계정보를 신뢰하는 편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주인기와 오인택(1990)은 종업원에 대한 정보제공이 노사간의 갈등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III. 연구가설 및 연구설계

1. 연구가설의 설정

본 연구의 목적은 노동조합간부(종업원), 임금협상담당자 및 회계담당자가 임금협상에 있어서 회계정보에 대하여 각각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절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한 가설을 설정한다.

첫째, 기업이 제공하는 재무제표가 종업원들의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원천이 되는지의 여부를 검증하고 또한 종업원들은 재무제표에 의하여 제공되는 정보량이 충분하다고 인식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1) 종업원들이 기업의 경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재무제표를 이용한다는 점에 대하여 노동조합간부, 임금협상담당자 및 회계담당자간의 인식에는 유의적 차이가 없

다.

(가설 2) 종업원들이 재무제표를 이용할 경우 재무제표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량에 대하여 노동조합간부, 임금협상담당자 및 회계담당자간의 인식에는 유의적 차이가 없다.

그리고 임금협상의 시점에 있어서 경제정의실천시민련합(이하 : 경실련), 소비자단체 등에서 공표하는 기업평가 자료가 임금협상에 영향을 주는지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3) 임금협상시에 있어서 외부단체의 기업평가자료가 임금협상에 영향을 주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노동조합간부, 임금협상담당자 및 회계담당자간의 인식에는 유의적 차이가 없다.

둘째, 임금협상시에 있어서 협상당사자(노동조합간부, 임금협상담당자) 상호간에는 물론 이들과 회계정보제공자(회계담당자)간에도 상호 신뢰감에 바탕을 둔 의견접근이 중요한 과정이다. 이에 따라 임금협상시 제공된 회계정보에 대하여 기업의 이해관계자로서 노동조합간부, 임금협상담당자 및 회계담당자들은 각각 어떠한 반응을 나타내며, 회계정보를 이용하여 의사결정을 할 경우 그 결과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4) 회사의 임금협상자료로서 회계정보가 제공되었을 때 노동조합간부, 임금협상담당자 및 회계담당자간에 있어서 당해 회계정보의 신뢰도에는 유의적 차이가 없다.

(가설 5) 전년도의 노사합의에 의한 임금인상율에 대하여 노동조합간부, 임금협상담당자 및 회계담당자간에 있어서 임금인상율의 적절성 정도에는 유의적 차이가 없다.

(가설 6) 회사의 임금협상자료로서 회계정보가 제공되었을 때 노동조합간부, 임금협상담당자 및 회계담당자간에 있어서 임금인상제시율에는 유의적 차이가 없다.

(가설 7) 회사의 임금협상자료로서 회계정보가 제공되었을 때 노동조합간부, 임금협상담당자 및 회계담당자간에 있어서 임금인상제시율이 받아들여질 확신도에는 유의적 차이가 없다.

2. 연구설계

1) 연구방법

사회과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연구방법으로는 실험(experiment), 참여관찰(participation observation), 내용분석(contents analysis) 및 조사연구(survey research) 등이 있다(홍두승 1987). 본 연구는 임금협상에 있어서 회계정보의 커뮤니케이팅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임금협상당사자인 노동조합간부, 임금협상담당자 및 회계담당자의 의견 및 반응

조사를 과제로 하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연구방법으로서 조사연구방법을 선택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연구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이 방법이 개인의 의견이나 인식을 조사하는데 있어서 주로 사용되어 온 방법이기 때문이며(Buckley와 Chiang, 1976), 또한 다른 방법에 비하여 연구결과를 사회행동일반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화의 가능성성이 높고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변수의 수가 많기 때문이다(홍두승, 1987).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조사연구 방법 중 설문지법(questionnaire method)에 의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2) 연구대상자의 선정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subjects)는 기업의 노동조합간부, 기업의 임금협상 부서에 근무하는 임금협상담당자 및 기업의 회계부서에 근무하는 회계담당자 등의 3개 집단으로 분류되며, 각 집단에서 연구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선정되었다.

첫째, 노동조합간부는 1995년 12월 31일 현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의 노동조합간부로 한정하였는데, 이들은 종업원(노조원)으로 부터 위임을 받아 임금협상에 임하여 임금인상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결정권을 위임받은 집단이다.

이들은 부국증권이 발간한 「상장기업분석」(1996. 봄)에서 기업규모 및 업종을 고려한 후 무작위로 선정된 80개 기업의 노동조합간부 중에서 무작위로 추출되었다³⁾.

둘째, 임금협상담당자도 역시 1995년 12월 31일 현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의 임금협상담당부서에 근무하는 부장급이상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들은 노동조합간부들과의 임금협상에 임하는 집단이다. 이들은 노동조합간부, 임금협상담당자와 동일한 회사로부터 선정되었다.

셋째, 회계담당자도 역시 1995년 12월 31일 현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의 회계부서에 근무하는과장급 이상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들은 회사의 회계정보를 생산하여 제공하는 집단이다. 이들은 노동조합간부, 임금협상담당자와 동일한 회사로부터 선정되었다.

3) 자료의 수집

자료의 수집은 설문지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2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것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1부는 종업원들의 재무제표의 이용정도, 재무제표가 제공하는 정보의 양에 대한 충분성 정도 및 임금협상시 외부단체의 기업평가자료의 영향정도 등의 사항에 대하여 노동조합간부, 임금협상담당자, 회계담당자의 인식을 조사하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3) 기업규모는 한국은행이 발간한 「기업경영분석」(1994)에 의하여 총자산규모, 매출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으며, 업종별 표본수는 제조기업과 비제조기업의 비율을 7:3으로 하여 결정되었다.

둘째, 제2부는 가상적인 기업의 회계정보가 제공된 상황에서 노동조합간부, 임금협상담당자, 회계담당자가 각각 재무제표의 신뢰도, 임금인상을, 임금인상을의 수용에 대한 확신정도 등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지를 조사하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임금인상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주는 요소와 임금협상시 그러한 요소들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하여 노동조합간부, 임금협상담당자, 회계담당자의 인식을 조사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위와 같은 설문항목을 확정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의 검토와 함께 예비조사도 실시하였는데, 예비조사는 노동조합간부, 임금협상담당자, 회계담당자 등 3개 집단의 각각 10여명씩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배부 및 회수방법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가 속한 기업을 직접방문하여 배부 및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1996. 10. 1. ~ 10. 30 중에 두 차례에 걸쳐 배부 및 회수하였는데 각 집단별로 회수되는 설문지 중에서 불성실한 것을 제외하면서 각 집단별로 50번체까지의 설문지를 대상으로 전산처리하였다.

3. 통계적 분석방법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회수된 자료를 분석하고 가설검증과 연구대상자집단간의 인식차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적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1) 자료의 분석

종업원들의 재무제표의 이용정도, 재무제표가 제공하는 정보량에 대한 충분성 정도, 임금협상시 외부단체의 기업평가자료의 영향 정도 등의 제1부 설문항목과 제2부의 설문항목인 임금협상시에 제시된 회계정보에 대한 연구대상자들의 인식도 조사로 위하여 기술통계학(descriptive statistics)의 분석방법인 평균(mean),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등을 각각 계산하여 사용하였다.

2) 연구대상자집단간의 인식도 차이분석 및 가설검증

연구대상자집단간의 인식도 차이분석 및 가설검증은 추측통계학(inferential statistics) 중의 모수통계학(parametric statistics)을 주로 적용하였다.

즉, 종업원의 재무제표 이용정도, 재무제표가 제공하는 정보량, 외부단체가 공표하는 기업평가자료의 임금협상에의 영향여부, 재무제표의 신뢰도, 전년도 노사합의로 결정된 임금인상을에 대한 적절도, 임금인상을의 결정 및 임금인상을의 수용정도에 대한 확신도 등에 대해서

는 제1차적으로 연구대상자들간의 인식도차이 및 가설검증을 위하여 F검증에 의한 분산분석 (analysis of variance)을 적용하였으며, 제2차적으로 연구대상자 집단간의 유의적 차이가 있다면 어느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후검증으로서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Duncan's multiple range test)을 적용하였다.

IV. 자료분석결과

이하에서는 각 연구대상자별로 배부하여 회수된 설문지에 대한 전산처리 결과를 분석 및 정리하였다.

1. 종업원들의 재무제표에 대한 인식도 및 외부단체의 기업평가자료의 영향정도에 대한 분석

1) 통계분석결과

설문지의 제1부에 속하는 각 설문항목에 대한 통계적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종업원들은 회사의 경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재무제표를 어느 정도 이용하는가?

종업원들은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경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재무제표를 어느 정도나 활용하는지에 대한 연구대상자 집단의 인식도를 조사·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 종업원들의 재무제표 이용정도

집 단	평 균 값	표 준 편 차	F 값	P 값
노 동 조 합 간 부	2.4000	0.9897		
임 금 협 상 담 당 자	2.7400	1.0264	4.0913	0.0187
회 계 담 당 자	2.1800	0.9409		

* 평균값은 매우 많이 이용한다에 1을, ...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에 5를 부여하여 계산되었음.

위의 〈표 1〉을 분석해 보면, 연구대상자집단 모두는 종업원들이 재무제표를 이용할 것이라고는 데 긍정적이었다. 회계담당자집단은 특히 종업원들이 재무제표를 이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비하여 임금협상담당자집단은 상대적으로 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종업원들은 재무제표에 의하여 제공되는 정보량에 대하여 충분하다고 보는가?

회사가 공시하는 재무제표에 포함된 정보는 종업원들이 임금협상을 위한 의사결정에 충분한지에 대한 연구대상자집단의 인식도를 조사·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 재무제표에 의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충분성

집 단	평 균 값	표 준 편 차	F 값	P 값
노동조합간부	3.2400	0.7440		
임금협상담당자	2.7800	0.8873	15.7211	0.0000
회계담당자	2.2800	0.9267		

* 평균값은 대단히 충분하다에 1을, … 대단히 불충분하다에 5를 부여하여 계산되었다.

위의 〈표 2〉를 분석해 보면, 회계담당자는 재무제표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가 비교적 충분한 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임금협상담당자도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정보량에 대하여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간부들은 재무제표에 의하여 제공되는 정보량에 대하여 다소 불충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3) 외부단체에서 공표하는 기업평가자료가 임금협상에 영향을 주는가?

경실련, 소비자단체 등과 같은 외부단체에서 공표하는 기업에 대한 평가자료가 임금협상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대상자집단의 인식도를 조사·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 외부단체의 기업평가자료의 영향

집 단	평 균 값	표 준 편 차	F 값	P 값
노동조합간부	2.5400	0.7879		
임금협상담당자	2.5600	0.8609	0.6023	0.5489
회계담당자	2.4000	0.7284		

* 평균값은 대단히 영향을 많이 준다에 1을, …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에 5를 부여하여 계산되었음.

위의 〈표 3〉을 분석해 보면 연구대상자집단 모두는 외부단체의 기업평가자료가 임금협상에 다소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대외적 이미지 관리에도 관심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가설검증

(1) (가설 1)의 검증

“종업원들이 기업의 경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재무제표를 이용한다는 것에 대하여 노동조합간부, 임금협상담당자 및 회계담당자간의 인식에는 유의적 차이가 없다.”

종업원들이 회사의 경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재무제표를 어느 정도 이용하는지에 대한

연구대상자집단간의 인식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앞의 <표 1>에 나타나 있다. 앞의 <표 1>을 보면 연구대상자집단간에 종업원의 재무제표 이용정도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alpha=0.05$ 수준하에서 유의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가설 1)은 기각된다.

한편, 연구대상자집단간의 차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 F검증에 대한 사후검증인 Duncan의 다중범위검증을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임금협상담당자집단과 회계담당자집단간에만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

(2) (가설 2)의 검증

“종업원들이 재무제표를 이용할 경우 재무제표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량에 대하여 노동조합간부, 임금협상담당자 및 회계담당자간의 인식에는 유의적 차이가 없다.”

종업원들이 재무제표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량에 대한 연구대상자집단간의 인식의 차이를 F검증한 결과는 앞의 <표 2>에 나타나 있다.

앞의 <표 2>를 보면, 연구대상자집단간에 종업원들의 재무제표 정보량의 충분도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alpha=0.05$ 수준하에서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가설 2)는 기각된다.

한편, 연구대상자집단간의 차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 F검증에 대한 사후검증인 Duncan의 다중범위검증을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모든 집단간에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

(3) (가설 3)의 검증

“임금협상시 외부단체의 기업평가자료의 영향여부에 대하여 노동조합간부, 임금협상담당자 및 회계담당자간의 인식에는 유의적 차이가 없다.”

임금협상시에 있어서 외부단체의 기업평가자료가 임금협상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연구대상자집단간의 인식의 차이를 F검증한 결과는 앞의 <표 3>에 나타나 있다.

앞의 <표 3>을 보면, 외부단체의 기업평가자료의 영향정도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연구대상자집단간에는 $\alpha=0.05$ 수준하에서 유의적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가설 3)은 채택된다.

2. 임금협상시 회계정보의 커뮤니케이팅효과에 대한 분석

1) 통계분석결과

(1) 회계정보에 대한 신뢰도는 어느 정도인가?

설문지에 제시된 경원주식회사의 회계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신뢰하는지의 연구대상자집단의 인식도를 조사·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 회계정보의 신뢰도

집 단	평 균 값	표 준 편 차	F 값	P 값
노동조합간부	2.9200	0.8041		
임금협상담당자	2.7000	0.8144	3.6579	0.0282
회계담당자	2.5000	0.7071		

* 평균값은 전적으로 신뢰한다에 1을, …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에 5를 부여하여 계산된 수치임.

위의 〈표 4〉를 분석해 보면, 대체로 연구대상자집단은 제시된 회계정보를 신뢰하는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회계담당자집단이 가장 신뢰하는 편이었으며, 노동조합간부집단은 가장 낮은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회계담당자집단이 계속적으로 재무제표 등과 같은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높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여 회계정보에 대한 교육이나 설명회등이 필요함을 지적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전년도의 노사합의에 의한 임금인상을은 적절한가?

전년도의 여러가지 여건과 자료를 고려하여 볼 때 경원주식회사의 임금인상을 8%는 어느 정도 적절한가에 대한 연구대상자집단의 인식도를 조사·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 전년도 임금인상을의 적절도

집 단	평 균 값	표 준 편 차	F 값	P 값
노동조합간부	3.4200	0.7584		
임금협상담당자	2.8200	0.8497	14.5867	0.0000
회계담당자	2.6200	0.6966		

* 평균값은 매우 적절하다에 1을, … 매우 부적절하다에 5를 부여하여 계산된 수치임.

위의 〈표 5〉를 분석해 볼 때, 전년도 임금인상을에 대하여 임금협상담당자 집단과 회계담당자집단은 적절한 편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비하여, 노동조합간부집단은 부적절한 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회계담당자집단과 노동조합간부집단간에는 다소 큰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3) 금년도의 임금인상을은 어느 정도가 타당한가?

금년도 경원주식회사의 각종 회계정보와 기타 자료들을 고려하여 볼 때 임금인상을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에 대한 연구대상자집단의 인식도를 조사·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6〉 금년도의 적절한 임금인상률

집 단	평 균 값	표준편차	F 값	P 값
노동조합간부	12.4200	3.2769		
임금협상담당자	7.9740	1.4247	51.0334	0.0000
회계담당자	8.8000	1.9155		

* 평균값은 임금인상률(%)을 의미하는 것임.

위의 〈표 6〉을 분석해 볼 때, 경원주식회사의 금년도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임금인상을 대하여 연구대상자집단간에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노동조합간부집단과 임금협상담당자집단간에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회계담당자집단에게는 기업의 경영성과와 현황에 대한 신뢰성 있는 설명과 중재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4) 금년도의 임금인상을 받아들여질 확률은 어느 정도인가?

연구대상자집단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금년도의 경원주식회사의 임금인상을이 임금협상결과 받아들여질 확률은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에 대한 연구대상자집단의 인식도를 조사·분석한 것은 다음과 같다.

〈표 7〉 금년도의 임금인상을 받아들여질 확률

집 단	평 균 값	표준편차	F 값	P 값
노동조합간부	68.9200	22.5206		
임금협상담당자	74.3600	18.3044	1.3407	0.2648
회계담당자	74.7600	18.6696		

* 평균값은 임금인상을 받아들여질 확률을 의미하는 것임.

위의 〈표 7〉을 분석해 볼 때, 노동조합간부집단은 자신들이 제시한 임금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받아들여질 확률이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바, 이는 임금협상시 보다 높은 임금인상을 달성하기 위한 협상전략의 일환으로서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인상률을 제시한 것에서 나타난 결과이다.

임금협상담당자집단과 회계담당자집단간에는 임금인상률이 받아들여질 확률이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2) 가설검증

(1) (가설 4)의 검증

“회사의 임금협상자료로서 회계정보가 제공되었을 때, 노동조합간부, 임금협상담당자 및

회계담당자간의 당해 회계정보의 신뢰도에는 유의적 차이가 없다.”

임금협상시에 제시되는 회계정보의 신뢰도에 대한 연구대상자 집단간의 인식의 차이를 F 검증한 결과는 앞의 〈표 4〉에 나타나 있다.

앞의 〈표 4〉를 보면, 회계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연구대상자집단간에는 $\alpha=0.05$ 수준하에서 유의적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따라서 (가설 4)는 기각된다.

한편 연구대상자집단간의 차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하여 F검증에 대한 사후검증인 Duncan의 다중법위검증을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노동조합간부집단과 회계담당자집단간에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

(2) (가설 5)의 검증

“전년도의 노사합의에 의한 임금인상률에 대하여 노동조합간부, 임금협상담당자 및 회계담당자의 임금인상률의 적절성 정도에는 유의적 차이가 없다.”

전년도의 노사합의에 의해 결정된 임금인상률이 여러 여건과 자료를 고려하여 볼 때 어느 정도나 적절하였는지에 대한 연구대상자집단의 인식의 차이를 F검증한 결과는 앞의 〈표 5〉에 나타나 있다.

앞의 〈표 5〉에 의하면 전년도 노사합의에 의한 임금인상률의 적절성 정도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연구대상자집단간에는 $\alpha=0.05$ 수준하에서 유의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가설 5)는 기각된다.

한편, 연구대상자집단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F검증에 대한 사후검증인 Duncan의 다중법위검증을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노동조합간부집단과 임금협상담당자집단간에 유의적 차이를 보였으며, 또한 노동조합간부집단과 회계담당자집단간에도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

(3) (가설 6)의 검증

“회사의 임금협상자료로서 회계정보가 제공되었을 때 노동조합간부, 임금협상담당자 및 회계담당자간의 임금인상제시율에는 유의적 차이가 없다.”

회사로부터 제시된 회계정보 및 기타 자료들을 검토해 볼 때 금년도의 적절한 임금인상을 은 어느 정도가 타당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대상자집단의 인식의 차이를 F검증한 결과는 앞의 〈표 6〉에 나타나 있다.

앞의 〈표 6〉을 보면, 금년도의 적절한 임금인상률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연구대상자집단간에는 $\alpha=0.05$ 수준하에서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가설 6)은 기각된다.

한편, 연구대상자집단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F검증에 대한 사후검증인

Duncan의 다중범위검증을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노동조합간부집단과 임금협상담당자집단 간에 유의적 차이를 보였으며, 또한 노동조합간부집단과 회계담당자집단간에도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

(4) (가설 7)의 검증

“회사의 임금인상을 제시한 때 노동조합간부, 임금협상담당자 및 회계담당자간의 임금인상을 대한 신뢰도에는 유의적 차이가 없다.”

연구대상자집단이 제시한 임금인상을 받아들여질 확률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그들의 인식의 차이를 F검증한 결과는 앞의 〈표 7〉에 나타나 있다.

앞의 〈표 7〉을 검토해 보면, 임금인상을 받아들여질 확률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연구대상자집단간에는 $\alpha=0.05$ 수준하에서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가설 7)은 채택된다.

3) 임금인상을 결정에 영향을 미친 항목에 대한 분석

일반적으로 연구대상자집단이 임금인상을 결정함에 있어서 영향을 받는 항목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8〉 자금인상을 결정에 영향을 미친 항목에 대한 분석

항 목	집 단		노동조합간부		임금협상담당자		회계담당자	
	평균값	표준편차	평균값	표준편차	평균값	표준편차	평균값	표준편차
회사의 사회적 명성	2.88	0.77	2.96	1.06	2.56	0.96		
경영진의 능력과 성장성	2.62	0.89	2.56	0.67	2.44	0.80		
회사의 경영성과	2.22	0.83	2.00	0.92	1.76	0.76		
회사의 지급능력	2.10	0.85	2.16	1.05	1.94	1.08		
회계정보의 신뢰도	2.86	0.92	2.48	0.88	2.12	0.79		
회사의 경영혁신노력	2.70	0.96	2.52	0.96	2.68	0.71		
회사의 사회봉사노력	3.08	0.91	3.14	0.94	3.18	0.93		
경제성장율과 물가상승률	2.04	0.92	2.24	0.99	2.48	0.83		
사회적 합의	2.66	0.84	2.64	0.93	2.94	1.01		
한국경총의 임금인상을	3.26	1.05	2.84	0.88	2.88	0.86		
한국노총의 임금인상을	2.40	1.00	2.74	0.77	2.52	0.96		
전년도 임금인상을	2.38	0.89	2.52	0.92	2.40	0.85		

* 평균값은 매우 큰영향에 1을, 전혀 영향없음에 5를 부여하여 계산된 수치임.

위의 〈표 8〉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의 항목들이 임금인상을 대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비교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사의 경영성과 및 회사의 지급능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항목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회사의 사회봉사노력, 회사의 사회적 명성 및 한국경총의 임금인상을은 비교적 낮은 영향을 미친 항목으로 분석되었다.

이상과 같은 경향으로 보건대 회사의 경영정보를 충분히 공개하고, 이를 성실하게 설명함으로써 합리적인 임금인상을의 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V. 결 론

본 연구는 종업원들의 재무제표 이용정도, 재무제표가 제공하는 정보량의 충분성 정도 및 임금협상시 외부단체의 기업평가자료의 영향여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임금협상시 회계 정보의 커뮤니케이팅 효과를 조사·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인 임금협상제도의 확립에 기여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업원들은 회사의 경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회사의 재무제표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편으로 분석되었으며, 또한 이러한 인식에 있어서 연구대상자집단간에 유의적 차이를 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회사가 공시하는 재무제표에 포함된 정보량은 종업원들이 임금협상을 위한 의사결정에 비교적 충분한 것으로 연구대상자집단은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연구대상자집단에는 이러한 인식에 있어서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

셋째, 경실련, 소비자단체 등과 같은 외부단체에서 공표하는 기업평가자료는 임금협상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러한 자료의 영향정도의 인식에 있어서는 연구대상자집단간에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넷째, 재무제표를 비롯한 회계정보의 신뢰도에 있어서 연구대상자집단은 회계담당자, 임금 협상담당자, 노동조합간부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구대상자집단간에는 회계정보에 대한 신뢰도에 있어서 유의적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전년도의 노사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임금인상을에 대하여 임금협상담당자와 회계 담당자집단은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노동조합간부집단은 부적절하다고 인식하는 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대상자집단간에는 이러한 인식에 있어서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

여섯째, 설문에 제시된 회계정보와 기타 자료를 토대로 한 임금인상을의 결정에 있어서 연구대상자집단간에는 유의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노동조합간부집단이 임금협상담당자집단과 회계담당자집단에 비하여 임금협상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높은 인상을 제시하고 있다.

일곱째, 각 연구대상자집단은 자신들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임금인상률이 받아들여질 확률에 대하여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 확률에 대하여 노동조합간부집단은 임금협상담당자집단과 회계담당자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다.

여덟째, 각 연구대상자집단이 임금인상을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설문에 제시된 대부분의 항목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회사의 경영성과와 회사의 지급능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들이 임금협상에 있어서 전체의 당사자를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본 연구에서는 일부 상장회사의 임금협상담당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임금인상을의 결정에는 정부의 경제정책당국자 및 노동정책당국자의 영향도 고려되어야 하며, 노동관계전문가의 역할도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는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

둘째, 설문조사 및 자료수집상의 한계점이 있다. 설문조사를 토대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질적인 특성을 갖는 항목들에 대하여도 연구대상자들의 인식을 단순히 5점척도(five point scale)를 이용하여 계량화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그러므로 측정상 편의(bias)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연구대상자들이 임금인상을의 결정에 있어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된 자료 이외에 각 기업의 비재무적 자료가 중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설문에 제시된 회계정보 및 기타 경제자료가 임금인상을의 결정에 절대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넷째, 종업원들의 재무제표의 인식 및 임금협상에서 임금인상률의 결정 등에 대한 연구대상자집단간의 차이유무의 검증은 가능하였으나 그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서는 충분한 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본 연구와 유사한 선행연구가 없는 관계로 본 연구의 결과와 선행연구를 비교하기가 곤란하다.

참 고 문 헌

1. 대한상공회의소, 1988, 한국의 경영노사관계.
2. 박준완, 1990, “제조기업의 노사분규와 재무적 특성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회계학연구 (제11호).

3. 부국증권, (1996, 봄), 상장기업분석.
4. 송 자, 1989, 임금협상을 위한 경영성과보고서, 대한상공회의소.
5. 송 자·최기호, 1989, “종업원을 위한 효율적인 정보제공에 대한 연구”, 고정섭 교수 추모논문집.
6. 신정식, 1991, “한국기업의 노사공동체형성을 위한 정보공유와 의미공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7. 조국진, 1993, “호텔종업원을 위한 회계정보제공이 노사협상에 미치는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8. 주인기·오인택, 1990, “노사관계를 위한 회계보고서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산업과 경영(제27권 제2호).
9. 한국은행(1994), 기업경영분석.
10. 허성관·박영수, 1994, “회계정보의 제공과 노사관계의 효율성”, 회계학연구(제18호).
11. 흥두승, 1987, 사회조사분석, 다산출판사.
12. 홍정화, 1992, “단체협상에 있어서 공시정책의 선택과 회계전문가의 역할”, 경상논총(제1호) 경원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
13. Anderson, W. R. 1961, “Should a Company Tell? : Disclosure of Information to Employees”, *The Accountant*(April).
14. Balver, R. J. B. McDonald and R. E. Miller, 1988, “Underpricing of New Issue and the Choice of Auditor as a Signal of Investment Banker Reputation”, *The Accounting Review*(October), pp. 605~622.
15. Bougen, P. D. 1988, *Accounting and Industrial Relations~Some Historical Evidence on Their Interactions*, Gerland Publishing Inc.
16. Bougen, P. D. S. G. Ogden and Q. Outran, 1990, “The Appearance and Disappearance of Accounting : Wage Determination in U. K Coal Industry”, *Accounting, Organization and Society*, pp. 149~170.
17. Buckley, J. W. and Hung Fu Chiang, 1976, *Research Methodology and Business Decision*, N. A. A. and SMAC.
18. Cooper, D. J., and M. J. Sherer, 1984, “The Value of Corporate Accounting Report : Argument for a Political Economy of Accounting”, *Accounting, Organization and Society*, pp. 207~232.
19. Cooper, D. J., and S. Essex, 1977, “Accounting Information and Employee Decision Making”, *Accounting, Organization and Society*, pp. 201~217.

20. Hussey, R., and R. J. Crag, 1979, "Employee Report~What Employees Think", *The Chartered Accountant in Australia*(May) pp. 39~40, 42, 44.
21. Leland, H., and D. Pyle, 1977, "Information Asymmetries, Financial Structure and Financial Intermediation", *The Journal of Finance*, May, pp. 371~387.
22. Lewis, N. R., L. D. Parker and P. Stucliff, 1984, "Financial Reporting to Employee : the Pattern of Development 1919 to 1979", *Accounting, Organization and Society*, pp. 275~289.
23. Parker, L. D., 1977, "Financial Reporting to Employee : A Growing Practice in Australia", *The Chartered Accountant in Australia*(March) pp. 5~9.
24. Purdy D., 1981, "The Provision of Financial Information to Employee : A Study of the Reporting Practices of Some Large Public Companies in the United Kingdom", *Accounting, Organization and Society*, pp. 327~338.
25. Schreuder, Hein 1981, "Employee and the Corporate Social Report : The Deutch Case", *The Accounting Review*(April) pp. 294~308.
26. Yorston, K. R., 1960, "Reporting Financial Information to Employees", *The Australian Accountants*(Feburary) pp. 80~88.

Abstract

A Study on the Interested Groups' Response towards Accounting Infomation in Wage Bargaining.

This study is executed in order to contribute to establishment of desirable wage bargaining system by instigating and analyzing the interested groups' response of accounting information. The interested groups as subjects are composed of union leaders, wage negotiators, accountants working in the listed companies in Korea. And questionnaire method was adopted collect the data. Various statistical analyses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obtained from 150 respondents. Namely, means and standard deviation of descriptive statistics were adopted to analyze the data.

And one-way ANOVA(F-test), Duncan's multiple range test of inferential statistics were adopted to test the difference among three group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 1) Employees tended to use accounting information in wage bargaining and recognized the quantity of information included in financial statements as sufficient. And it was surveyed enterprise valuation data by the outside body influence on wage bargaining.
- 2) We found it the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recognition among the interested groups towards the reliabi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as negotiative data and the required increase rate in wage based on accounting information.
- 3) We didn't find it the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recognition among the interested groups towards the acceptability of the required increase rate in wage based on accounting information in wage bargaining.

原價會計의 史的 考察

金相圭*

目 次

I. 서 론	3. 간접원가의 배부
II. 원가회계의 기원(생성기)	IV. 관리지향형 원가회계 (활성화기)
1. 성립의 계기	1. 제품 원가 중심에서 관리형으로 발달
2. 산업혁명 이전까지	2. 표준 원가회계의 발달
III. 원가회계의 변혁기 (성장기)	3. 직접 원가회계의 발달
1. 산업혁명과 원가회계	4. 활동 기준 원가회계의 발달
2. 간접비 관리의 필요성	V. 결 론

I. 서 론

원가계산의 발전은 공업의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가내작업시대에는 공업이라 할 수 없으나 수공업 및 가내공업시대는 주인(Master)을 중심으로 한 공업으로서 인력에 의한 제조공정이고 경영자는 동시에 생산기술자인 관계상 주인의 경험과 의견에 따른 주관적 작업이며 원가의 내용도 간단하였다. 그러므로 원가요소는 대부분 원료비와 노무비이고 제조간접비는 극히 적었으며 원가계산의 필요성도 공장회계를 합리화하는데 별다른 흥미를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원가계산은 14세기경에 시작되고 있어 그 당시 이태리, 영국, 후란다스, 독일의 상업이 급속히 발전한 결과로서 모직물, 견직물, 주화, 서적 및 일용품의 제조기업이 설립되었으며 특히 이태리는 보다 나은 제조원가를 기록했던 사실이 많았다¹⁾.

즉, 이태리 Florence의 델 베네상회(The Delbene)에서 1318년 모직물 제조업의 원가기록을 한 최초의 것이 있으며, 또 이태리의 Prato市의 모직물 제조업에서 1395년 제조원가의 기록이 있고 또, 1415년 이태리의 Arezzo市의 브랏치상회(The Bracci)에서도 기록이 있다.

그리고 이태리의 Dalmatia의 라구사(Ragusa)鑄造所에서 1422년 공업회계 최초의 제조

* 墾園專門大學 事務自動化科 教授

1) S. Paul Garner, Evolution of Cost Accounting to 1925, University of Alabama Press, p. 2

원가를 기록한 것이며 Florence의 메디치家(The Medici)에서 1431년 견적 및 양모생산의 원가기록이 있다.

뿐만 아니라, 화란의 인쇄출판업자인 크리스토프 플랑탱(Christopher Plantin)이 1563년, Austria의 풋가家(The Fugger) 1487년 광산업을 지배하여 1548년에 광산업 및 제련업의 제조원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원가계산의 기술이나 실무는 1350~1600년 사이에 그 기원을 찾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제조원가를 기록하고 있었으나 원가정보의 용도면에서는 극히 제한되어 있었고 필요한 기밀재고액을 계산한다는 것도 단순한 재무회계를 위한 기록에 지나지 않았다²⁾.

그러나 산업혁명은 공장공업시대를 놓게 하였다. 즉 기계가 인력에 대체되어 노동생산은 기계생산으로, 소량생산은 대량생산으로, 소자본은 대자본으로, 주문생산은 시장생산으로 발달하게 되었다.

이러한 공장공업의 발달은 생산과정의 복잡성을 나타냈으며, 경영설비의 확대와 원가요소의 구성이 복잡해지면서 동종 기업간에 자유경쟁이 생기면서 관습적으로 경쟁입찰에 의하여 수주받던 기업은 가격을 추정하는데 활용하기 위한 역사적 원가(과거원가)를 정확하게 기록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³⁾.

아무튼 원가계산은 산업혁명의 많은 결과 중의 하나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원가계산의 발전동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고 공업화로 인한 제품원가 계산의 필요성은 향후 정보화사회로 진전되면서 새로운 원가계산의 발전을 위한 혁신기를 맞이하게 되었다⁴⁾.

따라서, 원가회계의 발달을 일반회계의 시대 구분에 맞추어 생성기, 성장기, 활성화기로 나누어 발전과정을 살펴 보고자 한다.

II. 원가회계의 기원(생성기)

1. 설립의 계기

A. C. Littleton은 원가계산의 싱도 공장 재생산내에 존재하고 있었는데 상업부기는 수백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것과는 달리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니라고 했으며, 사실 원가회계의 기원은 최근의 일로서 19세기의 산업혁명과 더불어 발전되어 온 결과라고 했다⁵⁾.

2) A. C. Littleton, Accounting Evolution to 1900 (New York: American institute publishing Company, 1993), pp. 355~357.

3) Michael Chatfield, A History of Accounting Thought, 1977, pp. 159.

4) A. C. Littleton, op. cit., pp. 300~321.

S. P. Garner교수는 원가계산을 산업혁명의 아들이며 기계의 아들이라는 일반적인 견해를 부정하였고, 그는 원가계산은 복식부기의 발생과 더불어 같이 발생하였으며 그의 저서 원가회계의 발전에서 원가회계의 기원을 산업혁명 이전에 이미 가내공업, 수공업제도가 변천하여 자본제적 생산과정으로 이행하게 된 중세시대까지 소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⁵⁾.

위의 두 견해는 시기적으로 보는 관점은 다소 차이는 있으나 원가계산이 생성된 시기는 이보다 더 이전의 역사적 사실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바빌로니아 고대 도시의 폐허가 된 곳에서 발굴된 접토판에 공장내에서 사용된 작업명, 직공이 사용한 재료의 중량 등 뿐만 아니라 제품에서도 고유번호가 붙어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원가계산에 관한 기록을 찾아 볼 수 있다⁶⁾.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원가계산이 제조기업내에서 그의 필요성이 인식되고 나아가서 부기 기구의 일환으로 생성·발전하여 온 이상 산업혁명 이전에 원가계산이 존재하였다고 추측할 수 있다⁷⁾.

2. 산업혁명 이전까지

원가계산은 산업혁명 이전에 이미 시작되어 상업이 발달한 이태리, 영국, 후란다스(Flanders)⁸⁾, 독일 등지에서 일용품 등의 제조기업이 설립·계산되고 있었으며, 특히 이태리는 당시 세계상업의 중심이 되어 있었으므로 당시의 자유도시에서 제조업이 성행되어 제조원가 항목에 관계되는 과목에 대하여 기록한 사실이 많았다.

그리고 이들의 목적은 가격계산에만 있지 않고 제조의 여러 단계에 대한 회계관리(accounting control)와 원료의 낭비와 제조실패(공손)을 적게 하기 위하여 이용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금일의 원가계산의 목적과 부합되는 것이라 하겠다¹⁰⁾.

Garner에 의하면 이탈리아, 영국, 독일의 상업이 발전함에 따라 모직물, 책, 화폐, 포도주 등 주요 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14세기경에 소규모의 공기업이 설립되면서 복식부기가 제조업에서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예로서 영국의 경우 헨리 7세(1485~1509)기에 원가회계의 전개가 최초에 발생하였다. 이

5) A. C. Littleton, op. cit., pp. 300~321.

6) S. P. Garner, op. cit., p. 4.

7) 片野一郎 譯, Littleton, 會計號達史, 同文館出版, 1952, p. 475.

8) 玄義臺, 原價會計, 韓基出版社, 1992, p. 23.

9) 후란다스(Flanders)는 Belgium서부·Holland남부·France북부를 포함하는 北海에 면했던 옛날의 나라.

10) 寶廷煥, 會計의 理解(史的接近), 三英社, 1995, p. 148.

당시는 많은 길드(Guild)제도에 반향하여, 많은 소공장의 소유주가 조직화된 길드 이외의 경로로 자기들의 제품을 매출할 것을 희망하여 도시에서 지방의 농촌에 이동하고 공장집단을 확립하고 있었다.

원가산정(Costing)은 자기들의 제조·판매활동이 고도로 독점적인 길드에 의하여 규제되었던 기간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아니하였다. 소공장의 소유주가 길드와 대항할 뿐 아니라 자기들간에 경쟁하지 아니하면 안된다는 것을 차차 알게 됨에 따라 더욱 정확한 원가의 기록이 필요하게 되어 거의 성공을 위하여 필수조건이 되었다¹¹⁾.

또 Fugger가(家)의 원가계정에 관한 원가기록을 들 수 있는데 16·7세기에 오스트리아의 티롤 및 카린시아 지방에서 광산과 체련소를 경영하는 Fugger가 1577년 기록에 의하면, 재료원가와 노무원가가 하나의 계정에 집계되어 있었다. 이것은 엄격한 의미로는 원가회계로 볼 수 없으나 중요한 것은 제조원가(Cost of Production)라는 개념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다¹²⁾.

또한 15세기부터 메디치(Medici)家는 이탈리아의 피렌체에서 직물제조 및 판매라는 계정을 설정하여 장부조직을 사용하였으며 직물의 판매 행위를 통하여 얻은 이익도 기록되는 계산서도 작성되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제조계정으로서 차변에는 비용항목을 기록하여 집합하므로써 총 소요된 원가를 계산할 수 있었던 것이다¹³⁾.

16세기 경에 Christopher Plantin 인쇄소의 장부는 당시의 공업부기의 발달을 나타내는 것으로써 유명한 것이나 그 영업일기에서 당시의 원가계산의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인쇄기의 취득원가는 그 본체 목공부품, 동판, 철봉 등의 구입대가를 합계하여 계산하고 인쇄물의 제조원가는 지대 및 판대 등의 재료비에 인쇄공과 제본공의 임금을 가산하여 계산하고 이것을 각 해당계정에 기입하고 있다. 또 매출도 계정별로 그 제조원가와 매출금액을 비교하여 매매 총 이익을 나타내고 있다. 일단 책의 인쇄가 완료되면 도서별 총원가는 이 원가 계정으로부터 도서원가라는 다른 계정으로 대체되었는데 여기에 설정된 계정은 재공품 계정에 상응하는 것이며 도서재고 계정은 오늘날의 제품계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종이 계정 및 도서재고 계정에는 재고 수량을 기록하기 위하여 계속 기록법의 형태와 별도의 난이 마련되어 있었다.

11) S. Paul Garner, *Highlight in the Development of Cost Accounting* (Accountants Publishing Company, Inc., March 1950), in William E. Thomas ed., *Reading in Cost Accounting, Budgeting and Control* (South Western Publishing Company, 1960), p. 4.

12) S. Paul Garner, *Evolution of Cost Accounting to 1925*, pp. 4~7.

13) Ibid., pp. 7~10.

이상과 같이 Garner의 저서를 중심으로 원가회계를 살펴보았는데, 해가 거듭할수록 16세기까지는 이 공업의 파트너십의 계정은 차차 개선되어 왔으며, 이러한 사실은 당시의 많은 기업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생산기술면이나 경영면에서 선구적인 대기업에서만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다.

그러나 인용된 기업들이 원가회계의 초기발전 단계에 선구자였다는 것은 틀림없으며, 이러한 기록들이 생산과정을 통하여 원가절감의 목적으로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낭비를 줄이기 위한 원가발견(Cost finding)의 단계에 있었으며 원가회계의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볼 때 산업혁명 이후의 열매를 맺기 위한 생성기라고 볼 수 있다¹⁴⁾.

III. 원가회계의 변혁기(성장기)

1. 산업혁명과 원가회계

산업혁명에 의하여 발달된 기술은 회계의 발전에도 많은 영향을 가져왔다. 19세기 이전의 가내공업이 지배적이었던 시기에는 기계화공업이 크게 작용되지 않았으나 19세기에 들어서면서 회계의 발전에 자극을 준 일련의 경제적 사건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회계는 가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그 중에서도 회계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서 산업혁명에 의한 기술의 변혁에 의하여 공장제도가 발전하게 됨에 따라 중기계화의 이용으로 공업활동에 크게 작용되었다. 중기계 및 장치에 대한 고정자산의 투자가 증가되면서 생산과정이 급격하게 복잡하게 되고, 그에 따른 감가상각과 자기자본 이자 등의 고정비를 발생하게 하였고, 그 외의 평가문제도 복잡하게 되었다. 특히, 간접비의 발생은 생산과정을 부기로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생겼고, 고정자산의 중대와 더불어 생산의 목적이 점점 시장을 중요시 함에 따라 시장원리에 의한 경쟁에서 기업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판매가격의 기초가 되는 원가숫자와 생산과정의 숫자에 의한 통제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수익체감의 법칙에 따라 기업의 이윤은 일부의 독점기업외는 일반적으로 저락하게 되었으며 능률증진의 운동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¹⁵⁾. 이외에 들 수 있는 몇가지를 첨가한다면 고용자에게 다액의 임금지급을 할 경우에 임금대장의 부정 및 착오의 방지, 고가격의 설비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진부화를 위한 감가상각비의 문제, 경영자가 불경기에는 어느 정도까지 가격을 책정 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시 되었다¹⁶⁾.

14) 玄義泰, 前揭書, p. 20.

15) S. Paul Garner, op. cit., (1954), pp. 27~29.

16) Michael chatfield, op. cit., p. 103.

뿐만 아니라 Robert Hamilton은 그의 저서 〈상품입문〉(introduction to merchandise, Edinburgh : 1788)에서는 제조업자가 일반적으로 기록하는 일기장 및 원장에 대하여 기술하고 제조업자를 위한 재료의 입출고장과 완성된 제품의 수불장, 임금, 제품의 가격, 종업원의 성명 작업에 대한 지시서 등의 제조에 관계되는 기록을 차별화 기입되고 대변에 제조된 제품의 가격이 기입되어 기말에 재공품가격을 차감하면 그 잔액이 손익을 나타낸다고 하고 있다¹⁷⁾.

공업회계제도에 대한 최초의 포괄적인 기술은 Anselme Payen과 F. W. Cronhelm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Payen은 그의 저서인 제조업의 부기이론에서 마차 제조업체에 개별원가 계산제도를 도입, 분개장과 원장을 사용하여 외부자와의 거래는 금액으로 기입하고 내부거래는 수량을 기입하고 있다. 분개장에는 마차별로 재료원가, 노무원가, 제조경비로 구분하여 총 원가를 산출하여 판매가격과 비교하여 손익을 산출하는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또 다른 아교(阿膠) 생산공장에서는 종합원가계산 제도를 이용하여 모든 원가인 이자와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총원가는 제조계정과 비슷한 계정에 집계되고 있다¹⁸⁾.

Cronhelm은 섬유공장을 예로 들어 손익을 구하기도 하였는데 차별화 기초재료와 당기매입재료, 임금 및 세금 등의 경비를 기입하고 대변에 매출액과 기말재고를 기입하는 제조장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산업혁명의 결과 가내수공업의 형태에서 공장제 생산형태로 변화함에 따라 간접제조경비의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것이 원가회계의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19세기 말엽 체계적인 원가회계가 성장되는 바탕을 이루었다.

2. 간접비관리의 필요성

지금까지 언급한 여러가지 문제는 원가계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나 그 당시 A. Hamilton Church의 간접비 적정배부론(The proper Distribution of Expense Burden)과 John Whitmore의 기계공장에 용용되는 공장회계(John whitmore : Factory Accounting as Applied to Machine shops)에 관한 논문 이외는 중요한 것이 없기도 했지만 간접비의 관리를 위한 실제로 발생한 모든 원가가 생산공정에 배부되어야 한다고 하는 필요성을 널리 인식되었던 것이다¹⁹⁾.

Garner는 당시에 공업회계의 전문가들은 1885년까지 공장간접비(Factory overhead

17) Robert Hamilton, introduction to merchandise, 2d ed, 1820.

18) Michael Chatfield, op. cit., p. 103.

19) S. P. Garner, op. cit., p. 193.

charge)에 포함시켜야 할 비목에 대하여서는 거외 논하지 아니하였다.

어떤 전문가는 1913년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즉, 공업회계의 초기에 있어서 제조업자들은 직접재료비와 직접임금 이외의 것에는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였다. 다른 모든 비용은 이 원가 이상으로 수취한 이익으로 충당되었다고 하였다²⁰⁾.

또, Littleton도 19세기의 원가회계와의 사이에 제일 큰 과제의 하나로 간접비 처리문제라고 하였다.

원가계산의 발족시대에도 간접비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이해는 있었던 것 같으나, 이것을 정연하게 처리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었다.

1885년에서 1920년까지의 원가회계는 중세부기로부터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는 회계실무가 출현되는 단계로 까지 진보하였으나 특히, 다음 인물들의 연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1) Henry Metcalfe의 'The cost of Manufactures'

현대원가 회계의 최초의 문헌은 미육군의 군수장교였던 Henry Metcalfe의 제조업의 원가(The cost of Manufactures, 1885)이다. 당시의 미국에서 주로 운용되고 있었던 원가 회계 시스템은 이 선구자가 제안한 기법들을 채택하고 있었다. 특히 관심을 끌었던 것은 루스리프식 장부형태를 처음으로 고안한 사람을 중에 한 사람이었고, 원가를 계산할 때마다 하나 하나의 원가 요소의 공장지시서 카드에 기록하여 수집하는 개개인의 작업에 투입된 재료 원가와 노무원가를 나타내는 원가카드가 작성되었다. 하나의 작업지시서가 완료될 때까지 이를 카드는 작업번호별로 보관되었고, 작업이 완료된 뒤에는 취합되어 공장 주문장에 기입되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원가(主原價) 짐계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이 간구 되기도 하였다²¹⁾.

2) Emile Garcke and John Manger Fells의 'Factory Accounts'

1887년 전기기사였던 Garcke와 회계사였던 Fells는 19세기에 있어서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이 있는 공장회계란 원가계산에 관한 문헌을 남겼다²²⁾.

Gareke와 Fells는 모든 원가 계정을 복식기입 방법으로 기장하고 이것을 재무회계기록과 통합함으로써 공장내의 재료와 노동력에 대한 회계상의 관리는 확실히 용이하게 되었다. 적

20) Michael Chatfield, op. cit., pp. 161~162.

Henry Metcalfe, *The Cost of Manufactures and The Administration of Workshop, Public and Private*, New York, 1st ed., 1885, 3rd ed., 1907.

21) Michael Chatfield, op. cit., pp. 161~162.

22) S. Paul Garner, op. cit., p. 10.

어도 이론상으로는 원료계정은 보조원장의 잔액과 항상 일치하여야 할 것이다. 또 일반적으로 보조부로서의 공장원장은 총계정원장에 의하여 통제되지 않으면 공장 회계의 조직은 고도로 능률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즉 공장원가 계정과 총계정원을 사용하게 되면 계계정의 조정을 손상하지 않고 각 원장은 다음과 같은 계계정을 설정할 것을 권장하였는데 이 계정들을 보면 원료 소모품비, 노무비, 간접경비, 제경비, 반제품, 제품의 계정과 총계정원장 계정이다.

재료비, 노무비, 간접경비, 계계정으로부터 원가의 호흡을 정확하게 설명되고 있다.

제품에 배분되는 재원가는 재공품계정에서 제품계정에 대체되어 그 다음 매출원가 계정에 대체 기입이 되는 것이다.

그는 재무원장 또는 총계정원장의 설명에서 공장의 계계정을 결합하기 위하여 2가지의 방법 중 어느 것이나 하나를 채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술하고 있다. 그 하나는 이미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원료, 노무비, 간접경비, 재공품, 제품에 관련한 계계정만을 포함하는 원장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의 방법은 대응계정(Reciprocal account)제도인데 총계정원장에 공장원가 계정을 설정하는 것이다. 만일 후자의 방법을 선택한다면 원가의 세목은 공장원장에만 기록된다. 그것은 회계과의 원가의 세목은 공장원장에만 기록되나 그것은 회계과에 의하여 완전히 통제된다라고 하여 원가계산과 재무회계의 상호간의 유기적인 관계와 통합을 설명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개별원가 계산제도의 장점에 계속 기록법을 이용함으로써 간접원가에 관하여 개념적인 해결과 공장원가와 관리비를 구분하고, 공장원가는 각 작업에 관한 원가를, 관리비는 손익계정에 배부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²³⁾.

3) George P. Norton의 'Textile Manufactures BookKeeping'

Norton은 직물산업을 예로 들면서 개개작업에의 원가 배부보다도 부문별 작업을 상세히 짐계한 제조계정의 원가분석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²⁴⁾.

Norton의 방법은 예산원가를 실제의 원가와 비교한 것으로 19세기 경에 표준원가계산에 가장 유사한 방법이었다. Norton은 원가를 산정한다는 뜻보다는 원가를 사용하여 경영능률을 검증하는데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뜻에서 현대적 의미가 있었다. 그의 방법은 공장에 생산이 경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는 어떤 부문에서 채산이 맞는가, 판매가격은 현실적인

23) Michael chatfield, op. cit., pp. 162~163.

Emile Farcke and John Maner., Factory Account, Their Principles and Practice, London, 1st ed., 1887, 4th ed., 1893, 5th ed., 1902.

24) S. Paul Garner, op. cit., 1954, pp. 278~279.

가의 여부에 관한 경영자의 판단을 용이하게 한 것이다²⁵⁾.

4) J. Slater Lewis²⁶⁾

영국의 공장 회계사 Lewis는 원가계정과 재무계정의 통합을 일찍부터 주장하고 있었지만 그가 제시한 간접원가 처리방법을 회기 말에만 간접원가와 기본원가를 관련시키고, 1896년에 Lewis는 보통의 원가와 같이 간접원가 항목을 포함하는 계정은 손익계정에 대체하도록 제안하였다.

동시에 그는 재공품계정과 제품계정의 차변에 각각 배부되는 간접원가를 기입하고 총계정 원가의 미결산계정에 다시 차기되고 제품계정과 재공품계정에 대기되며, 따라서 재고 자산계정도 기본원가 기준으로 돌아가고 간접원가는 미결산계정에 잔액으로 남게 된다.

그 기간 중에 이 잔액을 매출원가에 서서히 배부되는데 그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정확하게 명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Lewis의 원가 중의 간접원가 배부방법은 복잡하긴 하였으나 그 결과는 올바르다고 인정되는 것이었다. 그의 방법에 따르면 간접비를 하나의 단위로 취급하여 간접비를 재고 자산계정을 통하여 전기하는 문제를 피하고, 작업의 배부한 금액과 실제의 지출액과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으로 되었다.

3. 간접원가의 배부

공장조직의 전문가로서 한 시기에는 Lewis의 조수로 근무한 적이 있는 alexander Hamilton Church는 원가산정을 제조기업 전체의 입장에서 자리를 잡게한 최초의 중요한 저자였다.

Church의 중심 과제는 단순한 원가회계의 개선이 아니라 부기와 조직과를 혼동하는 과오를 종종 범하고 있는 점을 발견하고 공장운영을 합리적으로 조직화하는 것이었다²⁷⁾.

20세기의 들어오면서 Church는 우선 원가 개념을 명확히 밝히고자 하였는데 그 원가 개념을 크게 세 가지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제1단계는 기본원가(Prime Cost)로서 재료원가와 임금을 포함시키고, 제2단계는 제조원가(Works Cost)로서 기본원가의 공장경비(Shop Charges)를 가산하였으며, 제3단계는 총원가로서 일반경비를 제조원가에 포함시켜 산출하고, 제4단계에는 총원가에 일정한 이익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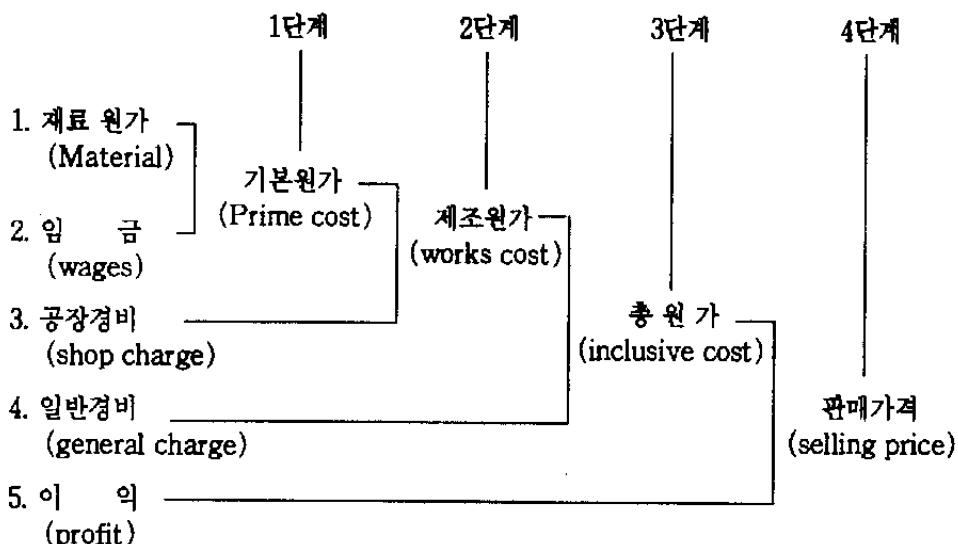
25) Michael chatfield, op. cit., p. 164. George P. Norton, *Texttile Manufactures, Book-keeping*, London, 1st ed., 1889, 4th ed., 1900.

26) J. Slater Lewis, *The Commercial Organization of Factories*(London : E. and F. N. Spon, 1986)

27) Michael chatfield, op. cit., pp. 164~165.

가산함으로써 판매가격이 형성되었다. 요소별, 단계별 판매가격이 형성되기까지의 표를 보면²⁸⁾ 다음과 같으며 이 표는 오늘날 자주 채택되는 원가 분류의 기원이 되었다.

〈단계별 원가표〉



표에서 나타나 있는 원가 중 제조 간접비에 해당하는 요소는 공장경비이다.

Church는 원가계산에 있어서 곤란한 문제는 이 제조간접비에 해당하는 공장의 경비를 어떻게 배부하느냐 하는데 있었으며 당시의 배부방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대체적으로 발전하여 왔다.

1) 고정배부율법

원가계산의 요람기에는 제조간접비가 제품별로 배부하는 기술이 발달하지 못한 관계로 제조간접비는 대체로 제조직접비의 몇 %가 소요될 것이라는 주먹구구식의 배부율에 따라 원가계산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제품재료비 또는 직접비의 일정률로서 당해 제품의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 방법을 고정배부율법이라고 한다. 이 방법은 대단히 간단하지만 극히 부정확한 것은 말할 것도 없으며 이에 따라 일충 정확한 제조간접비의 배부기준 설정이 요망되게 되었다.

2) 총괄배부율법

28) 曹廷煥, 前揭書, p. 157.

이 방법은 직접노무비, 직접작업시간 등의 어느 한 기준을 배부기준으로 정하여 놓고 이것으로서 일정기간의 제조간접비 총액을 나누어 제품단위당 제조간접비 부담액을 산정한 후 이를 전제품에 평일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단일한 배부기준에 의하여 배부되므로 제품별 특성이 완전히 무시되는 결점을 가지고 있다.

3) 부문별 배부율법

위의 단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품의 특성과 작업의 특성을 살린 원가부문을 설정하고 각 부문의 집계액을 일정한 배부기준을 통하여 제품에 배부하는 방식이 발달하였는데 이것이 부문별 배부율법이다.

4) 개별배부율법

각 부문비에도 여러 가지의 이질적인 성질의 요소비용이 있으므로 제조간접비 전체를 수개의 group, 예를 들면 임금관계간접비, 재료간접비, 수선관계간접비 등으로 분류하고 각 group별로 적절한 배부기준을 정하여 배부하는 방법이 발달하였는데 이것이 개별 배부율법이다. 이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제품의 특수성에 따라 비목별 제조간접비를 개개 비목별로 배부기준을 정하여 각 제품에 배부하는데까지 적용하고 있다. 이 방법은 합리적이기는 하지만 부문별 원가계산을 거쳐 제품원가 계산을 하는 복수제품 제조의 경우에는 그 계산절차가 대단히 번잡한 애로가 있다.

5) 가격법

개별원가계산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가격법을 제조간접비를 기준으로 하여 간접비를 배부하는 방법으로 여기에는 직접재료비를 기준으로 하는 직접재료비법과 직접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직접임금법, 그리고 제조직접비 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직접원가법이 있다.

6) 시간법

이 시간법은 제품제조에 소요된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제조간접비를 각 제품에 배부하는 방법으로서 이 방법에는 제품별 직접작업 시간을 간접비 배부기준으로 하는 직접작업 시간법과 제품별 기계 이동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기계시간법이 있다²⁹⁾.

종래의 제조간접원가 배부법의 결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새로이 생산중심점 개념을 도입하여 생산중심별로 배부법인 과학적 기계시간법을 제정하였다. Church의 기계시간법에는 제조간접원가의 예정배부율이 적용되고 있다. 제조간접원가를 제품에 배부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공장 전체의 완전조업상태에서 발생할 간접원가를 원가항목별로 추정하고 이 예정제조간

29) 許宗玗, 現代原價會計, 貿易經營社, 1983, p. 162.

접원가를 위의 기준에 따라 각 생산중심점 기계에 배분한다. 각 생산중심점이 부담하여야 할 완전조업하의 재조간접원가가 파악되면, 이것을 각계의 완전조업시간으로 나누어 기계율을 구한다³⁰⁾.

Church가 전개한 이론이 일부는 그 후 20년간에 걸쳐 비판되었으나 간접원가의 내용과 배부에 관한 그의 기본적인 가정은 후에 저술가들에게 새로운 방법의 길을 열어 주었다.

20세기 초에는 과학적 관리법(Scientific management)의 창시자인 테일러(Frederick W. Taylor) 그리고 페욜(Henry Fayol), 칸트(Henry L. Gantt), 길브레스(Frenk Gilbreth), 쿡크(Morris L. Cook) 등이 경영관리의 이론과 기술을 발전시켰다. 이들의 저서는 생산효율을 향상시키는 방법과 절차를 설명하였는데, 생산효율을 측정하는 수단으로 원가회계가 중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가회계는 효율측정을 긴밀히 협력하게 되었다. 그래서 원가회계는 원가의 확인이라는 종래의 중점으로부터 원가통제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³¹⁾.

또, 원가정보는 사후 비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전 분석을 위해서도 필요하였다.

1930년경에 나타난 원가회계 사고의 급격한 전진은 회계이론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원가기록을 재무회계기구에 포함시킴으로써 공기업의 손익계산 방법이 가능하게 되었다. 재고자산 평가는 원가주의에 한층 더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었고 보다 훌륭한 비용수익의 대용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예정간접비 배부율과 표준원가를 분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비능률원가나 유휴시설 원가에 관한 문제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간접비 문제가 중요시됨에 따라 감가상각 개념이 나타나게 되었다³²⁾.

IV. 관리지향형 원가회계(활성화기)

1. 제품원가 중심에서 관리형으로 발달

제품간접비는 직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모든 원가로서 제조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을 말한다³³⁾.

어떤 면에선 제조간접비는 사적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주로 원료와 노동에 의하는 수공업의 단계에서는 제조간접비는 크게 문제가 될 수 없었으나 근대기업의 특성인 대규모 생산에

30) 玄義叢, 前揭書, p. 31.

31) Charles T. Horngren, Cost Accounting A Managerial Emphasis (3th. ed.)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Inc., 1972, pp. 223~224.

32) 南上好, 會計理論, 日新社, 1982, p. 111.

33) 宋梓外 5人 謂, 原價會計(WST Accounting), 法文社, 1983, p. 57.

필요한 기계화와 공장생산 체제에 수반하여 제조간접비의 급증을 새로운 문제로 의식하게 되었다³⁴⁾.

더욱이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유휴화된 고정설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경영환경의 커다란 변화를 가져 왔고 생산과정의 낭비배제와 능률증진이 원가회계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와 같이 전후에 발생한 불황이 1920년 이후의 원가회계를 제품 원가계산 중심으로부터 경영관리 지향형 원가회계(managerial cost accounting)로 바꾸어 놓은 배경이 되면서 경영규모의 확대, 작업의 기계화 등의 원인으로 제조간접비의 격증은 새로운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또 제조간접비도 관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원가회계는 주로 제품원가계산과 원가요소의 통제를 특히 강조하면서 정확한 원가의 결정에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한 단위의 제품을 생각하는데 투입된 총원가(Full cost)가 얼마인가를 결정해 보려는 시도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위해 여러 가지 원가확인 배분방법이 개발·사용되었고, 전부원가 계산이 강조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정보이용자가 요구에 맞는 회계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 제고되어 원가회계 정보도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적합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졌다³⁵⁾.

2. 표준원가 회계의 발달

원가회계는 원가의 확정이라는 종래의 관점에서 벗어나 원가관리에 중점을 둘으로써 능률측정을 위한 도구를 활용하게 되었는데 이는 F. W. Taylor의 과학적 관리법이 출현하면서 작업능률을 측정하기 위하여 관리자와 기사들 그리고 원가회계 담당자와의 협력하에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원가회계에 관한 사고의 변천으로 표준원가의 개념이 생성되었다. 즉,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간접비 문제가 발전함에 따라서 표준원가계산에 관하여 초기에 가장 잘 알려진 문헌은 미국의 기사 Percy Longmuir의 저서와 영국의 회계사 J. Stanley Garry의 논문이다. Longmuir는 1902년에 주조공장의 원가에 관한 논문 중에서 각종의 노동에 표준요소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각종 작업의 노무비를 생산량과 관련시켜야 한다고 제안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경영자의 의사결정과 관계있는 시기적절한 원가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1903년에 Society of Chemical Industry에 발표된 공장원가에 관한 논문 중에서 Carry는 재료에 관하여 정상표준원가(normal standard price)를 채택할 것을 주장

34) 金奎三, 新原價管理, 博英社, 1981, p. 199.

35) Michael chatfield, op. cit., pp. 169-171.

하고 정상조업도와 가격 차이의 개념을 소개하였다. 그러나 그의 제안이나 Longmuir의 제안은 다같이 기술적으로 상세하게 입안되어 있지 않아서 당시의 실무에 아무런 주목할만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1) John whitmore

최초로 표준원가계산에 관하여 상세하게 해설한 사람으로는 미국의 회계사 John Whitmore를 들 수 있다. 그는 Church의 제자로서 1906년 Church의 제도를 공장에 적용시키는데 필요한 원장, 계정 및 기입법을 설명한 일련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는 간접원가 배부에 관한 church의 과학적 기계율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유휴생산능력원가에 관한 처리방법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자면 유휴시간은 생산에 있어서 적정원가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낭비라고 생각하여 유휴생산능력원가를 재공품에 부과하지 않았고, 또 Church의 보충률법을 비판하였던 것이다.

특히 Whitmore는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나 *Journal of accountancy*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서 진정한 원가에는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가는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Whitmore는 노동효율 표준 및 재료소비량 표준에 따라 사전에 어떻한 것이 적정원가인가를 산정하고 이렇게 예상한 원가와 실제원가와의 차액을 밝힘으로써 정확한 원가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과학적인 능률성의 연구로부터 발달한 표준원가를 보여주지는 못하였다.

2) Harrington Emerson

작업 및 임금의 기초로서 능률(Efficiency as a basis for operations and Wages, 1909) 이란 제목의 논문에서 표준원가에 관한 보다 실무적인 연구를 한 바 있는 미국의 능률기사인 Harrington Emerson은 현재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실제원가계산은 낡은 방법이라고 비판하면서 새로운 원가계산의 방법으로 표준원가계산의 중요성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실제원가계산에서 견적원가계산으로 발전하였고 또한 표준원가계산으로 발전하였다는 역사적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뜻에서 실제원가계산을 모체로 해서 발전한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발전은 무언가 아주 새로운 계산기술이 혁신적으로 출현한 것이 아니고 각 기업의 생산현장에서의 구체적인 활동이나 그 계산 속에서 제안되고 생성된 것이다.

예를 들면 실제원가계산도 기업의 구조가 점차로 고도화되어 가면 제조간접비의 배부가 매우 복잡해져서 계산노력이 증대되고 게다가 시간적으로도 상당한 지연을 초래하도록 되어 예정율 배부라는 방법을 채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이것이 견적원가계산을 낳게한 당초의 계

기라 할 수 있다.

아무튼 표준원가계산제도가 이미 그 당시에 몇몇 대규모의 공장에서 시작하였다는 것과 이와같은 과정을 거쳐서 표준원가계산은 전문기사들에 의해서만 추진되고 있던 계산기술에서 차츰 탈피해서 본격적인 것이 되었고 Emerson 등에 의하여 표준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Whitmore보다 더욱 많은 관심을 표시하면서 오늘의 표준원가계산이 확립된 것이다.

3. 직접원가 회계의 발달

직접원가계산을 처음으로 소개한 출판물은 1936年 N. A. A의 Bulletin에 게재되었던 해리스(Jonathan N. Harris) 교수의 논문이다³⁶⁾.

그러나 그 기원은 해리스교수의 논문보다 앞서고 있었다. 실제로 실시한 최초의 회사는 1908년에 가격결정을 위한 한계원가에 관한 자료를 이용하기 위하여 고정비와 변동비를 분리하여 원가체계를 확립하였으며, 둘째번의 회사는 1922년에 설립된 이후 계속하여 재고자산을 직접원가계산에 의하여 평가하였으며, 세번째 회사는 1926년에 전부원가계산제도로 변경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직접원가의 개념을 한계원가의 개념만큼 오래된 것이며 한계원가의 개념은 기원이 일천(日淺)한 것은 아니다. 고정비와 변동비의 분리는 1850년에 아일랜드의 학자에 의하여 논의되었다.

즉 현재의 생산원가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그 하나는 생산되는 수량과는 전혀 독립적인 것, 따라서 생산수량간에 균등하게 나누면 생산수량과는 역의 관계에 있는 가격의 한 요소를 구성하게 되며 다른 하나는 노동의 직접적인 적용과 원료의 직접적인 사용에 의하여 생산수량과 직접비례하는 요소로 되어 있다³⁷⁾.

그리고 1910년에 하밀頓(W. R. Hamilton) 교수는 간접비를 부문간에 배부하는 것에 관한 흥미있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즉 이 분할을 어떤 유용한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하는 것은 용이하다. 예컨대 관리자의 급료를 부문간에 분할하는 것은 어떤 소용이 있는가? 만일 한 부분이 중단된다면 관리자 중의 일부는 없어도 되는가? 그 분할이 어떤 의미가 있다면 이것은 회계연도간의 그 것처럼 오직 상대적인 것이다. 이것은 절대적인 가치는 없다. 왜냐하면 과거의 행위를 확인하고 새로운 행위를 유발시키는 사실—기업에서 가치가 있는 유일한 사실에 대하여 해답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³⁸⁾.

36) Jonathan N. Harris, What did We earn Last Month (NACA Bulletin Vol. 17, No. 10, January 15, 1936), pp. 501~527.

37) David Solomons, Studies in Costing (London, Sweet & Maxwell Ltd., 1972), p. 34.

38) Ibid., p. 33

이상의 내용들은 요약하면 직접원가계산은 대략 1930년대의 후반에 생성되었으며 이를 지지하는 학자나 실업가들은 과거의 전통적 전부원가계산(traditional absorption costing : full costing)은 두 가지 문제점인 하나는 제조간접비 정상배부의 난점과, 두번째는 전부원가계산의 복잡성에 대하여 비난하고, 직접원가계산이 경영자에게 가장 이해가 용이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재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전후에 미국을 중심으로 호황과 불황의 잦은 경기순환은 기업으로 하여금 가격정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직접원가계산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 미국회계(N. A. A)의 논문제목, 색인을 보면 1940년대에 불과 2편의 논문에서 1950년 이후 1960년대까지의 10년 동안에 무려 44편의 논문이 소개된 것으로서도 잘 알 수 있다³⁹⁾.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NAA의 조사스템은 1953년 직접원가계산에 대한 실태보고와 1957~58년의 불황으로 직접원가계산에 대한 수차례의 회의를 가졌으며 회의 참석인원의 증가는 직접원가계산의 중요성과 적용에 있어서 많은 반영이 되었다. 이러한 계기는 미국 전역에 보급되어 경영자들이 기업 경영 의사결정에 유용한 수단으로 정착시켜, 제품의 수익성, 가격결정, 제품믹스, 경영통제에 관한 의사결정의 기반으로 인식되었다.

이와 같이 원가회계 자료가 조직내부의 관리목적에 이용되고 있다는 인식과 더불어, 회계 전문가들은 외부보고 목적보다는 내부의 관리목적에의 이용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보고, 동시에 내부관리목적을 위한 원가자료의 보고는 외부보고목적을 위하여 사용된 방법과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외부보고목적을 위하여 전부원가계산제도가 이용되고 내부관리목적을 위해서는 직접원가계산(변동원가계산시스템)⁴⁰⁾이 보다 적절한 방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1960년대에는 경영자에게 회계정보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새로운 기법을 계속 개발·발전 시킴에 따라 관리회계에 관계되는 연구문헌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법들은 이론을 뒷받침할 확고한 이론이 없이 개발되어 경영과학분야의 발전에 힘입어 수리적인 측면에서 발전을 보게 되었다. 그러므로 관리회계와 경영과학 사이의 구분은 명확하지 않았으며, 예를 들어 선형계획모형의 개발은 경영과학의 분야로 간주되는 반면, 선형계획모형의 응용을 위한 정보의 제공은 관리회계의 분야라는 것이다⁴¹⁾.

39) Raymond P. Marple, Historical Background, pp. 3~14, National Association Accountants on Direct Costing, Select papers (New York, Ronald Press, 1965), p. 12.

40) 玄義泰, 前揭書, pp. 37~38.

41) 고득필, 原價會計, 法文社, 1991, p. 20.

4. 활동기준원가회계의 발달

1) 탄생의 배경

1980년대 후반기에 들어와서 많은 기업의 경영자들과 회계담당자들이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제조원가계산제도에 이론을 제기하게 되었고, 특히 제조간접원가에 대한 불만이 있게 되었다.

제조간접원가배부의 가장 전형적인 방법은 부문별 제조간접배부율을 이용하여 배부액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제조간접원가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다⁴²⁾.

- ①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제조간접원가의 배부를 없애는 방법이다.
- ② 제조간접원가의 배부를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제품이 아니라 제품계열로 원가를 직접 부과하는 방법이다.
- ③ 제조간접원가의 배부방법을 개선함으로서 제조간접원가의 배부에 관한 불만을 해소하려고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이 바로 활동기준 원가계산(activity based costing : A. B. C)이다.

캐플란(R. S. Kaplan)과 쿠퍼(R. Cooper)에 의하면 미국의 제조기업에서는 급변하는 경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제조현장에서는 FMS나 CIM을 도입하고 JIT방식을 채용하는 등 다양한 대응책을 실시하였지만 회계부문에서는 이렇다 할 환경변화의 대응에 소홀히 하여 그 관리회계 시스템을 진부화되어 버렸다고 비판하고, 미국의 일부의 진보적인 기업실무에 대한 실태조사를 개시하고 그 조사로부터 제품전략수립을 위하여 유용하다고 인정된 새로운 원가기법을 발견하였는데 이것이 활동기준 원가계산이다.

ABC는 결코 갑자기 등장한 개념은 아니다. 제조간접비 배분의 왜곡이나 부서간 또는 기능 상호간의 관계포착 및 원가절감 영역의 지적이 약한 점들을 보완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대두된 것이다⁴³⁾. 즉, 원가는 단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즉, 원인에 의해 야기 된다는 사실을 재인식하고 왜 그런 수준의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해 주는 소위 원가동인(cost driver : 일명 원가작용인)의 개념을 활용하여 종전보다 훨씬 인과관계에 기초한 원가배분을 꾸밀 필요성이 오늘날 크게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활동에 관한 정보라는 ABC의 핵심적 개념은 Johnson(1988)⁴⁴⁾의 지적처럼 개념적으로는

42) Charles T. Horngren & Geoge, Cost Accounting, 6th ed, 송자 外 7人, 共譯, 法文社, 1991, p. 94.

43) 申洪哲, 管理會計의 革新, 經文社, 1994, pp. 87~89.

44) H. Thomas Johnson & Robert S. Kaplan, "Activity-Based Information : A Blueprint for World class Management Accounting, Management Accounting", June 1988, pp. 23~30.

Williamson(1979)⁴⁵⁾의 시장 및 계층구조 이론과 Porter⁴⁶⁾의 가치사슬(value-chain)의 개념과 관련을 맺는다. 훨씬 이전에 ABC에서 이야기하는 활동에 관한 정보의 개념과 비교적 유사한 아이디어를 언급한 바 있는 학자로서는 '관리적 원가계산'이라는 교과서의 저자인 Shillinglaw⁴⁷⁾와 '활동원가계산과 투입-산출회계'라는 책에서 활동원가(activity-cost)를 소개한 바 있는 Staubus(1971)⁴⁸⁾를 들 수 있다.

이 중 ABC의 용어와 가장 유사한 명칭을 통해 비교적 오래 전에 ABC와 유사한 원가계산의 개념을 제안한 Staubus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활동원가란 경제적 가치의 회생으로 화폐적으로 측정가능한 자산의 소멸분 또는 화폐적으로 측정가능한 부채발생액이다. 또한 활동원가는 용역잠재력의 유출분 또는 기업이 소유한 자원의 다른 용도로의 이용을 포기함으로써 잃게 된 利得額(즉, 기회비용)이기도 하다. 또한 원가계산은 구체적으로 원가계산의 對象에 따라 원가계산 내용이 달라지는데 원가계산 대상이란 전통적인 원가계산 제도하에서는 일반적으로 製品에 한정되고, 활동원가계산에서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경제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活動을 포함한다."

상기 Staubus가 내린 '활동원가'의 정의와 원가계산의 일반적인 정의를 종합하면 활동원가계산(activity costing)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제반 경제활동의 수행과정에 필요한 활동에 소요된 경제적 자원의 회생을 화폐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ABC와 Staubus(1971)의 활동원가계산은 매우 유사한 개념이나, Cooper(1990)⁴⁹⁾의 자작처럼 Staubus는 원가를 제품에 부과함에 있어서 상이한 배분기준을 활용함에 따른 장점을 제대로 다루지를 못했다. 즉, 그는 원가를 단위기준으로 추적·부과하며 단위당 원가를 보고함을 주로 다루었다. 예를 들면, 그는 구매원가는 제품의 단위당 재료 면적을 배분의 기준으로 삼아 배부한다. 따라서 매번 생산될 때마다 수행되지 않는 활동을 마치 생산할 때마다 수행되는 것처럼 간주하여 배부하는 소위 단위기준 원가시스템(unit based cost system)에 해당한다.

45) Williamson, O. E., *Transaction Cost Economics, The Governance of Contractual Relations*, The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October 1979).

46) Porter, M. E.,

① *Competitive Strategy*, (New York, The Free Press, 1980).

② *Competitive Advantage*, (New York, The Free Press, 1985).

47) Shillinglaw, G., *Managerial Cost Accounting, Present and Future*, Jounal of Management Accounting Reseach, (Fall 1989).

48) Staubus, G. J., *Activity Costing and Input-Output Accounting*, Richard O. Irwin, Inc., 1971.

49) Cooper, Robin, *Cost Classification in Unit-Based and Activity-Based Manufacturing Cost System, Emerging Practice in Cost Managemt*, 1990, pp. 33~44.

ABC를 제품원가계산의 성과평가 및 투자안의 타당성 검토를 상호 연계시키는 연결고리로 간주하는 Troxel과 Weber(1990)⁵⁰⁾는 ABC가 다음과 같은 세 단계를 거치는 가운데 발전되었다고 주장한다.

첫번째 단계의 ABC는 전통적 원가시스템에 비해 다소 복잡하고 정교한 시스템을 통한 外部報告目的의 제품원가계산을 지칭하는데(주로 독일 등 유럽의 기업이 사용하였음) 이 당시 ABC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두번째 단계의 ABC는 전통적 원가시스템과의 차이가 비교적 뚜렷한 편이었다. 그러나 ABC를 정의하거나 실행하기 위한 별도의 시스템을 마련하지는 못했으며,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임의적으로 ABC의 개념을 도입한 독자적 모델을 개발하였다.

세번째 단계의 ABC는 주로 전략적 목적(가령, 가격결정 또는 제품/고객배합 결정)에 활용된 경우를 지칭한다. 동 단계에서는 여러 기업에서의 ABC 활용 상황을 종합함으로써 오늘 날과 같은 체계적인 ABC 모델이 구축될 수 있었다.

2) 활동기준 원가계산의 필요성

활동기준 원가계산은 전통적 원가계산이 갖고 있는 제조간접원가 배부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전략적인 제품구성을 결정하기 위한 원가계산 방법으로서, 그 계산방법은 우선 경제적 자원을 소비하는 활동(activity)으로 추적하고, 그 다음에 그 원가를 활동으로부터 만들어진 원가계산대상(예를 들면 제품, 고객, 서비스 등)을 할당하는 계산을 의미한다.

즉 제조과정에 있어서 경제적 자원은 활동에 따라서 소비된다. 이 경우 발생한 원가는 그 경제적 자원을 소비한 활동으로 추적하여 각 활동에 대한 원가를 계산한다. 그리고 활동에 의하여 원가계산 대상이 생성되는데, 활동의 이용에 따라서 활동원가를 각 원가계산 대상으로 할당한다. 이렇게 하여 제품원가, 서비스원가 등을 계산한다. 활동기준 원가계산의 모형을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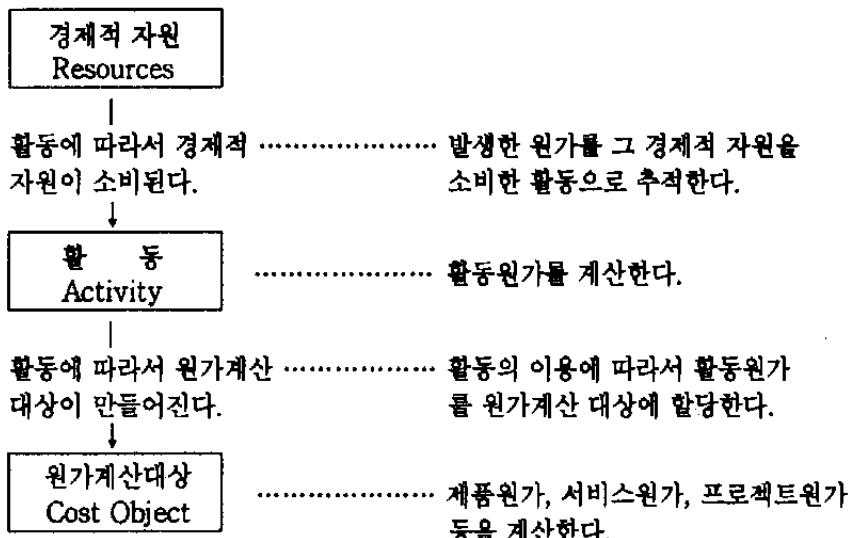
쿠퍼와 캐플란은 전통적 원가계산제도에 의한 제품원가 정보는 매우 부정확하여서, 그 정보를 사용하면 제품전략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고 하고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① 多品種小量生產
- ② 製品의 多樣化와 製造工程의 複雜化에 의한 生產販賣支援 活動原價의 증가
- ③ 長期變動原價로서의 支援活動原價

50) Troxel, R. B. and Weber, Milan G. Jr., *The Evolution of Activity-Based Costing, Emerging Practices in Cost Management*, 1990, pp. 79~88.

- ④ 長期變動原價를 무시한 短期限界分析의 缺乏
 ⑤ 제품원가를 왜곡하는 標準度量衡基準에 의한 배부

〈활동기준 원가계산의 모형〉



3) 활동기준원가 계산의 한계성

ABC시스템을 채택한다고 해서 더 이상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여전히 수정이 필요한 깊은 첫째, 기업의 원가함수가 전제이라고 가정하는데 있다⁵¹⁾.

예를 들면, 제품들이 공통적 요소를 갖는 경우, 제품계열을 추가하거나 폐기한다고 해서 반드시 공통요소의 생산을 위한 배치(batch)수의 중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원가시스템이 특정의사결정에 目的適合(relevant)원가를 적절히 구분해 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원가시스템은 자재취급(이동)과 관련된 비용을 묶어서 단일 항목으로 취급할 수 있으나, 특정의사결정의 경우에는 이를 비용 중 단지 일부에 대해서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특정원가동인을 이용한 일부 원가배분은 여전히 제품원가계산상 왜곡을 가져올 수도 있다. 가령, 생산준비작업(set-up)이 제품이나 제조상의 순서에 따라 변화할 때 '작업준비 횟수(number of set ups)'를 원가동인으로 삼아 배분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Cooper, 1990).

51) Aiyathurai, Gerald, W. W. Cooper and K. K. Sinha, Note on Activity Accounting, Accounting Horizons, (December, 1991), pp. 60~68.

지금까지는 ABC에 의한 제품원가계산이 결코 완벽할 수 없음을 주로 지적한 것이지만 원가관리 및 효과측면에서의 한계점을 Johnson(1989)은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명심해야 할 사항은 비부가가치적 활동을 제거함에 성공한다고 해서 반드시 자동적으로 재무회계상 비용감소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ABC의 결과로 줄어든 시간 또는 작업장면적 등 주요 경쟁상의 비재무적 측정치들은 帳簿上の 비용을 감소시킴이 없이도 줄어들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절약되는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우수기업의 경우 예산을 하향식으로 배정하여 통제하거나 재무목표를 달성하도록 하위담당자에게 강요하기보다는 오히려 비재무적 측정치를 통해 思考하도록 독려한다.”

V. 결 론

근대 경영에 있어서 원가계산은 계산 기술적으로는 산업혁명에 의한 작업의 기계화를 계기로 하여 불명확하게 된 작업원가의 파악을 위하여 제도화된 것이라고 말 할 수 있다. 경영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종래의 계산방식으로서는 오늘날 경영에 대한 작업원가를 파악한다는 것은 어렵게 되었다. 원가계산은 경영의 발전과 더불어 진보하지 아니하면 안되었고 고도의 기계화와 노무비의 고정비화는 직접 임금계산을 불가능하게 했으며 또 임금만으로 행하는 작업비 계산은 불합리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근대경영에 있어서 작업원가의 계산은 중요한 문제이다. 또 경영의 대규모 복잡화에 따라 관리비의 계산이 원가계산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현실적인 대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관리비를 점차 중대하게 하여 그 합리적인 운용을 위한 새로운 원가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종래의 제조간접비의 계산방식은 근본적인 재검토를 필요하게 하였다. Direct costing의 출현도 이러한 불합리적인 직접계산 방법에 대한 비판이라고 생각된다.

원가계산은 경영의 실체에 적합한 형태로 계산되어야 유효하다.

이와 같은 새로운 계산체계에 의하여 설명하면서, 특히 관리기능의 중요성은 필연적으로 관리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때문에 원가계산의 이용목적도 발전하게 되었다. 기업목적을 달성하는데 원가계산이 필연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회계제도로서 기업의 과학적 관리의 적용인 원가계산 그 자체의 가능은 경영관리에 있어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여하간 근대기업의 진보가 무한히 계속되는한 원가계산도 역시 경영과 더불어 발전을 같이 하여야 할 것이며, 오늘날의 경쟁이나 기술, 경영의 추세는 미래에도 계속해서 변화할 것이다. 이미 기업은 단품종 소량생산 체제에서 더 발전된 단품종 대량생산 체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제조생산기술의 변화—FMS, TQM, CIM, JIT, MRP—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되고 더욱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므로 원가회계도 이에 발맞추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다.

참 고 문 헌

1. 고득필, 原價會計, 法文社, 1991.
2. 金奎三, 新原價管理, 博英社, 1981.
3. 南相牛, 會計理論, 日新社, 1982.
4. 申洪哲, 管理會計의 革新, 經文社, 1994.
5. 李正浩, 現代會計理論, 經文社, 1985.
6. 曹廷煥, 會計의 理解(史的接近), 三英社, 1995.
7. 許宗炫, 現代原價會計, 貿易經營社, 1983.
8. 文義泰, 原價會計, 雪雲出版社, 1992.
9. A. C. Littleton, Accounting Evolution to 1900, (New York, American Institute Publishing Company, 1993).
10. Aiyathurai, Gerald, W. W. Cooper and K. K. Sinha, Note on Activity Accounting, Accounting Horizons, (December 1991).
11. Charles T. Horngren, Cost Accounting A Managerial Emphasis(3th ed.) Englewood(liffs, N. J, Prentice-Hall, Inc., 1972).
12. Chales T. Horngren & Geoge, Cost Accounting 6th ed, 송자 外 7人, 共譯, 法文社, 1991.
13. Cooper, Robin, Cost Classification In Unit-Based and Activity-Based Manufacturing Cost System, Emerging Practice In Cost Management, 1990.
14. David Solomans, Studies in Costing(London, Sweet & Maxwell., 1972).
15. Emile Garcke and John Manger., Factory Account, Their Principles and Practice, London, 1st ed., 1887, 4th ed., 1893, 5th ed., 1902.
16. George P. Norton, Textile Manufactures, Book-keeping, London, 1st ed., 1889, 4th ed., 1900.
17. Henry Metcalfe, The Cost of Manufactures and Administration of Workshop, Public and Private, New York, 1st ed., 1885, 3rd ed., 1907.
18. H. Thomas Johnson & Robert S. Kaplan, Activity-Based Information, A Blue-

- print for worldclass Management Accounting, Management Accounting, June 1988.
19. Jonathan N. Harris, What did earn last month, NACA Bulletin Vol. 17, No. 10, January 15, 1936.
 20. J. Slater Lewis, The Commercial Organization of Factories(London : E and F. N. Spon, 1986).
 21. Michael Chatfield, A History of Accounting Thought, 1977.
 22. Perter, M. E., Competitive Strategy(New York, The Free Press, 1985), Competitive Advantage(New York, The Free Press, 1985).
 23. Raymond P. Marple, Historical Background, pp. 3~14, National Association of Accountants on Direct Costing, Select Papers(New York, Ronald Press, 1965).
 24. S. Paul Garner, Evolution of Cost Accounting to 1925, University of Alabama Press.
 25. Staubus, G. T., Activity Costing and Input-Output Accounting, Richard O. Irwin, Inc., 1971.
 26. Shillinglaw, G., Managerial Cost Accounting, Present and Future, Journal of Management Accounting Reseach, (Fall, 1989).
 27. Troxel, R. B. and Weber, Milan G. Jr., The Evolution of Activity-Based Costing. Emerging Practices In Cost Management, 1990.
 28. 片野一郎譯, Littleton, 會計發達史, 同文館出版, 1952.

북구 바이킹의 후예를 찾아서

최영순*

— 目 次 —

- | | |
|-----------------------------|--------------|
| I. 조사의 목적 | IV. 학술조사 기간 |
| II. 북구 상업 및 무역도시 학술조사 대상 지역 | V. 학술조사 후원기관 |
| III. 북구 상업 및 무역도시 학술조사 팀 | VI. 학술조사 일정 |

I. 조사의 목적

한국경영사학회는 1997년도 학술행사의 하나로 북구상업 및 무역도시의 학술조사를 다음과 같은 목적하에 실시했다.

1) 진취적인 해양인으로 해적활동과 상업활동을 해온 바이킹의 후예 스칸디나비아 국가를 둘러봄으로 그린랜드 및 중국, 북아메리카까지의 진출과 이들의 활동지역이던 유럽과 러시아로의 통상로 개척을 통해 북해상권 및 세계경제사에 미친 영향, 사회복지제도와 바이킹의 역사적 긴밀성을 살펴본다.

이로써 서기 800~1066년경의 바이킹시대에 북구 바이킹들은 유대·아랍상인들과의 진취적 교류를 통해 비잔틴문화와 그리스정교를 러시아와 북부지역에 소개하고, 동방문물을 유럽에 전달하는 중개자의 역할을 하였음을 확인한다.

2) 1901년부터 물리·화학·의학·문학·평화 부문(1969년에 경제 부문이 추가됨)에 걸쳐 인류에게 공헌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노벨상의 고장 스톡홀름에서 노벨의 업적을 기리고 21세기에 노벨상에 도전하는 학문적 비전을 제시해 본다.

3) 1989년 동구권의 붕괴 이후 성공적으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를 실현해 가고 있는 체코의 프라하에서 정치·경제·문화의 자유흔을 감지해 본다.

총체적으로 볼 때, 이번 북구 스칸디나비아의 학술답사는 동양을 서양에 소개한 중개자로의 역할과 신대륙으로 진출한 진취적 해양인으로의 바이킹을 다시금 인식하여 사회복지·후생의 역사적 근원을 살펴봄으로 민족과 나라마다 고유한 특성에 따라 제도를 정착함이 가장

* 이화여대 강사

바람직하다는 평범한 진리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역사에 연연하지 않고 첨단산업과 환경산업에 적극성을 보여 시대적 변화를 주도하는 이들의 자세를 배우는데 그 목적을 둔다.

II. 북구 상업 및 무역도시 학술조사 대상 지역

덴마크(코펜하겐)→노르웨이(卑爾根, 오슬로)→스웨덴(斯德哥름)→핀란드(هل싱키)→체코(布拉格)

III. 북구 상업 및 무역도시 학술조사 팀

단장 : 김 성 수(경희대 교수)

: 고 승 회(단국대 교수)

총무 : 김 상 규(경원전문대 교수)

: 이 광 종(신흥전문대 교수)

기록 담당 : 김 신(경희대 교수)

: 최 영 순(이화여대 강사)

사진 담당 : 민 찬 식(전 경원전문대 교수)

학술조사교수 : 황 명 수(단국대) 김 광 수(승실대) 김 병 하(학회고문)

김 성 수(경희대) 고 승 회(단국대) 이 전 회(이화여대)

박 광 서(본학회 자문위원) 이 광 종(신흥전문대) 김 상 규(경원전문대)

조 수 종(충북대) 김 신(경희대) 유 병 주(충남대)

한 한 수(경희대) 안 종 태(강원대) 서 인 덕(영남대)

최 단 육(인천시립대) 이 정 도(경북대) 조 성 원(고려대)

최 원 철(제주대) 이 광 주(단국대) 강 태 훈(단국대)

손 일 선(계명대) 최 영 순(이화여대) 전 형(단국대)

양 진 환(강남대) 박 재 용(경희대) 이 길 영(승실대)

이 남 구(건국대) 박 유 영(승실대) 이 한 유(영남대)

허 남 일(강남대) 김 영 래(충북대) 민 찬 식(전 경원전문대)

김 용 식(제주전문대) -이상 34명-

IV. 학술조사 기간

1996. 7. 18~7. 30 (13일)

V. 학술조사 후원기관

아남그룹 - 1997년도 한국경영사학회 창립대상 수상자

VI. 학술조사 일정

1. 7월 18일, 막음

김포공항은 항상 떠난다는 설레임을 갖게 해주어서 좋다. 오늘도 여전히 북적대는 공항을 뒤로 하고 스칸디나비아 3국으로 가기 위해 먼저 스위스로 향한다. 대한항공의 B747에 익숙한 우리는 스위스항공의 중형 MD(Mac Douglas) 11기의 좁은 공간에서 약간은 힘들게 여행을 하였다. 다시금 주리히에서 시원한 빛줄기와 푸른 숲이 우리를 맞이하는 코펜하겐으로 날아가 맑은 공기를 호흡하니 일시에 피로가 가시는 상쾌함을 맛보았다. 그곳은 코펜하겐과 스웨덴을 해저로 연결하는 해저터널공사가 한창이라 불거리가 많았다. 완성이 되면 TGV로 7분 정도면 국경을 넘게 된다고 한다. 430여개의 섬으로 연결된 덴마크는 남한 크기의 반 정도에 500만명이 산다고 하니 여기가 천국이 아닐런지!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34,000이라고 한다. 드디어 상상 속에 그리던 백야를 이곳에서 경험하게 되는구나. 듣던 바 대로 10시가 훨씬 넘었지만 어두움이 가시지 않는다. 어디고 여행할 때는 감사합니다와 미안합니다만 알아도 의사는 반 이상 통한 셈이라는데 '망했다'가 덴마크어로는 '대단히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망했다'를 연발하는 수 밖에. 너무도 깨끗한 거리와 신선한 공기, 바람이 인상적이다.

2. 7월 19일, 막음

루터파 개신교도가 95%인 덴마크는 사회복지, 특히 장애인과 노인복지가 잘된 나라로 대학교육은 물론 병원, 도서관도 무료라고 한다. 북구의 복지국가에 왔으니 그 기원을 역사적으

로 살펴봐야겠다. 한국에서 한때 유행한 뷔페식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아가 약탈해 온 것을 풀어 놓고 풍족히 먹던 바이킹에서 유래를 했다고 한다. 바이킹의 후예답게 50~75%의 높은 세율로 세금을 걷어 다 같이 나누어 가지는 사회적 시장경제의 전형을 보여준다. 하지만 20개 피 담배 한갑이 5천원 정도라니 좀 심하기는 하다. 그倫트비와 달가스에 힘입어 한국의 농부 보다 37배의 수입을 올리는 이곳의 농부들은 컴퓨터화된 현대식 농경을 한다고 한다. 농산품 이외에도 공업·산업 디자인이 전체 수출의 57%를 차지한다니 세련된 감각미가 돋보이던 거실과 같은 코펜하겐 공항의 실내장식이 이해된다.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레고도 여기서 만들어진다. 유럽연합의 환경청이 있는 곳으로 자연에너지와 환경을 보호하여 원자력발전소도 없고 자동차와 비행기도 제작을 하지 않는다. 자동차를 수입할 때 300%의 관세를 붙여서인지 거리에는 자동차보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달리는 자전거가 더 눈에 띈다. 말도 안돼는 소리처럼 들리지만 택시조합에서 자전거를 공짜로 빌려 준단다. 자전거로 갈 수 있는 곳은 택시를 타지 말고 자전거를 이용하라는 뜻에서. 유럽에서는 길을 가로 막고 서 있어도 자동차는 경적을 안 울리는데, 자전거 길에 진로방해로 서 있으면 따르릉, 따르릉 난리가 나는데 여기도 예외는 아니다. 환경보호국답게 1930년대 이후부터 쓰레기를 소각하여 시민들의 중앙난방은 물론 일부는 도로자재로 수출을 하는 등 쓰레기 조차 100% 재생된다고 한다. 물건을 사고 파는 운하라는 뜻을 지닌 코펜하겐에는 1610년 세워진 세계 최초의 중권거래소가 있다. 덴마크·스웨덴·노르웨이 3국의 합일을 의미하는 3마리 거북의 꼬리가 꼬여서 위로 올라가는 형상을 한 중권거래소의 지붕은 힘의 비상을 보여 준다. 중권거래소가 훨씬 이전에 생긴 줄 알고 있었는데, 도시가 작은 만큼 불거리가 오목조목 한 두 곳에 모여 있어 구경하러 다니기에는 별 어려움이 없다. 버스에서 내려 국회의사당 건물을 보자니 재미난 두상조각이 눈에 보인다. 정말 이 세상의 어려움을 혼자 지고 끊임 없는 모습이 역역하다. 알고 보니 국민의 고뇌와 번민을 해결해 주는 곳으로의 국회의사당을 상징한단다. 온갖 예쁜 꽃과 함께 공부할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는 왕립도서관 공원에는 키에르케고르의 동상이 있어 모처럼 낯선 곳의 어색함을 지우고 철학자와 함께 명함판 사진찍기에 바빴다. 덴마크에서 기억해 두어야 할 인물 중에는 맥주로 돈을 벌어 예술·문화재단에 전 재산을 회사한 칼스버그가 있다. 안데르센의 인어동상이나 전국신화를 보여주는 개피온 분수대, 아랄리엔城 등 우리의 눈길이 닿는 거의 모든 곳에 칼스버그제단의 문화재를 아끼는 마음이 배어 있다. 시원한 칼스버그 한 잔 마시고 싶은 충동을 느끼다. 안데르센이 아니고 '아네슨'으로 발음해야 이곳에서는 인어공주나 미운 오리새끼로 연상을 한다니, 이름이 깨지에 나와서 고생을 하는군. 확트인 시가지에는 고층건물이 보이지 않는다. 시청에 맞추어 5층 미만으로 건물을 규제하였기 때문이란다. 두서너 시간만에 이것 저것 다 보고 150여년 전에 세워진 유원지 티볼리공원(Tivoli) 앞에서 드디어 칼스버그 한 잔을 마시다. 이제는 다시 비행기를 타고 다음 목적지인 노르웨이 베르겐으로 떠

난다. 한자상관이 있던 베르겐을 중심으로 한자상인들은 북해교역을 주름잡았는데, 그 흔적을 볼 수 있을런지.

1년에 300일 정도 비가 온다는 베르겐에 도착했을 때, 너무도 투명한 하늘과 바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곳은 덴마크보다 물가가 더 비쌀려나 보다. 20개피 담배 한갑이 7천원 정도란다. 그리고 보니 물건으로 화폐를 대신하는 전시도 아닌데 담배로 물가를 저울질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군. 대신 수돗물이 공짜라니 '담배 먹고 맴맴'이 아니라 '물 한모금 먹고 하늘 쳐다보면' 되겠다. 덴마크어로 '망했다(감사합니다)'가 노르웨이어로는 '투순탁'이라니 잘 기억하고 있다가 사용해야지. 13세기부터 18세기 말까지 노르웨이 제1의 도시로 북유럽의 파리라고 불리웠다는 이곳은 푸른 청색과 백색의 조화가 보기에도 아름답다. 수도인 오슬로로 가기 앞서 노르웨이에 대해 사전지식을 점검해 보자. 남북한 합친 것보다 1.5배나 크지만 서울 인구의 1/3에 해당하는 450만 인구가 철저한 사회보장을 받으며 살고 있다. 코펜하겐에서 너무 성급하게 천국 운운 한 듯. 오늘이 이틀째니 경탄과 감격을 조금은 자제해야겠다. 개인의 불행과 행복은 국가 탓이라는 성취의 기쁨을 유보당한 이들이 자살로 문제를 풀어가는가? 150여명 남짓한 한국 교민들이 거주하지만 5천여의 입양아들이 살고 있다고 하니 마음이 약간은 무거워진다. 다시 베르겐으로 초점을 돌려 자동차와 사람이 드문 토요일 오후, 가정적이라는 노르웨이인들이 날씨가 좋은 탓에 정원에서 일광욕을 하고 있는 모습이 한가롭기만 하다. 1348년 폐스트가 유럽 전역을 휩쓸 때, 영국배로 폐스트균이 옮겨와 멀리 떨어진 베르겐에서도 많은 화생자가 나왔다고 한다. 1300년 이후 브뤼겐 거리는 네덜란드·벨기에·독일인들이 정착하여 상업이 번성했다고 한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파괴되어 1945년 이후 현대식으로 복구를 했지만 아직은 18·19세기 때 지은 집들이 남아 있어 도시를 더욱 운치있게 해 준다. 길가에 유난히 긴 집을 보았는데 빗줄을 만드는 공장이었다고 한다. 빗줄길이와 공장의 길이가 같았다고 하니 한 번 상상해 보시길.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며 살고 있는 모습 속에서 아득한 옛날을 회상하니, 먼 앞날이 환해진다. 우리가 사회시간에 스칸디나비아 3국은 노르웨이와 스웨덴, 핀란드라고 배웠는데, 여기서는 덴마크와 노르웨이, 스웨덴을 지칭한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았다. 밤 깊은 11시에 산책을 나서서 옥색의 하늘과 해인지, 달인지 구분할 수 없는 맑고 둥근 것을 한참 보다가 내일을 위해 잠을 청하다. 도로만 나있고 건물 서너개만 있는 산 안에 머물자니 베르겐의 야경을 볼 수 없어 유감이다.

3. 7월 20일, 여전히 맑음

로라를 가정에서 해방시킨 입센의 익살스런 동상 앞에서 또 다시 취재경쟁이 불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재미난 듯 보고 있다. 시간이 빠듯해서 한자박물관에는 가지 않고 한자상인들

이 거주하던 상가만을 둘러본단다. 베르겐에 와서 한자박물관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만 후일을 기약하며 1300년대 상인들의 창고와 주거지역이던 목조건물을 살펴보다. 1700년대 화재로 다시 재건축한 이곳은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인류문화재로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건물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세를 주어 토속품 판매를 하고 있다. 당시에는 화재의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부엌은 뒤쪽에 두었고, 상선을 타던 선원들과 상인들이 거주하기 때문에 사창가가 될 것을 우려하여 건물 앞쪽으로는 여성의 왕래를 금지했다고 한다.

연어와 대구, 1967년 발굴된 북해의 유전은 노르웨이를 잘사는 나라(1인당 국민소득 \$30,000)로 만들어 주었다. 80%가 산악지대인 이곳은 임업과 어업 등 주어진 자원을 활용한 산업이 주를 이룬다. 지정학적인 고립에서 벗어나고자 유럽연합(EU)의 가입을 추진하였지만 가입에 따른 불이익이 클 것을 염려한 반대파가 승리하여 스위스와 함께 노르웨이는 유럽연합에 가입하지 않았다.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는 교육제도로 유명한 노르웨이에서는 10년 간의 중등교육을 마친 후 3년간의 김나지움(Gymnasium) 과정을 이수하고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진학하게 된다. 4개 뿐인 국립대학에서는 인문계만 전공이 가능하고, 상업과 공업계열은 전문대학에서 4~5년 간 공부한다고 한다. 대학을 갈 필요가 없는 이곳에서는 중등교육을 마친 후 2~3년 간의 직업학교를 나와 자격증을 얻으면 경력증시의 사회인 만큼 충분한 대우를 받아, 청소부도 자격증을 갖춘 전문인력으로 당당하다고 한다. 공항의 화장실을 안방 청소 하듯 정성들여 쓸고 닦고 하던 젊은 아가씨를 보고 젊은 사람이 안됐군 하고 생각했었는데.... 나라는 부자라서 병이 나도 보호자의 숙식, 교통비까지 제공된다니 아퍼도 살맛나겠다. 하지만 치과에서는 돈을 내야 한다니 아픈 것도 골라가며 아파야겠군. 남녀평등, 아니 오히려 여성의 권리가 더 막강하여 성의 자유는 물론이고 이혼율도 높아 약 2/3 정도가 혼인하고 한다. 헤어질 때는 자녀의 양육권도 대부분 여성에게 주어진다.

이번 여행의 빼미인 피요르드를 거쳐 오슬로까지의 자연경관을 즐기는 긴 버스여행이 시작되었다. 보스(Voss)라는 지역에서 노르웨이식 점심을 먹다. 수십가지의 생선샐러드가 구미를 당긴다. 식초에 절인 청어·양파와 오이로 버무려 논 청어, 마요네즈에 절들인 청어·청어 일색이다. 한참을 버스로 가다 한 모금 마실 때마다 10년이 젊어진다는 트빈데(Tvinde) 폭포에서 물을 마시며 유치원생 나이가 되어 소품은 아이들 마냥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드디어 송내피요르드를 구경하게 되었다. 구드방엔(Gudvangen)에서 배를 타고 100만년 전부터 빙하침식으로 가파라진 U자형의 피요르드 해안을 지나가다. 바닷내음도 없는 해안에는 언제 왔는지 갈매기가 앞서거나 뒷서거나 우리 배를 호위한다. 바다와 태양, 그리고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사를 연발하는 인간들, 정치시키고 싶은 순간들의 연속이다. 배의 앞쪽 그늘진 곳에서 강한 바람에 바람막이 자켓과 모자까지 쓰고 용쿠리고 앉아 있다 뒤쪽으로 가보니 여기는 그야말로 바람 한점 없이 안온한 낙원이다. 금발의 대학생들이 형령하게 옷을 입고 자연을 즐

기고 있다. 움지와 양지의 차이가 이다지도 큼 줄어야. 3시간 동안의 뱃놀이는 갈매기의 집중 포화를 받아 얼룩진 옷이며, 갑판에 안경을 떨어뜨려 여행내내 암탉는 안경으로 새상보기, 선상 세례나례 등 많은 이야기끼리를 남겼다. 송내피요르드의 끝인 라르달(Laerdal)에 여장을 풀다. 한 여름이지만 얼음처럼 차가운 물가에서 꼬마가 장난감 오리와 놀고 있다. 사람이 불어 오리가 물에 떠내려 가니 엄마가 한 걸음 물로 들어가다가 이내 다시 나오며 낭패한 표정을 짓는다. 아마도 여기 창가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수심이 급작스럽게 깊어지니 보다. 주위를 산책할 때 지나가는 비가 뿌린다. 저녁으로 연어 구이를 먹고 해길은 정원에서 자연을 즐기다. 주류에 부가된 엄청난 세금으로 맥주가 비싸서 이 긴긴 저녁나절은 저절로 禁酒. 노르웨이인들은 독일인들이 여행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단다. 왜냐면 이들은 먹고 마실 것을 대부분 싸들고 오기 때문에 관광수입에 별 도움이 안되기 때문이라나.

4. 7월 21일, 맑음

라르달에서 오슬로로 가는 긴 버스여행이 다시 시작되었다. 노르웨이에 와서 처음으로 채소밭과 초원에 누워있는 젖소를 보았다. 1150년에 세워진 보르구룬교회가 인상적이다. 폭 태국에 있는 사원처럼 유연한 지붕, 나무를 한 켤 한 켤 쌓아서 만들었다. 곳곳에 보이는 호수와 호수에 투영된 하늘과 구름, 어느 것이 실물이고 어느 것이 허상인지 구분이 안 같다. 계속되는 자연경치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쏟아지는 잠을 주체할 수 없다. 끝없이 이어지는 안내자의 설명이 궁전에서 맴돌다 사라져 간다. 그 중에서 쌀 창고를 지키며 재해를 방지해 주는 코가 유난히 길고 코끌이 뺨간, 두리뭉실하게 생긴 트롤(Troll) 요정의 설명은 노르웨이를 더 동화적으로 만든다. Europe Song Contest에서 금상을 받았다는 노르웨이의 참가곡 '비원(秘苑, secret garden)'이 지금 우리가 지나가는 자연과 너무도 잘 어울린다. 상당히 높은 곳인 듯 앉은뱅이 자작나무와 이끼류에 가까운 식물들만 눈에 보인다. 가끔씩 호화로움과는 거리가 먼 조그마한 별장이 나타나 머무르고 싶은 마음을 유흘한다. 티인홀멘(Tyinholmen)이라는 만년설호수 앞에서 할 말을 잃다. 1년에 며칠만 이러한 전경을 볼 수 있다는 신비스러운 호수가 우리에게 완전한 모습으로 다가온다. 멀리 보이는 만년설이 호수 안에 원형 그대로 살아있는 듯. 아마도 하나님이 천지창조했을 때처럼 전혀 오염이 안된 자연 그 상태의 모습을 노르웨이가 간직하고 있다면 좀 과장된 표현일까. 만년설을 뒤로 하고 내려오는데 구절양장(九折羊腸)에 비길소나, 계곡 안으로 끌려들 듯 2층 버스가 곡예를 하며 내려갈 때 아래층 앞쪽에서 절규하는 소리가 들린다. 드디어 하나님의 초원이라는 오슬로에 왔다. 햇빛의 흡입을 높이기 위한 붉은 색 지붕이 자연과 멋진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이곳은 340여개의 호수와 4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만큼 시민의 1/3 정도는 부의 상징인 요트를 가지고 있단다. 해양기술과 컴퓨-

터, 원유시추장비 등을 생산하는 오슬로에서 노벨평화상이 주어진다. 1905년 스웨덴에서 독립할 때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권리를 얻었다고 한다. 이곳에서는 달러를 잘 받으려 하지 않아서 작은 기념품을 살 때도 비자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5. 7월 22일, 막음

노르웨이 바이킹의 전취성을 자랑하던 안내자가 신이 나서 바이킹박물관으로 우리를 안내한다. 덴마크에서 약간 언급을 했지만 바이킹박물관을 들러보기 앞서 바이킹에 대해 좀 연구를 해보자. 스칸디나비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협강 *(vik)*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바이킹(viking)은 고기잡이를 생업으로 살아갔지만 협소한 땅에 인구가 늘어 나면서 잘 발달한 조선술과 항해술로 바다 멀리까지 진출하여 노략질을 일삼아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공물과 노획물은 이들에게 주요한 수입원이며, 특히 비단이나 금속제품 같은 특별취급을 받았다고 한다. 역사적으로 바이킹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800~1066년 경에 이들의 두드러진 활약은 통상로의 개척을 통해 경제사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노르웨이 바이킹은 붉은 에릭이 중심이 되어 984년 그린란드를 발견하고 그의 아들 레이프 에릭슨(Leif Erik's son)은 1000년에 북아메리카 연안에 도착했다. 당시 붉은 에릭은 그들이 발견한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대부분 얼음과 눈으로 덮여 있는 그곳을 그린란드라고 명명했다 한다¹⁾. 반면 북미대륙은 비옥한 농토와 알맞은 기후, 풍부한 자원에도 불구하고 친구와 친척들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사람들이 오래 머물지를 못하고 여러 차례에 걸친 탐험으로 끝나게 되었다 한다. 이러한 연유로 북미대륙은 콜럼버스가 재발견하기까지 잊혀진 대륙으로 남게 된다. 가죽·모피·생선기름 등은 이들의 주된 교역품이었다. 이 시기에 중국대륙(부다 모습이 새겨진 물통)과 신대륙에까지 진출한 바이킹에게서 콜럼버스보다 한참 앞선 해양인을 보게 된다. 그리고 보면 당시의 분열된 프랑크제국은 南으로는 이슬람교도들에 의하여 지중해가 봉쇄(7세기 경)되고 북쪽에서는 밀고 내려오는 노르만족 바이킹의 침략에 전전긍긍하면서 육지에 한정된 정체성(停滯性)을 보일 수 밖에. 따라서 이 시기의 프랑크제국은 자급자족적 장원중심의 봉건제에 전력을 기울이고, 아랍인의 중개로 베니스, 제노아 등지에서 원격지 교역이 활성화되기까지 경제가 침체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역설적이긴 하지만 바이킹 시대의 종말은 영국의 왕통 일람표에서 읽게 된다. 1066년 스칸디나비아의 영국왕 하랄드 2세의 죽음과 함께. 그러면 바이킹의 시대는 왜 종식되었을까? 기독교와의 접촉이 곧 바이킹의 약세를 초

1) 1380년 덴마크의 수중으로 넘어간 그린란드는 1400년경의 기후변화로 인하여 외부와의 연결이 끊나 잊혀져 있다가 1712년에 바이킹 후손들의 신앙심을 키워주기 위해 선교사와 함께 다시 찾아 갔을 때 바이킹 후손의 생존자는 없고 에스키모만이 살고 있었다 한다.

래했다고 한다. 기독교로 개종을 한 바이킹이 교역에 치중하면서 그곳의 문화권에 융화·흡수되어 그들의 해양민족으로서의 정체성(正體性)을 상실한 셈.

1348년 혹사병으로 인구의 반을 잃은 노르웨이는 1600년까지 덴마크의, 그 이후에는 스웨덴의 속국이었다가 1905년에야 독립하였다. 박물관에 오니 1905년 옥스버그(Obseberg)의 진흙벌에서 발견한 여왕의 유람선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800~850년경으로 추정되는 이 배에서 여왕이 쓰던 용품과 관, 하녀의 유골이 발견되어 당시의 생활상을 보여주고 있다. 부다모습의 장식이 달린 부다불통으로 이들의 중국진출도 증명이 된 셈. 많은 유럽인을 공포 속에 떨게 한 바이킹의 숨결을 느낄 수 없어서 약간은 아쉬웠다. 바이킹시대에서 벗어나 조각공원에서 보는 즐거움을 갖다. 비겔란트(G. Vigeland, 1869~1943)가 오슬로시의 예술적 후원하에 11명의 제자와 함께 20년에 걸쳐 제작한 640여점의 생동감 넘치는 작품이 한여름의 더위를 식혀 주었다. 인생의 윤회를 다룬 60개의 생명체나무 조각은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인생의 회노애락을 담고 있어 특히 더 감동적이다. 450톤의 돌덩어리를 각아 만든 17m 높이의 남녀군상 조각은 121명이 엉키고 설키어 있어 약간은 기괴하기까지 했지만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인간의 삶을 나타내려 했다는 작가의 의도에 감탄할 밖에. 비도 안오는 무더운 날씨에 무공해 100%의 맑은 수돗물이 한 가닥 시원함을 준다.

비행기를 타고 1시간 남짓 걸려 스톡홀름에 오다. 14개의 작은 섬들과 50여개의 다리가 있어 북부의 베니스라고 불리우는 스톡홀름은 바사(Vasa)왕 때인 1523년 덴마크에서 독립하면서 스웨덴의 수도가 되었다 한다. 유럽에서 5번째로 큰 나라이며, 한반도 크기의 약 2배 정도인 스웨덴의 인구는 고작 850만명이다. 그 중 약 1/6이 스톡홀름에 집중되어 있다. 50% 이상이 산지이고 9만6천여개의 호수가 있다하니. 스웨덴 언어는 독일어와 비슷한지 무슨 뜻인지 몰라도 잘 들린다. 헤이가 안녕이고 헤이도가 잘가라니 기억하기도 쉽다. 복지국가의 대명사이던 스웨덴은 불경기를 맞아 실업율이 15%에 이르고 1인당 국민소득도 \$25,000 정도라고 한다. 30%~70%가 세금으로 공제되는 대신 기본생활 보장이 되어 있어 아프거나 실업을 당하면 재정적 지원을 해준다니 소득 재분배를 통한 동등한 행복권의 보장이 부럽다. 철강과 기계, 기구산업이 유명하며, 특히 IKEA 조립식 목재가구는 세계 각처의 수요층을 확보하고 있다. 북부의 베니스답게 야경이 아름답다.舊시가를 구경하면서 시원한 맥주로 한여름 밤의 갈증을 식혀볼까나.

6. 7월 23일, 비가 한 차례 외주어도 좋으면만 오늘도 맹렬 더위

1911년 시청설계 콘테스트에서 입상한 라그나 외스터베록(R. Osterberg)의 설계로 스톡홀름 수도 400년을 기념하여 1923년 완성된 시청은 먼 발치에서도 당당한 위용을 보여준다.

1901년부터 인류에 공헌한 물리·문학·의학·화학자에게 주어지는 노벨상의 시상식이 행해지는 이곳에 정작 노벨의 모습은 땁 한 군데, 그것도 고작 30cm 정도의 나무로 된 전신 부조상 뿐이다. 무기·화약으로 부를 축적한 노벨은 '죽음의 상인'이란 기사에 자극을 받아 130 억 \$을 재단에 기증하여 그 기금으로 운영된다. 스웨덴 국립은행 300주년 기념사업으로 1969년부터 노벨경제상이 수여돼 내놓으라는 학자들이 스톡홀름 시청의 청색홀로 초대되는 영광을 누린다. 시의장의 근무실 복도에 세워놓은 두상들도 알고 보니 건축 당시의 일부들이 된다. 공사 내내 배로 술을 날라다 준 술장수가 인기투표 결과 1위를 해서 지금도 당당히 그의 초상화가 벽면을 장식하고 있다. 귀족이나 성직자로 차장이 된 다른 유럽 국가의 관공서와는 달리 만인이 동등하다는 스웨덴의 신성한 전통을 읽을 수 있었다. 노벨시상식 이후 무도회가 열리는 황금의 방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다. 23K. 금 30kg을 녹여서 만든 금모자이크. 멜라렌호수의 수호신이 정면을 장식하고 있는 이 방은 황금으로 번쩍인다. 유난히 번쩍이는 곳은 떼어간 금 대신 새 금을 박아 넣었기 때문이라고. 관광객이 끊임없이 오고 가며 감탄을 연발한다.

1시부터 북구의 한자상권과 노벨상의 의미를 재조명하는 이번 여행의 테마에 따른 해외심포지움이 개최되었다. 복지·후생이 잘된 북구의 사회적 시장경제의 전형을 보여주는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서 침단산업의 육성과 노벨상의 유래를 통하여 21세기를 대비하는 경제·경영의 학문적 비전을 제시해 보자는 고승희 회장님의 개회사에 이어 9개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제1부 사회 : 박재용(경희대 교수)

발표 1. The Nobel Prize and Career of Alfred Nobel

(발표자 : Anderson Karlson, 스웨덴, 스톡홀름대 교수)

(토론자 : 박재용, 경희대 교수)

발표 2. Education Investment and Economics

(발표자 : W. Bussen, 독일, 그리스탁스 하이네만재단 교육연구원장)

(토론자 : 최영순, 이화여대 강사)

제2부 사회 : 김병하(한국경영사학회 고문)

발표 3. 바이킹과 북유럽 상업권

(발표자 : 김광수, 숭실대 교수)

(토론자 : 박광서, 순천향대 교수)

발표 4. 막스 웨버의 기업윤리와 한국기업가의 경영이념

(발표자 : 황명수, 단국대 교수)

(토론자 : 김영래, 충북대 교수)

제3부 사회 : 최단옥(인천시립대 교수)

발표 5.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의 재무이론 연구

(발표자 : 이건희, 이화여대 교수)

(토론자 : 이정도, 경북대 교수)

발표 6. 스웨덴의 노사관계 연구

(발표자 : 안종태, 강원대 교수)

(토론자 : 서인덕, 영남대 교수)

발표 7. 유럽연합(EU)의 회계표준화정책

(발표자 : 고승희, 단국대 교수)

(토론자 : 이길영, 숭실대 교수)

발표 8. 중국진출기업의 노무관리 연구

(발표자 : 유병주, 충남대 교수)

(토론자 : 양진환, 강남대 교수)

발표 9. 해외진출로의 사적 연구

(발표자 : 김 신, 경희대 교수)

(토론자 : 이남구, 건국대 교수)

제4부 자유토론

금발의 전형적인 북구인들은 남쪽으로 여행을 가고 객지에서 온 사람들로 북적대는 스톡홀름의 밤은 11시가 넘도록 어두워질 줄 모르고, 스콜 스타(big beer) 한 잔이면 호숫가에 띄워 눈 선상 호프집에 낭만이 넘친다. 멋지게 조명된 교회당과 시가를 가로질러 가는 전철의 불빛이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마음을 자극한다.

7. 7월 24일, 막음

13세기 경 독일의 상인과 수공업자들이 거주했다는 舊시가는 흑색의 지붕이 인상적이다. 부유한 독일인들이 구리로 지붕(변하면 흑색)을 하여 검은 지붕이 부의 상징처럼 되어 암다 투어 모방을 했기 때문이란다. 왕궁을 비롯한 불거리가 푸짐한 이 구시가는 1397년에서 1523년까지 덴마크 속국이던 시절의 역사적 아픔을 간직하고 있다. 스웨덴 한림원 앞 광장 '피의 욕조'라고 불리우는 분수연못이 바로 그것이다. 덴마크인들이 스웨덴의 왕족과 귀족을 모아 놓고 연회를 베풀다 80여명을 다 처형하여 피라미드 형태로 쌓아 놓았다고 한다. 이 사건을 통해 스웨덴 왕실의 혈통을 끊어 놓으려 했다니 정복자의 끝없는 탐욕에 몸서리가 쳐진다. 슬

픈 역사를 뒤로 하고 또 다른 역사의 현장인 바사박물관(Vasa Museet)에 가다. 바사왕의 손자인 아돌프 2세(Adolf II)가 30년 전쟁 당시 1628년 건조한 매리 로즈(Mary Rose)호가 전시되어 있다. 상대편을 압도하기 위한 67m 길이에 1300톤의 거대한 전함은 크기에 비해 폭이 좁고, 너무 많은 포를 선적하여 진수식 이후 15분 만에 침몰하여 잊혀져 있다. 1957년 발전되고, 333년 후인 1961년 진흙 속에서 제 모습을 나타내었다 한다. 슬라이드를 통해 매리 로즈가 제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을 지켜보고 스웨덴의 저력을 감지하다. 스톡홀름의 올살라 왕립대학을 들러보다. 35,000명의 학생이 인문과학·사회과학·법학부·수학과학 분야에서 공부하고 있다. 완전 현대식으로 꾸며진 도서관은 공부할 마음이 저절로 생길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 구내서점에서 경제사책을 몇권 구입하다. 멋진 조각들을 모아 논 밀레(K. Milles) 공원의 '천국으로 가는 계단'에 서 있는 토르소가 유난히 인상적이다.

오후 6시경 편란드의 헬싱키로 가는 여객선 실리아호(SiLja Line)에 승선하다. 내일 아침 8시 30분경에 도착한다니 13시간이 더 걸리는 셈이다. 어느 정도로 큰 유람선인지 이해를 돋기 위해 잠깐 배의 내부를 소개하자면, 학교 운동장만한 배의 4~5층은 식당을 비롯한 슈퍼마켓, 오락실, 바아 등이 마련되어 있어 심심함을 달래주고, 6층은 배 위의 면세점이다. 7층부터 11층까지는 선실로 출구가 위낙 복잡하여 엘리베이터를 잘못 타면 선실을 찾을 수 없을 정도. 미노스왕의 미로를 헤매는 기분. 여기 저기 다니면서 시간을 보내다 해저문 갑판에서 멋진 저녁노을을 바라보고 해돋이를 기다리다 깜박 잠이 들어 결국은 헬싱키의 아침 햇살에 눈을 뜨다. 스웨덴의 600년간 통치와 러시아의 속국으로 100년을 지낸 편란드. 시벨리우스의 음악이 궂전을 맴도는 편란드에 드디어 왔다. 고기의 비늘이라는 'Finn'에서 유래한 편란드에는 22만개의 호수가 있어 빼어난 자연경관이 일품이라는데. 짧은 시간에 주마강산격으로 어찌 자연의 넓은 품에 안겨 볼 수 있을까?

8. 7월 25일, 맑음

올림피아티미널에 내려서 곧장 대통령관저 앞에 있는 벼룩시장에 가다. 안내하시는 분이 침이 마르도록 편란드 대통령 차량을 한다. 점심시간에 나와서 시장의 물가도 살펴보는 국민들과 함께 하는 대통령이라고.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대통령을 가진 나라 앞에는 의기소침해지는 몹쓸 병에 걸렸나 보다. 한반도 크기의 1.5배인 편란드에는 500만 명이 살고 있고, 1인당 국민소득은 \$27,000 정도란다. 1510년에 세워진 국립대학의 도서관은 대리석과 목재가 어우러진 원형의 고풍스럽음으로 공부하고픈 마음이 생길 정도. 컴퓨터화된 죄신식 공간으로 300만권의 책이 소장되어 있다고 한다. 영혼의 삶을 짜우는 도서관을 보았으니 이제는 건전한 육체를 단련시키는 올림픽 경기장으로 행선지를 바꿔보자. 서방세계

와 소련 연방과의 외교정상화를 위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개최된 1952년 올림픽 경기장은 인적이 뜹하다. 더위에 모두들 지쳐서 그늘만을 찾는다. 경기장 입구에는 올림픽에 3번 참가하여 금메달 9개와 은메달 3개를 따낸 전설적인 인물 Paavo Nurmi의 유연한 조각상이 있다. 이곳도 역시 다른 북구나라와 마찬가지로 여성의 힘이 센 곳인가 보다. 국회의원 200명 중 80명 정도가 여성이라는. 하긴 우리나라 이인호 대사님도 여성이고 보면.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했는데 이곳 핀란드는 여성의원들이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잘해 나가고 있나보다. 한때 스톡홀름학파를 형성하여 북구의 복지국가를 구현, 잘 사는 나라의 대명사이던 스웨덴 보다 핀란드가 훨씬 잘 살고 있다. 전쟁으로 실의에 빠진 국민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핀란디아를 작곡한 시벨리우스를 보러 시벨리우스공원으로 간다. 150개의 파이프로 된 파이프오르간은 장엄한 음향을 내는 듯 은색의 은은함을 전해 준다. 그 맞은 편 둔덕에 시벨리우스의 두상이 은색으로 놓여져 우주인 같은 기괴함을 보이지만 모여든 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얼굴 앞에서 사진을 찍는다. 헬싱키에서 잊지못할 불거리는 1969년 완성된 암석교회이다. 벽면은 암석으로 되어 있고 천장을 둥으로 둉그렇게 만든 이 교회에서는 음악회가 열리고 있었다. 둉으로 된 천정이 음향을 유지시켜 주어서인지 고운 노랫소리가 너무도 황홀하다. Timo와 Thomo 형제가 불모지를 관광지로 만들려고 설계했다는 이 암석교회(Temppeliankion Kirkko)는 자연과 인간의 두뇌가 조화를 이룬 걸작이다. 짧은 구경을 마치고 호수가에서 점심을 먹다. 다시금 연어구이가 나오자 평범한 한식상을 그리워 하는 눈치가 여기저기서 역력히 보인다. 하루 일정을 앞당겨 프라하로 떠나다. 4시 반경 출발이지만 3시간 정도 미리 공항에 와서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보면 헬싱키에서는 오전시간만 있은 셈이다. 멋진 자연경관을 빨로 다녀보지도 못하고 핀족이 이루어 논 불거리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꼭 무엇에 끌리듯 공항으로 와, 사지도 않으면서 예매한 면세점만 둘락날락 했다. 바로 앞에 있는 에스토니아로 배를 타고 가면 좋을텐데. 다시 비행기를 타고 체코의 프라하로 간다. 1989년 공산화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제도약을 다짐하는 체코는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이 \$5,000이다. 8대 관광도시 중의 하나로 세계문화제가 산적한 프라하 중심지를 몰다우강이 흐르며 중세의 낭만을 전해 준다. 하벨대통령하에 내각책임제인 체코는 다른 옛 동구권과는 달리 정치적인 안정을 피하는데 성공하여 ‘프라하의 봄’ 기운을 감지할 수 있다. 1989년 이후부터 한국과 교류가 확대되어 200여명의 교민이 살고 있다고 한다. 그중 반 이상이 대우가족들이고 선교사도 많다고 한다. 우리의 안내를 맡은 분도 세속과는 타협하기 조차 싫다는 표정으로 말을 아주 아끼는 선교사였다. 우리가 도착하기 앞서 유럽을 강타한 이상기류의 영향권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듯 프라하의 하늘은 잔뜩 흐려 있다. 프라하에 왔으니 모짜르트의 오페라를 보러 가면 좋을텐데, 신변안전을 책임질 수 없다는 현지인의 말을 참조하여 주변산책으로 만족하는 수 밖에.

9. 7월 26일, 호리고 한 때 비가 오다. 오후는 맑음

한 때 유럽의 문화·종교·정치의 중심지이던 프라하는 바로크와 로마네스크, 고딕 등 다양한 건축양식으로 지어진 성과 성당이 공존하여 보는 이의 눈을 즐겁게 해준다. 루터와 칼빈 교파, 얀 후스를 지지하는 신교도와 합스부르크를 지지하는 가톨릭 사이의 정치적·종교적 갈등이 빚어낸 '30년전쟁(1618~1648)'의 발단이 되었던 이곳 보헤미아에서의 감회는 남다르다. 카프카의 작품 '城'을 연상시키는 프라하의 성이 있는 Hradcany 지역의 작은 골목을 열심히 올라가면 로레타광장에 다다른다. 로레타성당에는 6,200개의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프라하의 태양'이 프라하의 옛 영화를 말해 주는데 시간이 없어 다시 볼 기회를 놓쳐서 아쉽다. 하긴 가장 중요한 불거리는 남겨 두는 법이니까. 비파대성당에 들어설 때, 잔뜩 찌푸리던 날씨가 드디어 심술을 부려 비를 뿌린다. 성당 지붕 밑에 서서 비를 피하는 맛 또한 프라하를 아름답게 한다. 925년 바질라프왕에 의해 시작된 공사는 바질라프왕이 죽은 지 꼭 천년 되는 해인 1929년에 완성되었다고 하니 대성당의 장구한 역사 앞에 숙연해진다. 성 조오지성당을 지나 금세공장인들이 거주했던 '연금술사거리'에 들어서다. 한 때 명사들의 숙소, 감옥으로 쓰였다는 작은 집들은 지금 보헤미아의 예술적 감각을 한껏 엿낸 토신품 매장으로 변해 있다. 물다우강 위의 '찰스다리'에는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관광객과 거리의 악사·미술가들이 프라하의 다채로움을 더해 준다. 1410년에 제작된 천문시계는 프라하의 상징으로 손색이 없다. 사치·허영과 물욕, 죽음, 폐락을 상징하는 신상과 그 아래에는 철학자, 천문가, 역사학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원과 축복을 상징하는 천사가 천문시계를 장식하고 있다. 광장 주변에는 아르노보 양식과 바로크, 로코코 양식의 건축물이 예술적 향수를 자아낸다. 얀 후스의 동상 앞 계단에 앉아서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감상하다. 오전에 호렸던 날씨와는 달리 화창한 토요일 오후, 오케스트라의 생동감 있는 선율은 프라하를 다시금 모짜르트가 숨쉬었던 음악의 도시로 만들어 준다. 프라하를 구경하다 지친 많은 관광객들이 앉아 쉬고 있는 후스 동상은 1360년 보헤미아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찰스대학 총장을 지낸 신부 얀 후스를 기리고 있다. 마틴 루터보다 앞서 가톨릭교를 비판하다 1415년 화형을 당한 얀 후스를 기념하여 500년 후인 1915년 세워진 동상에는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지키고 사랑하라'고 적혀 있다. 1948년 공산화된 이후 68년의 짧았던 프라하의 봄을 겪으며 1989년 민주화가 찾아오기까지 체코인의 정신적 지주였던 얀 후스. 프라하의 평화로움이 곳곳에서 느껴진다.

10. 7월 27일, 맑음

6세기 경 슬라브족 이동시 슬라브족의 지도자였던 '체호'를 따서 체코로 명명된 이 나라에

는 비세라드성과 같은 전설적인 요소가 많다. 드보르작과 스메타나의 음악을 통해 이미 체코의 정서를 알고 있는 우리는 유명인사를 틈에 누워 있는 드보르작과 스메타나를 찾기에 바빴다. 성 베드로성당을 구경한 후, 프라하의 시조로 불리는 리브셰像을 바라보며 프라하와 작별을 고하다.

보헤미아평원을 가로질러 비인으로 가는 5시간에 걸친 버스여행이 시작되었다. 1512년부터 1918년 독립하기까지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王家의 속국이었다는 체코의 기막힌 정치사를 뒤로 하고 달려가는 길 주변에는 황금색 밀밭과 초록의 옥수수가 대비를 이루고 있다. 자꾸 '라 보엠'의 슬픈 멜로디가 깃발을 맴돈다. 갑자기 버스가 선다. 웬 봉고차가 화염에 쌓여 있고, 그 곁에 몇몇 사람들이 서서 어이없는 표정으로 불길을 주시하고 있다. 타이어 타지는 폭음과 함께 불길이 수그려 들더니 다시 기승을 부리고, 이삼십분 후 소방차가 와 불을 끈다. 자동차에 대해 잘모르는 사람들이 걸만 멀쩡하게 수리해서 파는 중고차량을 구입하여 타다가, 운나쁘게 더운 날씨에 모터가 가열되어 변을 당했나보다라고 버스에 타고 있던 여행안내자가 설명해 준다. 길 위에서 30여분 지체해서 비인에 도착하니 저녁나절이 되었다. 푸른 도나우강이 얼마 전 내린 폭우로 인해 턱하기만 하다. 식사 후, 도나우강변을 산책하며 그간 여행 중에 있었던 크고 작은 에피소드로 이야기꽃을 피우며 여행 끝에 찾아온 향수를 달래다.

11. 7월 23일, 맑음

1인당 GNP가 \$30,000인 오스트리아는 중립국을 탈피하여 이제는 EU의 회원국이 되었다. 독일과는 달리 미·영·프·소의 분할지배 대신 1956년 스탈린이 요구한 영세중립국을 선택했던 오스트리아는 냉전시대에 지정학적인 여건을 살려 동구권과 서방세계를 연결시켜주는 교두보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

일본사람과 한국사람들이 비인에 오면 꼭 가고 싶어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시립묘지이다. 찾아가도 반길 이 없는 곳을 꽃까지 사들고 한 무더기의 일본인들이 걸어간다. 그 뒤만 따라가면 우리도 비엔나시립묘지에서 길잃을 염려없이 베토벤과 슈베르트, 요한 스트라우스 등 유명한 음악가들이 한데 모여 있는 음악가거리에 당도하게 된다. 주변에 꽃밭이 잘 가꾸어져 있어 죽어서도 아름다운 꽃을 노래할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듯. 한참 사진을 찍다보니 의해 들려야 할 '단체사진 찍어야예'하는 민교수님 목소리가 안들린다. 아뿔사, 아침에 오페라 관람권 구입에 대해 의견이 오고 가다 두 선생님이 버스에 타지 않은 것을 모르고 시간이 되어 출발을 해서 사단이 생긴 것이다. 점심식사 때 합류하기로 하고, 로코코양식의 여름궁전인 웬부른(Schönbrunn) 궁으로 가다. 덥기도 하고 사람들도 무척 많아 정원의 그늘에서 땀을 식힌 후, 승전탑 글로리에타를 보러 프랑스식 정원을 산책하다. 1740년대에 완성됐다는 이

궁전은 대략 1,500개의 방이 있단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결핵으로 21살의 청년기에 숨진 나풀레옹의 아들, 라이흐스슈타트(Reichsstadt) 공작의 석고두상이다. 나풀레옹과 마리 루이제 사이에서 태어난 오스트리아 왕자는 정치적 압력으로 인하여 샌부른궁에서 종달새와 벗하며 보냈다고 하니 권력무상이 실감난다. 식당에서 일행은 합류를 했지만 무언지 모르게 심상치 않던 분위기가 마각을 드러냈다. 버스를 가지고 오겠다고 식당을 나선 체코인 운전사가 30여 분이 지나도 나타나지를 않는다. 도나우의 숲(Wiener Wald) 속 산책은 도루묵이 되었고 일행은 자하철로 비인 시내 구경에 나섰지만, 버스에 여권을 두고 내린 선생님들은 운전기사의 잠적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마음을 줄이신다. 내일 아침 서울로 떠나야 하는데, 대사관에서 여권을 재발급 받기에도 시간이 턱없이 모자라겠다. 도대체 어디에 꼭꼭 숨어 있길래,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도 4시간이 지나도록 무소식인가! 합스부루크왕국의 중심을 이룬다는 850년된 슈테판 성당도 보느니 마느니하고 삼삼오오 모여서 잠적에 대한 추리를 한다. 문제는 콧수염을 기르고, 마음 좋게 생긴 뚱뚱한 체코 기사가 독일어를 읽을 줄 모를 뿐더러 초행이라는 것이다. 체코말을 못하는 여행 안내자와 독어를 못하는 기사의 동업. 막상 일이 발생하고 나니 이 보다 더 심각한 만남은 없는 듯. 여기서 가장 그럴듯한 사건전모를 추리한 전모 교수님 曰 : 기사와 여행 안내자가 서로 다르게 이해를 해서 '곰바우(?)'인 버스기사는 점심 때 버스를 주차한 곳에서 마냥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 추측은 기정사실화되었고 5시간이 지난 후 우리는 우리 못지않게 애태우며 우리를 찾던 기사양반과 극적인 상봉을 했다.

어둑어둑 저물어 가는 도나우 강변에서 해단식을 했다. 경영사학회의 연속적인 발전을 기원하며, 이번의 학술탐사가 새로운 학문적 발돋움을 위한 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고승희 회장님의 인사말에 뒤이어 황명수 교수님의 충평과 이광종 총무님의 공동경비수지내역서 설명으로 여정의 마무리가 지어졌다. 내일이면 떠난다는 아쉬움을 달래며 비엔나의 낭만적 밤에 살아 숨쉬는 요한스트라우스와 모짜르트의 음악·왈츠를 감상하며, 무던히 애태웠던 하루를 마감했다.

12. 7월 24·25일, 맑음

스위스 쭈리히를 경유하여 다시 우리는 김포공항에 돌아왔다. 열흘 동안 우리가 보았던 북유럽의 자연과 여유로움이 다시 그리워질 때쯤, 우리는 우리 사회도 사람살기애 좋은 곳으로 만들자는 조용한 반란을 시도해 봄직하지 않을런지!